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 4·3 사건 진상 국영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서 문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빚어진 이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은 엄청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사건의 진상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야 합의로 마침내 지난 2000년 1월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자료를 국내·외에서 수집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의 결과, 위원회는 2003년 3월 29일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조건부로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추가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시한을 두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후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15일 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4·3특별법’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 1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조경

서문 / 3

화보 / 5

I. 제주4·3사건 진상조사 개요

1. 진상조사 배경	35
2. 진상조사의 근거와 목적	40
3. 위원회 구성과 운영	43
가. 위원회 구성	43
나. 위원회 운영	43
4. 진상조사 활동	45
가. 문헌자료 조사	46
1) 국내 / 46	
2) 국외 / 48	
3) 자료집 발간 / 50	
나. 증언채록 조사	51
다. 검증·분석작업	53

II. 배경과 기점

1. 광복 전후의 제주도 상황	57
가. 일본군 철수와 귀환인구 급증	57
1)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 / 57	
2) 일본군 항복과 송환 / 63	
3) 귀환인구 급증 / 68	
나. 인민위원회 태동	72
1) 제주 인민위 특성 / 72	
2) 인민위 조직과 활동 / 74	

차 례

다. 미군정과 도제 실시	79
1) 미군정 실시 / 79	
2) 제주도제 실시 / 83	
라. 정치·사회경제 동향	90
1) 정치 동향 / 90	
2) 사회경제 동향 / 98	
2. 3·1사건과 무장봉기의 전조	102
가. 3·1사건과 총파업	102
1) 3·1사건 / 102	
2) 3·10 총파업과 군정당국의 대응 / 114	
나. 검거선봉과 관민 충돌	123
1) 검거선봉 / 123	
2) 관민 충돌 / 129	
다. 2·7사건과 고문치사	146
1) 2·7사건 / 146	
2) 고문치사 사건 / 149	
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준비	152
1) 1·22 검거사건 / 152	
2) 무장봉기 결정과정 / 152	
3) 무장봉기 준비 / 157	
4)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진위 / 162	

III. 전개과정

1. 무장봉기와 5·10선거 (1948. 4. 3~1948. 5. 10)	167
가. 1948년 4월 3일 상황	167
1) 무장봉기의 슬로건 / 167	

2) 12개 경찰지서 피습 / 169	
나. 무장대의 조직과 무력	174
1) 무장대 구성원 / 174	
2) 무기 현황 / 178	
3) 조직과 편성 / 181	
다. 미군정의 대응	188
1)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설치 / 188	
2) 평화협상 추진 / 190	
3) 진압정책 채택 / 198	
라. 제주도 5·10선거 좌절	205
1) 선관위원·선거사무소 피습 / 210	
2) 2개 선거구 무효화 / 213	
2. 초기 무력충돌기(1948. 5. 11~1948. 10. 10)	
가. 미군사령관의 진압 지휘	213
1) 미 20연대장 파견 / 213	
2) 박진경 연대장의 진압작전 / 217	
3) 응원경찰 증파 / 221	
나. 연대장 암살사건과 경비대 개편	225
1) 박진경 대령 피살 / 225	
2) 11연대 후기 진압작전 / 229	
3) 9연대 재편 / 233	
다. 8·25지하선거와 무장대 개편	236
1) '남조선 대의원' 선거 / 236	
2) 김달삼 월북 / 239	
3. 주민 집단희생기(1948. 10. 11~1949. 3. 1)	241
가. 강경진압 방침 채택	241
1) 국내외 정치상황 / 241	
2) 미군의 지휘·통제 / 248	
3) 제주도경비사령부 창설 / 260	

차 례

나. 계엄령 선포	276
1) 계엄령의 실태 / 276	
2) 불법성 논란 / 281	
다. 중산간마을 초도화	286
1) 초도화의 배경 / 286	
2) 언론통제·해안봉쇄 / 290	
3) 중산간마을 방화·소개 / 293	
라. 진압부대 교체	302
1) 연대교체의 의미 / 302	
2) 전투력 강화 / 305	
3) 집단살상 지속 / 308	
4. 사태 평정기 (1949. 3. 2~1950. 6. 24)	320
가. 진압·선무 병용작전	320
1)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설치 / 320	
2) 선무공작 / 325	
3) 5·10 재선거 실시 / 331	
나. 무장대 약화	333
1) 이덕구 사살 / 333	
2) 주둔부대 교체 / 334	
5. 사건 종결기 (1950. 6. 25~1954. 9. 21)	338
가. 한국전쟁과 예비검속	338
1) 한국전쟁과 제주도 상황 / 338	
2) 예비검속 / 340	
나. 잔여무장대 궤멸	341
1) 잔여무장대 활동 / 341	
2) 경찰 진압작전 / 344	
3) 군 진압작전 / 353	

다. 한라산 금족해제 356
 1) 금족 해제와 마지막 토벌 / 356
 2) 이재민 구호와 마을재건 / 357

IV. 피해상황

1. 개황 363
 가. 인명피해 개황 363
 1) 인명피해 수치 / 363
 2) 희생자 신고서에 나타난 인명피해 실태 / 367
 3) 군·경·우익단체의 인명피해 실태 / 373
 나. 물적피해 개황 376

2. 인명피해 378
 가. 집단 인명희생 378
 1) 초토화 시기 살상 / 378
 2) 도피자가족 살상 / 391
 3) 자수자 살상 / 400
 4) 함정토벌 / 403
 5) 피난 입산자 살상 / 404
 6) 보복 살상 / 413
 7) 예비검속자 살상 / 421
 8) 무장대의 살상 행위 / 438

나. 형무소 재소자 희생 442
 1) 일반재판 대상자 / 443
 2) 군법회의 대상자 / 448
 3) 군법회의 재판의 법적 검토 / 461
 4) 한국전쟁 발발과 형무소 재소자 희생 / 468

다. 고문 실태 479
 1) 고문의 유형 / 481
 2) 고문·구타 후유증 / 495

차 례

라. 연좌제 피해	496
1) 연좌제 피해실태 / 496	
2) 연좌제 피해사례 / 500	
3. 물적 피해	509
가. 마을 공동체 피해	509
1) 피해실태 / 509	
2) 마을복구 및 이재민 정착사업 / 511	
3) '잃어버린 마을' 실태 / 517	
나. 공공시설 피해	524
다. 산업 피해	526

V. 진상조사보고서 결론 / 533

| 자 료 |

1.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 발표문 / 543
2. 제주4·3사건 일지 / 545
3. 제주4·3특별법 관련법령 / 563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조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세칙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
4. 찾아보기 / 591
5. 위원회 및 기획단 명단 / 614

I . 제주4·3사건 진상조사 개요

1. 진상조사 배경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으로 약칭)은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됐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의 제정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은 제주4·3사건은 실로 사건 발생 5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에 의해 재평가를 받게 됐다.

미군정 하에서 일어난 제주4·3사건은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1960년 4월 19일 이전까지는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공산반란이고, 군경에 의하여 피살된 자는 모두 무장유격대원이거나 그 동조자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나아가 제주4·3사건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소련이나 북한, 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해 제주도를 비롯해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공산도배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제주4·3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960년 5월 제주대학생 7명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 진상조사 작업에 나섰다. 이어서 5월 27일에는 남제주군 모슬포에서 유가족 등 주민들이 집회를 열어 ‘특공대 참살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960년 5월 23일 국회에서 거창·함양 등지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조사단이 구성되자,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주4·3사건의 진상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발의했다.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경남반(반장 최천)의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6월 6일 하루 동안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당시 제주신보사는 6월 2일자 사고(社告)를 내고 ‘4·3사건 및 6·25당시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하여, 국회조사단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1960년 6월 6일 제주도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조사단의 증언 청취 자리에서 10년 동안 한을 품어온 희생자 유족들은 학살 당시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조사단 조일재 의원은 총살을 집행한 군인이나 경찰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했고, 박상길 의원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시효문제가 제기되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축박한 일정이었지만, 단 3일 동안 제주신보사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1,259건, 인명피해는 1,457명에 달했다. 이 신고서를 접수한 제주신보의 신두방 전무는 6월 23일 제주시 외도동에서의 일가족 10명 학살사건의 가해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비로소 시작된 4·3사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해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5·16 발생 이튿날인 1961년 5월 17일 4·3사건 진상규명동지회 회원 이문교·박경구가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진상조사에 앞장섰던 제주신보사 신두방 전무가 구속됐고, 진상규명을 호소했던 모슬포 유족들도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6월 15일 경찰은 전년도에 건립된 '백조일손 위령비'를 부셔서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 5·16 이후 20여 년간 군사정권 하에서 4·3사건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금기시 됐다. 반공법·국가보안법과 연좌제 등의 구도 하에서 4·3사건에 대한 발설조차 힘들어졌다. 이제 4·3사건은 역사 속으로 묻혀지는 듯했다.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하여 그 진상과 상처의 일부를 사실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작가는 4·3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4·3사건에 대한 논의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8년 사건 발생 4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추모모임과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4·3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잘못 알려진 역사를 바로 잡자는 4·3사건 진상규명 운동은 1989년에 이르러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 해 제주지역의 사회단체들은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1회 '제주항쟁 추모제'를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 직후인 5월 10일 '제주4·3연구소'가 발족됐다. 또한 제주신문은 1989년 4월 3일을 맞아 「4·3의 증언」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 연재는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로 이어져 1998년까지 5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1990년대 들어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이 본격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정치권이나 지방의회·자치단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1990년 6월 유족들은 ‘제주도4·3사건 민간인희생자 유족회’를 조직했고, 1991년 4월 처음으로 유족들이 주체가 된 4·3사건 위령제를 봉행했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1993년 ‘4·3특별위원회’를 설치, 읍·면별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가 각각 4·3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공인된 단체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할 경우 정부에서는 모든 협조를 하겠다”(1993. 5. 8)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제주 출신 변정일 국회의원은 1994년 2월 2일, 여·야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4·3 특위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정식 의안으로 발의됐다. 제주도의회는 같은 해 2월 7일, ‘4·3 피해신고실’을 개설하여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5년 5월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해 14,125명의 희생자 명단을 밝혔다.

이렇게 제주도민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1996년 3월 신구범 제주도지사가 정부에 대해 4·3사건의 진상 규명을 공식 요청했다. 그 해 11월 12일에는 제주도의회 4·3특위가 ‘국회 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17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154명의 찬성 서명으로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됐으나,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밟지는 못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역사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4·3사건을 소재로 창작과 연구활동을 했던 시인(이산하)과 출판사 대표(김영호), 연구소 대표(김명식)가 잇따라 구속됐다. ‘4·3’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제작자(김동만)와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인권운동가(서준식)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4·3 계엄령 불법’을 보도한 제민일보 4·3취재반이 이승만 전대통령 양자에 의해 피소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진상규명 운동은 식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열기를 더해갔다.

1998년 4·3사건 발발 50주년을 앞두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1997년 4월 1일 서울에서 강만길·김중배·김찬국·정운형을 공동대표로 한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됐다. 같은 해 9월 26일에는 ‘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조직됐다. 이듬해인 1998년에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50주년 제주4·3 학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됐다. 이러한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1998년 4·3사건 50주년을 맞이하여 위령제·국제심포지엄·예술제·종교행사 등이 개최됐다.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1998년 3월 30일 당내에 ‘제주도 4·3사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는 5월 7일 제주에서, 9월 28일 국회에서 각각 ‘4·3사건 공청회’를 개최했다.

1999년에 접어들자 제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진상규명 운동이 전개됐다. 3월 8일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결성됐다. 또한 1999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근민 도지사의 건의에 따라 위령공원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것은 정부가 4·3사건 문제 해결에 첫 발을 내딛는 시발이 되었다.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20세기의 사건을 21세기로 넘길 수는 없다’는 슬로건 아래 1999년 12월말 제15대 국회 폐회 전에 특별법 제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에서는 10월 28일 24개 유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결집된 ‘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과 성금 기탁 등으로 성원했다. 나아가 연대회의는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84단체 694명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했다.

1999년 10월 11일 한나라당 제주출신 3명의 국회의원이 ‘제주4·3사건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11월 18일 야당인 한나라당은 변정일 외 112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회의는 당론으로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후에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문제에 소극성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11월 1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11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그러나 국민회의의 특위 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자 국민회의는 방침을 선회했다.

결국 국민회의는 11월 24일 임채정 정책위의장이 4·3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12

월 2일 추미애 의원 외 102인의 발의로 '제주4·3사건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12월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제출한 '4·3특별법(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20세기를 보름 남겨둔 1999년 12월 1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본격적인 4·3사건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된 지 만 10여 년만의 결실이었다. 2000년 1월 11일 청와대에서 그동안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서 온 유족·시민단체 대표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정 서명식이 있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4·3특별법은 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는 사회, 도도히 흐르는 민주화의 도정에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의 역사는 한국 정치 민주화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조금씩 진전돼 온 셈이다.

2. 진상조사의 근거와 목적

제주4·3특별법은 제1조에서부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두 번째 제시된 목적이다. 따라서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정권의 4·3사건 성격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별법 속에 담겨진 진상조사의 필요성은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제안이유 등에서 살필 수 있다. 앞서서도 밝혔지만 제주4·3특별법은 변정일 의원 외 112인이 발의한 한나라당의 안과 추미애 의원 외 102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안을 통합해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통일안으로 제출, 통과된 것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일원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그 진압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고, 그 진압작전에 투입된 일부 군인·경찰들이 희생되었으며, 부락 전체가 소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로 취급되는 등 희생자 및 그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 전체가 공·사생활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시도됨에 따라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등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즉, 제주4·3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고 일부 군인·경찰이 희생된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밝힘으로써, 유가족과 제주도민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데 법 제정의 취지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4·3사건 당시 제주도민들을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연좌제 등으로 제주도민의 공·사생활을 제약해 왔던 불명예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의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주4·3사건이 일어난 지 50여 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의 진상규명

을 위한 노력이나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없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회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안한다.

즉, 4·3사건 발발 50여 년이 흐르도록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여 공식적인 희생자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서서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회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발의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봉국도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의 한 부분을 치유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이 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사건의 진상에 대한 역사의식과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99년 12월 16일 제208회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제주4·3특별법은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의 제안 설명을 거쳐 표결없이 가결 통과됐다. 추미애 의원의 제안 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건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피해자 규모조차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동안 이 사건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죽어가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양민 피해가 있었다면 이제 이를 조사하여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이 역사를 승계한 후대의 의무일 것입니다. (중략)

제주도민은 더 이상 기다리기에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민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이 제주도민에게 이 법의 통과를 굳게 약속한 이상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본 의원이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조사해 그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이 ‘역사를 승계한 후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에 목적(제1조)을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회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제정 경위와 특별법 조문 내용 등을 종합하면,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이 발발한 지 50여 년이나 경과되었고, 그 원인과 억울한 희생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전

개되어 왔음에도 국가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이 없었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새롭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무장유격대와 진압군의 탐바구니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희생자의 유족들 역시 연좌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점을 중시하여 제주4·3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뒤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자는 것이다. 요컨대 억울한 희생을 신원(伸冤)하며, 화해를 통하여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통합과 민족의 단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3.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 위원회 구성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다. 위원회는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과 제주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 대표, 관련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2000년 8월 28일 출범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각료 등 당연직 8명과 유족 대표, 학자, 변호사, 군 장성출신, 시민단체 대표 등 위촉직 민간인 12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초대 이한동 국무총리, 2대 김석수 국무총리, 3대 고건 국무총리가 각각 맡았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

한편 특별법 제7조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획단은 특별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위원회 소속 장관이 지정한 국장급 공무원과 제주도 부지사, 유족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2001년 1월 17일 발족했다. 기획단 위원은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제주도 부지사 등 당연직 5명과 유족 대표,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위촉직 10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박원순 변호사가 맡았다. 기획단 산하에 상근 진상조사팀으로 전문위원 5명과 조사요원 15명 등 20명이 편성됐다. 진상조사팀 팀장은 양조훈 수석전문위원이 맡았다.

나. 위원회 운영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제2조)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3사건의 진상규명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때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실태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발발배경, 전개과정,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되 특히 주민 희생 등 인권침해 규명에 역점을 둔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는 2년 동안 4·3사건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0년 9월 조사에 착수, 2003년 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진행됐다. 진상조사의 과정은 ①자료 목록 및 증언채록 예정자 명단 정리, 자료조사 기관 및 단체 선정→②자료 수집 및 증언채록→③분석작업→④보고서 작성·심의의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이런 일정은 직렬적이기보다는 병렬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성과나 중요한 체험자의 증언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기본방향과 진행상황을 점검 협의하고 2003년 3월 29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9월말까지 20개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376건의 수정의견을 접수했고, 이 수정의견을 심의하기 위해 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였다. 그 결과 33건의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2003년 10월 15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진상조사 보고서가 최종 확정되었다.

실질적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업무를 맡은 기획단은 모두 12차례 회의를 개최, 진상조사 기본계획에서 보고서 내용 검토에 이르기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 상근 진상조사팀은 국내외 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조사 입수하는 한편 제주도와 서울, 일본, 미국 등지에서 사건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증언채록 조사를 실시했다.

4. 진상조사 활동

제주4·3특별법에는 진상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몇 가지 규정이 있다. 그 첫째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제6조 ②항)는 것이고, 둘째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6조 ③항)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정부는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제6조 ④항)는 것이다.

또한 증언채록의 활성화를 위해 “누구든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제5조 ①항), “제주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5조 ②항)는 규정도 있다.

이런 특별법의 규정들은 실제로 진상조사 작업에 도움을 줬다. 국내 어떤 기관도 ‘4·3’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나 열람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진상조사팀의 자료조사 작업에 협조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일부 기관에 소장했던 ‘4·3’자료들이 오래 전에 실종됐거나 폐기된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도표에서 보듯 국내외 28개 기관과 국가를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실시, 관련자료 총 10,594건을 입수했다.

□ 자료수집 기관 및 국가

구 분	기 관 및 국 가
국내 (19)	국회,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정부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육군본부,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군사편찬연구소 경찰청,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제주도의회, 중앙도서관, 언론기관
국외 (9)	미국, 러시아, 일본 유사 해외사례(대만, 남아공,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

□ 수집자료 분포상황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연감/군경/법령	267	일반재판 판결문	1,562
정부기관 발간물	245	국회양민학살보고서	1,878
연구저서/단행본	254	미국자료	1,870
수록논문/학위논문	370	러시아자료	19
기사/논설/기고문	2,912	일본자료	92
회고록/전기	55	북한자료	101
영상물/사진첩	188	외국번역물/기타	65
문학작품	13	증언채록자료	571
관보	132	계	10,594

가. 문헌자료 조사

1) 국내

문헌자료 조사는 먼저 ‘4·3’ 관련자료 목록 작성에서부터 출발했다. 지금까지 발표됐거나 비록 발표되진 않았지만 검색하면 관련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 리스트를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1,500여 종의 목록이 작성됐다.

두 번째의 작업은 진상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일이었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국내의 경우 19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4·3사건의 진압 당사자였던 군·경의 작전기록과 국무회의록, 재판기록 등 정부 측 자료 확보에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당시의 신문·잡지기록, 국회속기록, 미군정청 법령과 행정명령, 인사명령과 개인 회고록, 무장유격대 기록 발굴에도 역점을 두었다.

각 기관에 먼저 ‘4·3’ 관련자료 소장여부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그리고 진상조사팀을 직접 파견, 자료실을 열람하거나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몇 개월씩 상주하면서 자료를 검색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대전 소재 정부기록보존소와 서울 소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과천 소재 국사편찬위원회 등이었다.

정부기록보존소에는 2001년 4월부터 2개월 동안 조사팀 4명을 투입, 집중적인

자료 검색작업을 벌였다. 이 조사결과 1949~1950년 국무회의록, 이승만 대통령 유시철 및 재가문서, 예규철 등 정부 문서를 발췌 입수했다. 또한 일반재판 판결문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형무소 수감 중 사망 사실이 적힌 수용자 신분장 등 상당수의 행정자료들을 찾아서 복사했다. 정부기록보존소에 대해서는 그 이후 세차례 추가 조사가 진행됐으며 모두 2,500여 건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2001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팀 5명이 파견되어 군사편찬연구소가 소장한 자료에 대한 검색작업이 있었다. 이 조사는 군 관계 자료 이외에도 이 연구소가 갖고 있던 미군정 시기와 한국전쟁 전후의 미국자료를 검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실시됐다. 미국 현지조사에 앞서 국내에 들어온 미국자료를 모두 검색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연구소를 통해 405건의 관련자료를 입수했다.

2001년 8월에는 조사팀 3명이 2개월 동안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검색작업을 벌였다. 현대사 관련 국내자료뿐만 아니라 「미군정기 군정단·군정중대」 등 미국자료도 입수했다. 특히 독립신보·동광신문·한성일보·현대일보 등 폐간된 신문 검색을 통해서 귀중한 '4·3'관련 기사들을 발췌할 수 있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는 1,500여 건에 이르렀다.

군 관계기관은 군사편찬연구소 이외에도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자료조사가 실시됐다. 이들 기관을 통해 제주주둔 주요 지휘관 인적 사항과 경비대의 인사명령, 육군본부의 작전명령,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육군 역사일지 등을 입수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 작전 전사자 101명의 명단도 입수했다. 그러나 인명희생이 가장 극심했던 1948년 말과 1949년 초의 전투일지나 상황일지 등은 찾아내지 못했다. 아울러 지역별 부대 주둔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거의 없어서 구체적인 작전상황이나 지휘관 및 주둔부대를 문서로써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에 대한 자료조사는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제주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는 제주작전 전사자 122명의 명단과 '4·3'당시 경찰지휘관 명단이 전부였다. 진상조사팀은 경찰청 4개 문서고를 비롯,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실 등을 열람했지만 '4·3'에 관계된 직접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갖고 있던 '4·3'관련문서들이 4·19 등 정치적 변동기에 일부 없어졌고, 최종적으로는 1981년 3월 24일 내무부의 '연좌제 폐지

지침'에 의해 전부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팀은 경찰 부서장들로부터 '4·3'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국회에서는 1960년 4·19 혁명 직후 조사됐던 「양민학살사건 보고서」와 미군정기의 남조선과도입법위원 속기록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국회 속기록 등을 입수했고, 통일부에서는 북한 신문·잡지에서 4·3사건을 언급한 기사를 발췌했다. 이밖에 중앙도서관 등에서는 '4·3'관련 논문과 저술들을 수집했고, 방송과 신문사를 대상으로 특집 프로나 기사를 입수했다. 또 제주도의회 자체에서 1993년부터 신고받아 정리한 「제주도4·3 피해신고서」(14,125명)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국내외 자료수집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충돌 당사자였던 군·경과 무장유격대의 관련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경찰 자료 등의 자체 폐기는 4·3사건의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

2) 국외

국외 자료조사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진상조사팀의 현지출장 조사방법을 택했다. 이때 현지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국외 조사에서 가장 비중을 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자료 조사는 제주4·3사건이 미군정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 문서보관기관에 '4·3'관련자료가 많을 것이란 예상 때문에 심도있게 추진됐다. 먼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자료 검색을 통해 '4·3' 관련자료를 발췌하였고, 그 다음에 조사팀을 미국에 파견했다.

미국자료 조사팀은 제주도와 공동으로 전문위원 3명(장준갑·김창후·양정심)으로 구성되었다. 1차 조사는 2001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2차 조사는 그 해 6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팀이 주로 자료를 검색한 미국 문서기관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로 약칭)이었고, 맥아더기념관(MacArthur Memorial)과 미육군군사연구소(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를 추가로 조사했다.

NARA는 '4·3'조사팀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제공하는 등 자료 발

굴작업에 협조적이었다. 조사팀은 이 조사를 통해 '4·3'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자료 800건을 발췌 입수했다. 복사한 분량만도 1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었다.

수집자료 중에는 미 24군단 작전참모부 작전일지, 미 CIC 자료, 무초 대사 보고서,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공한철, 20연대장 브라운 대령과 군단 작전참모부 슈 중령의 제주활동 보고서 등 새로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지 등 미국 주요 신문들이 제주4·3사건을 다룬 기사들도 입수됐다. 1948년 5월 5일 제주에서 열린 미군정 수뇌회의 참석 차 제주비행장에 도착한 딘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옥 경무부장, 송호성 경비대사령관과 영접 나온 유해진 제주도지사, 김익렬 9연대장 등이 한 컷에 담겨진, 귀중한 스냅 사진도 NARA에서 찾아냈다.

미국자료 조사팀은 자료 검색과정에서 「제주도에 관한 보고 제1·2편(Cheju Do Island, Parts I & II)」등 '4·3' 직·간접자료 28건이 아직도 비밀문서로 묶여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2001년 11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 육군부 정보보안사령부에 비밀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정보보안사령부는 해당문서가 NARA에 이관됐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나 NARA 측은 내용이 없는 해당문서 목록만 이관 받았을 뿐이라고 답변, 재차 정보보안사령부에 문서 소장여부와 비밀해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 정보보안사령부는 2002년 7월 4일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최종 통보를 해왔다. 이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

러시아자료 조사는 2001년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조사팀 3명(김한욱·박찬식·전현수)에 의해 모스크바 소재 문서보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팀은 러시아연방 기록관리청·대외정책문서보관소·현대문서보관센터·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국립문서보관소 등 6개 기관을 방문, 자료 검색을 했다. 이 결과 「1948년 4월 남조선정보보고」 「남조선 선거 관련 정보보고」등 19건의 관련자료를 입수했다.

일본자료 조사는 2000년 12월, 2001년 12월, 2002년 7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2명의 조사팀(양조훈·김종민)에 의해 실시됐다. 이 조사에서 4·3사건을 다룬 일본어자료 92건을 입수했다. 일본조사는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증언채록 조사도 함께 추진됐다. 이와는 별도로 '4·3' 수장 희생자의 쓰시마섬(對馬島) 표류 인양 가

능성에 대한 현지조사도 있었다.

국외자료의 효율적인 발굴을 위해 현지 전문가를 ‘해외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공동 조사활동도 전개했다. 미국 현지전문가로는 후지야 가와시마 교수(보울링그린 주립대)와 박명림 박사(하버드대 연구원), 일본 현지전문가로는 문경수 교수(리츠 메이칸대), 러시아 현지전문가로는 바르타노프 부소장(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이 참여했다.

한편 해외 과거청산 역사 규명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외국 진상조사보고서 입수작업을 벌였다. 대만 2·28사건 연구보고서, 아르헨티나 국가실종자위원회 조사 보고서,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스페인 보고서 등을 수집했다.

3) 자료집 발간

국내외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추진됐다.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피해상황 등의 진상규명은 물론, ‘4·3’의 실상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자료집 주요내용

권호	구 분	주 요 내 용	건수	쪽수	형태
1권	신문편 ①	국내신문(1945.8~1948.3)	415건	448	책자
2권	신문편 ②	국내신문(1948.4~1949.3)	464건	540	”
3권	신문편 ③	국내신문(1949.4~1961.11)	519건	640	”
4권	정부문서·국회 속기록·잡지편	국무회의록/대통령제가문서 국회속기록/국내잡지	134건	551	”
5권	군경자료편 ①	작전명령/인사명령 육군역사일지/경찰정보보고서	200건	507	”
6권	관보편	미군정청법령/미군정청 임명사령/대한민국 관보	132건	572	”
7권	미국자료편 ①	주한미육군사령부	387건	502	”

권호	구분	주요내용	건수	쪽수	형태
8권	미국자료편 ②	美6사단/7사단/군사고문단 971방첩대/주한미군사 유엔한국임시위원단	243건	469	책자
9권	미국자료편 ③	주한미육군군정청 주한미육군고문관실	137건	516	”
10권	미국자료편 ④	미국동군사령부/합동주간정보분석 미국정부/대한민국정부	153건	422	”
11권	미국자료편 ⑤	주한미사절단·주한미대사관 민간인문서/미국신문	136건	405	”
12권	북한·러시아· 무장대자료편	북한신문·기관지·잡지 러시아/무장대자료	99건	275	복사본

이런 목적 아래 자료집 발간작업이 추진된 것이다. 생생한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모두 12권의 『제주4·3사건 자료집』이 발간됐다. 자료집을 발간할 때 신뢰성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영인본을 함께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나. 증언채록 조사

최근 구술사(Oral History)는 역사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제주4·3사건처럼 특이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의 하나가 바로 관련자들의 증언(구술)채록이다.

여기서 4·3사건을 ‘특이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한국전쟁 다음 가는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건임에도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공문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반세기 동안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조사 작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억제돼 왔다는 점이다. 셋째는 사건의 성격에 대해 아직도 보는 시각에 따라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필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동시대 체험자들의 구술이 필요했다.

증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

다. 그것은 사건의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선정하되 균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제주도의회 피해 신고자료와 신문, 방송의 자료, 증언집 등 기존 자료에 언급된 증언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어 증언대상자에 대한 기관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진압작전 지휘관과 무장대 출신자 등에 대한 자체 발굴작업도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증언채록 대상자 모집단으로 2,870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 명단을 중심으로 다시 500여 명을 추려내는 작업을 했다. 기준은 첫째, 평범한 사람보다는 특이한 출신성향의 경험자, 둘째 특정사건이 일어났거나, 피해가 심한 마을 출신자, 셋째 기관 추천 및 자체발굴 대상자들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증언대상자의 나이 등 증언의 신뢰성과 능력을 고려했다. 증언대상자들 가운데 조사기간 중 사망했거나 본인의 고사로, 또 새로운 중요한 증언대상자의 발굴 등의 이유로 일부 교체 보완됐다.

증언채록 조사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503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모든 증언은 녹음기로 녹취하고 캠코더로 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 증언자의 출신성향별 통계

계	농어업	군인	경찰	학생	주부	피난입산	우익단체
503	90	45	48	55	39	52	66
	좌익단체	공무원	회사원	교원	미국인	재일동포	기타
	20	9	10	13	3	35	18

조사는 제주, 서울, 그리고 일본, 미국에서도 진행됐다. 특히 제주에는 조사요원 3명이 상주하면서 증언채록 활동을 벌였다.

일본 증언조사는 도쿄와 오사카 지역 재일동포 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4·3'무장투쟁을 결정한 1948년 2월 '신춘회의'에 직접 참석했다는 한 재일동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큰 소득이었다. 또한 미국 조사에서 4·3사건 기간에 제주에 근무했던 피쉬그룬드(Harold Fischgrund·9연대 고문관) 웨솔로스키(Charles L. Wesolowsky·11연대 고문관), 에드워드(Joseph Edward·9연대 대

대 고문관) 등 미군 장교 출신 3명을 만나 미군의 입장을 청취한 것도 의미있는 조사였다.

제주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군 장교 출신자 가운데는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몇 차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12명에게 위원회 명의의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2명이 나중에 증언채록 조사에 응했다

조사팀은 사전에 증언대상자들의 기존 증언내용을 심층 분석하는 한편, 그 해당 증언자의 주변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준비, 기초적인 설문을 마련했다. 증언 조사는 개인적인 체험담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 뒤, 준비된 설문에 따라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증언조사 결과는 모두 7권의 증언자료집(총 2,958 쪽)으로 정리되었다.

이 증언조사는 50년 전의 사건을 증언자들의 입을 통해 생생히 드러냈다는 이점도 있었지만, 기억의 한계성과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기억의 선택성으로 혼선을 빚는 부분도 있었다. 특히 증언내용 가운데는 사건 발생 시점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어떠한 증언이든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필요했다.

증언자료를 진상조사보고서에 인용할 때에는 이 점에 유의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증언이 사실(facts)에 부합한가를 판단하는 문제였다. 이것은 단순히 한 증언자의 이야기로만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증언자의 증언내용과 각종 문헌자료의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 당시 시대상황에 대한 해석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즉 교차검토(Cross Check) 검증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증언자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도 함께 실시했다.

다. 검증·분석작업

증언이든 문헌자료든 그것이 진실일 때 사료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각종 자료의 진위를 가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4·3사건을 다룬 기존의 기록 가운데는 실제의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 자료들이 많다. '4·3' 논의가 한때 금기시 된 탓인지, 이런 왜곡된 기록들을 반복 인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됐다.

진상조사팀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그

래서 어떤 자료나 증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앞에서 밝힌 교차검토 검증작업이었다.

이때에 문헌자료와 증언은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왜곡됐거나 오류를 범한 내용일지라도 한 번 활자화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설로 굳어지기 쉽다.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증언조사였다.

그러나 증언은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수치나 날짜 등이 불분명하고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있다. 이를 해소하면서 실마리를 찾게 해주는 게 바로 문헌자료이다. 따라서 자료와 자료, 문헌자료와 증언 사이를 교차하면서 검증에 검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량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했다. 입수된 각종 자료와 증언 내용들을 주제별로 컴퓨터에 입력시켰다. 사건의 날짜, 지역, 주제, 인명, 단체 등 여러 형태로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데이터 베이스 검색은 단지 하나의 필드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필드를 이용해 보다 광범위한 내용(합집합)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교집합)을 살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헌자료와 증언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을 했고, 진실에 더욱 가까운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한편 진상조사와 분석과정에서 다음 16가지의 핵심요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 ① 50여 년의 진상규명 역사
- ② 4·3사건의 정의
- ③ 4·3사건의 배경과 발발원인
- ④ 남로당의 개입범위와 역할
- ⑤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 ⑥ 서청의 개입범위와 역할
- ⑦ 사망자 숫자

- ⑧ 가해자 통계구분
- ⑨ 무장대에 의한 피해
- ⑩ 토벌대에 의한 피해
- ⑪ 집단피해 마을 및 물적 피해
- ⑫ 군법회의의 적법여부
- ⑬ 계엄령의 집행문제
- ⑭ 집단살상 지휘체계
- ⑮ 미군의 개입과 역할
- ⑯ 연좌제 피해

II. 배경과 기점

1. 광복 전후의 제주도 상황

가. 일본군 철수와 귀환인구 급증

1)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

① 동북아 요충지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 해상에 위치한, 한국에서는 가장 큰 섬(면적 1,825평방km)으로 북쪽 목포와는 142km, 북동쪽 부산과는 286km가량 떨어져 있다. 동으로는 일본 규슈(九州)와 쓰시마섬(對馬島), 서로는 중국 본토 상하이(上海), 남으로는 동지나해를 사이에 두고 오키나와(沖繩)와 타이완(臺灣)과 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극동지역의 중앙부에 자리잡은 관계로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 받아왔다. 13세기에는 몽골 족이 세운 원(元)이 제주도를 점령, 100년 가까이 지배하면서 일본과 남송(南宋) 정벌 전초기지로 삼았다. 원은 비록 실패했지만,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제주도를 발판 삼아 일본 침공 시도를 하기도 했다.¹⁾

한국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는 1937년 중·일 전쟁 때 제주 섬 서쪽지역인 모슬포에 비행장을 만들고 오무라(大村) 해군항공대를 설치, 중국 대륙을 향한 도양 폭격 기지로 삼더니,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초에 이르러서는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대미(對美)결전의 최후 보루로 제주를 선택, 섬 전체를 요새화하였다.

8·15 광복 직후에도 제주도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다. 1946년 10월 21일 AP통신은 뉴욕 발 기사로 “조선 제주도가 장차 서부 태평양지구 에 있어서의 ‘지브롤터(Gibraltar·지중해의 전략요충지)’화 할 가능성이 있다”²⁾고

1) 국립제주박물관, 『濟州의 歷史와 文化』, 통천문화사, 2001, 112쪽.

타전, 국내 언론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47년 3월 28일 이승만(李承晩)은 방한중인 미 육군성 차관 드래퍼(Draper)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고자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 한국인들은 매우 기꺼이 미국이 제주도에 영구적인 기지를 설치하도록 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³⁾

또한 1949년 5월 제주를 방문한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서에도 “대한해협 남쪽 그리고 일본의 남부와 중국의 북부 해안에 위치한 제주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명백하다”⁴⁾고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1949년 8월 진해에서 열린 이승만-장제스(蔣介石) 회담에서 중국 측은 중국 본토를 공격할 3개의 전투폭격기 비행단이 주둔할 공군기지를 제주도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한 미국대사 무쵸(Muccio)가 본국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⁵⁾

이러한 제주도의 지리적 중요성은 1945년 8·15 종전 직전의 상황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 격전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제주도는 뜻하지 않게 일본군에게는 본토사수를 위한 ‘최후 보루’로, 전쟁 상대인 미국군에게는 일본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 할 섬’으로 부각되었다.

② 일본군 방어진지

일본군 사령부가 제주도의 방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44년 10월 필리핀이 미군에 의해 함락되면서부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방비책임은 해군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병력수도 수 백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초부터 전황은 일본에 더욱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제주도 방비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일본 방위총사령관은 1945년 2월 9일 미군과의 본토 결전에 대비해 7개 방면의 육·해군 결전작전 준비를 명령했다. 작전 암호명은

-
- 2) 『漢城日報』, 1946년 10월 22일;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59, October 31, 1946.
 - 3) “Conference between Under Secretary Draper and Mr. Syngman Rhee, March 28 1948,” Memorandum for Record, Department of the Army.
 - 4) “Report on Trips to the Provinces Affected by Recent Disturbances,” Enclosure to Despatch No. 358, dated June 17, 1949, from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 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후 *FRUS*로 약함), 1949, VII: *Korea*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p. 1080~1084.

‘결호(決號)작전’. ‘결7호 작전’은 조선 반도, 특히 제주도 방면의 방비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45년 3월 12일 일본 대본영(大本營) 각군 작전참모회의에서 ‘결7호 작전’ 시행을 한반도 방어책임을 맡고 있던 제17방면군 사령관에게 하달했다. 이에 따라 작성된 ‘결7호 작전 준비요강’에는 “적(미군)은 규슈(九州)북부 방면 상륙, 또는 조선해협 돌파를 위한 기지를 설치하기 위한 제주도의 공략이 예상된다”면서 “제주도에는 당초부터 유력한 병력을 배치하여 독립(獨力)으로 이 섬을 사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적고 있다.⁶⁾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945년 4월 제주도의 모든 군을 통솔하는 제58군사령부가 편성되었다.⁷⁾ 초대 사령관은 나가즈(永津佐比重) 중장이며, 종전 당시의 사령관은 도야마 노보루(遠山登) 중장이었다. 그 휘하에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등 3개 사단과 1개 여단(독립혼성 제108여단) 및 야포병 연대, 공병 연대, 치중병(輜重兵) 연대 등이 배속되었다.

제96사단은 1945년 4월 서울에서 제주도 북부지역으로 이동해왔으며, 제111사단은 만주 관동군으로 활동하다 그 해 5월에 제주도 서부해안에, 역시 관동군 예하 부대였던 제121사단은 제주도 서부지역에 각각 배치되었다. 독립혼성 제108여단은 일본 본토에서 그 해 5월 제주로 와 동부지역의 방어를 담당했다.⁸⁾

오키나와 함락(1945년 6월 25일) 직후인 7월 13일 일본군 참모총장은 제주도 작전에 관한 특별지시를 제17방면군 사령관에게 시달했다. 그것은 ① 제주도에서의 작전 목적은 적의 공해(空海)기지 설정의 기도를 파쇄함에 있다. 이를 위해서 작전 초동에서 공세를 취할 것 ② 제17방면군 사령관은 1개 사단 병력을 남선(南鮮)에 준비하고, 제주도에 대한 적의 침공 공산이 다대해지면 적시(適時) 이를 제주도에 투입, 제58군의 전력을 증강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⁹⁾ 이 지시에 따라 8월 중순에 제주도에 제120사단을 증파할 계획이었으나, 종전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1945년 8·15 당시 제주도 58군사령부 휘하의 일본군 병력은 6만여 명¹⁰⁾에 이르렀다.

6)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於ける戰爭準備』, 1946 (『朝鮮軍概要史』, 東京, 不二出版, 1989, 164~165쪽에 수록).

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3, October 2,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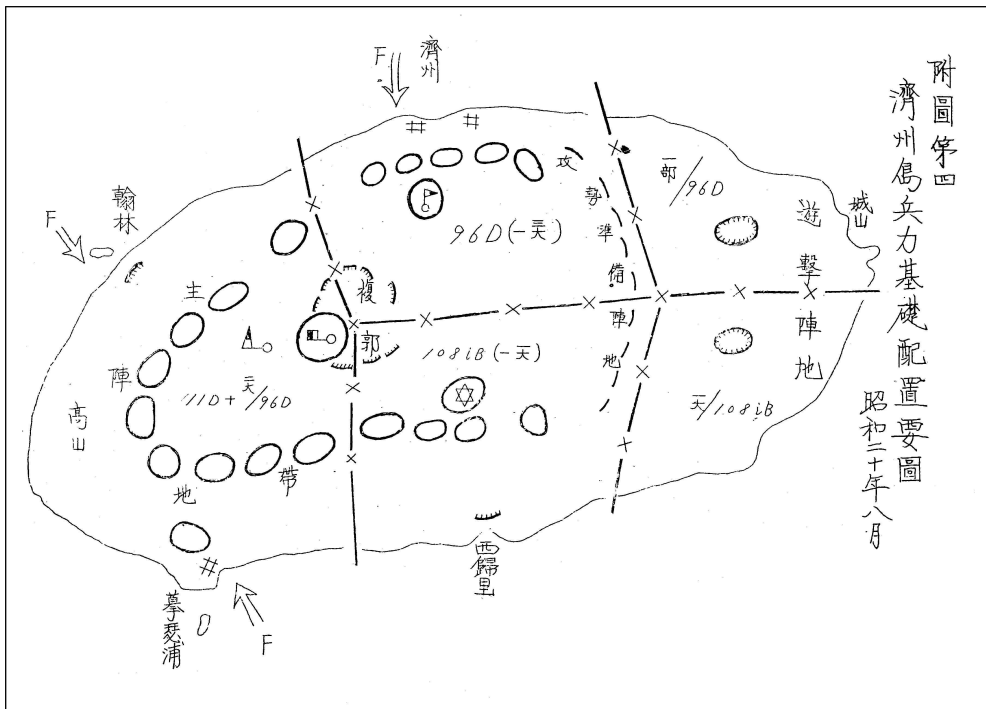
8) Ibid.; 林鍾國, 『日本軍의 朝鮮侵略史』Ⅱ, 일월서각, 1989, 121~122쪽.

9) 朝鮮軍殘務整理部, 앞의 글 (『朝鮮軍概要史』, 240~241쪽에 수록).

10) 朝鮮軍殘務整理部에서 1946년 2월 작성한 『濟州島部隊一覽表』에는 총계 74,781명(『朝鮮軍

이 때 일본군의 방침은 미군이 제주 섬에 상륙했을 때 최후까지 싸운다는 이른바 '옥쇄(玉碎) 작전'을 상정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제주 섬에서 한라산(해발 1,950m)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계획했던 사실은 「조선에서의 전쟁준비」에 기록된 1945년 8월의 '제주도 병력 기초배치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병력 배치도를 보면 일본군의 주력진지가 1차 저지선인 해안선에서 훨씬 후퇴한 중산간지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북부, 서부지역에는 96사단과 111사단을, 동부와 남부지역에는 121사단과 108여단을 배치하는 한편, 특히 동부 고원지대 상당 지역을 포기, 유격전 진지로 삼은 것이 특이하다.¹¹⁾

□ 제주도 일본군 병력 기초배치도



概要史』, 198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부대별 병력 수를 합산해보면 61,090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留守業務部の 「朝鮮部隊概況表」(『朝鮮終戰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24쪽)와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에서 발행한 『韓國戰爭史』第1卷(437쪽)에는 60,668명으로, 미군 정보기록에는 조선인 출신 병사와 노무자를 합쳐 66,780명(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6, October 5, 1945.)으로 정리되어 있다.

11)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於ける戰爭準備」(『朝鮮軍概要史』, 247쪽에 수록).

일본군은 그 해 5월부터 제주도 주민 22만 명 가운데 어린이와 부녀자, 노약자 등 약 5만 명을 조선 본토로 이주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잦은 미군기의 공습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일본군은 미군이 섬에 상륙하게 되면 섬 주민들을 한라산으로 끌고 가 군인들과 행동을 같이하며 미군과 싸우도록 할 계획이었다.¹²⁾ 그것은 20여 만 명의 제주도민들을 최후 결전의 소모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섬 전체가 요새화되면서 제주도 주민들이 당한 고초는 조선 전체에서 가장 심하였다. 일본군은 제주·고산·모슬포·서귀포·성산포 등 해안가 곳곳에 굴을 파, 특공대원들이 어뢰정을 타고 그대로 미군 함정에 돌진하는 특공기지를 설치했다. 기존의 모슬포비행장 이외에도 제주읍내의 동쪽 10km 지점의 '진드르'와 서쪽 2km 지점의 '정뜨르'에 동·서 비행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제주도 중산간지대도 일본군의 요새로 변해 갔다. 어승생악·관음사·녹산장 부근 등지에 거대한 기지가 구축되었다. 전도에 걸쳐 산봉우리마다 토치카가 만들어지고 땅 속으로는 갱도가 뚫렸다. 일본군의 복곽(復郭)진지로 최후 저항본부로 삼았던 어승생악(御乘生岳·해발 1,169m)에는 산을 깎아내어 미로와 같은 수많은 인공 굴이 만들어졌다.

이런 엄청난 작업들은 제주도민들의 몫이었다. 전쟁 말기 젊은 사람들은 이미 강제 징용이나 징병을 당하여 사할린이나 홋카이도 탄광, 남양군도로 보내졌다. 따라서 청년 일꾼이 절대 부족했다. 일제가 일반적으로 '국민직업능력 신고령'에 의해 강제동원한 노무자의 나이는 만 16~50세 사이이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이런 기준도 소용없었다.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예순 살, 심지어 일흔 살의 노인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있었다.¹³⁾

제주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전쟁물자의 강제공출이었다. 그런데 전쟁물자를 징발하는 일에 조선인 관리들이 앞장서서 더욱 주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8·15 직후 제주 도민사회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친일파 청산'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바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전이 되자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도와 징병·징용·강제노역·공출 등에 앞장서서 협력했던 사람들이 '친일파'로 몰려 마을청년들로부터 수난을 당했다. 일제 말기에

12) 林鍾國, 앞의 책, 140쪽.

13)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Ⅱ, 한울, 1989, 169쪽.

공직에 몸담았던 한림·대정·서귀·중문·조천 면장 등이 이런 문제로 봉변을 당했다. 1945년 9월 26일 조천면 한 마을에서는 30대 남자가 친일 경력이 문제가 되어 마을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까지 일어났다.¹⁴⁾

한편 제주 섬이 일본군의 요새가 되면서 미군 공군기와 잠수함의 공격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5월 7일에는 소개민을 싣고 제주항을 출항한 목포행 정기여객선 고와마루(晁和丸)가 미군기의 공습을 받아 침몰, 민간인 수백 명이 수장 당하는 대형 해상참사 사건이 발생했다.¹⁵⁾ 또 7월에 미군기가 한림항 군기고를 공격하는 바람에 그 속에 쌓여있던 폭탄이 폭발, 인근의 민간인들이 큰 희생을 치렀는데, 이 공습으로 “민가 파손 400호, 사망자 30여 명, 부상자 200여 명을 냈다”는 기록도 있다.¹⁶⁾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에 미군 B29기에 의해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소련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8월 8일 이 전쟁 막바지에 참전했다. 다시 며칠 뒤인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같이 종전이 앞당겨질 줄은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다.

일본군 측의 자료들을 보면 일본은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시점을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보고 있었다. 일본인이 쓴 『한국전 비사』에는 “오키나와의 미 제6군은 11월 1일로 예정되었던 남부 규슈에 대한 상륙작전을 한창 준비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

이 작전 일정대로 전쟁이 계속되었다면 제주도에 대한 미군의 공습은 1945년 9~10월경 집중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었다. 일본군 측에서 예상했던 미군의 상륙 예상병력은 2~5개 사단이었다. 그것은 제주도가 ‘제2의 오키나와 섬’으로 변할 수 있는 기로에 섰음을 의미한다. 오키나와에서는 미·일 격전 속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20만 명이 죽어 갔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제주도민들에게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단순

14) 濟州道, 『濟州道誌』 第2卷, 1993, 57쪽.

15) 희생자 숫자에 대해 일본 측 자료인 朝鮮軍殘務整理部の 『朝鮮に於ける戰爭準備』(『朝鮮軍概要史』, 189쪽)에는 500명으로, 金奉鉉의 『濟州島 血の歴史』(國書刊行會, 1977, 21쪽)에는 280명으로, 夫萬根의 『光復 濟州30年』(文潮社, 1975, 19쪽)에는 257명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16) 濟州道, 『濟州道誌』(上), 1982, 432쪽.

17) 佐佐木春隆, 『韓國戰 秘史: 建國과 試鍊』, 姜昶求 譯, 병학사, 1977, 17쪽.

한 의미를 뛰어넘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했다. 그리고 이때 구축됐던 한라산의 산악진지와 일본군의 무기 등이 그로부터 3년 뒤에 무장유격대에 의해 일부 사용됐다는 점에서 4·3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2) 일본군 항복과 송환

① 일본군 항복과 무장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라 1945년 9월 2일 항복 조인식이 일본 도쿄(東京)항에 정박한 미 군함 미조리(Missouri)함 함상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와 미국, 중국, 소련, 영국 등 9개국 연합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 대표와 군 대표들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 문제는 사정이 달랐다.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 이외에도 소련이 뒤늦게 참전, 전후의 한반도 문제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에 소련의 참전이 거론된 것은 1945년 2월의 얄타(Yalta) 회담에서였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서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Stalin)에게 참전을 요청했다. 그 후 소련이 참전하지 않자 그 해 7월의 포츠담(Potsdam) 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소련에 만주와 한반도로의 진격을 요청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이어 사흘 뒤에는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원폭의 위력은 대단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참전 없이도 전쟁을 곧 승리로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소련은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한반도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에는 소련 군대는 이미 청진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미국의 군사지도자들은 그 무렵 소련의 단독적 군사행동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를 경계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특히 원폭의 위력과 소련의 참전으로 태평양전쟁은 예상을 뒤엎고 신속하게 끝날 조짐이었다. 8월 10일부터 워싱턴의 미 국무성·육군성·해군성 3성 조정위원회(SWNCC :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는 전후의 조치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 야간회의에서 일본 패망 후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과 소련의 점령지구를 어디로 나누느냐 하는 과제는 본스틸

(Bonesteel)과 러스크(Rusk) 두 젊은 대령에게 맡겨졌다. 두 장교는 철야를 하며 벽걸이용 극동지도를 펴놓고 검토를 하다가 서울 북방으로 통과하는 선, 즉 38선을 점령 분할선으로 정하였다.¹⁸⁾

38선 분할 획정안은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소련 측에 통보했는데, 소련은 이 제안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결국 미군은 수도 서울과 인구의 3분의 2, 그리고 경공업과 농업이 발달한 38선 이남지역에 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38선 분할은 일본군의 항복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 후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격화되고 남·북한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면서 군사적 분계선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 분단선으로 고착, 한민족에게 많은 아픔과 불행을 안겨줬다.

미국 군대가 한국에 진주한 것은 종전 25일 만인 1945년 9월 8일이었다.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이끄는 미 24군단은 9월 5일 오키나와를 출발, 8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선발부대인 미 7사단은 9월 9일 서울에 입성했으며, 이날 하지 중장은 조선총독부에서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조선총독으로부터 항복문서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일제 36년’은 막을 내리고 미군정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소련군 제25군은 8월 26일 평양에 입성, 38도선 이북의 북한 지역을 점령하였다.

미군은 제주도 주둔 일본군 제58군에 대해서는 조선 본토의 제17방면군과는 별개로 취급했다. 1945년 9월 13일자 미 24군단 정보보고서는 ‘38선 이남의 일본군 현황’에서 일본군 총수를 179,72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제주도의 일본군 병력을 다른 남한지역의 일본군과 별도로 집계하고 있는 게 특이하다. 즉 서울(57,110명), 광주(34,710명), 대구(13,480명), 부산(15,420명), 여수(680명) 등을 합쳐 ‘남한 총계 121,400명’으로 해놓고, ‘제주도 58,320명’은 따로 기술하고 있다.¹⁹⁾

『주한미군사』에는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란 소제목 아래 6쪽에 걸쳐 이 과정을 소상히 다루고 있다. 이 기록에는 “제주 주둔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위해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웠다”고 기록할 정도로 미군 수뇌부가 이 문제에 신중을 기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서울에 입성한 하지 장군은 일본군 제17방면군

18)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s of Korea*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9), pp.25~26.

1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 September 13, 1945.

사령관 고즈키(上月食夫)와 사전 협의를 마친 뒤 맥아더 최고사령관에게 “미군 배치가 끝나는 대로 제주도에 무장해제팀과 조사팀을 공수하겠다”고 보고했다.²⁰⁾

마침내 항복접수팀이 9월 28일 김포공항을 출발하기로 결정됐다. 항복접수팀은 최종적으로 지휘관인 제184보병연대 그린(Roy A. Green) 대령과 38명의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됐다. 『주한미군사』에는 항복 접수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항복접수팀은 9월 28일 아침 일찍 김포비행장에 집결했다. 그린 대령은 대원들에게 항복 접수 과정에서 기념품이나 선물을 받지 않도록 주지시켰다. 그들은 두 대의 C-47기에 탑승, 오전 7시에 이륙해 오전 9시께 제주읍에서 서쪽으로 1.5마일 떨어진 제주 서비행장 상공에 다다랐다. 그들은 미국 비행기가 전에 착륙해 본 적이 없는 비행장 주위를 선회하며 간밤에 폭우가 내리긴 했지만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비행장에는 일본군 참모장교 7명이 나와 이들을 영접했다. 약간의 혼란이 있은 뒤, 접수팀은 4대의 낡은 세단을 타고 조인식이 열리기로 된 읍내의 남쪽 끝에 있는 학교(제주농업학교) 건물로 갔다. (중략)

10시 45분 일본군 서명자들이 보좌관 3명을 대동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도야마 장군(중장·제58군 사령관)은 일장기를 제외하고 훈장 계급장 등 모든 제복 장식품을 떼어냈다. 일개 대령에게 항복해야 하는 난처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든 것처럼 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미국인들은 그를 보자 안도했다. 그린 대령과 월튼 중령은 방 끝의 탁자에 앉아 있었으나 일어서지 않았다. 그들 뒤에는 일부 참모장교와 통역사 1명이 서 있었고, 제184보병연대의 기를 가진 호위병이 한 쪽에 약간 비껴 서 있었다. 그린 대령이 자신을 소개하는 동안 나머지 미국인 참관자들은 차려 자세로 서있는 일본군들의 뒤에 서 있었다. 그린 대령은 항복문서를 받도록 그를 임명한 하지 장군의 명령서를 읽고 나서, 영어와 일본어로 된 각 3부씩의 서명할 문서를 가리켰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본군 대표들에게 자리에 앉도록 말했다.

문서 6부가 도야마 장군에게 건네졌고, 그 다음에 하마다(중좌·제주주둔 해군 사령관) 사령관에게, 마지막으로 센다(제주도사) 민정관에게 건네졌다. 서명에는 6분이 소요됐다. 그들이 서명한 후, 문서는 그린 대령에게 건네졌다. 그는 3개의 펜으로 서명했다. 월튼 중령이 마지막으로 서명했다. 미국인들이 모든 문서에 서명하는 데 단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명하는 동안 생긴 유일한 소음은 많은 카메라의 촬영 소리뿐이었다. 오전 10시 59분 그린 대령은 “항복 절차는 끝났다”고 선언했다.²¹⁾

20) USAFIK,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이후 HUSAFIK으로 약함), part I, chapter VII, (Tokyo and Seoul, 1947·1948), p.526.

21) Ibid., pp.527~528.

결국 제주주둔 일본군 6만 병력의 항복절차가 단 14분만에 끝났다. 미군은 제주도 주둔 제58군을 별개의 지휘계통으로 판단, 별도의 항복문서를 받아냈던 것이다.²²⁾ 항복조인식이 끝난 후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한 시간 가량 협의가 있었다. 항복접수팀 그린 대령 일행은 낮 12시께 곧바로 상경했다. 다만 미 24군단 정보참모부 해리슨(Harrison) 대령 등 몇 명의 장교들이 정보 수집차 제주에 남았다.²³⁾

9월 28일 항복접수팀과는 별개로 무장해제팀이 제주에 들어왔다. 미 24군단 작전참모부 보고서에는 “제7보병사단 요원들로 구성된 무장해제팀이 구축함 1척의 호위를 받으며 2척의 LSM편으로 한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제주도에 오전 8시에 도착하였다. 제24군단으로부터 파견된 항복접수팀은 2대의 C-47편으로 오전 9시에 제주에 도착하였다”²⁴⁾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무장해제팀은 항복접수팀이 제주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제주항에 상륙한 것이다. 무장해제팀은 군단 병기장교 파우웰(G. F. Powell) 대령의 인솔아래 9월 26일 인천항을 출항, 이날 제주에 도착한 것이다.

무장해제팀은 완전 무장한 군복차림으로 그들이 갖고 온 군용트럭을 타고 제주 시가지를 통과, 제주비행장에 주둔했다. 『주한미군사』에 “오키나와와 거의 같은 크기로 중무장된 요새나 다름없는 제주도의 일본군 무장해제는 중대한 문제였다”²⁵⁾고 표현할 정도로 미군으로서는 무장해제가 신경 쓰이는 문제였다. 무장해제팀은 그때까지도 처리되지 않았던 무기와 폭발물을 바다에 버리고 비행기들을 폭파했다.

② 일본군 송환

1945년 10월 초까지도 제주 섬에는 일본군 약 5만 명 가량이 남아 있었다. 미군이 1945년 10월 1일 제58군사령부를 감찰한 자료에 의하면 “제58군의 총병력은 49,619명이며, 그 외에 한국출신 병사와 노무자는 17,161명이었는데 이들은 동원 해제되어 9월 1일 이전에 고향에 돌아갔다”²⁶⁾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45년 10월 7일자 미 24군단 주간정보요약서는 동원 해제된 17,161명의 신원에 대해 한국

22) 林鍾國, 앞의 책, 158쪽.

23) USAFIK, *HUSAFIK*, part I, chapter VII, pp.529~530.

24) Hq. USAFIK, G-3 Operations Report, No. 25, September 28, 1945.

25) USAFIK, *HUSAFIK*, part I, chapter VII, p.531.

2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6, October 5, 1945.

인 이외에도 한국에 집이 있는 일본군 장병 5,277명이 포함되었음을 밝히고 있다.²⁷⁾

남한에 있던 일본군의 송환은 1945년 9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대전 이남은 부산항, 대전 이북은 인천항을 이용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일본군 송환작업은 그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10월 23일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되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지 68일만이였다. 송환업무를 책임질 부대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일본군 송환업무를 전담할 임무를 띠고 10월 22일 제주에 파견된 미군팀은 제749야전포병대대였다. 이 부대는 인천항을 통한 일본군 후송업무를 마치고 제주에 배치되었다.²⁸⁾

제주에서 승선한 일본군인들은 규슈 사세보(佐世保)항으로 옮겨졌다.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실시된 일본군 송환작업에 동원된 미 LST함은 30여 척에 이르렀다. 군인뿐만 아니라 제주에 살았던 일본민간인 860명도 송환되었다. 1945년 12월 초에 미 24군단 작전참모부가 집계한 항구별 일본군 송환숫자는 부산(382,499명)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제주항(50,844명)이었으며, 그 뒤를 인천(20,233명) 진해(17,409명)순으로 이어졌다.²⁹⁾

당초 미군 측에서 염려했던 일본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다. 다만 “제주도에서도 약간 명의 분사(焚死)가 있었다”³⁰⁾고 한다. 또 미군 측 자료에 의하면 1945년 9월 21일 오후 2시 모슬포항에서 폭발물을 실은 배들이 모종의 불에 점화되어 몇 번의 심한 폭발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4~5척의 배가 침몰했고 약 73명이 부상당했다는 기록이 있다.³¹⁾

그러나 제주도민에 대한 일본군의 행패는 여전했다. 그들은 미군 측으로부터 허용 받은 무기를 들고 곧잘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고, 모리배들과 전쟁물자에 대한 뒷거래를 하였다. 심지어 엄청난 양의 군량미를 식량난에 허덕이는 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는커녕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는 작태를 저질렀다. 미군 보고서에도 “10월 1일 현재 제58군은 4개월 분량의 군량미를 보유하고 있다. 이 군량미는 주로 쌀인데 도민들이 50일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³²⁾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군은

2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4, October 9, 1945.

28) USAFIK, *HUSAFIK*, part I, chapter VII, pp.536~545.

29) Hq. USAFIK, G-3 Operations Report, No. 94, December 6, 1945.

30) 林鍾國, 앞의 책, 165쪽.

3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0, September 29, 1945.

3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6, October 5, 1945.

철수 직전에 제주비행장에 산더미처럼 비축했던 군량미를 모두 불태웠다.

3) 귀환인구 급증

종전 후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가동 현상을 빚었다. 6만여 명의 일본군이 철수하는 가하면, 일본 등지로 나가 있던 제주인 6만 명³³⁾ 가량이 귀환했다. 1945년에는 제주 섬이 요새화되면서 전쟁을 피해 본토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았다. 또 “전쟁 기간에 제주도에서 대략 3만 명의 젊은이들이 공장 노동자나 전쟁 노무자로 일본에 보내졌다”³⁴⁾는 내용이 미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징병·징용으로 제주를 떠난 청년들도 많았다.

이로 인해 1945년 8·15 당시 제주도 인구는 일본군을 제외하면 22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것이 1년 사이에 28만 명을 넘게 되었다. 따라서 해방 전후의 인구 변동률은 30%선에 육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도 대거 귀환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의 양적, 질적 팽창은 해방 후 정치적 긴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제주 전통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제주의 인구 변화는 본토와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과의 유별한 관계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제는 1918년에 제주~오사카 사이에 정기여객선을 띄웠다. 일본정부의 보조에 의한 명령항로로 개설된 이 뱃길에 첫 취항한 여객선은 함경환(咸鏡丸·500t)이었다.

1924년에는 강원환(江原丸·720t), 복견환(伏見丸·700t)이 운항했으며, 1930년대에는 군대환(君代丸·930t), 경성환(京城丸·1,200t), 복목환(伏木丸·1,600t) 등이 대체 운항했다.³⁵⁾

33) 제주도 귀환인구에 대해 『東亞日報』 1946년 12월 21일자에는 ‘5만~6만 명’, 『濟州新報』 1947년 2월 10일자에는 ‘8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3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6, October 5, 1945.

35) 濟州道, 『濟州道誌』(上), 1982, 1114쪽.

□ 제주도의 인구 변동

연도	조선인	일본인	총계	연도	조선인	일본인	총계
1916	202,072	840	202,926	1933	188,509	1,355	189,940
1917	204,415	992	205,431	1934	188,410	1,434	189,932
1918	203,409	811	204,327	1935	197,543	1,425	199,063
1919	201,006	681	201,713	1936	195,278	1,406	196,774
1920	200,584	724	201,326	1937	199,742	1,486	201,277
1921	199,677	752	200,455	1938	202,241	1,355	203,651
1922	197,999	692	198,719	1939	204,650	1,354	206,052
1923	209,060	869	209,925	1940	207,514	1,355	208,915
1924	214,584	792	215,426	1941	216,081	1,402	217,530
1925	204,314	1,105	205,478	1942	222,785	1,375	224,208
1926	209,841	1,083	211,010	1943			223,200
1927	210,508	1,066	211,645	1944			219,548
1928	204,420	1,116	205,609	1945			
1929	194,017	1,125	195,218	1946			276,148
1930	198,304	1,185	199,577	1947			275,899
1931	193,610	1,261	194,714	1948			281,000
1932	199,269	1,313	200,642	1949			254,589

□ 제주인의 日本出稼 변동표

연도	渡航者			歸還者	殘溜者 누계
	총수	남	여		
1926	15,862	11,742	4,120	13,500	28,144
1927	19,224	14,479	4,745	16,863	30,305
1928	16,762	11,745	5,017	14,703	23,564
1929	20,418	15,519	4,903	17,660	35,322
1930	17,890	12,029	5,861	21,416	31,786
1931	18,922	11,635	7,287	17,685	33,023
1932	21,409	11,695	9,719	18,307	36,125
1933	29,208	15,723	13,485	18,062	47,271
1934	16,904	9,060	7,844	14,130	50,045
1935	9,484	4,327	5,157	11,161	48,368
1936	9,190	4,739	4,451	11,095	46,463
1937	7,484	3,917	3,567	8,004	45,943
1938	8,979	4,780	4,199	8,972	45,950

일제는 1910년대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본래 열악한 제주의 농촌사회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여기에다 가중된 조세부담, 자연경제구조의 붕괴, 일본인에 의한 산업 통제 등으로 제주사회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 당시 일본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중공업을 육성하다보니 노동 일손이 절대 부족했다. 그런 입장의 일본인의 눈에는 가난한 제주 섬이 조선 전체에서 저비용 노동인력을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동력 시장’으로 비춰졌다.

제주~오사카 정기항로는 바로 이런 노동인력을 유입하는 통로로 이용되었다. 쌀 한 가마에 5원씩 하던 때인 1930년대 군대환의 3등실 배삯은 그 절반인 2원 50전이었다. 제주항 외항에 정박해 있다가 출항할 때에는 애월·한림·고산·모슬포·서귀포·표선·성산포·김녕·조천 등 섬을 한 바퀴 돌면서 포구마다 종선을 대어 승객을 실어 날랐다. 오사카까지에는 꼬박 이틀이 걸렸지만 당시 제주인들은 본토의 부산이나 목포보다 일본과의 왕래가 훨씬 빈번했다.³⁶⁾

1924년 오사카 직업보도회가 오사카에 거주하던 조선인의 출신지별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조선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61%인 609명이 제주도 출신으로 나타났다.³⁷⁾

1930년대 중반에는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인 5만 명이 일본에 머물고 있었다.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두 명 중에 한 명 꼴로 진출했다는 뜻이다. 출가자 가운데는 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 출가노동자들은 공장이 밀집된 오사카에 집중되었다. 1935년판 『제주도세요람』에는 “1934년의 경우 총 50,645명의 재일 제주도민 중 72%인 36,371명이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었다”³⁸⁾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비록 낮은 임금을 받았지만, 이를 절약해 고향에 송금함으로써 제주도의 경제에 보탬을 주었다. 또한 일본 노동운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는가 하면, 자녀들이나 동생 등 부양가족을 일본으로 데려와 교육과 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자들을 많이 배출시켰다.

일본에 진출했던 젊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 왔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농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형적인 노동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행동양식이나 의식에서 상

36) 任暢準, 『濟州開發史』, 『濟州新聞』, 1983년 4월 5일.

37) 김찬정, 『이방인 君代丸 타고』, 岩波書店, 1985, 94쪽.

38)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5, 20~21쪽.

당히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일본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민족적 차별을 경험했던 자들로 일정하게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고향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치활동과 야학,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해방된 조국에는 이들을 수용할 만한 공장이나 일터가 없었다. 실업률도 증가했다. 이들은 곧 심각한 경제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특히 8·15 직후에 귀환자의 반입물품 제한과 일본과의 물자교역 불법화는 그동안 일본 오사카 중심의 노동시장 생활권을 유지해왔던 출가노동자들의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도쿄에 있던 맥아더 사령부는 종전 직후 귀환조선인의 휴대물품과 금액을 철저히 제한했다. 매사추세츠대 빅스 교수가 쓴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는 “연합군 사령부는 1945년 11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앞으로 자유롭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소지품 외에 천 엔(담배 20갑에 해당되는 돈)만 소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광산과 공장에서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으로 벌어들인 조선인 노동자의 다른 모든 재산은 그냥 남겨 놓아야만 했다”³⁹⁾고 기술되어 있다.

8·15 이전 공산품의 40% 가량을 일본에서 구입해오던 제주도 사회는 일본과의 정기여객선 뱃길이 끊기고 반입물품 제한과 대일 교역마저 통제를 받게 되자 심한 생필품의 부족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되자 제주 도내 곳곳에서 귀환자도 실어 나르고 물품도 반입하기 위해 20~50t 급의 어선들이 현해탄을 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물품반입 행위를 불법이라 하여 경찰에서 단속하면서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자유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물자는 간상배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일본을 위시한 각지에서 돌아오는 전재(戰災)동포의 물건이 태반이라 한다. 수십 년 간 고혈을 기울여 저축한 재산을 그대로 버릴 수 없는 재일동포들은 할 일 없이 물건을 사가지고 외국관헌의 눈을 속여가며 본국을 찾아 우선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이라 한다. 현재 법령이 그들의 재산반입을 아직 인정치 않는 이때, 그들이 이와 같은 밀수입을 하게 됨을 막을 도리가 없는 일이다. 당국에서 이와 같은 재일 귀환동포의 눈물나는 노력까지 분별 없이 방지한다면 결국은 외국을 이롭게 하는 결과밖에 안될 것으로 민중들은 경찰당국의 현명한 조치를 갈망하고 있다고 한다.⁴⁰⁾

39) 허버트 P. 빅스, 「지역적 통합: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한국현대사(1945~1975)』, 사계절, 1984, 155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 문제는 모리배들이 끼어 들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모리배들은 미군정 관리, 경찰 간부 등과 결탁, 밀수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압수된 물품을 빼내어 잇속을 챙겼다. 급기야 이 문제는 지방언론과 중앙언론에서 ‘모리배 천하인가?’⁴¹⁾ ‘모리천하 제주도’⁴²⁾란 제목아래 대서특필될 정도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나. 인민위원회 태동

1) 제주 인민위 특성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이 섬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당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정부 행세를 한 유일한 조직체였다”⁴³⁾ 이 글은 1945년 전남도청에 근무했던 미군정 요원 그랜트 미드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주한미군정』에 기록되어 있다.

1975년 하버드대학에서 제주도 4·3사건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존 메릴의 논문 『제주도반란』에는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미군 점령 첫해에는 이 섬에 상주하던 미군정 중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미군정 중대는 이 섬을 관할하는 데 인민위원회를 이용했으며, 또한 이 단체에 ‘전심전력의 지원(wholehearted support)’도 아끼지 않았다. 이 놀라운 협력관계는 이 섬의 권력판도에 대한 군정중대의 현실주의적 인식이 바탕이 되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⁴⁴⁾고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에는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초기부터 강한 독자 의지를 밝혀나가 전남 위원회에 종속되는 것을 싫어했다”면서 “군정당국과 인민위원회 사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가 행정구역상 도(道)로 승격(1946년 8월)하면서부터 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1946년 12월 미군정청 여론국에서 작성한 보고서 초고에도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수적으로 대단히 강했으며 온건한 정책을 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런 온건한

40) 『自由新聞』, 1946년 12월 19일.

41) 『濟州新報』, 1947년 1월 28일.

42) 『東亞日報』, 1947년 2월 5일.

43)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King's Crown Press, Columbia Univ., 1951), p.185.

44)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 1980, pp.151~152.

정책들이 무척 매력적이었으므로 우파에서는 인민위원회 세력이 더욱 강대해질 것을 두려워했다”⁴⁵⁾고 표현하고 있다.

미국 쪽의 자료들은 한결같이 해방 직후 제주도의 정치적·사회적 헤게모니를 인민위원회에서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앙통제력이 강하게 미쳤던 서울 등지와 같이 1945년 말부터 이미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자취를 감추었던 육지부와의 상황과 비교할 때 이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비단 미국 측 자료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한바 있다. 1946년 12월 21일자 『동아일보』의 ‘제주도 시찰기’에는 “제주의 인민위원회는 건준(建準) 이래 양심적인 반일제 투쟁의 선봉이었던 지도층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분립된 한독(韓獨), 독촉국민회(獨促國民會) 등의 우익단체와도 격렬한 대립이 없이 무난히 자주적으로 도내를 지도하고 있다”⁴⁶⁾고 보도했다.

이상의 분석 글을 보면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집약하면 그 특성을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자치기구였다는 점, 둘째는 항일투쟁 경험자들이 주도했다는 점, 셋째는 온건한 정책을 추구했다는 점, 넷째는 미군정 중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다섯째는 존속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는 점, 여섯째는 중앙이나 전남 인민위 조직과도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 독자성이 강했다는 점 등이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지방위원회의 성장과 지속을 위한 환경적·생태적 요인 7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 ① 1930년대나 1940년 초반에는 인구가 감소했다가 해방 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
- ② 소작농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으며 지주의 힘이 무너졌거나 약했던 곳으로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견제수단을 갖고 있던 곳
- ③ 일제통치와 미군통치 사이에 공백기간이 길었던 곳
- ④ 통신과 운송시설이 비교적 열악하거나 인민위원회가 그러한 시설을 장악한 곳
- ⑤ 농민의 급진적 역사가 있는 곳

45) 미군정청 여론국, Raw Report, 1946. 12. 9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432쪽에서 재인용).

46) 盧鎰煥, 『寶庫 濟州島視察記』, 『東亞日報』, 1946년 12월 21일.

- ⑥ 비교적 분화된 직업구조
- ⑦ 상당한 기간 동안 우파와 좌파의 어느 쪽도 완전 지배를 못했거나, 아니면 지배적인 좌파가 온건한 정책을 취한 정치적 복합성이 존재한 곳⁴⁷⁾

커밍스는 이런 조건을 갖춘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임을 지적했다. 이 분석들에 의하여 제주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① 제주도는 1930년대에 인구유출이 심했고, 8·15 직후에 6만 명 가량의 유입인구 증가가 있었으며, ② 소작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0% 미만인 반면 지주계급은 거의 없었고, ③ 사실상의 군정업무를 맡은 미 59군정중대가 1945년 11월 9일 상륙함으로써 전국에서 행정 공백기간이 가장 길었다. 또 ④ 제주도는 서울과 가장 먼 거리에 있으면서 여객선 등의 교통수단이 열악했고, ⑤ 일제 강점기에 대대적인 해녀봉기가 있을 정도로 급진적인 민중운동 역사가 있었으며, ⑥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로 전통적인 직업구조의 변화가 컸고, ⑦ 상당기간 인민위원회가 온건한 정책을 지향했다는 점이 특이하다.⁴⁸⁾

그랜트 미드도 미군정 부대와 인민위원회 사이에 우호관계가 지속됐던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이었음을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미군정의 지방조직들이 한동안 인민위원회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드는 그의 저서에서 “서울에서 그랬던 것과 같은 인공의 급속한 해체가 지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거기에는 군정요원의 부족, 민정부대가 행정권을 양도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 서울에 있는 강력한 보수적 과두체제와 지방의 지배적인 진보적·농민적 이해와의 대비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⁴⁹⁾

2) 인민위 조직과 활동

인민위원회의 태생은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으로 약칭)에서 비롯되고 있다. 건준은 해방직후부터 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8월 16일 아침 서울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명의로 민심안정을 도모하는 전단이 뿌려졌다.⁵⁰⁾ 이날

47)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435쪽.

48)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5, 제주도연구회, 1988, 211~215쪽.

49)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61.

50) 國史編纂委員會, 『資料 大韓民國史 I』(1968), 13쪽.

정오 휘문중학교에서의 여운형의 연설을 통한 건준 발족과 지방조직 결성 호소연설은 일반국민들에게 신정부 수립에 대한 정책 발표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건준은 치안을 확보하고 현존 시설 등을 보존, 관리하는 임무도 가졌으나 근본적으로는 독립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도적 임무를 수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런 목표는 건국에 대한 일반국민의 열망에 바로 접목되었다. 종전 소식을 접하게 된 지방의 활동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와 닿는 문제는 해방된 조국에서 새로운 국가의 수립을 어떻게 이루어 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공통적이고 현실적인 요청에 고리를 맺게 한 것이 바로 중앙의 건준 조직이었다.

건준 지방조직은 중앙 통제에 의한 일률적인 것이 아니었다. 군·읍·면 등에 생기기 시작한 이들 조직들은 그 명칭도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자치위원회, 치안유지위원회 등 여러 가지였다. 이런 단체들은 삼시간에 전국으로 번졌고, 종전 보름만인 8월 말에는 건준의 지부 성격을 띤 단체가 145개소에 결성되었다.⁵¹⁾

제주도(濟州島) 건준은 1945년 9월 10일 결성되었다. 각 읍·면 대표 100명 가까이 제주농업학교 강당에 모여 도단위 건준 조직을 출범시킨 것이었다. 이날 임원진 구성도 있었는데, 위원장에 오대진(吳大進·대정면), 부위원장에 최남식(崔南植·제주읍), 총무부장에 김정노(金正魯·제주읍), 치안부장에 김한정(金漢貞·중문면), 산업부장에 김용해(金容海·애월면)가 선출되었다.

또 집행위원으로 김시택(金時澤·조천면) 김필원(金弼遠·조천면) 김임길(金壬吉·대정면) 이원옥(李元玉·대정면) 조몽구(趙夢九·표선면) 현호경(玄好景·성산면) 문도배(文道培·구좌면) 등 10여 명이 선임되었다.⁵²⁾ 이들은 주로 40~50대의 장년층으로 항일운동 경험자들이 많았다.

전국적으로 건준의 지도자들은 주민의 신망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론에 의해 추대되었다. 이제까지 권세를 휘두르고 있던 일본인이나 대일 협력자가 자취를 감추자, 주민들은 그에 대신하여 자신들의 지방지도자를 특별히 형식적인 선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용이하게 선출할 수가 있었다. 거기에는 암묵의 기준이 있었다. 그것은 독립의 의지와 저항적 자세를 관철한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지도자로 합당하다는 것이었다.⁵³⁾

51) 民主主義民族戰線, 『朝鮮解放 1年史』, 文友印書館, 1946, 81쪽.

52) 濟州道, 『濟州道誌』 第2卷, 1993, 49쪽.

53) 崔相龍, 『美軍政과 韓國民族主義』, 나남, 1988, 77쪽.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주도 건준 결성모임에 참석했던 한 증언자는 “건준 면대표 선출을 마을 대표들이 모여 투표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추대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준 결성회의에서는 주로 당면한 치안문제, 물가대책 등이 논의됐으며 건준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 “과거 악질적인 친일분자는 어쩔 수 없지만, 비록 공직에 몸담았다 할지라도 안 그런 사람은 건국사업에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⁵⁴⁾

건준의 지방조직이 ‘인민위원회’로 불리게 된 것은 중앙의 건준이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하 ‘인공’으로 약칭) 창건을 선언한 이후부터였다. 인공이 과도정부의 성격을 추구했다면, 인민위원회는 과도적 지방행정기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공이 선언됐다고 즉각적으로 지방조직이 인민위원회로 변신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지방에 따라, 또 시기별로 각기 다르다.

이때에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대립하는 일도 별로 없었다. 건준 조직에는 소문난 친일세력만 배제되었을 뿐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참여하는 편이었다. 제주도 건준 조직은 1945년 9월 22일 행정조직을 표방한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리 단위까지 파급될 정도로 가장 광범위한 조직력을 갖고 있었다.⁵⁵⁾

초기 읍·면의 건준이나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은 대체로 이념과 무관하게 지역 원로들이 추대되었다. 읍·면 위원장은 제주읍 현경호(玄景昊), 애월면 김용해(金容海), 한림면 김현국(金顯國), 대정면 우영하(禹寧夏), 안덕면 김봉규(金奉奎), 중문면 강계일(康桂一), 서귀면 오용국(吳龍國), 남원면 현중홍(玄仲弘), 표선면 조범구(趙範九), 성산면 현여방(玄麗芳), 구좌면 문도배(文道培), 조천면 김시범(金時範)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대정의 우영하, 안덕의 김봉규, 남원의 현중홍, 표선의 조범구, 조천의 김시범 등 5명은 미군정 하에서 초대 면장을 지냈으며, 김봉규, 현중홍은 ‘4·3’발발 이후인 1948년 5월까지 면장 직에 있었다.⁵⁶⁾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초기 활동은 행정기능을 발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치안활동에 주력했다. 이것은 인민위원회가 본래 행정기구를 표방했지만, 미군정에서 이를 인정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을 인수하지는 못했지만 앞에서 보듯 실질

54) 李運芳(92세·대정읍 하모리, 당시 대정면 건준 대표, 2001. 11. 9. 채록) 증언.

55) 濟州道, 앞의 책, 49쪽.

56)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 전예원, 1994, 69~70쪽.

적인 내용 면에서는 읍·면사무소의 인적 구성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여기에는 제주도 군정업무를 맡은 59군정중대의 묵인 또는 협력이 있었다.

제주도 군정당국은 1945년 말 인민위원회 치안대 간부들을 소집해 치안유지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인민위원회 산하에는 청년동맹·부녀회·소비조합 등이 있었는데, 치안대의 활동은 주로 청년동맹 제주도위원회 간부들이 맡아보았다. 당시 한림면 치안대 간부는 이런 증언을 했다.

미군정당국과 치안대가 부딪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군이 각 지방청년 지도자들을 모이라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국민학교에 집합했는데 나는 한림면 청년동맹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주도 군정장관) 스타우트 소령이 연설했는데, '일본군 물자는 결국은 당신네 것이니 물자를 잘 보관하라, 훔쳐가거나 불지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소란·폭행행위가 없도록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946년까지도) 박경훈 도지사의 공문이 올 때 치안을 담당하는 한림면 청년동맹 위원장 아무개, 그 다음에 지서주임 순으로 내려 왔습니다.⁵⁷⁾

1946년 초에 구좌면 세화지서 주임으로 발령받은 한 경찰관의 회고담도 당시의 세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발령통지서를 받을 때 경찰서장이 소개장을 써 줬다고 했다. 그것은 구좌면 인민위원장 문도배에게 보내는 것으로, 지서주임을 보내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⁵⁸⁾

건준이나 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주로 적산(敵産) 가옥이나 향사 등을 사용했으며, 애월면과 구좌면 등지에서는 면사무소에 나란히 간판이 걸리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면사무소에서는 중요한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 사전에 인민위원회 간부들과 협의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 인민위원회에서는 치안활동 이외에도 농사법에 대한 교육, 학습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했고, 마을마다 야학을 통해 문맹퇴치 운동도 전개하였다. 또한 대정중학원, 조천중학원 등 학교설립 사업도 추진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온건하면서도 강력했고, 독자성을 띠었다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출한 사례가 1946년 '대구 10·1사건'의 불참과 '과도입법의원 선거'의 참여이다. 이 같은 행동은 그 무렵 전국적인 좌파의 활동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이

57) 高景洽(88세, 한림읍 한림리, 당시 한림면청년동맹 위원장, 2001. 12. 14. 채록) 증언.

58) 鄭成淳(당시 細花지서 주임)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71쪽에서 재인용).

었다.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시위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함으로써 도화선이 된 좌익계의 투쟁은 남한 전역의 73개 시·군에 파급되어 연인원 110만 명(300만 명이 참가했다는 주장도 있음)이 참가하는 8·15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중투쟁이었다.⁵⁹⁾ 이 사태로 민간인과 경찰관들의 희생이 컸다.⁶⁰⁾

그런데 전국적으로 엄청난 과장이 있었던 이 사건에 인민위원회 세력이 강했던 제주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중앙 일간지에는 이 무렵 제주도에서 10·1 대구사건의 여파로 10월 9일 소동이 일어나 전남 본토에서 미군부대가 파견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으나,⁶¹⁾ 그것은 와전된 것이었다. 이는 제주도 미군정청 공보관 케리 대위의 1947년 신년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그는“(작년을 회고컨대) 육지 각 지방에 소요사건이 발발해서 여러분의 동포 가운데서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내에 한하여서는 여러분이 시국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함으로써 여사(如斯)한 불행한 소요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⁶²⁾고 밝히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1946년 10월 좌파계열이 불참한 과도입법의원 선거에 참여, 인민위원회 간부를 당선시킴으로써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미군정은 군정 실시 1년 만에 온건 우파와 중도파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기관의 설치를 추진했는데, 그것이 이른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었다. 그러나 좌파진영에서는 입법의원을 뽑는 선거를 보이콧하였다. 그 절차가 일제시대의 중추원 참의 선출제도와 비슷하고, 자칫 남한의 단독정부 추진의 예고일 수 있다는 불신의 시각이 있었다.

1946년 10월 31일 전국적으로 민선 입법의원 선거가 끝났을 때 당선자들은 거의 우파 일색이었다. ‘입의(立議)선거에 우익이 승리’라는 제목으로 UP통신이 타전한 기사를 보면 당선자의 소속 정당·단체가 한국민주당 15명, 대한독립촉성회 14명, 무소속 12명, 한국독립당 2명, 인민위원회 2명으로 분류되었다.⁶³⁾ 이 통계에서 보듯 한민당과 독촉 중심의 당선자 가운데 좌파세력이라면 인민위원회 소속 2명뿐인데, 그 당선자들이 바로 제주도에서 배출되었다.

59) 朝鮮通信社, 『朝鮮年鑑-1948年版』, 1947, 258쪽.

60) 김삼웅, 『해방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 1996, 25쪽.

61) 『東亞日報』·『서울신문』·『漢城日報』·『獨立新報』, 1946년 10월 11일.

62) 『濟州新報』, 1947년 1월 1일.

63) 『漢城日報』, 1946년 11월 6일.

제주도에서 입법위원으로 선출된 문도배(文道培)는 구좌면 인민위원장, 김시탁(金時鐸)은 조천면 인민위원회 문예부장이었다.⁶⁴⁾ 문도배는 1930년대 해녀봉기 배후 인물로 3년의 옥살이를 했던 항일운동가이며 김시탁은 조천에서 의원을 경영하던 의사였다.

그런데 서울에 나타난 두 사람은 12월 12일 입법의원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민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의원 참가 거부 성명을 발표했다.⁶⁵⁾ 하지 장군은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 하지와 웨드마이어 장군의 대화 비망록에서 하지는 “제주도만이 좌익 입법위원을 선출했는데 그들 두 사람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실종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⁶⁶⁾

이 일련의 사건, 즉 대구사건의 불참과 입법의원 선거의 참여(비록 당선자가 되는데 사퇴했지만)는 당시 제주도 좌파운동 세력의 성격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그때까지도 인민위원회의 역량이 대중성을 띠고 지속한 한편 온건성과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군정과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협력관계도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첨예한 대립관계로 접어들게 된다.

다. 미군정과 도제 실시

1) 미군정 실시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가 자리잡았던 중앙청에서는 항복조인식에 이어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게양되는 의식이 있었다. 이로써 ‘일제 36년’은 막을 내리고 38선 이남 남한에서 미군정 시대가 시작되었다.

미군정 3년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본 통치 방침은 핵심적인 2개의 정책문서, 즉 ‘맥아더 포고’로 집약되어 있다. 9월 7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관의 자격으로 발표된 포고 제1·2호는 ‘조선인민에게 고함’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포고는 헌법이 없던 미군정 3년간 점령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규로 활용되었다. 이날 포고 제3호도 발

64) 『서울신문』, 1946년 11월 1일.

65) 『獨立新報』, 1946년 12월 15일.

66)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337~338쪽.

표됐으나, 그것은 통화(通貨)에 관한 것이었다.

포고 제1호에서는 38선 이남 지역에 군정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6조항의 점령조건을 발표했다. 그것은 ① 모든 행정권은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 ②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는 별명(別命)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 ③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등 엄단 ④ 주민의 소유권 존중 ⑤ 군정기간 중 영어가 공용어 등으로 요약되었다.⁶⁷⁾

포고 제2호는 범죄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미군 최고지휘관의 포고·명령·지령에 위반하는 자, 미국인 및 연합국 국민의 인명·소유권·안전을 해치는 자, 치안·질서를 교란하는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연합군에 적대행위로 나오는 자는 점령군 군율회의에 회부, 사형 또는 다른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⁸⁾ 미군정 하에서 4·3사건 연루자들을 처벌할 때 적용한 법규도 바로 이 ‘포고령 2호’이었다.

9월 12일 제7사단장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이 군정장관에 임명되면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이 가동되었다. 그러나 지방에는 군정요원들이 배치되지 않아서 지역별로 1~2개월 늦게 군정업무가 시작되었다. 당초 남한에는 7사단 이외에 40사단, 96사단이 진주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 남서부 지역에 배치하려던 제96사단이 중국 톈진(天津)지역 소요 진압차 중국으로 진출되는 바람에 차질을 빚었다. 96사단 대신 들어온 부대는 제6사단인데, 이 부대는 10월 중순부터 상륙하기 시작, 제주를 포함한 전남·북 지방에 배치되었다.

당시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전남에 속해 있었는데, 전남도지사는 10월 25일 린트너(Julius H. Lintner) 중령이 발령되었다.⁶⁹⁾ 그때야 일본인 도지사도 면직된 것이다. 『광주시사』에는 194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를 포함한 도내 일원에 정식으로 군정 실시 선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⁰⁾ 그러나 제주도의 군정은 11월 9일 제59군정중대가 상륙하면서 비로소 실시되었다. 8·15 이후 86일만의 일이었다. 그만큼 행정공백이 길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미군정의 한국정책은 혼선을 거듭하였다. 처음에는 조선총독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심지어 일본인 관리를 그대로 활용하려다가 반대여론에 부닥쳐 수정되기도

67) 『毎日新報』, 1945년 9월 9일.

68) 미군정 관보 제2호, 1945년 9월 7일.

69) USAFIK, *HUSAFIK*, part III, chapter III, "Cholla-Namdo."

70) 光州市, 『光復과 美軍政時代』(『光州市史 2』, 1976, 507쪽에 수록).

하였다.⁷¹⁾ 특히 중앙정책이 곧바로 지방군정에 시달되는 일이 드물었고, 따라서 이 지방과 저 지방의 정책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전남지역을 담당한 제101군정대 요원이었던 미드는 “도착지에 대한 어떠한 브리핑도 받지 못했으며 도착해서 해야 할 의무도 부여받지 못했었다. 장교들은 각자 카이로선언과 맥아더의 조선민에 밝힌 3가지 선언, 24군단과 7함대의 합동 참모회의에서 성급히 작성된 군정실시 비밀계획, 군정에 의해 인쇄된 열서너 가지의 법령, 일반규칙, 주의문 등등의 사본을 휴대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⁷²⁾

미드는 한국에서의 군정업무 수행에는 ① 부여된 상황에 대한 선례의 부족, ② 문제점에 관한 정보의 부재, ③ 통치자들의 경험부족 등 3가지 기본적 난제 이외에도, ④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결여와, ⑤ 서구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동양인에게 인식시킴에 있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⁷³⁾ 언어장벽은 심각해서 정책결정을 할 때 몇몇 통역관의 견해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무렵 미군의 지방진주는 보통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시찰단의 사전 파견, 다음에는 전술부대에 의한 점령, 마지막 단계가 군정요원의 파견과 군정 실시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미군진주는 앞서서도 살폈지만 일본군의 항복·무장해제·철수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 즉 9월 28일 그린 대령의 항복접수팀과 파우웰 대령의 무장해제팀의 상륙에 이어 10월 22일에는 제749야전포병대대가 제주에 진주, 일본군 송환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11월 9일 비로소 군정업무를 전담할 제59군정중대가 진주했으며, 11월 10일에는 전술부대로서 6사단 20연대에 배속된 제51야전포병대대 분견대가 파견되었다.

「제주도 제59군정중대 부대사」에는 59군정중대가 1945년 9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민정요원 보충대에서 편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중대는 9월 26일 미국을 출발, 10월 21일 인천항에 도착했으며 제주에는 11월 9일 상륙하였다. 제주 진주 시점의 병력은 장교 7명, 사병 40명 등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⁷⁴⁾ 중대 병력

71) 『毎日新報』, 1945년 9월 16일.

72)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67.

73) Ibid. p.5.

74) “Unit History,” January 23, 1946, Record Group(이하 RG로 약함) 407: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Entry 427: WW II Operations Reports, 1940-48, Central File, Box 2187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이하 NARA로 약함), Washington, D. C.

은 계속 늘어나 1947년 1월에는 장교 11명, 사병 63명 등 모두 74명으로 증원되었다.⁷⁵⁾ 이 군정중대의 지휘관은 스타우트(Thurman A. Stout) 소령이었다. 그는 제주도의 최고자리로서, 일본인이 맡았던 제주도사(島司) 자리에 올랐으며, 1946년 8월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될 때에는 도지사를 맡기도 하였다. 그 직책에 대해서 언론 등에서는 ‘제주도 군정장관’으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제주도 미군정본부는 일제시대의 제주도청(濟州島廳)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스타우트 소령 역시 일제시대 도사 사무실에서 집무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인, 한국인 공동 도지사제도가 도입되면서 1946년 2월 박경훈(朴景勳)이 한국인 제주도사로 부임하였다. 스타우트와 박경훈 도사는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한 사무실에 근무했다.⁷⁶⁾ 광주에서도 미국인 도지사와 한국인 도지사가 한방에 근무했다는 기록⁷⁷⁾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같은 근무형태는 당시 다른 지역에서도 통용됐던 것 같다.

스타우트 휘하에 미군장교로서 법무관, 정보관, 공보관, 재산관리관, 의무관 등을 두어 군정업무를 추진하였다. 초기 군정중대에서 역점을 두었던 분야는 치안유지와 적산관리였다. 따라서 경찰권과 사법권을 관장하는 공안담당 장교인 법무관과 일제가 흡수한 국유재산 등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주목을 받았다. 법무관은 처음에 존스(Jones) 대위가 맡다가 1946년 하반기에 패트릿지(Partridge) 대위가 부임, 그 이듬해 3·1사건을 맞게 된다. 재산관리관은 마틴(Martin) 대위와 케리 대위가 번갈아 맡았다.

미군정은 남한에 민주주의를 접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정책의 시행착오로 일반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책으로 지적되는 것이 조선총독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일제의 식민통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기구와 부일 협력자들을 그대로 존속시켰다는 점이다. 미드는 “군정요원들은 초기에 이 지방 저 지방을 돌아다니며 현 재직자이면 누구든 군정의 이름으로 그의 관직을 승인해 주었다. 많은 시장과 경찰서장 및 기타 지방고관들이 그들의 자격이나 평판이 적절히 조사되지도 않은 채 임명되었다”고 지적했다.⁷⁸⁾

75) “Cheju Task Force,” January 1947, The Orlando W. Ward Papers, Korea, 1946-1949 and other materials, Box 5,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76) 濟州道, 앞의 책, 65쪽.

77) 光州市, 앞의 책, 507쪽.

제주도의 사정도 비슷했다. 일제시대 관리들이 대거 재등용되었다. 특히 친일경력의 경찰관들마저도 군정경찰관으로 변신하였다.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곡물수집정책은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제주도에서는 군정관리와 모리배와의 결탁문제가 유독 부각되었다. 1946년 12월 미군정청 여론조사과 과장보 페라루(Feraru)의 「제주도시찰보고서」에도 제주군정청 핵심인물인 스타우트 소령과 패트릿지·마틴 대위 등이 모종의 사건에 연루됐다는 정보를 기록⁷⁹⁾하고 있는데, 이런 모리문제는 1947년에 이르러 전국적인 시선을 끌었다.

2) 제주도제 실시

① 도제 실시의 정치적 의미

미군정 시기인 1946년 8월 1일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에서 분리, 도제(道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나의 섬인 도(島)에서 남한 아홉 번째의 도(道)로 승격된 것이다. 제주도의 도제 실시는 1946년 7월 2일 러치(Archer L. Lerch) 군정장관의 명의로 공포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94호 ‘제주도의 설치’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군정법령 94호는 모두 6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는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됨을, 제2조는 도명을 ‘제주도(濟州道)’로, 제3조는 도 산하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2개 군을 구성하며, 제4·5조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관할구역을 명시, 결국 제주도의 행정구역이 2군 1읍 12면으로 편성됨을 밝히고 있다. 또 제6조는 이 법령이 1946년 7월 31일 24시에 효력을 발한다고 되어 있다.⁸⁰⁾

이에 따라 스타우트 도사가 미국인 제주도지사, 박경훈 도사가 한국인 도지사로 발령되었다. 북제주군수에는 박명효(朴明效), 남제주군수에는 김영진(金榮珍)이 발탁되었다. 그런데 이 도제 실시는 제주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인민위원회 계열의 반대에 부딪혔다. 앞에서 존 메릴의 논문이 “군정당국과 인민위

78)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65.

79) “Report of Trip to the Province of Cheju during the Period 4-6 December 1946,” December 9, 1946,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16, NARA, Washington, D. C.

80) 미군정 관보 제94호, 1946년 7월 2일.

원회 사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島)가 도(道)로 승격되면서부터였다
“고 지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제주도의 분위기는 당시 국내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다.

제주도가 도로 승격하는 것에 관한 시비는 분분하였거니와 이곳 주민들 중 보수진영에서는 당국의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도민의 태반은 인위(人委)를 위시하여 도로 승격한 것을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첫째로 본토와 고립됨으로써 식량 기타 물자 교류에 있어 전남으로부터 분리됨을 싫어한다. 그 다음에 하루바삐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를 고대하는 그들은 모든 행정구역의 변형을 민족의 총의로 된 우리 정부에 맡기고 싶어한다. 그리고 셋째는 도로 승격함으로써 기구가 확대되어 세금이 증가됨을 우려하는 한편, 해방 전에 200여 명이던 경관이 수배로 느끼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라고 반대한다고 한다. 또한 도로 분리되어 본토와 다른 독특한 시정을 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기우에서 나오는 점도 있다고 한다.⁸¹⁾

제주도의 도제 실시는 우파진영 지역유지들의 건의와 제주도 군정당국의 요청, 그리고 미군정정의 정치적 분석 등이 함께 고려된 것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1945년부터 김홍석(金洪錫)을 중심으로 ‘제주도제 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아놀드 군정장관에게 진정서를 전달하는 등 도 승격운동을 전개하였다.⁸²⁾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 군정당국에서도 제주도의 행정구역 독립을 요구하였다. 미드는 그의 글에서 “제주도가 독립된 행정단위로 재출현한 것은 59군정중대의 장교들이 미군정에 꾸준한 압력을 가한 결과”⁸³⁾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아놀드에 이어 군정장관에 취임한 러치 소장은 1946년 6월 2일 제주도를 직접 방문,⁸⁴⁾ 도제 실시 여부를 검토하였다.

본래 ‘탐라국’이란 독립국가의 경험이 있었던 제주도의 주민들은 독립적인 성향이 짙었다. 1949년 4월 제주도 사태를 종합 분석한 미군 보고서에도 “수세기 동안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유배지로 이용한 점과 행정의 불모지화는 제주 섬에 점차적으로 분리주의 철학을 심어 놓았다. 민중의 분리주의 의식은 60마일이나 되는 지리적 간격보다 더 넓었는데, 이러한 의식은 제주도를 한국의 한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속국

81) 『自由新聞』, 1946년 12월 19일.

82) 濟州道, 『濟州道誌』(上), 1982, 441~443쪽.

83)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82.

84) 『서울신문』, 1946년 6월 5일.

으로 취급하는 본토정부의 정책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⁸⁵⁾

미드는 “일제는 제주를 ‘한국의 시칠리아 섬(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중앙 정부의 오랜 지배와 그에 항거한 저항의 역사가 있는 섬)’으로 간주, 이 지역 원주민들에 의해 표출된 강고한 독립정신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전남지역 일부로 통합해 버렸다”고 분석했다.⁸⁶⁾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동안 전남과도 일정하게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던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막상 미군정이 제주도를 전남과 분리시키려 하자 오히려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 인민위원회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군정의 의도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제주도가 도로 승격하던 시기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로 들어간 뒤 미군정이 좌파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시점이었다. 그 해 5월부터 열렸던 미·소 공위에서는 공위에 참가할 한국 내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자격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미군정은 1차 미·소 공위가 성과없이 끝나자 곧바로 정당의 비밀활동을 규제하는 ‘정당등록법’을 발표하는 한편, 경찰과 경비대 조직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추진된 제주도제 실시는 단순히 행정기구의 격상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군(郡) 수준에서 도 수준에 맞게끔 군경 조직들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제주도제는 첫째 행정기구의 확대개편 뿐만이 아니라, 둘째 제주감찰청 신설 등 경찰기구의 확대, 셋째 경비대 제9연대 창설 등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인민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활동영역이 더욱 좁아지고 제한을 받는 여건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주도의 승격문제를 미군정 아래에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바로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제주도제를 반대하는 뜻에서 도 승격이후에도 그들의 기구 명칭에 ‘도(道)’를 쓰지 않고 종래의 ‘도(島)’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② 경찰기구의 확대

제주도제가 실시되면서 경찰조직도 확대 개편되었다. 1946년 8월 1일에 제주감찰서로, 9월 11일에는 제주감찰청으로 승격되었다. 그 산하에 총무과, 공안과, 통신

8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86)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34.

과, 수사지도과, 사찰과 등 5개과를 두었다. 12월 14일에는 제주읍 소재 제1구경찰서 이외에 서귀포에도 제2구경찰서가 설치되었다.⁸⁷⁾ 따라서 종전 1개 경찰서 체제였던 제주 경찰이 도 승격이후 1개 감찰청, 2개 경찰서 체제로 그 기구가 확대된 것이었다.

1946년 4월 경찰제도가 관구(管區)경찰제로 개편되면서 각 도의 경찰조직은 종전의 경찰부에서 관구경찰청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경기는 제1관구경찰청, 강원은 제2관구경찰청 식으로 호칭됐는데, 당시 제주도가 속해 있던 전남은 제8관구경찰청으로 불렸다. 따라서 이런 기준이라면 제주도가 도로 승격하면서 제9관구경찰청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감찰청 기구를 두었다.

제주도에만 생긴 이 감찰청은 지휘관의 직급을 감안할 때, 경찰청과 경찰서의 중간 단계의 조직으로 해석된다. 당시 경찰직급은 경찰총감-총경-감찰관-경감-경위-경사-순경 순⁸⁸⁾이었는데, 초대 제주감찰청장으로 발령 받은 김대봉(金大奉)의 직급은 감찰관이었다. 그때는 관구경찰청장이 총경 급에서, 경찰서장이 경감 급에서 임명되던 때이다. 제주감찰청은 3·1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947년 3월 9일 제주경찰감찰청으로 개칭되었다.⁸⁹⁾

태평양 전쟁이 갑자기 끝났을 때 가장 당황했던 집단 중 하나가 조선총독부 소속의 한국인 경찰이었다. 경찰 자료에도 1945년 8월 15일부터 미군이 진주한 9월 8일 사이에 일본인 경찰관 90%가 그 자리를 지킨 반면, 한인 경찰관은 80%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⁹⁰⁾ 종전 당시 총독부 소속의 제주 경찰은 총 101명이었는데 이중 일본인이 50명, 한국인이 51명이었다.⁹¹⁾

그러나 미군정은 곧바로 기존의 총독부 경찰조직을 군정경찰의 골간으로 삼았다. 따라서 해방 직후에도 한동안 식민지시대 경찰 이름이 그대로 호칭되었는데, 1946년 1월에 이르러서야 '주재소'가 '지서'로, '순사부장'이 '지서장'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지서주임'으로 개칭되었다. 곧이어 일제경찰관 출신자들이 대거 미군정 경찰로 들어갔는데, 1946년 말 군정경찰 경위 급 이상 간부 1,157명 중 82%인 949명이 일제경찰 출신으로 밝혀졌다.⁹²⁾

87) 濟州道警察局, 『濟州警察史』, 1990, 90쪽.

88) 『獨立新報』, 1946년 9월 20일.

89) 『濟州新報』, 1947년 3월 26일.

90) 首都管區警察廳, 『解放이후 首都警察發達史』, 1947, 94쪽.

9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6, October 5, 1945.

제주경찰도 예외가 아니었다. 초기 경찰 간부들은 거의 친일 경력이 있는 일제 경찰로 채워졌다. 따라서 민족 감정과 도덕성의 논란 등으로 처음에는 수세에 몰렸다. 인민위원회 치안대 활동에도 협조, 혹은 묵인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제 실시를 계기로 경찰력이 강화되면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미군정은 군정 초기에 치안 확보문제를 경찰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폈다. 따라서 군정경찰은 해방 이후 최대의 물리적 강제력을 갖는 기구로서, 전투경찰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무장에서도 경비대에 비해 앞섰다. 경찰인력은 계속 증원되었다.

일제시대 101명이던 제주도 경찰력은 제주도제 실시 이후인 1947년 2월에는 330명으로 늘어나 있었다.⁹³⁾ 그 해 3·1절 시위에 대비해서 다시 본토에서 응원경찰 100명을 불러 들였다가 발포사건이 유발되었다. 이에 제주출신 일부 경찰관들이 발포사건의 항의로 사임하자 대대적인 개편 증원작업을 진행, 1947년 4월에는 500여 명으로 늘리면서, 육지출신 경찰관 245명을 제주경찰로 흡수하였다.⁹⁴⁾ 제주도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난 직후에는 응원경찰까지 합쳐 한때 경찰력이 2,00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⁹⁵⁾

미군정의 제주경찰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간부를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일제 경찰 경력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타도 출신 경찰관의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철도경찰과 이북출신이 많았다. 셋째는 응원경찰의 지원을 자주 받았는데 1948년 7월의 경우 제주에서 활동한 경찰력의 75%가 응원경찰로 구성되어 있었다.⁹⁶⁾

③ 경비대 9연대 창설

제주도가 도로 승격됨에 따라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조선경비대 제9연대가 창설되었고 초대 연대장에는 장창국(張昌國) 부위가 발령되었다.⁹⁷⁾ 9연

92)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81), p.166.

9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97, February 27, 1947.

94) 『濟州新報』, 1947년 4월 28일.

95)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30일.

96) 梁奉哲,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연구- '제주4·3'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6쪽.

9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第1卷-解放과 建軍』, 1967, 301쪽.

대의 발족도 도제 실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1946년 조선경비대를 발족시킨 미군정은 각 도별로 1개 연대씩을 창설한다는 ‘뱀부 계획(Bamboo plan)’에 의거해 각 지역별로 향토연대를 조직해 갔다. 뱀부 계획이란 ‘일정한 주둔지를 기준으로 하여 고안된 경찰예비대로서 필요한 병력을 그 지역의 지원자로 충원하는 방식’인데, 이미 미군이 필리핀에서 시도한 바 있었다.⁹⁸⁾ 이 계획에 의해 1946년 1~4월 사이에 8개 도에 각각 1개 연대씩 조직한 데 이어 제주도에 도 승격 이후 전국에서 가장 늦게 향토연대인 제9연대를 창설하게 된 것이었다.

8·15 직후 광복군을 비롯하여 일본·중국 등지에서 군대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속속 귀향한 뒤 군사경력과 연고를 중심으로 사조직 성격의 군사단체를 형성해 갔다. 이런 사설단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1945년 11월 군정청에 등록된 군사단체의 수는 무려 3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상을 보였다.⁹⁹⁾ 미군정은 이를 정비하기 위해 1945년 11월 군정법령 제28호를 공포,¹⁰⁰⁾ 군대조직을 통괄할 국방사령부와 군무국을 설치하고, 사설군사단체와 치안단체를 불법화하였다.

미군정은 당면한 언어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고 광복군·일본군·만주군 출신을 같은 비율로 입교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광복군 출신 중 주류파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일본군과 만주군이 대거 입교했다. 1946년 군사영어학교 임관자 110명의 출신을 보면 일본군 출신이 87명, 만주군 출신이 2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광복군 출신은 2명에 불과했다.¹⁰¹⁾ 결국 군조직도 경찰과 비슷하게 일본군 경력자가 주로 기용되었다.

1946년 1월 15일에는 조선국방경비대를 발족, 지역별로 향토연대를 창설하기 시작하였다. 제주의 9연대는 다른 지역의 8개 연대가 창설된 지 6개월 뒤에 후발부대로 출범한 탓인지 인적 구성에서 본토와는 다른 형태를 밟았다. 즉 다른 지역의 향토연대는 기간요원까지도 현지 지원자로 구성한 반면에, 제주의 9연대는 광주 4연대로부터 기간요원 54명을 지원 받아 부대를 창설했기 때문이다.¹⁰²⁾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는 “(이들) 기간병들이 불량성, 아니면 사고뭉치 또는 좌익 불순분자들이라 애로가 많았다”¹⁰³⁾는 표현을 쓰고 있다.

98) 韓鎔源, 『軍事發展論』, 博英社, 1969, 206쪽.

9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247쪽.

100) 미군정 관보 제28호, 1945년 11월 13일.

101) 韓鎔源, 『創軍』, 博英社, 1984, 74쪽.

102) 張昌國, 『陸士卒業生』, 中央日報社, 1984, 98쪽.

9연대가 본부로 사용한 곳은 일제시대 해군항공대가 있었던 모슬포 ‘오무라(大村) 병사’였다. 제주도 최초의 비행장으로 건설된 이곳은 1937년 중·일 전쟁 때 도양 폭격의 기지로 사용되기도 했었다. 일본군 병영을 막사로 삼은 제9연대는 이듬해인 1947년 3월부터 제주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병활동을 벌였다. 3월 25일 제주북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제식훈련을 선보이는 등 섬을 일주하면서 읍면 소재지에서 모병활동을 전개하였다.

9연대는 이런 모병활동을 거쳐 1947년 한 해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많게는 80명, 적게는 40명 단위로 청년들을 입대시켰다. 이들 병사들은 입대 기수 별로 ‘1기생’에서 ‘8기생’으로 불렸다. 1948년 1월에 와서야 9연대의 병력이 비로소 400명에 이르르게 되었다.¹⁰⁴⁾ 이후에 제주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병 모집활동을 벌여 ‘4·3’직전에는 800명에 달하였다.

9연대의 초기 모병활동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보급이 시원치 않아 때로는 수제비로 끼니를 때울 정도였으며 장비도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무렵 “경비대는 경찰의 보조기관이며, 정식 군대가 아니다. 정식 군대는 추후 모집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젊은 층 사이에는 ‘경비대는 미국의 용병’이란 주장도 나돌았다.

초대 연대장으로 발령 받은 장창국은 부임 전에 서울에서 미국인 경비대사령관과 육사 교장 방에 인사차 들렀더니 제주도에는 좌익세력이 강하니 조심하라고 일러 주었다고 회고했다. 또 그는 제주에 내려와 마을 주민들이 마련한 환영연에 참석했다가 젊은 사람으로부터 “경비대가 미국의 용병이지 무슨 군인이란 말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직감적으로 과연 좌익세가 세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히고 있다.¹⁰⁵⁾

이때만 해도 전국적으로 경비대 모병심사를 할 때 사상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미군정은 초창기 ‘불편부당’을 내세워 비이념화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경비대 침투를 막기 위해 신원 보증제를 도입하자는 한국인 고문의 조언도 무시하였다. 이런 결과 조선공산당에서 후원한 국군준비대 대원들이 대거 경비대에 침투하게 되었고, 공산당 후신인 남조선노동당은 군사부를 두어 이를 관리하였다고 한다.¹⁰⁶⁾ 제주도 무장유격대의 자료에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도 9연대 1차 모

10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302쪽.

104)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24, January 30, 1948.

105) 張昌國, 앞의 책, 113~114쪽.

병 때 모슬포 출신 4명을 프락치로 입대시켰는데, 이중 2명이 이탈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⁰⁷⁾

또 하나 주목되는 일은 9연대에서 모병 광고를 하면서 ‘국방경비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님’을 강조한 점이다. 『제주신보』 1947년 4월 22일자부터 여러 차례 게재 된, ‘청년에게 고향!’으로 시작된 모병광고는 제9연대장 장창국 소령의 명의로 실려 있는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국방경비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동포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순국하려는 피끓는 젊은이들의 애국군사기관이다. 우리들은 모국(某國)의 주구도 아니다. 일개 정당의 이용기관도 아니다. 다만 안으로는 자주독립을 추진시키고 밖으로는 국방의 중책을 완수하려는 국가의 간성이다.¹⁰⁸⁾

이런 광고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미군정의 좌우합작정책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무기 휴회에 들어가자 소련 지향의 정부 수립을 막는다는 방침 아래 남한에서의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정책은 바로 미군정 스스로 극좌주의나 극우주의를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9연대의 ‘좌도 우도 아니다’란 선언은 그 당시의 이런 정치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정치·사회경제 동향

1) 정치 동향

① 신탁통치 논쟁

1946년 한국의 정치사는 ‘반탁과 찬탁을 둘러싼 정치논쟁과 격렬한 좌우의 대립’¹⁰⁹⁾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물고 온 신

10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401쪽.

107)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1948) (文昌松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허진 4·3의 진상』, 대림인쇄사, 1995, 75쪽에 수록).

108) 『濟州新報』, 1947년 4월 22일.

탁통치안은 국내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최초로 명백하게 표출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정치사에 가장 특기할 만한 정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독립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약속된 것은 1943년 11월 미·영·중 수뇌가 참석한 카이로(Cairo) 회담에서였다. 이 결의는 알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국제회의의 공식문서 속에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밝힌 카이로 선언에는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란 단서가 있었다. 그것은 즉각 독립이 아니고 일정기간의 신탁통치를 의미하였다. 종전 직후 남·북한에서 군정을 실시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 등 3개국 외상이 모여 한국의 신탁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회담이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의였다.

이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안이 확정됐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한국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둘째, 이 한국임시정부와 협의하면서 미·영·중·소의 4대국이 5개년간을 기한으로 하는 신탁통치를 할 것 등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 한국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였다.¹¹⁰⁾ 이 모스크바 협정은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미·소 양국의 타협안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즉 '한국임시정부의 참여'란 원칙에는 당시 우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내 좌파정당과 사회단체를 임시정부 수립과정에 참여시키겠다는 소련의 의도가 담겨 있었는가 하면, '미·영·중·소 4개국 참여'란 원칙은 영국과 중국 등 친미적 국가를 신탁통치 주도국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련에 비해 수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¹¹¹⁾

한국 신탁통치 결정 소식이 국내에 알려졌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탁통치'란 말을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단지 한국을 지배하는 나라가 종래의 1개국이 아니라 4개국으로 늘어난다는 인식 아래 모욕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김구 중심의 임정 세력은 즉각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하게 반탁시위를 주도해 갔다. 이승만(李承晩)과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으로 약칭) 세력의 반탁운동은 처음엔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것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 나갔다.

109) 金學俊,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解放前後史의 認識』 1, 한길사, 1979, 84쪽.

110) 이동현, 『한국 신탁통치 연구』, 평민사, 1990, 74~78쪽.

111)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문제 1943~46」, 『解放前後史의 認識』 3, 한길사, 1987, 232쪽.

이에 반해서 좌파세력들은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처음엔 신탁통치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1946년 1월 2일 인공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보 부족 때문에 반탁의 태도를 취한 것은 ‘과오’였다고 표현하면서 3상회의 지지로 선회하였다. 인공은 3상 결정이 해방과 독립을 보장하는 진보적 결정이며 국내 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¹¹²⁾ 곧이어 조선공산당에서도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찬탁, 반탁운동에도 불구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는 준비되고 있었다. 미군정은 이에 대비해서 우파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 1946년 2월 14일 하지 사령관의 자문기구로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이하 ‘민주의원’으로 약칭)을 발족시켰다. 의장에는 이승만, 부의장에는 김구·김규식(金奎植)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임시정부에 참여할 정당·단체의 자격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끝에 제1차 미·소 공위가 실패한 후에는 온건 좌우파를 중심으로한 좌우합작위원회, 그리고 이어 과도입법의원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맞서 좌파진영에서는 1946년 2월 15일 인공 중앙위원회를 계승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하 ‘민전’으로 약칭)을 결성하였다. 이 민전은 일종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조선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을 비롯한 좌파정당과 노동단체, 농민단체, 청년단체, 부녀단체, 문화단체 등을 총망라한 좌파세력의 통일전선이었다. 공동의장으로는 여운형·박헌영(朴憲永)·허헌(許憲) 등이 추대되었다. 전자의 민주위원이 중앙무대 중심의 조직이라면, 후자인 민전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조직된 전국단위의 단체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신탁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중앙의 흐름과는 다르게 표출되었다. 1946년 1월 초순 제주읍에서 대대적인 신탁반대 쫓기대회를 시발로 각 면 단위로 반탁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를 건준과 인민위 조직이 주도했다는 것이다.¹¹³⁾ 그리고 민전 조직도 남한 각 지방에서는 1946년 상반기에 거의 편성되었으나, 제주도에서는 좌파세력이 강했음에도 1947년 2월에 이르러 비로소 결성되었다. 제주도 좌파세력은 얼마 후 상부의 지시를 받고 찬탁운동에 동조,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112) 『朝鮮日報』·『서울신문』, 1946년 1월 4일.

113) 濟州道, 『濟州道誌』第2卷, 1993, 52쪽.

② 좌파 정당·단체

8·15 직후 제주에서 최초로 결성된 정당조직은 조선공산당(이하 '조공'으로 약칭) 전남도당 제주도(島)위원회였다. 1945년 10월 초 제주읍 한 민가에서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을 벌였던 20여 명이 참석, 결성했다는 것이다.¹¹⁴⁾ 당원 가입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1946년 말까지 섬 전체적으로 당원 수가 100명 선을 넘지 않았다.

조공 제주도위원회는 간판을 내걸지도 않았고, 특별히 조공의 이름을 내세워 활동하지도 않았다. 다만 대중적인 인민위원회 활동에 주력했고, 청년동맹 등의 외곽조직을 통해 대중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제주도의 유일한 좌파정당인 조공 제주도위원회는 1946년 11월 23일 중앙에서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 등 3개 좌파 정당의 통합으로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으로 약칭)이 결성되면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박헌영·여운형·백남운(白南雲)이 주도하던 조공·인민당·신민당 등 좌파정당은 전통과 이념, 혁명 추진세력의 설정 등에서 각기 독자성을 띠고 그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당면한 과제로서 신탁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3상 협정의 지지와 미·소 공위를 통한 임시정부 수립, 일제 잔재의 청산과 토지개혁 등 중요한 정책과 노선에는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1946년 2월에는 통일전선체 민전을 결성, 제1차 미·소 공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하였다.¹¹⁵⁾

그러나 제1차 미·소 공위가 무기 휴회에 들어간 다음부터 미군정의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1946년 5월 '정판사 위폐사건'을 계기로 조공 간부들을 검거하였고, 그 해 9월 6일 해방일보 등 좌익계 신문들을 폐간하였다.¹¹⁶⁾ 9월 7일에는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미군정은 조공 등에 공세를 퍼는 한편 온건 좌파성향의 여운형과 온건 우파의 김규식을 끌어들여 좌·우 합작운동을 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변화에 따라 조공 등의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존립과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인 대중정당의 필요성을 절감, 3당을 합당해 남로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114) 李運芳(92세, 대정읍 하모리, 당시 조공 결성모임 참가자, 2001. 11. 9. 채록) 증언. 결성 시기에 대해 金奉鉉·金民柱의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鬭爭史』(文友社, 14쪽)에는 12월 9일로 기록하고 있다.

115) 金南植, 「조선공산당과 3당합당」, 『解放前後史의 認識』 3, 한길사, 1989, 140쪽.

116) 『獨立新聞』, 1946년 9월 7일.

남로당은 미군정청에 합법정당으로 등록되었다.¹¹⁷⁾ 남로당의 결성식에는 미군정 간부와 CIC 관계자들도 참석하기도 하였다. 위원장은 인공의 지도자 허현, 부위원장으로는 박현영이 선출되었지만, 조직의 실권은 당시 체포령을 피해 해수에 있었던 박현영이 쥐고 있었다.

제주의 경우는 당시 조공만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명칭의 변화과정만 거쳤다. 조공 제주도위원회 임원들이 1946년 12월 조천 김유환(金塗煥) 집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남로당 전남도당 제주도위원회를 결성하였다.¹¹⁸⁾ 위원장은 일제시대 사회주의운동으로 옥고를 치렀던 조천의 안세훈(安世勳)이 맡았다. 초기 주요 활동가로는 김유환, 김은환(金閔煥), 문도배(文道培), 현호경(玄好景), 조몽구(趙夢九), 오대진(吳大進), 김한정(金漢貞), 이신희(李辛祐), 이운방(李運芳), 김용해(金容海), 김정노(金正魯), 김택수(金澤銖), 문재진(文在珍), 부병훈(夫秉勳), 송태삼(宋泰三), 이도백(李道伯) 등을 꼽을 수 있다.¹¹⁹⁾

남로당은 원래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에 초기부터 활발하게 당원 배가운동을 전개하였다. 제주읍내 중심가인 칠성통에 남로당 간판도 걸려 있었다고 한다.¹²⁰⁾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3·1절 기념집회를 배후에서 주도하게 되는데 이 무렵에는 진도의 당원수가 3,000명 가량으로 늘어났다고 한다.¹²¹⁾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이에 앞서 좌파 외곽조직 정비작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본토에서 이미 조직이 완료된 민전, 민청, 부녀동맹 등이 그때까지도 제주도에는 미조직 상태였는데, 이들 조직도 1947년 1~2월 사이에 결성되었다.

제주도 민전 결성식은 1947년 2월 23일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일구락부에서 있었다. 중앙의 민전에 비해 1년 늦게 조직된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에서는 우파 세력이 미약한 반면 좌파조직은 하나의 조직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그때까지도 인민위원회의 대중적인 영향이 온존했기 때문이다.

제주 민전 의장단으로 남로당 제주도위원장 안세훈, 승려인 이일선(李一鮮), 제주 중 교장 현경호(玄景昊) 등 3명이 추대되었다. 또 부의장으로는 김택수·김용해·김상훈(金相勳)·오창훈(吳昶昕) 등 4명이 선출되었다. 이날 제주 민전 결성식에서 명

117) 하성수, 『남로당사』, 세계, 1986, 172쪽.

118)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35~536쪽.

119)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98쪽; 제주4·3연구소, 『4·3장정』3, 백산서당, 1990, 104쪽.

120) 金時鐘(74세, 日本 生駒市 喜里, 당시 남로당 제주읍당 당원, 2001. 12. 24. 채록) 증언.

121) 金生玟(77세, 濟州市 연동,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 당원, 2001. 7. 13. 채록) 증언.

예의장으로 스탈린·박헌영·김일성(金日成)·허헌·김원봉(金元鳳)·유영준(劉英俊)이 추대되었다. 결성식에 박경훈 지사가 참석, 축사를 하였다.¹²²⁾ 또 경찰고문관 페트릿지와 강인수(姜仁秀) 제주감찰청장도 참석, 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¹²³⁾

한편 좌파 청년단체는 초기에는 청년동맹(제주도 위원장 文在珍)으로 결성되어 주로 건준 및 인민위원회 산하의 치안대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47년 1월 12일 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으로 약칭) 제주도위원회가 창설되었다.¹²⁴⁾ 위원장으로는 일제시대에 항일운동을 했던 김택수가 선출되었는데, 그 때 그의 나이는 47세였다. 민청 조직도 중앙에 비해 9개월 가량 늦게 결성되었다.

민청 제주도위원회는 읍·면·리 단위까지 편성될 정도로 광범위한 조직체를 갖게 되었다. 당시 민청 면 단위 결성대회 보도기사를 보면 지서주임 등이 참석, 축사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¹²⁵⁾

미군정은 1947년 4월 행정명령 제1호¹²⁶⁾로 우파 청년단체인 대한민청을, 5월에는 행정명령 제2호¹²⁷⁾로 좌파 청년단체인 조선민청을 각각 테러단체로 규정,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중앙에서는 민청 조직을 기반으로 그 해 6월 6일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이하 '민애청'으로 약칭)으로 재편되었다. 제주도 민청도 6개월 만에 해산하여 7월경 민애청 제주도위원회(위원장 康大錫)로 바꾸게 되는데, 명칭만 변경됐을 뿐 조직상 변화는 없었다. 이 민애청 조직이 4·3 무장봉기 때 자위대와 유격대의 핵심근간을 이루게 된다.

민청과 더불어 읍·면·리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조직을 갖게 되는 제주도부녀동맹도 1947년 1월 15일 결성되었다. 위원장에 김이환(金二煥), 부위원장에 고인선(高仁善)·강어영(康御榮)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런 조직정비를 끝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중단된 미·소 공위 재개를 촉구하는 행사를 3·1절 기념대회와 결부시켜 대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그 준비에 들어간다.

122) 『濟州新報』, 1947년 2월 26일.

123) 『濟州新報』, 1947년 5월 8일.

124) 『濟州新報』, 1947년 1월 10일.

125) 『濟州新報』, 1947년 1월 28일.

126) 미군정 행정명령 제1호, 1947년 4월 22일.

127) 미군정 행정명령 제2호, 1947년 5월 16일.

③ 우파 정당·단체

제주도 우파진영에서는 8·15 직후 홍순녕(洪淳寧)을 중심으로 건준 운동에도 참여했으나 점차 좌파세력에 밀리어 인민위원회 활동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다 이승만과 김구의 귀국과 반탁운동을 계기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좌파세력에 밀렸던 우파진영은 반탁운동을 통하여 다수의 대중을 어느 정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1945년 12월 26일 이승만 계열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독촉'으로 약칭) 제주도지부가 발족되었다. 위원장에는 박우상(朴雨相)이 맡았다. 이 무렵 우파진영에서 활동한 인물들은 박명효(朴明效), 강지수(康芝洙), 홍순용(洪淳容), 홍순녕, 김근시(金根蓍), 박종훈(朴鍾薰), 김충희(金忠熙), 김희수(金希洙), 황순하(黃舜河), 문재숙(文在淑), 박치순(朴致順) 등이었다.¹²⁸⁾

1946년 5월 제1차 미·소 공위가 결렬되면서 중앙의 우파진영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미묘하게 세 갈래의 틈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하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의 움직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반탁노선을 견지하면서도 이승만과 김규식의 중간 위치에 끼인 김구의 노선이었다. 신탁문제를 둘러싸고 독촉 발족으로 손을 맞잡았던 이승만과 김구는 이 무렵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¹²⁹⁾

이런 흐름 속에서 1946년 7월 14일 김구가 제주를 방문, 현지의 우파진영을 고무시켰다. 김구의 제주 방문은 그가 당수로 있던 한국독립당(이하 '한독당'으로 약칭) 조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미 한독당 제주도당부가 결성되어 있었지만 그 당세가 미미하였다. 미 군용기 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김구는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열린 시국강연을 통해 "우리 민족은 대동 단결하여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매진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한독당 제주도당부 개편대회도 열렸는데, 새로운 위원장에는 홍순용이 선출됐다.¹³⁰⁾

이 같은 우파진영의 세력 확장에도 불구하고 1947년 초까지 좌파세력에 밀렸다. 우파진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군 보고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1947년 3·1사건 직후에 '제주도의 우익정당'이란 제

128) 姜龍三·李京洙, 『大河實錄 濟州百年』, 태광문화사, 1984, 514~516쪽.

129) 이완범, 앞의 글, 『解放前後史의 認識』 3, 265쪽.

130) 濟州道, 앞의 책, 54쪽.

목으로 제출된 미 CIC의 보고내용이다.

3월 21일 방첩대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의 우익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독립당 제주도지부는 조직도 빈약하고 자금 면에서도 결핍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두 당은 섬 전체적으로 약 1,000명 가량의 당원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 우익 정당들은 좌익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정치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¹³¹⁾

한편 우파청년단체의 결성 역사를 보면 중앙무대에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제주에서는 보다 단조로운 양태를 띠고 있다. 제주도의 우파청년단체가 태동한 시점은 정국이 찬탁과 반탁 논쟁에 휩싸여 전국적으로 우파청년단체의 조직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1946년 3월에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 제주도지회(위원장 김충희)가 처음으로 발족되었으며¹³²⁾ 1947년 2월에 광복청년회 제주도지회(단장 김인선)가 창립되었다.¹³³⁾ 이들 두 단체가 1947년 10월 대동청년단(이하 '대청'으로 약칭)으로 합쳐지는데, 대청 단원들은 '4·3'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압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우파청년단체 결성 당시 지방에는 이미 건준 및 인민위원회 산하 청년단체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단원을 포섭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 광복청년회와 대동청년단 단장을 계속 맡아 제주도 우파청년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인선은 "이들 단체가 태동할 때에는 이념 중심보다 사람(인물) 중심으로 결성된 면이 없지 않다"¹³⁴⁾고 회고하였다.

이밖에 1947년 11월 서북청년회(이하 '서청'으로 약칭) 제주도단부(위원장 張東春), 그 해 12월에는 조선민족청년단(이하 '족청'으로 약칭) 제주도단부(단장 白璣錫)가 결성되었다. 제주도 우파진영은 1947년 3·1사건 이후 좌파세력에 대한 검거선풍이 일면서 좌익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자, 더욱 활기를 띠고 세력 확장에 나섰다. 그럼에도 당시 국내 우파정당 핵심의 하나인 한민당이 제주도에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13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86, March 22, 1947.

132) 姜龍三·李京洙, 앞의 책, 575쪽.

133) 『濟州新報』, 1947년 2월 1일.

134) 金仁善(당시 대청 제주단장)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49쪽에서 재인용).

2) 사회경제 동향

20세기 초반에 일체의 식민경제체제가 들어오면서 제주도의 자연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농민들은 일본으로의 출가노동을 택해 일본 공업 노동자로 흡수되었다. 그런데 종전이 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다시 종래의 자연경제 체제로 돌아오게 됐다.

8·15 직후 제주도는 귀환자들의 심각한 실직난, 일본 노동시장에서 보내오던 송금이 끊기고 대일 교역의 불법화, 그리고 생필품의 부족현상까지 겹치면서 매우 곤궁하였다. 여기에다 1946년에 들어서면서 불어닥친 콜레라의 만연과 극심한 보리농사 흉년까지 겹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콜레라는 1946년 봄에 남한 각 지방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 해 6월에 이르러 제주도에서도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생겨났다. 이에 미군정은 제주를 콜레라 전염의 새로운 지역으로 선포하고 “6일간의 검역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제주도에 들어갈 수 없다”¹³⁵⁾며 연륙 교통을 통제했다. 여름에 들어서면서 콜레라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미군 보고서는 콜레라 발생 상황을 계속 기록하다가 1946년 8월 29일자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8월 말 상황인 마지막 기록에는 전국 사망자 7,193명, 제주도 사망자 369명으로 집계하고 있다.¹³⁶⁾ 그러나 이 보고서에 제주도의 새로운 환자가 424명이 발생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콜레라에 의한 희생자 수는 369명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제주도로서는 타도에 비해 콜레라의 피해가 심한 편이었다. 콜레라를 예방한다고 마을과 마을 사이의 왕래를 통제하기도 해서 민심이 흉흉하였다.

한편 콜레라가 기승을 부리던 그 해에 제주도는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제주의 토질은 척박해서 논이 거의 없고, 보리와 조·고구마 등 밭작물 농사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들 밭작물 농사가 대흉작이었다. 특히 보리 농사가 심했는데, 1944년 생산량이 268,133석이던 것이 1946년에는 그 31%선인 83,785석에 지나지 않았다. 고구마·조 등 여타 잡곡류의 경우 1943년 생산량이 387,181석이었는데, 46년에는 그 61%인 236,641석에 머물렀다.¹³⁷⁾

13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57, June 18, 1946.

13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317, August 29, 1946.

이쯤 되자 제주도의 식량난은 심각했다. 귀환인구의 증가로 식량수요는 늘었으나 생산량은 절대 부족했다. 칩뿌리와 해산물 등을 채취해 겨우 목숨을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툇과 보릿겨 등을 섞어 만든 이른바 ‘툇밥’ 등이 유행하였다. 돼지 사료로 활용되던 전분박이 식용으로 나돌았다.¹³⁸⁾ 뒤늦게 다른 지방에서 곡물이 반입됐으나 그래도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민심을 자극시킨 것이 난조를 보인 미군정의 곡물정책이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 ‘미곡의 자유시장’을 통하여 일제시대의 미곡공급 배급제를 폐지하고 미곡의 자유판매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곧 혼란을 가져왔다. 몇몇 지주와 관리들의 매점매석으로 유례 없는 쌀값 폭등현상을 불러왔다. 이렇게 되자 미군정은 1946년 1월 군정청 법령 제24호 ‘미곡수집령’을 공포,¹³⁹⁾ 일제가 행하던 미곡수집체제, 즉 쌀 공출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좌파진영에서도 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군정은 이에 미곡수집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단속을 강화했다. 러치 군정장관이 1947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미곡수집에 불응한 이유로 구금된 자의 총 수가 전국적으로 8,631명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듯이¹⁴⁰⁾ 군정당국과 농민 사이에 마찰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전국적으로 곡물수집 실적이 가장 부진한 곳이 바로 제주도였다.

1946년 추곡 수매량은 전국적으로 4,358,000석이었으며, 제주도에는 5,000석이 배정되었다.¹⁴¹⁾ 그런데 1947년 1월의 미군 보고서를 보면 그때까지 전국적으로 69.5%가 수집됐으나, 제주도의 수집 실적은 1%에 불과했다.¹⁴²⁾ 또 미군 보고서는 2월 15일까지의 수집률은 전국 78%, 제주 22%, 2월 22일까지는 전국 81%, 제주 44%로 기록하고 있다.¹⁴³⁾ 어쨌든 제주도의 추곡 수매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리고 47년 여름 하곡수집을 할 때에는 수집 공무원과 마을 청년들의 충돌사

137)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 4쪽.

138) 濟州道, 앞의 책, 59쪽.

139) 미군정 관보 제45호, 1946년 1월 25일.

140) 『自由新聞』, 1947년 3월 21일.

141) 『漢城日報』·『獨立新聞』, 1946년 10월 18일.

14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37, January 22, 1947.

14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68, February 28, 1947.

고도 빛어진다.

한편 8·15 이후 제주도의 뜨거웠던 교육열기도 두드러진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마을마다 주민 자치적으로 국민학교 설립운동이 전개됐으며, 면 단위별로는 중등학교 세우기 운동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해서 8·15 이후 1947년까지 2년 사이 신설된 학교는 초등 44개교, 중등 10개교에 이르렀다.¹⁴⁴⁾ 학생수도 초등의 경우 20,000명에서 38,000명으로, 중등은 300명에서 3,60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¹⁴⁵⁾

1946년부터는 진보적인 학생운동이 전개되었다. 제주농업학교와 오현중학교에서 일제 잔재 교육과 파쇼 교육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운 동맹휴학운동이 교내에서 일어났다. 1947년에 접어들면서 학생운동이 교내를 벗어난 사회운동으로 변져 나갔다. 그 첫 번째의 시도가 양과자 반대시위였으며, 두 번째의 시도가 3·1절 시위였다.

1947년 2월 10일 제주 시내 중·고등학생들이 연합으로 군정청이 자리 잡았던 관덕정 앞 광장에서 양과자 반대시위를 벌였다. 시위 학생 수에 대해 미군 보고서는 '300~400명'¹⁴⁶⁾으로, 『제주신보』는 '1천여 명'¹⁴⁷⁾으로 기록하고 있다. 군정당국은 이를 제주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미시위로 규정했다. 미 24군단 정보보고서에는 "학생들이 제주읍에서 이 지역의 군정중대에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대항해 시위를 시작했다. 군정중대는 시위를 해산시키고 학생들을 읍내 밖으로 쫓아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⁴⁸⁾

1947년 초에 양과자 수입 반대문제는 전국적인 이슈였다. 이 거부운동에는 비단 좌파만이 아니라 우파진영에서도 참여하였다. 독촉 선전부는 그 해 1월 8일 드롭스 등 양과자 수입액만도 1억 8천만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양과자 먹지말고 국산 장려운동을 펴자"는 담화를 발표하였다.¹⁴⁹⁾ 그러나 제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양과자 반대시위는 반미운동의 초보적인 형태로 나타났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곧이어 3·1절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1947년 초에 제주에서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킨 사건 가운데 모리배 문제가 있었

144) 濟州道教育委員會, 『濟州教育史』, 1979, 113쪽.

145) 『濟州新報』, 1947년 1월 26일.

146)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5, February 20, 1947; Hq. 6th Inf Div, G-2 Report, No. 485, February 15, 1947.

147) 『濟州新報』, 1947년 2월 10일.

148)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5, February 20, 1947.

149) 『漢城日報』, 1947년 1월 8일.

다. 그 무렵 제주에서는 밀무역이 성행했다. 일본에 있던 재산을 반입하거나 생필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어선들이 현해탄을 넘나들었지만, 경찰에서는 이를 밀수 행위로 간주, 단속을 벌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모리배들과 손을 잡고 이런 사례들을 적발하면 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뒷거래로 잇속을 채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런 모리행위에 군정 관리와 경찰 고위간부까지 가담하면서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제주감찰청장 파면까지 몰고 온 ‘복시환(福市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47년 1월 11일 서귀포 법환리 출신 재일동포들이 고향마을에 전기를 가설하기 위해 기증한 자재를 신고 오던 복시환이란 선박이 경찰당국에 밀수선으로 적발되면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모리배들이 끼어 들고, 그 배후에 경찰 고위간부와 미군정 장교까지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방언론에서 심층보도를 하기 시작했다.¹⁵⁰⁾ 곧이어 중앙언론에 ‘모리 천하 제주’란 제목 아래 대서특필되면서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켰다.¹⁵¹⁾

중앙조사단이 제주에 내려와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 사건에 연루된 신우균(申宇均) 제주감찰청장이 2월 20일 직위해제되고¹⁵²⁾ 3월 24일 경무부 사문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졌다.¹⁵³⁾ 이런 사건으로 후임 제주감찰청장에는 전남 출신 강인수가 발령되어 3·1사건을 맞게 된다.

당시 제주도민사회에서는 ‘모리배’란 단어가 유행했다. 그 말 속에는 미군정 관리와 경찰을 불신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었다.

150) 『濟州新報』, 1947년 1월 28일·30일, 2월 2일·4일·6일·8일.

151) 『京鄉新聞』·『東亞日報』·『서울신문』, 1947년 2월 5일.

152) 『漢城日報』, 1947년 2월 21일.

153) 『濟州新報』, 1947년 3월 28일.

2. 3·1사건과 무장봉기의 전조

가. 3·1사건과 총파업

1) 3·1사건

1947년 3월 1일은 제주현대사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만큼 역사흐름의 한 획을 그은 날이었다.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을 맞아 제주도 좌파세력이 주도한 시위에서 군정경찰이 발포함으로써 빚어진 이 날의 사건은 주요한 기폭제가 되어 그때까지 큰 소용이 없었던 제주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다. 이 발포사건에 항의, ‘조선에서 처음 보는 관공리의 총파업’¹⁾이 시작되었고 군정당국은 이에 맞서 응원경찰과 서청 등 우파 청년단체원들을 제주에 대거 내려보내 물리력으로 검거공세를 전개함으로써 미군정과 제주도 좌파세력이 전면 대립국면으로 돌입했다. 결국 3·1절 발포사건은 ‘4·3으로 가는 도화선’, 곧 기점(起點)이 되고 말았다.

① 3·1 기념준비위 결성

1947년에 들어서면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어려워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이미 한국문제에서 세계문제, 남·북한 문제에서 동서진영의 문제로 변전되어 가는 냉전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으로 좌파세력은 더욱 쫓기는 입장이 되었다. 특히 좌파세력은 1946년 10월 ‘대구사건’을 계기로 2개월 동안 남한 전역의 73개 시·군에서 격렬한 시위를 전개, 미군정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상대적으로 막대한 좌파조직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무렵에 결성된 남로당이 합법적인 대중정당을 표방하게 된 것도 이런 까닭에서 비롯되었다. 남로당은 1946년 11월 23일 창당된 뒤 조직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대중적 투쟁의 핵심과제를 미·소 공위의 재개 촉구에 두고 이를 추진해 갔다. 바로 이 시기에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이 다가오자 남로당 중앙당은 3·1 기념행사를 무기

1) 朝鮮通信社, 『朝鮮年鑑-1948年版』, 1947, 318쪽.

휴회에 들어간 미·소 공위의 재개 투쟁과 결부시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열 것을 각 지방 당에 지시했다.²⁾

이 해의 3·1 기념행사는 비단 남로당만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다. 좌파 정당·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우파진영에서도 준비위원회를 결성, 대중적 집회를 모색해 갔다. 이로 인하여 서울·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는 3·1 기념행사의 좌우 공동주최 방안이 모색되기도 했으나 결렬되고 좌파 따로, 우파 따로 기념식을 준비해 가는 형국이 되었다. 좌파진영에서는 좌파세력의 통일전선인 민전이 3·1절 기념행사 준비를 주도했다. 이 같은 전국적인 동원계획에 당황한 군정당국은 3·1절 기념행사는 가급적 제한하되 특히 가두 행렬과 데모 행진에 대해서는 엄금한다는 지침을 전국 미군 군정부대와 경찰에 시달하였다. 그리고 3·1절이 다가오자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³⁾

한편 제주도 좌파진영에서는 이런 전국 흐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때까지도 제주도 좌파세력은 온건성을 유지해 왔으며 미군정과의 전면적인 대립 국면도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폈듯이 1947년 초부터 민청·부녀동맹·민전 등의 결성을 통해 조직 확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1947년 2월 17일 '3·1 투쟁기념행사 제주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제주신보』에는 '3·1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이란 제목아래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28주년을 맞이하는 3월 1일 혁명운동기념일을 전도적으로 의의깊게 성대히 거행하기 위하여 3·1 투쟁기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7일 오후 2시에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 교육계, 유교, 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인사 다수가 읍내 김두훈(金斗勳)씨 댁에 회집하여 안세훈씨의 사회로 제반 토의가 있는 다음, 3·1 기념행사의 모든 문제를 준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안세훈씨, 부위원장에 현경호씨, 오창훈씨 양씨를 추대함과 동시에 총무부, 재정부, 선전동원부 등 부서를 설치하고 위원 28명을 선정하여 5시 반경에 폐회하였다.⁴⁾

제주도경찰국에서 펴낸 『제주경찰사』에도 2월 17일 읍내 관공서 단체 대표 및 지

2) 金南植, 『南勞黨研究』, 돌베개, 1984, 275~278쪽.

3) 『濟州新報』, 1947년 2월 18일.

4) 『濟州新報』, 1947년 2월 18일.

방유지로 3·1 기념투쟁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선임된 위원 27명의 신원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위원장 안세훈(53세)
- △ 부위원장 현경호(54세) 오창훈(35세)
- △ 총무부 김승문(金升文·33세) 박태훈(朴台勳) 김영홍(金永鴻·42세) 양을(梁乙·35세) 고창무(高菴武·35세)
- △ 재무부 김두훈(金斗璫·40세) 조응만(趙應萬·43세) 김태경(金泰京·50세) 김차봉(金次鳳·50세)
- △ 재정부 홍종언(洪宗彦·40세)
- △ 동원·선전부 이일선(李一鮮·53세) 김용해(金容海·35세) 김정로(金正魯·50세) 강어영(康御榮·35세) 김문규(金文奎·30세) 김태현(金泰炫·43세) 고칠중(高七鍾·35세) 임창운(任昌運·35세) 김덕훈(金德訓·39세) 김임생(金壬生·26세) 고원경(高元慶·26세) 이정숙(李貞淑·30세) 양군옥(梁君玉·30세) 김시봉(金時鋒·40세)⁵⁾

이 준비위원회에는 우익인사와 관공리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와 검찰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으로 위촉된 김차봉 경감은 당시 제주감찰청 부청장이었고, 김승문 경위는 제1구경찰서 수사계장이었다.⁶⁾ 또 양을은 제주검찰청 검찰관대리(검사시보)였다.⁷⁾ 『제주경찰사』는 이에 대해 “위원 중 일부는 본인의 의사를 듣지 않고 소위 전형위원이 임의대로 결정하여 추천 당한 자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⁸⁾

한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이 3·1 기념행사를 앞두고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리고 배후에서 조직적이고도 세밀하게 행사 준비에 대한 지침을 산하단체와 각 읍·면, 직장 세포들에게 시달하였다. 제주4·3연구소에서 발굴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에 나온 표어를 보면, 당면한 미·소 공위 재개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 등의 정치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 사회문제, 지역문제 등을 포괄

5) 濟州道警察局, 『濟州警察史』, 1990, 281쪽.

6) 『濟州新報』, 1947년 1월 16일·2월 8일.

7) 재조선 미육군사령부 군정청 사법부 임명사령 제15호, 1946년 11월 26일; 『濟州新報』, 1947년 4월 28일.

8)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281쪽.

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각 읍·면에서는 인위, 민청, 부동(婦同) 기타 각종 단체 및 직장 대표자로 3·1 기념 준비위원회를 즉시 조직할 것. 준비위원회에는 동원부, 선전선동부, 준비부를 둘 것. 각 부락 및 각 직장에서도 이에 준하여 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단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대표로 조직할 것.
2. 24일까지 3·1운동의 원인, 경과, 의의, 결과를 10월 인민항쟁과 현 정세에 결부시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전 인민의 진로를 밝힐 것. 각 부락 및 직장에서의 선전선동사업 및 동원 예상을 반드시 각 읍·면 준비위원회에 보고케 하고 즉시 각 준비위원회에서는 도준비위원회에 종합보고를 할 것.
3. 25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부락 및 직장대회를 소집하여 3·1 시위운동에 전원 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반(班) 및 직장 단위로 동원 조직하여 지휘자 및 자위대(2, 3인)를 선정하여 부락 준비위원회에 보고할 것.
4. 당일에 지휘자 및 자위대는 반 및 직장별로 동원시켜 시위행렬로 부락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집합할 것.
5. 각 읍·면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시간, 장소에 각 부락 준비위원회는 동원된 진원을 시위적 행렬로 집합할 것. 단체기 및 표기기(標記旗) 특히 인위기(人委旗)를 들 것. (이하 생략)

12. 표어 (일반)

민주주의적 애국투사를 즉시 석방하라!
인민항쟁 관계자를 즉시 석방하라!
최고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만세!
정권은 즉시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일제적 통치기구를 분쇄하라!
단일 누진제 즉시 실천!
입법위원을 타도하자!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 파쇼분자의 근멸!
삼상회의 결정의 즉시 실천!
인민 경계를 파괴하는 모리배의 철저한 소탕!
언론·출판·집회·결사·파업·시위·신앙의 절대 자유!
식량문제 해결은 인민의 손으로!⁹⁾

3·1절 기념 행사를 닦새 앞둔 2월 23일 민전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따라서

9)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 1947. 2.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화사, 1991, 161~163쪽에 수록).

3·1 행사 주최는 다른 지방처럼 민전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민전 도위원회 공동대표의 한사람인 안세훈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위원장이자 3·1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안세훈을 비롯한 민전 의장단은 2월 25일 경찰고문관 패트릿지 대위를 방문, 집회허가를 신청했다.¹⁰⁾

한편 제주경찰당국은 2월 22일 3·1 기념행사와 관련,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내용 등 4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① 각 관공서, 기타 각 단체의 기념행사는 각자의 직장에서 행할 것, ② 가두행렬과 데모행진을 전적으로 금지함, ③ 기타 일반의 기념행사는 리·동 또는 읍·면 단위로 하고 타 리·동, 읍·면 주민의 참가를 금함, ④ 리·동 또는 읍·면 단위로 기념행사를 행할 시는 반드시 집회허가원을 당국에 제출할 것¹¹⁾ 등이었다.

그러나 3·1 기념행사위원회에서는 지방에서는 면 단위로 기념식을 갖되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지역만은 제주북국민학교에 모여 연합으로 대대적인 기념식을 갖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제주북교 집회는 우여곡절 끝에 좌우익 합작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증언하는 우익인사도 있다.¹²⁾

2월 28일 제주도 군정장관 스타우트 소령이 3·1 기념행사위원회 대표 안세훈 등 여러 명을 미군정장관실로 초치, 3·1절 기념행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이 사실에 관해 『제주경찰사』에는 스타우트 소령은 강인수 감찰청장, 패트릿지 대위, 강동효(姜東孝) 제1구경찰서장이 배석한 가운데 시위행렬은 절대 금지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려면 읍내를 벗어난 서비행장에서 거행하라는 통첩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

그런데 이런 와중에 2월 23일 충남·충북 경찰청 소속 각 50명 씩 100명으로 편성된 응원경찰대가 제주에 들어왔다.¹⁴⁾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이 응원경찰대가 일주일 후 3·1절 발포사건을 유발한다.

섬으로 고립된 제주도에는 소요가 일어날 때마다 본토에서 군사가 급파되는 역사가 있었다. 봉건체제 해체기인 조선 말에 도합 여섯 차례의 민란이 일어났는데, 그 때마다 중앙정부는 군사를 파견, 진압했다. 일제시대에도 1919년 조천 만세운동,

10) 『濟州新報』, 1947년 2월 26일.

11) 『濟州新報』, 1947년 2월 24일.

12) 李仁九(당시 제주도청 상공과장)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 전예원, 1994, 261쪽에서 재인용).

13)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282쪽.

14) 『漢城日報』, 1947년 3월 4일.

1931년 제주농업학교 동맹휴학사건, 1932년 해녀봉기사건 등 항일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전라도 경찰부 소속 무장경관들이 제주에 내려왔다. 본토 진압대의 제주 파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태 발발 이후에 진압병력이 도착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 처음 시도된 1947년의 응원경찰 파견은 이런 관례를 깨고 사태 발발 이전에 보내졌다는 특이성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자료에는 “군정당국은 중앙에 제주도의 불안한 상태를 보고하여 특별대책을 세워주도록 한 결과 1백여 명의 경찰응원대가 도착하였고 연이어 서북 청년단이 입도하였다”¹⁵⁾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찰업무를 담당했던 한 경찰관 출신은 당시 3·1절의 집회·시위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며, 제주경찰 자체에서 특별히 응원경찰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응원대의 파견 배경에 다른 주장을 했다. 그것은 “복시환 사건으로 해임된 신우균 감찰청장이 서울에 올라가 제주경찰을 불신하는 모략에서 비롯된 감이 있다”는 주장이었다.¹⁶⁾

② 3·1절 발포사건

1947년 3월 1일 오전 11시 ‘제28주년 3·1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리던 제주북국민학교 주변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의 군중 수는 대략 2만 5천~3만 명으로 추산됐다.¹⁷⁾ 이날 10개 면에서도 별도의 기념식이 열렸는데 각 지방마다 수천 명씩 모였다. 경찰은 원래의 제주경찰 330명과 응원경찰 100명 등 430명으로 보강하고 이 가운데 150명을 제주 읍내에 배치,¹⁸⁾ 시골에서 올라오는 군중을 막아 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행사장 주변에는 제주읍뿐만 아니라 애월면·조천면 등 주변 주민들이 모여들었으며, 학생들도 대거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미 이날 오전 9시께 오현중학교에 집결, 한 차례 행사를 치른 다음이었다.

이 기념식에서 대회장인 안세훈은 “3·1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15)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277쪽.

16) 朴雲鳳(당시 제1구경찰서 사찰계장) 증언 (濟州道, 『濟州道誌 第2卷, 1993, 70쪽에서 재인용).

17) 군중 수에 대해 『東亞日報』(1947년 3월 4일)와 趙炳玉 경무부장의 ‘3·1사건 담화문’(『濟州新報』, 1947년 3월 22일), 金奉鉉·金民柱의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鬭爭史』(大阪 文友社, 1963) 44쪽에는 3만 명으로, 『濟州警察史』와 주취 측의 ‘3·1기념행사의 진상보고서’(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185쪽)에는 2만 5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주취 측의 진상보고서에는 군중 수를 ‘조직군중 1만 7천 명, 기타 군중 8천 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18)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497, February 27, 1947.

조국의 자주통일 민주국가를 세우자”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각계의 대표들이 나와 연설을 했는데, 주로 3·1 정신을 계승 자주독립을 전취하지는 내용이였다. 또 삼상회의 절대지지,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촉구하는 구호도 나왔다. 『제주경찰사』에는 이 날의 행사에 대해 경찰병력을 읍내 요로에 배치하여 군중들에게 귀가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 수만 군중이 집결하는 사태에 이르자 “경찰은 유혈진압을 피하고 주도자는 사후에 검거하기로 군정관과 협의, 북국민학교에서의 3·1절 기념행사 거행을 묵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⁹⁾

그러면 북국민학교 행사는 불법집회인가? 합법집회인가? 『濟州警察史』는 이에 대해 ‘무허가 집회’로 기록하고 있다.²⁰⁾ 또 미 6사단 정보참모부도 24군단에 제출한 정보보고 제1보에는 이 날 행사를 ‘허가받지 않은 집회’로 규정, 보고했다.²¹⁾

그러나 실제로는 허가받은 집회로 밝혀졌다. 조병옥 경무부장이 남한에서 일어난 3·1 기념행사와 치안상황을 밝힌 담화에서 제주도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집회 허가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2월 28일 집회만 허가하고 행렬은 허가치 않았던 바, 행렬까지 허가하라고 함에, 부득이 집회까지 허가 취소하였는데, 1일 시민이 남산국민학교(북국민학교의 오기)에 모였으므로 집회만 허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²²⁾ 이 날 집회의 합법성은 3·1 행사 주도자 안세훈에 대한 재판 판결문에서도 입증됐다. 1947년 10월 6일 제주지방심리원(심판관 崔元淳)은 안세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3·1 기념식은 당시 제주감찰청장의 허가를 수(受)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죄를 언도한다”고 판결했다.²³⁾

이날 오후 2시께 기념행사가 끝난 후 군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두시위가 시작되었다. 제주북국민학교를 나온 시위행렬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한 대열은 미군정청과 경찰서가 있는 관덕정 광장을 거쳐 서문통으로, 다른 한 대열은 감찰청이 있는 북신작로를 거쳐 동문통으로 이어졌다. 제주 읍내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 주민은 서쪽 대열에, 동쪽 지역 주민들은 동쪽 대열에 합류하여 마을로 돌아가면서 시가행진을 하며 위세를 부린 것이었다.

오후 2시 45분께²⁴⁾ 관덕정 앞 광장에서 기마경관이 탄 말에 어린이가 채어 소란

19)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283쪽.

20)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282~283쪽.

21)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00, March 2, 1947.

22) 『京郷新聞』·『朝鮮日報』, 1947년 3월 4일.

23) 濟州地方審理院 1947년 10월 6일, 宣告 1947년 刑公 第532號.

이 일어난 무렵에는 시위행렬이 관덕정 광장을 벗어난 시점이었다.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과 언론의 심층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관덕정 광장에는 ‘S’자 형태의 행진으로 위세를 부리던 시위군중이 지나간 다음이어서 건물 옆쪽에 듦성듬성 100~200명의 관람군중이 있었다고 한다. 사건은 한 기마경관이 관덕정 옆에 자리잡았던 제1구경찰서로 가기 위해 커브를 도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6세 가량의 어린이가 말굽에 채이면서 시작됐다. 기마경관이 어린이가 채인 사실을 몰랐던지 그대로 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관람군중들이 야유를 하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일부 군중들은 “저 놈 잡아라!”고 소리치며 돌맹이를 던지며 쫓아갔다. 당황한 기마경관은 군중들에 쫓기며 동료들이 있던 경찰서 쪽으로 말을 몰았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²⁵⁾

당시 관덕정 앞에는 육지에서 내려온 응원경찰이 무장을 한 채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기마경관을 쫓아 군중들이 몰려오자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제히 발포한 것이다. 이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 가운데는 국민학생과 젓먹이를 안고 있던 20대 여인 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망자의 신원은 허두용(許斗鎔·15세·제주북교 5년), 박재옥(朴才玉·21세·여), 오문수(吳文壽·34세), 김태진(金泰珍·38세), 양무봉(梁戊鳳·49세), 송덕수(宋德洙·49세)로 밝혀졌다.²⁶⁾

이 날의 발포는 위협 수준을 벗어난 것이었다. 희생자 가운데 광장 복판에 쓰러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경찰서와 상당히 떨어진 식산은행 앞 노상이나, 도립병원으로 가는 골목 모퉁이에 쓰러져 있었다. 도립병원의 검안 결과 희생자 중 1명을 빼놓고 나머지 모두 등뒤에 총탄이 맞은 것으로 판명됐다.²⁷⁾ 여러 정황을 볼 때, 공포만 쏘아도 군중들이 흩어질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먼저 과잉반응을 보인 응원경찰의 심리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날 도립병원 앞에서 두 번째 발포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응원경찰의 불안정한

24) 『漢城日報』, 1947년 3월 4일;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00, March 2, 1947.

25) 河斗鎔(75세, 濟州市 三徒洞, 당시 도립의원 경리주임, 2001. 6. 28. 체록) 증언: 鄭榮澤(80세, 日本 大阪市 生野區, 당시 시위 참여자, 2001. 12. 27. 체록) 증언: 『濟州新報』, 1947년 3월 12일; 『獨立新報』, 1947년 4월 5일.

26) 濟州道, 앞의 책, 72쪽.

27) 『獨立新報』, 1947년 4월 5일.

심리상태를 극명하게 표출한 사건이었다. 당시 도립병원에는 그 전날 교통사고를 당한 한 응원경찰관이 입원해 있었는데 동료 2명이 경호 차 병원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관덕정 쪽에서 총성이 나고, 피투성이된 부상자들이 업혀 들어오자 그들 중 한 명인 이문규(李文奎·충남 공주경찰서 소속) 순경이 공포감을 느껴 소총을 난사, 장제우(張濟雨) 등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²⁸⁾

미군 정보보고서도 도립병원 앞의 발포를 ‘비이성적(irreconcilable with rational thinking)’ 행위로 규정하면서 2건의 발포자들에 대한 심리분석을 다음과 같이 했다. 즉 “그들은 대전에서 훈련을 받았고, 1946년 가을 좌익 폭도들에 의해 동료 경찰이 잔혹하게 당했던 사실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²⁹⁾는 내용이다. 이것은 ‘대구 10월 사건’을 경험했던 자들로 과잉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심리여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날 발포사건 직후 제주감찰청 앞에서는 무장경관대와 시위대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시위대는 주로 학생들과 부녀동맹 소속의 부녀자들이었다. 이를 막아선 경찰은 기관총을 장착한 스리쿼터를 앞세운 50명 가량의 무장경찰로 집총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무장경찰은 경찰 고문관 패트릿지 대위가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한 시간 가량 대치하던 시위대는 제주신보 기자들의 설득으로 자진 해산했다. 이로 인한 쌍방의 인명피해는 없었다.³⁰⁾

한편 3·1 기념 행사와 시위를 둘러싼 충돌은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부산·정읍·순천·영암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끼리 충돌하거나 경찰의 발포로 사망 16명, 부상 22명 등 모두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³¹⁾ 그런데 『제주경찰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주의 3·1사건은 경찰이 가해를 하고 민중이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민심수습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³²⁾

그럼에도 당시 경찰당국은 민심 수습보다는 발포의 정당성 강조에 주력했다. 도립병원 앞의 발포에 대해서는 ‘무사려한 행위’로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핵심적인 사건인 관덕정 앞의 발포에 대해서는 치안유지의 대국(大局)에 입각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의 경무부 측에서는 3만여 시위군중이 경찰서를 포위 습격하려

28) 『濟州新報』, 1947년 3월 22일.

29)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March 20, 1947.

30) 『濟州新報』, 1947년 4월 6일.

31) 『京鄉新聞』·『朝鮮日報』, 1947년 3월 4일.

32)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289쪽.

고 했기에 불가피하게 발포했다는 해명에 나섰고, 일부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³³⁾

또 강인수 제주감찰청장도 이와 유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지방언론으로부터 통렬한 비난을 받았다. 즉 『제주신보』는 사실을 통해 “감찰청장의 성명에 의하면 발포 당시에 S자형으로 행진하던 시위대가 현장에 있던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 점은 본사 기자가 직접 목격하였기에 청장의 통찰이 정확하지 못한 게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며 증인이 필요하다면 몇 십 명이라도 증언케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³⁴⁾ 3·1 발포사건 직후에 사표를 제출한 박경훈 도지사도 “관직에 있는 나로서 무어라고 비판을 가할 수는 없으나 발포사건이 일어난 것은 시위행렬이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이었던 것과 총탄의 피해자는 시위군중이 아니고 관람군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³⁵⁾

미군 정보보고서도 발포사건의 동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찰서의 습격’에 비중을 두었다가 3월 20일에 이르러 정보기록을 수정했다. 즉 미 24군단 주간정보요약서에는 “제1구경찰서로 보고하기 위해 가던 한 기마경관이 우연히 그의 말에 달려든 한 어린이에게 경상을 입혔다. 그러자 이를 야유하던 200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군중이 경찰서 쪽으로 그를 뒤따라갔다.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은 군중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격을 가하였다. 이 사건에 앞서 시위대들은 광장 주변에서 S자 모양으로 열을 지어 행진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³⁶⁾

제주도 군정 책임자인 스타우트 소령도 “관덕정 앞 사건은 어린애를 친 기마순사에게 군중이 돌을 던지고 여세로 경찰서를 습격할 기세를 보임으로 발포하게 된 것이나 나중에 알아본 결과 군중들은 대로 만든 플래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뿐 곤봉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³⁷⁾ 그러나 경찰당국은 시종일관 이 문제를 ‘경찰서 습격사건’으로 규정하여 민심 수습보다는 강공책에 비중을 두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된 3월 1일 초저녁부터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통금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였다. 이미 충청도 응원경찰 100명이 들어와 있었으나 비상경계령을 펴다보니 경찰력이 모자라 가까운 전남 경찰에 응원경찰 지원을

33) 『東亞日報』, 1947년 3월 4일.

34) 『濟州新報』, 1947년 3월 12일.

35) 『獨立新報』, 1947년 4월 5일.

36)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March 20, 1947.

37) 『獨立新報』, 1947년 4월 5일.

요청했다. 1일 저녁에 목포 경찰 100명이 제주를 향해 출발했다.³⁸⁾ 제주 경찰은 2일부터 3·1 행사 위원회 간부와 중등학생들을 검속했다. 2일 하룻동안 학생 2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곧이어 무조건 구타와 고문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³⁹⁾ 여기에다 경찰 책임자의 발포 정당성에 대한 담화가 나오자 민심이 들끓었다.

본토에서 온 응원경찰에 의해 발포되었다는 점, 그리고 희생자들이 시위대가 아니라 단순한 관람군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좌파만이 아니라 우파진영 인사들도 우려의 빛을 나타냈다. 좌파세력은 이런 민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조직적인 반경(反警) 활동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뼈라 붙이는 일과 사상자 구호금 모금운동을 벌였다. 제주 민전은 각계가 참여하는 3·1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다만 3월 3일 관(官) 중심으로 조사단이 구성됐다.⁴⁰⁾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이런 좌파세력의 움직임을 배후에서 주도해 갔다. 그리고 3월 7일 각 읍·면 위원회에 '3·1사건 대책 투쟁에 대하여'란 장문의 지령서를 내려 보냈다. 이 지령서의 주요 내용을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 지난 3월 1일 제주읍에서 일어난 발포살해사건에 대하여 제주도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제주읍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연석회의에서 대정면의 건의문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하는 동시에 '당 투위'를 구성하고 이 투위가 전체적 3·1사건 대책 투쟁을 지도하기로 되었음.
- 투쟁방침으로는 ① 3·1 투쟁방침의 연장으로서 당의 영웅적 대중투쟁을 위한 합법 전취 ② 미제 및 반동 진영의 약체화에 대한 결정적 최후적 투쟁 ③ 제2혁명 단계의 대중적 투쟁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 사상적 무력적 준비.
- 조직활동은 도·면위에서는 당내 투쟁조직으로서 '3·1사건 투쟁위원회'를, 당외 투쟁조직으로서 '3·1사건 대책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읍·면·리·구에 구성할 것.
- 파업단에서는 다음의 요구조건과 성명서 1통은 미 지방장관에게, 1통은 중앙장관에게, 1통은 각 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3월 10일 정오를 기하여 총파업에 들어갈 것.
- 요구조건은 ① 발포책임자 강동효 및 발포한 경관을 살인죄로써 즉시 처형하라 ②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즉시 책임 해임하라 ③ 피살당한 동포의 유가족의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피상자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즉시 지불하라 ④ 3·1사건에 관련되어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⑤ 경관의 무장을 즉

3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69, March 2, 1947.

39) 『濟州新報』, 1947년 3월 8일·14일.

40) 『濟州新報』, 1947년 3월 8일.

시 해제하라 ⑥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즉시 축출하라.⁴¹⁾

이런 방침에 따라 3월 5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간부 수십 명이 제주읍 삼도리 김행백(金行伯) 집에 모여 '제주도 3·1사건 대책 남로당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장에 김용관(金龍寬), 부위원장에 이시형(李蓄珩)을 선출했다. 또 3월 9일에는 제주읍 일도리 김두훈(金斗煥) 집에서 사회인사 수십 명이 모여 '제주 3·1사건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위원장에 홍순용, 부위원장에 안세훈을 선출했다.⁴²⁾ 당시 안세훈은 남로당 제주도위원장이었고, 홍순용은 대표적인 우익인사로, 한독당 제주도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면 남로당 제주도당 지령서에 나오는 '대정면당의 건의'는 무엇이였을까? 이 물음에 당시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였던 이운방은 이렇게 밝혔다.

의외의 불상사건에 접한 도당본부는 그 첫 번째 대책으로서 유가족 원호의 모금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대정면당 역원회에서도 그 대책 강구를 위한 회의를 가졌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보아 잠시라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손톱에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완전무장을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들은 백수공권이어서 그들 총검부대와의 직접적인 정면 충돌은 도저히 생각조차 못 해볼 일이었다. 그러므로 평화적인 항의의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써 '전도 총파업'을 전일원치 가결하고, 조직부 이승진을 연락원으로 도당본부에 파견하고 이것을 건의하도록 하였다.⁴³⁾

여기에 언급된 이승진(李承晉)은 4·3 무장투쟁 때 유격대 총사령관을 맡게 되는 김달삼(金達三)의 본명이다.⁴⁴⁾ 이승진은 이때 22세(1925년 생)의 청년으로서, 대정중학원 교사이면서 남로당 대정면당 조직부장을 맡고 있었다. 대정면당은 군정당국에 항의의 표시로 평화적이면서도 그 강도가 가장 높은 전도 총파업을 도당에 건의하기로 하고 이승진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41)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3·1사건 대책투쟁에 대하여」, 1947. 3. 7.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화사, 1991, 189~195쪽에 수록).

42)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289~290쪽.

43) 李運芳, 「4·3사건의 진상」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1989, 208쪽에 수록).

44) 이승진이 '김달삼'이란 가명을 쓰게 된 것이 자기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한 사람이 있다. 이삼룡은 "1947년 말 조직에서 가명을 쓰자는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이승진에게 '자네 장인(강문석)이 일제 때 김달삼이란 가명을 썼는데, 그게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李三龍(79세, 日本 東京 荒川區, '4·3'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 2002. 7. 11. 채록) 증언.

2) 3·10 총파업과 군정당국의 대응

① 3·10 총파업

1947년 3월 10일부터 제주도에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통신기관, 운송업체, 공장 근로자, 각급 학교, 심지어는 미군정청 통역단 등 공무원과 회사원, 노동자, 교사, 학생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이었다. 이 파업은 경찰의 3·1 발포와 그 대응에 항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파업은 앞에서 살폈듯이 남로당 제주위원회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날 정오 제주도청에서 직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간담회를 통해 3·1사건진상 조사단에 진상보고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즉각 청원(廳員)대회를 소집했다. 오후 1시 박경훈 도지사와 김두현(金斗鉉) 총무국장 등을 비롯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청 청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청 3·1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리고 하지 중장과 스타우트 제주군정장관에게 보내는 6개항의 요구조건을 결정하고 "이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제주도청 청원 140여 명은 사무를 중지한다"는 파업결의를 했다. 제주도청의 파업 성명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과거 3·1운동은 조선민족이 다같이 조국을 찾고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학무도한 탄압과 지도자층의 미약한 일제와의 타협적 태도와 당시 국제정세의 불리로 말미암아 허다한 희생자만을 내고 실패에 귀(歸)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거 3·1운동을 회상할 때 감격과 새로운 희망에서 해방 후 3·1운동을 민족독립 전취에로 옮길 단계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과거의 선배를 추모하기 위하여 제주읍의 기념행사는 3만 대중이 모인 가운데 엄숙한 식을 거행하고 평화와 질서 있는 행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포악한 경관의 불법발포로 인하여 6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중경상자를 내게 되었음은 역사적 시일(是日)을 모독하고 민족적 이념마저 상실한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평화군중에 대한 발포는 과거의 역사에 유례가 없으며 일제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포악이요, 해방된 조선에 있어서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는 여사한 현실을 일관할 때 허다한 모순당착이 내포하여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30만 도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냉정한 입장에서 고찰하고 선량한 인민과 더불어 그 진두에서 용감히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성명한다.

요구조건

- ① 민주경찰 완전확립을 위하여 무장과 고문을 즉시 폐지할 것
- ② 발포책임자 및 발포경관은 즉시 처벌할 것

- ③ 경찰수뇌부는 인책 사임할 것
- ④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생활을 보장할 것
- ⑤ 3·1사건에 관련한 애국적 인사를 검속치 말 것
- ⑥ 일본경찰의 유업적 계승활동을 소탕할 것⁴⁵⁾

10일에는 제주도청 이외에도 항무서, 측후소, 신한공사, 제주·남일버스 등 운수 업체, 제주농업중학교·오현중·제주중·교원양성소의 교원과 학생, 제주동·남·북초등학교 교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11일에는 북제주군청과 제주읍사무소, 우편국, 식량사업소, 전매서, 무선국, 식량영단, 금융조합, 고녀(高女), 남진운수 등이, 12일에는 세무서, 세관, 통역단, 식산은행, 남전, 신한공사 농장, 생필품조합, 이용사회 등으로 확대됐다. 관공서, 학교, 기업체 등 파업단체 대표들은 3월 11일 회동, 파업의 효과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 연합적인 전선을 펴기로 하고 '제주읍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高禮龜)를 구성했다.⁴⁶⁾

파업은 제주읍 뿐만 아니라 삼시간에 각 면으로 퍼졌다. 3월 13일 정오까지의 각 면별 파업상황은 다음과 같다.

- △애월면 : 애월면사무소 애월중 하귀중 각 국민학교 우편국 금융조합
- △한림면 : 한림면사무소 한림중 각 국민학교 금융조합 우편국 전분공장
- △대정면 : 대정면사무소 대정중 어업조합 금융조합 우편국 전분공장 각 상점 가두는 철시
- △안덕면 : 안덕면사무소 국민학교
- △서귀면 : 남제주군청 서귀면사무소 금융조합 서귀중 우편국 각 국민학교 수력발전소
- △남원면 : 남원면사무소 국민학교
- △표선면 : 표선면사무소
- △성산면 : 우편국
- △구좌면 : 구좌면사무소 금융조합 우편국 각 국민학교
- △조천면 : 조천면사무소 조천중 우편국 각 국민학교⁴⁷⁾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밖에도 모슬포·중문·애월 지서 등지에서 제주출신 경

45) 『濟州新報』, 1947년 3월 12일.

46) 『濟州新報』, 1947년 3월 12일·3월 14일.

47) 『濟州新報』, 1947년 3월 14일.

찰관 중심으로 현직 경찰관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중문지서에서는 지서주임을 포함한 경찰관 6명이 3월 13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우리 중문지서 직원 일동은 오늘까지 치안확보라는 숭고한 정신으로 봉직하여 왔으나 금번 발포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적 정신은 수포로 화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악독한 명령을 복종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떠난다”는 내용의 담화를 지서 앞 게시판에 부착하고 지서를 떠났다.⁴⁸⁾ 이런 직장 이탈사태로 나중에 경찰관 66명이 파면 처분된다.⁴⁹⁾

『독립신보』는 제주도 파업사태에 “156개 단체 직원이 총파업에 참여했다”⁵⁰⁾고 보도했다. 그러나 『제주경찰사』에는 그 당시의 자료를 인용,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전 기관 단체가 총파업을 실시해 그 숫자는 166개 기관·단체에 41,211명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직능별 파업실태는 다음과 같다.

- △ 제주도청을 비롯한 군·읍·면사무소 등 23개 기관 515명
- △ 제주농업학교 등 중학교 13개교 교직원·학생 3,999명
- △ 제주북교 등 국민학교 92개교 35,861명
- △ 제주우체국 등 우체국 8개소 136명
- △ 제주여객 등 운수회사 7개 업체 121명
- △ 식산은행 등 은행 8개소 36명
- △ 남전 출장소 등 15개 단체 542명⁵¹⁾

그러나 이 기록에도 앞의 경찰관 파업 숫자는 빠져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 등이 문을 닫아 파업분위기에 동조했는데, 이런 민간인들의 파업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3·1 경찰 발포사건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유족돕기 모금운동이 제주지역의 유일한 지방지인 제주신보사가 회사 차원의 모금 캠페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활기를 띠게 됐다. 제주신보는 3월 10일자 신문에 ‘3·1사건 희생자 유가족 조위금(弔慰金) 모집’이란 사고(社告)를 게재했다. 이 사고는 “그들 희생자는 독립의 영광도 얻지 못한 채 천고의 원한을 남기고 무참히도 쓰러졌다”는 글귀에서 풍겨주듯,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부각시키고

48)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294쪽.
 49) 『서울신문』, 1947년 4월 2일.
 50) 『獨立新報』, 1947년 4월 5일.
 51)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290쪽.

있다. 이 같은 모금 취지문은 경찰의 정당방위론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이 모금운동은 전도적으로 확산됐다. 각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조위금이 모아졌다. 이 신문 3월 14일자에는 그 시점에서 “대정면민이 인민위원회에 기탁한 성금만도 3만 원을 돌파했다”고 보도, 대정인민위원회에서 그 지역 모금운동을 주도 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그때까지도 인민위원회가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금운동에는 우파계열 유지들도 참여했으며, 강인수 감찰청장과 일부 응원경찰도 성금을 기탁했다. 또 서울 제주도민단체인 ‘서울제주회’에서 50,000원을, 광주 제주도민단체인 ‘광주제주회’에서 23,025원을 보내왔다. 그 해 6월 모금운동이 마감할 때에는 기탁된 조위금이 317,118원에 이르렀다.⁵²⁾ 당시 중학생 월사금이 50원 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모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② 군정당국의 대응

“1947년 3월 1일 경찰이 제주읍에서 일단의 좌익 3·1절 행사 참가자들을 공격하여 몇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제주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여 일으킨 소요들은 제주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 의하여 비교적 느슨하게 억제되어 있었다. 공격을 받은 섬 주민들은 경찰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복을 하였고, 1년 여에 걸친 유혈폭력이 시작되었다.”⁵³⁾

이 글은 1949년 4월 1일 시점에서 제주도사태를 종합 분석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보고서에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 미군 보고서는 3·1사건을 ‘4·3사건의 도화선’으로 보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3·1사건이 발생된 직후 미군정은 제주도상황을 중시했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와 미군정청이 합동으로 제주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3월 8일 제주에 파견했다. 이 조사단의 책임자는 카스티어(James A. Casteel) 대령이었다.⁵⁴⁾ 미군정시기에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에 현역 미군 대령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52) 『濟州新報』, 1947년 6월 22일.

5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5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79, March 13, 1947; 『濟州新報』, 1947년 3월 12일.

미군 중앙조사단은 10일 오전 11시에는 스타우트 제주도 군정장관을 비롯한 제주도 조사단과 박경훈 도지사 등과 함께 관덕정 앞과 도립병원 앞 등 발표현장에서 목격자의 증언을 들으며 조사했다. 오후에는 제주도 군정장관실에 3·1기념 행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었다.⁵⁵⁾ 미군 중앙조사단은 이런 와중에 파업사태가 발생하자 파업의 원인과 그 배후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3월 12일 스타우트 소령과 제주신보 기자 사이에 일문일답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문) 3·1사건 진상조사가 완료되었다 하는데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답) 조사단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서를 제출하여 왔으나 내용을 읽어본 즉 조사에서 탈락된 점이 많으므로 보고서를 조사단에 반환하고 재조사를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전부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금 서울 중앙청에서 카스티어 대좌가 3·1사건 진상조사차 내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문) 그러면 조사는 언제 완료되어 발표하겠는가?.

(답) 가급적 속히 발표하겠다.

(문) 3·1 불상사건에 있어서 십 수명의 사상자를 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답)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확답할 수 없다.

(문) 10·11일 양일에 각 관공서 및 사회 등은 총파업을 단행하여 각 요구조건을 군정당국에 제시하였다 하는데 그 요구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파업할 원인이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요구조건은 3·1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많다.

(문) 금반의 파업으로 인하여 본도의 행정, 교통, 통신공사 등 모든 것이 질식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답) 파업을 하는 것은 결국 조선인에게 그 영향이 돌아가는 것이며 미군정엔 하등 영향이 없고 조선인 자신의 해가 되는 것이다.

(문) 조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미군정인 만큼 이 질식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군정의 의무라 보는데.

(답) 그것은 질문이 안된다. 감히 말하면 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온 파업단에 대하여 파업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충고도 하였다. 그리고 파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

(문) 그러면 그 요구조건은 부정당하다고 보는가?.

55) 『濟州新報』, 1947년 3월 12일.

(답) 진정서에 기입된 요구조건은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본다. 각 진정서를 보면 사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고 그 근거는 전부 1개소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진정서는 대동소이하다. (중략)

(문) 도민은 카스티어 대좌의 진상조사에는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명정대한 조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답) 카 대좌는 현재 모든 사실을 종합 중이며 조사 완료 후 상관에 보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당분간 알 수 없으나 그 조사는 신속히 하고 또 민주주의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카 대좌와 나는 누가 나쁘고 좋다 등 시비를 말할 수는 없으나 여하간 죄인은 재판에 회부하여 처치할 것이고 피고는 증거와 증언 등을 진술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⁵⁶⁾

미군 중앙조사단의 현지 확인조사가 실시되면서 경찰 측에서 일부 잘못을 시인하는 변화조짐이 있었다. 강인수 감찰청장은 3월 11일 “도립병원 앞에서 발포한 경관은 1구서 소속으로 충남에서 내도한 부대장이 당일 도립병원 앞에 배치시켰던 것인데, 무사려한 발포로써 중상자를 낸 사실은 어제 하지 사령부에서 진상조사차 내도한 카스티어 대좌가 조사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 역시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되어 도립병원 앞 발포사건에 대하여는 대단히 미안의 뜻을 표한다”⁵⁷⁾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이런 변화조짐도 10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이 전도로 확산되면서 다시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미군 조사단은 이런 일련의 흐름을 예민하게 관찰하면서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카스티어 대령 팀은 3월 13일 제주를 떠나면서 아무런 발표문을 남기지 않았다. 또 조속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던 제주도 군정장관 스타우트 소령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3·1사건에 대한 미군 조사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이들 조사팀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미군 정보보고서에서 이들 조사단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1947년 3월 14일 기록된 미 6사단 정보보고서의 내용이다.

제주도에서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당수의 선박회사를 포함한 모든 운송기관의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한국인이 소유한 공장뿐 아니라 군정이 감독하는 공장 등 모든 공장들도 파업에 들어갔다. 모든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56) 『濟州新報』, 1947년 3월 14일.

57) 『濟州新報』, 1947년 3월 14일.

도 파업중이다. 군정청의 한국인 직원 가운데 75%가 파업중이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파업의 근본 원인은 3월 1일 폭동 당시 경찰의 행동에 대한 증오심 때문인 것 같다. 최근 남로당이 이러한 증오심을 주민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폭력 사태는 없다.⁵⁸⁾

그 다음날인 3월 15일자에 작성된 미 24군단 정보보고서에도 6사단의 보고를 인용, “(제주) 총파업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3월 1일 폭동 당시 경찰의 행동에 대한 증오심 때문인 것 같다. 이 증오심을 남로당이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⁵⁹⁾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이들 미군 보고서는 제주 총파업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3·1 경찰 발포로 도민적인 반감이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미군 보고서는 이를 ‘증오심(hatred)’이란 극단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도민감정을 남로당이 대중 선동,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미군 정보보고서 중에는 매일 매일 보고하는 ‘일일정보보고’와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상황을 분석한 ‘주간정보요약’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3월 20일자에 작성된 미 24군단 주간정보요약서는 제주도 총파업사태에 대한 종합분석의 글을 싣고 있다. 이 주간정보요약서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총파업에 좌익만이 아니라 우익 쪽에서도 동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주읍의 총파업은 지난 3월 1일 벌어진 불법시위와 폭동으로 6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한 항의로 ‘좌·우익 공히 참가(both left and right)’하고 있다”⁶⁰⁾고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이 주간정보요약서는 제주도민의 좌익성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

제주읍과의 통신이 부분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제주읍의 총파업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다. 가장 최근의 보고는 파업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익단체에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분자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좌·우익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주민이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믿을 때,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파업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⁶¹⁾

58)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12, March 14, 1947.

5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80, March 15, 1947.

60)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March 20, 1947.

61) Ibid.

결국 미군 정보보고서는 3·10 총파업에 대해 제주도민의 경찰에 대한 반감과, 이런 감정을 부추기는 남로당의 대중선동에 의하여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군정은 그러면서도 사후 대응책으로 전자의 치유책, 즉 민심 수습보다는 후자의 문제인 좌익 척결에 주력하는 정책을 펴갔다. 이 사후처리 문제는 당시 경찰 총수였던 조병옥 경무부장에게 맡겨졌다.

미군 중앙조사단이 떠난 다음날인 3월 14일 오전 조병옥 경무부장이 미군 수송기 편으로 제주에 내려왔다.⁶²⁾ 조 부장 시찰에는 경무부 공안국 부국장 장영복(張永福) 총경과 경감이 지휘하는 무장 경호대가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제주도 도착 즉시 제주도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했다.

3·1절에 발생한 불상사에 접촉(接觸)하여 정치 산업 및 교육 각 기관의 활동이 마비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본관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에 왔다. 첫째 제주도의 동포제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경비상 만전대책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기만적 선전과 파괴적 모략으로써 제주도의 사회를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빠지게 할 근본적 요소를 제거할 근본방침도 수립되어 있다. 도정 책임자와 협의하여 그 실현에 옮기겠다. 바라건대 동포제위는 안심하기를, 그리고 경찰과 협력하여 제주도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를, 폭동과 같은 무질서의 행동같이 조선건국의 전도를 위협케 하는 것은 없다. 폭동의 빈발은 조선민족의 정치적 자치력과 도덕적 자율성이 결여함을 세계의 이목 앞에 폭로시켜 우리의 위신과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동포여, 반성 자중하여 일상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건국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⁶³⁾

이 포고문에서 경찰의 발포로 빚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경찰총수로서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표현한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비록 간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3·1 사건을 하나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의 만전대책이란 다른 지방의 응원경찰을 대거 투입, 물리력으로 무질서한 제주 치안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실제로 다음날 전남·전북 경찰청에서 2백여 명이 급파되는 등 응원경찰이 속속 증원되었다.

조병옥 경무부장은 제주 방문 첫날 오후에 제주도청을 방문, 파업중인 공무원들에게 파업 중지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한 공무원 출신은 “조병옥 경무부장

62) 『漢城日報』, 1947년 3월 15일.

63) 『濟州新報』, 1947년 3월 16일.

이 도청 안의 사무실에 도청 직원들을 불러 놓고 파업 중지를 촉구한 뒤 제주도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불온하다면서 건국에 저해가 된다면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놀라운 내용의 연설을 했다”⁶⁴⁾고 회고했다. 조병옥 부장은 순시 다음날인 15일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지역유지들을 대상으로 시국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설을 했다.

그 무렵 경무부 수뇌부는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규정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무부 최경진(崔慶進) 차장은 3월 12일 기자들에게 제주도 총파업 소식을 전한 뒤 “원래 제주도는 주민의 90%가 좌익색채를 가지고 있다”⁶⁵⁾면서 응원경찰 파견 계획을 밝혔다. 경무부 제2인자가 조병옥 부장의 제주 순시 이전에 이미 ‘주민 90% 좌익’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제주 섬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인식과 선입견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3월 14일 목포항을 떠난 전남 경찰 122명과 전북 경찰 100명은 다음날 제주항에 도착했다. 3월 18일에는 경기 경찰 99명이 파견됐다. 이로써 2월 말 제주에 들어온 충남·북 경찰 100명을 합치면 응원경찰은 421명으로 늘어났다.⁶⁶⁾

이 같은 응원경찰 수는 원래 있었던 제주경찰 330명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응원경찰대가 속속 제주에 도착하면서 제주경찰은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특히 제주 경찰관 가운데 일부가 파업에 동조, 근무지를 이탈하는 바람에 더욱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3월 16일에는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본토 경관들을 중심으로 특별수사과(과장 李虎)가 설치됐다.⁶⁷⁾

조병옥 경무부장은 응원경찰대가 충원된 15일부터 파업 주모자를 검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맨 처음 기습당한 곳이 제주도 총파업 투쟁위원회 본부였다. 투쟁위원회 간부들이 검거됐다. 3·1절 행사를 주도했던 민전 간부들과 남로당 간부들도 속속 연행됐다. 3월 18일 강인수 제주경찰감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은 전도적으로 약 200명 가량 된다”⁶⁸⁾고 밝혔다. 검속 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졌다.

64) 金亨中(88세, 제주도시 이도1동, 당시 제주도청 공무원, 2002. 9. 13. 체록) 증언.

65) 『漢城日報』, 1947년 3월 13일.

66) Hq. 7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9, March 13, 1947; 『獨立新報』, 1947년 4월 5일.

67) 『濟州新報』, 1947년 3월 18일.

68) 『濟州新報』, 1947년 3월 20일.

제주도에 6일 동안 체류한 뒤 귀경한 조병옥 경무부장은 3월 20일 군청청 기자실에서 제주도 3·1절 발포사건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2건의 발포사건 책임문제를 언급하면서 ① 제1구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제 사정으로 보아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함 ② 제주도립병원 앞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으로 보아 경찰관의 발포는 무사려의 행동으로 인정한다⁶⁹⁾고 밝혔다.

나. 검거선풍과 관민 충돌

1) 검거선풍

3월 10일부터 시작된 제주도 총파업은 3월 20일 전후해서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군 정보보고서는 “3월 19일 오전 8시에 접수된 보고서에 따르면 파업중인 군정청 고용원의 90%와 운송분야 고용원의 50%가 직장으로 복귀했으며, 상황은 진정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⁷⁰⁾ 국내 언론에서도 3월 20일부터 일제히 ‘제주 관공리 파업 일단락’이란 제목아래 보도하기 시작했다. 『경향신문』은 “제주도 관공리의 파업은 군정실시 이래 처음 보는 광범위의 대파업으로 그 사태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난 14일 경무부장 자신이 현지에 달려가 진상조사와 아울러 수습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 18일 오후 10시 조 경무부장으로부터 경무부에 보내온 보고에 의하면 18일부터는 파업을 중지하고 집무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고 보도했다.⁷¹⁾

『서울신문』은 3월 18일 현재로 파업에 참여한 174개 기관·단체·학교 가운데 56개 직장이 파업을 해제했고, 나머지 118개 직장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⁷²⁾ 그러나 이 통계를 자세히 보면 이 시점에서 관공서들은 거의 파업을 해제한 반면 초·중등학교에서 파업해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3월 말에 이르러 교원과 학생들의 파업도 해소됐다. 『제주신보』는 “제주시내 중등학교는 24일부터 속속 등교하기 시작하였는데, 24일의 학생 등교율은 약 30%였고, 26일

69) 『大東新聞』, 1947년 3월 21일.

7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83, March 19, 1947.

71) 『京鄉新聞』, 1947년 3월 20일.

72) 『서울신문』, 1947년 3월 21일.

에는 약 50%로 점차 등교율은 증가될 가망성이 있다”고 보도했다.⁷³⁾ 이로써 제주도 총파업 사태는 3월 말로 일단 진정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는 경찰당국의 대량 검속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조병옥 경무부장의 지시로 3월 15일부터 파업단 관련자 검거에 나선 경찰당국은 단속 첫날 3·1절 기념행사를 주도한 김두훈·고창무 등 제주 민전 간부들을 구속하는 것을 시발로 파업 중이던 직장의 간부들을 속속 연행 취조하기 시작했다. 3월 18일 강인수 제주경찰감찰청장이 밝혔듯이 이들 새 검거된 사람은 200명에 이르렀다. 이런 검속은 계속돼 연행자는 3월 말 300명, 4월 10일께는 500명에 달했다.⁷⁴⁾ 4월에 들면서 연행자 가운데 군정재판에 회부되는 사람, 훈방되는 사람 등으로 분류됐다.

구금된 사람 가운데는 고급관리, 교원, 경찰관, 단체 간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3월 31일에는 제주도청 간부들이 연행됐는데, 임관호(任琯鎬) 산업국장을 비롯한 10여 명이 경찰에 전격 연행, 제주사회에 충격을 줬다. 『제주신보』는 제주도 간부 연행사실을 이렇게 보도했다.

검거에 검거가 계속되어 결말을 예상치 못하게 하는 파업사건에 대한 검거취조는 그 수 무려 200여 명에 달하였다 함은 이미 본지에 기보한 바이거니와 동 사건에 대한 취조가 일단락을 지은 것처럼 보이던 거월 31일에 이르러 돌연히 또 검거선풍이 일어나 31일, 1일 양일에 도 산업국장 임관호씨를 위시로 학무과장 이관석(李琯石)씨, 인사과장 송인택(宋仁澤)씨, 회계과장 강산염(姜山炎)씨 등 도 간부 10여 명을 검거 취조 중이라는 바 특히 관공서에 치중하여 취조를 개시한데 대하여는 일반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예상외로 광범위한 파급으로서 귀추는 극히 주목되고 있다.⁷⁵⁾

여기서 주목되는 인물은 제주도 산업국장 임관호이다. 그는 파업을 단행한 제주도청 직원들에 의해 제주도청 파업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었다.⁷⁶⁾ 경찰 연행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그가 4·3사건이 한창 진행되던 1948년 5월부터 제주도지사에 재직하게 된다.

이들 연행자들에 대한 취조는 주로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파견 나온 경찰들이 맡았다. 3월 15일 제주경찰감찰청에 특별수사과가 설치됐는데 강인수 제주경찰감찰청

73) 『濟州新報』, 1947년 3월 28일.

74) 『濟州新報』, 1947년 4월 12일.

75) 『濟州新報』, 1947년 4월 4일.

76) 濟州道, 앞의 책, 75~76쪽.

장은 “(특별수사과는) 육지에서 내도한 경관으로써 조직되고 있다”고 밝혔다.⁷⁷⁾ 검거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사요원들이 속속 제주에 추가 파견됐다. 그들 중에는 1946년 10월 대구사건의 수사로 이름을 떨쳤던 사찰부서 요원들도 많았다. 이렇다 보니 경무부 자체에서 제주사건 수사 지휘관의 격상 필요성이 제기돼 3월 말에는 제1관구경찰청(경기) 김태일(金泰日) 부청장이 수사 총지휘관으로 제주에 파견됐다.⁷⁸⁾

이 무렵 연행자의 취조과정에서 심한 고문이 자행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경찰 당국자는 이를 부인했지만, 당시 경찰에 연행됐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고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청 공무원이었던 한 증언자는 “육지경관들이 취조하면서 파업 주동자와 배후를 대라면서 무조건 때렸다. 옆방에서도 비명이 그치지 않았고, 동료직원 한 사람은 무수히 구타당해 견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⁷⁹⁾

이런 고문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피고인들이 “경찰의 청취서는 사실무근이다. 고문이 심하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다시피 되었지만 이런 자백을 한 바는 없다”⁸⁰⁾거나 “말도 듣기 전에 구타 고문을 감행하는 등 민주경찰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⁸¹⁾는 주장을 했다.

이쯤 되고 보니 직장을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특히 교육계가 심각했다. 교원들이 구속되거나 수배령을 피해 피신하는 바람에 교단의 공동현상이 생긴 것이다. 제주북국민학교 학부모들은 3월 26일 긴급회의를 갖고 교원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임시교원을 채용해 줄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⁸²⁾ 이런 여파로 교단이 비게 되자 그 빈자리를 이북출신들이 내려와 채워 갔다. 3·1사건 직전까지 김달삼이 교사로 재직했던 대정중의 경우 제주출신보다 이북출신 교사가 더 많아지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이런 사회현상은 8·15 이후 귀환했던 젊은이들이 거꾸로 일본으로 나가는 역류현상을 일으켰다. 제일 제주인 동포사회를 연구해온 김민주는 “제주 청년 3,000명 가량이 해방 후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주로 1947년의 일이다. 사태 발생 이후인 48년

77) 『濟州新報』, 1947년 3월 18일.

78) 『獨立新報』, 1947년 4월 5일.

79) 高順協(당시 제주도청 축산계장)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64쪽 재인용).

80) 『濟州新報』, 1947년 4월 22일.

81) 『濟州新報』, 1947년 5월 10일.

82) 『濟州新報』, 1947년 3월 28일.

이나 49년에 일본으로 왔다는 사람들은 거의 거짓말일 것이다”고 주장했다.⁸³⁾

한편 좌파진영은 민전을 중심으로 3월 22일 전국적으로 24시간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철도와 공장 등이 멈추었다. 요구조건은 3·1절 기념대회에서 만행한 경찰관 즉시 처벌, 노동조합운동의 자유보장, 박헌영 체포령 취소, 전평 간부 즉시 석방, 진보적인 노동법령 즉시 실시, 좌익신문 정간 취소 등을 내걸었다.⁸⁴⁾ 미군정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전국적으로 관련자 검거에 나섰다. 이같은 군정당국의 강경대응으로 1947년 3월 1일 이후 3월 28일까지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남한 전체적으로 2,176명에 이르렀다. 이 속에 제주 검속자는 230명으로 분류됐다.⁸⁵⁾ 제주도 인구가 남한 인구의 1%임을 감안한다면, 제주 검속자가 전국 평균치보다 10배 가량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중앙 민전은 3월 19일 제주도의 3·1절 발포와 3·10 총파업을 중시, 특별조사반을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⁸⁶⁾ 3월 24일 제주에 도착한 민전 특별조사반은 본부 조사부장 오영(吳英)을 단장으로 윤학기(尹學起)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3·1사건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⁸⁷⁾ 그러나 3월 28일 수도경찰청의 체포명령으로 오영 단장이 서귀포에서 전격 체포되면서 이 조사는 중단되고 말았다.⁸⁸⁾ 오영 단장의 체포는 당시 전국적으로 단행한 ‘3·22 총파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민전 중앙본부는 이때도 제주도를 포함한 일련의 파업 감행이 경찰의 탄압에 항의하는 것이지, 미군정 자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미 6사단 정보보고서는 “민전은 미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띄워 최근의 파업은 경찰의 가혹한 탄압과 일제 경찰에 대항한 것이지 미군정에 대항한 것은 아니며, 제주도의 파업 역시 경찰에 대항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⁸⁹⁾고 기록하고 있다.

제주 총파업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동참한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경무부는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표를 제출한 경찰관들을 파업 경찰관으로 간주해 사문위원회에 회부,

83) 金民柱(71세, 日本 佐倉市 田町, 耽羅研究會 會長, 2002. 7. 8. 채록) 증언.

84) 김남식, 『南勞黨研究』, 돌베개, 1984, 280쪽에서 재인용.

85) 『民主日報』, 1947년 3월 30일.

86) 『漢城日報』, 1947년 3월 19일.

87) 『濟州新報』, 1947년 3월 26일.

88) 『濟州新報』, 1947년 3월 30일.

89)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32, April 3, 1947.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때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 수는 66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조사를 받았다.⁹⁰⁾ 이 파업 경찰관을 소속 별로 보면 △제주경찰감찰청 경사 4명, 순경 6명 △제1구경찰서 경사 3명, 순경 39명 △제2구경찰서 경위 1명, 경사 1명, 순경 12명이다.⁹¹⁾ 발포경찰관에 대해서는 도립병원 앞의 발포사건을 유발한 이문규 순경이 유일하게 파면처분을 받았다.⁹²⁾ 파업 참여 경찰관 수는 제주경찰의 20%에 해당했다. 그 빈자리는 다른 지역출신자들로 채워졌다. 또한 당시 미군정에서도 극우단체로 분류한 서북청년회 소속 단원들이 제주경찰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다.

한편 제주도에서 3·1사건 및 3·10 총파업 연루자들에 대한 군정재판이 1947년 4월 3일부터 개정됐다. 군정재판 제1회 공판의 주심은 제주도 군정청 법무관인 스티븐슨(Samuel J. Stevenson) 대위가, 검찰관으로 패트릿지 대위가 임회한 가운데 제주지방심리원 법정에서 열렸다. 군정재판이 열리면서 가장 난관에 부딪친 것이 통역문제였다.

4월 10일 제주경찰감찰청은 총 검거자 500명 가운데 군정재판에 송치된 자가 199명, 앞으로 송치 예정자가 61명으로 결국 군정재판 회부 건수는 도합 26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⁹³⁾ 또한 검거령이 계속 발동되고 있고, 검속자의 추가로 군정재판 송치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과 검찰관이 모두 미군장교들이 나서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군정재판은 4월 12일까지 4차 공판이 진행됐다.

그런데 러치 군정장관은 4월 14일 한국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재판을 중지하고, 이미 군정재판에 회부된 사건도 한국재판소로 이관하라고 명령했다.⁹⁴⁾ 이 조치는 표면적으로 군정업무의 한국인 이양방침에 따라 사법권도 한국인 법원과 검찰에 위임하는 것으로 공포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통역문제 등 군정재판의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3·22 총파업' 등으로 전국적으로 구속자 수가 2,000명을 넘고 있었다.

군정재판에서 한국 민간인 법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인 판사와 검사가 진행하

90) 『서울신문』, 1947년 4월 2일.

91) 『獨立新報』, 1947년 4월 2일.

92) 『서울신문』, 1947년 3월 21일.

93) 『제주신보』, 1947년 4월 12일.

94) 『漢城日報』, 1947년 4월 17일.

는 3·1사건 공판은 4월 21일부터 시작됐다.⁹⁵⁾ 이 일반재판은 5월 23일까지 10여 차례 열렸다. 이 기간 동안 모두 328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됐는데, 실형선고는 52명에 불과했고, 52명이 집행유예, 56명이 벌금형으로 풀려 나왔으며, 나머지 168명은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처리됐다.⁹⁶⁾ 이같은 사법부의 형량은 경찰당국의 강공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1947년 8월 다시 군정재판이 부활되는 발미가 됐다.⁹⁷⁾

3·1절 기념행사를 주도한 제주 민전 공동대표인 현경호에게는 벌금 5,000원이 선고됐으며,⁹⁸⁾ 나중에 검거된 남로당 제주도위원장이자 제주 민전 공동대표였던 안세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00원이 선고됐다.⁹⁹⁾ 최고 형량은 허두문(許斗文) 등에 내려진 징역 1년이었다.¹⁰⁰⁾ 이때 적용된 미군정 법령은 주로 맥아더 총사령관의 포고 제2호와 군정법령 제19호 제4조, 제72호 등이었다. 이 일반재판에서 3·1절 기념행사 준비모임 가운데 일부는 무허가로, 일부는 허가받은 것으로 판명됐다. 3월 1일 당일 행사 가운데 시위는 무허가였지만,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허가받은 집회로 판결됐다.

경찰의 검속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47년 3·1사건 이후 1948년 '4·3'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속됐다.¹⁰¹⁾ 이로 인해 유치장은 차고 넘쳤다. 나중엔 미군 감찰반이 “제주도의 유치장은 한국의 어떤 행형시설과 비교해 보아도 죄수들이 넘쳐나는 최악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10×12피트(3.04×3.65m)의 한 감방에 35명이 갇혀 있다. 비교적 작은 감옥 안에 전체 365명의 죄수가 수감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¹⁰²⁾

95) 『濟州新報』, 1947년 4월 22일.

96) 『濟州新報』, 1947년 5월 26일.

97) 申相俊, 『濟州島四·三事件』(下卷), 韓國福祉行政研究所, 2002, 140~141쪽.

98) 『濟州新報』, 1947년 5월 26일.

99) 濟州地方審理院 1947年 10月 6日, 宣告 1947年 刑公 第532號.

100) 『濟州新報』, 1947년 4월 28일.

101) 洪漢杓, 「動亂의 濟州島 이모저모」, 『新天地』, 1948. 8.

102)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 Governor Ryu, Hai Chin of Cheju-do Island,” March 11, 1948,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by Lt. Colonel Lawrence A. Nelson, USAMGIK.

2) 관민 충돌

① 주민-경찰 충돌사건

3·1사건 이후 지역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1947년 3월 우도와 중문리사건을 시발로 6월 종달리사건, 8월 북촌리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우도사건’은 1947년 3월 14일 우도의 민청 맹원들이 대중 시위를 감행한 후, 우도경찰관과건소의 간판을 파괴 소각한 사건이다. 이날 성산포 동쪽 해상에 위치한 우도주민 절반 가량인 1,000여 명은 국민학교에 집결, 3·1사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우도 섬 한바퀴를 돌면서 시위행진을 벌였다. 시위가 끝난 후 민청 간부 몇 명이 경찰관과건소에 찾아가 뼈라를 압수한 데 항의하고 과건소 간판을 불태워 버렸다.¹⁰³⁾ 당시 우도에는 경찰관 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손을 쓸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2일만에 비로소 경찰서에 알려져 응원경찰대 15명이 급파됐다.¹⁰⁴⁾ 그러나 민청 간부들은 이미 우도 섬을 떠난 뒤여서 일부 관련혐의자 만이 검거됐다.

‘중문리사건’은 1947년 3월 17일 시위군중에게 응원경찰이 발포, 주민 8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앞서 밝혔지만 3월 13일 중문지서 주임 양경한(梁慶漢) 등 제주 출신 경찰관 6명 전원은 제주읍에서 일어난 3·1 경찰 발포가 부당하다면서 사직했다. 당황한 경찰 측은 3월 15일 김경술(金京述) 경위를 반장으로 한 응원경찰대 20여 명을 중문지서에 배치했다.¹⁰⁵⁾ 응원경찰대는 곧이어 총파업에 가담했던 지역 인사들을 연행했다. 구금자 중에는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던 중문중학원 원장 이승조(李承祚)와 중문민청 위원장 김성추(金性秋)도 포함됐다. 이승조는 일본 간사이(關西)대학 법문학부 출신으로 해방 후 중문면장까지 지냈으며, 김성추는 일제 때 노동운동으로 옥고를 치렀던 인물로 해방 후에는 청년운동과 야학운동을 주도해 왔다.

3월 17일 오전 11시 중문면사무소 소재지 중문리 향사에서 지역주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면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 3·1사건으로 인한 수감자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하자고 결의하고, 오후 1시께 중문지서로 몰려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면장 등 지역유지들이 먼저 지서에 들어가 석방교섭을 벌였지만, 응원경찰

103) 『濟州新報』, 1947년 4월 2일.

104) 『濟州新報』, 1947년 3월 28일.

105) 『濟州新報』, 1947년 3월 24일.

대는 완강했다. 시위행렬이 지서 앞에 이르자 경찰 지휘관은 해산명령을 내렸다. 여러 차례 해산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경찰은 발포했다.¹⁰⁶⁾ 이 발포로 강상준(姜祥俊) 등 지역주민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¹⁰⁷⁾

‘종달리사건’은 1947년 6월 6일 민청의 불법집회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이 오히려 집회 참석 청년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날 밤 8시를 전후해 구좌면 종달리 바닷가에서는 마을 청년 2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민청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미군정은 5월 16일 행정명령으로 민청을 해산했는데, 중앙 민청에서는 5월 21일부터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6월 5일 합법단체로 민애청을 조직, 군정청에 등록했다. 종달리 민청은 이런 과도기에 민청의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집회를 소집한 것이다.

이런 집회 개최 정보를 입수한 세화지서 소속 김순영(金順影) 황종욱(黃鍾郁) 최한수(崔漢洙) 경찰관 3명은 단속차 집회 현장에 나타났다. 집회 참석자들이 동요하자 종달리 민청 부위원장인 부옥만(夫玉萬)이 나서서 “우리가 잘못된 일이 없으니 도망칠 이유가 없다”면서 대중을 선동했다. 곧이어 청년들과 경찰관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됐고, 수세에 몰린 경찰관들이 급한 김에 바다에 뛰어 들었다. 부옥만은 해초를 끊어 모으는 갈고리가 달린 장대로 경찰관들의 제복 옆구리를 걸고 잡아당겼다. 결국 실신상태의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소지했던 포승줄에 묶이는 신세가 됐다.¹⁰⁸⁾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몰고 올 후유증을 심각하게 여긴 청년들은 피신하기 시작했다. 부상당한 경찰관들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마차에 실려 세화지서로 옮겨졌다. 경찰은 곧 비상을 걸었다. 이때부터 경찰과 집회참석자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됐다. 미군 주간정보요약서는 “6월 6일 경찰관이 성산에서 북쪽으로 2마일 떨어진 구좌면 해안의 한 예인선에서 열리고 있던 남로당의 불법모임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폭행 당하고 포승줄로 묶였다. 사건 책임자들은 체포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⁰⁹⁾

경찰당국은 6월 16일 종달리사건 관련 수배자가 71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¹¹⁰⁾ 결국 수배자 71명 중 42명이 검거돼 재판에 회부됐다.¹¹¹⁾ 사건 주모자 부옥만에게

106) 『濟州新報』, 1847년 3월 24일.

107) 濟州道, 앞의 책, 80쪽.

108) 金汝玉(당시 사건현장 목격자)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46쪽 재인용).

109)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92, June 19, 1947.

110) 『濟州新報』, 1947년 6월 18일.

는 가장 무거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에게는 포고령 제2호와 군정법령 제19호, 형법 제95·106조를 적용, 공무집행 방해·소요·상해·불법체포죄 등을 물은 것이었다.¹¹²⁾ 일부 자료에는 종달리사건으로 경찰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부옥만의 4년 복역기간 중 살인죄나 폭행치사죄를 추가 적용한 적은 없다.

‘북촌리사건’은 1947년 8월 13일 조천면 북촌리에서 불법 빠라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지역주민들이 충돌, 쌍방의 부상자를 낸 사건이다. 광복절 비상근무에 들어간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순찰 도중 북촌리에서 빠라를 붙이던 사람들이 달아나자 뒤쫓으면서 총격을 가했다. 이 발포로 10대 소녀 장윤수(張允洙)를 비롯해 여자 2명과 남자 1명 등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에 흥분한 한 소녀가 사이렌을 울려 마을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경찰과 대항할 것을 결의했다. 때마침 마을을 벗어나지 못한 김병택(金秉澤) 순경 등 경찰관 2명이 붙잡혀 집단폭행을 당했다.

북촌 주민들은 이에 직성이 풀리지 않았던지 마을에서 3km 가량 떨어진 함덕지서에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함덕지서에서는 지서 지붕에 기관총을 장착, 공포를 쏘면서 시위군중들을 해산시켰다. 이 사건에 대해 『한성일보』는 “해방 2주년 기념식을 앞둔 13일 오전 11시경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는 경관과 민중의 충돌사건이 발생하여 양측에 각각 3명의 중상자와 다수의 경상자를 내었다고 한다. 동 사건의 원인은 다수의 빠라가 살포되어 있어 경찰이 출동하였었는데, 민중과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 한다”고 보도했다.¹¹³⁾

또 미 24군단 주간정보요약서에는 마치 2건의 사건이 별개로 일어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즉 “8월 13일 폭도 약 200명이 제주도 함덕지서를 공격해 여자 1명을 우연히 부상 입히고,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 증원된 경찰이 폭도들을 해산시켰다(6사단 보고)”와 “8월 13일 북촌과 함덕에서 경찰과 좌익분자들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무차별 난사로 다쳤다. 충돌은 경찰이 북촌마을 담벼락에서 좌익분자들이 붙인 포스터를 찢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증원된 경찰이 폭도들을 물리쳤다(CIC 정보요약)”로 돼 있다.¹¹⁴⁾ 이 사건으로 주민 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¹¹⁵⁾

111) 『濟州新報』, 1947년 6월 26일.

112) 『濟州新報』, 1947년 7월 12일.

113) 『漢城日報』, 1947년 8월 17일.

114)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02, August 28, 1947.

115) 『濟州新報』, 1947년 8월 30일.

한편 이 무렵 전국적으로 빼라 부착운동이 전개됐는데, 특히 제주도가 심했다. 미군정은 1947년 5월 17일부터 미·소 공동위원회가 속개되자 이 기간에는 정치적 집회를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 제3호를 발표했다. 이 정치집회 금지령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비난여론이 일자 7월 9일 행정명령 3호를 해제했다. 다만 정치적 목적의 가두시위는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전후해서 제주도에서 마을마다 빼라 부착과 무허가 집회가 성행했다. 경찰은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6월 한달 동안에 빼라 살포와 무허가 집회 혐의로 초등교원양성소 학생 8명과 제주농업중학교 학생 2명, 조천중학원 학생 2명을 비롯해 30여 명이 검거되거나 재판에 회부됐다.¹¹⁶⁾

재판부는 미군정 포고령 제2호와 군정법령 제19호 위반으로 기소된 초등교원양성소 학생 3명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초등교원양성소 학생 5명과 조천중학원 학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¹¹⁷⁾ 제주농업중학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제주농업중학교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 나온 3학년 학생 2명에 대해 '상부의 지시'라면서 퇴학처분을 내렸다.¹¹⁸⁾ 그러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퇴학처분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2·3학년 학생 전원이 합동 퇴학원을 제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¹¹⁹⁾

미군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1947년 8월에 이르러 반미 빼라도 살포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그 보고내용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강탈하려는 미군을 몰아내자"는 등 미군을 공격하라는 선동적인 빼라가 최근 제주도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¹²⁰⁾ 그러나 그 무렵 뿌려진 빼라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보리공출 문제였다.

② 군정수뇌부 전면교체

1947년 3월 시점에서 제주도정과 치안은 미국인인 제주도 군정장관(공식직함은

116) 『濟州新報』, 1947년 6월 6일·6월 16일·6월 20일·6월 26일·7월 2일·7월 4일.

117) 『濟州新報』, 1947년 6월 20일.

118) 『濟州新報』, 1947년 7월 6일.

119) 『濟州新報』, 1947년 7월 14일.

12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02, August 8, 1947.

‘수석민정관’)과 경찰 고문관, 한국인인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감찰청장 등 4자의 영향 아래 있었다. 모슬포에 경비대 제9연대장이 있었지만, 당시는 부대 창설 초창 기여서 제주도 지역문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어쨌든 연대장까지 포함한 제주 수뇌부 5명이 3·1사건 이후 모두 교체됐다.

제주도 군정장관은 1947년 4월 2일 스타우트 소령에 이어 베로스(Russel D. Barros) 중령이 부임했다.¹²¹⁾ 37세의 그는 미국 동해안 출신으로 신문기자 생활을 하다가 군에 투신, 태평양전쟁 때 필리핀 전투에서 활약했다. 종전 후 한국에 진주, 제2대 국방경비대 사령관으로 취임, 한국군 창군작업에 관여했다.¹²²⁾ 베로스는 1946년 11월 제주도 모슬포에 창설되는 제9연대 초대 연대장인 장창국 부위가 인사차 경비대사령관 방에 들렀을 때, 제주도에는 좌익세력이 강하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던 인물이다.¹²³⁾ 베로스는 그 해 12월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과 교체될 때까지 8개월 동안 제주의 군정업무를 총괄했다.

제주도지사는 초대 지사 박경훈에 이어 1947년 4월 10일 전북출신인 유해진(柳海辰)이 발령됐다.¹²⁴⁾ 남조선과도정부 임명사령에 박경훈 지사가 3월 12일자로 해면(解免)된 것으로 기록돼 사표 제출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제주신보』는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박 지사는 (3월) 14일 사직서를 스타우트 장관에게 제출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¹²⁵⁾ 『독립신보』는 “이번 사건(3·1사건과 3·10총파업)에 책임을 느껴 스타우트 고문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 한다”고 덧붙였다.¹²⁶⁾

43세의 신임 유해진 지사는 제주와는 연고가 없던 인물이었다. 그의 제주도지사 발탁은 미군정청 민정장관 안재홍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유해진은 해방직후 안재홍이 국민당을 창당하게 되자 그 길을 좇아 정당활동을 했으며, 국민당·신한민족당·한국독립당이 합쳐 한국독립당이 되자 농림부장을 맡았다. 민정장관 안재홍은 반공성향이 강한 유해진에게 제주도지사 임명사실을 알리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제주 땅에 좌익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고 민생과 치안 유지에 모든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

121) 『濟州新報』, 1947년 4월 6일.

122) 『濟州新報』, 1947년 4월 8일.

123) 張昌國, 『陸士卒業生』, 中央日報社, 1984, 113쪽.

124) 南朝鮮過渡政府 任免辭令 第1號, 1947년 12월.

125) 『濟州新報』, 1947년 3월 16일.

126) 『獨立新報』, 1947년 4월 5일.

부했다고 한다.¹²⁷⁾

제주경찰감찰청장은 1947년 3월 31일 서울출신인 김영배(金英培)가 발령됐다.¹²⁸⁾ 그는 서울대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제주청장으로 부임, 1948년 4월까지 재직하게 된다. 전임자가 독직사건으로 물러나게 되자 그 후임으로 2월 20일 취임했던 강인수 청장은 결국 3·1사건의 여파에 밀려 40일만에 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제주경찰사』에는 3·1절 발포사건 당일 “민심수습을 위해서 이 날짜로 강동호 경찰서장이 파면됐다”¹²⁹⁾고 기록하고 있으나 제1구경찰서 강 서장이 해임된 것은 1947년 5월 24일이며, 해임 사유도 발포사건의 책임이 아니라 수뢰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¹³⁰⁾

제주경찰의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찰 고문관 패트릿지 대위도 1947년 6월 초 교체되어 그 후임에 수도경찰청 수사과 고문관 래테루 대위가 부임했다. 미국 경찰에서도 15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래테루는 수사 베테랑으로, 3월에 카스티어 대령 조사단의 일원으로 제주에 내려와 3·1사건을 조사한 바 있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각 지방에서 뼈라사건 등으로 다수가 검거되어 있는데 조사할 때 고문을 감행하는 경관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며 파면시킬 것이다”고 말했다.¹³¹⁾ 한편 1947년 5월 21일에는 제9연대 연대장이 장창국에서 이치업(李致業) 소령으로 교체됐다.¹³²⁾ 이 연대장 교체는 3·1사건과는 연관이 없다.

군정당국은 이 같은 수뇌부의 물갈이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것은 그 후 제주도에서 진행된 내용을 볼 때 우익진영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수뇌부 인사에서 제주출신은 완전히 배제됐다. 심지어 경찰감찰청 간부들도 육지출신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 군정 수뇌부 가운데 제주도에서의 활동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유해진 도지사였다. 그는 제주도지사로 부임하면서 “나의 지향하는 바는 극우 극좌를 배제하고 중앙노선에 입각한 정치이념에서 우러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¹³³⁾ 그

127) 金琮培, 「道伯列傳」, 『제민일보』, 1990년 8월 11일.

128) 『濟州新報』, 1947년 4월 8일.

129)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288쪽.

130) 『濟州新報』, 1947년 5월 26일·6월 6일.

131) 『濟州新報』, 1947년 6월 18일.

132) 朝鮮警備隊 總司令部 特命 第58號, 1947년 5월 3일 ; 特命 第59號, 1947년 5월 4일.

133) 『濟州新報』, 1947년 4월 22일.

러나 그의 제주 행적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미군 보고서에도 ‘극우파’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는 재임 기간동안 오로지 정치적 반대파를 척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유해진 도지사는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경호원 격으로 서청 단원 7명을 데리고 왔다. 이 서청 단원들은 밤에는 지사관사 주변을 경비했다.¹³⁴⁾ 그는 도지사로 부임한 뒤 관공리의 숙정작업부터 손을 대었다. 총파업에 가담하거나 주도했던 관리들을 가려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파직시켰다. 이런 관공리 숙정작업은 도청뿐만 아니라 군청, 경찰, 운수, 체신 등 전 행정기관으로 파급됐다. 숙정선풍은 교육계에도 불었다. 공직사회에는 날로 빈자리가 생겨났다. 이런 공백을 주로 이북출신으로 채워갔다.

유해진 도지사는 부임 전에 전국적으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곡물수집에도 앞장섰다. 미군정은 전국적으로 1947년 하곡 수집량을 71만 1천 석으로 결정하고 제주도에도 1만 7천 석을 할당했다. 생산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체 생산량의 5분의 1을 수집량으로 책정 할당한 것이었다. 제주도 보리농사는 1946년에 이어 1947년에도 흉년이었다. 그러나 유 지사는 이런 지역실정에도 아랑곳없이 행정력을 동원해 독려했다.

주민과의 첫 충돌은 1947년 7월 말 한림면 명월리에서 발생했다. 행정당국에서 우익청년단체원들을 동원, 강하게 하곡 수집에 나섰다가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이다. 제주도 군정장관 베로스 중령은 명월리 충돌사건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유 지사가 한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¹³⁵⁾ 두번째 사건은 1947년 8월 8일 안덕면 동광리에서 발생했다. 마을 주민 50여 명이 하곡 수집 독려차 이장 집에 머물고 있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할당량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언쟁 끝에 공무원 3명을 집단 구타했다.¹³⁶⁾ 유 지사는 이런 마찰에도 불구하고 1947년 11월 할당량의 104%를 초과 수집했다고 중앙에 보고했다.

유해진 도지사는 6척 장신에 항상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다. 행동파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1947년 여름에는 유 지사를 암살하자는 뼈라까지 나돌았다. 미 24군단 정보보고서는 CIC의 보고임을 전제, “극우파(an extreme rightist)인 제주도지사는 좌익분자들에게 인기가 없다. 그의 암살을 요구하는 뼈라

134) 朴雲鳳(당시 제1구경찰서 사찰계장)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04쪽에서 재인용).

135) 『濟州新報』, 1947년 7월 30일.

136)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72, August 21, 194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08, August 16, 1947.

가 여러 장 뿌려졌다”고 기술하고 있다.¹³⁷⁾ 유 지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지 경찰에서 빌려온 권총을 늘 옆에 끼고 잤다는 일화도 있다.¹³⁸⁾

이런 유해진 도지사가 1947년 11월부터 미군정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이 감사는 미군정청 특별감찰관 넬슨(Lawrence A. Nelson) 중령의 지휘 아래 1947년 11월 12일부터 1948년 2월 28일까지 서울과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됐는데, 넬슨 중령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장문의 ‘특별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¹³⁹⁾ 일명 ‘넬슨 특별감찰보고서’로도 부르는 이 보고서에는 이번 조사가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 존슨(E. J. Johnson)의 지시로 실시됐다고 밝혔다.¹⁴⁰⁾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제주도군정장관 베로스 중령을 포함한 제주주둔 미군장교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인상이 짙다. 보고서에는 감찰을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주)행정의 모든 면이 정치에 오염되어 어떠한 지식인이라도 거부할 만한 행정의 한 유형을 생산해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⁴¹⁾

넬슨 중령은 유해진 도지사의 개인문제와 그가 이끌고 있는 제주도정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중앙의 군정관리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1947년 11월 21일 제주군정청 법무관 스티븐슨(Samuel J. Stevenson) 대위가 제출한 ‘제주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의견서의 일부이다.

제주도지사는 심지어 한독당이나 독립촉성회의 사소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동적으로 좌익분자로 가정하는 극우의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다. 그는 또한 좌우 제휴계획이나 중도인사들을 혐오하면서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다. 4월 1일 이후 본인이 알고 있는 한 그는 자신이 확실하게 승인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체의 회합도 허가하지 않았다. 본인은 온건 좌익인사들이 허가 없이 회합을 열고 있다고 확신한다. 조만간 경찰은 한 모임이 있을 것을 통보할 것이고 그 회합을 분쇄할 것을 요구받아 지도자를 체포할 것이다. 이 사건은 폭력을 불러 좌익 단체들에게는 많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 온건 좌익과 일부 중도파들을

13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02, August 8, 1947.

138) 金琮培, 앞의 글, 『제민일보』, 1990년 8월 29일.

139) 김창후, 「넬슨특별감찰보고서·제주도의 정치상황에 나타난 제주도지사 유해진」, 『제주도연구』 17집, 제주학회, 2000, 96쪽.

140)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 Governor Ryu, Hai Chin of Cheju-do Island,” March 11, 1948,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by Lt. Colonel Lawrence A. Nelson, USAMGIK.

141) Ibid.

더욱 좌파로 몰고 갈 것이다.¹⁴²⁾

같은 날 제주 주둔 미 방첩대(CIC) 대표 메리트(Henry C. Merritt)가 넬슨 중령에게 보고한 ‘유해진 지사의 행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은 1947년 6월 제주도에 부임한 이래 방첩대 지구대 책임자로 있다. 본인은 부임한 뒤 유해진 지사를 알았다. 유 지사는 극우인사이며 많은 우익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이다. 유 지사는 광복청년회와 대동청년단의 고문으로 있다. (중략) 제주도에 부임한 이래 본인은 집회 허용을 요구한 좌익단체를 알고 있지만 결코 허용된 적이 없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모든 좌익분자들의 회합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익단체들은 허가를 요청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장된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유 지사는 매우 독단적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와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강력한 좌익분자로 분류되기 쉽다.¹⁴³⁾

제주 군정청 법무관과 CIC 대표의 의견서는 유 지사가 극우파라는 점,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를 좌익분자로 몰고 가는 매카시즘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우익 집회를 제외한 좌파나 중도파의 집회를 허가하지 않아 불법집회를 양산해 내고 있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당시 집회 허가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었다. 유 지사의 집회 허가 편파문제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었다. 『제주신보』는 1947년 7월 베로스 중령과의 회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베로스 중령은 “유 지사는 일절 나에게 말하여 준 바 없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인사로부터도 편당적(偏黨的) 행동을 취한다는 보고가 있어 조사중이다. 또 집회는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정식 수속만 하면 허가는 하게 되었다. 차후 집회허가원을 신청하고 유 지사가 무조건 불응 시는 나에게 말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지만¹⁴⁴⁾ 이 문제가 시정되지는 않았다.

한편 제주도 군정장관 베로스 중령은 제주에 조사온 특별감찰실 넬슨 중령에게 유해진 도지사의 극우적 행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베로스는 이어 “그는 자신의

142) “Opinion of Political Situation in Cheju Do as of 15 November 1947,” November 21, 1947,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by Lt. Colonel Lawrence A. Nelson, USAMGIK.

143) “Governor Ryu, Hai Chin, Activities of,” November 21, 1947, *ibid.*

144) 『濟州新報』, 1947년 7월 28일.

편과 가까운 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체의 회합도 금지했다. 이와 같은 유 지사의 행위는 본인은 물론 제주도민들을 당혹하게 했다. 제주도 우익의 테러행위는 증가했고 지사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사가 부임한 이래 공직에서 해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¹⁴⁵⁾

넬슨 중령은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끝에 유해진 지사가 대단히 문제가 많은 도지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넬슨 특별감찰보고서’에 기록된 유 지사의 문제 부분을 추려 내면 다음과 같다.

- 유해진 지사는 지사로서 도정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무능력함을 드러냈다. 그는 무모하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이념을 통제하려는 쓸데 없는 시도를 해왔다. 그는 좌파를 지하로 몰고 갔으며 그곳에서 좌익활동은 더욱 위험스럽게 변모했다. 좌익세력의 숫자와 동조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 유 지사 재임 기간 경찰은 테러행위를 수없이 자행했다. 경찰 최고위직은 모두 본토에서 모집된 경찰관들로 채워졌다. 유 지사는 제주도 출신이 아니며, 많은 자리에 제주도 주민들에게 호응 받지 못하는 본토 사람들을 임명했다.

- 하곡 수집계획과 식량 배급과 관련한 유 지사의 행정은 한국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운영 미숙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그는 할당량의 15%를 수집해놓고 100%를 수집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하곡수집 계획을 미숙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군 지역의 불평등한 식량배급 체계를 야기시켰다.

- 제주 유치장은 한국의 어떠한 행형시설에서 보이는 넘쳐나는 죄수 수용시설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10×12피트(3.04×3.65m)의 한 감방에 35명이 수감됐다. 비교적 작은 유치장에 전체 365명의 죄수가 수감돼 있다. 지사는 수감자 대부분이 좌익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좌익을 우익으로 전향시키려는 그의 계획의 일단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¹⁴⁶⁾

넬슨 중령은 1948년 3월 11일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유해진 지사 교체 ②제주도 경찰행정에 대한 조사 ③미국인 경찰 고문관의 제59군정중대 임무 동시 수행 ④과밀 유치장 조사 등 4개항을 군정장관에게 건의했다.¹⁴⁷⁾ 그러나 딘(William. F. Dean) 군정장관은 경찰고문관의 검직 문제¹⁴⁸⁾와 과밀 유치장 조

145) “Memorandum to Lt. Col. Nelson,” November 21, 1947,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by Lt. Colonel Lawrence A. Nelson, USAMGIK.

146)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 Governor Ryu, Hai Chin of Cheju-do Island,” March 11, 1948, *ibid.*

147) *Ibid.*

사¹⁴⁹⁾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핵심적인 민심 수습용으로 건의된 유지사 해임 건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4·3사건을 맞게 된 것이다.

③ 우익진영 강화

4·3사건의 배경이나 전개과정을 볼 때, 미·소의 관계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협력 분위기일 때에는 한반도의 외딴 섬 제주도에도 화해바람이 불어오다가,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이 좁은 섬에도 정치적인 긴장상태가 심화됐다. 세계적 수준의 동·서 냉전체제는 1947년 3월 대소(對蘇) 강경정책이라는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 선포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동·서 냉전이 첨예하게 표출되던 곳이 한반도였으며, 결과론이지만 제주도는 그 결정적인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런 대립구도는 한꺼번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몇 차례의 강은 고비를 거치면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이념혼선도 빚어졌다. 미군정 하에서 그런 혼선이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1946년의 좌우합작운동 때였으며, 이어 1947년 5월부터 제2차 미·소 공위가 열리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제2차 공위는 미국과 소련이 제1차 공위에서 쟁점이 됐던 임시정부 참여 정당 및 사회단체의 자격문제를 놓고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고, 이에 협력한다는 정당·단체’로 합의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다. 드디어 한민당도 종래의 태도를 수정, 모스크바 협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또한 반탁 우익진영의 정당·사회단체도 태도를 바꾸어 공위 참가를 신청했다.¹⁵⁰⁾

그러나 막상 협의대상의 정당·단체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소의 대립은 다시 표면화됐다. 신탁 논쟁기인 1946년 2월부터 1947년 7월까지 미군정에 등록된 정당·사회단체는 166개에 이르렀는데, 우익정당의 70% 이상이 제2차 공위가 열리던 6월 한달 동안 등록된 것이었다.¹⁵¹⁾ 소련 측은 이를 ‘급조된 정당·단체’로 규정, 공위 참여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제2차 미·소 공위도 1947년 8월에 이르러 결렬 위기를 맞게 됐다.

148) "Assignment of Personnel," March 29, 1948, *ibid.*

149) "USAMGIK, Department of Justice," April 26, 1948, *ibid.*

150) 『서울신문』, 1947년 6월 17일.

151) 崔相龍, 『美軍政과 韓國民族主義』, 나남, 1988, 277~278쪽.

이 과정에서 미군정은 표면적으로 좌·우익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제주도 관료들도 같은 입장이었다. 제주도 군정장관 베로스 중령은 1947년 7월 “좌·우익의 정당을 물론하고 그 관계자가 관공리 직원으로 취직할 수가 있다. 이것이 즉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표명했다.¹⁵²⁾ 심지어 김영배 제주경찰 감찰청장도 그 무렵 “나의 희망은 제주도만은 좌·우가 손을 잡고 나가도록 합작운동에 노력할 심산”이라고 밝혔다.¹⁵³⁾ 그러나 이런 입장들도 제2차 미·소 공위가 결렬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1947년 8·15 기념일을 앞두고 실시된 좌익 검거사건은 그 시발이었다. 8월 12일 새벽부터 경찰은 좌파세력에 대한 검거작전에 들어갔다. 이틀새 서울에서만 민전·남로당·전평·전농 등 좌파정당 간부 1,30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군정청은 이 사건으로 검속된 사람이 모두 13,769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¹⁵⁴⁾ 『독립신보』는 “해방 이후 최대 규모의 검거선풍”이라고 표현했다.¹⁵⁵⁾ 군정당국은 이에 대해 ‘8·15 폭동음모’가 탐지되었기에 치안 유지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검속했다고 밝힌 반면, 좌파진영에서는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 경찰당국도 8월 14일부터 민전 간부와 남로당원, 공무원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검거된 사람은 제주도청 공무원 8명을 포함해 민전 간부와 세무서 직원, 도립병원 의사와 간호사, 우편국 교환수 등 20여 명에 이르렀다.¹⁵⁶⁾ 구금된 인사 가운데는 초대 도지사를 지냈던 박경훈도 포함되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1947년 7월부터 제주 민전 의장을 맡고 있었다.

제주 민전은 3·1사건과 총파업 이후 불어온 검거바람으로 큰 시련을 겪었다. 민전 임원들은 체포되거나 검거령을 피해 일본 등지로 피신한 사람이 많았다. 그 활동도 한동안 소강상태였다. 그러다가 5월 제2차 미·소 공위가 재개되자 민전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제주 민전도 이에 발맞춰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7월에 전 도지사 박경훈을 의장으로 추대하고, 항일운동가이자 초대 조천면장을 지낸 김시범을 부의장으로 영입했다.

『제주신보』에서 “전 지사 박경훈씨의 정계 등장은 의외의 일이었고 앞으로 동씨의

152) 『濟州新報』, 1947년 7월 30일.

153) 『濟州新報』, 1947년 7월 16일.

154) 김천영, 『연표 한국현대사』, 한울림, 1985, 766쪽.

155) 『獨立新報』, 1947년 8월 13일.

156) 『濟州新報』, 1947년 8월 20일·8월 22일.

활약은 자못 주목되는 바”라고 보도¹⁵⁷⁾할 정도로 그의 민전 의장 추대 소식은 제주 사회에서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졌다.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이면서 제주도 최대 갑부(朴宗實)의 장남이자 미군정 하에서 초대 지사를 지낸 그가 군정당국과 대립관계에 있던 민전 수뇌부가 되리라곤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박경훈은 3·1절 발포사건에 대해 벌써부터 경찰에 잘못이 있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사태의 수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자 도지사직을 사퇴했다는 게 그의 부인의 증언이다.¹⁵⁸⁾ 3·1 발포사건 ‘총탄의 피해자는 관람군중이었다’는 그의 발언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넬슨 특별감찰보고서’ 안에는 박경훈 등의 체포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서울고검 검찰관 이호(李濤)의 보고내용을 보면 박경훈은 1947년 7월 말 민전 의장의 자격으로 제주경찰감찰청장을 만나 미·소 공위에 제출할 진정서를 서명날인 받아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그 진정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견해, 즉 국호는 인민공화국으로, 행정기관은 인민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민전 회원에 한해 받도록 승인된 진정서를 일반 도민들로부터도 받음으로써 공중치안을 교란한 혐의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¹⁵⁹⁾

박경훈은 연행 나흘만인 8월 17일 석방됐다. 다른 연행자들도 속속 풀려 나왔다. 일부 구금자가 경찰당국에 의해 불법집회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것도 보석금으로 풀려 나왔다. 요란스러운 검거에 비해서는 싱겁게 끝났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군정장관 베로스 중령이 박경훈을 옹호하고 나섰다. 베로스는 “박경훈 전 지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매우 친미적인 인사이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와 우익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좌익인사가 됐지만 군정에 위협인물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¹⁶⁰⁾

제2차 미·소 공위가 결렬되고 1947년 9월 한반도 문제가 미국에 의해 서방진영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입된 유엔에 상정되면서 미·소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고, 국내 정세의 양극화는 첨예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우익진영의 세력이 급속도로 강화되던 시기도 바로 이 시점이다.

157) 『濟州新報』, 1947년 7월 18일.

158) 崔甲壽(朴景勳의 부인)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86쪽에서 재인용).

159) 1947년 12월 5일, “박경훈 외 3명에 대한 포고 제2호 위반 등 피고사건 처리상황,”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by Lt. Colonel Lawrence A. Nelson, USAMGIK.

160) “Memorandum to Lt. Col. Nelson,” November 21, 1947, *ibid.*

제주도에서도 1947년 9월부터 우파청년단체의 조직 강화가 두드러졌다. 4·3사건의 발발배경과 진행과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대동청년단과 서북청년회 제주조직이 바로 이 시기에 발족됐다. 또한 광복군 출신 이범석(李範奭)이 이끄는 조선민족청년단 제주도단부도 창립됐다.

대청은 광복군 총사령관 출신인 이청천(李青天)을 중심으로 1947년 9월 21일 발족됐다. 22개 우파청년단체를 규합한 대청은 창립 때부터 이승만의 정치노선 지지를 분명히 했다. 당시 제주도에는 우파청년단체로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 제주도지부(위원장 김충희)와 광복청년회 제주도지회(단장 김인선) 등 두 개 단체가 조직돼 있었는데, 이 두 단체는 대청이 흡수한 단체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통합 문제가 거론됐다.

따라서 중앙의 모임 통합 소식을 전해듣고 1947년 9월 2일 두 단체의 제주조직은 대동청년단 제주도지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제주의 두 우파청년단체는 임원 구성문제 등을 둘러싸고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져 결국 '2개의 대청'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즉 9월 30일 광복청년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청 제주도지단부를¹⁶¹⁾, 10월 3일에는 독립촉성청년연맹 중심으로 대청 제주도지부가¹⁶²⁾ 각각 결성된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11월 4일 공동으로 대청으로의 통합 성명을 발표하고 12월 21일 대청 제주도단부 임시대회를 열어 단장에 김인선을 선임하고 김충희를 고문으로 추대함으로써 분열상을 매듭지었다.¹⁶³⁾ 1947년 11월 중앙에 보고된 대청 제주지부의 단원 수는 1,000명이었다.¹⁶⁴⁾

그런데 이 두 단체의 갈등을 봉합하고 합치는 일에 미군 CIC가 개입했다는 보고서가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또 대청의 단원 모집과정에서 잦은 테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미 24군단 정보보고서는 CIC 정기보고를 인용, “제주도는 최근 대동청년단의 단원 확보운동과 관련하여 테러행위가 잦았던 곳이다. 방첩대는 제주의 (테러 행위) 중단과 모든 우익단체의 통합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고 기록했다.¹⁶⁵⁾ 대청 제주조직은 각 지방으로 확산, '4·3' 발발 당시에는 경찰지서에서 단원들이 철야근무를 하는 등 '경찰보조단체'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161) 『濟州新報』, 1947년 10월 4일.

162) 『濟州新報』, 1947년 10월 6일.

163) 『濟州新報』, 1947년 12월 24일.

16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88, November 19, 1947.

16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67, October 24, 1947.

대청 제주조직이 제주출신 반공청년들로 구성된 반면, 서청은 이북출신으로만 조직된 반공청년단체이다. 서청 제주도본부가 정식으로 결성된 것은 1947년 11월 2일이다. 이날 제주극장에서 제주도본부 결성대회를 열고 위원장에 장동춘(張東春)을 선출했다.¹⁶⁶⁾ 그러나 서청 단원들은 1947년 3·1사건 직후부터 제주에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는 북한 공산당 집단에 쫓겨 급히 도망쳐 나와 빈털터리가 많았다. 처음에는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1947년 하반기부터는 경찰, 행정기관, 교육계에서 근무하는 단원들이 늘어났다.

서청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선우기성이 그의 저서에서 ‘서청! 하면 울던 아기도 울음을 그친다’는 유행어가 나돌았다고 회고할 정도로¹⁶⁷⁾ 날이 갈수록 그 위세가 등등했다. 서청은 당시 이승만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미군 정보보고서는 서청이 “반민주적”이라고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해 정력적으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빨갱이 사냥’에 매달렸다고 지적하고¹⁶⁸⁾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미·소 공위에 협력하거나 반대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¹⁶⁹⁾

제주도에서도 좌익분자를 철퇴한다는 미명 아래 서청에 의한 테러가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상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결부됐다. 그들에게는 정규 봉급이 아예 없었다. 미 24군단 정보보고서의 기록, 즉 “서청 순회 조직에 의해 제주도 주민들에게 가해진 테러 소동에 대해 서청 지도자는 11월 18일 방첩대에 사과하고, 단원들이 더 이상 테러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익들은 서청 자금 모금을 테러에 의존해 왔다. 구타사건이 5건 일어났고, 적어도 같은 수의 협박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에서도 그 실상을 읽을 수 있다.¹⁷⁰⁾ 미군 정보보고서는 그 다음날의 CIC 보고를 통해 서청 제주위원장이 제주 방첩대에 ‘제주도는 조선의 작은 모스크바’라고 말했다고 덧붙이고 있다.¹⁷¹⁾

이 무렵의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 중에는 서청 대원의 폭력행위를 처벌한 기록도 있다. 기소된 서청 대원은 서청 제주도본부 총무부장 이 아무개로 1947년 11월 28일 민청 활동을 했던 청년을 서청 사무실로 끌고가 무수히 구타했는가하면 3일 후에

166) 『濟州新報』, 1947년 11월 8일.

167) 鮮于基聖, 『韓國青年運動史』, 錦文社, 1973, 713쪽.

168)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90, June 3, 1947.

169) Ibid.

17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92, November 24, 1947.

17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93, November 25, 1947.

는 밀항선을 단속한다고 주민을 붙잡아 심문하면서 고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서청 대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¹⁷²⁾

‘4·3’ 발발 이전에 제주에 상주한 서청 단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좌파 쪽의 자료는 제주읍 300명을 포함해 모두 760명이 상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³⁾ 서청 단원의 제주 파견은 ‘4·3’ 발발 이후 더욱 늘어난다. 당시 서청 단장을 지냈던 문봉제(文鳳濟)는 조병옥 경무부장의 요청으로 4·3사건이 나자마자 서청 단원 500명을 경찰전투대 요원으로 보낸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¹⁷⁴⁾ 서청 단원들에게 ‘제주도는 악몽의 섬’이었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서청은 악몽의 그림자’였다고 표현한 글이 있다.¹⁷⁵⁾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이보다 더 험악했다.

족청 제주도단부 창립위원회 결성식은 1947년 11월 5일 제주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결성식에서 위원장에 제주도건준 부위원장을 지낸 최남식을 선출했다.¹⁷⁶⁾ 그러나 최남식이 바로 그 날 사임함으로써 후임에 백찬석(白璨錫)을 선임했다. 우파청년단체의 후발조직인 족청은 단원 모집과정에서 선발조직인 대청과 심지어 서청의 견제를 많이 받았다. 특히 1948년 5·10 단독선거를 앞두고 총선거 참여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시 단독정부 수립을 주도하던 이승만 계열의 불만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4·3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족청 단원들이 ‘빨갱이’로 몰려 집단으로 사살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이런 우파청년단체들이 조직을 강화하는 데 유해진 도지사와 미 CIC의 역할이 컸다. 우익강화 정책을 폈던 유해진 도지사는 광복청년회와 대동청년단의 고문을 각각 맡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역유지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백색테러의 배후인물로 지목되는 사건이 있었다.

1947년 9월 6, 7일 이틀간 제주민전과 관련이 있는 제주읍내 지역유지 집에 괴한 6~7명이 잇달아 침입, 닥치는 대로 기물을 부수고 사람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제주사회에 충격을 줬다. 첫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제주도식량사무소 박태훈 소장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침입자들은 박 소장을 당시 제주민전 의장인 박경훈으로 잘못 알고 테러를 가했다는 것이다. 박태훈은 박경훈의 동생이었다.

172) 濟州地方審理院 1947年 12月 30日, 宣告 1947年 刑公 第613號.

173) 金奉鉉·金民柱,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鬭爭史』, 日本 文友社, 1963, 53쪽.

174) 北韓研究所, 『北韓』 1989년 4월호, 127쪽.

175) 李敬南, 「青年運動半世紀」, 『京鄉新聞』, 1987년 1월 28일.

176) 『濟州新報』, 1947년 11월 8일.

둘째날 침입자들이 공격한 집은 박경훈 바로 앞에 민전 의장을 맡았던 현경호 제주 중 교장 집이었다. 당시 현경호는 집에 없었는데, 감찰청 직원이라 사칭한 침입자들은 10분간 방안을 수색한 뒤 현경호 부인을 곤봉으로 강타했다는 것이다.¹⁷⁷⁾ 수사에 나선 미 CIC는 사건 발생 직전에 괴한들이 두 차례 현 교장 집에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국을 조사했다. 그런데 교환수는 그 전화가 유해진 도지사의 집에서 건 것이라고 진술했다. CIC의 추궁을 받은 유 지사는 전화 건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했다.¹⁷⁸⁾ 이 침입자들은 서청 단원들로 알려졌으나 사건 처리는 호지부지됐다.¹⁷⁹⁾

미 CIC는 정치단체의 움직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미 CIC 요원들이 제주에 상주하게 된 것은 3·1사건과 3·10 총파업 직후인 1947년 3월 중순께였다. 제주 CIC의 첫 보고는 그 해 3월 21일 제출된 ‘제주 우익정당이 허약하다’는 내용부터 시작됐다.¹⁸⁰⁾ 남한을 담당했던 「971 방첩대 역사」에는 1947년 5월 당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9개소에 지구대가 설치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⁸¹⁾ 이 기록에 의하면 CIC 제주지구대는 1948년 말에도 계속 운영된 것으로 나와 있다.¹⁸²⁾

CIC의 제주 상주가 단순히 사건분석 보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도와 그 역학까지 분석하면서 상황에 따라 개입해온 사실은 여러 군데의 정보보고서에서 입증되고 있다. 제주에서 2개의 조직으로 혼선을 빚던 대청을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통합했다거나 테러를 자행해온 서청 단원들이 CIC에 사과하고 적법 준수를 약속했다는 내용¹⁸³⁾ 등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주 CIC는 1947년 12월에 의미심장한 보고를 한다. 그것은 “제주도의 여론은 만일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정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모든 조직들이 제주경찰감찰청을 공격하리라는 것”이라는 첩보보고였다.¹⁸⁴⁾

또한 1948년 1월 제주 CIC의 보고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최근 좌익인사들의 활동’이란 제목의 미 24군단 정보보고서도 눈길을 끈다.

177) 『濟州新報』, 1947년 9월 10일.

178) 위의 신문;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32, September 13, 1947; November 21, 1947, “Governor Ryu, Hai Chin, Activities of,”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by Lt. Colonel Lawrence A. Nelson, USAMGIK.

179)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88쪽.

18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89, March 26, 1947.

181) United States Army Intelligence Center, *History of Counter Intelligence Corps*, part, CIC During the Occupation of Korea (March 1959), p.138.

182) Ibid., p.8.

183)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16, December 4, 1947.

18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08, December 13, 1947.

제주도는 우익진영과 좌익진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지식인층 지도자들과 대중들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다. 좌익인사들은 이렇다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으며, 소위 좌익분자라고 불리우는 인사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국내외적 정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익이나 좌익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종류의 선전선동에 쉽게 휩쓸린다. 우익인사들은 '빨갱이 공포'를 강조하며 주로 청년단체와 공직에서 좌익인사들의 척결을 통하여 섬을 장악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도의 좌익은 반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테리는 우익이 선동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다.¹⁸⁵⁾

다. 2·7사건과 고문치사

1) 2·7사건

한반도 문제를 상정한 유엔 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미국 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결의는 한국 국민 대표들을 선거로써 뽑되 공정한 선거를 감시할 목적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을 설치하며, 선거는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남북한에서 동시에 인구비례에 따라 보통선거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거 후 가급적 빨리 국회를 구성,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결의는 그러나 소련의 협조 없이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예견됐던 대로 소련의 거부로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 유엔은 한국위원단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자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안'을 상정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의미한 것이었다.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반대 이유는 한반도가 영구히 남과 북으로 분단된다는 것이었다. 이 반대대열에는 좌파 진영만이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

185)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23, January 23, 1948.

도 가세하고 있었다. 남한 단독선거 찬반문제를 놓고 우파 진영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나는 단독정부 반대·남북협상의 추진을 내걸고 통일운동을 주창한 김구·김규식 등의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미군정과 보조를 맞춰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던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의 노선이었다.

이런 정치 흐름 속에서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 간 이른바 '2·7구국투쟁'이었다. 남로당은 이때 9개항의 투쟁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한국위원단을 반대한다.
2.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3. 양군 동시 철퇴로 조선통일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인에 맡겨라
4. 국제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김성수 등 친일파를 타도하라
5. 노동자, 사무원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를 즉시 실시하라.
6. 노동임금을 배로 올려라.
7.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8.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¹⁸⁶⁾

민전도 이에 호응, 2월 7일 “전 조선인은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을 선두로 위대한 구국투쟁에 쫓겨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남로당의 지령으로 이날 새벽부터 전평 산하의 각 단위노조를 시발로 전국 각 지역에서 총파업이 일어났다. 철도·전신·전화·채신·공장·광산 등이 일제히 파업을 하였고 부산에서는 선박데모도 있었다. 총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수는 약 30만 명에 달했다.¹⁸⁷⁾ 경찰관서 습격, 기관차 파괴, 전신주 절단, 교량 폭파 등 극렬한 행동도 있었다.

이 2·7사건으로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파업 30건, 맹휴 25건, 충돌 55건, 시위 103건, 봉화 204건, 검거인원 8,479명으로 나타났다.¹⁸⁸⁾ 경무부가 발표한 인명피해는 사망 39명, 부상 133명으로 집계됐다.¹⁸⁹⁾

186) 大檢察廳 公安部, 『左翼事件實錄 第1卷』, 1965, 372쪽.

187) 하성수, 『남로당사』, 세계, 1986, 191쪽.

188) 김남식, 『南勞黨研究』, 돌베개, 1984, 306쪽.

189) 김천영, 앞의 책, 949쪽.

한편 2월 7일 제주도는 경찰의 비상경계 속에 의외로 조용했다. 미 24군단의 정보보고서도 처음에는 “제주도는 2월 7일 이후 소요 기간 내내 아주 조용하다. 2월 7일 첫 폭동이 일어난 이후 제주도의 소요는 불법집회나 뼈라 살포로 제한되어 있다”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¹⁹⁰⁾

그러나 2월 8일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여러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미 24군단 정보보고서도 나중에 다른 기록을 하고 있다. 즉 “2월 9, 10, 11일 밤, 제주 지역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17건의 폭동과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 폭동을 유형별로 보면 6개의 경찰지서 습격, 뼈라 살포, 칼과 곤봉으로 무장한 폭도들의 시위 등이었다. 주목할 점은 많은 폭도들이 소련국가를 불렀다는 사실이다. 보고된 사망자는 없으나, 경찰 2명이 심하게 구타당했다. 경찰은 3일 동안 약 290명을 체포했다고 기술했다.¹⁹¹⁾

그러나 미군 보고서에 나온 경찰지서 6개소 습격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계리 경찰관 린치사건과 고산지서 발포사건 등은 당시 신문자료와 체험자의 증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계리 경찰관 린치사건은 1948년 2월 9일 일어났다. 안덕면 사계리 청년들은 이날 향사에 모여 남한 단독선거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마을 안에 경찰관 2명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급습하게 된 것이었다. 청년들은 경찰관들을 향사로 끌고가 마을에 머물게 된 경위와 밀고자를 대라고 추궁했다. 청년들은 3·1사건 이래 마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정보가 누설되고 있다고 보고 내통자를 찾는 데 눈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못매를 맞던 경찰관들은 뒤늦게 출동한 경찰대에 의해 구출되었다.¹⁹²⁾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자료에는 ‘서광리 경찰관 생매장사건’으로 잘못 기록되고 있다.

고산지서 발포사건은 2월 10일 시위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발포, 주민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음력 설날인 이날 한림면 고산리 청년 100여 명은 마을을 돌며 ‘왓샤 시위’를 한 뒤, 지서 앞으로 몰려 왔다. 이때 지서 안에는 경찰관 3명뿐이었다. 경찰은 총알이 장전된 총을 겨누며 해산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청년들이 응하지 않자 발포, 마을 청년 신응선(申應善)의 다리에 총상을 입혔다. 이 한 발의 발포로

19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59, February 14, 1948.

19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81, March 12, 1948.

192)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43~544쪽.

군중들은 흩어졌다. 나중에 시위 주모자 10여 명이 검거됐다.¹⁹³⁾

2·7사건 이후 또다시 전도적으로 검거선풍이 불었다. 경찰은 제주읍 삼양리 한 마을에서만 주민 94명을 연행했다가 석방하기도 했다.¹⁹⁴⁾ 이 무렵 구금자들에 대한 경찰의 취조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2) 고문치사 사건

1948년 3월 경찰에 연행됐던 청년 3명이 경찰의 고문으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 제주사회의 민심을 동요시켰다. 조천지서에 연행됐던 조천중학원 2학년 학생 김용철(金用哲, 21세)이 유치 이틀 만인 3월 6일 별안간 숨졌다. 사체의 검시 결과 그는 고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3월 14일 모슬포지서에서 유치 중이던 대정면 영락리 청년 양은하(梁銀河, 27세) 역시 경찰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다. 3월 말에는 서청 경찰대에 붙잡힌 한림면 금릉리 청년 박행구(朴行九, 22세)가 곤봉과 돌로 찍혀 초주검상태에서 끌려가다가 총살당한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제주도에서 해방 이후 1947년 3·1사건 이전까지 경찰의 고문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 그러나 3·1사건 이후 경찰의 고문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응원경찰의 취조는 매질부터 시작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특별수사과의 강압적인 수사기술은 공포대상이 되곤 했다. 응원경찰이 철수하면서 교체 경찰력으로 제주에 들어온 철도경찰과 이북출신 경찰관들은 제주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불온하다는 시각으로 본 반면, 현지 주민들은 이들 외지출신 경찰관들을 ‘육지 것들’이란 반감과 경원의 눈초리로 볼 때가 많았다. 이런 심적인 갈등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다양한 고문형태로 표출되기도 했다.

조천지서 고문치사 사건은 사건 발생 6일만에야 지방언론에 처음 보도됐다. 『제주신보』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구서(1區署) 조천지서에 작년 3·1사건의 피의자로서 유치 중이던 동리 청년이 유치장 내에서 급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동 사망자는 조천면 조천리 하동에 주

193) 梁淳鳳(81세, 제주시 일도2동, 당시 高山지서 주임, 2002. 1. 23. 채록) 증언: 『濟州新報』, 1948년 2월 14일.

194) 『濟州新報』, 1948년 2월 14일.

소를 둔 김용철(당년 22세)이란 청년인데, 작년 3·1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수배 중이었는데, 지난 3월 4일 미명 동면 대흘리 2구에서 피신 중이던 것이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 중이었던 바, 6일에 이르러 돌연 급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당국에서는 이 보고를 접하여 익(翌) 7일 채용병(蔡龍秉) 검찰관 지휘 하에 의사 장시영(張時英)씨 외 관계관 등이 급거 현지에 출장하였는데 경찰감찰 부청장 박근용(朴根容)씨와 CIC 미인(美人)도 동행 입회 하에 사체를 해부 검사하는 한편 사인에 대하여 면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귀읍(歸邑)하였다는 바, 앞으로도 의사의 감정서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하리라 하며 CIC에서도 검찰당국과 병행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¹⁹⁵⁾

이 보도 이전에 벌써 조천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김용철의 죽음을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여기고 민심이 들끓었다. 경찰 측에서는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둘러댔으나 시신 전체에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어서 설득력이 약했다. 조천중학원 학생들은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지역 유지들도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를 군정당국에 요구했다.

이 조사는 검시의사 선정에서부터 잡음이 일었다. 경찰 측에서는 당시 제주도청 보건후생국장 송한영 의사를 검시의사로 적극 추천했다. 공교롭게도 송 의사나 제1구경찰서장(문용채) 수사과장(성범용), 그리고 사건을 유발한 조천지서 주임(조한용)이 모두 이북출신이었다. 그러나 검찰당국은 검시의사로 제주출신 장시영을 선택했다.

부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실시됐다. 1차 부검은 경찰 측의 횡방으로 건성으로 마쳐졌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미군 고문관은 재부검을 지시했다. 다음날 실시된 2차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 결정적인 사인으로 밝혀졌다. 의사 장시영은 경찰의 계속되는 회유를 뿌리치고 “타박으로 인한 뇌출혈이 치명적인 사인으로 인정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했다.¹⁹⁶⁾ 이 한 장의 감정서가 조천지서 경찰관 5명 전원의 구속상태를 몰고 왔다. 고문현장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김용철을 거꾸로 매달아 곤봉으로 쳤다는 것이다.¹⁹⁷⁾

조천지서 사건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인 3월 14일에는 모슬포지서에서 또다시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신보』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했다.

195) 『濟州新報』, 1948년 3월 12일.

196) 張時英(81세. 제주시 일도2동, 당시 부검의사, 2002. 10. 19. 채록) 증언.

197) 金用喆(당시 고문현장 목격자)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60쪽에서 재인용).

지난 6일 조천지서에 검속 중인 한 청년이 급사한 사건에 대하여 아직 그 진상이 판명되지 못한 관계로 일반의 억측이 구구하고 있는 이때, 또다시 모슬포지서에서 검속 중에 있는 한 청년이 작 14일 아침 돌연 급사한 사실이 있었다. 즉 대정면 영락리에 거주하는 양은하(27)란 청년은 포고령 위반 피의자로서 모슬포지서에 검속되어 있던 중 작 14일 아침 4시 돌연 급사하였다는데, 이 급보에 의하여 제주검찰청 박 청장 및 제주경찰감찰청 수사과장과 십자의원 문중후 의사가 급거 현장에 출장하여 검시한 결과 '고환'(불알)이 상해서 급사한 것으로 판명되어 담당 취조경찰 고응춘(高應春·순경) 및 변태문(邊太文·형사) 2명을 경찰청장 명의로 즉석에 검속하고 방금 엄중 취조 중에 있다 한다.¹⁹⁸⁾

이 사건은 미 24군단 정보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경찰, 불법행위로 체포. 3월 14일 2명의 경찰관이 모슬포에서 죄수 1명을 구타해 치사시킨 혐의로 동료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는 내용이다.¹⁹⁹⁾ 양은하는 당시 마을에서 연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에도 ‘조국이 분단되기 때문에 단독선거를 반대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양은하와 함께 모슬포지서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한 증언자는 “지서에서는 매질부터 시작했다. 주로 몽둥이로 때리거나 각목을 다리 사이에 끼워 위에서 밟기도 하고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수감자들이 더욱 울분을 느꼈던 것은 경찰관들이 심심하면 한 사람씩 불러내 장난삼아 고문을 했던 일”이라고 말했다.²⁰⁰⁾ 양은하의 동생은 “경찰관들이 형님의 머리카락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송곳으로 불알을 찌르는 고문을 하다가 결국 불알이 상해 숨지게 됐다”고 증언했다.²⁰¹⁾ 이 때도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소식을 들은 양은하의 형제들이 지서에 달려갔을 때 지서 뒷마당에 시신을 묻으려고 했는지 시신 옆에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²⁰²⁾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2건의 고문치사 사건은 1948년 4월 17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4차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이 회의에서 제주도를 시찰했던 프랑스 대표 마네(Manet)가 고문치사 문제를 제기했고, 딘 장군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관련된 회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 『濟州新報』, 1948년 3월 16일.

19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94, March 27, 1948.

200) 金時柄(당시 모슬포지서 수감자)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70쪽에서 재인용).

201) 梁錫河(77세, 日本 東京 足立區, 양은하의 동생, 2002. 7. 11. 채록) 증언.

202) 梁信河(65세, 대정읍 하모리, 양은하의 사촌동생, 2002. 8. 23. 채록) 증언.

제1그룹의 요원으로서 마네는 한국 경찰이 가끔 일본인들로부터 전수 받은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딘 장군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였으며, 심문 도중 제주도 경찰에 의하여 발생했던 두 명의 한국인의 죽음을 언급했다. …미 군정장관인 딘 장군은 3월 6일에 발생했던 그 사망사건 가운데 한 건은 조사가 완료되어서 군사법정에서 공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만일 그 조사에 의하여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유죄가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²⁰³⁾

두 사건이 이런 국제적인 조명을 받은 때문인지 조천지서와 모슬포지서 경찰관 11명 모두 군정재판에 회부되어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즉 조천지서 경찰관들은 1948년 5월 6일 3명이 징역 5년, 2명이 징역 3년을,²⁰⁴⁾ 모슬포지서 경찰관들은 6월 9일 5명이 징역 5년, 1명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이다.²⁰⁵⁾

앞의 고문치사 사건들이 유엔임시위원단에서 거론될 정도로 조명을 받았다면, 박행구의 총살사건은 '4·3'발발이란 급박한 상황에 과묵혀진 사건이다. 한림면 금릉리 청년 박행구는 경찰과 서청에 잡혀 집단구타를 당한 뒤 즉결총살을 당했다. 사건 전날 마을 안에서는 선박 진수식이 있었는데, 술에 취한 박행구가 우익청년들과 사상 논쟁을 벌이다가 '민족을 팔아먹는 민족반역자'라고 소리 높였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의 사망일은 1948년 3월 29일로 추정되고 있다.²⁰⁶⁾

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준비

1) 1·22 검거사건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은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폭동을 일으키도록 명령했다(CHEJU-DO, Communists Ordered To Riot Between Middle February,

203) "United State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Main Committee, Summary Record of the Fourth Meeting," April 17 1948, RG 338 :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3, NARA, Washington, D. C.

204) 『朝鮮日報』, 1948년 5월 9일.

205) 『朝鮮日報』, 1948년 6월 15일.

206) 이치행(70세, 한림읍 금릉리, 당시 중학생, 2001. 12. 13. 채록) 증언.

05 March)=1월 22일 남로당 조천지부에서 열렸던 공산주의자들의 불법회의장을 급습한 경찰이 노획해서 번역한 문건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들은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건에는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탈취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몇몇 남로당 간부들이 새벽 3시에 회의장을 급습한 경찰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여겨지지만, 모임에 참석했던 106명이 체포되었고, 같은 날 정오 이전에 63명이 추가로 검거되었다. 등사기와 다량의 서류가 압수되었다.(방첩대 정보요약, 2월 5일, C-3)²⁰⁷⁾

폭동 지령 문건이 발견된 공산주의자들의 불법회합과 관련하여 1월 22일 체포된 106명 외에 1월 26일까지 좌익분자 115명이 추가로 검거되었다. 총 연행자 221명 중에서 63명이 경찰의 심문을 받은 다음 방면되었다. 방면된 자들은 공산주의자인 남로당 당원이었다. 미방면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보고되지 않았다. (방첩대 정기보고 제32호, 경찰 보고)²⁰⁸⁾

이 글은 미 24군단 정보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요약하면 ① 1월 22일 새벽 3시 경찰이 남로당 조천지부 불법집회장을 급습, 106명을 체포한 것을 시발로 1월 26일까지 모두 221명을 검거했고 ②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라’는 내용의 문건 등을 압수했으며 ③ 연행자중 남로당원 63명을 방면했다는 내용으로 압축될 수 있다. ‘제주도 남로당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주한 미군 971 방첩대 보고서에는 압수된 문서 중에 유엔 위원단과 총선거,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²⁰⁹⁾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이하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약칭)는 1947년부터 대규모 세력확장을 시도하면서도 당원들을 비밀리에 관리했다. 특히 3·1사건 이후 몇 차례 검거선풍이 불어닥치면서 철저한 점조직으로 당원들을 관리했다. 당시 미군정이나 경찰 측에서는 남로당 제주도 조직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감지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계보나 당원 범위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남로당 자체의 철저한 조직관리에 기인하고 있지만, 경찰의 정보망이 주민과의 거리감으로 대중 속을 파고 들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이처럼 비밀의 베일에 가려있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조직체계가 노출되는 사건이

20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52, February 6, 1948.

20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53, February 7, 1948.

209) 971 Counter Intelligence Corps, USAFIK, CIC Semi-Monthly Report, No. 3, February 15, 1948.

일어났다. 그 사건은 1948년 1월 중순께 제주도당 조직부 연락책 김생민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의 고문과 회유에 버티던 김생민은 구금 일주일만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 조직부 연락책의 전향은 베일에 쌓였던 남로당 제주조직 체계의 전면 노출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1월 22일 조천면 신촌리를 급습한 것이다. 신촌리는 김생민의 고향이자, 당시 도당 조직의 핵심인 조직부 아지트가 있었다. 조직부장은 바로 김달삼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앞의 미군 정보보고서 내용은 몇 가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는 새벽 3시에 1백 명 이상 집단적으로 모이는 남로당 집회가 있었을까 하는 점, 둘째는 2월 중순에서 3월 5일까지 폭동을 일으키라는 문서의 진위, 세 번째는 남로당 당원을 방면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첫 번째 의문부터 실제 상황은 보고내용과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그 날 새벽 경찰에 연행 당했던 주민들의 증언에서 나왔다. 당시 18세의 청년이었던 허춘섭의 증언내용이다.

그날 새벽에 경찰관 2명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의 강연이 있으니 학교로 나오라'고 말했다. 그런 줄 알고 국민학교로 갔더니 신촌리민 거의 나와 있었다. 그리고 학교 울타리 주변에 70~80명의 경찰관이 깔려 있고 GMC 7~8대가 있었다. 그곳에서 노인과 어린애, 장애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찰서장 강연 들으러 경찰서에 간다고 했다. 트럭을 타고 제주읍내 관덕정 옆의 제1구경찰서까지 갔다. 그때까지 친절하던 경찰관들이 하차할 때 갑자기 태도를 돌변, "남로당 놈의 새끼들"이란 말을 하기에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 명부를 작성한 뒤 유치장에 분산 수용됐다. 수백 명이 앉을 자리도 없었다. 그날부터 차례로 불러다 고문을 하는데 장작과 '쇠쫓매'로 쳤다. 주된 내용은 남로당의 가입 여부였다. 이를 부인하면 고문을 했다. 경찰은 연행했던 사람들을 몇 차례에 걸쳐 석방했다. 이덕구 등 6명이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들도 42일만에 풀려 나왔다.²¹⁰⁾

허춘섭은 마을에서 좌익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사전에 피했는지 거의 빠졌고, 이때 붙잡힌 이덕구(유격대 2대 총사령)는 심한 고문으로 고막이 터지고 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내려친 장작에 맞아 어깨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열흘만에 풀려 나왔다

210) 許春燮(72세, 조천읍 신촌리, 당시 수감자, 2001. 9. 26. 체록) 증언.

는 김인평은 “우리 집은 형제가 잡혀 들어갔다. 그때는 추운 겨울철이어서 사촌 여동생이 우리 옷을 갖고 경찰서에 왔다가 오히려 경찰에 잡혀 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왜 구금 당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²¹¹⁾

한편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김생민도 정작 마을주민들의 연행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공한 남로당 조직체계도는 면당 책임자 이상의 간부였는데, 나중에 보니 일반주민들까지 경찰에 붙잡혀 왔었다고 증언했다.²¹²⁾ 이상의 증언내용을 토대로 정황을 분석해보면, 김달삼 등 핵심간부를 놓친 경찰이 일반 마을 주민들까지 연행해놓고 미군 쪽에는 ‘남로당 불법집회 참여자’ 검거로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연성이 있다.

두 번째 의문은 폭동 지령 문건이다. 이 문건은 누가 지령했는지 그 실체도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진행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투쟁 결정과정을 보더라도 그 시점에 의문점이 있다. 이에 대해 좌파쪽 자료는 “남로당 세력을 압살하기 위해 꾸며낸 유언비어”라고 반박하고 있다.²¹³⁾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제주 CIC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면서 정보의 신뢰도를 ‘C-3’으로 평가한 점이다.²¹⁴⁾

세 번째의 의문인 ‘남로당원의 방면’은 그 시점에서는 매우 미묘한 것이었다.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남로당 가입여부를 가려 그 자체만으로도 제재하려는 경찰 측의 의지는 강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그때까지도 표면적으로는 남로당을 합법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한반도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킨 미국은 남한 내에서의 어떠한 정치집단도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었다. 서울에 들어온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1월 23일 남북한의 선거에 대한 협의 대상으로 남한 6명과 북한 3명 등 모두 9명의 정치가를 지명했는데, 남한 정치가로는 이승만, 김구, 김성수, 김규식 이외에 남로당 지도자 허헌, 박헌영이 포함됐다는

211) 김인평(77세. 朝天邑 新村里, 당시 수감자, 2001. 10. 11. 채록) 증언.

212) 金生玟(79세. 제주시 연동,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 연락책, 2003. 1. 3. 전화인터뷰) 증언.

213) 金奉鉉·金民柱, 앞의 책, 70쪽.

214) 미군 정보보고는 정보 제공원의 신뢰도를 ‘A~F’까지로, 정보내용의 신뢰도를 ‘1~6’까지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가령 ‘A-1’은 정보 제공원이나 정보 내용이 완전히 믿을 수 있고 다른 채널에서도 확인되는 정확한 정보라는 뜻이며, 이와 반대로 ‘F-6’은 정보 제공원도 숫제 믿을 수 없고 정보내용도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C-3’은 그 중간의 것으로 사실 가능성이 있으나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²¹⁵⁾

한 남로당 연구자는 “미군정 하에서 남로당은 합법정당이었으므로 그때까지도 남로당원이란 이유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남로당원들이 구속될 때는 당원이란 이유에서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집회 참석, 혹은 폭동모의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미군정 포고령 제2호 등의 저촉을 받을 때가 많았다”고 밝혔다.²¹⁶⁾ 이 같은 당시의 분위기는 ‘1·22 검거사건’ 일주일만인 1월 30일 김영배 제주경찰감찰청장의 회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청장은 “피검자 중 무고한 자는 속속 석방하는 중”이라고 전제하고 “경찰은 남로당에 가입한 자를 탄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비합법적 행동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고 표명했다.²¹⁷⁾

그러나 조직부 연락책의 전향으로 남로당 제주도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1·22 검거사건 이후에 전도적으로 경찰의 남로당 간부 검거작업은 지속되었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안세훈을 비롯해 김유환, 김은환, 김용관, 이좌구, 이덕구 등 거물급들이 경찰에 검거됐다.²¹⁸⁾ 무장투쟁의 핵심인 김달삼도 경찰에 붙잡혀 연행도중 도주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 남로당 조직을 전면으로 노출시킨 이 검거선봉의 사후처리는 흐지부지됐다. 폭동음모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한데다, 1948년 3월에 이르자 5·10선거를 앞둔 미군정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치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 남로당 거물급 인사들도 ‘4·3’발발 이전에 모두 석방됐다.

그럼에도 당 조직의 폭로는 단순히 제주도 남로당 조직이 노출됐다는 사실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주도당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됐다. 남로당 조직원 사이에는 조직의 와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긴장감이 팽배했다. 결국 이런 위기의식을 부추긴 강경파의 주도에 의한 지도부의 개편작업은 바로 무장투쟁을 촉발하는 한 동인(動因)이 됐다.

215) 하성수, 『남로당사』, 세계, 1986, 184쪽.

216) 金南植(80세, 서울 은평구 남가좌동, 『남로당연구』 저자, 2003. 1. 6. 전화인터뷰) 증언.

217) 『濟州新報』, 1948년 2월 4일.

218) 濟州道, 앞의 책, 84쪽.

2) 무장봉기 결정과정

남한만의 단독선거 윤곽이 드러난 1948년 2월 이후 미군정과 좌파간에 치열한 대립국면이 표출됐다. 좌파진영에서는 시위, 뼈라 살포, 전주 절단, 철도 파괴, 지서 습격 등의 격렬한 선거 반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2월 26일 전북지방의 경찰지서 26개소가 일시에 피습 당해 4개소가 파괴되고 2개소가 소실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미 24군단 정보보고서는 전국에서 1월에 1건도 없었던 경찰관서 습격이 2월 한달 동안 무려 125건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²¹⁹⁾

이러한 급박한 전국 상황은 조직 노출이란 치명타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세대 교체와 노선 변화를 촉진시켰다. 남로당 자료는 이 상황에 이르자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일어나 싸우느냐’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²²⁰⁾ 무장봉기 논의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도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시기상조론과 강행론이 팽팽히 맞섰다. 정세판단과 대응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명분론과 위기설을 앞세운 강경파가 당 조직을 장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경파에게 5·10선거는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논리로 대중선전의 좋은 명분이 됐다. 경찰과 서청 등의 탄압으로 이반된 민심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만약 단독정부가 수립된다면 당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므로 조직 수호 차원에서도 단독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강·온건파 간의 노선 갈등으로 ‘4·3’발발 직전에는 제주도당 지도부 핵심세력이 종래의 일제하 사회주의 노선의 장년층에서 젊고 급진적인 신진세력으로 교체됐다. 신진세력의 리더로서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23세의 청년 김달삼이었다. 대정중 교사였던 그는 1947년 3·1사건 때 남로당 대정면 조직부장으로 도당에 총파업을 건의한 바 있고, 그 이후 도당 조직부 차장, 조직부장으로 급부상했다. 무장투쟁이 결정된 다음에는 유격대 조직을 총괄하는 군사부 책임을 맡게 된다. 나이 어린 김달삼이 이처럼 부상한 데에는 남로당 중앙위원이자 선전부장이었던 장인 강문석(姜文錫)의 후광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제주도당 내부에서 무장투쟁이 결정된 것은 1948년 2월 신춘회의에서 였다고 한

219)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33, April 2, 1948.

220) 『노력인민』(남로당 기관지), 1948년 5월 25일.

다.²²¹⁾ 그런데 이 신춘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무장투쟁에 참여했다가 일본으로 피신, 현재 도쿄에 살고 있는 이삼룡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무장봉기가 결정된 것은 1948년 2월 그믐에서 3월 초 즈음의 일이다. 신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도당 책임자와 각 면당의 책임자 등 19명이 신춘의 한 민가에 모였다. 참석자는 조몽구, 이종우, 강대석, 김달삼, 나(이삼룡), 김두봉, 고철중, 김양근 등 19명이다. 이덕구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김달삼이 봉기 문제를 제기했다. 김달삼이 앞장선 것은 그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경파와 신중파가 갈렸다. 신중파로는 조몽구와 성산포 사람 등 7명인데, 그들은 “우린 가진 것도 없는데, 더 지켜보자”고 했다. 강경파는 나와 이종우, 김달삼 등 12명이다. 당시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고,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다. 오르 그는 늘 왔으며, 김두봉의 집이 본거지였다. 해방 후 강문석은 한번도 제주에 오지 않았다. 김달삼은 20대의 나이지만 조직부장이니까 실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장년파는 이미 정역살이를 하거나 피신한 상태였다. 안세훈, 오대진, 강규찬, 김택수 등 장년파는 이미 제주를 떠난 뒤였다.

그런데 우리 당초 약질 경찰과 서청을 공격대상으로 삼았지 경비대는 아니었다. 미군에게도 맞대응할 생각이 없었다. 미군에 대해 다소 감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신중 무기가 많은데... 우리가 공격한 후 미군이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우선 시위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이었다. 장기전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익렬(9연대장)과도 회담한 것이다.

아무튼 우리의 지식과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가 정세 파악을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채 김달삼의 바람에 휩쓸린 것이다. 그러나 봉기가 결정된 후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니까 ‘우리의 결정이 정당한 것 아닌가’하는 분위기였다. 김달삼은 “내가 군사총책을 맡겠다”며 날짜를 통보했다. 사건 발발 10일전쯤에 날짜가 결정됐다. 노출이 안된 것은 그래도 조직이 지켜진 것이다. 4·3 발발 후 나는 정치위원으로서 김달삼과 함께 대정면 신평리에 소재한 도당 아지트에 있었다.²²²⁾

이삼룡의 증언은 그동안 회자되던 ‘신춘회의’의 실체를 어느 정도 구체화시켰다. 무장투쟁이 강·온건파의 논쟁 속에 12대 7로 결정됐다는 것도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다. 무력투쟁 대상을 경찰과 서청으로 한정했지 결코 경비대나 미군이 나서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남로당 관여자들의 증언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들은 투쟁 지도부가 국내외의 정세를 너무 안일하고 자기 쪽에 유리하게만

221)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1989. 163쪽.

222) 李三龍(79세, 日本 東京 荒川區,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 2002. 7. 11. 채록) 증언.

생각하는 정세판단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한다.

남로당 제주읍당 세포로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피신한 김시종은 “나는 ‘4·3’을 한 3개월 정도 봤다. 6개월이면 조천까지는 해방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본토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호응해 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당시 제주성내는 습격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천 등 외곽을 장악해 읍내를 고립시키면 자연스럽게 접수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낭만적인 생각들이었다”고 증언했다.²²³⁾

남로당 대정면책으로 1947년 3·1사건 직후 옥고를 치렀던 이운방은 “무장투쟁을 주장한 신진세력들은 정세를 낙관했다. 당시 단선을 저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제주도 봉기는 일종의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인 봉기를 유발시켜 제주도에 진압병력을 추가로 내려보내지 못할 것으로 파악했다. 경비대는 중립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경찰력만으로는 진압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또한 국제문제로 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진압에 관여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²²⁴⁾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전향, 경찰관 생활을 했던 김생민은 “우리는 북한이 1949년에 쳐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에서 양군이 철수를 하면 이젠 국내문제이고,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남로당 세력이 강하고 이북에는 팔로군이 들어와 있어서, 국제정세나 국내정세나 모두 유리하다고 보았다. 강경파들은 그래서 무장투쟁을 하며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본 것이고, 온건파들은 ‘우리만 고립된다’고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²²⁵⁾

이렇게 시작된 무장투쟁 결행방침은 1948년 3월 15일께 전남 도당 조직지도원(오르그)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로당 제주도상위(島常委)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²²⁶⁾에는 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에 있어서 반동 경찰을 위시한 서청, 대청의 작년 3·1 및 3·10 투쟁 후의

223) 金時鐘(74세, 日本 生駒市 喜里, 당시 남로당 제주읍당 세포, 2001. 12. 24. 채록) 증언.

224) 李運芳(92세, 대정읍 하모리, 당시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 2001. 11. 9. 채록) 증언.

225) 金生玟(78세, 제주시 연동, 당시 남로당원에서 전향, 2002. 10. 24. 채록) 증언.

226) 이 유격대보고서는 1949년 6월 7일 경찰특공대가 李德九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입수했다고 한다. 전직 경찰관 文昌松이 1995년 이 보고서 필사본을 엮어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혀진 4·3의 진상』이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잔인무도한 탄압으로 인한 인민의 무조건 대량검거, 구타, 고문 등이 금년 1월의 신촌사건을 전후하여 고문치사 사건의 연발로써 인민 토벌 학살 정책으로 발전 강화하자 정치적으로 단선·단정 반대, 유엔 조위(朝委)격퇴 투쟁과 연결되어 인민의 피 흘리는 투쟁을 징조하게 되었다.

3·1 투쟁에 있어서의 각급 선전 행동대의 활동은 그후의 자위대 조직의 기초가 되었으며 3·1투쟁 직후 도당의 지시에 의하여 각 면에 조직부 직속 자위대를 조직하게 되었으나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후 사태가 더욱 악화됨을 간취한 도상위는 3월 15일경 도(道) 과건 '올구'를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여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둘째 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서 적당한 시간에 전도민을 총궐기시키는 무장 반격전을 기획 결정하였다.²²⁷⁾

결국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은 두가지 목적, 즉 하나는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다른 하나는 당면한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서 무장투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논의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한 신진세력들이 국내외 상황을 낙관하고 무리하게 무장투쟁 쪽으로 몰고 갔다. 따라서 그들의 정세판단이 무모했다는 지적도 있다.

3) 무장봉기 준비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투쟁에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무장세력과 보급, 무기 확보 등의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3월 15일 이후의 조직 정비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3월) 25일까지를 준비 기간으로 하여 도상임(島常任·특히 투위 멤버)으로써 군위(軍委)를 조직 투쟁에 필요한 자위대 조직(200명 예정)과 보급, 무기 준비, 선전사업 강화에 대하여 각 책임을 분담

예정 기간을 넘어 3월 28일 비로소 재차 회합을 가져 기간의 준비 사업에 관한 각자의 보고를 종합 검토한 결과, 4월 3일 오전 2시~4시를 기하여 별항의 전술 하에 무장 반격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음.²²⁸⁾

227)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혀진 4·3의 진상』, 1995, 16~17쪽).

228)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앞의 책, 17쪽).

남로당 제주도당은 당 조직을 투쟁위원회로 개편하고 군사부를 신설했다. 군사부 밑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군사위원장은 군책과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했다. 무장투쟁의 실권이 주어진 이 자리는 김달삼이 맡았다. 무장대 조직으로는 유격대(툽부대)와 자위대, 도군사위원회 직속의 특경대 등 3개 그룹으로 구성했다.

3월 28일 점검 결과 제주도내 13개 읍면 중 제주·조천·애월·한림·대정·중문·남원·표선 등 8개 읍면에서 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등 모두 320명이 편성됐다.²²⁹⁾ 무장대는 소대 10명, 중대 20명, 대대 40명 등의 소단위 인원으로 부대 체계를 갖췄다.

확보된 무기는 99식 소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 25발, 연막탄 7발, 나머지는 죽창이었다.²³⁰⁾ 나중에 자세히 살펴겠지만, 일부 자료에는 일본군의 무기들을 확보, 대단한 무장을 했고 심지어 기관총, 대포로 중무장했다고 표현한 글들이 있으나 실제 확보된 총은 30정에 불과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수류탄과 휘발유탄을 구입 못해서 이것이 4·3 투쟁에 실패의 결정적인 한 원인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²³¹⁾

한편 이 무렵 한라산 중턱 오름에서 지역청년들이 모여 무장훈련 받는 모습이 목격됐다. 3월 20일께 애월면 중산간지대인 ‘새별오름’에서 무장대와 경찰간의 첫 충돌이 있었다. 당시 새별오름에서 한림면 일대 자위대 67명이 합숙하며 훈련을 받던 중이었다. 이 합숙훈련장에 애월지서 경찰관과 서청·대청 단원 등 9명이 급습한 것이었다. 이에 무장대 측에서 발포하자 경찰관 등이 퇴각했다. 이날 충돌로 자위대 1명이 경상을 입었을 뿐 쌍방의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²³²⁾

4월 3일을 거사일로 잡은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위원회는 제주읍내 경찰감찰청과 제1구경찰서는 경비대 병력을 동원해 점령하고 도내 14개 지서는 유격대 및 자위대원들이 습격하기로 작전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제주도당에서는 모슬포 소재 경비대 제9연대에 4명의 조직원을 침투시켰다. 이 가운데 2명은 중도에 이탈했으나, 2명은 ‘프락치’로 활동하고 있었다. 사전에 프락치를 접촉, 제주경찰감찰청 등의 습격작전에 경비대원 동원 가능성을 타진하

229) 앞의 글 (앞의 책, 11쪽).

230) 위의 글 (위의 책, 19쪽).

231) 위의 글 (위의 책, 30쪽).

232) 위의 글 (위의 책, 46쪽).

자 그 프락치는 9연대 전체 병력 800명 중 400명은 확실성이 있으며, 200명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고 반동은 주로 장교급으로서 하사관과 합하여 18명이니 이것만 숙청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9연대에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 5대만 보내주면 좋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도보라도 습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²³³⁾

그러나 4월 3일 당일 경비대 동원은 실현되지 않았다. 도당 파견원이 자동차 5대까지 준비해 갔으나 9연대 프락치를 접촉할 수 없었다. 수소문을 해봤더니 프락치 2명은 영창에 감금되어 있었다.

4)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진위

일부 자료에는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배후에는 북한과 소련이 있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한 글들도 있다.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의 근원은 박갑동(朴甲東)의 글에서 비롯되고 있다.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갑동은 1973년부터 중앙일보에 연재된 「남기고 싶은 글」에서 '4·3'문제를 언급했다. 그 글에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에 의해 4·3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다. 박갑동의 연재내용은 1983년 『박현영』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나왔다. 이 글은 그때부터 보수적 입장에 있는 필진들에 의해 재생산, 인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박갑동의 글 가운데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보이코트'지령에 따라 남로당이 대대적인 무장폭동장으로 택한 곳이 제주도다. 남로당이 굳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를 택한 이유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의 조직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따라서 그들의 선전과 조직활동 등으로 도민의 사상이 자못 붉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중앙당의 폭동지령이 떨어졌다. 아마도 그 지령은 3월 중순쯤에 현지의 무장행동대 김달삼에게 시달된 것으로 안다.

...4월 3일 상오 2시, 문상길이 부대장병들을 속여 완전 무장시킨 뒤, 3대의 트럭으로 제주경찰감찰청과 제주경찰서를 기습, 점령하는 것을 신호로 도내 14개 서를 모조리 습격했다.

233) 앞의 글 (앞의 책, 76쪽).

...당시 중앙당에서는 이 사건이 터질 무렵 당 군사부 책임자 이중업과 군내의 프락치 책임자 이재복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소위 현지 집중지도로써 군사활동의 확대를 기도했다. 또 폭동의 두목 김달삼의 장인이며 중앙선전부장 강문석을 정책 및 조직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현지로 보냈었다.²³⁴⁾

그런데 이 글은 실제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었다.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서부터, 문상길 부대가 경찰감찰청 등을 점령한 것, 14개 서를 모조리 습격했다는 내용, 이중업·이재복·강문석을 제주에 파견했다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

도쿄에 살고 있는 박갑동은 문제된 글에 대해 “내가 쓴 것이 아니고 내 글을 신문에 연재할 때 외부에서 다 고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갑동은 이어 “4·3이 5·10선거 반대투쟁이라지만 왜 유별나게 제주에서만 그랬겠는가? 4·3은 서청과 경찰이 횡포를 부려 발생한 사건이다.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아니며 경찰과 서청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²³⁵⁾

남로당 전문 연구자인 김남식은 “남로당의 5·10선거 저지투쟁은 대중동원에 의한 정치투쟁과 폭력투쟁을 배합한 복합형태이지 전면 무력투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제주 봉기 이후 본토에서 호응투쟁도 없었다. 제주도의 특수여건이 김달삼 등의 선동에 의해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²³⁶⁾

존 메릴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4월 3일의 공격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캠페인으로부터 발생되었지만 제주도당부의 전투적인 지도부의 주도 아래 감행되었다”고 분석했다.²³⁷⁾ 존 메릴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조사 결론으로는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다는 것이다”고 밝히고 “4·3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대의 분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²³⁸⁾

남로당에 관여했던 증언자들도 중앙당의 지령설을 부인하고 제주도당의 독자적인 행동이었음을 밝혔다.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이었던 이삼룡은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고,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²³⁹⁾

234) 박갑동, 『박헌영』, 인간사, 1983, 198~199쪽.

235) 朴甲東(84세, 日本 東京 千代田區, 『박헌영』 저자, 2002. 7. 11. 채록) 증언.

236) 金南植(80세, 서울 은평구 남가좌동, 『남로당연구』 저자, 2003. 1. 6. 전화인터뷰) 증언.

237)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 1980, p.166.

238) 존 메릴과의 인터뷰 (『제민일보』, 1990년 6월 15일).

1947년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였던 이운방은 「4·3사건의 진상」이라는 글에서 “4·3 투쟁은 일부의 미숙하면서도 모험적인 분자들에 의하여 시기 아닌 시기에 하등의 세심 세밀한 준비도 없이 단지 몇 자루의 소총을 가지고 무장봉기로 저돌맹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 투쟁의 일환으로부터 자의로 이탈해서 고립무원의 환경 가운데서 개시되었고, 고립무원의 환경 가운데서 적연히 막을 단계 되었다”고 표현했다.²⁴⁰⁾

중앙지령설에 대한 의문은 군 장성출신들의 저서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김점곤(소장 예편)은 그의 저서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에서 육·해·공으로 격리되어 있는 제주도로부터 적화를 확대시키어 북상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 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과 정치적인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폭거라는 점 등 6가지 이유를 내세워 중앙지령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5·10선거 반대투쟁에서 제주도만이 특이하게 이질적인 투쟁형태를 보였고, 이는 당노선에 대하여 일종의 돌기물적 성격임이 틀림없었다”고 기술했다.²⁴¹⁾

1948년 지리산 진압군 사령관을 지낸 백선엽(대장 예편)은 그의 저서 『실록 지리산』에서 “여순반란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고 적고 있다.²⁴²⁾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제주도당이 시도했던 4월 3일 경비대의 동원계획이 무산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 문제를 다룬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과견원이 최후적 지시를 가지고 국경(國警) 프락치를 만나러 갔던 바 프락치 2명은 영창에 수감되어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횡적으로 문상길 소위를 만났던 바 이 동무의 입을 통해서 국경에는 이중 세포가 있었다는 것, 그 하나는 문 소위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직속의 정통적 조직이며 또 하나는 고승옥 하사관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출신 프락치로의 조직이었음.

그래서 4·3 투쟁 직전에 고 하사관이 문 소위에게 무장투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니 경비대도 호응 쫓기해야 된다고 투쟁 참가를 권유했던 바 문 소위는 중앙 지시가 없으니 할 수 없다고 거절한 바 있었다고 함.

239) 李三龍(79세, 日本 東京 荒川區,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 2002. 7. 11, 채록) 증언.

240) 이운방, 「4·3사건의 진상」(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1989, 233쪽에 수록).

241) 金點坤, 『韓國戰爭과 南勞黨戰略』, 博英社, 142~160쪽.

242) 白善燁, 『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157쪽.

이 말을 듣고 도 파견 국경 공작원은 깜짝 놀랐으나 이렇게 된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제주도 30만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또한 우리의 위대한 구국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어코 참가해야 한다고 재삼 재사 요청하였으나 중앙 지시가 없음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결국 거절당했음. 이리하여 4·3 투쟁에 있어서의 국경 동원에 의한 거점 분쇄는 실패로 돌아갔음.²⁴³⁾

이 기록은 남로당 중앙당이 제주도 무장투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되고 있다. 따라서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청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

243)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앞의 책, 77쪽).

Ⅲ. 전개과정

1. 무장봉기와 5·10선거(1948. 4. 3 ~ 1948. 5. 10)

가. 1948년 4월 3일 상황

1) 무장봉기의 슬로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오름¹⁾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또한 경찰, 서북청년회 숙소와 독립축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 이는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6년 6개월간 지속된 유혈사태의 시발이었다.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선·단정 반대와 조국의 통일 독립, 반미구국투쟁을 봉기의 기치로 내세웠다. 이같은 무장대의 슬로건은 1963년 일본에서 간행된 김봉현·김민주 공저의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²⁾에 소개되어 있다. 이 책자에는 4월 3일 무장대가 행동을 개시하면서 뿌렸다는 2개의 '호소문' 내용이 담겨 있다. 아래의 내용은 무장대가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경찰·공무원·대동청년단 단원들에게 보내는 경고문이다.

친애하는 경찰관들이여!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 유격대는 인민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양심 있는 경찰원들이여! 항쟁을 원치 않거든 인민

1) 제주도에서 측화산(側火山)을 일컫는 말.

2) 공저자 김봉현(金奉鉉)은 오현중 역사교사 출신으로 1947년 제주 민전 문화부장으로 활동하다가 '4·3'발발 직전에 일본으로 떠났으며, 김민주(金民柱)는 1948년 조천중학원 학생으로서 입산해 무장대에 가담했던 경력이 있다.

의 편에 서라. 양심적인 공무원들이여! 하루빨리 선을 타서 소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직장을 지키며 악질 동료들과 끝까지 싸우라. 양심적인 경찰원, 대청원들이여!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조선사람이라면 우리 강토를 짓밟는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나라와 인민을 팔아먹고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매국 배족노들을 거꾸러뜨려야 한다. 경찰원들이여! 총부리란 놈들에게 돌리라. 당신들의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란 돌리지 말라. 양심적인 경찰원, 청년, 민주인사들이여! 어서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구국투쟁에 호응 쫓기하라.³⁾

다른 하나는 무장대가 도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시민 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3' 오늘은 당신님의 아들 딸 동생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쫓기하였습니다. 당신님들은 종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의 부르는 길에 쫓기하여야 하겠습니까.⁴⁾

이 뼈라들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되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이를 주장하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저항하겠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곧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짧은 말에 함축되어 있다. 둘째는 단독선거·단독정부의 결사반대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반미구국투쟁'이란 표현이 말하듯 미군정에 대한 저항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뼈라의 슬로건은 경찰과 서청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는 데서 몇 걸음 더 나아가 단선 단정 반대와 반미투쟁이라는 정치적인 색채를 띤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지향점은 당시 5·10선거를 통해 38선 이남 지역 내에서 반공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미군정과 국내 단선지지파들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3) 金奉鉉·金民柱,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文友社, 1963, 84~85쪽.

4) 金奉鉉·金民柱, 위의 책, 85쪽.

2) 12개 경찰지서 피습

무장대는 4월 3일 새벽 2시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제1구(제주) 경찰서 관내 삼양·함덕·세화·신엄·애월·외도·조천·한림·화북지서와 제2구(서귀포) 경찰서 관내 남원·대정·성산지서 등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그런데 그동안 군·경 측에서 출판된 관변자료들⁵⁾은 제주4·3사건에 대해 서술하면서 많은 오류를 범했거니와 4월 3일 하루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오류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 자료들은 이날 13~14개 지서가 습격을 받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무장봉기가 발발한 지 9개월 여 지난 후에 신설된 ‘모슬포경찰서’가 이날 상황 기록에 등장하는가 하면, 고산·저지지서 등은 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또한 ‘13개 지서 모조리 습격’이란 표현을 통해 마치 제주도내에는 13개 지서 뿐이며, 이들 지서 모두가 습격 받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1952년 내무부 치안국에서 펴낸 『대한경찰전사』에서 비롯된 이 오류 부분은 1982년에 나온 『제주도지』에 이르기까지 수정 없이 반복 인용되고 있다.

또 『대한경찰전사』에는 4월 3일 당일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폭동주모자들이 제주 경찰감찰청 및 제주경찰서를 기습 점령함으로써 일시에 제주 전경찰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과 아울러 전제주를 공산계열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가공할 폭동 기도를 한 다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⁶⁾ 이같은 내용은 최근까지도 반복 인용되는 오류의 근거가 되었다. 즉 앞에서 자신의 글이 아니라고 수정한 바 있지만, 박갑동의 『박헌영』에는 “4월 3일 상오 2시, 문상길이 부대 장병 등을 속여 완전무장시킨 뒤 3대의 트럭으로 제주경찰감찰청과 제주경찰서를 기습, 점령하는 것을 신호로 도내 14개 지서를 모조리 습격했다”고 쓰여 있다.⁷⁾ 그러나 4월 3일은 물론이고, 제주 4·3사건이 끝날 때까지 제주경찰감찰청과 제주경찰서가 기습받거나 점령당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같이 과장된 묘사는 좌파적 시각에서 쓰여진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자에는 4월 3일 14개 지서와 서청·국민회·독촉·대청

5) 內務部 治安局, 『大韓警察戰史: 民族의 先鋒』 제1집, 興國研文協會, 1952 ; 陸軍本部, 『共匪討伐史』, 陸軍本部 戰史監室, 1954 ; 大檢察廳 搜查局, 『左翼事件實錄』 제1권, 同 搜查局, 1965.

6) 內務部 治安局, 위의 책, 100쪽.

7) 朴甲東, 『박헌영』, 인간사, 1983, 198~199쪽.

사무실을 습격하고 유해진 지사, 김영배 경찰감찰청장을 비롯한 41명의 '반동분자' 집을 기습 파괴했다면서 그 명단까지 밝혀 놓았다.⁸⁾ 그러나 실제 피습받은 우익인사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

그렇다면 실제 4월 3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각 경찰서 지서별로 가나다 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구경찰서 관할인 삼양지서는 무장대의 습격을 받았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 경찰 측 책자에는 이날의 삼양 상황에 대해 “공비 20명이 내습했으나 완전격퇴 피해 무”라고 기록되어 있다.⁹⁾ 무장대 측 자료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도 4월 3일 지서 습격 상황이 기술되어 있는데, 삼양지서에 대해서 “경찰 6명, 아부대 16명. 소지 무기 99식 소총 1정, 다이너마이트 2발, 휘발유탄 4발. 상호 접전 지서 정문까지 육박 가라스(유리)를 죽창으로 파괴시켰으나 적의 발포 극심하고 응원대가 올 것을 염려하여 퇴격. 상호 피해 무”라고 쓰고 있다.¹⁰⁾

구좌면 세화지서는 이날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지서가 일시 점령당했다. 지서에는 10명 가량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급히 몸을 피해 모두 목숨을 구했으나 경찰 2명이 일본도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¹¹⁾ 그러나 무장대 측 자료에는 서북출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2정의 총을 노획했다고 기록돼 있다.¹²⁾

이날 사건 중에서 신엄지서 관내 마을인 북제주군 애월면 구엄리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구엄리는 우익인사의 영향력이 큰 마을이었다. 무장대 측 자료에 의하면 이날 구엄리 습격에 모두 120명이란 인원이 동원됐으며, 무장은 소총 4정, 다이너마이트 5발, 나머지는 죽창이었다고 한다. 지서 주변에 40명을 배치해 습격하려는 순간, 이웃 애월지서를 공격하는 습격조가 예정시간보다 30분 가량 앞당겨 행동에 옮기는 바람에 사전에 발각되어 지서 측으로부터 응전을 받아 지서 점령에는 실패했다고 한다.¹³⁾ 그러나 송원화(宋元和) 순경이 숙소에서 피습을 받아 칼과 죽창에 열네 군데나 찔리는 부상을 입고도 지서로 달려가 구사일생했다.¹⁴⁾ 무장대는 이날 우

8) 金奉鉉·金民柱, 앞의 책, 84쪽.

9) 내무부 치안국, 앞의 책, 1952, 101쪽.

10)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1995, 62쪽에 수록)

11) 趙太龍(당시 구좌면 대청 조직부장)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전예원, 1994, 35쪽).

12)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위의 책, 60쪽).

13) 위의 보고서(위의 책, 41쪽).

익인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공격해 우익활동을 하던 문영백(文永伯)의 10대 딸 두 명을 살해했다. 결국 이날 구엄리에서는 우익인사와 그 가족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경찰관 1명이 중상을 입었고, 교전 과정에서 무장대 2명이 사살됐다.

애월지서에는 지서 마당에 폭발물이 던져졌으나 불발하여 피해를 입지 않았다. 지서 마당에는 전날 내린 비가 고여 있었는데 사제 폭발물이 성능이 좋지 않아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 애월지서 습격에는 무장대 80명이 동원됐다.¹⁵⁾

제주읍 외도지서에서는 이복출신의 선우중태(鮮于仲泰) 순경이 무장대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외도지서 습격에는 무장대 14명이 동원됐으며, 총은 99식 소총 1정이었다고 한다.¹⁶⁾

조천지서는 약 한 달 전인 3월 6일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경찰관 대부분이 교체돼 상대적으로 방어하기에 불리한 상태였지만, 4월 3일 새벽 무장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조천지서에 근무했던 정도일은 “어떤 순경이 우연히 밖을 내다보다가 은밀히 지서로 접근하는 무리를 발견해 한 발의 공포탄을 쏘았는데 모두 도망갔는지 그것으로 상황이 끝났다”고 증언했다.¹⁷⁾ 무장대 측 자료는 “40명이 99식 총 2정으로써 포위전은 완전히 성공했으나 사전 발각으로 퇴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⁸⁾

이날 한림지서는 습격을 받자 지서를 지킬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무장대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아 지서 안에서의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복출신 김록만(金祿萬) 순경이 숙소인 여관에서 무장대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또 다른 경찰관 2명도 각기 숙소에서 잠을 자다 기습을 받아 부상을 당했다. 한편 무장대는 경찰을 지서 안에 묶어 놓은 후 지목했던 우익인사의 집을 찾아다니며 공격했다. 독립축성국민회 제주도 감찰위원장 겸 한림면 위원장을 맡았던 현주선(玄周善) 등이 부상을 당했다. 이로써 이날 경찰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국민회와 서북청년회 등 우익단체원 6명이 부상을 당했다.¹⁹⁾

14) 宋元和(81세, 제주시 이도2동, 당시 신임지서 순경, 2002. 6. 1. 체록) 증언.

15)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앞의 책, 42쪽).

16) 위의 보고서 (위의 책, 35쪽).

17) 鄭道日(당시 조천지서 순경)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4쪽).

18) 위의 보고서 (위의 책, 62쪽).

19) 玄汝景(玄周善의 아들)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0~32쪽)

이날 화북지서도 피해가 심했다. 특히 화북지서는 무장대의 방화로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었고, 이 때 지서 안에서 숙직을 하던 사환이 불에 타 숨졌다. 또한 민가에 세들어 살던 김장하(金章河) 순경과 그의 아내가 무장대의 습격을 받고 살해되었다. 결국 화북에서는 경찰관 1명, 경찰관가족 1명, 경찰사환 1명 등 3명이 숨지고, 지서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화북 공격에는 무장대 14명과 99식 소총 1정이 동원됐다.²⁰⁾

제2구경찰서 관할인 남원지서를 습격한 무장대는 10명이었으며, 99식 총 2정과 일본도, 죽창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²¹⁾ 무장대에게 첫 희생을 당한 사람은 대정단원으로서 지서 경비를 거들던 협조원들이었다. 협조원 방성화는 무장대가 지서 안으로 뛰어들면서 쏜 총알에 복부를 맞아 숨졌고, 또다른 협조원 김석훈은 각목과 칼에 맞았으나 가까스로 도망쳤다. 이어 무장대는 고일수 순경을 붙잡아 칼로 살해했다. 무장대는 마지막으로 지서 무기고를 부숴 미제 카빈총과 공기총, 그리고 탄알 등을 탈취한 후 사라졌다. 이로써 이날 남원지서에서는 경찰 1명과 협조원 1명이 숨지고, 협조원 2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²²⁾

대정골²³⁾에 위치했던 대정지서에서도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경찰관 1명이 중상을 당했다. 보성리 향사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대정지서는 경찰관이 3명뿐인 소규모 지서였다. 이날엔 2명의 경찰관이 지서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 이무웅(李武雄) 순경이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²⁴⁾ 그러나 무장대 측 자료에는 이날 7명이 습격에 참여, 2발의 사격으로 경찰관 1명을 즉사시켰다고 기술돼 있다.²⁵⁾

모슬포지서 소재지인 모슬포는 경비대 제9연대의 주둔지이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모슬포지서는 습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무장대는 대동청년단 대정면 책임을 맡고 있던 강필생(姜必生)의 집에 폭발물을 투척하였다. 강필생은 폭발물 파편이 몸에 박히는 부상을 당했지만 목숨을 구했다.²⁶⁾ 이후 강필생은 경찰에 투신했다.

성산포지서에는 14명의 경찰관이 있었으나 이날 밤 근무자는 3명뿐이었다. 40명의 무장대가 99식 총 2정을 갖고 습격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발포하자 모두 도망가

20)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앞의 책, 35쪽).

21) 위의 보고서 (위의 책, 58쪽).

22) 金碩訓(당시 지서협조원)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3~26쪽).

23) 대정면 인성·보성·안성리 지역을 통칭하는 지명.

24) 高亨元(당시 대정지서 순경)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위의 책, 38쪽).

25) 위의 보고서 (위의 책, 51쪽).

26) 위의 보고서 (위의 책, 51쪽).

버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무장대 측 자료는 2정의 총이 모두 고장이 나는 바람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²⁷⁾

한편 함덕지서에는 이날 무장대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이 없었지만, 경찰관 2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관해서는 무장대와 연계된 경찰관 1명이 다른 경찰관 1명을 납치해 무장대에 합류했다는 설이 있는데, 무장대 측 자료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²⁸⁾

이상 현지 확인을 통해 살펴본 바, 4월 3일 하루동안에 △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사망 8명, 부상 19명 △무장대=사망 2명, 생포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피해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 화북=경찰 사망 1명, 민간인 사망 2명, 지서 전소
- △ 신림·구림=경찰 부상 1명, 민간인 사망 5명·부상 10여 명, 무장대 사망 2명, 민가 방화 4채
- △ 남원=경찰 사망 1명, 민간인 사망 1명·부상 2명
- △ 한림=경찰 사망 1명·부상 2명, 민간인 부상 6명, 무장대 생포 1명
- △ 의도=경찰 사망 1명
- △ 함덕=경찰 행방불명 2명
- △ 세화=경찰 부상 2명
- △ 대정=경찰 부상 1명, 민간인 부상 1명

그런데 이 통계는 무장대 측 자료와 차이가 있다. 무장대 측의 자료는 4월 3일 공격에서 경찰관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함덕지서에서 행방불명된 2명 중 납치해간 1명을 살해했다고 해도 5명이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세화·대정지서 등의 사례에서 보듯 무장대는 지서 밖에서 총격을 가해 경찰관이 쓰러지면 상부에는 ‘즉사’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죽지 않고 부상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또 무장대 측 자료에는 ‘서청 사망 7명’이란 표현이 있으나, 확인할 길이 없다.²⁹⁾

이날 숨진 경찰관들은 마을마다 순직비가 세워져 있다. 이 때 사망한 경찰관들은 방침에 따라 순경은 경위로, 경사는 경감으로 모두 2계급 특진되었다. 이날뿐만 아

27)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앞의 책, 50쪽).

28) 위의 보고서 (위의 책, 62쪽).

29) 위의 보고서 (위의 책, 31쪽).

나라 제주4·3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희생된 모든 경찰관들은 2계급 특진되었다.³⁰⁾

나. 무장대의 조직과 무력

1) 무장대 구성원

4월 3일 무장봉기가 시작되자마자 군·경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무장대가 어떻게 조직·훈련되고 있으며, 병력과 무기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이후 무장봉기가 얼마나 조직적·계획적으로 벌어졌는가, 또는 관변자료의 주장처럼 과연 무장봉기가 남로당 중앙, 북한, 소련과 관련되어 있으며 제주도 무장대가 외부로부터 무기와 병력을 공급받았는가 하는 의문과도 관련되는 주제였다. 1967년 국방부에서 펴낸 『한국전쟁사』에는 무장대의 병력과 무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은 제주도에 병력 총 60,668명을 배치하고 본토결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패전과 더불어 일본군은 요새화 된 한라산의 진지와 막대한 무기 탄약을 산중에 매몰하고 철수한 바 있었다……. 제주인민해방군은 일본군의 철수시 산중에 매몰한 무기를 모집하여 이것으로 무장하고 군사훈련은 팔로군 출신들이 담당하여 중국에서 사용한 유격전으로 자못 그 기세는 당당하였다. 이들의 무장병력은 500명에 달하였고 이에 부화뇌동한 수도 1,000명에 이르러 총수 1,5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³¹⁾

‘제주도폭동의 군사적 배경’이라는 소제목 아래 언급된 이 글은, 첫째 무장대는 일본군이 한라산에 매몰한 막대한 무기·탄약을 파내어 무장했고, 둘째 그 숫자는 ‘무장폭도 500명, 비무장폭도 1,000명’에 이르렀으며, 셋째 군사훈련은 팔로군 출신이 담당해 중국에서 사용한 유격전을 지도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마디로 ‘강력한 무장력’으로 요약되는 이런 내용은 이후 출판된 다른 관변자료들도 대부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강경작전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써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500명

30) 『東亞日報』, 1948년 5월 15일 ; 『國際新聞』, 1948년 10월 7일 ; 『漢城日報』, 1948년 11월 19일.

31)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解放과 建軍』, 1967, 437쪽.

가량이 일제 총기로 무장했고, 팔로군 출신이 유격훈련을 시켰다는 식의 내용은 무장봉기 초기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무장대에 대한 과장은 좌파 측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남로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력인민』은 제주4·3사건에 관한 첫 보도 때 무장대 병력과 무기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구성 : 민주운동, 특히 UN배격 2·7 항쟁으로 반동경찰의 추공을 받고 피신하고 있는 민주진영 지도자 ○천명으로 구성되어 학병(學兵) 중병(中兵)출신의 민애청원을 중심으로 한 청장년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도 이체를 끄는 것은 이번 투쟁이 시작되던 4월 3일 맹휴로 들어간 제주농업학교, 제주중학교 생도들이 과감하게 참가하여 철석같은 진용을 구성하고 있다.

△무장 : 일제가 전시 20만 대병의 군비로서 은폐 저장하여 두었던 무기 탄약과 미군상륙 후 바다에 집어넣었던 무기 등을 꺼내어 확보한 것 등이라는데 죽창, 철모자, 일본도는 물론이요 권총, 장총, 기관총도 있고 대포까지 가지고 있다 한다. 그리고 탄환, 수류탄 등도 거의 무진장이라고 한다.³²⁾

좌파적 시각에서 쓰여진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는 무장대 숫자를 '3,000명'으로 기술해 놓았다.³³⁾ 일제가 매몰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내용은 관변자료와 마찬가지인데, 무장대 숫자를 수천명으로 보거나 심지어 기관총과 대포가 있고 탄환과 수류탄이 무진장이라고 하는 대목은 그 과장의 정도가 관변자료 보다 오히려 더 심함을 보여준다. 관변자료의 과장이 강경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로당의 과장은 5·10선거 저지에 실패한 서울 등 전국에서 선전·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기존 자료와 미군 기밀문서 등을 분석해 비교적 객관적 표현에 힘썼던 존 메릴은 그의 논문에서 “주력 500명 가운데 반수는 총으로 무장했고, 나머지는 칼·낫·죽창·사제수류탄과 폭발물·곡괭이·삽 등으로 무장했다”고 썼다.³⁴⁾

그렇다면 실제 무장대의 무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32) 『노력인민』, 1948년 5월 25일.

33) 金奉鉉·金民柱, 앞의 책, 83쪽.

34)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 1980, pp.166~167.

우선 무장봉기 발발 초기 무장대 인원을 살펴보면, 300여 명인 것으로 보인다. 무장대로부터 노획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4·3’직전의 병력이 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등 총 320명으로 조직됐고, 4월 3일 당일 지서 습격에는 350명이 동원됐다고 기록돼 있다.³⁵⁾

그러나 경찰은 편의에 따라 이 숫자를 늘리거나 줄였다. 무장대 숫자는 4월 15일 경무부에 들어온 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언급됐는데, 이때에는 300~400명으로 소개됐다.³⁶⁾ 그런데 경무부 공안국장으로서 사건발생 직후 제주에 파견돼 제주비상경비사령관을 맡은 김정호는 4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장대 숫자를 2,000명으로 늘려놓았다.³⁷⁾ 그러나 같은 날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은 무장대 숫자에 대해 “500~600명”이라고 말했다.³⁸⁾ 김대봉은 며칠 후 “순전히 폭도로 인정할만한 수는 200~300명에 불과하다”며 더욱 숫자를 줄였다.³⁹⁾ 다시 며칠이 지난 후 김대봉은 “폭도의 실수는 수괴 15~16명, 그 외 약 500~600명으로 추정된다”⁴⁰⁾고 말했다. 당시 제주 주둔 경비대 9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은 무장대 숫자가 300명이라고 밝혔다.⁴¹⁾

이처럼 무장대 숫자에 혼선을 빚은 까닭은 전적으로 경찰의 편의 때문이었다. 중앙에서 제주에 특파됐다가 귀임한 형사대 일행은 5월 중순경 “경찰은 현재까지 30여 회 교전하여 폭도 약 500명을 검거하고 무기 다수를 압수하였다”고 전과를 알렸는데, 그들이 밝힌 무장대 숫자는 ‘2,000명’이었다.⁴²⁾ 이미 500명 가량을 검거하고서 무장대 숫자를 이전처럼 500~600명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제주 경찰 당국은 사태 종결 후 “공비 수는 한 때 16,900여 명에 달했으며 그 중 7,893명이 토벌대에 의하여 사살되었고 2,004명이 귀순, 7,000여 명이 생포되었다”라는 통계를 밝히기도 했다.⁴³⁾ 1948년 8월 한 잡지는 이같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무장대 숫자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다.

35)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앞의 책, 19, 30쪽).

36) 『東亞日報』, 1948년 4월 17일 ; 『우리新聞』, 1948년 4월 17일.

37) 『東亞日報』, 1948년 4월 30일.

38) 『東光新聞』, 1948년 5월 4일.

39) 『京鄉新聞』, 1948년 5월 6일.

40) 『東亞日報』, 1948년 5월 18일.

41) 金益烈, 실록유고 「4·3의 진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99쪽에 수록).

42) 『自由新聞』, 1948년 5월 15일.

43) 『濟州新報』, 1957년 4월 3일.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경비대가 제주에서 사용한다는 명칭, 즉 인민해방군의 (반란군) 수는 시종여일하게 500명이라고 하여 왔는데 이 수는 당국이 수차에 걸친 소탕성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의 주동부대는 500명 정도라고 하니 이 500명이라는 것은 과연 수수께끼인가? 소탕성과나 500명이라는 두 가지 중에 허위가 하나 있어야 다른 하나가 진실로써 성립될 것이다.⁴⁴⁾

한편 경찰은 무장대 구성원의 성분에 대해 처음부터 ‘외부 유입설’을 주장했다. 무장봉기 직후 김정호 제주비상경비사령관은 “폭동사건은 제주도민의 주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육지부에서 침입한 악질불량 도배들이 협박 위협 등으로 도민을 선동시켜 야기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밝혔다.⁴⁵⁾ 김정호는 며칠 후 “반도를 체포하여 다 문초하여 보면 대개 백정들로 좌익계열에서는 일부러 잔악한 살인을 감행하기 위하여 남조선 각지로부터 백정을 모집하여다 제일선에서 경찰관과 그 가족, 선거위원 등을 살해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⁴⁶⁾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도 “백정 같은 사람을 돈으로 매수, 지명살해를 한 사실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⁴⁷⁾

무장대원의 성분이 외부에서 모집해온 백정이라는 주장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무장대의 잔혹성’을 선전하는데 이용됐다. 이어 중국 팔로군 출신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은 이런 주장에 대해, 팔로군이 참가하였다는 풍설은 낭설이며 폭도들은 주로 제주도민이라고 해명했지만,⁴⁸⁾ 군사부 최고 간부급에는 팔로군에서 상당히 훈련을 받은 자가 있다는 보도⁴⁹⁾가 여전히 나오기도 했다. 외부 유입설은 심지어 북한군 유입설로까지 확대되었다. 북한군 유입설은 미군정장관인 딘 소장에 의해 처음으로 나왔다. 제주도를 시찰하고 돌아온 딘 장관은 5월 6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북조선 공산군 간자(間者)가 5·10선거에 반대하는 테러전에 종사하는 게릴라를 지휘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나와 남조선 관헌이 별개로 행한 조사는 다 같이 외부 간자가 오해를 가진 청년들을 교사하여 선거찬동자를 살해하고 그들의 가족을 소각하게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 촌락은 두 부대가 양면에서 습격

44) 洪漢杓, 「動亂의 濟州島 이모저모」, 『新天地』, 1948년 8월호, 108쪽.

45) 『濟州新報』, 1948년 4월 8일.

46) 『東亞日報』, 1948년 4월 30일.

47) 『東光新聞』, 1948년 5월 4일.

48) 『朝鮮日報』, 1948년 5월 6일.

49) 『東亞日報』, 1948년 5월 8일.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대는 철퇴하고 다시 합류하여 산중으로 퇴각하고 있는데 이 습격상태를 보전대 동 습격은 동도 내에 있는 북조선 군인이 무전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⁰⁾

그러나 1948년 7월호로 출판된 잡지 『신천지』는 “중공군이 잠입했느니, 일본 공산당원들이 들어 있느니, 북조선 인민군 간부가 무전기로 지휘하고 있느니 한라산 폭도들에 대한 억측은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정작 확인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들의 교묘한 전술만이 화제와 더불어 파문을 일으킬 뿐이다”라며 외부 유입설을 부인했다.⁵¹⁾ 『신천지』는 8월호에서도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북조선이니 팔로군의 원조와 지휘를 받느니 하던 초기의 풍문은 허설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⁵²⁾ 1948년 7월 제주도 주둔 최경록 제11연대장도 “팔로군이나 북조선 인민군이 다수 가담하고 있다고 하며 또 포로도 있다는데……”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일은 전연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⁵³⁾

이처럼 무장대원에 대한 외부 유입설은 곧 낭설임이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여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북한군 유입설’은 곧이어 등장하는 ‘북한선박 출현설’ ‘소련 잠수함 출현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후에는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나 당시에는 강경작전의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했다.

2) 무기 현황

무장대의 무기에 대한 추측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주로 칼과 죽창으로 무장해 있고 총기류는 일제 99식 총 몇 정이 전부라는 설에서부터 기관총과 대포까지 가지고 있고 탄환과 수류탄이 무진장 있다는 설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 1948년 4월 말경 김정호 제주비상경비사령관은 무장대가 3개월 분의 탄약과 식량을 저장하고 있으며 기관총을 소지한 자도 보았다고 주장했다.⁵⁴⁾ 그러나 5월 초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은 무장대가 기관총을 가지고 있다는 풍설은 낭설이라고 일축했다.⁵⁵⁾

50) 『우리新聞』, 1948년 5월 8일.

51) 趙德松, 『流血의 濟州島』, 『新天地』, 1948년 7월호.

52) 洪漢杓, 앞의 글, 110쪽.

53)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21일.

54) 『서울신문』, 1948년 4월 30일.

55) 『朝鮮日報』, 1948년 5월 6일.

실제로 4월 3일 무장봉기 때 무장대의 총기 보유 상황은 매우 빈약했다. 4월 3일 성산포지서를 포위했던 40명 가량의 무장대의 무기 중 총기류는 일제 99식 총 등 2정 뿐이고 나머지는 갈고리·죽창·몽둥이 등을 들고 있었다.⁵⁶⁾ 남로당 대정면책 출신인 이운방은 “궤기 당초의 무기조달 상황을 보면 소총이 약 30정 정도였다고 하며 대정면에는 소총이 3정 뿐이었다”고 증언했다.⁵⁷⁾

무장대의 무기가 매우 빈약했음은 노획물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1948년 6월 유동열(柳東悅) 통위부장은 제주도에서의 경비대 활동에 관해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는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달간의 경비대가 거둔 전과가 소개됐는데, ‘포로와 귀순자 3,126명, 사망 7명, 유기시체 1명’이라는 전과에 노획물은 겨우 ‘99식 총 3정, 수류탄 15개, 청룡도 5개, 철모 17개, 죽창 12개’였다.⁵⁸⁾ 1948년 6월 제주 현지에서 취재활동을 벌였던 조선통신 특과원 조덕송의 현장보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토벌군이 ‘대정면 인민군사령부’를 습격해서 압수했다는 무기를 살펴봤더니, 곤봉, 구시대의 엽총, 일본도, 죽창, 철창 등이었다면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무기, 이로써 최신 무기에 생명을 걸고 버티고 나서야 할 절대성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⁵⁹⁾ 미군 사령관인 브라운 대령도 7월 1일자 보고서를 통해 “10%정도는 총으로 무장하였고, 나머지는 일본도와 재래식 창으로 무장하였다”고 밝혔다.⁶⁰⁾

빈약했던 무장대의 병기는 첫 무장봉기 이후 다소 보강됐다. 4월 3일 지서 습격 때 총기를 일부 탈취했고, 이후 일부 경비대원들이 무장대 측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미군보고서는 이에 대해 “폭도들은 4월 3일 하루동안에 미제 카빈총 6정과 일제 99식 총 1정, 그리고 탄약 119발을 탈취해 갔다”고 기록했다.⁶¹⁾ 1948년 5월 20일에는 9연대 군인 41명이 탈영했는데, 이 때 탈영병들은 개인병기와 장비, 그리고 실탄 5,600발을 가져갔다.⁶²⁾ 탈영병 41명 중 20명이 이틀만인 5월 22일 체포되면서 소

56) 金暘洙(당시 성산포지서 순경)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96쪽).

57)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I』, 한울, 1989, 225쪽.

58) 『東亞日報』, 1948년 6월 5일.

59) 趙德松, 앞의 글, 91쪽.

60)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8,” July 1,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6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01, April 5, 1948.

6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42, May 24, 1948. 보고서에는 5월 21일

총 19정과 실탄 3,500발이 회수되었지만⁶³⁾,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21명의 무기로 인해 무장대의 병기 현황이 크게 늘었다. 1949년 2월 4일에는 한 중대가 총기를 운반하다가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99식 총 150정을 탈취당하기도 했다.⁶⁴⁾

그러나 무장대의 병기 상황은 이런 총기의 탈취에도 불구하고 늘 탄약이 부족했고 미군 측으로부터 계속 신식 무기를 공급받는 군·경에 대항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한때 북한이나 본토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는다는 풍문이 돌았으나 그것은 억측일 뿐이었다. 이같은 사정은 주한미군사령부가 1949년 4월 1일 제주도 사태를 종합 분석한 기밀문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현재 반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탄약 부족이다. 노획하고 탈취한 식량은 풍부하다. 일본 군대가 남긴 동굴은 꽤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 주고 있으나, 탄약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한국군으로부터 노획한 경기관총 3정과 박격포도 탄약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생포된 반도들에 따르면 현재 탄약 저장량은 M-1 소총 실탄 800발, 카빈 소총 실탄 90발, 일본제 99식 소총 실탄 400발에 불과하다 한다. 노획한 미제 무기의 탄약은 토벌대로부터 탈취하는 것이 유일한 공급원이다. 그러나 반도들은 99식 소총의 경우 실탄 2,000발 정도의 재장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반도들이 본토나 북한으로부터 병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으나 이러한 보고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한국 해군함정의 지속적인 순찰과 공중 정찰 및 경찰의 해안 마을에 대한 빈틈없는 방어는 외부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⁶⁵⁾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장봉기 당시 무장대의 인원은 300여 명 뿐이었고, 무기 역시 이후 다소 보강되긴 했으나 4월 3일 첫 봉기를 일으킬 때는 일제 99식 총 30여 정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빈약한 것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무장대 노획문서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4월 3일

로 되어있으나 탈영이 발생한 시점은 5월 20일 밤이다. 이는 당시 9연대 군인과 대정지서 경찰의 증언, 그리고 사망한 대정지서 경찰과 급사의 사망일자 등을 통해 확인된다. 탈영 군인들은 5월 20일 밤 대정지서를 습격해 경찰을 살해한 후 돌아갔는데, 5월 21일 오전 인근의 무장대가 대정지서로 와서 지서 건물을 불태워 버렸다. 미군보고서는 이 두 사건을 묶어 '5월 21일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③, 1995, 106~137쪽 참조).

6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44, May 26, 1948.

6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58, February 8, 1949.

6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무장봉기 때 동원된 무장대 인원수는 350명이었고, 병기로는 99식 소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다이너마이트) 25발, 연막탄 7발, 나머지는 죽창이었다.⁶⁶⁾

3) 조직과 편성

무장대는 어떻게 조직·편성되었는가. 증언해 줄만한 무장대 수뇌부가 없는 상태에서 무장대 조직과 편성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좌파 측에서 출판한 책자, 무장대로부터 노획한 문서, 그리고 미군자료 등을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① 좌파 측 자료의 소개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는 무장대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 시기별로 그 변천과정을 소개했다. 즉 무장봉기가 시작되기 전 고문치사 사건 등이 벌어지자 각 면리(面里)에 자위대(自衛隊)가 편성되었으며, 이러한 대중적인 열망과 원호의 토대 위에서 한라산 등 산악과 밀림지대 등 각 지구에 유격대(遊擊隊)가 편성됐다는 것이다.⁶⁷⁾ 이 책자는 이어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에는 “무장대를 일층 강화 발전키 위해 ‘자위대’를 해체하고 각 면에서 열렬한 혁명정신과 전투경험의 소유자 30명씩을 선발하여 ‘인민유격대(속칭 인민군)’를 조직하였으며, 또한 그의 기동성과 민활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대와 소대로 구분 편성하였다”면서 “△제1연대=조천·제주·구좌면-3·1지대(이덕구) △제2연대=애월·한림·대정·안덕·중문면-2·7지대(김봉천) △제3연대=서귀·남원·성산·표선면-4·3지대(?)”로 연대 구분을 하였다. 이밖에 독립대로서 경찰임무를 하는 특공대(特攻隊), ‘반동’들의 동정과 지방자위대의 폐단을 감시하는 특경대(特警隊)가 조직되었고, 유격대의 사상교육을 위한 정치소조원을 각 대와 소부대에 배속하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민유격대 재편성과 함께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을 가일층 주동성을 갖고 활발하게 전개키 위하여 각 읍·면과 행정단위로 강력한 자위대(10명)도 조직하였다”고 밝혔다.⁶⁸⁾

복잡하게 소개된 무장대 구성을 무장봉기 직후 시점에서 정리하면, △본격적으로

66)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앞의 책, 19쪽).

67) 金奉鉉·金民柱, 앞의 책, 77~81쪽.

68) 金奉鉉·金民柱, 앞의 책, 88~89쪽.

입산해 활동을 하는 정예의 '인민유격대'(각 면에서 30명씩) △각 행정단위에서 활동하는 '자위대'(10명) △정찰 임무를 하는 '특공대' △각 지방 상황을 감시하는 '특경대' △유격대 사상교육을 하는 '정치 소조원'등으로 요약된다.

이어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는 도 당부 간부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 '도 당부' 책임 = 안요검, 조몽구, 김유환, 강기찬, 김용관
- △ '도당 군사부' 책임 = 김달삼(본명 이승진), 김대진, 이덕구
- △ 총무부 = 이좌구, 김두봉
- △ 조직부 = 이종우, 고철중, 김민생, 김양근
- △ 농민부 = 김완배
- △ 경리부 = 현복유
- △ 선전부 = 김은한, 김석환
- △ 보급부 = 김귀한
- △ 정보부 = 김대진
- △ 부인부 = 고진희⁶⁹⁾

도 당부 책임자나 군사부 책임자가 여러 명인 것을 보면, 위 조직표는 어느 한 시점의 것이라기 보다는 시기별 책임자 전부를 나열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무장대 출신 증언자는 무장대 조직에 대해, 도 사령부 밑에 각 면마다 면사령부가 있었으며, 도 사령부에는 케(캡틴), 조직책, 군사부책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투쟁위원회'를 이루어 모든 결정을 하였다고 증언했다.⁷⁰⁾

다른 증언을 통해 들어본 면 당부의 조직체계는 각각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대정면당부의 조직은 케(캡틴)와 조직부·자위부(군사부)·총무부·선전부가 있었으며, 주요 사항은 케·조직부책·자위부책 세 사람이 결정했다. 그리고 자위부책 밑에는 특경대(3개 소대)와 각 마을별로 자위대가 있었다.⁷¹⁾ 구좌면당부에는 총책(K동지) 밑에 조직책(O책)·선전책(A책)·총무 등 3개 부서가 있었으며, 조직책이 관장하는 '특행대'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었다고 한다.⁷²⁾

69) 金奉鉉·金民柱, 앞의 책, 89쪽.

70) 제주4·3연구소, 『4·3長征』 6, 1993, 76쪽.

71) 제주4·3연구소, 앞의 책, 76~77쪽.

72)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00쪽.

② 미군의 조사보고서

제주 주둔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의 명령에 따라 작성된 '제주도 남로당 조사보고서'는 무장대 조직과 편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948년 6월 20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인민해방군과 지원단체인 자위대 조직원들과 접촉해 왔던 포로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작성됐으며, 남로당의 당과 군사부 양쪽의 상황과 조직, 지휘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로당 조직'은 전라남도위원회, 제주도위원회, 제주읍위원회, 면위원회, 마을위원회, 인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전라남도위원회는 제주도위원회에 지시를 내리는 상부기관이다.

제주도위원회는 제주도의 모든 좌익단체에 지령을 내리는 상부기관이다. 제주도위원회 간부는 위원장 김유환, 부위원장 조몽구, 간부부장 현두길(다른 각 부장을 조정·통제함), 조직부장 김달삼, 선전부장 김용관, 농민부장 이종우, 청년부장 김광진, 여성부장 김금순, 재정부장 김광진.

제주읍위원회는 다른 면조직과는 다르다. 이곳에는 2개의 독립된 위원회인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조직돼 활동하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제주도위원회를 통해 지령을 받는다. △제주읍위원회(일반위원회)는 읍내 당의 합법 활동에 대한 사법권을 갖는다. 이 위원회는 다른 면위원회와 같은 기반에서 활동하고 구성이 같다. 조직원들은 위원장 강규찬, 부위원장 겸 조직부장·총무부장 고갑수, 간부부장 강대석, 선전부장 고철중, 청년부장 임태성. △제주읍특별위원회는 제주읍에만 있는 당의 지하조직을 지휘한다. 제주도위원회로부터 모든 명령을 받는다. 임무는 군정청, 국립경찰, 경비대, 학교, 우익단체 같은 전략적 정보청취소에 프락치를 심는 일과 위에 언급된 조직 내에 소규모 비밀 '세포'를 증강해 당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비밀 세포들은 제주읍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복활동을 도모하는 이 조직의 무모하고 냉혹한 효율성을 보여주는 놀랄 만한 한가지 사례는 경비대 제11연대장을 살해한 일일 것이다. 이 특별위원회는 남로당이 불법화하면, 이와 관련한 일상적인 비효율성이나 방해받지 않고 제주도위원회의 기능을 맡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읍특별위원회는 임무를 확대하는 한편 제주도 지하조직의 최고위원회가 될 것이다. 제주읍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 김응환, 조직부장 강대석, 선전부장 이창수, 학생부장 한국섭, 재정부장 이창욱.

면위원회들은 제주도의 최고위원회와 같이 여러 부서로 조직돼 있다. 또 모든 하위 군사조직과 준군사조직처럼 구성돼 있으며 한 조직원이 담당한다.

마을위원회는 한 조직원이 여러 부서의 임무를 겸한다. 그러나 심문팀 보고서는 마을위원회가 최소한 조직원 3명, 즉 위원장과 선전부장, 조직부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폭도들이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지명해 환호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이 사례에서는 1945년 일본이 항복한 뒤 조직됐던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선출됐다. 이런 선거절차는 무장한 폭도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현재 제주도 민간인 수용소에 수감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폭도들이 마을을 떠난 뒤 그들의 명령에 따라 선전 및 조직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둘째로 ‘남로당 군사부’는 1948년 4월 초 구국투쟁위원회로 바뀌었으나 여기서는 ‘군사부’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무장부대는 ‘인민해방군’과 ‘자위대’ 등 2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된다. 인민해방군 구성원들은 산폭도들이며 그들은 제1선의 전투부대라 할 수 있다. 자위대는 산폭도 인력을 보충하고 마을과 폭도부대 사이의 연락 책임을 맡는 기능 이외에 일반 군대의 보급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군사부에는 인민해방군과 자위대 외에 ‘세포’와 ‘관련조직’이 포함된다.

인민해방군의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각 면은 폭도 1개 중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제공한다. 이런 중대와 대대들은 종종 그들 고유의 마을 이름을 사용한다. 상황에 따라 병력규모가 달라진다.

인민해방군의 전투서열과 관련, 대대 사령관은 정보부, 병기부, 보급부, 위생부 등의 조직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80명 가량으로 구성된 1개 대대는 2개 중대와 1개 기동부대로 나뉜다. 기동부대는 폭도사령관의 직접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장교들은 일본식 칼·권총·철모로 신원이 확인된다. 각 부대의 구성과 평균인원을 보면, △대대(60~80명)=각 면에 1개 이상 △중대(25~35명)=대대 당 2개 중대 △소대(13~15명)=중대 당 2개 소대 △분대(5~7)=소대 당 2개 분대.

인민해방군의 훈련 상황을 보면, 보고들마다 그 내용이 다소 다르다. 한 보고서는 “지휘관이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막사 앞에 2열 중대로 집합하는 하루 3차례의 점호가 있으며 오전 점호 뒤에는 1시간 동안 달리는 등 엄격한 체력훈련이 계획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부대에 대한 보고서에는 부대에 있는 동안 나무 모으기와 숯 만들기 식량창고에서 식량을 운반하는 등의 가사임무만 한다고 언급돼 있다. 부대 입구에는 보초(한국어 빗개)를 서며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2개의 검문초소가 있다. 한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엄격하게 격리되며, 막사 부근을 떠나지 말도록 명령받는다. 또 이 부대에 있는 건물들은 약 100야드 정도씩 떨어져 있으며, 인접 건물에 있는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접촉은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습격 나갈 때만 여러 건물의 인원들이 2열 중대로 집합해 점호를 받으며, 무기와 실탄이 지급된다.

인민해방군의 정치학습은 정치지도원들이 담당한다. 정치지도원은 끊임없이 남로당의 목적을 교육하며 특히 습격에 앞서 “어떤 특정 마을에 있는 모든 인민은 가치가

없이 죽어 마땅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의 반역자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잡혔을 때 부대의 위치나 인원을 누설하지 말고, 오도(誤導)하거나 거짓말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요령 등을 가르친다. 보안을 이유로 간부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단순히 ‘지휘관’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인민해방군의 무기와 탄약은 일본이 만든 장비들이 압도적이고 99식 일제 소총이 주류를 이루는데, 현재 미제 카빈총과 M1 소총이 확인됐으며 한 보고서는 약 25명으로 구성된 기동부대가 미제 카빈총 10정과 일제 99식 소총 15정으로 무장했다고 밝혔다. 실탄은 실제 습격이 계획될 때만 20~50발 지급된다. 총을 갖고 있는 폭도들은 습격이 끝난 뒤 사용하지 않은 실탄을 반납한다. 다른 무기들은 일본 장교 칼과 총검, 지팡이나 곤봉, 죽창, 비수들이 있다. 지난 3주 동안 소련제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민해방군의 보급은 면내 마을에 있는 남로당을 통해 이뤄진다. 이 남로당은 사전계획에 따라 음식물과 의류, 자금, 인력충원, 명령과 정보를 제공한다.

자위대는 1948년 2월께 마을 단위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조직됐으며 1948년 5월 초 인민자위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위대의 조직은 표면상으로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교활한 폭도부대의 임시보급창이며 마을기지다. 마을 자위대에 대한 명령은 남로당 마을 위원회 위원장이 내린다.

자위대의 임무는 이름과 달리 마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도부대가 마을을 습격할 때 합류해 테러 공격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자위대는 보급조직 임무를 수행한다. 식량과 자금 모집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모집된 식량과 자금은 폭도부대의 연락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을 남로당위원회 위원장에게 건네진다. 면 지역의 폭도부대와 남로당 마을 조직 사이에 매우 긴밀한 연락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세포’와 ‘관련조직’이 있다. 민애청, 민주여성동맹, 전쟁 등 관련조직은 명목상 독립된 단체인데 남로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많은 구성원들이 이중 회원으로 있다.⁷³⁾

이 조사보고서는 미 24군단 정보참모부 형거(R. Hunger) 상사에 의해 작성됐다. 정보분석 전문가로 보이는 형거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주도 심문팀이 작성한 심문보고서를 주로 활용했고, 그밖에 정보원으로 미 방첩대 제주지구대, 경찰, 경비대, 그리고 포로들로부터 압수한 서류와 유인물 등을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⁷⁴⁾ 결국 미군팀의 정보력이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3) "Report on South Korean Labor Party, Cheju Do," June 20,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2, NARA, Washington, D. C.

③ 무장대 노획문서

한편 무장대 노획문서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시기별로 조직과 병력, 그리고 무기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장봉기 직전

1. 조직체계 : 10인으로 1개 소대, 2개 소대로 1개 중대, 2개 중대로 1개 대대
2. 조직 : ① 유격대(제주읍, 조천·애월·한림·대정·중문·남원·표선면 등 8개 면에 조직, 구좌·성산·서귀·안덕·추자면 등 5개 면은 제외)
② 특경대(도 군사위원회 직속)
3. 인원수 : 320명(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4. 병기 : 99식 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다이너마이트) 25발, 연막탄 7발, 나머지는 죽창

△ 제1차 조직 정비(무장봉기 직후)

1. 병력 정비 : 유격대를 250명으로 정리(이는 첫 무장봉기 때 톱 부대인 유격대와 후속부대인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한 이후 함께 산에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 혼란이 있고 보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 강화한 것)하였다가 재차 병력 확충의 필요성을 느껴 400명 정도로 확충

△ 제2차 조직 정비(5·10선거 직전)

1. 동기 : 엄격한 규율과 치밀한 기밀확보 그리고 신속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상의 필요에 의해 각 면 투쟁위원회 군사부 직속의 각 유격대를 도 사령부 직속으로 편성
2. 체계상의 정비 : 1개 분대 3명, 3개 분대로 1개 소대(10명), 2개 소대로 1개 중대(23명), 2개 중대로 1개 대대(49명), 2개 대대로 1개 연대(110명)
3. 병력 : 3개 연대로서 370명(特務部 20명 포함). 특경(特警)을 해체해 사령부 각 부문에 전원 배치

△ 제3차 조직 정비(5월 말일)

1. 동기 : 국방경비대의 대량 입도(4,000명)와 그의 포위 토벌전이 전개되자 충돌 회피와 비합법 태세 강화의 필요상 인원을 대량 감소 정리
2. 체계상의 정비 : 1개 분대 5명, 3개 분대로 1개 소대(16명·이 중 제3분대는 취사분대)
3. 인원 정리 : 370명을 240명으로 정리

△ 제4차 조직 정비(6월 18일 착수)

1. 동기 : 새로운 투쟁에 대비해 조직의 시급한 정비·강화의 필요성
2. 체계상의 정비 : (판독 불능)

74) Ibid.

3. 병력 : 3개 소대로 1개 지대(支隊) 편성. 1개 지대 인원수는 60명. 총 4개 지대 합계 240명에 도사령부 26명으로 총계 266명
- △ 제5차 조직 정비(7월 15일 정비 완료)
1. 인원수 : 501명(각급 지도부 35명, 통신대 34명, 유격대 120명, 특무대 312명)
 2. 병기 : ① 소총 147정(M1 6정, 카빈 19정, 99식 117정, 44식 4정, 30년식 2정)
 - ② 소총 탄환 7,740발(M1 1,396발, 카빈 1,912발, 99식 3,711발, 44식·30년식 721발)
 - ③ 경기관총(일본제) 1정
 - ④ 척탄통(擲彈筒) 2문(탄환 8발)
 - ⑤ 수류탄 43발
 - ⑥ 다이너마이트 69발
 - ⑦ 신호탄 2개
 - ⑧ 군도(軍刀) 16정
 - ⑨ 권총 8정(6연발 1정, 8연발 6정, 10연발 1정). 탄환 합계 119발
 - ⑩ 기타 라이깅 103발, 지뢰 라이깅 8발, 야포탄환 4발
 3. 주의 : ① 각급 정치부원은 상급 정치원 소속. 최상급 정치부원은 도당책 소속
 - ② 특무대(特務隊)는 지대(支隊) 정보과 소속(임무는 정보수집, 개인 테러, 군 활동에 호응 보급의 원조 등. 조직은 각 면에 특무대장 1명과 연락원 수 명을 두며 그 외에 3인 1분대, 1소대(10명)로 하고 1개 부락에 1~2명 정도로 조직하되 특무대원은 세포로부터 제외한다.
 - ③ 사령부 및 지대를 사령관(지대장)과 정치부원과 작전참모(작전교육과책)의 3인으로써 최고지도부 구성
 - ④ 각 지대 중 특무대는 각 면, 각 부락에 주둔하되 지대 지도부 통신대 각 유격대 소대는 지대 지도부 중심으로 밀집 생활함.⁷⁵⁾

이 무장대 측의 투쟁보고서도 매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의 원본은 1949년 6월 7일 경찰특공대가 이덕구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입수, 제주경찰청에 보관하게 됐고, 필사본을 과장급 이상 경찰 간부들이 소장하게 됐다고 한다.⁷⁶⁾

1948년 7월까지의 유격대와 자위대의 조직변화를 기록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4·3'직전에 320명으로 구성된 무장대 인원은 한때 240명까지 줄었다가, 7월에 이르러 501명까지 확대 편성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실제 총기로 무장한 유

75)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앞의 책, 17~29쪽).

76) 文昌松(77세, 제주시 용담1동, 당시 화북지서 주임, 2001. 11. 11. 채록) 증언.

격대는 120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무장대 숫자를 수천 명씩 기록한 기존의 자료들은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미군정의 대응

1)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설치

미군정은 사태 초기 이 사건을 ‘치안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당시 5·10총선거를 앞두고 단선(單選)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무력 충돌이 빈발했다. 미군 비밀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인 1948년 2월과 3월 두 달 사이에 무력충돌에 의해 전국적으로 경찰관 55명이 숨지고 좌파 청년 144명이 사살되었다.⁷⁷⁾ 국방경비대 제3여단 참모장 백선엽(白善燁) 중령은 마침 4월 2일 모슬포 주둔 제9연대를 시찰한 뒤 무장봉기가 일어난 4월 3일에는 제주읍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도 이를 ‘치안 문제’로 판단해 바로 제주를 떠나기도 했다.⁷⁸⁾

미군정은 무장봉기가 발생하자 4월 5일 아침 전남 경찰 약 100명을 응원대로 편성해 급파하는 동시에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해 사령관으로 경무부 공안국장 김정호(金正浩)를 파견하였다.⁷⁹⁾ 미군정은 또한 제주도 도령(道令)을 공포하여 타 지역과의 해상교통을 일체 차단하고 미군 함정을 동원해 해안을 봉쇄하였다.⁸⁰⁾ 이어 4월 10일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을 제2차로 파견해 경찰력을 더욱 강화했다.⁸¹⁾

또 서청 단원들도 증파되었다. 당시 서청 중앙단장을 지낸 문봉제(文鳳濟)는 잡지 『북한』과의 인터뷰에서 “4·3사건이 나자마자 조병옥 경무부장이 나를 불러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500명을 보내달라기에 보낸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⁸²⁾

7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33, April 2, 1948.

78) 白善燁, 『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107~108쪽.

79) 『獨立新報』, 1948년 4월 7일 ; 『濟州新報』, 1948년 4월 10일.

80) 『朝鮮日報』, 1948년 4월 17일.

81) 『東光新聞』, 1948년 4월 13일.

82) 北韓研究所, 『北韓』 1989년 4월호, 127쪽.

대동청년단 중앙본부에서도 단원들을 특파했다.⁸³⁾

사건 발발 직후 김정호 비상경비사령관은 “폭동사건은 육지부에서 침입한 악질 불량 도배들이 도민을 선동시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조병옥 경무부장은 4월 14일자로 「도민에게 고함」이라는 선무문을 발표, “여러분은 민족을 소련에 팔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분자의 흉악한 음모와 계략에 속은 것”이라고 사태의 성격을 규정했다.⁸⁴⁾

그러나 사태의 원인에 대한 처방 대신 응원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힘으로써 진압한다는 정책은 도민들의 반발을 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북한에서 쫓겨 내려와 공산주의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을 품고 있는 서청은 1년 전 이미 경무부 수뇌부에 의해 “주민의 90%가 좌익”⁸⁵⁾이라고 단정된 제주도민들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하여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 1948년 5월 초 제주를 시찰했던 광주지검 김희주(金禧周) 검찰관은 5·10선거 반대가 사건발단의 직접 원인이라면, 서북출신 경관들의 과도한 태도에 분개한 인민의 반항이 간접 원인이라고 지적했다.⁸⁶⁾

응원경찰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급파되는 바람에 무리한 행동으로 도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던 장군은 5월 6일 기자들과 만나 “제주도에 파견된 경찰의 반 수는 5일간의 훈련 밖에 받지 않았으며 이 결과로 지나친 행위를 하였을지 모른다”면서 “포학 행위를 한 경찰 2명이 미군 군법회의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⁸⁷⁾

그러나 강력한 경찰력을 통해 사태를 진압하려 했던 김정호 비상경비사령관은 “오후 8시 이후 전도의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사살해 버리겠다”는 강경한 작전을 전개했다.⁸⁸⁾ 그 결과 4월 24일 밤 9시경 조천면 조천리에서 거리를 걷던 주민 2명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이 중 문홍목(21)이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⁸⁹⁾

한편 경찰은 경비대가 사태 진압에 적극 나서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갈등을 겪었다. 심지어 경찰은 경비대를 출동시키기 위해 스스로 산간마을에 불을 지

83) 『大東新聞』, 1948년 4월 13일.

84) 『濟州新報』, 1948년 4월 8일·4월 18일.

85) 『漢城日報』, 1947년 3월 13일.

86) 『漢城日報』, 1948년 5월 22일.

87) 『우리新聞』, 1948년 5월 8일.

88) 『서울신문』, 1948년 4월 30일.

89) 『獨立新報』, 1948년 5월 4일.

른 후 무장대의 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방부에서 펴낸 『한국전쟁사』는 그 무렵의 군·경 갈등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경찰은 경비대의 진의를 타진해 보기도 하였다. 즉 반도들의 근거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산간에 접한 부락을 소각시켰다. 주민들이 몰려와서 경찰이 부락에 불을 질렀다고 경비대에 신고하였다. 대대장인 오일군 소령은 출동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일부 하사관들이 대대장 모르게 출동하였다. 경찰 이야기는 반도들이 부락을 습격하여 방화 소각하고 경찰이 교전하다가 희생자가 많이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경비대를 출동시키기 위한 계략에서 조작하였다는 것이 판명됨으로써 군경간에는 더욱 불미한 간격이 조성되었다.⁹⁰⁾

2) 평화협상 추진

① 군정장관의 귀순공작

무장봉기가 처음 일어났을 때 경비대 제9연대는 이 사건을 도민과 경찰·서청간의 충돌로 간주했다. 서울에 있는 경비대 수뇌부에서도 제주도 사건을 치안상황으로 보고, 그 진압은 경찰이 할 일이지 군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⁹¹⁾ 그 동안 벌어졌던 군·경간의 갈등도 경비대의 출동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군인들은 경비대가 향후 창설될 국군의 모체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은 경찰예비대라는 뜻이 담긴 경비대를 무시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경비대원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고, 무력충돌이 발생해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⁹²⁾

그런데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던 경비대 제9연대는 4월 13일 제주읍에 특별부대(부대장 김용순 대위)를 파견했다. 그러나 이것은 진압작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비 치안’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인원도 10명 미만이었다. 김익렬 제9연대장과 정보주임 이윤락 소위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 군은 정부의 재산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 확수(確守)하기 위하여 군이 출동하였다며 그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⁹³⁾

9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439쪽.

91) 張昌國, 『陸士卒業生』, 中央日報社, 1984, 115~116쪽.

92) 韓鎔源, 『創軍』, 博英社, 1984, 134쪽.

93) 『濟州新報』, 1948년 4월 16일·18일.

그러나 미군정 수뇌부는 경찰력만으로 한계를 느끼자 4월 17일 제주주둔 미군 제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을 통해 경비대 9연대에게 진압 작전에 참여토록 명령했다. 아울러 부산 제5연대 1개 대대(진해 주둔)를 4월 20일부로 제주에 파견하도록 명령하면서 부산 제3여단의 미고문관 드루스(Clarance Dog De Reus) 대위가 이에 합류해 동참하도록 했다.⁹⁴⁾ 딘 군정장관은 이어 4월 18일 맨스필드 중령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1. 귀관은 제주도의 상황에 정통하다.
2. 4월 18일 제주도에 도착한 두 대의 L-5 연락기는 귀관의 지휘 하에 있다.
3. 한국 국방경비대 추가병력이 4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할 것이다. 도착 즉시 이 대대도 현재의 다른 한국 경비대와 같이 귀관의 작전통제 하에 놓일 것이다.
4. 귀관은 귀관의 배치에 따라 제주도의 폭도들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데 군 부대를 이용하라.
5. 대규모의 공격에 임하기 전에 귀관은 소요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라.
6. 경비대의 작전에 의해 붙잡힌 포로들은 경찰에게 인계하지 말라. 그들을 경비대에 의하여 준비되고 보호된 막사에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토로 후송하도록 조치하라.
7. 일일 상황보고를 무선통신으로 본부에 보고하라.⁹⁵⁾

딘 장관의 이 명령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4월 20일 파견될 제5연대 1개 대대와 기존의 제9연대 병력을 작전통제하라고 명령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군과 함께 사태 진압에 나설 대상으로 경찰 대신 경비대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로를 경찰에게 인계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셋째,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앞서 무장대 지도자와 교섭하도록 지시한 점이다. 이는 향후 김익렬 제9연대장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 간에 열린 평화협상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미군 기밀문서를 종합해 볼 때, 경비대가 처음으로 토벌전에 나선 것은 4월 22일

94) "Message," April 17,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Bulk Declass E. O. Misc. Series, Box No. 119, NARA, Washington, D. C.

95) "Cheju-Do Operation," April 18,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68, NARA, Washington, D. C.

밤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미 6사단 일일보고서는 “48년 4월 22~23일 밤중에 경찰과 경비대는 합동작전으로 최근의 소요에 참여한 혐의가 있는 60명의 죄익을 체포했다. 경찰은 유격대원들이 은신했을 것으로 혐의가 가는 집들을 계속해서 습격했고, 경비대는 그 마을의 일정한 지역을 방어하는 것으로 지원했다”고 기록했다.⁹⁶⁾ 그런데 보고서 내용이 말해 주는 것처럼 이 합동작전에서 경비대가 한 일은 무장대와 직접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색전을 간접 지원하는 것이었다.

4월 28일 김익렬 연대장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 간의 평화협상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추진되었다. 이 평화협상은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협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유혈사태가 벌어졌고, 후에 김익렬 연대장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런데 평화협상은 김익렬 연대장 혼자 결정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딘 장군은 이미 4월 18일에 “대규모의 공격에 임하기 전에 소요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맨스필드에게 명령해 놓은 상태였다.

이는 김익렬 연대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익렬 회고록⁹⁷⁾을 통해 본 회담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딘 장관의 지시를 받은 맨스필드 중령은 귀순공작을 추진하기 위해 유해진 지사, 김정호 제주비상경비사령관, 최천 제주경찰감찰청장, 그리고 제주도 민족청년단장에게 책임자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겁이 났는지 병에 걸렸다고 핑계를 대거나 연락도 없이 출장을 가버리는 등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맨스필드 중령이 다섯 번째로 요청하게 된 사람으로서 맨스필드가 자신에게 무장대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맨스필드 중령의 요청을 받은 김익렬 연대장은 즉시 무장대에게 평화협상을 요청하는 전단을 만들어 4월 22일 비행기를 통해 살포했다. 한 언론은 전단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단선단정을 죽음으로써 항거하려는 제주도의 투쟁은 날로 확대하여 가고 있어 평화의 섬 제주도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로 화하고 있는 터인데 방금 현지에 출동중인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육군중령 김익렬(金益烈) 씨는 지난 22일 다음과 같은 전단을 비행기로 산포하여 그 가열한 전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96)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18, April 24, 1948.

97) 金益烈, 실록유고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전예원, 1994.에 수록).

“친애하는 형제 제위에 : 우리는 과거 반삭(半朔) 동안에 걸친 형제 제위의 투쟁을 몸소 보았다. 이제부터는 제위의 불타는 조국애와 완전 자주통일 독립에의 불퇴전의 의욕을, 그리고 생사를 초월한 형제 제위의 적나라한 진의를 잘 알았다. 이에 본관은 통분한 동족상잔, 골육상쟁을 이 이상 백해무득이라고 인정한다. 우리 국방경비대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나는 동족상잔은 이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형제 제위와 굳은 악수를 하고자 만반의 용의를 갖추고 있다. 본관은 이에 대한 형제 제위의 회답을 고대한다. 우리가 회합할 수 있는 적당한 시일과 장소를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⁹⁸⁾

그러자 무장대 측으로부터 ‘연대장이 직접 나와야 하며, 수행인은 2명 이상은 안 된다. 만남 장소는 무장대 진영이어야 하며 장소와 시기는 추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이 왔다.

김익렬 연대장은 무장대 측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한 후, 이 사실을 맨스필드 중령과 군사고문 드루스 대위에게 보고하고 상세한 지시를 요청했다. 맨스필드 중령은 김익렬 연대장에게 “① 제9연대장 김익렬은 폭도와의 평화회담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행사에서 미 군정장관 딘 장군을 대리한다. 폭도들의 살인 방화 등 범죄자에 대한 재판에서 극형을 면할 수 있는 사면의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친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서면으로 조인된 모든 약속의 이행은 미 군정장관 딘 장군이 책임진다 ② 요구조건은 즉시 전투중지, 무장해제, 범법자의 자수와 범법행위의 장소·일자·범행자 명단의 작성 제출” 등 부여된 권한과 회답에 임하는 요령 등을 알렸다.⁹⁹⁾

한편 군 자료에 의하면, 김달삼은 제주도 부대장을 통해 통위부 참모총장인 이형근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1950년 3월 20일 당시 동해사단장이던 이형근 준장이 북한에서 빨치산을 이끌고 온 김달삼에게 보냈다는 ‘귀순 권고문’에 나온다. 즉 이형근은 이 귀순 권고문에서 “본관은 과거 통위부 참모총장 재직시 귀군이 제주도에서 아군 부대장을 통하여 본관과 면담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¹⁰⁰⁾ 여기서 ‘제주도 부대장’이 김익렬 연대장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만일 ‘제주도 부대장’이 김익렬 연대장을 지칭한 것이라 할지라

98) 『獨立新報』, 1948년 4월 30일.

99) 金益烈, 앞의 글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15~317쪽).

10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對非正規戰史』, 1988, 129쪽.

도 김달삼이 이형근과의 면담을 요청한 시점이 '4·28 평화협상'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김달삼이 평화협상에 임하면서 그 '효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김달삼이 김익렬 9연대장과의 협상을 시작하며 우선 "얼마나 약속이행의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던 데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김달삼이 이형근 참모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평화협상의 효력을 보장받기 위한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하지 사령관 개입

미군정 수뇌부는 회담일이 임박해오자 긴밀하게 움직였다. 미 24군단 작전참모 타이센(A. C. Tychsen) 대령의 지시에 따라 슈(M. W. Schewe) 중령이 무장대와의 협상 하루 전날 4월 27일 제주에 도착했다. 슈 중령의 임무와 활동은 그가 타이센 대령에게 보낸 보고서¹⁰¹⁾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보고서에는 슈 중령의 임무에 관해 "제주도 주둔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을 만나 섬의 상황을 평가하고 활동을 관찰하며, 제주도의 민간인에 대한 통제와 게릴라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맨스필드 중령이 제안한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결과보고가 사령부에 보고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즉 슈 중령 임무의 핵심은 맨스필드 중령이 제안한 계획(선무공작)의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지적돼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 첫째, 당초 평화협상은 미군정청 딘 장관의 지시에서 비롯됐지만 협상 직전 미 24군단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24군단 작전참모의 지시는 곧 주한미군사령관이자 24군단장인 하지 장군의 지시로서, 하지 장군이 평화협상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둘째, 제주 주둔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은 당초 딘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사고문관 드루스 대위, 김익렬 9연대장 등과 상의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협상 준비에 임했지만, 이제부터는 24군단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 24군단은 군사업무, 미군정청은 민간업무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데다, 미군정청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산하조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정청의 딘 장관이 제주 주둔 59군정중대를 통해 민간업무 외에 지방 차원에서의 군사적 명령을 일부 내릴 수는 있

101) "Disposition Form,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 Do Island," April 29,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68, NARA, Washington, D. C.

지만, 군령권은 엄연히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하지 장군은 평화협상에 대해 어떻게 임했는가. 이 역시 미 24군단에 서 파견된 슈 중령의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슈 중령은 4월 27일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 미 20연대장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 제주도에 파견된 미 20연대 병력을 책임지고 있는 가이스트(Geist) 소령, 그리고 경비대 제5연대 고문관 드루스 대위 등과 만나 상황을 논의했다.

슈 중령에 앞서 광주 주둔 미 20연대의 브라운 연대장 등 미군 일부 병력이 이미 제주에 와 있었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브라운 대령은 맨스필드 중령에게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의 지시사항을 알렸다. 지시사항이란 ① 경비대는 즉시 임무를 수행할 것 ② 모든 종류의 시민 무질서를 종식시킬 것 ③ 무장대 활동을 신속히 약화시키기 위해 경비대와 경찰이 확실한 결속을 할 것 ④ 미군은 개입하지 말 것 등이었다. 아울러 브라운 대령은 맨스필드 중령에게 현재 가용한 경비대 병력으로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맨스필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¹⁰²⁾

그런데 하지 장군의 지시사항을 보면, 경비대를 동원해 서둘러 사태를 진압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 ‘평화협상’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는 하지 장군이 딘 군정장관의 방침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음을 말해준다. 물론 딘 군정장관이 제안한 ‘평화협상’이란 것이 결코 무장대와의 공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본격적인 무력진압을 벌이기에 앞서 항복을 받아내자는 ‘귀순공작’이 딘 군정장관의 구상이었다. 김익렬 9연대장도 그의 회고록에서 ‘평화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귀순공작’이었다. 그런데 하지 장군의 강조점은 단순히 ‘사태 진압’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기 종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슈 중령은 4월 27일 제주도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만에 대대적인 작전을 폈다. 일주일 전 제주에 파견돼온 부산 제5연대 1개 대대 병력을 활용해 마을들을 수색했다. 모든 부두와 도로를 봉쇄한 가운데 무기, 삽, 곡괭이, 도끼, 전선 절단기 등을 찾기 위한 가옥 수색이 진행됐다. 아울러 혐의자, 단체 조직가,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했다. 그러나 전과는 거의 없었다. 마을에 젊은이는 거의 없었으며 여인들은 남편이 어디에 갔느냐는 질문에 대해, 죽었다거나 육지 또는 일

102) Ibid.

본으로 갔다고 대답했다. 미군들이 이 대답을 거짓이라고 판단해 더 자세히 물으면 여인들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¹⁰³⁾

미군은 정찰기를 띄워 작전 상황을 파악했다. 슈 중령은 미군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맨스필드의 조언을 받아들여 작전현장에 가지 않았으나 모든 작전을 지시했고 보고 받았다.

4월 28일에도 작전이 진행됐다. 작전에 앞서 경비대 제5연대 장교들, 군 고문관 드루스 대위, 경찰 고문관 번스(Burns) 대위, 범죄수사대(CID)의 메리트(Merritt)와 작전계획을 철저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슈 중령은 “제주도에서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더 나아가 제주도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군경의 성패에 남한 인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하지 사령관의 이야기를 전했다. 4월 28일의 작전은 슈 중령이 L-5 정찰기로 상공에서 확인하는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제5연대 병력이 트럭과 행군을 통해 4개의 마을에 진입했고 도로상이나 마을에 있던 민간인들을 집결시켰다. 슈 중령은 오전 11시 50분 59군정중대 본부로 돌아왔다가 작전결과를 보고받지 않은 채 오후 12시 40분 제주를 떠나 서울의 미군사령부로 복귀했다.¹⁰⁴⁾

이상이 4월 27일과 28일 이틀동안 슈 중령이 제주도에서 펼쳤던 작전인데, 왜 4월 28일로 예정된 평화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는지 의문이다. 또한 기존의 제9연대 병력을 제외하고 부산에서 파견돼 온 제5연대 병력을 동원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하지 장군이 사태 진압과 관련해 두 가지 목적을 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 장군은 일단 단 군정장관이 제안한 귀순공작 작전을 확인·감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향후 무력 진압작전에 대비해 무장대의 전력을 탐색하는 등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슈 중령에게 작전을 진행시킨 것이다. 그래서 작전 때 9연대를 제외해 김익렬 연대장이 평화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제5연대 병력을 동원해 작전을 펼친 것이다.

또한 4월 27일부터 이틀간 벌인 ‘작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평화협상에 지장을 줄만한 본격적인 무력충돌이 아니라 탐색전 혹은 위세 과시용 작전이였다. 이 같은 분석은 미 6사단과 미 24군단의 일일정보보고서¹⁰⁵⁾ 중 4월 27일과 28일의

103) Ibid.

104) Ibid.

경비대 작전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아래 보고서의 내용은 슈 중령의 작전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슈 중령의 작전은 당시 제주읍에 주둔하고 있던 제5연대 병력과 미 제20연대 병력을 동원해 제주읍 부근만을 수색한 것이다.

- 1948년 4월 27일 제주읍 영평리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에 출입 방해를 위한 도량이 파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¹⁰⁶⁾
- 1948년 4월 27일 정오부터 28일 정오 사이, 경비대 정찰대는 제주비행장 활주로 서쪽 3~5마일 지점에 위치한 제주읍 외도리와 애월면 하귀리에서 새로운 도로장애물과 절단된 전화선을 발견했다.¹⁰⁷⁾
- 1948년 4월 28일 미 보병 제20연대 정찰대는 제주읍 노형리에서 ‘자유롭고 통일된 조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김구와 이승만을 죽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뼈라를 습득했다.¹⁰⁸⁾

한편 슈 중령의 보고서는 ‘장래의 작전’과 관련, 4월 29일과 30일에도 연이어 작전을 벌일 계획이지만 이미 진행된 작전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작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미 6사단과 미 24군단 일일 정보보고에 4월 29일과 4월 30일 경비대가 작전을 펼친 기록이 전혀 없는 걸로 보아 슈 중령이 제주도를 떠난 4월 28일 정오 이후 더 이상의 미군 작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김익렬-김달삼 협상 성사

미군이 제주읍에서 수색전을 끝낸 직후 제주도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대정면 구역리에서는 김익렬 제9연대장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 간에 평화협상이 열렸다. 김익렬 회고록을 통해 본 협상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김익렬 연대장은 1948년 4월 28일 정오 대정면 모슬포 연대본부를 떠나 회담 장소인 대정면 구역리로 가서 김달삼을 만났다. 김익렬은 우선 김달삼에게 “제9연대가 지금까지는 전투를 개시하지 않았지만, 군대는 개인의 뜻에 관계없이 명령만 내리면 복종하고 전투를 한다”며 회담이 결렬되면 곧 전투가 벌어질 것임을 알렸다.

105) 제주 주둔 제59군정중대의 상급부대는 미 20연대, 미 6사단, 미 24군단 순으로 올라간다. 미 6사단과 미 24군단의 일일정보 보고에는 매일 매일의 제주도 상황이 기록돼 있다.
 106)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22, April 28, 1949.
 10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23, May 1, 1948.
 108)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23, April 29, 1948.

김달삼은 “당신은 미군정하의 군대인데 나와의 교섭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약속이 행의 권한이 있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김익렬은 “미 군정장관의 지시에 따라 왔으며 내가 가진 권한은 미 군정장관 딘 장군의 권한을 대표하며 오늘 나의 결정은 군정장관의 결정”이라고 밝혔고, 김달삼도 “나도 제주도의 도민의거자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협상이 진행됐다.

김익렬과 김달삼은 우여곡절 끝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다. 그것은 ① 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되 산발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연락 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는 배신행위로 본다, ② 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재개한다 ③ 무장해제와 하산이 원만히 이뤄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합의된 귀순절차는 회담 다음 날에 모슬포 연대본부와 제주읍 비행장에 각각 귀순자 수용소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서귀포·성산포 등지에도 수용소를 세우되 군이 직접 관리하고 경찰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이었다.

김익렬 연대장은 그의 회고록에서, 4시간에 걸친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밤늦게 제주읍으로 건너와 맨스필드에게 보고하자 맨스필드는 큰 만족감을 표했으며 자신이 요청한대로 전 경찰에 대해 지서 밖 외부에서의 활동을 일체 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¹⁰⁹⁾

그러나 협상 사흘만인 5월 1일 우익청년단이 제주읍 오라리 마을을 방화하는 세칭 ‘오라리사건’이 벌어지고, 5월 3일에는 미군이 경비대에게 총 공격을 명령함에 따라 협상은 깨어졌고 이후 제주4·3사건은 건잡을 수 없는 유혈충돌로 치닫게 되었다.

3) 진압정책 채택

① 오라리 방화사건

평화협상 사흘만인 5월 1일 벌어진 이른바 ‘오라리 방화사건’은 협상이 파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은 제주읍 중심에서 약 2km 가량 떨어진 오라리 연미마을에 우익청년단원들이 대낮에 들이닥쳐 10여 채의 민가를 태우면서 시작됐다.

오라리에서는 4·3무장봉기 이래 무장대와 경찰로부터 각각 죽임을 당하는 인명희생 사건이 몇차례 발생했다. 4월 29일에는 오라리 마을의 대동청년단 부단장과 단

109) 金益烈, 앞의 글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19~331쪽).

원이 납치된 후 행방불명되었고, 4월 30일에는 동시간인 대청단원의 부인 2명이 납치됐는데 두 여인 중 한 명은 맞아 죽고 한 명은 가까스로 탈출해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¹¹⁰⁾

오라리 방화사건은 5월 1일 벌어졌다. 오전 9시경 전날 무장대에게 살해된 여인의 장례식이 열렸다. 마을 부근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경찰 3~4명과 서청·대청 단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매장이 끝나자 트럭은 경찰관만을 태운 채 돌아갔고 청년단원들은 그대로 남았다. 그 중에는 오라리 출신 대청 단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오라리 마을에 진입하면서 좌과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들을 찾아다니며 5세대 12채의 민가를 불태웠다.

우익청년단원들이 민가에 불을 지르고 마을을 벗어날 무렵인 오후 1시경, 무장대 20명 가량이 총과 죽창을 들고 청년들을 추격했다. 청년단이 급히 피해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시각을 전후해 마을 어귀에서 이 마을 출신 경찰관의 어머니가 피살되었다.

오후 2시경, 서청·대청 단원들로부터 무장대 출현 소식을 접한 경찰기동대가 2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오라리 마을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장대는 이미 마을을 떠났고, 주민들은 불붙은 집을 진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총을 쏘며 진격해오자 주민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산 쪽으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고무생 여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 때 어머니를 잃은 박기하는 “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졌을 때 하늘에서 비행기가 오랫동안 머리 위를 맴돌았다”고 증언했다.¹¹¹⁾

경찰은 경비대 지프와 트럭이 출현하자 황급히 마을을 떠났다. 평화협상 당사자인 김익렬 연대장도 사건 발생 소식을 듣고 직접 모슬포에서 달려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경찰의 후원 아래 서청·대청 등 우익청년단체들이 자행한 방화라고 판단, 미군정을 찾아가 이를 보고했으나 묵살 당했다.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무장대의 행위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 대해 당시 제9연대 정보주임이었던 이윤락 중위는 “김익렬 연대장과 함께 맨스필드 중령을 찾아가 보고했더니 평화협상 결과에 만족해

110) 林甲生(제주시 이도2동, 당시 납치됐다 탈출한 대청단원의 부인)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152~153쪽)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19, April 27, 1948.

111) 朴基夏(고무생의 딸)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64쪽).

하던 지난번과는 달리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동화여관에 미군 CIC(방첩대)와 G-2(정보참모부) 간부요원들이 와 있으니 그들과 만나 협의하라’고 말했다. 만나보니 G-2 간부는 중령이었고 CIC간부는 소령이었는데, 그들은 우리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경찰 보고와 다르다. 그것은 폭도들의 짓이다’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해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했다.¹¹²⁾

한편 김익렬 연대장은 포기하지 않고 오라리사건의 조사를 계속해 다음 날인 5월 2일 오라리 주민들이 방화 주동자로 지목한 이 마을 출신 대청 단원 박 아무개를 제주읍내에서 검거해 모슬포 영내에 구금 조치했다. 그러나 박 아무개는 김익렬 연대장이 해임된 후 신임 박진경 연대장에 의해 곧 풀려나 경찰에 투신했다.¹¹³⁾ 이는 경비대원들의 불만을 샀고, 후에 박진경 연대장 암살범들이 재판정에서 박진경 연대장의 과오를 지적할 때 그 중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¹¹⁴⁾

그런데 이 오라리 방화사건은 미군 촬영반에 의해 입체적으로 촬영됐다. 미군 비행기에 의해 불타는 오라리 마을이 공중에서 찍혔는가 하면, 지상에서는 오라리로 진입하는 경찰기동대의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다. 긴박하게 돌아간 당시의 상황들이 촬영됐다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 무성영화의 필름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보관돼 있는데 제주4·3사건의 초기 상황을 다룬 유일한 영상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필름의 제목은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on Cheju-Do)’로서 존 메릴의 논문 「제주도 반란」에도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¹¹⁵⁾ 미군은 이 영화를 통해 오라리 방화사건이 무장대 측에 의해 저질러진 것처럼 편집해 놓았다. 따라서 이 영화는 강경진압의 명분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그 시점에 미군의 강경책이 결정돼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② 미군의 공격 명령

1948년 5월 3일 딘 군정장관 등 미군 수뇌부는 무장대를 총공격해 제주사건을 단

112) 李允洛(당시 제9연대 정보주임)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67~168쪽).

113) 박 아무개(당시 대청단원)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68~169쪽).

114) 『漢城日報』, 1948년 8월 14일.

115)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 1980, p.169.

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경비대총사령부에 명령했다. 무장대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귀순공작’이 파기된 대신에 무력에 의한 강경진압책이 채택된 것이다.

한편 5월 3일은 김익렬-김달삼 간의 평화협상에 따라 ‘귀순’의 성격을 띠고 산에서 내려오던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자들로부터 총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져 평화협상이 깨지는 계기가 된 날이기도 하다. 김익렬 연대장은 총격을 가한 자를 잡아보니 경찰이었으며, 취조한 결과 ‘상부의 지시에 의해 폭도와 미군과 경비대 장병을 사살하여 폭도들의 귀순공작 진행을 방해하는 임무를 띤 특공대’라고 자백했다고 증언했다.

김익렬 연대장은 이같은 경찰의 행태에 대해 “경찰은 폭동진압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과오와 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오히려 폭동을 조장, 확대하려고 하였다. 경찰들은 폭도를 가장하여 민가를 방화하고는 폭동의 소행으로 선전하고 다녔고, 이렇게 되자 폭도들도 산에서 내려와 각 지서를 습격하여 중지되었던 전투가 다시 개시되었다”면서 전투가 재발되자 맨스필드 중령도 크게 화를 냈다고 밝혔다.¹¹⁶⁾

그런데 이날 벌어진 경찰의 총격사건과 상관없이 이미 평화협상의 파기는 예정된 일이었다. 제주 주둔 미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과 김익렬 연대장이 제주도에 서 평화협상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중앙의 미군 수뇌부는 이미 무력진압 방침을 채택했고 이를 경비대총사령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경비대총사령부 총참모장 정일권(丁一權) 대령은 “5월 3일 이후 브라운 소장, 딘 군정장관 등의 현지 지휘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단시일 해결책으로 단연 공격작전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증언했다.¹¹⁷⁾

딘 군정장관은 지난 4월 18일 “대규모의 공격에 임하기 전에 귀관은 소요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맨스필드 중령에게 명령함으로써 김익렬-김달삼 간에 열린 평화협상의 단초를 제공했던 당사자였다. 그랬던 딘 장관이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미 24군단장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인 하지 장군의 결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지 장군은 딘 장관이 제주 주둔 미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에게 내린 지시로 시작된 ‘귀순공작’이 김익렬 9연대장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 간의 ‘평화협상’으로 구체화 되어가자 협상일 하루 전인 4월 27일 슈 중령을 제주에 파

116) 金益烈, 앞의 글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34~335쪽).

117) 『漢城日報』, 1948년 8월 14일 ; 『京鄉新聞』, 1948년 8월 14일.

견해 이를 확인·감독하도록 했다. 그리고 슈 중령은 4월 27일부터 이틀간 경비대 병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펼친 후 4월 28일 낮 12시경 서울로 돌아갔다. 4월 27일과 28일의 작전은 비록 수색전에 그치긴 했지만, 경찰 대신 경비대가 주도한 작전으로는 최초의 작전이었다. 이는 유동열 통위부장이 제주사건과 관련해 “4월 27일 폭도 토벌의 전화를 열었다”고 한 발언과도 일치한다.¹¹⁸⁾

그리고 나서 4월 28일 평화협상이 열렸고, 다음날인 4월 29일에는 딘 군정장관이 제주도를 다녀갔다.¹¹⁹⁾ 이 때 딘 장관이 왜 제주에 왔는지, 당초 평화협상(귀순공작)의 제안자로서 협상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오라리 방화사건 때 중앙에서 온 미 CIC(방첩대)와 G-2(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의 간부가 김익렬 연대장의 보고를 목살한 채 강경진압을 강요했다는 당시 9연대 정보주임 이윤락 중위의 증언을 보면, 미군 수뇌부에서는 이미 무력진압의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을 책임지고 있는 하지 장군은 4월 27일 슈 중령을 제주에 보내 사태 진압을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점검했다. 즉 귀순공작을 확인·감독하는 동시에 아울러 무력진압에 대비해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펼쳐 무장대의 전력을 확인했다. 5·10선거를 앞둔 사태의 조기 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하지 장군은 결국 두 번째 방법인 무력진압 방침을 채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방침은 제주에서의 작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슈 중령의 4월 29일자 보고서에 암시되어 있다. 슈 중령은 보고서에서 제주도 상황에 대해 “미 59군정중대장이 현재 제주도에 있는 병력을 확실히 통솔한다면 제주도에 있는 현재의 병력만으로도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충분하다. 공산주의자들과 게릴라 세력이 오름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활발한 작전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¹²⁰⁾ 현재의 병력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 보고서는 하지 장군의 결심을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18) 『서울신문』, 1948년 6월 3일.

119) 『서울신문』, 1948년 5월 7일자 보도를 보면, 딘 군정장관은 자신의 제주방문 사실을 5월 6일 기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지난 목요일과 이번 수요일에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번 수요일’이 5월 5일이며, ‘지난 목요일’은 4월 29일이다.

120) “Disposition Form,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 Do Island,” April 29,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68, NARA, Washington, D. C.

③ 연대장 전격 교체

1948년 5월 5일 딘 군정장관은 안재홍(安在鴻) 민정장관, 조병옥(趙炳玉) 경무부장, 경비대사령관 송호성(宋虎聲) 준장 등을 이끌고 제주를 방문해 비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 제주도지사 유해진(柳海辰), 경비대 9연대장 김익렬(金益烈) 중령, 제주경찰감찰청장 최천(崔天)과 딘 장군 전속 통역관 등 모두 9명이 참석했다. 군정청의 수반을 비롯해 모두가 군·경의 수뇌부들이었다.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밝혀주는 자료로는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익렬 연대장의 회고록이 있다. 이 회고록에 의하면, 맨스필드 중령이 회의 사회를 보았는데, 맨스필드는 회의에 앞서 “참석자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회의 내용은 극비이다. 누설자는 군정재판에 회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처음 상황설명을 한 최천 제주경찰감찰청장은 사태의 성격을 국제공산주의자들이 사전에 계획한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군·경 합동작전만이 사태를 진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나선 김익렬 연대장은 폭동은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입산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경찰의 실책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익렬은 또한 “적의를 가진 폭도와 일반 민중 동조자를 분리시켜 폭도를 도민들로부터 고립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력위압과 선무귀순 공작을 병용하는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사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주경찰을 나의 지휘 하에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익렬은 이어 경찰의 행동을 의심할 만한 물적 증거물과 사진첩을 제시했다.

뜻밖의 사진첩과 물적 증거물이 나오자 딘 장관은 조병옥 경무부장을 향해 “닥터 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당신의 보고내용과 다르지 않소”라고 질책했다. 그러나 조병옥은 김익렬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고, 증거물과 사진첩도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김익렬을 가리키며 “저기 공산주의 청년이 한 사람 앉아 있소”라고 외치면서, 김익렬의 아버지는 국제공산주의자로서 소련에서 교육을 받고 현재 이북에서 공산주의 간부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김익렬은 자기 아버지의 지령을 받아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익렬이 조병옥의 발언에 격분해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자 회의는 난장판이 되었다.¹²¹⁾

싸움이 계속되자 딘 장관은 회의를 종결시켰고, 그 길로 공항으로 가 서울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딘 군정장관 일행은 오전 7시에 제주를 향해 떠났다가 회의를 마치자마자 그날 오후 5시 서울로 돌아온 것이다.¹²²⁾ 그런데 딘 장관은 다음 날인 5월 6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5일 우리 일행이 제주도에 도착하자 오전 중에 각각 각도를 달리하여 독자적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하였다. 그래서 하오 1시경에 집합하여 각자가 조사한 것을 교환하였다. 그래서 그 보고를 조사한 결과 이번 폭동은 도외(道外)에서 침입한 소수의 공산분자들의 모략에 선동되어 양민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현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소수 불순분자가 산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분위기는 평온하였다. 이 사건도 경찰과 경비대의 노력으로 곧 회복되리라고 본다.¹²³⁾

딘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일행은 각각 각도를 달리하여 독자적 입장에서 사건조사를 했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사태를 바라보는 일행들의 시각이 각각 달랐음을 말해준다. 둘째, 사건의 배후로 ‘도외에서 침입한 공산분자’를 지적했다는 점이다. ‘외부 공산분자 유입설’이 나온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셋째,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딘 장관이 제주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 날인 5월 6일 제9연대 연대장이 김익렬 중령에서 박진경 중령으로 전격 교체되었다.¹²⁴⁾ 김익렬 중령은 그의 회고록에서 “오전 11시경 난데없이 경비대총사령부 고급부관인 박진경 중령이 도착하였다. 나는 최고 참모의 방문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의 후임 연대장으로 오늘 아침에 명령을 받고 왔다는 것이었다”라며 당황했던 순간을 묘사했다.¹²⁵⁾

이상 5월 6일 딘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과 같은 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연대장 교체를 보면, 딘 장관은 5월 5일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무력진압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월 5일의 회의는 함께 온 일행 중 무력진압 방침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121) 金益烈, 앞의 글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38~342쪽).

122) 『朝鮮日報』, 1948년 5월 6일.

123) 『大東新聞』, 1948년 5월 7일.

124) 『統衛部 特命』 제52호, 1948년 5월 6일.

125) 金益烈, 앞의 글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43쪽).

고 그 대상은 송호성 경비대총사령관과 안재홍 민정장관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경비대는 출범하면서부터 그 위상을 놓고 경찰과 갈등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국군의 모체가 될 경비대가 외적이 아닌 동족을 대상으로 첫 작전을 벌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시 경비대의 일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6월 2일 통위부장은 담화를 발표하면서 “육해경비대는 신성한 건국초기에 동족상잔의 애사(哀史)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은인자중하여 왔다”¹²⁶⁾며 그동안 무력진압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익렬 회고록에 주목되는 대목이 있다. 즉 5월 5일 김익렬 연대장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인 조병옥 경무부장에게 달려들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송호성 경비대총사령관과 안재홍 민정장관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김익렬 연대장은 송호성 총사령관이 고함을 지르며 “이놈! 이놈!” 호령했는데 그 대상이 불분명했으며, 자신은 그것이 조병옥을 향한 욕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김익렬은 연대장 해임 후 서울로 가서 송호성 총사령관에게 제주상황을 보고했더니 송호성은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라며 걱정하였고, 서울의 경비대 장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결같이 칭찬하고 지지해 주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안재홍은 싸움이 그치지 않자 갑자기 탁자를 두드리고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분하다, 분해! 연대장 참으시오! 이것이 다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니고 남의 힘을 빌려서 해방이 된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오. 연대장! 참으시오!”라고 했다는 것이다.¹²⁷⁾

아무튼 강조돼야 할 점은 5월 5일의 ‘제주회의’와 5월 6일의 연대장 교체는 5·10 선거를 앞두고 제주사태를 조기 진압하기 위한 미군정 수뇌부의 조치였다는 점이다.

라. 제주도 5·10선거 좌절

1) 선관위원·선거사무소 피습

1948년 5월 10일로 예정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상황은 혼란 속으로 빠

126) 『朝鮮日報』, 1948년 6월 5일.

127) 金益烈, 앞의 글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42~347쪽).

져들어 갔다. 전국적으로 5·10선거 반대자들에 의한 경찰서·선거사무소 습격이 줄을 이었다. 딘 군정장관은 남한 땅의 13,800여 개소의 선거사무소를 35,000여 명의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다는 조병옥 경무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4월 16일 향보단(鄉保團)을 조직해 경찰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좌파 뿐 아니라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던 김구 계열의 우파와 김규식 계열의 중도파에서도 5·10선거가 한반도를 영구히 두동강내는 단선·단정 획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선거에 반대해 4월 19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북행하는 등 선거 반대 움직임이 크게 일어 미군정을 긴장시켰다.

특히 제주에서는 ‘단선·단정 반대’가 4월 3일 무장봉기를 일으킨 무장대의 주요 슬로건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미군정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든 제주 사태를 조기에 진압해 당면 현안인 5·10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선거를 앞두고 △경비대 9연대장의 교체 △경비대 병력 증강 △응원경찰 파견 △향보단 조직·배치 △군정 수뇌부의 현지 시찰 등의 대책을 세워갔다. 그러나 최종 선거인 등록 결과 제주도 등록률은 64.9%로 전국 평균 91.7%에 훨씬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관리사무소가 습격을 당하거나 선관위원들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4월 중순경에 이르자 선거사무소 습격 사건이 시작됐다. 4월 18일 새벽 제주읍 도평리 투표소가 피습 당해 선거기록을 빼앗겼고, 4월 19일에는 조천면 신촌리 투표소가 피습 당해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모든 기록물을 잃었다.¹²⁸⁾ 투표소 피습에 이어 선거관리위원들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군 보고서는 4월 21일 밤부터 집중적으로 벌어진 선거 관련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다.

- 이호리 - 48년 4월 21~22일의 밤중에 숫자미상의 사람들이 선거등록사무소를 기습해 모든 선거기록을 탈취했다. (C-3)
- 내도리 - 48년 4월 21~22일의 밤중에 지역구 사무소의 모든 등록기록이 탈취당했다. (C-2)
- 동일리 - 48년 4월 21일 밤 10시 30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등록사무소를 기

12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15, April 22, 1948.

- 습해 선관위원을 사살하고 모든 선거기록을 탈취해 갔다. (C-2)
- 모슬포 - 48년 4월 21일 밤 11시, 경찰복장을 한 규모를 알 수 없는 무리들이 경찰지서와 면사무소를 공격했다. 공격자들은 부근 캠프에 있던 경비대에 의해 격퇴됐다. 우익 1명이 죽었다. (C-2)
 - 대 정 - 48년 4월 22일, 아마도 앞서 모슬포에서 사건을 저지른 자들과 같은 집단으로 보이는, 경찰복장을 한 무리들이 선관위원을 공격해 죽이고 등록기록을 탈취했다.¹²⁹⁾

선거사무소에 대한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자 선거관리위원들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투표소로 옮기는 일을 거부하면서, 미군이 수송수단을 이용해 이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¹³⁰⁾ 4월 30일 새벽 대정면 신평리에서 선거관리위원이 피살되었다.¹³¹⁾ 5월에도 선거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습격 사건이 이어졌다. 5월 1일 제주읍 도평리에서 마을 선거관리위원장이 칼에 찔려 숨졌다.¹³²⁾ 이어 5월 5일 화북리 선거관리위원장이 피살되었다.¹³³⁾ 이처럼 선거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습격사건이 그치지 않자 중산간마을에 거주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은 자기 마을을 떠나 해변마을로 피난했다.¹³⁴⁾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5월 3일 조천면 조천리의 모든 선거관리위원들이 사퇴했다.¹³⁵⁾ 선관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는 경비대가 나서 투표용지 배분 등 선거관리 업무를 대신 맡기도 했다.¹³⁶⁾

미국은 전국적인 선거반대 움직임에 노심초사 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미군들에게 투표소 출입을 금지시켰다.¹³⁷⁾ 그러나 제주에서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미군들이 직접 선거 현장에 나타나 독려하기도 했다. 미군 보고서는 군정관리까지 선거 업무에 나섰던 당시 제주도의 분위기를 이

129)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16, April 22, 1948.

130)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18, April 24, 1948.

13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23, May 1, 1948.

132)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25, May 1, 1948.

13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27, May 6, 1948.

13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26, May 5, 1948.

135)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27, May 3, 1948.

136) Hq. 7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 May 10, 1948.

137) "Special Edition, G-2, GHQ, FEC Daily Intelligence Summary, Report on Recent Korean Tour," May 30, 1948,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reel 647, MacArthur Memorial Library, Virginia, U. S. A.

렇게 기록했다.

제주도에서는 공산폭도들의 보복을 두려워한 선거관련 공무원들이 투표인 명부 열람 등 모든 선거관련 업무 취급을 꺼려함에 따라 선거실시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조천면에서는 대략 50%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사임했다. 총 65개 투표소가 선거 당일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군정관리들이 북제주군의 약 50% 지역에서 선거자료 배포와 수집을 도왔다.(미군정 보고)¹³⁸⁾

미군들은 이 때 제주지역을 순시하며 투표함 수송상황을 점검하다 조천면에서 특히 실적이 부진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난 나머지 조천면장을 연행하기도 했다. 당시 조천면장이었던 김민규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장총을 맨 미군이 통역관과 함께 조천면사무소에 들렀는데, 투표함 배치 상황을 점검하다 버럭 화를 냈다. 내가 어려운 지역 실정을 이야기했으나, 미군은 무조건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계속 화를 내다가 나를 억지로 지프에 태워 끌고 갔다. 통역을 통해 항의를 하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증언했다.¹³⁹⁾

안덕면에서는 미군이 직접 중산간마을로 가서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당시 미군과 함께 투표함을 들고 중산간마을로 갔던 김봉석은 “광평리에 보낸 투표함이 두 차례나 탈취 당해 고민을 하던 차에 미군 1명이 스리쿼터를 몰고 와 투표함을 수송하겠다고 나섰다. 위험하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극 나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함께 광평리로 가서 리사무소에 투표함을 설치했다. 결국 광평리에서는 그 미군과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다”고 증언했다.¹⁴⁰⁾

이같은 혼란 속에서 대리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에서는 이날 이장 집에서 이장·서기 등 3명이 모여 100명 가까이 되는 마을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몽땅 한 특정후보에게 몰아 투표를 해버렸다.¹⁴¹⁾

이 기간 중 경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미군 자료에 의하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동안 제주도에서 모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의 성분을 보면 ‘△경찰=사망 1명, 부상 9명, 실종 4명 △우익=사망 7명, 부상 3명 △폭도=사망

13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31, May 11, 1948.

139) 金玟奎(당시 조천면장)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11쪽).

140) 金奉錫(당시 안덕면 부면장)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11~212쪽).

141)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36쪽.

21명'으로 분류되고 있다.¹⁴²⁾

그런데 미군 보고서는 당시 제주에 파견돼 있던 제주도 군정청본부, 미 20보병연대, 미 방첩대의 정보요원들이 보고한 정보를 수합해 기록한 것이다. 또한 이 정보들 속에는 현지 경찰이나 경비대가 보고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군 보고서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는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정보의 내용도 실제의 상황을 전부 기록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위에 소개된 5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희생자 통계에서도 전체 사망자 29명 중 21명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 미군 보고서의 내용 중 '폭도 사실'에 관한 기록은 "경비대는 1948년 5월 10일 조천리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탈출하려 한 남자 1명을 사살했다"¹⁴³⁾는 내용뿐이었다.

한편 무장대는 선거를 보이콧 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보냈다. 주민들의 산행은 5월 5일경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오름이나 숲으로 가서 머물다 선거가 끝난 후에야 마을로 돌아왔다. 그래서 선거 당일 마을에는 경찰 가족이나 대동청년단 간부, 선거관리위원 등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미 6사단 일일보고서는 5월 10일 하루동안의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 △ 중문면 - 48년 5월 10일, 투표소가 기습당해 모든 투표용지가 파괴됐다.
- △ 성산면 - 48년 5월 10일, 투표소가 60명의 집단에 의해 방화됐다.
- △ 제주읍 - 48년 5월 10일, 다이너마이트 2개가 제주읍사무소 부근에서 폭발했다. 보고된 사상자는 없다.
- △ 제주공항 - 48년 5월 10일 오전 11시 40분, 약 250명과 50명의 두 집단이 각각 공항남쪽 200야드 지점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큰 집단은 평범한 백색깃발을 들고 있었다. 경비대 1개소대가 그곳에 파견됐으나 큰 집단은 노형리 쪽으로 사라졌다. 보고된 사상자는 없다.
- △ 표선면 - 48년 5월 10일, 투표소 1곳이 습격 받았다. 2명이 죽고 모든 투표용지가 파손됐다.
- △ 구좌면 송당리 - 48년 5월 10일 오전 11시, 2명이 죽고 1명이 부상당했으며, 가옥 7채가 불에 탔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중이다.
- △ 조천면 - 48년 5월 10일, 14곳의 모든 투표소가 제 기능을 못했다.

14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30, May 10, 1948.

143)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35, May 11, 1948.

- △ 조천면 북촌리 - 48년 5월 10일 오후 4시, 투표소가 불에 탔다. 모든 투표용지가 파손됐다.
- △ 표선면 가시리 - 48년 5월 10일, 투표소 피습 때 이장과 학교 교장이 피살됐다. 교장 부인은 부상을 당했다.
- △ 성산면 - 48년 5월 10일, 투표소 피습 때 4명이 피살됐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다.
- △ 조천면 조천리 - 48년 5월 10일, 경비대는 심문 받던 중 탈출을 시도하던 한 사람을 죽였다. (B-2)
- △ 애월면 신엄리 - 48년 5월 10일 오후 6시, 한 군정관리는 신엄리 교외에서 경비대원 5명을 만났다. 그 경비대원들은 16명의 유격대에 의해 신엄리에서 축출당했다고 진술했다. 그 후 밤중에 조사한 결과, 그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 유격대가 그 마을에 있지도 않았으며, 그 경비대원 5명은 근무이탈 했었음이 밝혀졌다. 그 미군 고문관은 그 경비대원들을 직위해제 시킬 것이라고 보고했다.¹⁴⁴⁾

2) 2개 선거구 무효화

미군정은 미군과 경비대, 경찰, 향보단까지 총동원하여 선거를 독려했지만 경계가 삼엄했던 제주읍내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선거인수 7,840,871명 가운데 7,487,649명이 투표해 95.5%의 투표율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지역은 3개 선거구의 총 유권자 85,517명 중 53,698명이 투표해 62.8%의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중 남제주군 선거구는 86.6%(총선거인수 37,040명 중 32,062명 투표)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무소속 오용국(吳龍國)이 당선 확정되었다. 그러나 북제주군 갑구는 43%(총선거인수 27,560명 중 11,912명 투표), 북제주군 을구는 46.5%(총선거인수 20,917명 중 9,724명 투표)의 투표율로 과반수에 미달되었다.¹⁴⁵⁾ 국회선거위원회에 제주도의 선거결과 보고를 위해 상경했던 선관위원 홍순재는 제주도의 선거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북제주군 갑구 : 73투표구 중에서 겨우 33투표구의 투표함 32개가 들어왔는데,

144)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34, May 10, 1948; No. 935, May 11, 1948.

145) 『朝鮮日報』, 1948년 5월 20일.

그중 2개 투표함은 공함(空函)이었다. 따라서 결국 43투표구의 선거가 실시 못 된 것으로 양귀진씨가 3,000여 표로 나타난 결과로는 최고점이나 등록자 37,040명 중 과반수가 투표치 않았으므로 북제주군 을구 양병직씨의 경우와 함께 국회선위(選委)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북제주군 을구 : 61개 투표구 중에서 31투표구만이 선거를 실시하였다.

△ 남제주군 : 87투표구 중에서 86투표구가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현 입법의원 오용국(吳龍國·44·무소속)씨가 16,000여 표로 당선되었다.¹⁴⁶⁾

결국 제주도의 투표 상황은 북제주군 갑구(甲區)는 73개 투표구 중 31개 투표구, 북제주군 을구(乙區)는 61개 투표구 중 32개 투표구만 선거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국회선거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선거법 제44조에 의해 갑구의 최고득표자 양귀진(梁貴珍)과 을구의 최고득표자 양병직(梁秉直)의 당선을 무효로 인정하고 19일 군정장관에게 제주도 2개 선거구에 대한 무효 선포를 건의하였다.¹⁴⁷⁾ 이에 따라 딘 군정장관은 5월 26일 '제주도 2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가 무효이며, 선거법 제44조에 의하여 오는 6월 23일 국회선거위원장의 지휘 감독으로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포고(5월 24일부)를 발표했다.¹⁴⁸⁾

그러나 제주 사태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더욱 악화의 길로 접어들어 갔다. 제주도선관위는 6월 초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6월 23일의 국회의원 재선거는 불가하다며 다시 재연기를 요청했다.

오는 6월 23일 시행하기로 된 북제주군 갑을 양구의 국회의원 재선은 상급도 시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제주선거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에 대하여 재선거일 재연기를 요청하였다 하는 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한다.

- (1) 제주도내 2군 1읍 12면에 1,206명의 선거위원이 있었는데 그 중 15명이 살해당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므로 남제주 선거위원들은 피신 중에 있는 사람도 많으나 대부분은 후환이 두려워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있다.
- (2) 북제주군내 133개소의 투표소에 있던 선거인명부는 거의 그 절반이상이 탈취 혹은 방화 등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지 못할 현상에 있다.
- (3) 5·10선거에 입후보하였던 북제주군 갑구의 4명과 을구의 4명은 한 사람도 양

146) 『朝鮮日報』, 1948년 5월 19일.

147) 『우리新聞』, 1948년 5월 21일.

148) 『朝鮮日報』, 1948년 5월 27일.

보하는 사람이 없으니 무투표 선거로 할 수도 없는 현상이다.¹⁴⁹⁾

선거 강행의 의지를 보였던 딘 군정장관도 부득이 6월 10일 선거를 무기 연기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제주도(濟州島) 재선거의 무기연기

제1조 1948년 3월 17일부 국회의원선거법 제44조에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중앙선거위원회의 추천으로서 본관은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북제주도(北濟州島)의 갑구 및 을구 선거의 투표가 파괴분자의 행동과 폭력으로 인하여 해(該) 양 선거구의 5할에 미급(未及)한 투표구에 한하여 행하여졌기 때문에 1948년 5월 24일 무효를 선언하였음. 동시에 본관은 해(該) 양 선거구에서 1948년 6월 23일 재선거를 시행하도록 명하였음. 제주도에서 파괴분자는 공중치안과 질서의 교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북제주도(北濟州島)의 갑구 및 을구의 선거인에 대하여 해(該) 양구(兩區) 인민의 의사를 진실히 대표할 수 있는 평화롭고 혼란없는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관은 자(茲)에 해(該) 양 지구의 재선거를 무기연기할 것을 명함. 제2조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¹⁵⁰⁾

이로써 제주도는 5·10선거를 거부한 남한의 유일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국회의원 재선거는 꼭 1년 후인 1949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다.

149) 『朝鮮中央日報』, 1948년 6월 10일.

150) 「남조선과도정부 행정명령」 제22호, 1948년 6월 10일.

2. 초기 무력충돌기(1948. 5. 11 ~ 1948. 10. 10)

가. 미군사령관의 진압 지휘

1) 미 20연대장 파견

미군정은 제주도에서 5·10선거가 무산되자 5월 20일경¹⁾ 미 6사단 예하 광주 주둔 제20연대장인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통솔하도록 하였다. 브라운 대령은 '4·28평화협상' 직전 제주를 방문해 예하 부대인 제주도 주둔 제59군정중대의 맨스필드 중령과 토벌작전을 점검한 바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6월 23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앞둔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라는 딘 군정장관의 특명을 받고 미 6사단이나 20연대 소속이 아닌 특수한 자격으로서 파견돼 온 것이었다.²⁾

4월 3일 무장봉기 당시 브라운 대령의 관할지역인 전라북도의 경비대 제3연대 연대장을 맡았던 임선하는 브라운 대령의 위상과 성향, 그리고 그의 제주파견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브라운 대령은 당시 미 6사단 20연대장이었습니다. 20연대 본부는 광주에 있었는데 전남·전북과 제주가 그 사람의 치안 책임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북에 주둔해 있던 3연대장의 직책을 맡았던 나도 브라운 대령으로부터 작전지휘를 받았습다. 그는 전형적인 직업군인의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많았지요. 당시 광주에는 대표적 미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브라운 대령이요, 다른 한 사람은 프라이스 대령이었습니다. 프라이스 휘하에는 전술부대가 없었고 도청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이른바 민정관(군정장관)이었지요. 그러나 브라운

-
- 1) 브라운 대령이 언제 제주에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상관인 6사단장이 브라운을 떠나보내며 쓴 1948년 5월 19일자 편지(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와 “나는 약 10일 전에 부임하였다”는 발언이 보도된 『현대일보』 1948년 6월 3일자 기사, 그리고 브라운이 첫 활동보고서 기간이 5월 22일부터 시작된다는 점(Hq. USAMGIK, Major General William Dean to Major Edgar Noel, July 17, 1948) 등을 통해 볼 때, 브라운은 5월 20일경에 제주에 온 것으로 추정된다.
 - 2)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대령은 광주 상무대에 실지로 20연대 전투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20연대 점령 작전구역 안에서는 경찰이나 경비대는 브라운의 지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던 브라운 대령이 제주에 상주하게 된 것은 미군정에서 그만큼 제주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시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브라운 대령의 제주 행적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³⁾

브라운 대령의 제주에서의 역할이나 활동은 1948년 6월에 조덕송(조선통신 특파원)이 쓴 글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신천지』 1948년 7월호에 실린 조덕송의 글 중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지금 제주에는 육로로부터 파견된 경관 외에 기허 있던 사설단체까지도 임시경관으로 편입되어 있다. 경찰과 협력하는 단체로 제주도에는 아직도 향보단이 존속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찰의 지휘 하에 비교적 경찰지서에 가까운 동리의 경계에 불철주야 하고 있다. 이리하여 위험한 산악지대의 전투에는 경비대가 주동이 되어 있고 또한 해안경비대는 제주도 해안의 경계와 육지로부터 증가되는 파견부대의 수송에 당하고 있으니 이를 통솔 지휘하는 최고지휘관이 미국 브라운 대좌이다. “본관이 온 후로는 육상 해안 양(兩)경비대와 경찰이 잘 협력하여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언명한 최고지휘관은 “사건은 본관의 계획대로만 간다면 약 2주일이면 평정될 것이다(브라운 대좌가 언명한 2주일은 지금 한 달이 넘었다)”라고 피력하고 “사건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본관이 평정해 놓은 후에 다시 발생한다면 그것은 본관의 책임이 아니고 조선인 행정자의 책임이다”⁴⁾

조덕송은 같은 글에서 “치안복구를 목적으로 딴 군정장관의 특명을 받고 이곳에 와 있는 최고지휘관 브라운 대좌가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고 언명했다”고 재삼 강조하면서 “조선사람 아닌 브라운 대좌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견해이겠으나 무엇인지 섭섭함을 금치 못할 말씀이다”고 심경의 일단을 토로했다.⁵⁾

그 당시 법조·언론·재경제주도민 등 각계에서는 “4·3의 발발 원인에는 억압에 못이겨 민심이 폭발한 복합적인 것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해결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이런 원인 치유책은 외면한

3) 林善河(당시 제3연대장, 소장 예편)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전예원, 1994, 253쪽).

4) 趙德松, 「流血의 濟州島」, 『新天地』, 1948년 7월호, 89쪽.

5) 趙德松, 앞의 글, 94~95쪽.

채 강경진압 일변도로 치달았음은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는 브라운 대령의 짧은 발언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브라운 대령은 “본관의 계획대로만 간다면 약 2주일이면 평정될 것”이라는 자신의 말처럼 처음부터 강력한 작전을 전개했다. 조덕송은 그의 글에서 “상공에는 미군 정찰기가 날고 해상에는 미군 순양함의 경계의 황연이 그칠 사이 없고 또한 육상에는 기마로, 지프로 제일선을 지휘하는 미군장교가 동서를 질주하고 있는 금일의 제주도”라며 브라운 대령이 진두 지휘하는 육·해·공 작전에 대해 묘사했다.⁶⁾

브라운 대령이 강경일변도의 작전을 한 까닭은 그가 부임한 후 벌어진 박진경 연대장 암살사건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무엇보다도 브라운 자신의 성향과 제주사건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미 6사단장 워드(Orlando Ward) 소장은 자신의 부하인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 토벌사령관으로 떠나게 되자 5월 19일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충고했다.

본인은 한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데 그것이 적절할 지 그렇지 않을 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과거에 남아메리카와 그 밖의 지역에서 공산주의의 선동과 관련이 전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소요와 혁명이 있었던 때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제주도에 공산주의의 선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한 가지, 본인은 주요한 문제가 경찰에 대한 증오심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소요들은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극요인들을 제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⁷⁾

매우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워드 소장은 제주도 사태를 반드시 공산주의 선동의 문제로만 보지 말 것을 조언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의 횡포가 사태의 한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경찰의 횡포를 막고 민심을 수습해 사태를 해결하라는 충고이다. 브라운 대령도 워드 소장의 충고를 받아들여 부임하자마자 경찰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브라운 대령은 7월 2일 답신을 보내 워드 소장의 충고에 대해 반박했다. 이 편지에서 브라운은 “제주도가 공산주의자들의 거점으로 조직되었다는 한 가지 사

6) 趙德松, 앞의 글, 96쪽.

7) “Letter from Ward to Brown,” May 19,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실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 증거는 일단 우리가 실제로 그 문제를 파고들어 갔을 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잔악성과 비효율적인 정부도 원인이었지만 본도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에 비하면 지엽적인 원인들입니다”⁸⁾라며 강경작전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브라운은 그의 보고서에서 “연대장들이 공산 선동가들과 협상을 벌이면서 단호한 작전이 필요한 곳에 지연전략을 구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서 “만일 군정 중대의 민간담당 장교가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더라면 경비대는 즉각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⁹⁾ 자신도 일부 관여했던, 김익렬 연대장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간의 ‘4·28 평화협상’은 무장대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며, 그 때 보다 강력히 대처했어야 했다는 후회였다.

이같은 브라운 대령의 성향과 제주사건에 대한 그의 인식은 강경진압작전으로 나타났다. 브라운 대령은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열흘 가량 지났을 때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이 펼치고 있는 작전에 대해 밝혔다. 이 보도에서 우선 브라운은 “내가 오기 전에는 경찰과 육해군 사이에 서로 협력을 안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내가 온 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어졌다”고 밝혀 제주도 주둔 군·경을 통합 지휘하는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브라운은 경찰, 경비대, 해안경비대에게 각각 역할을 분담시켜 펼치고 있는 자신의 작전 방침을 밝혔다. 즉 △경찰은 한라산을 중심으로한 주변도로로부터 4km까지 사이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고 △국방경비대는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안경비대는 하루에 두 번씩 제주도 일대 해안을 순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¹⁰⁾ 그러나 브라운 대령이 밝힌 바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부작용만을 낳았다는 것은 이후의 전개과정이 말해주고 있다.

8)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ibid.*

9)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8,” July 1, 1948, *ibid.*

10) 『現代日報』, 1948년 6월 3일.

2) 박진경 연대장의 진압작전

군정장관 딘 소장이 제주에서 군정 당국 수뇌회의를 주재하고 떠나간 다음 날인 5월 6일, 전격적으로 제9연대장의 교체가 이뤄졌다. 그 동안 화평정책을 추진해 온 김익렬 중령을 해임하고 그 후임에 경비대 총사령부 인사처장 박진경 중령을 발령한 것이다. 박진경 중령이 새 연대장으로 발탁된 것은 일제 때 오사카 외국어학교를 나와 영어에 능통해 미군과 잘 통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제 말기 일본군으로서 제주도에 주둔한 바 있어 일본군이 축성한 진지나 지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그런데 경비대 총사령부는 1948년 5월 4일 수원에서 창설된 제11연대를 5월 15일 제주도로 이동시키면서 기존의 제9연대를 제11연대에 합편(合編)토록 했다. 아울러 초대 제11연대장에 박진경 중령을 임명했다.¹²⁾ 즉 5월 6일 제9연대장의 자격으로 제주도에 온 박진경 중령은 5월 15일자로 제11연대장으로 변경됐고, 6월 18일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 달 열흘 가량 제주도에 머물며 진압작전을 지휘한 것이다.

5월 15일 이후 박진경 연대장이 지휘하는 제11연대의 병력은 기존 제9연대의 1개 대대, 부산 제5연대에서 차출된 1개 대대, 대구 제6연대에서 차출된 1개 대대, 그리고 11연대가 수원에서 창설될 당시의 1개 대대와 연대 기간요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연대 참모를 두어 연대의 틀을 갖추었다. 당시 제11연대 참모부 구성을 돕기 위해 제주에 왔던 김종면(金宗勉)의 증언에 의하면, 5월 말경 S-1(인사참모)에 최갑중 소령, S-2(정보)에 김종평 중령, S-3(작전)에 임부택 대위, S-4(군수)에 백선진 소령이 파견됐다. 그런데 김종면은 “계급을 보더라도 우리는 연대 참모가 아니라 고문관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박진경 연대장이 죽자 작전을 맡은 임부택 대위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제주를 떠났다”고 말했다.¹³⁾

박진경 연대장이 부임한 직후인 5월 20일 경비대 병사 41명이 집단으로 탈영해 무장대에 합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탈영병들은 주로 제주출신이었다. 이 사건은 진압작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제주출신 병사들이

1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440쪽 ; 白善燁, 『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125쪽.

12)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1집, 1948년 5월 15일.

13) 金宗勉(80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당시 이름 金宗平, 2002. 1. 22. 채록) 증언.

진압작전에서 소외되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제주출신으로서 9연대 3기생으로 입대해 당시엔 11연대 소속이었던 한 증언자는 “탈영한 군인들 중 90%가 제주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자 취급, 빨갱이 취급을 받았다. 제주도 놈은 다 빨갱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제주출신은 모두 ‘모슬포 대대’라는 이름 아래 한 개의 대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탈영사건 이후 우리 모슬포 대대를 제주읍 오등리 천막 속에 분리시켜 놓고 토벌도 시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¹⁴⁾ 9연대 1기생 출신의 한 증언자는 “5연대와 6연대 병력이 들어온 후부터 작전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고뭉치였다.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왔다”고 말했다.¹⁵⁾ 이처럼 제주출신이 소외된 채 제주 실정을 모르는 타 지역 출신 군인으로만 작전을 전개한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한 배경이 되었다.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뉜다. 우선 “선무공작으로 주민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단위 대장에게 선무공작을 강조하였다”¹⁶⁾는 평가이다. 또한 당시 박진경 연대장 밑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채명신(蔡命新)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한쪽에서는 박진경 대령이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는데 그는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4·3 초기에 경찰이 처리를 잘못해서 많은 주민들이 입산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령은 폭도들의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에 작전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 보호작전은 인도적이면서 전략적 차원의 행동입니다.¹⁷⁾

그러나 “무자비한 작전공격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박진경 연대장이 무모한 강공작전을 폈다는 주장은 그가 연대장 취임식 때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했다는 전임 연대장의 증언¹⁸⁾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박진경 연대장을 직접 저격했던 손선호(孫善鎬)는 재판정에서 박진경 연대장을 이렇게 비판했다.

14) 康德潤(75세, 제주도 오라1동, 당시 11연대 군인, 2002. 2. 1. 채록) 증언.

15) 尹太準(73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당시 11연대 군인, 2001. 5. 2 채록) 증언.

1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440쪽.

17) 蔡命新(75세, 서울시 종로구 후암동, 당시 9연대·11연대 소대장, 2001. 4. 17) 채록.

18) 金益烈, 실록유고「4·3의 진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45쪽).

박 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공격은 전 연대장 김익렬 중령의 선무 작전에 비하여 볼 때 그의 작전에 대하여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그릇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 우리가 화북이란 부락을 갔을 때 15세 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하였다. (중략) 사격연습을 한다 하고 부락의 소(牛) 기타 가축을 난살(亂殺)하였으며 폭도의 있는 곳을 안다고 안내한 양민을 안내처에 폭도가 없으면 총살하고 말았다. 또 매일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폭도를 체포해야 한다는 등 부하에 대한 애정도 전연 없었다. 박 대령을 암살하고 도망할 기회도 있었으나 30만 도민을 위한 일이므로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 하나의 생명이 30만의 도민을 위한 것이며 3천만 민족을 위한 것인 만큼 달게 처벌을 받겠다.¹⁹⁾

이같은 손선호의 주장은 박진경 연대장의 참모였던 임부택(林富澤) 대위의 증언과도 비슷하다. 임 대위는 재판정에서 ‘①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②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는 박진경 연대장의 명령에 대해 진술했다.²⁰⁾ 박진경 연대장이 벌인 작전의 모습은 제주지역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의 보고서를 통해 일부 엿볼 수 있다. 제주도 진압작전의 최고 정점에 브라운 대령이 있었기 때문에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곧 브라운 대령이 진두지휘하는 작전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6월 16일 쓰여진 한 미군 비밀보고서는 그 무렵 전개된 진압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로스웰 브라운 대령은 다음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a). 국방경비대 4개 대대가 제주도의 동서남북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이들 대대는 전투지역 휘하에 약 2개 중대로 구성됐다. 경찰은 해안지역 치안에 책임을 맡고 국방경비대는 해안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맡고 있다.

b). 모든 대대가 동시에 공동 목표로써 산간 고지대를 향해 내륙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경비대 지역의 수색은 완료될 예정이며 군인들은 오늘 자신들의 부대로 돌아갈 예정이다. (6월 16일)

c). 이 작전에서 약 3,000여 명이 체포됐고 심사를 받았다. 현재 여성 2명을 포함해 575명이 제주의 포로수용소에 있으며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고 있다.²¹⁾

19) 『朝鮮中央日報』, 1948년 8월 15일.

20) 『漢城日報』, 1948년 8월 19일.

21) "Disturbances on Cheju Island," Despatch No. 199, dated July 2, 1948, from American Political Advisor Joseph Jacobs to State Department.

이 무렵의 작전에 대해 한 언론은 “경비대와 경찰에 체포된 자는 약 6천 명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²²⁾ 이처럼 제주도 중산간마을 전역을 수색하면서 대규모로 주민들을 체포한 이 작전은 바로 브라운 대령이 직접 기자에게 밝힌 바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이었다. 『육군역사일지』는 이 작전에 대해 “제주도 주둔 이래 연일 연전춘가(連戰寸暇)의 틈도 없이 발생하는 폭동 진압작전에 매일같이 토벌해 오던 중 이날 제2차로 한라산 총공격을 개시하여 이를 완전 포위하다”고 기록했다.²³⁾ 그러나 무장대가 경찰만을 상대하고 경비대를 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러한 작전은 무장대를 잡지 못한 채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만 양산해 냈다.

통위부 담화로 발표된 5월 27일까지의 전과를 보면, 포로와 귀순자 3,126명을 잡고 8명을 총살했으나 노획물은 일제 99식 총 3정, 수류탄 15개, 죽창 12개, 청룡도 5개, 철모 17개였는데, 경비대 측 손해는 부상 5명이었다.²⁴⁾ 남제주군 파견 부대장은 “포로 인원은 670명이나 무기는 없었으며 연대사령부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²⁵⁾ 한 미군보고서는 “11연대는 6주간의 제주도 작전에서 약 4,000명을 체포하여 심문 끝에 약 500명을 구속했다. 작전 중 경비대 사상자는 사망 3명, 중상 2명이었다.”고 밝혔다.²⁶⁾

물론 박진경 연대장 재임 때의 인명피해는 그 해 겨울 대규모 집단 총살극으로 벌어진 강경진압작전 때와 비교하면 많은 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는 무장대가 전략적으로 경찰만을 상대할 뿐 경비대와의 충돌을 피했기 때문이다. 1948년 6월경 진압작전에 나섰던 한 장교는 “경찰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싸우는 소위 인민군이 경비대가 출동하면 대개 도망친다. 무차별 사격을 삼가고 있는 경비대의 두통거리는 양민과 폭도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²⁷⁾

이처럼 경비대는 ‘양민과 폭도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중산간마을 주민들을 무조건 연행했다. 이 때 발빠른 젊은이들은 잡히지 않았고 포로들은 행동이 느린 노

22) 『朝鮮日報』, 1948년 6월 12일.

23)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1집, 1948년 6월 14일.

24) 『東亞日報』, 1948년 6월 4일.

25) 『서울신문』, 1948년 6월 4일.

26) Weeka, No. 27, July 2, 1948, RG-9: Radiograms (Messages), 24th Corps, Jan-Aug 1948, reel 274.

27) 『朝鮮日報』, 1948년 6월 9일.

약자들이었다. 1948년 6월 '중군기자'로서 제주사태를 취재했던 조덕송은 '포로'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포로들이 후송되어 온다. 자동차로 가득이나 실려가는 젊은 사람들. 도보로 철덕거리고 끌려오는 노소예다 부녀까지 끼어 있는 일련(一聯). 비는 아직도 개이지 않는다. 구부린 채 말없이 이끌려가는 그들의 안색은 그들의 의복과 같은 색깔이다. 감히 그들을 어느 모로 보아야 폭도라고 부를 수 있을런지. 12~13세 되는 소년이며 60이 넘는 늙은이며 부녀자까지 무엇 때문에 폭도로 규정받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되었는데. 말을 건네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고개를 돌리고 만다. 철모에 군대 우장을 쓴 필자의 꼴도 그들의 눈에는 경비대로 보였을 것이다. 그들의 보금자리이던 그들 자신의 마을을 고개를 돌리며 끌려서 지나가는 포로들이여. 과연 이 무수한 포로들이 그치는 날 이 마을에 비로소 평온의 피리소리가 들려올 것이냐.²⁸⁾

한편 브라운 대령의 진두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해 온 박진경 연대장은 미군의 인정을 받아, 6월 1일 대령으로 진급했다.²⁹⁾ 당시 그의 진급은 선임자를 앞지른 것으로서 딘 장군의 배려에 따른 특진이었다.³⁰⁾ 제주도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무차별 체포작전'이었지만 딘 장군은 이를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해 제주에 온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대령으로 특진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박진경 연대장은 6월 18일 그의 작전방침에 불만을 품은 부하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처럼 중산간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응원경찰 증파

조병옥 경무부장은 각 경찰관구에서 차출한 응원경찰 450명과 수도경찰청 최난수(崔蘭洙) 경감이 지휘하는 형사대를 제주도로 보냈다. 응원경찰은 철도경찰 350명과 제6관구와 제8관구에서 선발한 100명으로 구성됐다. 5월 18일 새벽 특별열차로 서울을 떠난 이들은 목포를 거쳐 19일 아침 제주로 향했다.³¹⁾ 5월 20일에도 응원

28) 趙德松, 앞의 글, 91쪽.

2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441쪽.

30) 白善燁, 앞의 책, 125쪽.

경찰 수십 명이 서울을 떠나 제주로 향했다.³²⁾

이 때를 전후하여 대거 들어온 응원경찰로 인해 1948년 7월경 경찰 병력은 약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기존 제주경찰 500명, 응원경찰 1,500명)³³⁾. 제주 실정을 모른 채 ‘제주는 빨갱이 섬’이라는 인식만 갖고 있는 응원경찰을 대거 파견함으로써 부작용이 속출했다. 한 언론은 5·10선거를 전후해 벌어졌던 경찰의 민간인 처형 등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기자단 일행은 가장 큰 희생을 내었고 또한 쌍방의 교전이 치열하였던 애월면 하귀리를 찾아 이곳 중학교의 교원과 생도에게서 당시의 정경을 들었다. “눈앞에 선한 당시의 실상을 지금 얘기만 하려도 몹서리납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약 1개월 후에 경찰응원대가 폭도들을 소탕한다고 하여 70노인과 소학생까지 포함한 18명의 도민을 마을에서 살해하였습니다. 피살자 가운데에는 경찰에 협력하는 사상을 가진 자도 있었으나 가리지 않는 무차별 사격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어린 두 학생이 그 당시 무참히도 희생을 당하였습니다”³⁴⁾

경찰의 잔혹 행위가 사건 확대의 한 원인이라는 것은 브라운 대령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브라운 대령은 상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지나친 잔혹 행위와 테러가 제주도에 도착한 응원경찰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면서 5월 22일 폭동진압을 위한 조치로 양민에 대한 경찰의 테러와 살해를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³⁵⁾ 경찰의 가혹 행위가 여론을 악화시켜 오히려 사건진압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브라운 대령은 6월 중순경 기자회견에서도 “사건 진압에 참가한 경관이 양민을 학살하여 여론을 일으킨 일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관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현재 5~6명의 경관을 살인혐의로 구속 취조하고 있다. 한편 도내 전 경관에 대해서는 ‘고문 철폐’의 서약서까지 작성하여 민주경찰의 정신으로 사건을 수습하도록 노력하고 있

31) 『朝鮮日報』, 1948년 5월 18일; 『獨立新報』, 1948년 5월 19일; 『서울신문』, 1948년 5월 21일.

32) 『自由新聞』, 1948년 5월 21일.

33)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30일.

34)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23일.

35)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8,” July 1,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다”고 밝혔다.³⁶⁾

그러나 경찰의 잔혹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6월 7일에는 저지지서 경찰이 금악리에서 불구자인 소년 1명과 노인 1명, 그리고 부녀자 7명을 체포해 연행하던 중 5명을 총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³⁷⁾ 이날 응원경찰 40명이 포함된 저지지서 경찰이 중산간마을인 금악리를 덮쳤을 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급히 몸을 피했으나 거동이 불편한 불구자와 노약자 그리고 부녀자 등이 집에 남았다가 붙잡힌 것이다. 청년들과 달리 발빠르게 피하지 못한 게 죄였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날의 희생자 가운데는 여든 살의 김정생(金丁生) 노인, 신체불구자 박두옥(朴斗玉), 임산부 박경생(朴庚生), 그리고 양씨 성을 가진 여인이 포함되어 있다.³⁸⁾ 이 사건은 뒤늦게 세상에 알려져 미 CIC가 조사에 나섰는가 하면 저지지서 주임 등 경찰관 31명이 체포되기도 하였다.³⁹⁾

한편 최천 제주경찰감찰청장은 6월 11일자로 정직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응원경찰의 고문과 살해 등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문책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 언론은 최천의 정직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동 씨는 사건수습 처리에 있어서 부하감독 불충분 등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 한다”며 정직처분 이유에 대해 추측했다.⁴⁰⁾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속출한 까닭은 제주 실정을 모른 채 진압작전에 내몰린 응원경찰의 잘못 외에도 서북청년회 등 사설단체원을 무분별하게 임시경찰로 활용한 탓도 있었다. 또한 무장대의 습격으로 인명희생을 당한 피해자 집안의 청년들을 경찰에 우선 채용해 활용한 경찰 당국의 조치⁴¹⁾도 보복행위를 조장했다. 일부 경찰들은 휴가를 이용해 무장대 혐의자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보복 사형(私刑)을 가하는 바람에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⁴²⁾ 이에 관해 제주도에 파견되어 있던 경찰고문관 코페닝(Lester Chorpeneing)은 “섬에 진주한 응원경찰대가 동료 경찰과 가족이 살해 당한데 대해 복수하기로 작정하고, 잔혹한 보복을 했다”고 말했다.⁴³⁾

36) 『自由新聞』, 1948년 6월 18일.

37)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66, June 11, 1948.

38) 朴丙圭(한림읍 금악리 주민)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63쪽).

39)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68, June 13, 1948.

40) 『漢城日報』, 1948년 6월 18일.

41)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24일.

42)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17일.

43) USAFIK, *HUSAFIK*, part III, chapter IV, “Police and Public Security,” pp.420~421.

이처럼 강경작전이 사태진압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키자 미군정은 인사정책을 통해 유화책을 폈다. 이미 5월 28일 반공 일변도의 강경정책을 펴온 유해진(柳海辰) 제주지사를 경질하고 제주출신인 임관호(任琯鎬)를 새 지사로 임명한 바 있는 미군정은 이어 6월 17일에는 역시 제주출신인 김봉호(金鳳昊) 제8 관구경찰청 부청장을 제주경찰감찰청장에 임명했다.⁴⁴⁾

김봉호 청장은 부임에 앞서 조병옥 경무부장으로부터 “제주도 사건 수습에는 당신 외에는 없소”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제주도 출신인 나는 향토애에 호소하여 우리 경찰 자신의 결점을 시정하고 민간 측에 결점이 있다면 시정할 결심이나 지금까지의 정보를 듣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유화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⁴⁵⁾

6월 24일 부임한 김봉호는 부임 직전 발생한 박진경 연대장 암살사건으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최경록 신임 연대장과 전도 읍면장이 참석한 회의 석상에서 “먼저 경찰 자신의 불법 부정을 근절 숙청하겠다. 차단된 교통을 해결하는 동시에 입출입 물자에 대해서는 간섭방해 않겠다. 부화뇌동한 자는 처벌치 않고 귀순하는 자는 양민으로 인정한다”⁴⁶⁾고 천명하는가 하면, 실제로 같은 날인 7월 1일자로 어획금지를 해제하고 도내 여행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등 유화정책을 펴나갔다.⁴⁷⁾ 이어 7월 5일에는 목포~제주간 정기연락선 여행자에 대한 여행증명제도 폐지했다.⁴⁸⁾

그러나 조병옥 경무부장은 김봉호 청장의 제주 부임 하루 전인 6월 23일 담화를 발표, 폭동 발발의 원인을 경찰관의 비민주적 과오에서 찾으려는 것은 사고와 판단의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제주폭동 만행 수습의 근본방침은 종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밝혀 민심수습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김봉호 청장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예고했다.⁴⁹⁾

44) 『東亞日報』, 1948년 6월 19일.

45) 『東光新聞』, 1948년 6월 20일.

46)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11일.

47) 『大東新聞』, 1948년 7월 6일.

48)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17일.

49) 『現代日報』, 1948년 6월 24일.

나. 연대장 암살사건과 경비대 개편

1) 박진경 대령 피살

1948년 6월 18일 새벽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그의 숙소에서 부하들에 의해 암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 연대장은 6월 17일 진급 축하연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이튿날 새벽 3시 15분경 M-1 소총 총탄에 맞아 피살되었다.

미군 측에서는 그동안 브라운 대령의 지휘 아래 진압작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박 연대장을 크게 신임해 왔던 터라 피살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박 연대장 살해 당일 미군보고서가 급보를 전하면서 “박 대령은 조선의 부대장 및 야전지휘관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평가되던 인물이다”⁵⁰⁾라고 논평한 것은 미군이 얼마나 박 연대장을 신임했고, 그의 죽음을 애석해 했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본격적인 진압작전의 책임자로 박진경을 발탁해 신임 연대장으로 임명했고, 6월 1일에는 직접 제주에 내려와 진급한 박 연대장에게 대령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던 딘 군정장관은 박진경의 죽음에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미 고문관이었던 웨슬 로스키의 증언에 의하면 로버츠 당시 통위부 고문관도 박진경의 진급식에 참석했고 박진경이 암살당했을 때 직접 제주에 내려왔다고 한다.⁵¹⁾ 딘 장관은 피살사건이 벌어진 18일 정오 총포 연구자 2명을 대동하고 급히 제주로 향했다.⁵²⁾ 딘 장관은 현지 사정을 조사한 뒤 이날 저녁 박 연대장의 시신을 신고 귀경하였다.⁵³⁾ 박 연대장의 장례는 6월 22일 오후 2시 서울 남산동에 있는 경비대 총사령부에서 통위부장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와 유가족, 딘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등 각계 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부대장(部隊葬)으로 치러졌다.⁵⁴⁾

사건 즉시 군·경은 물론 미군 CIC(방첩대), CID(범죄수사대) 요원들이 투입돼 조사를 벌였다.⁵⁵⁾ 연대본부에 근무하던 사병들은 모두 연병장에 집결한 채 조사를

5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63, June 18, 1948.

51) Charles L. Wesolowsky(80세, 미국 플로리다, 당시 11연대 고문관, 2001. 10. 28 채록) 증언.

52) 『朝鮮日報』, 1948년 6월 19일.

53) 『朝鮮中央日報』, 1948년 6월 20일.

54) 『京鄉新聞』, 1948년 6월 23일.

55)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73, June 18, 1948.

받았다. 헌병들은 일일이 탄창과 총기검사를 해 탄알을 갖고 있거나 총기청소 상태가 불량한 병사들을 따로 집결시켜 조사했다. 특히 딘 장관이 대동하고 온 총포 연구자들이 11연대 장병들에 대한 일제 총기조사를 벌이는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

김종면 중령은 당시 통위부 정보국 간부로서 일시 제주에 파견돼 11연대 정보참모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박진경 연대장과 칸막이 하나 사이로 잠을 자다 이 암살사건을 겪었다. 김종면은 이에 관해 “미군은 탄환이 총신을 빠져나올 때 강선과의 마찰로 굵히는 흔적이 총마다 다르다는 점에 착안, 모든 병사들의 M-1 소총을 한 발씩 쏘게 해 탄환을 대조하는 치밀한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⁵⁶⁾ 김종면은 또한 “브라운 대령이 ‘어떻게 옆방에 자면서 피살될 때 모를 수가 있느냐’며 내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면서 “같은 중령 계급인데 박 연대장은 진급하고 나는 못하니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⁵⁷⁾

수사는 한 장의 투서에 의해 실마리가 풀렸다고 한다. 투서는 ‘문상길 중위와 연대 정보과 선임하사를 잡아보면 암살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⁵⁸⁾ 육사 3기인 문상길 중위는 모슬포 제9연대 창설 초기부터 소대장을 거쳐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문상길 중위를 시작으로 암살사건 연루자들이 속속 체포됐다. 그들은 문상길(文相吉·중위), 손선호(孫善鎬·하사), 배경용(裵敬用·하사), 양회천(梁會千·이등상사), 이정우(李禎雨·하사·미체포), 신상우(申尙雨·하사), 강승규(姜承珪·하사), 황주복(黃柱福·하사), 김정도(金正道·하사) 등 모두 9명이었다.⁵⁹⁾ 무장대 측 자료에 의하면, 암살사건 관련자 중 이정우는 M1 총 1정을 소지한 채 입산해 무장대에 합류했다.⁶⁰⁾

직접 총을 쏘아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한 사람은 부산 5연대에서 파견되어온 손선호 하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비대총사령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암살범들을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하기 위해 7월 12일 서울로 압송했다.⁶¹⁾ 박진경 연대장의 피살사건은 육군장(陸軍葬) 제1호로 기록된 고급 장교의 첫 희생이어서 세간의

56) 金宗勉 증언. (白善樺, 『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123~124쪽).

57) 金宗勉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③, 전예원, 1995, 201쪽).

5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441쪽.

59) 『國際新聞』, 1948년 8월 10일 ; 『京鄉新聞』, 1948년 8월 15일 ; 『漢城日報』, 1948년 8월 15일.

60)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1995, 82쪽에 수록).

61) 『自由新聞』, 1948년 7월 13일.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언론에서도 재판과정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고등군법회의는 8월 9일 통위부 고등군법회의실에서 재판장 이응준(李應俊) 대령 주심으로 열렸다. 재판의 초점은 연대장 암살의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데 맞춰졌다. 이 자리에서 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이지형(李智衡) 중령은 문상길 중위가 무장대 책임자인 김달삼의 사주를 받아 암살계획을 세웠으며, 손선호 하사가 권총으로 박 대령을 암살했다는 내용의 기소문을 낭독했다.⁶²⁾

그러나 문상길 중위는 법정에서 ‘김달삼 지령설’을 부인했다. 문상길은 동족상잔을 피해야 한다는 김익렬 전 연대장의 방침에 찬동했기 때문에 김익렬 중령과의 회견을 추진하기 위해 김달삼을 만난 적은 있으나 그의 지령을 받아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문상길은 이어 “심리조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전기고문 끝에 눈을 막은 후 조서에 대한 기록내용 여하를 모르고 강제적으로 무조건 날인한 것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⁶³⁾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한결같이 김익렬 전 연대장과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을 비교하면서 무모한 토벌전을 막기 위한 것이 암살의 동기라고 밝혔다. 신상우 하사는 “박진경 대령은 동포를 학살하고 진급했다. 미군인이 직접 위장(位章)을 달아주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직접 박진경 연대장을 저격한 손선호 하사는 “3천만을 위해서는 30만 제주도민을 다 희생시켜도 좋다. 민족상잔은 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실제 행동에 있어 무고한 양민을 압박하고 학살하게 한 박 대령은 확실히 반민족적이며 동포를 구하고 성스러운 우리 국방경비대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박 대령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했다.⁶⁴⁾

박진경 연대장 암살에 관한 ‘김달삼 지령설’은 4월 28일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했던 김익렬 전 연대장에게까지 파문이 확산돼 김익렬 중령은 그 배후 혐의로 전격 연행됐다. 당시 한 언론은 “김 중령의 구금 이유는 박 대령 살해사건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이라고 통위부 측근자는 언명하였다”면서도 “그러나 소위 인민해방군 사령 김달삼과 직접 면담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김 중령의 구금은 그러한 관계가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고 보도했다.⁶⁵⁾ 왜 진작부터 강경진압작전을 하지 않고 무장대와 협상

62) 『國際新聞』, 1948년 8월 10일.

63) 『朝鮮中央日報』, 1948년 8월 14일.

64) 『漢城日報』, 1948년 8월 14일.

65) 『國際新聞』, 1948년 7월 23일.

을 했느냐는 의심이었다.

그러나 김익렬 중령은 재판정에 나와 “모든 군사행동은 당시 최고 작전회의의 참모 이던 드루스 미군 대위의 지휘였고 박 대령 살해는 나는 전혀 모른다”며 무장대와의 협상을 비롯한 모든 군사행동이 미군의 지휘 아래 진행됐음을 밝혔고, 경비대총사령부 총참모장 정일권 대령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⁶⁶⁾

변호인들은 암살범들의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했다. 관선변호인 김흥수(金興洙) 소령은 “문 중위 이하 각인은 산사람의 지령을 받은 일도 없고, 또 무슨 사상적 배경도 없고 다만 민족애와 정의감에서 나온 범행이었으니 특별히 고려해 달라”고 변호했다. 이어 김양(金養) 민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번 제주도 소요사건의 직접원인이 일부 악질 경관과 탐관오리의 비행에 인하였다는 것은 이미 각 책임자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해방된 이 땅에서 제주도민들이 가진 그 모든 불평과 분노 아닌 민족상잔에서 쓰러진 동포의 죽음을 본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하고 30만 도민을 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어리석고 좁은 판단이나마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뼈아픈 각오로 이러한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물론 박 대령을 암살한 것은 유죄요 잘못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또 오늘날 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사회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8·15 정권이양을 앞두고 바야흐로 완전 자주독립 하려는 이때 외세가 재무장하고 이 땅을 다시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으니 이러한 용감한 젊은 생명은 살려두었다가 차라리 우리 조국을 위하여 죽을 기회를 줄 것을 바라며 또한 그들은 반드시 민족을 위하여 싸울 것을 믿는다.⁶⁷⁾

그러나 검찰관 이지형 중령은 “그릇된 민족 지상의 이념에서 군대의 생명인 규율을 문란케 한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⁶⁸⁾ 선고 공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하루 전인 8월 14일 열렸다. 재판부는 문상길 중위를 비롯해 신상우·손선호·배경용 하사관 등 4명에게 총살형을 언도했다. 또 양희천에게는 무기징역을, 강승규에게는 5년 징역을 각각 선고했으며 황주복·김정도 하사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⁶⁹⁾

66) 『國際新聞』, 1948년 8월 14일 : 『漢城日報』, 1948년 8월 14일.

67) 『漢城日報』, 1948년 8월 15일.

68) 鄭東熊, 「동란 제주의 새 비극-박대령살해범 재판기」, 『새한민보』, 1948년 10월 상순.

69) 『京鄉新聞』, 1948년 8월 15일.

재판장인 통위부 감찰총감 이응준 대령에 의해 내려진 이 판결은 유동열 통위부장을 거쳐 딴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은 후 집행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었다.⁷⁰⁾ 그런데 변호인의 감형 진정서가 제출되고, 각계에서 감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총살형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었다. 그 덕분인지 신상우·배경용에 대한 총살형은 집행 직전 특사에 의해 무기형으로 감형되었다.⁷¹⁾

그러나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결국 9월 23일 경기도 수색의 한 산기슭에서 총살형이 집행됐다. 문상길은 집행 직전 마지막 유언 기회를 주자 “스물세살을 최후로 문상길은 갑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군대입니다. 마지막 바라건대 ×××의 ××아래 ×××의 ××아래 ××를 하는 조선군대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갑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선호는 ‘혈관에 파도치는 애국의 깃발...’로 시작되는 군가를 부르다가 “오, 하나님이지여! 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국방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리고 총살되었다.⁷²⁾

2) 11연대 후기 진압작전

박진경 연대장이 암살당하자 미군사령부는 6월 21일 새로운 11연대장에 최경록(崔慶祿) 중령을, 부연대장에 송요찬(宋堯讚) 소령을 임명하였다.⁷³⁾ 이들은 모두 일제 때 전투경험을 쌓은 일본군 준위 출신으로서 미군정 시대에는 나란히 군사영어 학교에 입교한 공통된 경력을 갖고 있다.⁷⁴⁾

최경록 연대장과 송요찬 부연대장은 제주에 부임한 즉시 박진경 연대장 암살범 색출에 주력하는 한편, 전임 연대장과 같은 진압작전을 계속 추진했다. 미 24군단 일일보고에 기록된 이 즈음의 경비대작전을 모두 살펴보면, 경비대는 최경록 연대장이 부임하던 날부터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펼쳤다. 6월 21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구좌면 송당리 지경에서 48명을 체포하고 카빈총 1정을 회수했고, 같은 기간 제주

70) 『朝鮮中央日報』, 1948년 8월 15일.

71) 『京鄉新聞』, 1948년 9월 25일.

72) 『自由新聞』, 1948년 9월 25일 ; 『서울신문』, 1948년 9월 26일.

73) “Memorandum to Colonel Brown,” June 21,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NARA, Washington, D. C.

74) 韓鎔源, 『創軍』, 博英社, 1984, 58쪽.

읍 삼양리에서 29명을 체포했다.⁷⁵⁾ 6월 25일에도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후 6시까지 수색작전을 펴 176명을 체포하고, 약 3만원의 돈과 5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압수했다.⁷⁶⁾

이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비대는 6월 21일, 6월 22일, 6월 25일, 6월 26일 잇따라 수색작전을 전개해 253명의 ‘폭도’를 체포하는 전과를 거둔 것이다. 그런데 노획한 총기류는 단 1정 뿐이다. 심지어 6월 25일에는 176명의 ‘폭도’를 체포하고도 노획물은 돈과 식량뿐이었다. 한 언론은 200명을 체포하고도 노획무기가 하나도 없었던 6월 26일의 경비대 작전을 이렇게 보도했다.

중산촌에 머물러서 치안에 노력하던 국방경비대는 6월 26일 새벽부터는 북제주 방면에다 무력을 써서 중간산촌 각 부락을 둘러싸고 소요에 가담한 혐의자를 다수 체포하였다. 이번 방법은 해안지대까지 넣은 대규모의 행동이었다. 이날 오후까지 구좌면, 조천면, 제주읍 등지에서 체포된 인원만도 2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소요부대의 간부로 인정되는 2명도 있었고 대부분은 농민이었으며 무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⁷⁷⁾

이같은 상황은 최경록 연대장 스스로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최경록 연대장은 제주에 온 지 20여일 만인 7월 14일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실제 전투에 종사한 정예 부대는 아직 하나도 체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⁷⁸⁾ 최경록 연대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진압작전 마지막날인 7월 15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한라산을 중심으로 토벌을 4회 한 일이 있었는데 산사람들을 체포할 수는 없었다”면서 “산사람들의 연령을 보면 소년, 청년, 장년, 노년으로 되어 있는데 소년은 12세로부터 노년은 60세까지 있다. 그 중 청년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장년과 소년이요, 제3위는 노년이다”라고 말했다.⁷⁹⁾

이 무렵 무장대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제주도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은 6월 22일 기자단을 안내해 제주를 일주한 뒤 “여러분이 친히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 통과한 길은 약 1개월 전에는 위험해서 통행치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

7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68, June 24, 1948.

7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71, June 28, 1948.

77) 『朝鮮日報』, 1948년 7월 4일.

78)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21일.

79)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29일.

무런 사고가 없어서 도내 도로, 전선은 모두 복구되고 있으며 얼마쯤 치안도 회복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⁸⁰⁾ 6월 23일에는 유동열 통위부장도 “폭도 측의 실제 행동, 실력이 저하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⁸¹⁾

무장대가 공세의 고삐를 늦춘 채 일시 행동을 중지한 까닭은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경비대가 본격적인 작전에 나서자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암중모색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경무부의 최난수 경감은 “폭도들은 5월 20일 이후 투쟁방법을 변경하여 일부는 귀순을 가장하고 일부 정예부대는 수 개 부대로 분산하여 무장한 채로 산중에 도피 잠적중이다. 말하자면 ‘장기항전’에 돌입한 모양이다”라고 분석했다.⁸²⁾ 한 언론은 “폭도들은 경찰에 대하여서 여전히 항쟁을 계속하고 있다 한다. 국방경비대가 출동하면 대항 없이 종적을 감추는 그들이 ‘친애하는 경비대여, 검정개(경찰관을 이렇게 부른다)를 타도하라’는 빠라로 경비대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⁸³⁾

한편 강경한 진압작전이 계속되자 각 지역의 제주출신 모임 등을 중심으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6월 19일 광주제우회(光州濟友會)는 제주도 경찰당국에 △무력적 처리 방침을 버리고 평화적 방법을 취하여 극도로 무기 소지를 제한할 것 △도민의 생계를 보장할 것 △테러하는 사설단체를 즉시 해체할 것 △해상교통 특히 제주~목포간의 증명제도를 철폐할 것 △고문치사, 폭행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⁸⁴⁾

7월 1일에는 서울제우회가 △각 애국정당단체를 망라한 제주도사건 대책간담회를 개최토록 할 것 △각 애국정당단체를 망라한 현지조사단의 파견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 △각계각층의 지도적 인사로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의 정치적 해결을 위하여 균정책임자와 절충할 것 등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40여 정당·사회단체에 제출했다.⁸⁵⁾

이 건의에 따라 7월 6일 40여 정당·사회단체가 민독당 회의실에 모여 대책위 구성을 놓고 토의했다.⁸⁶⁾ 제주출신 5만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부산제우회(釜山濟友

80) 『現代日報』, 1948년 7월 3일.

81) 『東光新聞』, 1948년 6월 23일.

82) 『東亞日報』, 1948년 6월 24일.

83) 『漢城日報』, 1948년 7월 21일.

84) 『朝鮮日報』, 1948년 7월 2일.

85) 『漢城日報』, 1948년 7월 3일.

會)는 7월 5일 “이 사태는 도민 전체가 평화를 위한 최후적 방법으로 무장봉기한 것에 틀림없다”고 지적한 후 “이 사건 수습에 있어서 무력적 공격을 가함은 도저히 옳지 못한 일이므로 평화적 방법으로서 급속 해결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하지 중장을 비롯하여 딘 군정장관, 경무부장, 사법부장, UN조선위원단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는가 하면, 그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부산 각 신문기자들과 더불어 6일 하오 제주도로 향했다.⁸⁷⁾

경비대는 대대적인 수색작전과 주민 연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장대의 대응이 없는 데다가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는 각계의 압력이 거세게 일자 ‘작전행동보류’를 선언했다. 최경록 연대장은 교통차단 해제, 어획금지 해제, 통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후는 특수한 경우 이외의 작전행동은 보류하나 경찰 및 각 행정기관에 협력하여 치안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⁸⁸⁾ 이로써 제주사태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산간마을 등을 휩쓸고 다니며 주민들을 연행한 경비대 11연대의 작전은 많은 후유증을 낳았다. 당시 제주 취재에 나섰던 한 언론은 국방경비대가 감시하는 천막수용소에는 20세 청년에서부터 60대 노인까지 있었다면서 “이들은 산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을에서 농사에 종사 중 붙들려 온 것으로 ‘지금 이게 석달째 요’하고 기자단 일행에 하소연하듯이 말했다”고 보도했다.⁸⁹⁾

이같은 상황은 도민들로 하여금 경찰에 이어 경비대까지도 경원시하게 함으로써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 무렵 제주에 특파됐던 한 기자는 당시 마을의 실태를 이렇게 기록했다.

처처에 절도된 전주는 그대로 밭이랑 산등성이에 나자빠져 있건만 의연히 엄존하는 경찰지서의 바리케이드만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부락민 40~50명이 지금 경비전화선 복구와 지서돌담 구축 공사부역으로부터 돌아온다. 맥없이 일행 앞을 지나던 그네들이 제주출신의 일행의 한 사람 말에 순시로 사망을 둘러싸고 울음의 바다를 이루고야 만다. 들고 있던 팽이를 돌 위에다 두드리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다”고 울부짖는가 하면 공포와 울분에 북받친 60노파는 무어라 문표를 가리키며 가슴을 두드린다. 붙어있던 집집 문표가 하룻밤에 없어지자 전 부락민이

86) 『漢城日報』, 1948년 7월 7일.

87) 『漢城日報』, 1948년 7월 9일.

88) 『大東新聞』, 1948년 7월 8일.

89)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29일.

지서에 인치되어 난타 당하였고 또한 학대받고 있다 한다. 죄는 폭도에 있는 것인가, 부락민에 있는 것인가. 총소리는 잠잠한데 주름잡힌 이맛살에 왜 이다지도 우색이 가득하며 터질까 염려되는 울분에 잠겨 있다. 지금은 어떠한가 하는 기자의 말에 “먼 곳 총은 무섭지 않으나 가까운 총부리가 무섭수다”라고 고함으로 응수한다.⁹⁰⁾

특히 무차별 연행은 젊은이들을 오히려 무장대 편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한 언론은 “600리 제주도 주변 부락 부락에는 청년을 구경하기 어렵다. 그들은 무차별 집단 검거를 피하여 소위 인민해방군의 전위대에 몸을 던져버렸다 한다”고 전하면서, 가장 큰 고통을 묻는 질문에 “호적에도 없는 아들 딸을 내놓으라는 데는 질색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⁹¹⁾

3) 9연대 재편

경비대총사령부는 7월 15일자로 경비대 제9연대를 부활시키면서 연대장에 기존 11연대 부연대장인 송요찬 소령을, 부연대장에는 기존 11연대 대대장인 서종철(徐鐘喆) 대위를 각각 임명했다.⁹²⁾ 최경록 연대장의 11연대는 제주출신인 본래 9연대 병력만을 배속 해체해 제주도에 남겨둔 채 7월 24일 연대 창설지였던 경기도 수원으로 철수했다.⁹³⁾ 이에 앞서 경비대총사령부는 11연대 철수에 대비해 7월 21일 제3여단 소속 2개 대대를 차출, 제주로 이동시켜 9연대에 배속시켰다.⁹⁴⁾ 즉 5월 15일 11연대에 합편됐던 9연대가 꼭 두 달만에 병력이 바뀐 채 재편성된 것이다. 그리고 제주 주둔군 책임자를 최경록에서 송요찬으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제주주둔 병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제주 사태가 진정된 상황을 한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을 지 모른다. 경비대 재편성 직전인 7월 12일 통위부 이형근(李亨根) 참모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 사태는 일단락 되었다”고 발표했다.⁹⁵⁾ 그러나 사태가 일단락 되었다면 계속 남아 마무리 작전을 수행할 일이지, 새삼스레 병력을 이동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90)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11일.

91) 『서울신문』, 1948년 7월 13일.

92) 『總司令部 特命』 제88호, 1948년 7월 6일.

93)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1집, 1948년 7월 24일.

94)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49, July 23, 1948.

95) 『東亞日報』, 1948년 7월 13일.

병력 교체의 진정한 이유로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제주 상황을 확실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꼽을 수 있다. 당초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W. L. Roberts) 준장은 6월 21일 11연대 지휘부를 제주에 파견하면서 제주도 미군사령관인 브라운 대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요일 귀하의 요청에 따라 파견하려고 하는 장교들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임무에 대하여 귀하에게 고지한다. 오늘 우리는 최(경록) 중령을 11연대의 연대장으로, 송(요찬) 소령을 부연대장으로 파견하였다. 최 중령은 이곳의 모든 지휘관들로부터 선택되었으며 본인도 그를 좋아하며 그의 배후가 아주 훌륭한 것 같다. 송 소령은 강인하며 용감한 사람이라고 본인은 이해한다. 우리는 감찰관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송 소령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최상의 장교이며 우리는 그를 감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⁹⁶⁾

미군은 부연대장 송요찬의 ‘강인하고 용감한’ 점을 높이 샀다. 이에 비해 연대장 최경록에 대해서는 주변의 신망을 받기는 하지만 온건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9연대 재편 직전인 7월 12일자 미군 비밀문서는 제주도 상황에 대해 “반란이 계속됐으나 이 달(6월) 하순 접어들면서 국방경비대 사령관은 ‘평정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작전이 더딘 것은 경비대가 오직 학살이라는 수단으로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고 기록했다.⁹⁷⁾ 최경록 연대장의 작전도 차별 없이 주민을 연행하는 형태이긴 했지만, 종전보다는 완화된 것이었다. 이에 관해 최경록 연대장이 ‘학살’을 꺼려했기 때문에 작전이 더딘 것으로 분석했던 것이다.

반면 11연대 부연대장으로 제주에 부임한 이후 재편된 9연대장에 임명된 송요찬은 최경록과는 다른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관해 로버츠 준장은 송요찬을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당시 제9연대 고문관이었던 피쉬그룬드는 송요찬에 대해 ‘매우 터프한 사람’이라고 증언했다.⁹⁸⁾ 김정무(金貞武)는 9연대가 재편된 7월 15일 제주에 파견돼 와서 그 해 12월 15일 제주를 떠날 때까지 9연대 군수참모를 지냈다. 김정무는 자신이 겪었던 송요찬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96) “Memorandum to Colonel Brown,” June 21,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NARA, Washington, D. C.

97) Political Advisor, USAMGIK, to Secretary of State, July 12, 1948.

98) Harold Fischgrund(81세, 미국 버지니아, 당시 9연대 고문관, 2001. 10. 20 채록) 증언.

난 9연대 군수참모로 제주에 갔습니다. 당시 인사참모는 최세인, 정모참모는 탁성록, 작전참모는 한영주였습니다. 제주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하루는 직속부하인 구매관 강의원(姜義遠·육사 4기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알아보니 송요찬 연대장의 지시에 의해 처형됐다는 겁니다. 난 9월 1일부로 대위 진급을 했는데 9월의 어느 날 연대장이 부르더니 다짜고짜 ‘너 재판장 해라. 이 놈을 죽여야 돼!’라고 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범죄사실도 모르는 사람에게 덮어놓고 사형언도를 하라는 겁니다. 사관학교에서 군법회의에 대해 몇 시간 배우긴 했지만 재판을 해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재판정에 나가보니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사람이 반쯤 죽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제주도지사였던 박경훈이었습니다. 도지사 관사에서 쌀 한 말을 공비에게 줬다는 게 범죄사실이었지요. 쌀 한 말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시골에서 쌀 창고 열쇠는 늘 할머니가 갖고 다니던 게 기억 나 “피고가 직접 쌀을 주었느냐?”고 물었지요. 이에 당시 57~58세 가량 된 박경훈 지사는 “아닙니다. 저도 구속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 친척이 와서 굶어죽게 됐으니 도와달라고 해서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아무리 도지사 관사에서 쌀이 나왔다 하지만 부인의 행위를 책임질 수는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 등 몇 사람과 평의에 들어갔지요. 어떤 사람은 “사형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한 20년 어떻습니까?”라고 했습니다. 15년을 말하는 이도 있고, 10년을 말하는 이도 있고. 고심 끝에 심판관들에게 “이건 무죄이지만 부인을 데려다 사형을 한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한 3년이 어떻겠소?”라고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3년을 언도했습니다. 아직도 무죄인 사람에게 3년형을 언도한 것이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어쨌든 재판결과를 연대장에게 보고했더니 “이 공산당 같은 놈의 새끼!”라며 철모로 나를 갈기는 겁니다. 하도 맞아서 머리가 크게 부었습니다. 같이 재판에 참여했던 최세인 인사참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장 송효순은 동기생인데 매일 술을 먹고 괴로워했습니다. 물어봐도 말은 안 하고.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헌병들이 사람들을 동굴에 몇 십명씩 데려다놓고 갈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결국 손을 써서 중간에 제주를 떠났습니다. 또 한영주 작전참모는 밤낮으로 연대장에게 맞았습니다.⁹⁹⁾

한편 연대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또다른 미군 보고서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병력 교체의 이유는 놀랍게도 ‘훈련’ 때문이었다. 7월 21일 부산 3여단의 2개 대대가 제주에 오고 7월 24일 11연대가 제주를 떠남으로써 9연대 재편이 완료된 지 일주일 가량 지났을 무렵, 딘 군정장관은 조병옥 경무부장에게 “야전훈련을 위해 제주도의

99) 金貞武(77세,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당시 제9연대 군수참모, 준장 예편, 육사2기 동기회장. 2002. 9. 25. 채록)의 증언.

국방경비대 연대들을 교체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1개 연대가 제주도에 4~6주 동안 주둔할 것이다. 산간지대에서 항상 연대 훈련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¹⁰⁰⁾ 제주도 사태를 경비대의 야전 훈련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이었다.

다. 8·25지하선거와 무장대 개편

1) ‘남조선 대의원’ 선거

1948년 7월 중순경부터 남한 전역에서 ‘지하선거’가 열렸다. 이는 북한의 정권 수립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은 정권을 세우는데 있어 명분을 세우기 위해 ‘남북협상’을 최대한 활용했다.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제1차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 평양에서 열린 것은 48년 4월 19일의 일이었다. 이 회의에는 김구 등도 참석했다. 이 때 “남조선 단독선거가 설사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는 달리 통일적 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하여 조선헌법을 제정하고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¹⁰¹⁾

그런데 남한에서 5·10선거가 치러지고 정부 수립이 임박해 오자, 제2차 연석회의가 4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제2차 연석회의에는 북쪽에서 북로당 등 15개 정당·단체 대표자와 남쪽에서 1차 회의 후 북한에 잔류하거나 다시 비밀리에 38선을 넘은 20여 개 정당·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그러나 김구·김규식은 “국토 양단과 민족 분열을 막자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남한에서 단정이 수립되니 북한에서도 단정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민족분열 행위”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제2차 연석회의에서는 앞으로 세워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정부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선거도 북한지역 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통틀어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공개적인 선거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2중 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즉, 각 시·군에서 5~7명씩 뽑힌 대표자들(1,080명)이 8월 21일부터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를 열어 8월 25

100) “A Summary Report on the Jei-Ju Police,” from Military Governor Major General William Dean to Korean National Police Director, July 30, 1948.

101) 金南植, 『南勞黨研究』, 돌베개, 1984, 335쪽.

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남한 전역을 술렁이게 했던 ‘지하선거’란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회의에 참가할 남측 대표자 1,080명을 뽑는 선거였다. 당시 남로당 고위 간부였던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선 낮에는 미군정 치하에 있어도 밤만 되면 좌익이 힘쓰는 지역에서는 선거가 반공개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주로 경남·경북·전남·강원 등지의 외딴 마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밤에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먼저 전권위원들이 선거에 대한 해설을 한 뒤 인민 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했지요. 다음 그 지역의 남로당원이나 좌익계 인사가 나서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고 곧바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반공개 투표를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연판장을 돌려 서명 받는 식이었습니다. 얇은 미농지의 연판장에는 인공헌법 실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와 해당 지역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연판장에는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도록 했으나 지장을 찍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민들을 모을 때는 선거 사실을 숨긴 채 구장 같은 마을 책임자, 좌익 동조자에게 다른 명목을 내걸고 부탁하는 방법을 썼지요. 기습적으로 치러진 지하선거였지요. 집회를 열기가 곤란한 지역의 선거는 전권위원들이 연판장을 갖고 집을 개별 방문, 서명·날인을 받는 우격다짐 식이었지요. 주민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옥박치르는 등 위협적인 방법도 예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¹⁰²⁾

그런데 당시 4·3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제주도에서의 지하선거는 주로 백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받아 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육지에서처럼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전권위원들이 선거에 대한 해설을 하거나 ‘인민 대표 후보’를 소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은 이런 백지날인이 지하선거에 참여, 투표를 했다기보다는 산 쪽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제주도에서의 지하선거는 주로 중산간마을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이 서명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나 무장대의 강요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못해 가명으로 이름을 쓰고 손도장을 누르는 경우도 있었다.¹⁰³⁾ 1948년 8월의 한 미군보고서는 제주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102) 中央日報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일보사, 1993, 377~378쪽.

103)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실천문화사, 1991, 263쪽.

8월 19일 무장폭도 20명을 포함한 폭도 40명이 세화리에 침입하여 주민들에게 북한 선거를 지지할 것을 강요하며 백지 투표용지에 강제로 서명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 폭도들을 공격해서 격퇴시켰는데 양측의 보고된 사상자는 없다. 보고에 따르면 폭도 집단은 제주도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백지에 서명토록 하고, 인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돈과 식량을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폭도들로부터 양자택일할 것을 강요받았는데,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사람은 최악의 경우 경찰에 체포되어도 며칠 구류를 살다가 풀려날 것이고, 협조를 거절하는 사람은 죽게 되며 그 집은 방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8월 18일 제주도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서귀면에서 마을 주민 5명이 폭도들로부터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북한정부와 선거를 지지하는 청원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¹⁰⁴⁾

경찰은 지하선거를 앞두고 통행금지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목포~제주 간 여행증명제도를 다시 실시하는 등 8월 말까지 비상경계에 돌입했다.¹⁰⁵⁾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제주도는 지하선거를 추진하려는 무장대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 간의 충돌로 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어 갔다. 한 미군보고서는 “8월 2일 경찰은 무장 폭도 20명을 포함한 폭도 50명과 서광리 인근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 접전에서 폭도 2명이 사살되고 경찰 1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수류탄 1개, 일본총 3정, 실탄 60발을 압수했다”고 기록했다.¹⁰⁶⁾ 이 마을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이날의 교전은 안덕지서 경찰들이 무장대가 ‘백지날인’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출동해 벌어진 일이었다.¹⁰⁷⁾ 8월 19일 새벽에는 한림지서 소속 경찰 4명이 한림면 협재리에서 총격전을 벌이다 경찰 1명이 희생되었다.¹⁰⁸⁾

이처럼 제주도민들은 이 선거의 의미를 몰랐다. 투표 용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백지에 손도장을 찍는 형태였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무장대를 지지한다’는 정도의 뜻으로만 알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1948년 여름에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졌던 이 일은 ‘백지날인 사건’이라고 부른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여름에 산에서 내려와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매미 소리가 나거나 꺾꺾거리는 소리가 나면 산에서 왔다는 신호였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무서워

10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20, August 20, 1948.

105) 『朝鮮中央日報』, 1948년 8월 15일.

10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07, August 10, 1948.

107) 高普和(68세, 안덕면 서광리 주민, 2002. 7. 12. 채록) 증언.

10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23, August 28, 1948.

서 모두들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은 집에는 돌맹이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조직을 지지하는 뜻으로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¹⁰⁹⁾

이처럼 ‘백지날인’은 대부분 강압에 못 이겨 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백지날인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등 남한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후에 이 일이 발미가 되어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었다. 당시 경찰서 유치장 간수였던 한 증언자는 유치장에서 알게 된 한 여인이 총살에 처해지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했다.

이옥(李玉)이라는 처녀가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군인들에게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어 들어왔느냐고 물으니 백지날인한 죄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백지 들고 와서 자꾸 찍으라기에 찍었다는 겁니다. 난 이 처녀와 약간의 인연도 있고 해서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지요.¹¹⁰⁾

이렇게 제주에서는 도장 한번 찍은 것이 총살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 남로당 연구가는 “그때 ‘도장 찍는 일’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명분이 통했다면 남한 땅에서 그 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어도 된다는 논리로 비약된다”고 지적했다.¹¹¹⁾

2) 김달삼 월북

남한의 각 지역 대표 1,080명이 참가하게 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는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8월 초 남한 전역에서는 월북행렬이 줄을 이었다. 도중에 체포되거나 교통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78명이 불참했지만, 모두 1,002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21일 대회가 열렸다. 1,002명 중에는 제주도 대표도 6명 포함돼 있었다.

무장대 총책 김달삼도 해주에서 열린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948년 8월에 제주를 떠났다. 김달삼이 언제 떠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8월 2일 5명의 공산주의자들이 배를 타고 목포로 떠났다. 추측하건대 이들은 북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평

109) 張守珍(80세, 한림읍 협재리 주민, 2001. 12. 12. 채록) 증언.

110) 金時訓(79세, 표선면 가시리, 당시 서청 출신 경찰관, 2002. 2. 26. 채록) 증언.

111) 金南植과의 인터뷰, 『濟州新聞』, 1989년 12월 5일.

양으로 가는 길인 것 같다”¹¹²⁾라는 미군 보고로 볼 때, 김달삼은 일행 4명과 함께 8월 2일 제주를 떠난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좌파 측 자료에는 이 해주대회에 참가한 제주도 인민대표가 안세훈·김달삼·강규찬·이정숙·고진희·문등용이라고 6명의 이름을 써 놓았다.¹¹³⁾ 이 가운데 ‘문등용’은 생소한 이름으로 아마 가명이 아닌 가 여겨진다.

해주대회 첫날인 8월 21일, 35명을 뽑는 주석단 선거가 있었는데 20대 중반의 김달삼이 허헌·박헌영·홍명희 등 좌파 거물들과 나란히 주석단 일원으로 뽑혔다.¹¹⁴⁾ 이어 8월 25일에는 남한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다. 북한 측 대의원 212명을 뽑는 총선거와 동시에 남한 측 대의원 360명을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선출하는 일이었다. 입후보자 360명이 발표된 가운데 찬반투표의 요식행위를 거치는 형식이었다. 이 때 제주도 대표 안세훈, 김달삼,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뽑혔다.¹¹⁵⁾

김달삼은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투표에 앞서 벌어진 ‘입후보자에 대한 토론’ 시간에 토론자로 나서 제주4·3사건에 관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달삼은 우선 박헌영에 대한 지지를 밝힌 후 무장봉기의 발발 원인과 관련,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 실시에 따른 분노가 폭발해 벌어진 자연발생적인 총궐기라고 주장했다. 김달삼은 이어 5·10선거를 보이콧한 무장대의 ‘전과’ 등을 길게 설명한 후, “민주조선 완전자주독립 만세!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치며 연설을 마쳤다.¹¹⁶⁾

무장봉기를 주도했던 김달삼의 월북이 곧 제주4·3사건 발발 때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분단된 남과 북에 적대적인 두 개의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무장대 지도부가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제주도는 더욱 강경한 정부의 자세를 맞게 되었다.

한편 무장대 총책임자 김달삼이 제주도를 떠남에 따라 무장대 조직은 개편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이덕구(李德九)가 김달삼에 이어 무장대의 지휘 총책으로 나서게 되었다.

11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07, August 10, 1948.

113) 金奉鉉·金民柱, 앞의 책, 154쪽.

114) 金南植, 앞의 책, 344쪽.

115) 金南植, 앞의 책, 530~531쪽.

116)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重要文獻集』, 서울, 人民出版社, 1948, 102~109쪽.

3. 주민 집단희생기(1948. 10. 11 ~ 1949. 3. 1)

가. 강경진압 방침 채택

1) 국내외 정치상황

1948년 11월 중순께, 대규모의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됐다.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진압군은 중산간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4·3사건 전개과정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됐고 대부분의 중산간마을이 불에 타는 등 글자 그대로 ‘초토화’ 됐다.

초토화의 책임은 당시 정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이며, 미군은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대규모의 강경진압작전이 벌어졌는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의 단서를 찾기 위해 국내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도표와 같이 일지를 정리했다.

우선 단편적인 일지 내용만으로 살펴본다면, ‘1948년 11월 중순’은 남북에 각각 정권이 들어서면서 분단이 고착화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김구·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둘째,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돼 지배세력간에 큰 갈등이 벌어졌고, 여수 14연대와 대구 6연대 장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국내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이다. 논란 끝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도 이 때였다.

셋째, 미·소간 냉전이 심화되면서 양군의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던 때였다. 남한에 진주했던 미군 일부가 철수하기 시작했다.

① 국내 정치상황

□ 국내외 정치상황

날 짜	제 주 도	국 내	미국·소련·북한
47. 3. 12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미·소 간 냉전 시작
48. 4. 3	제주도에서 무장봉기 발발		
48. 4. 8			미국, 주한미군을 48년 12월말까지 철수키로 잠정 결정
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공포		
48. 8. 24	한미군사협정에 따라 한국군의 지휘권은 미군에 귀속		
48. 8. 26	임시군사고문단(PMAG) 설치		
48. 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48. 9. 15	주한미군 철수 시작		
48. 9. 19			소련, UN결의에 따라 북한주둔군의 연말 철수방침 밝힘
48. 9. 22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48. 10. 8	제주해안에 소련잠수함 출현설	이승만, 미군철수 연기 요구	
48. 10. 11	제주도경비사령부 설치		
48. 10. 17	해안에서 5km 이상 통금을 명령하는 포고령		
48. 10. 19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48. 11. 2		대구 6연대 반란사건	
48. 11. 중	강경진압작전 개시. 중산간 방화와 주민 살상		
48. 11. 17	'계엄령' 선포		
48. 12. 1		국가보안법 공포	
48. 12. 12			유엔, 한국정부 승인하며 미소 양군 조속 철수 요구
48. 12. 17			미 국무부, 12월말 주한미군 철수방침 재고 요청
48. 12. 25			소련, 북한에서 철수 완료
48. 12. 29	9연대와 교체해 2연대(연대장 함병선)가 제주 주둔		
49. 3. 2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설치(사령관 유재홍).		
49. 3. 23			주한미군 철수를 49년 6월 말로 연기 결정
49. 5. 10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		
49. 5. 15	제주도전투사령부 해산		
49. 6. 6		반민특위 습격사건	
49. 6. 21		국회프락치사건 발생	
49. 6. 26		김구, 안두희에게 암살	
49. 6. 29	주한미군 철수 완료(군사고문단 5백명 잔류)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의 처지는 '정치적 위기'로 집약해 표현할 수 있다. 이승만의 위기는 정부수립 직전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었다. 이승만은 내각책임제를 통해 권력을 나누고자 했던 한민당을 누르고 1948년 7월 20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8월 4일 내각 발표 때 한민당이 철저히 소외되자 양자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에 앞서 이승만이 첫 국무총리로 지명한 이윤영(李允榮)은 국회에서 거부됐다.¹⁾ 이승만이 새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처음으로 겪은 시련이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었던 한민당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승만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 것은 '반민족행위처벌법'(약칭 '반민법')의 제정이었다. 일제에 적극 협력해 민족을 전쟁터로 몰아넣었고 독립운동을 고문·살해했던 친일파를 처단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것은 시대적 과제였다. 그러나 친일파는 해방 후 '반공주의자'로 변신해 이미 경찰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승만은 친일파를 비호했다. 국내 정치기반이 취약한 이승만에게 친일파는 가장 큰 정치적 배경이었기 때문이다.

친일파 처단 시도는 이미 미군정 시절인 1947년 7월 20일 입법의원에서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시작됐다. 그러나 군정장관 단은 이 법의 공포를 거부했다.²⁾ 그러나 정부수립을 즈음해 친일파 처단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본회의장에 '친일파를 엄단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빨갱이'라는 협박장이 살포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1948년 9월 1일 마침내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³⁾ 이승만은 처음엔 반민법 공포를 기피했지만, 이 법을 거부할 경우 다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득이 9월 22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이승만으로서는 한민당과도 결별한 마당에 정치기반인 친일파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승만과 친일세력들의 반격은 곧바로 시작됐다. 반민법이 공포된 이튿날인 9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반민법에 반대하는 '반공구국총궐기대회'가 열렸다. 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사람은 이종형(李鍾榮)이었다. 그는 일제 때 애국지사를 잡아다 살해하는데 앞장섰고 해방 후엔 『대동신문』과 『대한일보』를 운영하면서 극우적 발언을 일삼던 전형적인 '친일파

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나남출판, 1996, 396~397쪽.

2)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118~120쪽.

3) 吳翊煥, 「反民特委의 활동과 와해」, 『解放前後史의 認識』 1, 한길사, 1980, 110쪽.

반공주의자'였다. 이날 아침부터 경찰은 '오늘 운동장에 안 나오면 빨갱이'라며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했다.⁴⁾ 이런 분위기에 대해 김웅진(金雄鎭)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반공구국총궐기대회'를 비판하면서 "38이남에 전개되고 있는 제주도사건,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다 이러해서 거기에 있는 양민까지 전부를 죄인으로 몰려고 하는 이런 음모는 대단히 장래에 우리의 치안문제가 어지러워진다고 봅니다"⁵⁾라며 향후 제주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반민특위 요원에 대한 친일경찰의 암살음모와 관제데모가 이어지는 등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방해공작은 계속됐다. 심지어 이승만은 1949년 2월 1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표적인 친일파 경찰 노덕술(盧德述)이 반민특위 조사관에게 체포된 데 대해 격노하면서 오히려 반민특위 조사관과 그 지휘자를 체포해 의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⁶⁾ 반민특위는 1949년 6월 6일 경찰의 습격을 받은 후 급격히 약화된다. 결국 반민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은 불과 7명 뿐인데다 그마저 이듬해 봄까지 감형이나 형집행정지로 모두 풀려남에 따라 친일파 숙정작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⁷⁾

정부수립 후 이승만은 반대세력을 물리쳐 정권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했고, 유엔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아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도 큰 과제였다. 이를 위해선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원조가 절실했다. 또한 정국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친일파문제, 통일문제, 토지개혁문제도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핵심 현안 가운데 특히 친일파문제와 통일문제는 이승만에게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니었다. 통일논의는 미군철수 문제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다. 이승만에게는 모두가 국가의 정당성, 존립 등과 관련된 심각한 현안이 아닐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했고, 유엔총회 회기 중에 정부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⁸⁾ 이런 와중에 1948년 9월 15일 김구와 김규식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전(全)한국 총선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 이승만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⁹⁾

4) 서중석, 앞의 책, 128쪽.

5) 『國會速記錄』 제1회 제75호, 1948년 9월 27일.

6) 『國務會議錄』 제18회, 1949년 2월 11일.

7) 吳翊煥, 앞의 글, 124~138쪽.

8) 존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 1988, 183쪽.

9) 서중석, 앞의 책, 190쪽.

10월 13일에는 소장과의원을 중심으로한 47명의 의원이 '외군철폐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¹⁰⁾ 이미 9월 15일부터 미군 일부가 비밀리에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미군이 남한 군대의 조직, 무장, 훈련을 지원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이승만은 11월 2일 '국군'이라 불리는 5만 병력의 훈련과 장비지급을 요청했다.¹¹⁾ 그러나 미국은 아직 '국군'의 존재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¹²⁾ 약속했던 군사·경제 원조도 지지부진했다. 더구나 그 당시 미국의 방침은 12월 말까지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킨다는 것이어서 이승만을 더욱 초조하게 했다. 이후 이승만은 미군 철수가 임박한 1949년 5월 27일에도 국무회의에서 "미군 철퇴에 관하여 미국 내에서도 불가하다는 여론이 있는 듯하니 국내에서 공론을 좀더 환기하여 미국의 책임과 목적을 이행케 하기 위하여 한국 방비력 안전을 보장할 때까지 주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미련을 보일 정도로 주한미군 철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¹³⁾

이처럼 이승만이 안팎으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소위 '여순반란사건'이 터졌다. 미군의 작전통제 아래 10월 27일 여수가 탈환됨에 따라 사태는 8일만에 마무리됐다. 이승만에게 여순사건은 위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반대세력을 일거에 쓰러뜨릴 기회였다.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면 사태를 사실대로 보고하거나 축소해야 할 터인데 이승만 정권은 오히려 사태를 과장하였다.¹⁴⁾ 또 향간에는 백범 김구가 여순사건의 배후라는 낭설이 떠돌았다. 김구 암살범으로서 최근 피살된 안두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선생이 국회프락치 사건과 관련되고 더욱이 국군월북사건과 여순수천 반란사건 등에 관련되었다는 풍문에 울분을 참지 못한 것"¹⁵⁾이라며 암살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이승만에게 있어서 여순사건은 반대세력을 물리치고 최대의 정적인 김구까지도 궁지에 몰아넣을 '호재'였던 것이다.

이미 해방정국에서도 보여줬듯이 이승만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세우는 최

10) 서중석, 앞의 책, 154쪽.

11) 김철범, 『한국전쟁과 미국』, 평민사, 1995, 172쪽.

12)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995, 169쪽.

13) 『國務會議錄』 제53회, 1949년 5월 27일.

14) 서중석, 앞의 책, 168쪽.

15) 안두희, 「나는 왜 백범선생을 죽여야 했다」, 『弑逆의 苦悶』, 학예사, 1955 (박명림, 앞의 책, 470쪽에서 재인용).

대 이슈는 ‘반공’이었다. 권력다툼 때문에 결별했던 우익정당 한민당도 이 점에선 이승만과 이해를 같이 했다. 군 내부에 숙군 선풍이 불었다. 11월 2일에는 대구6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숙군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줬을 뿐이다.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다(12월 1일 공포). 전날인 11월 19일 국회는 주한미군 계속주둔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¹⁶⁾ 정치권은 ‘친일파 정국’, ‘통일 정국’에서 급속히 ‘반공 정국’으로 변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일제 치안유지법의 재판이다’, ‘이 법률을 발포하고 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등 소장파 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피를 한 포기 뽑다 보면 나라이 다칠 때도 있다. 그렇다고 피를 안 뽑을 수 있느냐’는 논리에 밀렸다.¹⁷⁾

국가보안법이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소위 ‘국회프락치사건’을 통해 곧 현실로 나타났다. 이 법에 의한 상징적인 희생양은 소장파 의원들로서 그동안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에 앞장섰고 국가보안법을 반대했던 의원들이었다.¹⁸⁾ ‘국회프락치사건’은 경찰에 의한 반민특위 피습사건, 김구 암살사건과 함께 모두 1949년 6월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6월 말 미군이 철수했다.

② 미국의 대한정책

2차대전 종전 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1947년 3월 12일 발표된 이른바 ‘트루만 독트린’을 계기로 큰 전환점을 맞는다. 사회주의 봉쇄정책을 천명한 트루만 독트린은 2차대전 종식 후 급속히 진행된 동원해제와 전쟁경제 해체과정에서 미국이 겪어야 했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미소 냉전’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됐다. 냉전이 시작될 때 오히려 미군철수가 추진됐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는데, 이는 미국의 소련봉쇄정책이 유럽에 집중됐고 한반도는 부차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곧 주한미군 장기 주둔을 주장하는 미 국무부와 조기 철수를 주장하는 군부(국방부, 육군부 등) 간에 지루한 논쟁이 시작됐다.¹⁹⁾ 미 국무부는 이데올로기

16) 서중석, 앞의 책, 154쪽.

17) 박명림, 앞의 책, 434쪽.

18) 박명림, 앞의 책, 464~465쪽.

격전장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소 대결에서 패배해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위신문제였다. 따라서 미군의 장기주둔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군부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 또 2차대전의 동원체제 해제로 인한 병력감소와 군비삭감으로 더 이상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일본에 있던 맥아더의 극동사령부도 군부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런 논쟁 속에서도 미국의 고민은 남한에 ‘공산주의 방벽’을 구축한다는 과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철수해야 하는 문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있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미 국무부와 군부 간의 논쟁의 결과는 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결정됐다. 의견 절충을 벌인 끝에 양자간 타협안으로서 대한정책의 최종지침서 격인 ‘NSC-8’과 ‘NSC-8/2’가 발표됐다. 미군의 ‘철수일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1948년 4월 8일=미 대통령, ‘NSC-8’을 승인함에 따라 1948년 12월 말까지 미군을 철수키로 잠정 결정
- △ 1948년 9월 15일=주한미군, 비밀리에 철수 시작
- △ 1948년 9월 19일=소련, UN결의에 따라 북한주둔 소련군을 연말까지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
- △ 1948년 11월 12일=미국 특사 무초, 여순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혼란이 극에 달했다면서 미군철수를 연기토록 요청
- △ 1948년 12월 12일=UN총회, 대한민국을 승인하면서 미·소 양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
- △ 1948년 12월 17일=미 국무부, 12월 말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키로 결정한 ‘NSC-8’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
- △ 1948년 12월 25일=소련, 북한 주둔군을 완전 철수했다고 발표
- △ 1949년 3월 23일=미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1949년 6월 말까지 연기한 대한정책지침서 ‘NSC-8/2’를 승인
- △ 1949년 6월 29일=주한미군, 군사고문단을 남긴 채 철수완료

이상의 일지를 살펴볼 때, 우선 남한 내의 혼란이 주한미군 철수 연기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또 1948년 12월 말까지 철수키로 결정한 ‘NSC-8’에 대해 국

19)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미국 대한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김철범의 『한국전쟁과 미국』(평민사, 1990)을 참조.

무부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철수 시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벌어지던 시점에 제주도에서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48년 11월께에 이르러 미국 내 철수논쟁의 핵심은 ‘과연 남한정부가 공산주의의 방벽이 될 만큼 자생력을 갖췄느냐’는 문제였다. 국무부를 설득해야 하는 군부 역시 무조건 철수를 주장하던 초기와는 달리 남한정부의 자생력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한편 미국이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앞두고 소련의 공세에 대비해 작성한 문건을 보면, 미국이 5·10선거를 보이콧한 제주도사건에 대해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미국은 이 문건에서 남한의 5·10선거와 북한의 8·25선거와 관련해 유엔총회에서 소련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예상문제를 7가지로 정리했다. 즉 ① 북한선거는 남북한 전국에서 실시된 유일한 선거인데, 미국과 남한당국의 탄압으로 지하선거화 됐다 ② 인민의 모든 지형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부분들이 선거에 참여했다 ③ 북한 선거는 남한 선거와 달리 위협과 유혈사태가 없었으나, 남한은 제주도의 선거반대로 국회의원 2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④ 남한 사람 대부분은 5·10선거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자본가와 친일파만 자신들의 권위 유지를 위해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 선거에 참여했다 ⑤ 북한 선거는 등록 유권자의 97.97%가 투표했으나, 남한은 77.48%만이 투표했다 ⑥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는 남한의 대표자 360명이 참여하고 있다 ⑦ 남북한의 모든 핵심적인 자리가 채워져 있다는 것이 미국이 예상한 소련 측의 공세였다.²⁰⁾ 결국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되기는 했으나, 그동안 미국은 이같은 소련의 공세에 노심초사했던 것이다.

2) 미군의 지휘·통제

①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지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갖게 되었다. 이는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인 하지(John R. Hodge) 장군 사이에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

20) Enclosures to Despatch No. 51 from Seoul, Korea, October 22, 1948.

정'에 따른 것이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제2조, (중략) 미군철수의 완료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을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과견대를 포함함)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합의한다.²¹⁾

이와 같이 협정은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물론, 미군 주둔에 필요한 기지와 시설의 지배권을 계속 갖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 미군에게 귀속된 것이다. 로버츠 고문단장은 이 사실을 이범석 국방장관에게 분명히 주지시켰고, 때문에 이범석은 1948년 10월 28일 국회 보고를 통해 국방장관인 자신조차도 군의 작전 지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략) 군정을 이양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군대가 아니면 공동안전보장의 필요성에 의지해서 이 군에 대한 조치는 마음대로 그렇게 용이하게 다른 행정부분처럼 되는 것이 아니며 장비를 완전히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중략) 이 국방장관은 군사행정의 주체이고 아직 상정되지 않은 국군조직법입니다마는 오직 군□에 대한 것을 안다는 것 뿐입니다.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도까지 지시한다... 부대의 이름과 군의 문제를 가지고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작전 지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후략)²²⁾

한국군을 지휘·통제할 주한미군의 핵심으로는 임시군사고문단(PMAG)이 전면에서 나서게 되었다. 임시군사고문단은 1948년 8월 15일 일반명령 제31호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고문단 단장으로는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이 임명됐다.²³⁾ 로버츠는 이미 1948년 5월 20일부터 미군정 통위부 고문관으로 복무하던 중 새롭게 임시군사

2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編, 『國防條約集 제1집』, 1981, 34~36쪽.

22) 『國會速記錄』 제1회 제90호, 1948년 10월 28일.

23) 安貞愛, 『駐韓美軍事顧問團에 관한 研究』(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70쪽.

고문단 단장 직을 맡게 된 것이다.²⁴⁾ 제주도의 고문관으로는 버제스(F. V. Burgess) 대위가 임명돼 왔다.²⁵⁾

당시 50대 중반인 로버츠는 미국 육사 출신으로 1·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으며 용맹을 떨쳤는데 전쟁이 끝나자 진급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한국 주둔을 자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⁶⁾ 로버츠 준장은 통위부 고문관 시절 제주도 주둔군이 9연대에서 11연대로 교체될 때 11연대 부연대장으로 송요찬을 선정해 제주에 파견한 장본인이었다. 이 때 로버츠는 후에 9연대장으로서 무모한 강경진압작전을 벌인 송요찬에 대해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제주 주둔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에게 소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군을 총지휘하던 하지 장군이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 체결 직후인 8월 27일 한국을 떠나고 대신 콜터(John B. Coulter) 장군이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 24군단장으로 부임했는데²⁷⁾, 미군 철수가 진행됨에 따라 콜터 장군이 지휘하던 24군단이 1949년 1월 15일 부대 해체를 위해 일본으로 떠난 후 로버츠가 주한미군사령관까지 겸임하게 된다.²⁸⁾ 로버츠는 또한 24군단이 철수하는 가운데 편성된 제5 전투연대의 지휘권도 장악하였다.²⁹⁾ 고문단은 1948년 8월께 100명 수준이던 것이 1948년 말경에는 241명으로 늘어났다³⁰⁾.

한국군에 대한 임시군사고문단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나타나 있듯이 그 시절의 한국군은 조직·훈련·무장은 물론 작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미군 고문관에 의해 통제받았던 것이다. 임시군사고문단 요원 가운데 한국군 총사령관 고문을 지낸 하우스만(James H. Hausman) 대위는 회고록에서 정부 수립 후부터 자신을 포함해 이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총참모장, 로버츠 고문단장 등

24) “Extension of Notes Data on Korean Security Forces for Mr. Kenneth C. Royall, Secretary of the Army, Section A, Korean Army, Annex 1, History of the Korean Constabulary,” February 7, 1949,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Entry 154, Box 603.

25) “Major and Minor Matters Concerning Korean Constabulary,” August 10,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26)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앞의 책, 165~166쪽.

27) 韓鎔源, 앞의 책, 167쪽.

28) 韓鎔源, 앞의 책, 166~168쪽.

29) 安貞愛, 앞의 논문, 72쪽.

30) 韓鎔源, 앞의 책, 167쪽.

6명이 상시 참여하는 군사안전위원회가 매주 열렸다고 증언했다.³¹⁾ 여순사건은 고문단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로버츠 단장은 하우스만 외에도 풀러(Fuller) 대령 등 8명의 고위급 고문관을 현지에 파견해 사건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³²⁾

② 미군사고문단의 활동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었다. 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1948년 9월 29일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한국 국방경비대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으며, 경비대의 작전에 관한 모든 명령은 발표되기 전에 해당 미 고문관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작전통제권의 주체와 그 영향력에 대해 분명히 했다.³³⁾ 이는 이범석 총리 겸 국방장관이 1948년 10월 28일 국회 보고를 통해 자신도 군의 작전 지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작전통제권은 단지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이었다. 10월 9일 로버츠 고문단장은 광주 제5여단 고문관 트리드웰(Treadwell) 대위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최근 제주도 작전에 있어서 강조할 점은 미군 고문관들이 사전에 바로잡았어야 했던 결함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제주도 작전은 통상 통위부 본부의 통제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작전은, 한 부대장의 의견에 의하면, 전적으로 한국인의 책임 하에 있다. 현재 계획된 작전의 지원과 전개는 미국인들의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적절한 지휘계통에 따라 한국인들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9연대의 현재 작전에 대한 모든 전술·병참 지원은 5여단에 위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5여단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군 고문관들이 한국인들의 지휘계통을 통해 즉각적인 수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³⁴⁾

31)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앞의 책, 164쪽.

32) 韓鎔原, 앞의 책, 168쪽 ;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앞의 책, 171~186쪽에 당시 상황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

33) “Letter from Roberts to Lee Bum Suk,” September 29,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34) “American Advisor Capacity in the 5th Brigade,” October 9, 1948, *ibid.*

위의 보고서는 '제주도 작전에 있어 결함이 노출됐으므로 미군의 노출을 가급적 줄인 상태에서 한국인 지휘계통(5여단)을 통해 즉각적인 수정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앞서 10월 6일 제주도 주둔 59군정중대장 노엘(Edgar A. Noel) 소령은 로버츠 고문단장에게 공문을 보내 "무전기, 무기, 탄약의 즉각적인 선적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³⁵⁾

이와 같은 제주 주둔 미군 부대장의 요청과 로버츠 고문단장이 광주 5여단의 미 고문관에게 보낸 지시는 즉각 현실화됐다. 바로 10월 11일 광주 제5여단장 김삼겸 대령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된 것이다.

로버츠 고문단장은 제주도작전에 관한 모든 상황을 제주도에 파견한 고문관 버제스 대위를 통해 보고 받아 이를 다시 매주 정기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고했으며, 이범석 총리나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군 작전에 관해 일일이 관여했다.

특히 로버츠 고문단장은 CIA, 송요찬 9연대장, 서북청년회를 주목했고 이들을 강경진압작전의 핵심으로 활용했다. 로버츠 고문단장은 1948년 11월 8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CIA는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³⁶⁾ 로버츠 고문단장은 11월 15일자 보고서에서도 "CIA의 활동이 우수하다"고 칭찬하면서 "한국군 3개 대대를 주로 서북청년회 단원으로 충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³⁷⁾ 로버츠는 또한 이승만 대통령, 이범석 국방장관, 채병덕 참모총장 등에게 보낸 12월 18일자 서신에서도 강경작전을 펼치고 있는 송요찬에 대해 "송요찬 중령은 섬 주민들의 당초의 적대적인 태도를 우호적·협조적인 태도로 바꾸는 데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하였다"고 거듭 칭찬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신문과 방송 그리고 대통령의 성명에 의하여 크게 일반에 알려져야 한다"고 권고했다.³⁸⁾ 로버츠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채병덕 참모총장은 12월 21일 즉각 답신을 보내 "담화를 통해 송요찬의 활동을 소개토록 할 것이며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도록 추천할 것"이라며 로버츠의 권고에 대해 화답했다. 채병덕은 또한 이 답신에서 송요찬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로버츠에게 약속하기도 했다.³⁹⁾ 여기서 'CIA의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로버츠 고문단장은

35) "Incoming Message," October 6, 1948, *ibid.*, Box 1.

36) "Weekly Activities of PMAG," November 8, 1948, *ibid.*, Box 4.

37) "Weekly Activities of PMAG," November 15, 1948, *ibid.*

38) "Operation on Cheju Do," December 18, 1948, *ibid.*

39) "From Supreme C/S to Chief, PMAG," December 21, 1948, *ibid.*

무차별 강경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는 송요찬 9연대장을 칭찬하거나, 미군 스스로 '과격한 반공주의자'로 인식하고 있는 서북청년회를 군에 대거 투입함으로써 가혹한 작전을 조장했던 것이다.

또한 로버츠 고문단장은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법도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한국군 지휘관들조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자, 12월 1일 국방부 참모총장에게 계엄령에 관한 문서를 보내 계엄령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⁴⁰⁾

한편 로버츠 고문단장은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제주도에서 죽어갔다. 그들의 대부분은 게릴라의 공격으로 살해당했으며, 약간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군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고문관 리드(John P. Reed) 대위의 보고내용을 첨부해 1949년 2월 7일 미 육군부장관 로얄(Kenneth C. Royall)에게 보고하기도 했다.⁴¹⁾ 비록 한국군에 의한 살해도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대부분 게릴라의 공격으로 살해당했다'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었다.

한편 로버츠 고문단장은 미국 본토의 군 수뇌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 사실화하며 철수를 추진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만일 미군이 사라진다면 즉시 북한이 남한을 흡수 또는 공격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수에 반대하기도 했다.⁴²⁾

로버츠 준장은 미 24군단이 1949년 1월 15일 부대 해체를 위해 일본으로 떠나자 주한미군사령관까지 겸임하게 된다. 로버츠 준장은 1949년 3월 11일 미 대사관 드럼라이트(Everett Drumright) 참사관에게 "제주도에 CIA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⁴³⁾

40) "Martial Law," December 1, 1948, *ibid.*

41) "Extension of notes Data on Korean Security Forces for Mr. Kenneth C. Royall, Secretary of the Army, Section A, Korean Army, Annex 3, G-2," February 7, 1949,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Entry 154, Box 603.

42) "Letter from Roberts to Wedemeyer," March 25, 1949,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8.

43) "Conditions on Cheju Island," March 11, 1949, Enclosure No. 1 to Despatch No. 145 dated March 14, 1949 from American Mission in Korea, RG 263: Record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Entry: Murphy Papers: The Murphy Collection on International Communism, 1917-1958, Korea, Box 69.

로버츠 고문단장은 육군부 기획작전국장인 볼트(Charles L. Bolte) 소장에게 미군이 철수한 후의 고문단 존재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서 “한국군은 미국인 대신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고문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한 결과 점점 그 결실이 맺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 군인들은 똑똑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아무런 사심없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것처럼) 이기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돈과 승진, 전리품이나 그 이상의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얻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명령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한국 군인들은 우리가 그들을 훈련하는 목적이 미국인이 피를 흘리는 대신 피를 흘리고, 미국을 위하여 쓰는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⁴⁴⁾

③ 괴선박출현설 유포

1948년 10월 경부터 집중적으로 터져나온 이른바 ‘괴선박 출현설’ 혹은 ‘소련 잠수함 출현설’은 강경작전을 합리화시키는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설은 미군의 보고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고 국내 언론을 통해 널리 유포됐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은 동족상잔에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무력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려는 데에 반대하고 있었다. 더욱이 제주도를 시찰하고 온 중앙 인사들의 발언은 토벌당국을 더욱 난처하게 했다. 박근영(朴根榮) 검찰관은 “원인은 경찰관의 제주도민에 대한 그릇된 행동에서 일어난 것”⁴⁵⁾이라고 말했고, 이인(李仁) 검찰총장은 “악질관리 행동이 큰 원인”⁴⁶⁾이라면서 “100명의 경찰관을 보내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유능한 자를 보내어 민심수습을 하는 것이 낫다”⁴⁷⁾고 지적했다.

7월 18일에는 한독당 등 22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여 ‘제주도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 제주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다.⁴⁸⁾ 8월 20일을 전후해 응원경찰 800명

44) “Letter from Roberts to Bolte,” August 19, 1949,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8.

45) 『서울신문』, 1948년 6월 15일.

46) 『大東新聞』, 1948년 6월 16일.

47) 『自由新聞』, 1948년 6월 16일.

48)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24일.

가량이 제주에 증파되자 한 언론은 “무력방법으로서는 도리어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통된 견해가 되고 있다”⁴⁹⁾며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9월 6일에는 12개 정당·단체들이 합동으로 “동족상잔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⁵⁰⁾ 이처럼 여론은 대규모 유혈사태를 걱정하면서 무력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무력진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이미 남과 북에 각각 서로에게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 있을 때에 ‘인민공화국 깃발이 매달린 괴잠수함’이 출현했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중앙 언론들은 1948년 10월 8일 제주해상에서 잠수함을 발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는데, 그 출처는 아래의 미군 보고였다.

1948년 10월 8일 오후 5시 10분, 미군 커리어 비행기 조종사는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48분 지점에서 잠수함 1대를 발견했다. 붉은 바탕에 별 하나가 그려진 깃발을 단 그 잠수함은 10~12노트 속도로 동진하고 있었다. 정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배가 미국이나 영국 것은 아니다.⁵¹⁾

잠수함 발견 당일 긴급히 보고한 이 미군 정보보고서는 잠수함의 국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붉은 바탕에 별 하나가 그려진 깃발’을 언급함으로써 소련 혹은 북한의 잠수함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며칠 후 이 사건은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해군 고위간부인 김성삼(金省三) 대령의 말을 인용해 “지난 8일 상오 9시경 제주도 근해에서 미군 비행기가 정체 모를 잠수함을 발견한 바 있었고 동일 정오에도 제주도 북방 8마일 해면에 잠수함이 출몰하였으나 국적은 자세하지 않다”⁵²⁾고 보도했다. 말은 갈수록 불어나기 시작해 다음날 보도에는 ‘붉은 바탕에 별 하나가 그려진 깃발’이 어느새 ‘인민공화국기’로 변해 있었다.

제주도 미국 민사청장 ‘노우웰’ 소좌는 10월 8일 상오 11시 50분경 성산포 전면 5마일 해상에서 모국 잠수함 1척이 부유(浮游) 중임을 정찰기로 비행 중 발견하였고

49) 『朝鮮中央日報』, 1948년 9월 1일.

50) 『朝鮮中央日報』, 1948년 9월 7일.

51)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85, October 8, 1948.

52) 『東亞日報』, 1948년 10월 13일.

또 동일 하오 1시경 역시 동 20마일 해상에서 부산 방면으로 항행 중인 잠수함 1척을 발견하였는데 괴잠수함의 번호는 'C 53'이며 함미(艦尾)에는 인민공화국기가 달려 있는 것을 기상(機上)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⁵³⁾

이 기록들만으로는 '괴잠수함 출현설'의 사실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괴선박 출현설이 이 때 외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4·3 전개과정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시점이면 으레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 처음으로 괴선박 출현설이 나온 것은 1948년 7월 11일이다. 미군보고서는 "붉은 깃발을 단 북한선박 1척이 제주도 부근에서 해안경비선에 의해 나포됐다"⁵⁴⁾고 긴급히 보고했다. 그러나 이틀후 "나포한 선박은 늦쇠를 시장에 팔기 위해 가던 중"⁵⁵⁾이라고 정정보고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한달여 후인 8월 17일 또다시 괴선박 출현설이 불거져 나왔다. 이번에는 아예 괴선박의 정체를 '소련선박'으로 못박았다. 미군은 발견 당일 'CIC(방첩대) 긴급보고'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

8월 17일 새벽 4시 제주도 해안을 벗어나 순찰하던 해안경비대 경비선 '광주'는 5백톤급 소련선박을 발견했다. 그 소련선박은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갑판에 설치된 기관총으로 경비선을 향해 발사했다. 보고된 피해나 사상자는 없다 (F-6).⁵⁶⁾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군은 이 보고서에서 '소련선박' '기관총 발사'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서도 스스로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F-6'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안경비대에서 나온 첩보 수준의 보고였지만 며칠 후 언론에는 같은 내용이 이렇게 보도됐다.

17일 새벽 4시경 본도 한림면 비양도 해상을 초계 중이던 해안경비대 경비정은 부근 해상에서 정체 모를 괴선 한 척을 발견하고 즉시 정지를 명하였는데 그 괴선은 도리어 2정의 기관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경비정으로 돌진하고자 하다가 북방으로 달

53) 『서울신문』 1948년 10월 14일.

5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82, July 12, 1948.

5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84, July 14, 1948.

5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13, August 17, 1948.

아나 버렸다 한다. 경비정은 즉시 기지로 연락하고 기지에서 미군 측에도 통보가 되어 미군에서는 김포비행장으로 가서 연락을 하는 등 비상조치를 하였다 하며 급거 출동한 미군비행기는 장시간 근해를 탐색한 듯 하나 그 후 소식은 불명하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전기 괴선은 청백 2색기를 단 쾌속 주정으로 백색에는 두 개의 붉은 별이 그려있었다 한다.⁵⁷⁾

이처럼 괴선박 출현설은 미군 보고서에서 출발했고, 이를 받아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크게 유포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건 발생 후 미군은 비행기 몇 대를 경비대에 대여하여 뼈라를 산포하였다 하며, 바다에는 세계 제일을 자타 공인하는 미해군이 해상과 상공을 경비하고 있는 만큼 외부에서의 공급은 치안 당사자 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⁵⁸⁾며 괴선박 출현설이 낭설임을 지적했지만, 북한 혹은 소련의 괴선박이 출현했다는 보도는 강경진압작전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즉 괴선박 출현설이 나온 직후인 1948년 8월 25일 제주비상경비사령부는 단시일 내 사태의 전면적 결말을 짓기 위해 ‘최대의 토벌전이 있으리라’고 예고하면서 이같은 강경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4가지를 들었는데 그 첫번째 이유로 “제주도 근해에 괴선박이 출현한 것”⁵⁹⁾을 꼽았다. 앞서 언급한 ‘10월 8일 잠수함 출현설’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 달 만에 또다시 터져 나온 것이며, 이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가 창설되기 사흘 전의 일이었다.

괴선박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괴전투기가 출현했다는 설도 나왔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던 날, 한 미군 보고서는 이렇게 보고했다.

편대를 이룬 정체불명의 전투기 6대와 4개의 엔진을 가진 폭격기 한 대가 제주도 상공에서 관측되었다. 전투기들은 1만 피트 고도에서 편대 대형을 깨뜨리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비행하였다. 남한 국방경비대 조종사가 연락기를 가지고 탈주하여 북한으로 향해 갔다.⁶⁰⁾

미군은 열흘 후 이 정체불명의 전투기가 ‘미군 비행기’라고 정정보고⁶¹⁾함으로써

57) 『漢城日報』 1948년 8월 21일 ; 『서울신문』, 1948년 8월 21일.

58) 洪漢杓, 『動亂의 濟州島 이모저모』, 『新天地』, 1948년 8월호, 110쪽.

59) 『서울신문』, 1948년 9월 3일.

60) “Intelligence Summary,” No. 2262, November 17, 1948, RG-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reel 651, MacArthur Memorial Library, Virginia, U. S. A.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지만, 소련·북한선박 출현설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1949년 1월 4일 제주 주둔 2연대장 함병선(咸炳善) 중령은 계엄령 해제조치가 작전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 주도록 경비대사령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함병선은 계엄령 재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가했다.

소련표시를 한 3천톤급 선박 2척이 제주도 삼양리 약 5마일 지점에서 한국인 해안경비대에 의해 1월 3일 오후2시 발견됐다. 해안경비정이 이를 추격했으나 공해상이기 때문에 정지시킬수 없었다. 미확인 선박은 4일 오후2시 30분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는데 부산을 향해 가고 있었다. <논평>한국군은 이 선박이 제주도 유격대를 지원하기 위한 북으로부터의 물자를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는 전에도 한국군에서 나온 바 있지만 불확실하다.⁶²⁾

미군 측의 ‘불확실하다’는 논평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동아일보』가 같은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여론화됐다.⁶³⁾ 한편 소련은 소련잠수함 출현설이 그치지 않자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모스크바 19일 발 AFP합동】 소련 해군기관지 라니프르트는 18일 소련잠수함이 제주도 근해에 출몰한 일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한정부 대변인의 최근 성명은 허위이며 남한정부는 2개월 전에 공포하여 작년 12월에 해제하기로 된 제주도의 계엄령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미군은 상금(尙金)도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는 미 독점자본가들의 한국에 관한 계획과 일치되는 것이다”⁶⁴⁾

소련선박 출현설은 마지막 작전기인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유재홍) 설치에 때맞춰 또다시 이어졌다. 1949년 3월 10일 제주시찰에 나섰던 이범석(李範奭) 총리와 신성모(申性模) 내무부장관은 마무리 진압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소련선박이 출현하고 있으며 북한선박이 나타나 한라산 폭도와 화광(火光) 신호를 교환하고 있다”⁶⁵⁾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61) Ibid.

6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29, January 5, 1949.

63) 『東亞日報』 1949년 1월 6일.

64) 『東光新聞』, 1949년 1월 22일.

이처럼 ‘괴선박 출현설’은 강경진압작전을 펼치는 시점에 앞서 꼭 터져나왔고, 실제로 대규모 유혈사태의 구실로 작용했다. 그런데 미군은 계속되는 괴선박 출현설이 불확실한 첩보나 소문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무장대가 대부분 궤멸됨으로써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던 1949년 4월경에 가서야 다음과 같이 이를 확인·정정하는 보고를 했다.

일부에서는 게릴라들이 본토로부터 또는 북한으로부터 병참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러한 보고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국 해군정의 지속적인 순찰과 공중정찰 및 해안마을에 대한 경찰의 빈틈없는 방어는 외부 지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⁶⁶⁾

무장대가 거의 궤멸돼 사건이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괴선박 출현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미군의 입장을 뒷받침하듯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孫元一) 소장은 1949년 4월 14일 기자들과 만나 “제주도 근해에 외국선이 출몰한다는 낭설은 소련선박이 우리를 원조하고 있다는 공산도배들의 모략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도 연해 4마일 밖에서 소련선박이 항해하는 것이 있으나 이는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소련선박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항로를 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⁶⁷⁾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 해안봉쇄를 맡고 있던 해군 제3특무정대 사령관은 “항간에 소련 잠수함 출몰설이 있으나 제주도는 매일 파도가 세어 우리 소형 정대는 ‘마스도’만 보이기 때문에 일반이 이를 착각 오인하고 낭설을 유포하고 있어 민심수습에 영향이 있다”⁶⁸⁾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 지역에서 계속 터져나오던 괴선박 출현설은 사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서야 ‘근거없는 낭설’임이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강경진압작전의 중요한 빌미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강경작전에 대한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작의 의혹이 있다. 10월 8일 괴선박 출현설이 나온 직후인 10월 11일에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된 것도 이런 의혹을 더해준다.

65) 『朝鮮日報』, 1949년 3월 17일 ; 『서울신문』, 1949년 3월 17일.

6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67) 『京鄉新聞』, 1949년 4월 15일.

68) 『京鄉新聞』, 1949년 5월 17일.

3) 제주도경비사령부 창설

① 군사력·경찰력 강화

1948년 9월에 접어들자 한동안의 소강상태를 깨고 사태가 악화될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미 전국 각 경찰관구에서 차출된 응원경찰대 800명이 8월 29일 제주에 들어온데 이어⁶⁹⁾, 또다시 대규모의 응원경찰이 증파됐다. 그동안 무장대는 '8·25 지하선거' 준비와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차 김달삼 등 핵심지도부가 제주를 떠남에 따라 공세를 늦췄고, 토벌대 또한 정부 수립을 앞둔 데다가 우기(雨期)로 인해 진압작전이 지연됨으로써 소강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다시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9월 초 김봉호 제주경찰감찰청장을 통해 구체화됐다.

【제주 발 조선】 금반 청장회의 참석차 상경하였다가 귀임한 제주경찰감찰청장 김봉호 씨가 말한 바에 의하면 목하 제주도 사태 수습을 위하여 ○○○명의 응원대가 내도중이라고 한다. 이는 종래에 보던 단순한 증원이 아니고 단시일간에 사태의 전면적 결말을 짓기 위함이며 씨가 상경하였을 때는 단 군정장관을 비롯한 중앙권위 측에서 미리 계획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사건 초기에 있어서는 현재 수도경찰청원인 500명에 300명을 증가시킨 800명의 경찰력으로 점진적 수습을 계획하였으나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까닭에 누차 응원대를 파견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사태는 이로 인하여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또다시 악화될 기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 한다.⁷⁰⁾

김봉호 청장은 이어 △제주도 근해에 괴선박이 출몰한 사실 △무장대의 재출현 △한림지서장이 살해당한 사실 △무장대 지도자 김달삼이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회의에 참석해 제주상황을 보고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객관적 정세'에 비추어 중앙에서 제주사건에 대해 강경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괴선박 출현설'은 근거가 불분명한 첩보 수준의 것이었다. 무장대의 재출현이나 한림지서장 살해사건도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해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를 떠난 것은 오히려 사태가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더구나 평화적으로

69) 『朝鮮中央日報』, 1948년 9월 1일.

70) 『서울신문』, 1948년 9월 3일.

사태를 해결하라는 여론에 따라 경찰감찰청장을 제주출신으로 바꾼 이래 소강상태가 지속돼 평화적 해결이 기대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일간에 사태의 전면적 결말’을 짓기 위해 응원경찰대가 대거 내도 중이라는 소식은 의아함과 두려움을 함께 불러일으켰다. 이에 한 언론은 “다시금 겨레끼리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될 새로운 화근이란 대체 과연 무엇일까. 단지 위에 말한 ‘객관 정세’만으로 골육상쟁의 불가피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라며 강경으로 치닫는 진압당국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⁷¹⁾

제주도에 대한 대규모 진압작전은 김봉호 청장이 “딘 군정장관을 비롯한 중앙 권위 측에서 미리 계획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던 것처럼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순간부터 정해진 것이었다. 한 학자는 남한정부 수립 직후 전개된 미군과 정부의 강경진압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이제 어느 한쪽 내부의 저항은 단순히 그것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한쪽과 연계되어 자신을 붕괴시키려는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남한의 경우 그것은 그 체제를 출범시킨 미국과 정부에게 모두 적용되었다. 더욱이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의 출현은 그 저항이 아무리 정당한 것일지라도(예컨대 부정, 부패, 탄압, 착취에 대한 저항일지라도) 그러한 저항들은 모두 적대적인 상대방과 연계된 붕괴음모라고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도구까지 갖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진압세력의 정당성, 또는 옳고 그름을 떠나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원임에 틀림없었다.(중략)

제주도에서의 진압은 미군과 정부군에게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소련·북한과 연계된 공산주의자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질 수 있었으며, 그러한 명분은 얼마든지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진압해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⁷²⁾

이제 남한정부에게 제주도사태는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고,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게는 냉전 초기 자신들이 설정하려는 세계질서에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했다. 실제로 심상치 않은 징후는 이미 남한 단독정부 수립 직후인 8월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앙당국에서 일대 소탕전 방침을 정하고 응원대를 속속 제주도에 증파했기 때문이다.

8월 25일 비상경비사령부⁷³⁾의 ‘최대의 토벌전이 있으리라’는 포고문⁷⁴⁾에 이어 8

71) 『朝鮮日報』, 1948년 9월 3일.

72) 朴明林, 「濟州島 4·3民衆抗爭에 관한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8, 143~144쪽.

월 28일 수도권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800명이 제주를 향해 서울역을 출발했다.⁷⁵⁾ 그러던 차에 경찰청장회의 참석차 상경했다가 귀임한 제주경찰감찰청장 김봉호가 “몇 천명의 무장응원대가 내도 중에 있어 결정적인 토벌전이 벌어질 기세”라고 중앙의 소식을 전해 왔던 것이다.⁷⁶⁾ 8월 30일에는 제주도 제9연대를 예하에 두고 있는 광주 제5여단 참모장 오덕준(吳德峻) 중령이 여단장을 대리하여 “사태를 조속히 해결코자 내도 순시”했다.⁷⁷⁾ 그동안의 소강상태는 향후 다가올 대규모 진압작전의 준비기간이었고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것이었다.

강경진압작전은 10월 들어 전격적으로 단행된 제주경찰감찰청장의 교체와 제주도 경비사령부의 창설로 보다 구체화됐다. 중앙정부는 제주도 출신으로 그동안 온건책을 지향해 온 김봉호 경찰청장을 10월 5일자로 사퇴시키고 그 후임에 평남 출신인 경무부 공안과장 홍순봉(洪淳鳳)을 발령했다.⁷⁸⁾

이는 주요 관리들을 제주출신으로 등용해 흥흥한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중앙의 방침이 변경됐음을 의미했다. 제주도 미국공보원장이었던 알버트 필립슨이 “제주도 소요 원인은 악질경찰의 폭행 때문이다. 그러나 김봉호 경찰청장 부임 후는 그런 일은 없다”⁷⁹⁾고 했을 정도로 김봉호 청장의 온건책이 민심 수습에 큰 역할을 해오던 터여서 그의 경질은 강경책을 택하겠다는 상징적 인사였다.

홍순봉 신임 청장에 이어 제주도민들에게는 극도의 갈등 상대였던 서북청년회도 대거 들어왔다. 서청을 지원하며 강공책을 채택했던 홍 청장은 10월 6일자로 부임한 이래 이듬해인 1949년 7월 28일까지 10개월간 최대의 유혈사태 한복판에 서게 된다.⁸⁰⁾

경비대총사령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6월 1일부로 부산 제3여단 예하 부대였던 제주도 제9연대가 광주 제5여단 소속으로

73) ‘제주비상경비사령부’는 ‘4·3’ 발발 직후인 1948년 4월 5일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조직된 경찰의 조직이다. 반면에 비슷한 명칭인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 1948년 10월 11일 창설)나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유재홍 대령, 1949년 3월 2일 창설)는 군대 조직이다.

74) 『서울신문』, 1948년 9월 3일.

75) 『東亞日報』, 1948년 8월 29일.

76) 『朝鮮日報』, 1948년 9월 3일.

77) 『東亞日報』, 1948년 9월 7일.

78) 『朝鮮日報』, 1948년 10월 6일.

79) 『서울신문』, 1948년 9월 26일.

80) 濟州道警察局, 『濟州警察史』, 1990, 489쪽.

변경되었기 때문에⁸¹⁾, 사령관에는 광주주둔 제5여단장 김상겸(金相謙) 대령이 임명됐다. 부사령관에는 제9연대장인 송요찬(宋堯讚) 소령을 임명했다. 진압사령관이 연대장급에서 여단장급으로 격상된 것이다. 김상겸 대령은 당시 65세의 노장으로서 1920년대 러시아군 중좌와 폴란드군 대좌를 지냈고 해방 후에는 운수경찰학교장(총경)과 경비대 총참모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였다.⁸²⁾

제주도경비사령관 김상겸 대령에게는 제9연대와 부산에서 온 제5연대 1개 대대, 대구에서 온 제6연대 1개 대대, 해군함정(해군 소령 최용남 부대), 제주경찰대(홍순봉 제주경찰청장)를 통합 지휘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경비대총사령부는 또한 제5여단 예하 부대인 여수 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증파하도록 명령했다.⁸³⁾

단순히 병력만 증강된 것이 아니었다. 향후 벌어질 대규모 유혈사태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병력 활용의 변화’라는 점에 있었다. 제9연대의 미군고문관이 작성한 8월 5일자 일일보고서는 “S-2가 재편되고 있음. 제주도 출신의 S-2 소속은 제1대대로 전출됐음. 정보업무에 대한 경찰, 경비대와 CIC 사이의 연락이 개선됐음”⁸⁴⁾이라고 적고 있다. 이 일일보고서 8월 12일자에는 “제주도 출신의 부대원들이 S-3에서 전출됨”⁸⁵⁾이라 적혀 있다. 진압전 때 가장 중요한 정보 부문(S-2)과 작전 부문(S-3)에서 제주출신들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주민들과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는 제주출신 군인들은 강경진압작전을 벌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해진 이 조치는 대량 살상으로 전개된 대토벌전을 예고했다.

한편 진압당국은 이에 앞서 제주와 육지간의 왕래를 차단했다. 이미 지난 7월 5일부로 폐지됐던 여행증명제가 8월 13일부터 부활돼 목포행 정기 연락선을 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⁸⁶⁾ 실제로 제주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2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제주도사건대책위원회가 ‘제주도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으나, 이들은 8월 28일 목포에 도착한 이후 목포항에서 끝내 승선이 거부돼 제주행이 좌절됐다.⁸⁷⁾ 제주도는 점점 고립무원의 섬이 되어갔다.

81)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1집, 1948년 6월 1일.

82) 韓鎔源, 『創軍』, 博英社, 1984, 97쪽.

83)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2집, 1948년 10월 11일.

84) Charles L. Wesolowsky, Advisor 9th Regiment, Korean Constabulary, Cheju-Do, Daily Report, August 5, 1948.

85) Ibid., August 12, 1948.

86) 『東光新聞』, 1948년 8월 25일.

87) 『朝鮮日報』, 1948년 9월 5일.

② 포고문 발표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한 지 6일만인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했다.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 침범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분자에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 지령을 봉지(奉持)하여 차등(此等)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수를 가하여 본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민족의 영화와 안전의 대업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군은 극렬자를 철저 숙청코자 하니 도민의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此)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⁸⁸⁾

이 포고문은 10월 5일 경찰청장 교체와 10월 11일의 제주도경비사령부 설치 등을 통해 내부의 체제를 정비한 진압당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강경진압작전을 벌인다는 신호탄이었다. 대외적으로 강경진압 방침을 천명한 것이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 포고문 속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대목들이 들어 있다. 우선 제주도의 지형상 진압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의 지점’은 한라산 등 산악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변을 제외한 중산간마을⁸⁹⁾ 전부가 해당된다. 따라서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의 통행금지란 결국 거주를 금지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었다. 중산간마을에서 사람이 눈에 띄기만 하면 ‘폭도배로 인정해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전시상황에서도 어려운 즉결심판권이 발동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미 고문관이었던 피쉬그룬드는 “9연대는 한라산 쪽을 향해서 내륙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으로 간주했다”고

88) 『朝鮮日報』, 1948년 10월 20일.

89) 제주의 마을은 ‘해변마을’과 ‘중산간마을’로 나뉜다. 행정에서 중산간이란 ‘표고 200m 등고선에서 표고 600m 등고선 사이의 지역’으로 정의된다(『제주도개발특별법』 제2조). 그런데 통상 해변에서 약 5km이상 떨어진 지역의 마을을 ‘중산간마을’이라고 부른다. 5km미만 지역의 마을이라 하더라도 해변을 따라 형성된 일주도로변의 마을보다 산쪽에 위치해 있으면 보통 ‘중산간마을’이라 한다.

증언했다.⁹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런 포고가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내려졌다는 대목이다. 통상 군에게 ‘최고 지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이나 군 수뇌부를 지목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최고 지령’의 발령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군의 강경진압 방침은 4·3발발 초기에 이미 가닥을 잡고 있었다. 4·3발발 직후 제9연대장으로서 무장대와 평화협상을 추진했던 김익렬 장군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군정장관 딘 장군의 정치고문이 제주도폭동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초토작전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거절하는 나에게 작전수행후 미국행 알선과 10만 달러의 돈을 주겠다고 유혹했다고 밝혔다.⁹¹⁾ 김익렬 연대장 시절에 9연대 정보참모였던 이윤락도 “CIC 소령이 김익렬 연대장과 나에게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지대를 적성(敵性) 지역으로 간주, 토벌하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다.⁹²⁾ 미 CIC 장교가 그 해 5월 김익렬 연대장에게 제안했던 작전이 5개월만에 실제 상황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제주해안은 포고문이 발표된 다음날인 10월 18일 즉각 봉쇄됐다. 해군은 7척의 함정과 수병 203명을 동원해 제주해안을 차단했다.⁹³⁾ 또한 여수 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가 제주도에 증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19일 제주에 파병될 예정이던 제14연대가 총부리를 돌려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강경작전은 더욱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여순사건’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당국이 강경작전을 벌이게 됐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그 이전인 10월 17일 송요찬 9연대장의 포고문을 통해 강경진압작전의 방침이 정해졌던 것이다. 여순사건은 강경진압작전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더욱 가속화시킨 계기였던 것이다.

한편 제5여단장으로서 제주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던 김상겸 대령은 사령관에 임명된 지 8일 만에 제5여단 예하 부대인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킴으

90) Harold Fischgrund(81세, 미국 버지니아, 당시 9연대 고문관, 2001. 10. 20 채록) 증언.

91) 金益烈, 실록유고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전예원, 1994, 312~313쪽).

92)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68쪽.

93) “Report on the Internal Insurrections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Lee Bum Suk,” December 14,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11 ; 『國會速記錄』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 『國際新聞』, 1948년 12월 9일.

로써 이에 대한 문책을 받아 파면되었다.⁹⁴⁾ 이에 따라 송요찬 9연대장은 김상겸 후임으로 제주도경비사령관까지 맡게 돼 제주경찰과 해군 함정까지 휘하에 두는 명실상부한 진압군의 총 책임자로 등장했다.

③ 서북청년회 등 동원

진압당국은 강경한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민간 사설단체들을 적극 활용했다. 사설 단체로는 서북청년회와 대동청년단이 전위에 서서 군·경 못지 않은 역할을 했다. 특히 가족이 무장대에게 희생당한 유족들을 경찰조직에 편입시킴으로써 보복행위를 조장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민보단을 구성케 하여 마을 경비를 맡겼고, 민보단원 중 청년들은 다시 특공대로 편성해 진압작전에 앞장세웠다. 학생 조직인 학련(學聯)도 진압작전에 활용했다.

그런데 이들 민간단체의 활용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도민들간 불신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등 큰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서북청년회는 4·3사건 발발 전부터 도민들과 갈등을 빚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까지 지목 받아 왔는데, 이승만과 미군은 강경작전을 앞두고 서북청년회를 아예 군·경에 편입시켰다.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대량 주민희생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었다. 서북청년회 위주로 경찰이 재편됐고, 군대에는 '서청중대'가 따로 편성됐다.

서청의 제주 입도는 크게 3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첫번째는 1947년 3·1사건 직후 전복출신 유해진 지사가 부임하면서 호위병 형식으로 서청단원을 활용한 것이 그 시초이다.⁹⁵⁾ 4·3 발발 직전까지 들어온 서청은 대략 5백~7백명 선으로 추산된다. 이때까지는 일정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 등을 강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서청에 의한 백색테러도 종종 발생, 민심을 자극시켰다. 이는 4·3 발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두번째의 집단 입도는 4·3 발발 직후의 일이다. 당시 중앙의 서청 단장이었던 문봉제의 증언에 의하면 경무부장 조병옥의 요청에 의해 제주도사태 진압요원으로 서청 단원 5백명을 급파했다는 것이다. 그 서청 단원들이 제주도내 각 지역에 분산돼 기존단원들과 함께 진압전에 참가했다.

9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對非正規戰史』, 1988, 61쪽.

95)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 전예원, 1994, 434~437쪽.

세번째는 바로 여순사건 직후의 상황으로 1948년 11·12월 두달 사이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단원들이 경찰이나 경비대원으로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진압작전의 한복판에 선 것이다. 이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서청관’이 되고 말았다. 이들이 전율할 학살극을 벌여도 이를 제재할 기관은 없다시피했다. 이와 관련 미 고문관이었던 피쉬그룬드는 “미국에서 경찰관은 그 지역 출신이 하는데 왜 북한에서 탈출한 서북청년회가 제주도에서 경찰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⁹⁶⁾ 그러나 서청의 배후에 바로 미군과 이승만이 있었다. 미군이 제주도 서청을 후원했다는 근거는 미군 스스로의 정보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⁹⁷⁾ 또한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10월 24일 ‘임시경찰(temporary policemen)’로서 활동하는 서청 단원들이 조천면 신흥리 사건 현장에 파견돼 게릴라를 쫓아냈다”⁹⁸⁾고 기록, 이때 이미 경찰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다. 또 다른 미군 정보문서에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은밀한 모병(the secret induction)’을 통해 서청 단원들을 제주도에 파견했다는 내용도 있다.⁹⁹⁾

이승만도 서청을 군인과 경찰로 전격 교체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런 사실은 미군 기밀문서와 서청 단원의 증언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미 정보보고서는 ‘청년단, 군대와 경찰을 강화시키다’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최근 대통령(이승만)과 내무부장관(신성모)의 합의에 따라 서북청년 단원들이 한국군에 6,500명, 국립경찰에 1,700명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은 남한 전역에 있는 9개 경비대와 각 경찰청에 배정될 것이다. 모든 단체들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서북청년회는 경찰에서 단원 20명당 경사 1명, 50명당 경위 1명, 2백명당 경감 1명 등의 비율로 경사급과 간부급 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합의돼 있다.¹⁰⁰⁾

서청 단원으로 1948년 12월 19일 동료 250명과 함께 제주에 도착, 경찰의 길을 걸었던 박형요는 이승만 대통령이 서청 총회에 직접 참석, 모병을 역설하는 연설을 듣고 제주도까지 오게 됐다고 증언했다.

96) Harold Fischgrund(81세, 미국 버지니아, 당시 9연대 고문관, 2001. 10. 20 채록) 증언.
 9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51, October 1, 1948.
 9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77, November 1, 1948.
 9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23, December 28, 1948.
 10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05, December 6, 1948.

난 이북에서 전기 재료상을 하고 있다가 김일성이 싫어서 1948년 5월 월남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청 문화부 일원으로 활동했지요. 1948년 12월 10일로 기억합니다. 명동에 있던 서울시 공관에서 서북청년회 총회가 열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제주도 4·3사태와 여수·순천 반란사태로 전국이 초비상사태로 돌입했다. 이 국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사상이 투철한 서북청년회를 전국 각지에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서청 금호동분회 총회가 열렸는데, 분회장인 임승현(林承鉉, 바로 경사로 임용됐으며 곧이어 경위로 승진해 표선지서 주임·제주도경찰청 정보주임 역임) 씨가 ‘여수 순천 제주사태로 대통령 각하께서 서청원을 파견하라는 지시가 있으니 모두 지원하자’고 제안, 거기에 응하게 된 것이지요. 12월 19일 동료 25명과 함께 제주에 도착했는데 글개나 아는 25명은 경찰이 됐고, 나머지 225명은 군인이 됐지요. 그때는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주에 와보니 우리보다 앞서 경찰 복장을 한 ‘2백명 부대’가 와 있더군요. 서청 단원 중엔 군인으로 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¹⁰¹⁾

박형요는 이어 “이 대통령의 허락없이 어느 누가 재판도 없이 민간인들을 마구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공산당을 없애야 한다는 명분 하나를 앞세워 현지 사정도 잘 모르는 대원들을 대거 투입하는 등 이승만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서청 대원들이 경비대나 경찰에 대거 투입된 것은 단순한 병력 증강만이 아니라 제주출신 군인과 경찰들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진압당국이 제주출신 군경은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제주도민으로서 온정을 베풀 수 있으므로 강경작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1948년 11월 서청 단원들이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하고 대거 제주도에 내려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청 단원들이 심상치 않은 방법으로 공권력에 무더기 투입되는 과정에는 당시 최고통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까지 개입했다. 그해 11월 중순께 제주경찰에 서청 단원 200명이 1차로 배속되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경찰로 급조됐다. 또 군인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대원들이 제주도에 내려 보내졌다. 200명의 서청 경찰대는 이른바 ‘2백명 부대’로 불렸다. 이 부대의 일원으로 제주도에 내려왔던 김시훈은 모병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01) 朴亨堯(서청 출신 경찰관)의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④, 1997, 전역원, 151쪽).

나는 서청 산하단체인 '진용동지회'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진남포와 용강군에서 월남한 사람으로 구성된 까닭에 머릿글자를 따 진용동지회라 불렀지요. 하루는 사무실에 갔더니 친구들이 너도나도 경찰관이 되어 제주도에 간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이야기인즉 '제주도 4·3사건을 진압하려면 사상이 분명해야 하는데 서울에서도 누가 좌익이고 누가 우익인지 구별키 어렵다. 그러니 사상적으로 믿을만한 사람들은 서청 뿐이니 서청에서 경찰관을 선발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나도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으로 경찰시험을 보았습니다. 당시 경찰전문학교는 서울 광화문 앞에 있었는데, 거기서 간단한 면접시험을 봤지요. 경찰관이 돼서 취조하려면 최소한 '가나다라'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글자깨나 아는 사람은 경찰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군인 이등병이 된 것입니다. 이때 경찰합격자가 2백명이 되어서 '2백명 부대'라고 불렀지요. 군인으로 된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¹⁰²⁾

김시훈은 당시 서청을 모집할 때 제주도에서 평안남도 출신의 제주도경찰국장 홍순봉과 제주도 서청 단장 김재능(金在能)이 직접 서울에 올라와 지원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2백명 부대'는 경찰전문학교에 입교, 14일간의 단기교육을 마친 후 경찰복을 입고 제주도에 내려왔다. 김시훈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한 사흘쯤 교육을 받고 있노라니, 진용동지회 회장이던 정용철(경위로 특채되어 삼양지서 주임이 됨)이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지금 김재능 씨가 제주도로 돌아가는데 그를 그냥 따라 가도 경찰관으로 임명해 준다고 하더라'면서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 11명이 서울서 3일만 교육받고 김재능 단장을 따라 제주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오니 다시 경찰교육을 받아야 한다기에 교육을 받았지요. 그 때문에 서울서 14일동안 제대로 교육받은 189명은 '제주경찰 9기'가 됐고, 우리 11명은 '제주경찰 10기'가 됐지요.¹⁰³⁾

그러나 『제주경찰사』에는 '제주경찰 9기는 1948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교육을 받은 58명'¹⁰⁴⁾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서청 '2백명부대'는 이와는 별도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군 정보문서에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록물이 있다.

102) 金時訓(79세, 표선면 가시리, 서청출신 경찰, 2002. 2. 26 채록) 증언.

103) 金時訓 증언.

104) 濟州道警察局, 『濟州警察史』, 1990, 182쪽.

최근 서북청년회의 자원자 620명이 서울경찰의 감독 아래 12일간의 훈련을 받았다. 그 훈련을 마친 후에 그들은 정규경찰의 자격으로 여수, 제주도, 강원도에 발령되었다. 현재 계획은 이 요원들이 이들 소요발생 지역에서 한달간의 임무를 마친 후 서울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찰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다른 청년단체는 자신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 대동청년단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청년동맹은 자기들 조직이 경찰에 협력할 기회를 가졌으나 자원자는 아직 없다고 한다.¹⁰⁵⁾

서청은 경찰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도 변신했다. 송요찬 연대장은 서청 단원들을 군에 편입시켜 이른바 '특별중대'를 만들었다. 계급장도 없는 '군인 아닌 군인'이었지만 9연대 헌병이나 장교들도 간섭하지 못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 송요찬이 그러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제주에 왔다가 특별중대원이 된 노윤복은 이렇게 증언했다.

난 1948년 7월 계몽연극단 20명과 함께 제주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극을 보러오지 않아 흐지부지될 때에 송요찬 연대장이 우리를 무장시켜 특별중대를 만들었습니다. 1개 중대는 4개 소대 8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중대장은 대위 계급장을 달았지만 우린 없었습니다. 송요찬 연대장은 9연대 헌병과 장교들을 집합시킨 가운데 "특별중대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라. 만약 손대면 너희들 죽도록 터질 줄 알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지요. 우리는 한림, 월정, 성산 등지를 순회하며 주둔했습니다. 9연대가 철수하고 2연대가 주둔하자 월정리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특별중대원 88명은 그대로 2연대 11중대 소속이 됐습니다. 총살집행을 할 때는 "희망자 나오라"고 해서 갔는데, 한번은 한림면 귀덕리에서 총살이 있을 때 내가 일부러 빛나가게 쏘아 한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신분도 모르고 그냥 남의 말 듣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쏘지 않으면 내가 의심을 받으니까 일부러 빛나가게 쏜 것이지요.¹⁰⁶⁾

제주도의 1948년 11월과 12월은 그야말로 피비린내나는 유혈현장이었다. 미군 정보문서에서 표현한 '임무(duty)'란 무엇을 말함인가. 미군 지휘부가 제주도 유혈 사태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사실은 이런 기밀문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승만 정부에서 서청 대원들을 대거 경찰이나 군인으로 내려보내면서 월급이나

10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1, December 13, 1948.

106) 노윤복(78세,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당시 서청 특별중대원, 2002. 3. 28 채록) 증언.

보급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현지 조달하라는 식으로 내뿜 것도 문제였다. 역시 서청출신 경찰관으로 '2백명 부대'에 이어 제주에 왔던 박형요는 "일선 지사로 배치될 때, 홍순봉 경찰국장이 연설하기를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식량이나 월급을 보낼 수 없다. 가서 마을에서 얻어먹으며 진압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물론 일선 지서마다 경찰후원회가 조직돼 이들을 뒷바라지했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민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조차 이념문제를 흑백논리로 각인시킨 점이다. 즉 '제주도민들은 사상적으로 믿을 수 없다. 대부분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사상이 건전한 서청이 이곳을 진압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입시킨 것이 사태를 더욱 유혈극으로 몰고 간 한 동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 서청 중앙본부의 문봉제 단장은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해명성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어떤 지방에서 좌익이 날뛰니 와 달라고 하면 서북청년회를 파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지방의 정치적 라이벌끼리 저 사람이 공산당원이다 하면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을 처단케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린들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¹⁰⁷⁾

이승만과 미군의 후원 아래 제주 사태의 최일선에 서게 된 서북청년회는 군·경 모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중산간마을인 애월면 광령리 주민이던 고치돈은 하귀리 개수동으로 소개했다가 그곳에서의 무차별 총살에 놀라 다시 제주읍 외도리로 소개했다. 고치돈은 외도리 민보단장이 처가 쪽 친척이라 그의 배경으로 양민증도 비교적 빨리 얻었고, 특공대에 편입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고치돈은 특공대 시절 목격했던 서북청년회 출신 경찰들의 잔혹했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내가 외도지서 특공대 생활을 할 때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 이윤도(李允道)의 학살극은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날 지서에서는 소위 '도피자가족'을 지사로 끌고 가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총살터로 끌려갈 적엔 이미 기진맥진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됐지요. 이윤도는 특공대원에게 그들을 찌르라고 강요하다가 스스로 칼을 꺼내더니 한 명씩 등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눈이 튀어나오며 꼬

107) 北韓研究所, 『北韓』 1989년 4월호, 127쪽.

꾸라져 죽었습니다. 그때 약 80명이 희생됐는데 여자가 더 많았지요. 여자들 중에는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윤도는 젖먹이가 죽은 엄마 앞에서 바둥거리자 칼로 아기를 찢러 위로 치켜들며 위세를 보였습니다. 도평리 아기들이 그때 죽었지요.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며칠간 밥도 못 먹었습니다.¹⁰⁸⁾

1948년 11월 9일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金斗鉉, 53)이 서청의 손에 고문치사당한 사건도 서청의 위세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제주도 행정 2인자가 보급문제에 불만을 품은 서청들에게 희생된 것이었다. 특히 서청 제주단장 김재능은 자기 사무실에서 심한 매질을 한 끝에 김두현 총무국장이 실신하자,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밖으로 내버려 끝내 절명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군은 이렇게 보고했다.

11월 9일, 서북청년 단원들이 제주도 총무국장인 김두현을 타살했다.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서청 단원들은, 김두현이 알려진 공산주의자이며 자기들은 단지 그를 조사하려 했을 뿐이지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A-1).¹⁰⁹⁾

이런 불법적인 살인행위에 대해서 당시 절대적인 장악력이 있던 미군 정보기관이나 9연대 수사기관의 조치는 미온적이었다. ‘공산주의자를 처형했다’고 주장하면 살인행위도 용납되는 세상이었다. 이같은 태도는 경찰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국에서는 살인에 가담한 서청 단원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군에 입대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총무국장 살해사건 때 경찰이 범인을 잡아 구금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홍순봉 경찰청장도 김재능 서청 단장에게 양보했어요. 범인들을 9연대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살인범들이 처벌 받기는커녕 군인이 된 것입니다.¹¹⁰⁾

108) 高致敦(애월읍 광령리, 당시 외도지서 특공대원)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42회, 1999년 4월 23일).

10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87, November 13, 1948.

110) 金浩謙(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당시 서귀포경찰서장)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④, 163쪽).

또한 전국통일학생총연맹(全國統一學生總聯盟·이하 학련으로 약칭)에서도 제주도 계몽대를 과격한 바 있거니와¹¹¹⁾ 제주 학련은 진압당국과의 연계 아래 준(準)진압조직이 되었다.

민보단(民保團)은 가장 중요한 경찰의 외곽조직이 되었다. 당초엔 민보단의 전신인 향보단이 있었다. 향보단은 1948년 4월 16일 딘 군정장관에 의해 발표됐다. 향보단 조직은 ①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 남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향보단원이 된다 ②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남녀는 각기 향토방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③ 향보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지역 주민의 의연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¹¹²⁾

향보단은 당면한 5·10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선거반대 소요를 경찰병력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조병옥 경무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직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제 식민주의 시절의 경방단이나 국민의용대 같은 성격의 강압에 의한 조직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향보단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해당 지역의 순찰업무를 계속하다가 잇따라 말썽이 일어나자 48년 5월 22일 해산되었다.

그런데 6월 초 제주 상황을 취재한 한 언론은 “경찰의 보호 아래 향보단이 조직되어 철야 경계를 하고 있다”¹¹³⁾고 밝히고 있어 제주에서는 향보단이 더 지속됐던 것 같다. 향보단이 민보단으로 부활한 것은 1948년 10월 말경으로 보인다. 수도청장은 1948년 10월 29일자 담화를 통해 이미 민보단 조직이 완료됐음을 밝혔다.¹¹⁴⁾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민보단이 구성됐다. 한 민보단 관련자료는 제주도 민보단이 창설된 것은 1948년 8월 11일로 밝히고 있다. 이때 도단위 민보단 조직이 창설되고 이어 각 지역별로 민보단을 조직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보단 안덕면 화순리 대대장을 지낸 지연부(池連富)가 생전에 기록했던 ‘화순리 민보단의 경비활동’¹¹⁵⁾은 당시 민보단의 조직과 활동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안덕면 화순리 민보단이 조직된 것은 48년 8월의 일이었다. 부서로는 단장(장행규) 아래 부단장(지희운·양문일), 총무(지봉일), 자경부(지연부), 동원부(안창현), 연락부(이정만), 부녀부(오테정)를 두었다.

111) 『독립신문』, 1948년 11월 18일.

112) 『濟州新報』, 1948년 4월 18일.

113) 『朝鮮中央日報』, 1948년 6월 6일.

114) 『漢城日報』, 1948년 11월 2일.

115)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③, 전예원, 1995, 268~270쪽에 수록.

얼마 지나지 않아 자경부가 자경대로 개칭되면서 경비조직이 강화되었다. 즉 마을 경비 임무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에게 모두 부여되었다. 자경대 조직도 대대·중대·소대·분대의 편제로 재편되었다. 대대장은 자경대장인 지연부가 맡고 제1중대장에 강문팔, 제2중대장에 양태희가 선임되었다. 민보단이 처음 한 것은 지서 주변을 돌담으로 방호벽을 쌓은 일이었다. 주민들을 동원, 높이 5m, 폭 3·5m의 축성을 한 뒤 15m 간격으로 망루 7개소를 설치했다.

그해 겨울에는 화순 마을을 산 쪽과 차단하기 위해 마을 주변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 성담은 마을 동쪽 속칭 도살장에서 시작하여 국민학교 북쪽 신사터~서동네 속칭 메마르~마을 남쪽 속칭 동태동산에 이르기까지 장장 1,500m에 달했다. 이 성은 폭 2·5m, 높이 3·5m로 쌓여졌으며 50m간격으로 망루 17개소가 설치되었다. 성을 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어린 고사리 손에서 늙은 할머니 손까지 모두 동원되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이 어려운 노역을 감내해야 했다.

민보단 단원들은 밤낮으로 죽창과 철창을 들고 보초를 섰다. 화순 민보단의 경우 제1중대가 하루 경비를 서면, 다음날에는 제2중대가 보초를 서는 격일 근무제를 채택했다. 날마다 다른 암호가 하달되었다. 암호는 바로 생명선이었다. 한밤중에 깜빡 암호를 잊고 다니다가는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몰랐다.

화순 민보단의 야간 경비근무조에는 매일 177명이 동원되었다. 배치인원별로 보면 △지서 망루 및 정문 6개소 근무에 30명 △마을 망루 17개소와 문 5개소, 중요요소 3개소 근무에 125명 △망루대 경비 순찰원 8명 △전주 순찰원 6명 △근무확인 순찰원 8명 등이다. 주간 경비근무조에는 50명이 배치되는데 △마을 5개 문에 30명 △마을 외곽경비 12명 △지서 경비근무 4명 △본부사무실 대기조 4명 등이다. 결국 한 마을을 지키면서 날마다 주·야간에 동원되는 인원이 222명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지서에는 비상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이렌이 울리면 민보단원들은 수분 내로 집결해야 한다. 이 비상훈련에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곤욕을 치른다. 민보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역주민들이 담당해야 했다. 부녀자들은 토벌대나 경비조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분주했다.

민보단 단원들은 군경 진압작전에 곧잘 동원되었다. 그들은 죽창 등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무기를 들고 군인이나 경찰관보다 앞서 최전방으로 내몰렸다. 단원들 가

운대는 진압작전에 참여했다가, 혹은 보초를 서다가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다. 어느 경우에는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오해를 받거나 근무가 태만하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의 총탄에 사살되는 일도 있었다.

49년 4월 1일자로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에서 작성한 기밀문서 「제주도 보고」에는 제주도 민보단 인원이 5만 명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기밀문서는 “제주도 남자들은 농사일보다는 보초를 서거나 토벌전에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정보분석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경을 지원하고 있는 민보단은 섬주민 중 성인남자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조악한 죽창으로 무장하고 있다. 대략 5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들은 밭에서 농사짓기보다는 보초를 서거나 게릴라 토벌전에 나가는 걸 더 좋아한다. 군과의 합동작전 때 일선에 즉각 투입되었기 때문에 민간인 전투원 중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¹¹⁶⁾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상당수가 입산했거나 다른 곳으로 피신했기 때문이다. 민보단을 구성할 청년들이 절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남녀노소 모두에게 민보단의 이름 아래 향토방위의 의무가 부여되었다. 65세의 노인과 아낙네들까지 게릴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벽을 쌓는 일에서부터 밤에는 교대로 성을 지키는 보초의 일을 감내해야 했다.

민보단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은 다시 ‘특공대’라는 이름 아래 재편돼 군·경이 전개하는 진압작전에 ‘총알받이’로 동원됐다. 특공대원은 대략 3,000명 선으로 추정된다. 서울 주재 AP특과원은 “창을 가진 약 3,000명의 시민이 소탕전에 있어서 정부를 원조하고 있다”¹¹⁷⁾고 보도했다. 이는 채병덕 참모총장이 1948년 11월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제주도 작전에 있어서 소수의 국군장병에 인솔된 보조 무장도민 3,000명”¹¹⁸⁾ 운운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11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117) 『大東新聞』, 1948년 12월 17일.

118) 『大東新聞』, 1948년 12월 31일.

나. 계엄령 선포

1) 계엄령의 실태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계엄령이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던 미군의 직접 지시를 받아 선포된 것인지, 사후 추인을 받은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계엄령 시행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계엄령은 주민 희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전의 희생이 비교적 젊은 남자로 한정된 반면, 계엄령이 선포된 1948년 11월 중순경부터 벌어진 강경진압작전 때에는 서너살 난 어린이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총살당했기 때문이다. 계엄령은 제주도민들에게 재판절차도 없이 수많은 인명이 즉결처형된 근거로 인식돼 왔다.

이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도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조차도 ‘계엄령’이란 용어만은 빠뜨리지 않고 증언했다. 남편이, 혹은 아들과 손자가 군경토벌대에게 무고하게 희생당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말미에는 꼭 “그 때는 계엄령 시절이라서…” 또는 “계엄령 때문에…”라며 ‘시국 탓’을 했다. 이들에게 계엄령이란 체념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가족이 죽은 ‘이유’였다. 심지어 촌로들은 계엄령을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무소불위의 제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엄령은 당시는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그 실체가 매우 불분명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4·3’ 관련 기록들이 계엄령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계엄령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언제 선포됐다가 해제됐는지, 심지어 과연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인지 혼동만을 줄뿐이었다. 계엄령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선포됐다는 날짜 또한 제각각이다. 과연 계엄령은 언제 선포된 것이며, 계엄령이란 이름 아래 벌어진 강경한 진압작전은 정당한 것인지, 또한 계엄령은 합법적인 것인지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먼저 기존 자료에 나타난 계엄 선포일을 보면, 크게 ‘10월 8일 설’과 ‘11월 17일 설’(혹은 11월 16일), 그리고 ‘11월 21일 설’로 나뉜다. 계엄령의 주무 부서인 군 자료는 대부분 10월 8일로 기록하고 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대비정규전사』에는 “1948년 10월 8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¹¹⁹⁾고 간략히 적

혀 있다. 경찰자료인 『제주경찰사』 역시 “10월 8일 도 전역에 걸쳐 계엄령이 선포됐다”¹²⁰⁾라고 짚막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연감』, 『제주도지(상)』, 『대하실록 제주백년』 『광복제주 30년』 등과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마을 향토지에도 10월 8일로 기록돼 있다.¹²¹⁾ 학술 논문에도 『제주도지(상)』과 『광복제주 30년』을 각각 인용해 “10월 8일 당일로 도 전역에 걸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¹²²⁾고 쓰여 있다.

계엄해제 시기는 대체로 ‘1948년 12월 31일’로 일치한다. 국방부에서 펴낸 『한국전쟁사』는 계엄선포 시기는 밝히지 않은 채 “1948년 12월 31일 제주도지구의 계엄령이 해제되었다”¹²³⁾고 적고 있다. 『한국전쟁사』의 내용을 거의 옮겨 쓴 『대미정규전사』 등 대부분의 자료들 역시 12월 31일을 계엄해제일로 잡고 있다.¹²⁴⁾ 이상을 종합해 보면, ‘1948년 10월 8일 선포된 계엄령이 그해 12월 31일 해제됐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다만 어떤 근거에서인지 몰라도 마을지인 『김녕리 향토지』가 계엄선포일을 1948년 10월 1일로, 『제주연감』이 계엄해제일을 1949년 10월 12일로 기록한 것이 일부 눈에 띄는 편이다.¹²⁵⁾)

그러나 미국 측 자료와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보고서는 11월 17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⁶⁾ 정부에서는 1948년 12월 8일 열린 국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제주 계엄령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범석 국방장관은 1948년 11월 16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됐음을 밝혔다.¹²⁷⁾ 또 국내 언론은 계엄령이 11월 21일에 선포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¹²⁸⁾ 이처럼 기존자료에 나타난 계엄 선포일은 셋 또는 넷으로 나뉜다. 대부분 출처를 제

11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對非正規戰史』, 1988, 60쪽.

120) 濟州道警察局, 『濟州警察史』, 1990, 312쪽.

121) 『제주연감』, 제주연감사, 1969; 濟州道, 『濟州道誌(上)』, 1982, 622쪽; 姜龍三·李京洙,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1984, 640쪽; 夫萬根, 『光復濟州 30年』, 文潮社, 1975, 457쪽.

122) 梁漢權,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16쪽; 朴明林, 『濟州島 4·3民衆抗爭에 관한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8, 150쪽.

12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第1卷-解放과 建軍』, 1967, 445쪽.

12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對非正規戰史』, 1988, 65쪽; 宋孝淳, 『북괴도발 30년』, 북한연구소, 1978, 75쪽; 『光復30年史』, 세문사, 1977.

125) 朴修養, 『金寧里 郷土誌』, 1986, 270쪽; 『濟州年鑑』, 제주연감사, 1969.

12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56, February 5, 1949.

127) 『國會速記錄』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128) 『朝鮮日報』, 1948년 11월 30일.

시하지 않은 이런 기록들이 어떤 1차 사료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계엄령에 관한 문건을 좀더 찬찬히 살펴다보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날짜의 혼동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계엄령이 선포됐었는지조차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방대한 군 자료를 바탕으로 초창기 군의 역사를 기록한 『창군』에도 1948년 10월 22일 여순지구에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기록하면서도 제주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¹²⁹⁾ 군 기록이 꼼꼼히 정리된 『육군역사일지』도 마찬가지로 제주 계엄령에 관한 언급이 없다. 심지어 미군은 줄곧 제주 계엄령(martial law)에 관해 보고하다가 뒤늦게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바 없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2월 5일 김동성 한국 공보처장은 지난 10월 25일에 내려졌던 여순지역, 전남지방과 지리산지구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948년 11월 17일에 선포됐던 제주도지역에 대한 비상사태는 한달 전에 해제됐지만 그 효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는 38선 부근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비상사태가 선포될 거라는 어떠한 보도, 소문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논평〉 비상사태(the state of emergency)는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에 의해 계엄령(martial law)으로 불려져 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계엄령은 현 한국정부에 의해 선포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¹³⁰⁾

이와 같이 계엄령의 실체와 그 선포시기를 둘러싼 혼란은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는 아래의 대통령령 제31호를 통해 해소되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단기 4281년 11월 17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이범석(李範奭)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윤치영(尹致暎)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장택상(張澤相)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도연(金度演)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 인(李 仁)

129) 韓鎔源, 『創軍』, 博英社, 1984, 부록 「國防史 年代記」.

13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56, February 5, 1949.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안호상(安浩相)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조봉암(曹奉岩)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임영신(任永信)
 국무위원 사회부장관 전진한(錢鎭漢)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허 정(許 政)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윤석구(尹錫龜)
 국무위원 이윤영(李允榮)

대통령령 제31호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합위(合圍)지경으로 정하고 본령(本令)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¹³¹⁾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이 문서는 1948년 11월 17일자로 계엄을 선포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계엄 해제에 관한 문서는 ‘대통령령 제43호’로서 “제주도지구의 계엄은 단기 4281년 12월 31일로써 이를 해지한다”¹³²⁾고 적혀 있다. 이로써 계엄 선포 날짜에 관한 기록은 비록 ‘계엄령이 아닌 비상사태’라고 한정 짓기는 했지만 오직 미군 보고서만이 정확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그렇다면 왜 계엄령의 주무 부서인 군 자료에는 계엄령에 관한 기록이 아예 없거나 ‘10월 8일’이라는 엉뚱한 날짜가 기록돼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같은 언론사에서 불과 열흘 간격을 두고 보도된 아래의 두 기사는 당시의 혼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지음 항간에는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19일 국방부 보도과에서는 전연 무근지설이라고 다음과 같이 부정하였다. △국방부 보도과담(談)=이즈음 모든 신문을 비롯하여 항간에 떠도는 말과 같이 제주도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된 일은 없다. 각처에서 폭동이 일어나므로 군에서는 작전상 경계를 엄중히 한 것이 민간에 오해된 모양이다.¹³³⁾

지난 21일 도내 전역에 계엄령이 실시되고 뒤이어 23일에는 계엄령 포고 제1호로

131) 『官報』 제14호, 1948년 11월 17일.

132) 『官報』 제26호, 1948년 12월 31일.

133) 『朝鮮日報』, 1948년 11월 20일.

교통 제한, 우편 통신 신문 잡지 등 검열, 부락민 소개, 교육 기관에 대한 제한, 처소 별채 급 도로의 수리 보전 급 폭동에 관한 벌칙 등 7종목으로 세칙이 발표되었다(국방부 29일 檢閱濟).¹³⁴⁾

계엄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만 게재됐을 뿐, 이를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비밀리에 선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하지만 계엄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승만은 계엄사령관에 제주 주둔 제9연대장인 송요찬을 임명했지만 송요찬은 계엄령이 무엇인지 몰랐다. 송요찬 연대장 아래에서 군수참모를 지냈던 김정무도 “계엄령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지 못했다”고 증언했다.¹³⁵⁾ 이와 관련, ‘4·3’기간 동안 제주 경찰로 근무했던 김호겸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당시 계엄령은 법적 근거도 없는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계엄사령관인 송요찬조차도 계엄령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하루는 홍순봉 경찰청장과 함께 있는데 송요찬이 찾아왔어요. 우리 세 명은 일제 때 만주군과 일본군에서 같이 복무했고, 해방 후에도 함께 경찰전문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서로 잘 아는 사이였지요. 송요찬은 홍순봉에게 ‘위에서 계엄령을 내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계엄령이라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송요찬도 답답한 노릇이었지요. 또 송요찬은 무식한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홍순봉은 일제경찰로서 만주에서 근무할 때 조선인 중에서는 최고직책을 얻을 정도로 실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홍순봉이 계엄령이니, 포고령이니 하는 것들을 모두 대신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인다는 것은 계엄령이라고 해도 안되지요. 일제 때 만주에선 그런 게 있긴 했습니다. 특정지역을 설정해 무조건 발포하는 것이지요.¹³⁶⁾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계엄령은 1948년 11월 17일 선포됐고, 12월 31일 해제될 때까지 한달 보름간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왜 이승만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친 계엄령에 대해 언론에 숨길 정도로 비밀에 부쳤는지, 또한 계엄령을 집행할 계엄사령관조차 그 내용을 몰라 허둥댔는

134) 『朝鮮日報』, 1948년 11월 30일.

135) 金貞武(77세·서울시 종로구 부암동·당시 제9연대 군수참모, 준장 예편, 육사2기 동기회장. 2002. 9. 25. 채록)의 증언.

136) 金浩謙(서귀포경찰서장 역임)의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77~378쪽).

지, 더구나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군은 왜 뒤늦게 계엄령의 실체를 부인했는지 그 실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같은 의문은 최근 발굴된 한 미군 자료에 의해 풀렸다. 미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 준장은 1948년 12월 1일 국방부 참모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계엄령(martial law)에 관한 문서를 동봉한다. 이 문서가 귀하의 모든 지휘관들에 발표되어서 그들이 계엄령이 무엇인지, 언제 발표될 수 있는지, 누가 발표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영향이 무엇인지 숙지하도록 할 수 있다.¹³⁷⁾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된 지 14일만에 국방부 참모총장에게 보내진 이 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계엄령 선포 당시 국내에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엄령의 구체적 내용을 한국군 수뇌부조차 몰랐다는 점이다. 셋째, 미군이 보내준 문서를 통해 비로소 한국군이 계엄령의 내용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 자료만으로는 미군이 이승만에게 계엄령 선포를 직접 지시했는지, 사후에 추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미군이 보낸 계엄령에 관한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계엄령에 관한 문서를 동봉해 그 시행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과 계엄령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계엄이 해제된 지 한참 지난 후에 미군이 “비상사태(the state of emergency)는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에 의해 계엄령(martial law)으로 불려져 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계엄령은 현 한국정부에 의해 선포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한 것은 ‘계엄법 없는 계엄령’과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해 발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법성 논란

① 계엄령 재판

제헌헌법 제64조(계엄선포권)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137) “Martial Law,” December 1,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엄이 선포된 1948년 11월 17일 당시에는 해당 법률인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계엄법은 계엄 선포일은 물론이고 해제된 지 거의 1년이나 지난 후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법률 제69호로 제정 공포됐다.¹³⁸⁾

이 때문에 최근 계엄령이 과연 적법하게 선포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지난 1997년 『제민일보』는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제목 아래 “제주4·3 때 제주도민 대량 학살의 법적 근거로 알려진 계엄령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¹³⁹⁾

『제민일보』는 이같은 보도의 근거로써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지구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령 제31호’를 제시하면서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명시해 계엄선포를 법률에 위임했음에도 실제 계엄법이 제정된 1949년 11월 24일 보다 1년이나 앞서 계엄이 선포된 점을 강조했다 △제헌헌법 제99조에 ‘법률의 제정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들었으며 △비상사태(the state of emergency)가 계엄령(martial law)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한 당시 주한미군의 기밀문서를 제시했다. 『제민일보』는 또 당시 서귀포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김호겸의 증언을 통해 당시 제주도지구계엄사령관이던 송요찬 조차도 계엄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4·3계엄령은 적법한 것이며, 양민학살이 없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즉 △일제 하의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제 칙령에 따라 일본의 계엄령이 시행됐다는 점 △해방 후에는 미군정법령 제11호를 통해 폐지할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그 안에 계엄령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유효했다는 점 △미군정법령 제21호를 통해 해방 후 그동안 폐지된 것을 제외한 모든 법률 및 제 명령을 존속시켰으므로 계엄령 역시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제헌헌법(제100조)은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제헌헌법 이전의 현행법령, 즉 일제 법령 등 구법령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일제 때의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즉, 제주4·3사건 당시 비록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고 있던 일본의 계엄법에 의해 선포된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선포됐다’는 보도는 잘못이라는 주장이

138) 『官報』 號外, 1949. 11. 24.

139) 『제민일보』, 1997년 4월 1일.

었다.¹⁴⁰⁾ 이같은 주장 아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계엄령 재판’은 위와 같은 논쟁 속에서 2000년 7월 20일의 1심 판결과 12월 22일의 항소심 판결에 이어 2001년 4월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날 때까지 약 1년 8개월간 진행됐다. 대법원(재판장 이규홍 대법관)은 판결문¹⁴¹⁾에서 “계엄 선포를 전후한 시기에 군·경 토벌대에 의한 무장대의 진압과정에서 제주도 중산간마을이 초토화되었고, 무장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주민들이 재판절차도 없이 살상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며 ‘양민학살’을 인정했다.

그런데 4·3계엄령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계엄선포 행위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계엄은 실제로 제헌헌법에 따른 계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선포되었으며, 제헌국회에서도 여순반란사건과 관련하여 선포된 계엄의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 일제시대에 시행되던 계엄령이 이 사건 계엄 선포시까지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군정법령 및 제헌헌법의 각 해당조항에 대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고, 현재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계엄의 선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균형 있게 소개하지 않고 단정적인 판단을 한 흠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나름대로 진실 확인 작업을 거쳐 보도한 것인 이상, 피고가 전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은 4·3계엄령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계엄령 재판’을 전후해 김순태 교수(한국방송대 법학과)와 김창록 교수(부산대 법학과) 등 법학자들이 논문을 통해 4·3계엄령의 불법성 문제를 학문적으로 정리했다.¹⁴²⁾

140) ‘계엄령 재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⑤, 1998, 365~392쪽 참조.

14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7216 판결.

142) 김순태, 「제주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 김창록, 「1948년 헌법 제100조-4·3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법학연구』 제39권 제1호,

② 국회에서의 논란

살펴본 바와 같이 4·3계엄령의 불법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학계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런데 법학적인 문제를 떠나 과연 이승만이 일제의 계엄령을 근거로 4·3계엄령을 선포했느냐는 역사적인 문제가 남는다.

이는 계엄법 제정 이전과 그 이후에 선포된 계엄령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1949년 11월 24일 계엄법이 제정된 후에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엄법 제1조에 의하여 좌(左)와 여(如)히 계엄을 선포한다”¹⁴³⁾라고 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4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만일 4·3계엄령이 일제 계엄령을 법적 근거로 하여 선포한 것이라면 이것 역시 ‘(일본) 계엄령 ○조에 의하여 제주지구에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해야 했다. 그러나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4·3계엄령이나 이보다 20여일 앞서 선포된 여순지구 계엄령은 모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을 이에 공포한다”¹⁴⁴⁾라고 하였다.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의결’하고 ‘제정’한 것이다.

4·3계엄령이나 여순지구 계엄령이 실제로 일제 계엄령을 법적 근거로 하여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회속기록』이 보다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계엄령에 대한 국회에서의 첫 논의는 여순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25일 최초의 계엄령¹⁴⁵⁾이 내려진 직후인 1948년 10월 27일 조헌영(趙憲泳) 의원은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왜 국회에 정식보고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¹⁴⁶⁾ 이에 대해 이튿날 이범석 국방장관은 “지방사정으로 말하면 여수, 순천지구에 대통령령으로 사건을 용이(容易)히 처리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처리는 군부에서 하도록 하고 군경의 지휘를 군에서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¹⁴⁷⁾라며 계엄 선포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대 법학연구소, 1998.

143) 『官報』 제383호, 1950년 7월 8일.

144) 『官報』 제7호, 1948년 10월 25일 ; 『官報』 제10호, 1948년 11월 17일.

145) 대통령령 제13호로 발표된 여순지구 계엄령은 1948년 10월 25일 선포됐지만(『官報』 제10호, 1948. 10. 25.), 이미 그 이전에 현지사령관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 사실이 보도되는 등 ‘계엄령’이란 말들이 무분별하게 회자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득중의 「이승만정부의 여순사건 인식과 민중의 피해」, 『여순사건 자료집』(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을 참조.

146) 『國會速記錄』 제1회 제89호, 1948년 10월 27일.

계엄령에 관한 논의는 10월 30일에 이르러 더욱 심화됐다. 국방장관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한 의원들은 보다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조현영 의원과 김약수(金若水) 의원은 계엄령을 선포하고도 국회 승인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질책했다.¹⁴⁸⁾

조현영 의원과 김약수 의원이 국회의 승인절차라는 ‘사무상의 문제’를 지적한데 반해, 같은 날 유성갑(柳聖甲) 의원은 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에 관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다. 즉 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법이 아직 없다는 지적이었다.¹⁴⁹⁾ 이같은 지적은 사흘 후인 11월 2일에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이날 최국현(崔國鉉) 의원은 “이번에 계엄령이 발포되었는데 그 계엄령은 헌법 몇 조에 의지해서 발포했는지, 만약 57조인가 67조 거기에 의지했다고 하면 그것은 일본 천황이 하는 그런 계엄령밖에 안됩니다”라고 이인(李仁) 법무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당황한 이인 법무장관은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군사령관이 발동하는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였다.¹⁵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순지구 계엄령은 1948년 10월 25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다. 그리고 이 계엄령에 이인 법무장관 자신을 포함해 모든 국무위원들의 친필 서명까지 하였다. 더구나 이미 이범석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령으로 계엄이 선포됐다고 인정한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 법무장관은 계엄령이 ‘현지 군사령관’에 의해 선포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법무장관이기에 당황한 나머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자 김병회(金秉會) 의원은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현지 군사령관의 계엄령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김병회 의원이 헌법 64조를 거론하며 추궁하자, 이인 법무장관은 마침내 “이 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마는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계엄법이라는 것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시다”¹⁵¹⁾며 계엄법의 부재를 분명하게 인정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현지 사령관이 계엄법에 의해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한 앞선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그런데 이인 법무장관

147) 『國會速記錄』 제1회 제90호, 1948년 10월 28일.

148) 『國會速記錄』 제1회 제92호, 1948년 10월 30일.

149) 『國會速記錄』 제1회 제92호, 1948년 10월 30일.

150) 『國會速記錄』 제1회 제94호, 1948년 11월 2일.

151) 『國會速記錄』 제1회 제94호, 1948년 11월 2일.

은 뒤이어 또 한번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인 장관은 “계엄령은 급박한 때에 현지 군사령관이 하는 것이며, 행정권 정지나 사법권 귀속 없이 단지 동란을 방지하는 응급 조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¹⁵²⁾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계엄령’이 위헌임을 인식해 그 책임을 현지 군사령관에게 떠넘기고, 계엄령의 의미를 애써 축소한 것이다.

다. 중산간마을 초도화

1) 초도화의 배경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 창설과 11월 17일 계엄령 선포 등을 통해 강경작전의 준비작업을 완료한 진압군은 소개된 중산간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남녀 노소 구분 없이 총살하는 등 강경진압작전을 전개했다.

그런데 계엄령은 계엄사령관인 송요찬 조차 “계엄령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할 정도로 그 성격이 모호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인 법무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계엄령은 현지 군사령관이 발동하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이번 행정령이 발동한 것이라든지 그 외에 사법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엉뚱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혼란상은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당연한 현상이었다. 대통령령 제31호로 선포된 계엄령에는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지구를 합위지경으로 정하고 본령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는 막연한 표현 외에 그 어떤 규정도 없다. 계엄 선포 14일이 지난 후 미군이 계엄령의 내용에 관해 국방부 참모총장에게 알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계엄령이라는 이름 아래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그 내용조차 제대로 전달돼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명국가라면 계엄법에 80대 노인에서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비무장 민간인을

152) 『國會速記錄』 제1회 제94호, 1948년 11월 2일.

무차별 총살하라는 조항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제 때 일본군이나 만주군으로 복무했던 군인들에게 중국인 학살의 경험이 있을 뿐이었다. 1948년 9월 박진경 연대장 암살사건에 대한 군법회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한 언론은 ‘박진경 연대장이 무고한 양민을 다수 학살하였다’는 피고 병사의 진술과 관련, “중일전쟁 중 왜군이 비전투원인 중국 인민에게 야만적 학살을 무수히 감행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로 그 영향이 금후 중일 관계에 어떤 역사를 전개케 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거니와 더구나 국내사건에 있어서라”¹⁵³⁾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강경진압작전을 주도한 송요찬 제9연대장과 함병선 제2연대장은 모두 일제 지원병 준위 출신이었다.

그러나 설령 중국에서의 학살극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계엄령이라는 이름 아래 중산간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재판절차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동족을 총살한 것은 일선 군 지휘관이 임의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에 관해서는 국무회의록 등 정부문서에 잘 밝혀져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무회의록¹⁵⁴⁾은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수집됐다.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대통령)=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¹⁵⁵⁾

제주4·3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는 지시였다. 이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는 즉각 말단 검찰조직에까지 전달돼 구체적으로 실현됐다. 즉 1월 26일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고¹⁵⁶⁾, 검찰총장은 다음날인 1월 27일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지청장에게¹⁵⁷⁾, 2월 21일에는 각 검찰지청장에게까지¹⁵⁸⁾ 각각 전달됐다. 검찰

153) 『朝鮮日報』, 1948년 9월 9일.

154) 아쉽게도 정부기록보존소에는 1948년분 국무회의록은 남아 있지 않고, 1949년도 것부터 소장돼 있다.

155) 『國務會議錄』, 1949년 1월 21일.

156) 별지 법검비(法檢秘) 제439호(1949년 1월 26일) 「대통령 유시 통고에 관한 건」·총유(總諭) 제41호 「내무·법무 관계」, 『검찰예규에 관한 기록』.

총장은 이어 2월 23일에는 예하 각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그간 좌익사건 처리에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엄중 처단할 것을 지시했다.¹⁵⁹⁾

그런데 아무리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하더라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설령 전시라 할지라도 재판도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무차별 총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활용했다. 비록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아 계엄령의 효력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지만, 당시 계엄령은 군·경·민 모두에게 ‘군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범석 총리 겸 국방장관은 1948년 12월 8일 국회에서 “계엄령의 시행으로 급속도로 사태의 호전을 보고 있다”¹⁶⁰⁾고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엄령은 1948년 12월 31일부로 이미 해제된 터여서 1949년에 들어서서는 더 이상 계엄령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계엄령 해제 사실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2월 5일 김동성 한국 공보처장은 지난 10월 25일에 내려졌던 여순지역, 전남지방과 지리산지구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948년 11월 17일에 선포됐던 제주도지역에 대한 비상사태는 한달 전에 해제됐지만 그 효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¹⁶¹⁾

제주도 계엄령을 해제하면서도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은 당시 군간부의 증언 등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1949년 제주 주둔 제2연대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전부일(全富一)은 “계속 계엄령 상태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¹⁶²⁾ 심지어 1949년 7월부터 제주에 주둔하기 시작한 독립대대장 김용주(金龍周)는 “그 때 나는 제주도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¹⁶³⁾ 또한 계엄령이 해제된 후 제주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국회의원도 “내가 돌아올 적에 계엄령이

157) 대검서비(大檢庶秘) 제23호(1949년 1월 27일) 「대통령 유시 통고에 관한 건」, 『검찰예규에 관한 기록』.

158) 지검(地檢) 제18호(1949년 2월 21일) 「대통령 유시 통고에 관한 건」, 『검찰예규에 관한 기록』.

159) 대검비(大檢秘) 제114호(1949년 2월 23일) 「좌익사건 처리에 관한 건」, 『법무부 관계서류』.

160) 『國會速記錄』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16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56, February 5, 1949.

162) 全富一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당시 2연대 1대대장, 2002. 9. 24 채록) 증언.

163) 金龍周(45세, 당시 제1독립대대장, 1967. 2. 16 채록)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소장 『참전자 증언록』에 수록).

다시 실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¹⁶⁴⁾고 말할 정도로 ‘계엄 아닌 계엄’이 계속 실시됐던 것이다.

한편 ‘가혹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주4·3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는 강경진압작전이 미국과의 교감 속에서 벌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미·소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에 공산주의로부터의 방벽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1949년 5·10재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도록 진압작전을 전개하고 돌아온 경찰대에 게 이범석 총리는 환영사에서 “여러분의 공적으로 진압된 제주도의 완전 진압은 비단 대한민국에 대한 큰 충성일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을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방어하는데 큰 공적이 있는 것”¹⁶⁵⁾이라고 말했다. 제주사건 진압을 두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 공적’ 운운하는 것이 다소 과장되게 들리지만, 아래의 국무회의록은 이승만의 원조 요청을 고리로 한 미국의 대한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사항(대통령)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 = 미 상원의원의 발언 중 반공조건부 대한원조안 주장에 대하여 감사 사함(謝緘)을 외무장관이 보냄이 좋겠다.

보고사항(공보) 시사보고의 건=미국 하원 외교위(外交委)에서 1억 5,000만불 가결이나 반공(反共)조건부임”¹⁶⁶⁾

미·소 냉전이 제주4·3사건의 참혹함을 불러왔다는 것은 당시 언론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한 언론은 참화의 제주도를 소개한 후 “외국 기자들은 이 사태를 가리켜 가장 흥미롭거나 한 듯이 ‘마샬’과 ‘모로토프’의 시험장이니, 미소 각축장이니, 38선의 축쇄판이니 하고 이곳 제주도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실정을 붓끝으로만 이리 알 저리 알 한 사실도 있었다”면서 “(제주도는) 극동의 반공보루로써 새로운 시험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¹⁶⁷⁾ 또 다른 한 언론도 제주사태가 “대공투쟁의 전초기지로서 보다도 오히려 시험무대”¹⁶⁸⁾라고 분석했다.

164) 『朝鮮日報』, 1949년 1월 12일.

165) 『自由新聞』, 1949년 5월 19일.

166) 『國務會議錄』 제63회, 1949년 7월 1일.

167) 『朝鮮中央日報』, 1949년 9월 1일.

168) 『서울신문』, 1949년 9월 1일.

2) 언론통제·해안봉쇄

군은 강경작전을 벌이기에 앞서 언론을 통제하고 해안을 봉쇄함으로써 제주도를 고립시켰다. 이로써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무분별한 진압작전을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

제주 해안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0월 18일부터 이미 봉쇄된 상태였다. 해군이 7척의 함정과 수병 203명을 동원해 제주해안을 차단한 것이다.¹⁶⁹⁾ 이 때부터 제주도는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다.

한편 언론과 진압당국간의 갈등은 강경작전이 전개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제주신보 기자였던 김기오(金基五)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증언했다.

최천 감찰청장 시절인데, 하루는 경찰의 토벌지구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난 송요찬 연대장과 G-2(미군 정보참모부)에 있던 한국인 2세 캡틴 리와 함께 현장을 찾았지요. 그런데 소위 폭도라고 해서 처형된 사람 중에 놀랍게도 장님이 있었습니다. 난 즉시 그 내용을 기사화해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최천 감찰청장으로부터 “어떻게 민간과 경찰을 이간시키는 허위 기사를 실었느냐”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이북출신인 동태운 사찰주임이 “당신, 한라산 폭도와 무슨 관계야.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협박하며 날 유치장에 가렸습니다. 난 항의 끝에 풀려났지만 뒷날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외도지서의 응원경찰이 주민을 데려갔는데 그 주민이 시체가 되어 길바닥에 버려진 것입니다. 난 그 내용을 또 기사화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구수회의를 열어 날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애월국교와 제주농업학교 후배인 박운봉 경사가 날 걱정한 나머지 내게 몸조심하라며 언질을 썼습니다. 난 생명에 위협을 느껴 그날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게 1948년 7월경의 일입니다.¹⁷⁰⁾

김기오는 급히 제주를 빠져나가 화를 면했지만, 제주도내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신문인 제주신보에 대한 탄압은 계속됐다. 1948년 7월 22일 제주경찰청 특별수사대는 ‘구국투쟁위원회를 조직해 지하투쟁을 전개했다’는 혐의로 제주신보 기자를 검거

169) “Report on the Internal Insurrections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Lee Bum Suk,” December 14,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11 : 『國會速記錄』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 『國際新聞』, 1948년 12월 9일.

170) 金基五(79세,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당시 제주신보 기자, 2002. 2. 1 채록) 증언.

하였다. 검거된 기자는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지만 제주신보는 기사를 비롯한 종업원들의 검거사태로 인해 한동안 신문발행을 휴간할 수밖에 없었다.¹⁷¹⁾

그러나 제주사건에 관한 소식은 제주신보 뿐만 아니라 중앙의 여러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지고 있었다. 1948년 9월 15일에는 중앙의 여러 신문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제주 발 조선】 열 세살 밖에 안되는 소년을 소요민의 일원이라 하여 고문치사케 한 전율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읍 삼양리에 거주하는 진인수(13) 군은 산중 소요민으로 지목되어 지난 7일 그 동리에 있는 경찰지서로 붙들려가서 지서장 민용기(閔用基) 경사와 순경 2명에게 난타를 당하여 그 이튿날(8일) 새벽 1시경에 드디어 절명하였다 한다. 이 보고에 접한 제주검찰청에서는 검찰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시를 하게 하는 한편 즉시 활동을 개시하여 고문에 협력한 두 순경을 체포하고 재빨리 도망간 지서장의 행방을 엄탐 중이다.¹⁷²⁾

13살 소년이 고문치사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중앙일간지에 실리자 난처해진 진압당국은 더욱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1948년 10월경 제주읍내 언론인들이 줄줄이 군 부대로 끌려 들어갔다. 경향신문 제주지사장인 현인하(玄仁廈)는 학병출신으로 해방 후엔 경찰에도 잠시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1947년 12월경 제주에 지사를 개설해 주재기자까지 두었던 경향신문은 당시 제주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⁷³⁾ 한 증언자는 “현인하는 영어를 잘하는 인테리인데다 장사수완도 좋아서 경향신문이 아주 잘 팔렸다. 경향신문 일색이었다”¹⁷⁴⁾고 말했다. 또다른 증언자는 현인하가 끌려간 이유에 대해 “헌병대가 경향신문을 조사하려 하자 현인하는 막 야단을 쳐 쫓아냈다. 헌병대는 이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사태가 험악해지자 그를 끌고가 처형했다”¹⁷⁵⁾고 말했다. 뒤이어 서울신문 제주지사장인 이상희(李尙熹)가 끌려가 희생됐다.

무차별한 진압작전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1948년 11월에 이르러서는 아예 사전

171) 『朝鮮中央日報』, 1948년 8월 8일·11일·18일.

172) 『서울신문』·『朝鮮日報』·『朝鮮中央日報』·『漢城日報』, 1948년 9월 15일.

173) 『濟州新報』, 1947. 12. 6.

174) 崔吉斗(제주시 도평동, 당시 관제처 직원)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④, 1997, 165쪽 수록).

175) 姜淳現(제주시 용담2동, 당시 관제처 직원)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54쪽 수록).

검열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언론을 통제했다. 국방부가 11월 20일을 기해 군 작전과 군기(軍機)를 보호하고 보도의 정확성을 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 관계 기사의 사전 검열을 천명한 것이다.¹⁷⁶⁾ 국방부는 사전 검열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11월 22일 “보도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결코 자유로워야 할 언론을 탄압하거나 견제하는 것이 아니”¹⁷⁷⁾라며 보도 통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실제로 이후 군 관련 기사에는 ‘검열제(檢閱濟)’ 또는 ‘검열필(檢閱畢)’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이처럼 제주해안이 봉쇄되고 언론이 통제됨으로써 제주는 글자 그대로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다. 이로써 제주도가 얼마나 외부와 차단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었는가 하는 점은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주사건에 관한 국회에서의 첫 논의는 1948년 6월 11일 제주출신 오용국(吳龍國) 의원 등 6명이 ‘제주 소요사건을 긴급 선처하기 위하여 임시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을 때이다. 그러나 이 긴급동의안은 제안자 수효 부족이라는 이유로 상정되지 못했는데, 이 때 최국현 의원은 “시방 오(吳)의원이 말씀하신 제주도 문제 심히 중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문제를 접수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경성(京城)에 지금 전기 문제, 보리공출 문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들어올 줄로 압니다”¹⁷⁸⁾라며 긴급동의안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였다. 서울의 전기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될 만큼 제주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9월 27일에는 김웅진(金雄鎭) 의원이 나서 “38 이남에 전개되고 있는 제주도사건,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다 이러해서 거기에 있는 양민까지 전부를 죄인으로 몰려고 하는 이런 음모는 대단히 장래에 우리의 치안문제가 어지러워진다고 봅니다”¹⁷⁹⁾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한 정부의 방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겹다리로 언급한 것일 뿐 제주사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아니었다.

제주도에서 유혈 참극이 벌어지기 시작할 무렵, 제주에 관한 국회에서의 논의를 보면 제주가 얼마나 외부와 차단돼 있었으며 관심 밖에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176) 『國際新聞』, 1948년 11월 21일.

177) 『國際新聞』, 1948년 11월 23일.

178) 『國會速記錄』 제1회 제8호, 1948년 6월 11일.

179) 『國會速記錄』 제1회 제75호, 1948년 9월 27일.

10월 7일 ‘지방행정조직법’ 제1독회 자리에서 조국현(曹國鉉) 의원이 지난 1946년 8월 도(道)로 승격된 제주도(濟州道)를 다시 제주도(濟州島)로 환원시키자고 주장¹⁸⁰⁾하면서 비롯된 논란은 10월 13일 제2독회 때 본격화됐다. 조국현 의원은 제2독회 때에도 “만일 제주도(濟州島)를 도(道)로 승격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크나 적으나 또 다른 울릉도나 대마도도 전부 도(道)로 해야 될 것이올시다”¹⁸¹⁾라며 도 승격 반대에 앞장섰다. 이날 결국 여러 의원들의 찬반양론 끝에 불과 한 표 차이로 제주도는 도(道)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는 등 제주사건이 유혈사태의 위기로 치달을 때 도(島)냐, 도(道)냐를 두고 격론을 벌인 이날 국회의 모습은 외부와 차단된 제주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중산간마을 방화소개

1948년 11월 중순경부터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됐다. 그동안에도 분별 없는 총살이 곳곳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그 강도와 희생 규모 면에서, 그리고 전지역에 걸쳐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11월 중순 이후’는 이전 기간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도 바로 이 때이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벌어진 강경진압작전 때 대부분의 중산간마을이 불에 타 사라지는 등 제주도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특히 11월 중순 이전에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 희생된데 반해 강경진압작전 때에는 토벌대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총살함으로써 제주4·3사건 희생자 대부분이 이 때에 희생됐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통계를 보면, 15세 이하 전체 어린이 희생자 중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의 희생자가 76.5%를 차지한다. 또한 61세 이상 희생자 중에서는 이 기간에 76.6%가 희생됐다.

직책상 직접 진압작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9연대 군수참모로서 강경진압작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김정무(金貞武)는 이 시기 작전에 대해 “그 때에 초토화작전이라는 말을 했는데, 싹 쓸어버린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중산간마을에)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산에 올라간 무장세력이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분리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적이라는 작전개념이었다”¹⁸²⁾고 증언했

180) 『國會速記錄』 제1회 제84호, 1948년 10월 7일.

181) 『國會速記錄』 제1회 제87호, 1948년 10월 13일.

다.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켰다는 말이었다. 9연대 선임하사였던 윤태준(尹太準)은 “송요찬 연대장은 초토화작전을 폈다. 거처 가능한 곳을 없애라, 또는 불태워 버리라고 했는데 이런 건 육지에서도 없었다. 초토화작전이 상부의 지시인지 또는 연대장 독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송요찬 연대장은 일본군 출신으로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증언했다.¹⁸³⁾

이같은 무분별한 작전에 관해 미군사고문단은 사태가 거의 종결된 1949년 7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제2군 사령관 멀린스(C. L. Mullins Jr.) 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제주도에서 반도들의 저항이 확산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경찰과 군의 무능한 지휘관 때문이었다. 그들은 공산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자비하게 마을 주민들을 살해하고 마을을 불질렀다”고 지적했다.¹⁸⁴⁾

그런데 그동안 군과 경찰 측에서 나온 자료에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살극은 철저히 외면한 채 마치 이 시기에 무장대와 교전을 벌여 대단한 전과를 거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 다음의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도 주둔 연대장은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2명의 반란자들을 생포했고, 576명을 사살했다고 보고했다. 10월 1일에서 11월 20일 사이에는 1,625명을 사살하고 1,383명을 생포했다고 보고했다. 많은 물건들이 노획되었으나 무기는 약간의 일본식 소총이 노획되었을 뿐이다. 2개월 동안 총 60여 개의 무기가 노획되었다.¹⁸⁵⁾

또 이 시기를 다룬 주한미군사령부의 일일정보 보고서를 보면, ‘11월 13일 경비대 작전결과, 구좌면 행원리에서 무장대 115명 사살’¹⁸⁶⁾ 또는 ‘11월 24일 제주읍 노형리 부근의 전투에서 무장대 79명 사살’¹⁸⁷⁾ 등의 전과기록이 나오는데 진압군 희생자는 한 명도 없다.

182) 金貞武(77세·서울시 종로구 부암동·당시 제9연대 군수참모, 준장 예편, 육사2기 동기회장. 2002. 9. 25. 채록) 증언.

183) 尹太準(73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당시 9연대 보급과 선임하사, 중령 예편, 2001. 5. 2. 채록) 증언.

184) “Letter from Roberts to Mullins,” July 28, 1949,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8.

185) “Report from PMAG to USAFIK,” December 1, 1948, *ibid.*, Box 4.

18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89, November 16, 1948.

18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98, November 27, 1948.

이같은 내용은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보도됐다. 즉 '11월 21일부터 이틀 간 남제주군 중문면 부근 한라산록 일대를 소탕해 폭도 88명을 사살했는데 국군 측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¹⁸⁸⁾거나 '11월 14일 노형리에서 폭도 79명을 사살했는데 국군 측 손해는 없다'¹⁸⁹⁾는 보도 등이 그것이다. 국방부의 사전 검열을 거친 언론의 보도내용의 공통점은 역시 '다수의 적 사살, 국군 측 피해는 전무'이다.

이처럼 매우 불균형하고, 그래서 납득하기 어려운 전과는 1948년 12월 8일 이범석 총리의 국회 보고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자리에서 이범석 총리는 1948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의 전과를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적 유기시체' 421명에 '포로'가 5,719명인데 반해 국군 측의 손해는 전사 3명에 전상 8명이다.¹⁹⁰⁾

흔히 게릴라전에서는 진압하는 측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의 무장대를 사살·체포했으면서 노획한 무기가 없고, 또한 전투가 벌어졌다면서 경비대 사망자는 거의 없고 무장대만 사살됐다는 위의 보고들은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교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의 주민들이 총살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군·경 토벌대가 비무장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총살했으면서 희생자들을 무장대로 조작했다는 혐의는 군·경 측이 밝힌 '폭도'의 숫자와 '전과'를 비교해 보면 자명해 진다.

- △ 1948년 4월 현재=폭도들의 수효는 약 300명 내지 400명(경무부 공보실장)¹⁹¹⁾
- △ 1948년 4월 현재=폭도의 수는 전도를 통틀어 300명 넘지 않아(김익렬 제9연대장)¹⁹²⁾
- △ 1948년 12월 현재=무장폭도 현재 50~60명에 불과(국무총리의 보고)¹⁹³⁾
- △ 1949년 1월 현재=무장폭도는 150명 내지 400명 설(내무부장관의 보고)¹⁹⁴⁾
- △ 1949년 3월 현재=무장폭도는 200명 가량(국무총리의 보고)¹⁹⁵⁾
- △ 1949년 3월 현재=무장폭도는 150~600명(내무부장관의 보고)¹⁹⁶⁾

188) 『朝鮮日報』, 1948년 11월 26일.

189) 『독립신문』, 1948년 11월 27일.

190) 『國會速記錄』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 『漢城日報』, 1948년 12월 10일.

191) 『朝鮮日報』, 1948년 5월 6일.

192) 金益烈,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②, 1994, 299쪽 수록).

193) 『國會速記錄』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194) 『國務會議錄』 제10회, 1949년 1월 17일.

195) 『國務會議錄』 제30회, 1949년 3월 16일.

196) 『國會速記錄』 제2회 제59호, 1949년 3월 21일.

1948년 4월 3일 이후 토벌대의 계속되는 전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폭도’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데 대해 언론에서는 이미 “인민해방군의 (반란군) 수는 시종여일하게 500명이라고 하여 왔는데 이 수는 당국이 수차에 걸친 소탕성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의 주동부대는 500명 정도라고 하니 이 500명이라는 것은 과연 수수께끼인가?”라고 꼬집은 바 있다.

그런데 군·경 진압대와 정부 수뇌부에서는 강경진압작전을 부인했으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동안 사소한 내용까지 시시콜콜 기록해온 미군보고서도 강경진압작전 기간에는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아래의 미군 보고서는 강경진압작전과 관련된 몇 되지 않는 드문 기록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산천단-1948년 11월 19일 낮 12시 45분, 약 10명의 경비대원들이 가옥 4채를 방화했다(F-1). 오후 1시 미군은 L-5 비행기에서 그 마을에 경비대원들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때 마을은 불타고 있었다(A-2).¹⁹⁷⁾

방화 뿐만 아니라 총살에 대한 보고서도 있다.

1949년 1월 25일 제주도 오라리. 한국군 2연대의 미군고문관이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의 시체 97구를 발견했다. 각 시체는 5~6발의 총을 맞았다. 빈 클립과 탄피로 볼 때 M-1소총이 사용됐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경찰과 군은 그 사건에 관여했음을 부인했다.¹⁹⁸⁾

직접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1949년 2월 20일 도두리에서 76명의 반도들이 민보단에 의해 죽창에 찔려 죽었다. 사망자들 중에는 5명의 여인과 중학생 정도 나이의 많은 아이들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과 군기대(한국군 헌병)가 그 작전을 감독했다.

논평: 4명의 미군사고문단원이 도착했을 때 38명은 이미 처형돼 있었고 38명의 처형은 우연히 목격됐다.¹⁹⁹⁾

197)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02, November 19, 1948.

19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55, February 4, 1949.

19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77, March 3, 1949.

미군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강경진압작전은 중산간마을에 대한 방화와 남녀노소가리지 않고 총살하는 형태로 벌어졌다. 당초 진압군의 작전 개념은 중산간마을 주민들을 해변마을로 소개(疎開)시키고, 해변마을에서는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것이었다. 이 작전에 대해 이범석 총리 겸 국방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 적정(敵情) : 국군의 맹렬한 심멸전과 식량난 및 병기, 탄약 보급 불충분과 아울러 협력자 멸소(減少)에 따라 무장폭도 현재 근근 50~60명에 불과하나 도민 중 다수가 폭도의 정신적 가담자라는 것은 참 유감사임.

나. 제9연대 장병이 전 제주도내에 주요지점을 확보하며 산간부락 양민을 해안선 도시에 보갑제(保甲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주시키며 도내 도로 양측 총림(叢林)을 벌채하여 폭도 급습에 대비하며 폭도에 대한 보급선을 완전 차단하는 동시에 폭도에 대한 협력자의 철저한 처단을 단행함으로써 일로 제주재건에 매진중임.²⁰⁰⁾

이처럼 소개령은 다수의 제주도민들이 ‘폭도의 정신적 가담자’라는 전제 아래, 주민들을 집단 이주 시킨 후 ‘보갑제’라는 연대책임식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해 일반 주민과 무장대를 차단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당시 9연대 선임하사였던 이기봉(李基鳳)은 “산간 벽지에 있는 사람을 전부 해안지대로 내려오라고 해 가지고 안 내려오는 사람은 전부 공비로 인정을 했다”고 증언했다.²⁰¹⁾

그러나 진압군은 일부 중산간마을의 경우 소개령이 채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을 덮쳐 가옥을 방화하고 주민들을 총살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부 중산간마을에 소개령이 전달돼 해변마을로 소개해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 한명이라도 사라졌다면 ‘도피자가족’이라 하여 총살했다.

자신의 피신으로 인해 어머니와 어린 자식 등 가족과 친척 12명을 잃은 부성방(夫成邦)은 “억울하고 가슴아픈 것은 당시 우리 딸 중 제일 철든 것이 열두 살이고, 그 아래로 열 살, 여덟 살, 여섯 살난 아기들인데 이것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였는가?”라며 한탄했다.²⁰²⁾ 이러한 작전은 주민들을 오히려 도피 입산하게 하는 바람에 당초 ‘무장폭도는 50~60명에 불과’하다는 이범석 총리의 국회 발언이 무색할 만

200) 『國會速記錄』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201) 李基鳳(40세, 경북 성주, 당시 9연대 선임하사, 중령 예편, 1966. 3. 15 채록)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참전자 증언록』에 수록).

202) 夫成邦(86세, 조천읍 조천리, 2002. 12. 12 채록) 증언.

침 이후 다수의 주민 희생과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 후에 미군 고문관은 군의 무분별한 총살이 주민들을 오히려 무장대에 가담시키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1) 연락용 비행기가 선진 전단을 뿌리고,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무차별로 떨어뜨리고 있다.
- (2) 한국군 병사들과 지역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우월적인 태도는 불필요하게 평화스러운 시민들을 자극하여 폭도활동에 가담하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 (3) 주한미군사고문단 요원들은 불필요하게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수적인 열세와 통신의 부족, 전적으로 한국군에게 안전을 의존하는 것, 그리고 열악한 환경 및 명백히 재판없는 주민 처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있는 여러 마을의 분위기, 아울러 적절한 훈련과 통제를 받지 않은 병사들의 시민권 침해가 그 원인이다.²⁰³⁾

토벌대는 소개령 이후 중산간마을이나 산악지역에 숨어 있던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해 발각 즉시 사살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피신생활을 못이겨 '귀순'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강경진압작전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1948년 12월 중순께 이르러 당초의 작전개념이 변질됨으로써 더욱 큰 주민 희생의 원인이 됐다. 즉 중산간마을 주민을 해변마을로 소개(疎開)시켜 무장대와와의 연계를 차단함으로써 무장세력을 궤멸시킨다는 당초의 작전 방침은 '전과 올리기'로 변질됐다. 이에 대해 1948년 12월 17일자 한 미군보고서는 "최근 제9연대의 진압작전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수준높은 작전을 전개하려는 욕망과 제2연대 성공자들의 훌륭한 업적에 부응하려는 욕망 때문이다"²⁰⁴⁾라고 지적했다.

제9연대는 1948년 12월 말로 여순사건 진압에 공적을 세운 대전의 제2연대와 맞교대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제9연대가 제주를 떠나기 앞서 여순사건 진압이라는 업적에 맞설만한 전과를 올리기 위해 욕망을 표출한 것이 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203) "Report of Ordnance Advisor's Trip to 2nd Regt-Cheju," February 10, 1949,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13.

20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5, December 17, 1948.

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1948년 12월 중순경 제9연대의 '전과'를 보면,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한 인상을 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대살(代殺)' '자수사건' '함정토벌', 그리고 산중에 은신한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살한 것이다.

우선 '대살'이란 이름 아래 총살이 자행됐다. 토벌대는 중산간마을에서 소개해 온 사람이든, 본래 해변마을 주민이든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가족 중 청년이 사라진 집안의 사람들을 '도피자가족'이라 하여 총살한 것이다. 1948년 12월 13일 대정면 상모리와 하모리 주민 48명이 도피자가족이라 하여 총살당했다. 이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집결시킨 후 총살극을 구경시켰다 하여 이 사건을 '관광총살'이라고도 부른다. 희생자 중에는 73세의 할머니도 포함돼 있었다.²⁰⁵⁾

그리고 '자수사건'이란 과거 자신의 죄를 자백한 사람들을 총살하는 것이다. 진압군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과거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람은 자수하라. 자수하면 살려주지만 나중에 발각되면 총살을 면하지 못한다. 이미 '관련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다. 자수를 권했다는 사실은 '관련자 명단'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지만, 겁에 질린 많은 주민들이 자수했다. 이들은 주로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에서의 활동, 1947년 경찰관의 3·1절 발포사건에 항의해 시위를 한 사실, 무장대가 마을의 해계모니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들의 요구에 따라 시위에 참여하거나 식량 등을 준 사실 등을 자수했다. 그러나 진압군은 약속과 달리 자수자들을 집단 총살했다. '자수사건'의 대표적 사례로는 소위 '박성내 사건'이 손꼽힌다. 조천면 관내에서 자수한 200명을 수용하고 있다가 1948년 12월 21일 "토벌에 따라갈 사람은 차에 타라"고 속여 150명을 제주읍 '박성내'라는 하천 변에서 집단 총살한 것이다.²⁰⁶⁾

토벌대가 전과 올리기에 급급해 무모한 진압작전을 벌인 사례로 '함정토벌'을 빼놓을 수가 없다. 토벌대가 무장대 복장을 하고서 민가에 들어가 협조요청에 응하는 사람들을 총살하는 것이 함정토벌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당시를 겪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중엔 '곰도 무섭고 범도 무서운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토벌대도 무섭고 무장대도 무섭다는 말이다. 낮에는 토벌대가 마을을 장악해 '폭도 혐의자'라 하여 총살하고, 토벌대가 물러간 밤에는 무장대가 들이닥쳐 '반동분자'라 하여 숙청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이 무장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토벌

205)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⑤, 321~322쪽.

206)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④, 405~408쪽.

대는 무장대 지원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편으로써 함정을 팠다.

함정토벌은 도내 전역에서 벌어졌는데, 제주읍 도평리 주민들의 집단희생은 함정 토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949년 1월 3일 이른 아침 허름한 갈중의(207)를 입고 총은 든 한 무리가 제주읍 도평리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길에서 마주친 주민들에게 “동무, 동무”하며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인공기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집안에 들이닥쳐 “왜 너희들은 산에 협조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면서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켰다. 그런데 인공기를 들고 갈중의를 입은 이 무리는 무장대가 아니라 인근 외도지서 경찰과 특공대원들로서 주민들에게 함정을 판 것이었다.

주민들 중 일부는 그 무리 중에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인간힘을 썼다. 양경하(梁京河·22)는 “빨갱이면 맞서 싸우겠다”고 나섰다. 마을 유지인 김병해(金秉海·58)는 외도지서 주임 김영철(金永哲)에게 욕을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해 주민 70명 가량이 총살당했다. 한 증언자는 “환갑이 넘은 김성규라는 분은 학교운동장에서 지목 당하는 바람에 부인, 아들, 며느리, 어린 손자 등과 함께 6명이 몰살당했다”고 증언했다.(208)

한편, 무차별 진압작전을 피해 산간지역의 굴이나 숲에 은신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살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에 언급됐듯이, ‘공산당 선전에 속거나 집이 다 불에 타 갈 곳이 없어 도로 올라간 자’로서 사태가 완화된 후 ‘형용이 말 아닌 남녀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온’ 사람들이었다.(209) 이들 중 한겨울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은 사태가 완화된 후 하산해 살 수 있었지만, 강경진압작전이 한창 진행될 때는 발각당하는 즉시 총살됐다.

1992년 제주도 구좌읍 중산간지대에 있는 ‘다량쉬굴’에서 유골 11구가 발굴된 사건은 제주4·3사건 당시 은신자에 대한 무분별한 작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확인 결과 이들 유해의 주인공들은 1948년 12월 18일 제9연대의 진압작전에 의해 희생된 도피 입산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희생자들의 신원은 구좌읍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로서 그 중엔 여자 3명과 아홉 살 난 어린이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

207) 감물(柿汁)을 들인 중의. 전통적인 제주의 노동복이다.

208) 金世元(제주시 도평동, 희생자 김병해의 아들)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45회, 1999년 5월 21일)

209) 『朝鮮中央日報』, 1949년 4월 13일.

었다. 다랑쉬 굴 속에서는 플라스틱 안경, 흰색 단추, 혁대, 버클, 옷감, 고무신, 질 그릇, 낫그릇, 낫수저, 가마솥, 항아리, 물허벅, 접시, 낫쇠로 만든 제기용 잔받침, 물통, 프라이팬, 가위, 요강, 철사뭉치, 석쇠, 화로, 구덕, 주전자, 나무주걱 등의 생활용품과 낫, 도끼, 톱, 나대, 자귀, 곡괭이, 솥돌 등 연장류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외따로 떨어져 있던 유골 1구 옆에는 그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철모, 군화, 철창, 대검이 놓여 있었다.²¹⁰⁾

미군 정보보고서는 “12월 18일 제9연대 제2대대가 제주도를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 작전을 전개했다. 제9연대는 이 작전에서 민간인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남자 130명을 사살하고 5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소총 1정과 칼 40자루, 창 32개를 노획했다”고 기록했다.²¹¹⁾ 9연대 잔류병력의 철수 마지막 주인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에는 무려 463명을 총살하기도 했다.²¹²⁾ 사살자와 노획한 무기와의 납득할 수 없는 불균형은 진압작전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전개됐는지를 보여준다.

미군보고서는 9연대의 작전은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무장대에게 협조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전개된 것이라며 이렇게 기록했다.

9연대는 11연대의 ‘무대응’ 정책을 즉각적으로 무차별적인 공포통치로 대체했다. 9연대는 반란자들에 대해 상당히 성공적인 전투를 수행했다. 그러나 9연대는 이와 동시에 모든 저항을 말본색원하기 위해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 1948년 12월까지의 9연대의 점령기간 동안에 섬 주민에 대한 대부분의 살상이 자행됐다. 그러한 계획은 외형상 주효한 듯 보여 1948년의 마지막 2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반도 활동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9연대의 무차별적인 작전은 새롭게 반도 대열에 합류하는 자들을 양산해 냈다. 그래서 2연대와 9연대가 교체했던 12월에 새로운 게릴라 테러의 물결이 시작됐다”²¹³⁾

위 미군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강경진압작전 기간 중 ‘반도 활동’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당초 채택한 ‘대량학살 계획’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 전역에서

210)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②, 416~439쪽.

21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21, December 24, 1948.

212) Ibid.

21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구체적으로 실행됐다. 이는 앞서 지적한, '다수의 적 사살에 국군 피해는 전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전과'를 낳았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작전은 주민들로 하여금 새롭게 무장대에 합류케 하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한편 구좌면 세화리, 표선면 성읍리, 남원면 남원리와 위미리 등 일부 마을이 무장대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다. 당초 무장대는 경찰, 서북청년회나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원, 그리고 군·경에게 협조하는 우익인사와 그들의 가족을 지목해 살해했다. 그러나 1948년 11월 이후 진압군의 강경작전이 벌어진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토벌대 편으로 기울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마을을 지목해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했다. 주로 군·경 주둔지인데다 이들 마을에서 '도피자 가족' 총살이 벌어지는데 대한 보복이었다.

라. 진압부대 교체

1) 연대교체의 의미

1948년 12월 29일 제주 주둔군이 제9연대에서 제2연대로 교체됐다.²¹⁴⁾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와 제주 주둔 제9연대가 서로 맞교대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있었던 주둔군 교체와 달리 제9연대와 제2연대의 교체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즉 1948년 5월 15일부로 제9연대가 제11연대에 합편된 것은 그간 제9연대가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지 않은데 대한 문책으로 연대장을 교체하고 병력을 보강한 뒤 새롭게 진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1948년 7월 15일부로 제9연대를 재편하고 곧이어 제11연대를 철수시킨 것도 한 달 전 벌어졌던 박진경 제11연대장 암살사건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면 1948년 12월 말로 제9연대를 철수시키고 제주사건 진압작전의 책임을 제2연대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제9연대를 제11연대에 합편할 때나, 다시 제9연대를 재편하면서 제11연대를 철수시킬 때에는 제주 주둔군 전체가 이동한 게 아니라 연대장이 교체되면서 병력 일부가 이동한 것일 뿐이었고, 기존 제주출신 9연대

214)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2집, 1948년 12월 29일.

병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9연대와 2연대의 교체는 기존 제주 주둔군을 송두리째 대전 주둔군과 교체한 것이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그간 제9연대의 강경진압작전은 미군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만큼 무장대 활동을 무력화 시켰고, 그 결과 연대 교체 직후인 1948년 12월 31일부로 계엄령이 해제되기도 했다. 따라서 단순히 제2연대에게 ‘실전 경험’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그 시점에 연대 교체가 이뤄졌는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실마리는 1949년 1월 21일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제주사건을 발근색원하라’고 지시한 이승만 대통령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사태에 관한 이승만의 조급증에 대해 초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응준(李應俊)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다.

제주도 공비토벌이 시일을 끌게 되어 대통령 이 박사의 독촉을 받은 일도 있었다. 공비토벌작전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보고는 관두고 공비가 없어졌다는 보고가 듣고 싶다는 것이다.²¹⁵⁾

제9연대와 제2연대의 교체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할 무렵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몇차례 탈영사건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연대장 암살까지 저지른 기존의 제주 주둔 병사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압부대 수뇌부에서는 제주출신 병사를 포함해 일부 병사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믿고 있었다. 1948년 5월 21일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한 미군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했다.

어떤 관측자들은 이 연대 장병들의 많은 숫자가 중산간지역의 공격자들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긴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 연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설령 현재 그 부대 안에 공산주의자가 있을지라도 언젠가 그들은 탈영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남아 있는 대원들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²¹⁶⁾

이에 따라 이승만은 ‘신뢰할 수 있는 토벌대’로서 우선 서북청년회를 지목했다. 미

215) 李應俊, 『回顧 90年』, 汕耘기념사업회, 1982, 270쪽.

216)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41, May 28, 1948.

군 역시 무차별 강경진압작전이 막 시작된 1948년 11월 중순경부터 서북청년회 단원의 군 투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대부분의 군 병력을 서북청년회 단원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었다.²¹⁷⁾ 12월 중순경부터 제주 주둔군과 경찰에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투입됐다. 미군은 서청이 제주 주둔군과 경찰을 지원하는데 대해 칭찬을 하며 유도하기도 했는데,²¹⁸⁾ 서청에 관한 미군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서북청년회는 이북에서 온 피난민으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과격한 반공주의로 주목받고 있으며 공산주의자를 발견하기만 하면 시위를 한다. 그들은 적극적인 시설방어와 정보수집 면에서 오랫동안 경찰과 경비대의 작전에 가담해 왔다.²¹⁹⁾

미군과 토벌당국은 제주사건 진압작전의 주역으로 서청에 이어 제2연대를 주목했다.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제2연대는 바로 ‘여순사건’을 진압한, 실전경험이 있는 부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대 교체가 완료된 것은 1948년 12월 29일이지만, 그 계획은 늦어도 12월 초순경 수립돼 있었다. 고문단의 풀러(H. E. Fuller) 중령은 12월 6일 “제주도 주둔 9연대를 본토로 이동시키고 2연대로 교체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²²⁰⁾ 연대 교체 계획에 따라 제2연대 선발대가 12월 16일 제주도에 도착했고²²¹⁾, 제9연대 선발대가 12월 19일 대전에 도착했다.²²²⁾ 또한 지난 1948년 10월 19일 제주 출동을 앞둔 여수 제14연대가 총부리를 돌려 반란을 일으켰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제2연대 장병들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으로 보이는 ‘예방책’까지 실시했다.²²³⁾ 이에 관해 미군 보고서는 “제2연대의 모든 공산주의적인 요소는 대전을 출발하기 전

217) “Weekly Activities of PMAG,” November 15, 1948, RG 338: Record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21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51, October 1, 1948.

21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05, December 6, 1948.

220) “Weekly Activities of PMAG,” December 6, 1948, RG 338: Record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221) Charles L. Wesolowsky, Advisor 9th Regiment, Korean Constabulary, Cheju-Do, Daily Report, December 17, 1948 ; 李潤, 『陣中日誌 2』, 3쪽.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7, December 17, 1948에는 ‘12월 17일’로 기록돼 있음.

22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7, December 20, 1948.

22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5, December 17, 1948.

에 깨끗이 제거됐다”고 기록했다.²²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주둔군을 제9연대에서 제2연대로 교체하고, ‘과격환 반공주의자’인 서청 단원들을 토벌대에 합류시킨 것은 제9연대보다 더욱 더 강경한 작전을 통해 조속히 사태를 끝내기 위한 조치이며, 이는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연대 교체 계획과 추진은 철수를 앞둔 제9연대에게 경쟁심을 촉발 시킴으로써 무모한 진압작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즉 ‘성공적인 작전’을 펴는 제9연대를 철수시켰다기보다는 연대 교체 계획이 제9연대로 하여금 경쟁심을 자극해 ‘성공적인 작전’을 촉진시킨 것이다. 실제로 제9연대는 선발대가 대전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12월 중순경부터 이동이 완료된 12월 말까지 가장 가혹한 진압작전을 벌였다.

이 무렵 제9연대는 해변마을에 멀찍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집합시켜 가족 중 젊은이가 사라진 집안 사람들을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총살했고, 과거 시위사실 등을 자수하면 살려준다고 한 후 자수자들을 집단 총살하는 등 마치 ‘전과(戰果)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무모한 작전을 벌였다.

2) 전투력 강화

제주에 파견된 제2연대장 함병선(咸炳善) 중령은 일제 지원병 준위 출신으로, 최경록 제11연대장, 송요찬 제9연대장에 이어 일본군 준위 출신이 3대 연속 제주도지구 진압군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이다.²²⁵⁾ 일본군으로서 만주 지역 등지에서 중국군이나 항일 빨치산과 싸웠던 전투 경력을 인정해 제주 진압전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함병선은 1948년 12월 7일부로 제2연대장에 임명²²⁶⁾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주에 파견됐다.

군 수뇌부는 함병선 제2연대장에게 강경작전의 임무를 부여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2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군·경에 파견하는 것이었다. 뒤이어 성산포경찰서와 모슬포경찰서를

22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225)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上卷: 建國과 試鍊』, 姜昶求 譯, 兵學社, 1977, 283쪽.

226)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2집, 1948년 12월 7일.

신설하는 등 경찰조직을 강화하였다. 또한 항공사령부의 비행기와 제6여단 산하 유격대대를 제주도에 파견해 제2연대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육군본부는 1949년 1월 20일부로 2연대를 기존 2여단 소속에서 해편(解編)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만들었다.²²⁷⁾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군·경에 배치하려는 계획은 늦어도 1948년 11월말 경부터 비밀리에 추진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남한 전역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 서청을 군에 6,500명, 경찰에 1,700명 가량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²²⁸⁾ 이런 과정을 거쳐 제2연대의 3개 대대 중 제3대대는 대부분 서청 단원들로 구성되었다.²²⁹⁾ 특히 1948년 12월 20일 제주도에 파견된 서청 단원들은 ‘특별중대(elite company)’라는 특수 임무를 부여받았다.

12월 20일, 200명의 서북청년 단원이 은밀하게 대전에 있는 경비대에 입대했다. 제주도에 새롭게 도착하여 제9연대에 배정된 그들은 곧바로 제복을 지급받았다. 그들의 입대는 서북청년 단장과 제2여단장간에 은밀히 계획된 것이다.

(논평) 이 200명의 은밀한 입대는 서북청년회로부터 ‘특별중대’를 구성하려는 제2여단의 계획이 완료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²³⁰⁾

이 특별중대의 임무는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것으로서, “서북청년 단원을 장교로 배속하기 위해, 그리고 공급과 장비에 관한 특별한 고려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 특별중대는 2여단에서 반대자를 색출하고 남침사건 때 최선봉으로 활용”²³¹⁾ 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특별중대 투입은 단순한 병력 증강의 의미를 넘어, 군 내부의 ‘반대자 색출’이라는 헌병 기능까지 담당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서청의 권한은 실제 제주도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서청 특별중대원 출신의 한 증언자에 의하면, 특별중대는 2연대 주둔기 때 새롭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9연대 주둔기 때 편성돼 헌병들조차 간섭하지 못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다만 9연대 주둔기의 특별중대가 계급장도 달지 않은 채 활동한 사병(私兵)의 성격이었다면, 2연대 주둔기 때는 비로소 정규군에 편

227)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3집, 1949년 1월 20일.

22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05, December 6, 1948.

229) 『陸本 作命 甲發』 제81호, 1949년 5월 5일.

23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23, December 28, 1948.

23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8, December 21, 1948.

입됐다'는 차이가 있다.²³²⁾

서북청년 단원들은 군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집중 배치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북청년 단원을 경찰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원 20명을 이끌고 온 자에게는 처음부터 경사 계급을, 50명 인솔자에게는 경위 계급을, 200명 인솔자에게는 경감 계급을 주는 혜택을 주면서 적극 유인했다. 실제로 서청의 중간 간부 출신으로 삼양지서 주임으로 근무했던 정용철은 자신의 회하에 서청단원들을 이끌고 온 대가로 처음부터 경위로 특채됐다.²³³⁾ 서북청년 단원들은 불과 12일간의 훈련만을 받은 채 1948년 12월 초 정규경찰의 자격으로 제주도에 파견됐다.²³⁴⁾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경찰에 서청을 파견함과 동시에, 제주도에 경찰서를 증치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²³⁵⁾ 제주도에 두 곳 뿐인 경찰서를 네 곳으로 두 배나 늘린 것이다. 경찰서 증치는 194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50호로 발표되어 당일부터 실시돼 모슬포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가 신설됐다.

남제주군 대정면에 위치한 모슬포경찰서는 남제주군의 대정면·안덕면과 북제주군의 한림면을 담당토록 했고, 남제주군 성산면에 위치한 성산포경찰서는 남제주군 성산면·표선면과 북제주군 구좌면을 관할토록 하는 등 기존의 제주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의 관할 구역을 떼어 맡겼다.²³⁶⁾ 이어 2월 19일에는 경찰특별부대(사령관 김태일 경무관) 505명이 파견돼 경찰력이 크게 증강되었다.²³⁷⁾

미군도 진압작전에 나섰다. 미군이 어느 정도 작전에 참여했는지는 불확실하나 '미 해군이 기항하여 호결과를 냈다'는 아래의 이승만 발언을 통해 미군의 역할을 일부 엿볼 수 있다.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대통령) : 제주도사태는 미 해군이 기항(寄港)하여 호결과(好結果)를 냈다 하며 군 1개 대대, 경찰 1,000명을 증파하게 되었으니 조속히 완정(完征)하여 주기 바라며 여수·순천지구 계엄령의 철폐를 요청하는 자가 다유(多有)하니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²³⁸⁾

232) 노윤복(78세, 성산을 성산리, 당시 서청 특별중대원, 2002. 3. 28 채록) 증언.

233) 金時訓(79세, 표선면 가사리, 당시 서북청년회 출신 경찰, 2002. 2. 26 채록) 증언.

23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1, December 13, 1948.

235) 『國務會議錄』 제6회, 1949년 1월 11일.

236) 『官報』 제32호, 1949년 1월 18일.

237) 『自由新聞』, 1949년 5월 19일.

238) 『國務會議錄』 제14회, 1949년 1월 28일.

육군본부는 또한 육군 항공사령부의 비행기 2대를 1949년 1월 24일까지 제주도에 파견해 진압작전에 협조토록 했다.²³⁹⁾ 육본은 이어 유격전 전문 부대인 제6여단 산하 유격대대를 1949년 1월 31일에 제주도로 이동시켜 제2연대장 지휘 아래 진압작전을 벌이도록 조치했다.²⁴⁰⁾

3) 집단살상 지속

당초 제2연대의 목표는 “종래의 미온·소극 작전을 떠나 적의 최후의 한 명까지 섬멸을 기하는 포위 고립화 작전을 실시”하는 것이었다.²⁴¹⁾ 그리고 3단계로 나누어 진압작전을 전개하겠다고 표방했다. 이범석 총리는 이 3단계 작전에 대해 국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제주도의 기관(機關), 장비, 토벌의 군사행동은 작전이 세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대가 교대되어서 1월 달부터는 먼저 부대를 각 지방에 평균배치해가지고 그 지방지리에 익숙하며 지방실정에 능숙하며 또 따라서 그 동안의 부락내부에 있는 출몰하는 소위 무장폭도라는 것 이것을 부락민과 이탈시키는 즉 부락에서부터 축출하는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제1단계의 준비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병력을 집결하고 한번 부락지대를 재소탕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2단계입니다. 지금 제3단계에 들어와서 2월 25일경부터 부대는 부락에서부터 구축(驅逐)당해 가지고 한라산 꼭대기로 향해서 도주하는 무장폭도를 포위하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접전이 있었고 그 동안에 군대는 부락지대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폭도를 한라산 꼭대기에서 노역을 하면서 구역 배후의 절대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절대 포위권을 압박하고 들어갔습니다.²⁴²⁾

제주 현지를 취재한 한 기자는 이 3단계 작전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우선 작전목표를 3단계로 나누어 금년 1월부터 1월 말일까지를 제1단계로 하여 주안점을 해안선의 방위태세와 양민의 민심수습에 치중하여 선무공작을 개시하고 제2단계에 들어가서는 2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에 양민의 불안 공포감을 덜기 위하

239) 『陸本 作命 甲發』 제18호, 1949년 1월 22일.

240) Hq. USAFIK, G-3 Operations Report, No. 5, February 5, 1949.

241) 『國都新聞』, 1949년 4월 21일.

242) 『國會速記錄』 제2회 제56호, 1949년 3월 17일.

여 동족살상전을 회피하는 의미에서 뼈라살포로 반란자 귀순공작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양민 귀순자로 구성된 평화사절단을 귀순권고자로 20일간 기한부로 한라산 폭도근에 파견하였으나 그 후 소식이 묘연하게 됨에 이르러 이때껏 온건 완화작전을 취하여 오던 국군은 최후적 결의를 갖고 제3단계인 무력소탕 태세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3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의 일대 섬멸전이 바로 그것이다.²⁴³⁾

약간의 날짜 차이가 있지만 위의 두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른바 ‘선무공작’을 제1단계 작전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2단계로 무장대와 주민간의 연계를 차단하고, 제3단계에 이르러 산악지역 소탕에 나선다는 작전 개념이었다.

조속한 사태해결의 임무를 띤 제2연대가 교체 후 첫 한 달간을 강경작전 보다 선무공작을 펼치겠다고 표방한 까닭은, 이범석이 발언한 바와 같이, 우선 지형지물을 숙지하고 지역 실정을 파악할 시간을 벌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연대 교체 전에 이미 제9연대의 강경진압작전으로 사태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연대의 이동이 결정된 후 선발대가 제주에 도착한 날짜는 1948년 12월 17일이지만, 제2연대가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동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제주도지구 작전을 담당하는 것은 1948년 12월 29일이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제9연대의 진압작전이 가장 가혹하게 전개된 기간이었다. 이 기간 중 비무장 민간인들이 군에 의해 무차별 집단총살됐고, 무장대는 은신상태에 들어감으로써 ‘반도 105명을 사살했으나, 국군 측의 피해는 없다’²⁴⁴⁾는 전과가 발표될 정도로 군 피해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보도과장 이창정(李昌禎) 소령은 연대 교체 직후인 1948년 12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작전을 마치고 온 제9연대장의 활동을 찬양하면서 “폭도의 진압이 일단락 지었으므로 수삼일 내로 계엄령을 해제하겠다”²⁴⁵⁾고 말했다. 채병덕(蔡秉德) 참모총장도 “지난 11월 17일 이후 실시되고 있는 제주도지구 계엄령에 관하여는 제주도 사태가 날로 평온화 되어감에 따라 이를 금년 말로 해제하겠다”²⁴⁶⁾고 발언한 바 있었다.

이처럼 제2연대 교체 전에 이미 군 수뇌부가 ‘폭도 진압이 일단락’됐다거나, ‘사태

243) 『京郷新聞』, 1949년 6월 29일.

244) 『大東新聞』, 1948년 12월 17일.

245) 『國際新聞』, 1948년 12월 31일.

246) 『朝鮮中央日報』, 1949년 1월 1일.

가 날로 평온화'되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무장대의 활동은 거의 무력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2연대는 '적의 최후의 한 명까지 섬멸을 기하는 포위 고립화 작전'을 펴기에 앞서 다소 여유를 갖고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무공작'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2연대의 작전계획은 연대 교체기를 틈탄 무장대의 공세로 인해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제9연대와 마찬가지로 강경진압작전을 전개했다. 그런데 제2연대의 작전은 무장대가 있는 산악지역에는 가지도 못한 채 해안마을 사람들에 대한 보복에 한정되었고, 재판도 없이 주민들을 대규모로 즉결처형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이같은 제2연대의 작전에 대해 미군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했다.

함병선 대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는 처음에 해안마을에 숙사를 정했다. 함 대령은 섬사람들의 계몽을 위한 선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반도들의 하산을 호소했다. 산에 은신해 있는 무장반도에 대한 공격행위의 중단은 그러한 계획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며 이에 고무받은 유격대는 방어부대의 코 밑에 있는 해안마을까지 공격하여 식량을 구해 가기도 했다. 그러자 제2연대는 다소 공격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주로 반란군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해안마을 사람들에 대한 보복에 한정됐으며 종종 마을 사람들을 재판의 혜택도 없이 즉석에서 대규모로 처형하기도 했다.²⁴⁷⁾

무장대의 공세는 연대 교체 직후인 1949년 1월 1일 제주읍 오등리에 주둔하고 있던 3대대를 기습 공격하면서부터 재개됐다. 이 사건에 대해 미 군사고문단은 "600명의 게릴라들이 1월 1일 2연대를 급습. 30명의 게릴라 사망, 10명의 포로, 경비대 사망자 없음"²⁴⁸⁾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군 자료는 이 날 제3대대 장병도 7명이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⁹⁾ 2연대 앨범 뒷부분에 수록된 전사자 명단에는 이 날 고병선(高炳善) 중위(전사 후 대위로 특진)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장병이 희생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²⁵⁰⁾ 제2연대의 제주 주둔기에 전사한 장병 중에 위관급 이상은 3명 뿐인데, 그 중 고병선이 가장 높은 계급이다. 연대 교체가 이뤄지자마자 위관급

24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248) "Weekly Activities of PMAG," January 4,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24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1967, 445쪽.

250) 제2연대, 『제주도주둔기』, 1949. 8. 이 앨범 속의 전사자명단과 제주도 소재 충혼묘지 비석을 비교해 볼 때,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날짜와 인명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장교가 희생된 이 사건은 제2연대의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케 했다.

1월 3일에는 제주읍내 중심지에 위치한 제주도청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진압당국을 더욱 긴장시켰다.²⁵¹⁾ 이 사건은 나중에 사적인 감정에 의한 내부인의 소행으로 밝혀졌지만²⁵²⁾, 경찰은 책임 추궁이 두려웠는지 1월 5일까지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사건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다.²⁵³⁾ 특히 이 사건은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거론됐는데, 내무부장관이 “원인은 불순분자의 방화 혐의가 농후하다”고 보고했다.²⁵⁴⁾ 미군도 “파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²⁵⁵⁾ 이처럼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긴 했으나, 사건 직후에는 무장대의 소행으로 추정돼 강경작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제2연대는 지형지물을 익히고 지방실정을 파악하면서 선무공작을 하리라던 제1단계 작전계획을 즉각 바꾸었다. 제2연대는 우선 강경작전을 벌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즉 “소련 표시를 한 3천톤급 선박 2척이 1월 3일 제주도 삼양리 약 5마일 지점에서 발견됐다”면서 “이 선박은 제주도 무장대를 지원하기 위한 북(北)으로부터의 물자를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²⁵⁶⁾

이 소련선박 출현설은 미군이 “이런 견해는 전에도 보안군에게서 제기된 바 있지만 불확실하다”고 논평할 정도로 경비대가 강경작전을 벌이기 앞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이었지만, 이튿날인 1월 4일 계엄령 지속을 요청한 아래의 자료는 함병선 연대장이 제주 주둔 직후 벌어진 무장대의 공세에 대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여준다.

제주도 주둔 제2연대장은 1월 4일 제주도에 내려진 계엄령을 지속시켜 줄 것을 무선으로 경비대사령부에 요청했다. 그는 계엄령 상의 야간통행금지과 이주제한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유격대 토벌이나 북한선박의 물자공급을 막는 데에 크게 불리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1월 1일에 있었던 두 차례의 폭도 집단의 기습이 제2연대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요구를 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100명 정도로 추정되는 폭도들의 첫 공격은 오라리²⁵⁷⁾에 주둔한 그의 연대를 향한 것이었다. 폭도 20명이 사살되었으나 경비대 측에서도 대원 27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날 인근 지역인 도두리에

251) 『朝鮮日報』, 1949년 1월 6일.

252) 姜龍三·李京洙,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1984, 654~656쪽.

253) 『朝鮮中央日報』, 1949년 1월 6일.

254) 『國務會議錄』 제2회, 1949년 1월 5일.

25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30, January 6, 1949.

25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29, January 5, 1949.

257) ‘오등리’의 오기인 듯.

도 폭도들의 기습이 있었다. 그 결과 주민 10명이 피살되었고, 수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주택 26채가 소실되고 많은 식량과 의복이 약탈되었다 (경비대 보고).²⁵⁸⁾

함병선 연대장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쓰여진 듯 보이는 군 책자는 이 작전에 대해 “1월 4일 육·해·공의 연합작전을 실시하였다. 작전에 앞서 한라산에 귀순권고의 전단을 살포하여 최후 통첩을 하고 작전을 개시하였다. 해군함정은 37미리 포로 위협사격을 가하였고 공군의 L-4, L-5형의 연락기는 국산 수류탄과 폭탄을 투하하였다. 각 대대병력은 제주읍 일원과 한라산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반도들의 근거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다.²⁵⁹⁾

그런데 무장대와 조우해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신문보도나 미군자료에는 이 날의 작전에 대한 기록이 없다. 아마도 2월 4일 벌어진 육·해·공 합동작전²⁶⁰⁾과 혼동한 게 아닐까 여겨진다. 제2연대가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나선 때는 1월 6일로 보인다.

지난 12월 28일 본도에 상륙한 이래 침묵을 지켜오던 국군 제2연대는 지난 1월 6일 상오 3시를 기하여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고 도처에서 적의 주력을 격파하였는데 6일 상오 6시 반 명덕리(明德里, 제주읍서 약 8km)²⁶¹⁾에 도착한 국군 ○○부대는 무장폭도 약 70명과 철창, 죽창 등을 소지한 무장폭도 약 250명으로 추산되는 적 주력이 잠복 중임을 발견하여 연대장 직접 지휘하에 지형적 악조건을 극복하며 총섬멸을 위하여 적을 완전 포위하고 점차 포위망을 압축하는 동시에 적진의 정찰 및 내부 소탕을 목적으로 연대장 자신이 단신 삼엄한 적의 보초선을 뚫고 적진에 잠입하여 교묘히 폭도를 행세하고 폭도의 1인과 상면하여 폭도가 쓰는 암호를 사용하였으나 암호가 통하지 않아 결국 위기일발의 경계에서 적진을 탈출하고 돌아와 맹렬한 일대 포위섬멸 작전을 개시하여 약 4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드디어 적을 완전 섬멸상태에 빠지게 하고 다음과 같은 혁혁한 전과를 획득하였다. 적의 유기시체 153, M1소총 1정, 탄약 500발, 일본도 및 죽창 다수, 피복, 선전삿대 다수 압수, 국군 피해 전사 3명, 부상자 5명 【현지 군 검열제】²⁶²⁾

이날의 전투는 ‘적의 유기시체 153, M1소총 1정, 탄약 500발, 일본도 및 죽창 다

258) Ibid.

25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445쪽.

260) 『朝鮮中央日報』, 1949년 2월 9일.

261) 제주도에 ‘명덕리’라는 지명은 없다.

262) 『독립신문』, 1949년 1월 12일.

수, 피복, 선전빠라 다수 압수'라는 전과에 '국군 전사 3명, 부상자 5명'이라는 군 피해상황이 말해주듯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2연대 앨범에는 1월 6일 전사한 7명의 명단이 기록돼 있다.²⁶³⁾

이날 전투를 시작으로 제2연대의 작전이 본격화됐다. 무장대도 아직 제2연대가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틈을 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1949년 1월의 전면전이 재개됐는데, 무장대의 일제 99식 총으로는 제2연대의 화력을 당할 수 없었다. 특히 1949년 1월 12일 벌어진 '의귀리 전투'는 무장대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약 200여 명의 폭도가 1월 12일 새벽 6시 30분에 제주도 의귀리에 주둔하고 있는 2연대 2중대를 습격했다가 패배했다. 2시간의 접전 끝에 폭도는 51명의 사망자를 내고 퇴각했다. 반면 한국군은 2명 사망, 10명이 부상했다. 폭도로부터 M-1소총 4정, 99식총 10정, 카빈총 3정이 노획됐다.²⁶⁴⁾

군인 희생자는 두 명이 더 늘어 모두 4명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을 충훈묘지 비석을 보니, 이날 희생된 군인은 '일등상사 문석춘(文錫春), 일등중사 이범팔(李範八), 이등중사 안성혁(安星赫), 임찬수(林燦洙)'였다. 기습을 받아 4명의 희생자를 낸 제2연대의 충격도 컸겠지만, 이날 전투는 무장대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었다.

무장대원 200명이란 숫자는 여러 정황을 볼 때, 당시 무장대 세력이 거의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무장대는 이 기습공격에 전력을 쏟은 셈인데 이 중 51명의 사망자를 내고 패퇴함으로써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날 사건 이후 1월 중에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해 경찰을 공격하거나 주민들을 살해한 사건은 있었지만, 군대를 직접 공격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1949년 2월초 미군 보고서는 "제주도의 추가 보고에 따르면 폭도들의 활동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활동은 없다"고 기록했다.²⁶⁵⁾

한편 무장대의 공격은 곧 민간인에 대한 진압부대의 보복 총살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을 초래했다. '의귀리 전투' 때에도 군 주둔지인 의귀국민학교에는 중산간을 헤매다 잡혀온 주민 8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제2연대 군인들은 사건 직후 이

263) 제2연대, 『제주도주둔기』, 1949. 8.

26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37, January 14, 1949.

26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55, February 4, 1949.

들을 학교 뒷밭으로 옮겨 모두 사살하였다. 이 때 희생된 80여 구의 시신은 나중에 마을 주민들에 의해 합장되었으며 현재 의귀리에 소재한 합장 묘역에는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라는 큰 비석이 세워져 있다.²⁶⁶⁾

1월 17일에는 해안마을인 조천면 북촌리에서 가장 비극적인 세칭 ‘북촌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아침에 세화 주둔 제2연대 3대대의 중대 일부 병력이 대대본부가 있던 함덕으로 가던 도중에 북촌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숨졌다. 그러자 흥분한 군인들이 북촌리를 불태우고 주민 300여 명을 집단 총살한 것이다. 또한 군인들은 살아 남은 주민들 중 함덕리로 소개해 간 북촌리 주민 100여 명을 또다시 총살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로서 대대장 차량 운전수로 차출됐던 김병석은 놀랄만한 증언을 했다. 김병석은 “이미 집들을 다 불태워 버린 상태에서 그들을 수용할 대책이 없어 죽였으며, 군인 개개인에게 총살의 경험을 주기 위해 박격포 대신 총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²⁶⁷⁾

한편 1949년 1월 무렵 제주의 모든 해변마을들이 성으로 둘러 쌓이게 되었다. 1948년 12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축성 작업에 대해 한 언론은 “축성에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적극성을 띠게 되어 만리장성을 연상케 하는 장장 12만여m의 축조를 단시일에 준공하여 부락내의 자가숙청(自家肅淸), 폭도내습에 만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²⁶⁸⁾라고 설명했다. 도민들은 만리장성을 연상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役事)인 이 축성작업에 동원돼 큰 곤욕을 치렀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도피한 상태에서 주로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이 노역에 시달렸다.

해변의 모든 마을을 성으로 두르고 주민들에게 보초를 서게 함으로써 무장대는 더욱 고립되어 갔고, 이로써 해변마을로 소개한 주민들은 더 이상 무장대 지원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자 가족 총살’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중산간마을에 남아 있는 주민들의 희생도 여전했다. 이미 제9연대 주둔기인 1948년 11월과 12월 중에 벌어진 군·경의 방화로 집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해변마을로 소개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마을 인근에 있는 굴이나 숲 속에 숨어 힘든 겨울을 나고 있었다. 이들은 제2연대의 산악지역 진압작전 때 발각돼 총살되는 사례도 많았다.

266)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⑤, 전예원, 1998, 141~142쪽.

267) 김병석(73세, 조천읍 함덕리, 당시 경찰, 2002. 2. 1. 체록) 증언.

268) 『自由新聞』, 1949년 3월 22일.

1949년 1월 25일 미군사고문단은 어린이를 포함한 남녀 97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각 시체에는 5~6발의 총알이 박혀 있었는데, 빈 클립과 탄피 등으로 볼 때 M-1소총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군과 경찰 모두 자신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미군사고문단은 보고했다.²⁶⁹⁾

2월 20일 제주읍 도두리에서 군과 경찰의 감독 아래 5명의 여인과 중학생 나이의 소년이 포함된 76명이 민보단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미군사고문단에게 목격됐다. 그런데 미군사고문단은 자신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38명은 이미 죽어 있었고, 38명의 처형에 대해서는 목격했다고 보고했다.²⁷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던 미군이 살해 현장을 방치한 채 단지 목격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미군이 대규모 민간인 희생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949년 2월에 접어들면서 주민희생은 더욱 커져갔다. 특히 2월 4일 제주읍 봉개지구(봉개리·용강리·회천리) 주민들은 집단희생을 당했다. 육해공 합동으로 펼쳐진 대규모 작전이기 때문인지 이 날의 '전과'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지난 4일 상오 3시를 기하여 제주읍 봉개지구에서 함병선 연대장 지휘 하에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전개되어 방금 무장폭도와 치열한 격전을 하고 있다 하는 바, 그동안 제2대대 제7중대의 과감한 용사들은 소위 인민군 재판장 강태문, 암살대장 박응수 등을 비롯한 폭도 간부들을 체포하고 제3대대에서는 반란군 1등중사 고영준을 체포하는 등 다대한 전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판명된 전과는 다음과 같다. 사살 360명 포로 130명 기타식량 의류등 다수압수 (국방부 검열제)²⁷¹⁾

무장대를 360명 사살하고 130명을 포로로 잡았다면, 이미 보름 전인 1949년 1월 중순경 내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무장대 숫자 '150명 내지 400명'²⁷²⁾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날의 전과로 인해 무장대는 완전히 궤멸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희생자들은 대부분 비무장 민간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발빠르게 도망치지 못한 노약자들이었다. 군인들의 방화로 집을 잃은 채 마을 인근의 굴속이나 숲에서 겨

26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55, February 4, 1949.

27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77, March 3, 1949.

271) 『朝鮮中央日報』, 1949년 2월 9일.

272) 『國務會議錄』 제10회, 1949년 1월 17일.

울을 넘기던 주민들이 새벽에 급습한 군인들에게 집단희생 당한 것이었다.

봉개·용강·회천리 주민들은 이미 집들이 모두 불에 탄데다 이날의 사건으로 주민들이 집단희생을 당해 ‘쑥밭’이 되었다. 그런데 함병선 연대장은 사태가 거의 종료된 후 주민들이 다시 모여 마을을 재건하자 자신의 성을 따서 마을명을 새로 짓기도 하였다. 현재는 다시 제 이름을 찾았지만 한동안 이 지역은 함명리로 불렸다. 즉 함병선 연대장의 성(姓)과 작전참모 김명(金明) 대위의 이름을 조합해 마을 이름을 ‘함명리(咸明里)’라고 바꿔버린 것이다.²⁷³⁾

한편 제2연대가 육해공 합동작전을 펼쳐 무장대 360명을 사살하고 13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전과를 과시한 바로 그 날, 다른 지역에서는 총기를 운반하던 군인들이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큰 피해를 보았다. 일제 99식 총 150정을 트럭 2대에 나눠 싣고 이동하던 군이 구좌면 김녕리 부근에서 무장대의 매복 기습을 받은 것이다. 이날 군은 총기 150정을 모두 빼앗겼고 15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²⁷⁴⁾

무장대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궤멸상태에 이르게 된 때가 언제 쯤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제2연대가 산악소탕전에 나선 3월 중순경이 아닐까 여겨진다. 제주 시찰을 마치고 귀경한 이범석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 15일 군은 해변가의 부락부터 수색을 시작하여 점점 한라산 쪽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수색 숙청된 부락은 경찰에 맡기고 부대는 한라산 서남쪽에서 폭도의 주력에 대하여 총공격하였다. 제주도의 무장폭도는 약 260명이며 그 외에 추종하는 민중은 총 한 자루에 20명씩 죽창을 들고 따르고 있다. 그간 소탕전에 의하여 폭도는 산골짜기로 도피 중에 있다”고 말했다.²⁷⁵⁾

한 잡지는 이 작전에 대해 ‘완전소탕의 주원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즉 무장대 주력이 남원면 산록지대에 잠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제2연대가 2월 15일 밤 현지로 가 야영을 했다가 16일 새벽 기습공격을 해 16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는 것이었다. 이 잡지는 이어 “적은 무장대의 반수 이상을 유기 시체로 둔 채 도망했으나 중경상을 면한 무장대는 기십명이나 될지, 비무장 철창대 등의 누적된 시체는 불계(不計)하니 그 전과가 기하(幾何)이며 반면에 산폭도의 피해는 치명상이었던 것이다. 이 섬멸적 타격을 받은 후로 종래와 같은 하산 습격이 없었다”라고 기록

273) 『濟州新報』, 1955년 2월 5일.

27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61, February 11, 1949.

275) 『京鄉新聞』, 1949년 3월 17일.

했다.²⁷⁶⁾

한편 진압부대와 무장대간의 충돌 속에서 애꿎은 비무장 민간인들이 집단희생을 당한 데에는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탓도 크다. 제9연대와 마찬가지로 제2연대도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군에 관한 일체의 보도는 정식 발표를 제외하고 모두 헌병사령부의 검열을 받아야 했기에²⁷⁷⁾ 중앙에서는 제주도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국회에서도 여순사건의 후유증만 집중 거론될 뿐이고, 제주도 사건에 관해서는 정부 측의 일방적인 발표만 계속됐다.

경찰에 의한 주민 피해도 컸다. 당시 현직 검사가 구속되는 상황은 일반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짐작케 한다. 서울지검에서 검사시보를 마치고 1949년 2월 23일부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에 임명된 양을(梁乙) 검사²⁷⁸⁾가 제주도로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 상경한 제주경찰서 형사대에 2월 28일 체포돼 제주도로 압송되었다. 판사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도 없이 마치 납치하듯 끌고간 것이었다. 특히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도 없이 현직 검사를 체포한 이 사건은 사법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권승렬(權承烈) 검찰총장은 급히 법무부장관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고, 서울지방검찰청장은 경찰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는 치안국과 연락하는 한편 제주도경찰청에 대해 양을 검사의 체포 해제를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다.²⁷⁹⁾ 그러나 김효석(金孝錫) 내무부차관은 즉각 담화를 발표, 양을 검사는 제주도 거주 당시인 1948년 10월 말경 모종의 범죄사건 관련자로 판명되어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정식 구속영장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경찰이 현직 검사를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기사는 사실무근이며 이로 인해 경찰의 위신이 손상됐으므로 기사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위협했다.²⁸⁰⁾

그러나 김 차관의 말과는 달리 양을 검사가 정식으로 구속된 것은 1949년 3월 14일이였다.²⁸¹⁾ 제주지검에서는 양을 검사가 현직 검사인 관계로 심의하기 곤란하다며 5월 30일 사건을 광주지검으로 이송했다. 양을 검사는 미군정법령 제19호 위반, 내란음모 및 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1949년 10월 3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276) 徐載權, 「平亂濟州島紀行」, 『新天地』 1949년 9월호, 176~177쪽.

277) 『朝鮮中央日報』, 1949년 1월 15일.

278) 『官報』 제46호, 1949년 2월 24일.

279) 『京鄉新聞』, 1949년 3월 1일·4일. ; 『朝鮮中央日報』, 1949년 3월 4일.

280) 『朝鮮中央日報』, 1949년 3월 6일.

281) 『東光新聞』, 1949년 11월 2일.

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무죄 구형).²⁸²⁾ 이로써 양을 검사는 2월 28일 불법 체포된 이래 큰 곤욕을 치르다가 8개월만에 풀려났는데, 제주지검에서 광주지검으로 이송되기 직전인 5월 25일부로 이미 검사 직에서 의원면직된 상태였다.²⁸³⁾

경찰이 불법적으로 검사를 체포해 고문·취조한다는 것이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순사건 때 경찰이 현직검사를 즉결총살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경찰의 위세가 검찰을 능가한 것이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이 때문에 1949년 2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 행정상황 보고의 건(내무부장관) : 경찰이 적색분자의 검거 기타 국책범죄자(國策犯罪者)를 인치검속하여 사건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즉 무죄 혹은 경한 조치를 취하여 경찰에 위신보전과 국가이익에 장애가 크므로 불평이 많으니 보조를 맞춰주기를 요청함.
- 군경 규율 단속에 관한 건(법무부장관) : 국군이 최근 천상천하 유아독존격으로 군 이외는 멸시하고 민간에 피해가 다심(多甚)하며 일본인 치하에는 군이 민간 물자를 징발하면 보상하였으나 지금은 보상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경찰도 검사를 행방불명 처분을 하는 등(제주에서 검사가 경찰관에게 유인당한 후 4개월간 행방불명이고 검사장이 행방불명되지 수주일에 이르렀음) 놀라운 일이 발생하여 민간에 원성이 점고(漸高)하니 대통령각하께서 친히 단속을 엄명하심을 요청하다.²⁸⁴⁾

내무부장관이 검찰의 온건한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자, 법무부장관이 즉각 군·경의 초법적인 횡포를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승만은 오히려 경찰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승만은 이미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제주도 사건을 발근색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거니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충돌한 지 불과 10여 일 만인 2월 23일 검찰총장이 산하 각 기관에 보낸 아래의 공문은 이승만이 경찰의 강경론에 손을 들어 주었음을 보여준다.

282) 『東亞日報』, 1949년 11월 2일.

283) 『官報』, 제99호, 1949년 5월 30일.

284) 『國務會議錄』 제18회, 1949년 2월 11일.

좌익사건 처리에 관한 건 : 수제(首題)의 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위시하여 국책으로 누차 언명된 바에 의하여 만유감(萬遺憾)이 없게 선처하실 것으로 사료하는 바이오나 최근의 제반정보에 의하면 지방에 따라서는 건국에 방해되는 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관대하여 도리어 후려(後慮)를 야기하는 사례가 불무(不無)한 듯 하오니 특히 국가 기초의 공고안정에 치의(致意)하시와 엄중 처단하실지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그 경중을 불문하고 사건접수 즉시로 범죄사실을 상세 보고하심은 물론 처단결과 역(亦) 무루(無漏) 속보하심을 요망함.²⁸⁵⁾

검찰총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지 말고 강경조치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바 내무부장관이 소위 '적색분자'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며 법무부장관을 힐난하는 바람에 서로 충돌한 지 불과 10여 일만에 법무부의 태도가 크게 뒤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월 19일 응원경찰대 500여 명을 이끌고 제주에 파견됐다가 5월 18일 서울로 돌아온 김태일(金泰日) 경무관은 지난 3개월 간의 작전에 대해 “제주도에 파견된 이래 140회 이상의 작전을 통하여 폭도를 완전히 소탕하고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돌아왔다”고 귀환보고를 했다.²⁸⁶⁾ 이 내용은 며칠 후 내무부차관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됐는데, △전과는 폭도 사살 495명, 포로 1,524명이고 △아방피해는 중상 2명, 경상 3명이었다.²⁸⁷⁾ 산악지역은 군대가 맡고 경찰은 주로 해안마을 경비에 치중했다고 하지만, 3개월 간 140여 회의 작전을 하고도 경찰 희생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과연 그 '작전'이 어떤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제2연대의 강경진압작전은 1949년 3월초까지 약 2개월 간 지속됐다. 이미 무장대는 궤멸되거나 삼삼오오 뿔뿔이 흩어져 하루하루 연명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중산간마을 부근에 있었다. 군·경에게 발각되면 현장 총살되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오도가도 못한 채 쫓겨다니고 있었다.

285) 법무부 관계서류 「좌익사건 처리에 관한 건」, 大檢秘 제114호, 1949년 2월 23일.

286) 『京郷新聞』, 1949년 5월 19일 ; 『國都新聞』, 1949년 5월 19일.

287) 『京郷新聞』, 1949년 5월 22일.

4. 사태 평정기(1949. 3. 2 ~ 1950. 6. 24)

가. 진압·선무 병용작전

1)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설치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사령관에는 유재홍 대령이, 참모장에는 2연대장 함병선 중령이 각각 임명됐다.¹⁾ 주둔군의 위상이 한층 격상된 것이다. 유재홍 사령관에게는 기존에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2연대와 유격대대 병력 외에 제주도 경찰과 응원경찰, 우익청년단 등을 통합 지휘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응원경찰인 경찰특별부대(사령관 김태일 경무관)는 이미 2월 19일 505명이 파견돼 있었다.²⁾

미군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4월 1일 현재 유 대령이 지휘하는 토벌대는 한국군 2,622명, 경찰 1,700명, 민보단 약 5만명으로 편성돼 있었다.³⁾ 또한 육군본부는 해군의 협력을 받아 함정대를 제주에 보내 유재홍의 전투사령부와 육해군 합동작전을 펴도록 했다.⁴⁾ 이 때 제주에 파견된 해군은 제3특무정대(사령관 남상휘 중령)로서, 해상봉쇄 임무를 맡았다.⁵⁾

9연대에 이은 2연대의 강경진압작전으로 무장대가 거의 궤멸된 상태인데도 새삼스레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한 까닭은 무엇보다도 5월 10일 열릴 예정인 재선거 때문이었다. 재선거를 무사히 마친 직후인 5월 15일에 전투사령부가 폐지된 것만 보더라도 그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해 진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 문제 해결에 조급함을 드러낸 이유 중에는 5·10재선거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말로 예정된 미군 철수를 앞두고 무기원조와 경제원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매우 초조해 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4월 9일 제주를

1)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3집, 1949년 3월 2일.

2) 『自由新聞』, 1949년 5월 19일.

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4) 『陸本 作命 甲發』 제57호, 1949년 3월 17일.

5) 『京鄉新聞』, 1949년 5월 17일.

시찰했을 때 “정부와 미국인은 항상 제주에 대하여 많이 근심하고 있으며 구호물자도 곧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⁶⁾ 이 대통령이 굳이 ‘제주사건에 대한 미국인의 걱정’을 의식한 까닭은 한국을 반공국가화 하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원조법안’의 단서조항에 잘 표현돼 있다.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극동지역에서 민주주의 보루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억 5,000만 달러의 대한원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하원에 요청했다.⁷⁾ 이 ‘한국원조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논란을 벌인 끝에 6월 30일 비밀회의로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그런데 미 하원은 “여하한 기타 법률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운영하는 당국자는 대한민국에 1인 또는 1인 이상의 공산당원 또는 현재 북한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정당의 당원을 포함한 연립정부가 조직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원조를 즉시 중지한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해 법안을 가결시켰다.⁸⁾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반공조건부 대한원조안’이라고 표현했다.⁹⁾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된 기간은 1949년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이지만, 유재홍 사령관이 이 기간 내내 제주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한 미군 비밀문서는 “유 대령은 3월 초에 제주도 (사령관)에 임명(detail)되어 이범석, 한국군 총사령관 채병덕 장군 등 고위 관리와 연쇄회담을 가진 후 3월 마지막 주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지휘권을 잡았다”고 기록했다.¹⁰⁾ 이처럼 유 사령관이 제주에 도착한 것은 3월 2일이 아니라 3월 마지막 주였다. 따라서 유 사령관은 3월 27일(일요일)부터 3월 31일(목요일) 사이의 어느 날 제주에 도착한 것이다. 당시의 신문 기사들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949년 3월 말까지 제주사건 관련 기사에 ‘유재홍’이란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제주도 주둔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함병선’이란 이름이 여전히 등장한다.¹¹⁾ 제주사건 관련 기사에 ‘유재홍’이 처음 등장한 것은 4월 초 신성모 국방장관이 내도 했을 때이다.¹²⁾

6) 『自由新聞』, 1949년 4월 12일.

7) 『東亞日報』, 1949년 6월 22일.

8) 『自由新聞』, 1949년 7월 2일.

9) 『國務會議錄』 제63회, 1949년 7월 1일.

10) “Visit to the Island of Cheju,” May 18, 1949,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Entry 85: Army-Intelligence Document File, Box 3736.

11) 『自由新聞』, 1949년 3월 20일·22일.

12) 『自由新聞』, 1949년 4월 10일.

따라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의 작전을 함병선 2연대장이 주도한 제1기(3월 2일~3월 마지막 주)와 유재홍 사령관이 비로소 제주에 도착해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 제2기(3월 마지막 주~5월 15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1기와 2기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함병선 2연대장은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된 첫 달의 작전 방침에 대해 “온건 완화 작전을 취하여 오던 국군은 최후적 결의를 갖고 제3단계인 무력소탕 태세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3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의 일대 섬멸전이 그것이다”고 밝혔다.¹³⁾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보도대는 사령부 설치 초기의 작전(3월 9일~15일)에 대해 이렇게 발표했다.

16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보도대에서는 국군 제2연대가 제3단계의 작전에 돌입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는 폭도들에 대하여 철퇴를 내린 3월 9일 이후 동 15일까지의 작전 전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사살 181명, 포로 195명, 소총 3, 카빈소총 3, 99식소총 12, 수류탄 2, 탄약 34 등 노획 【제주 발 합동】 (국방부 보도과 검열제)¹⁴⁾

이 무렵 제주를 시찰한 한 국회의원은 “3월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총공격을 개시하였다”고 전했다.¹⁵⁾ 이와 관련, 국방부 보도과에서는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지구 전과에 대해, “제주도지구=(전과) 사살 171명, 포로 196명, M1소총 3정, 카빈소총 3정, 99식 소총 13정, 실탄 15발. (손해) 민보단 전사 1명, 부상 3명”이라고 발표했다.¹⁶⁾

국방부 보도과가 최종 발표한 종합전과(3월 1일~31일)를 보면, “△전과=사살 821명, 포로 999명, 무기 35정, 실탄 30발, 창 12정, 식량 49가마, 일본도 4정, 첩모 16개, 통신기 2대, 기밀서류 166부, 명부 185부 △아방피해=군 전사 27명·부상 15명, 경찰 전사 17명, 민간 전사 1명”이다.¹⁷⁾

사살·포로자 숫자에 비해 노획한 무기가 너무 적다는 점은 함병선 연대장이 주도한 3월 한 달 동안의 이른바 ‘섬멸전’의 성격을 말해 준다. 사살·포로자 중에는

13) 『京郷新聞』, 1949년 6월 29일.

14) 『朝鮮中央日報』, 1949년 3월 20일.

15) 『自由新聞』, 1949년 3월 23일.

16) 『自由新聞』, 1949년 3월 22일.

17) 『東光新聞』, 1949년 4월 10일.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피난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를 견디며 숨어 지내던 비무장 민간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미군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토벌대의 전과를 ‘반도(rebel) 사살 1,075명, 반도 체포 3,509명, 반도 투항 2,065명’이라고 보고하면서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반도(rebel)’는 토벌대가 섬 안쪽 산악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자동적으로 반도(rebel)라고 분류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는 논평을 했다.¹⁸⁾ 중산간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반도’라고 전제해 놓고 사살·체포한 후 이를 ‘전과’로 보고한 것이다.

이같은 작전은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한 미군 보고서는 1949년 3월말까지의 제주 상황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1만 4,000명~1만 5,000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최소한 80%가 토벌대에 의해 살해됐다. 섬에 있는 주택 중 약 1/3이 파괴됐고, 주민 30만 명 중 약 1/4이 자신들의 마을이 파괴당한 채 해안으로 소개당했다”고 기록했다.¹⁹⁾

한편 3월 마지막 주에야 비로소 제주에 도착한 유재홍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은 선무공작을 실시하는 한편 지금까지 해안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을 산악지역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연대본부와 작전 병력만 제주읍에 남고, 제1대대는 현재의 제1횡단도로 수악교(水岳橋) 부근, 제2대대는 관음사, 제3대대는 조천면 교래리, 그리고 특수부대는 노루오름에 주둔하는 등 산악지역으로 전진 배치한 것이다.²⁰⁾ 여기서 특수부대란 2연대 전 작전참모 김명 대위가 지휘하는 50명 규모의 부대로서 산악지역을 배회하다 무장대를 만나면 제주사투리를 구사해가며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이었다.²¹⁾ 해변마을에서는 주민들을 집결시킨 가운데 상공에 정찰기를 날게 하거나 로켓포 시범사격을 보여줌으로써 위세를 과시하는 등 진압·선무 병용작전을 폈다.²²⁾ 이 때의 작전에 대해 유재홍은 이렇게 말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산중에 피난민 2만 명 정도가 있었어. 그리고 바닷가에는 경찰·군인이, 산쪽에는 공비하고 피난민이 있는 등 서로 갈라져 있으면서 밤이 되면 욱

1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13, May 9, 1949.

1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20) Ibid.

21) Ibid.

22) 『서울신문』, 1949년 4월 1일.

하고 싸우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나는 ‘군인은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라, 공비토벌 해야 한다’며 3개 대대와 1개의 유격대대 등 4개 대대를 한라산 중북지역으로 이동시켰어. 처음에는 각기 전투지역이 있으니까 각 대대가 다니면서 소탕을 했고, 마지막에는 내가 4개 대대를 기동시키면서 작전을 했지.²³⁾

유재홍 사령관은 남아 있는 무장대 체포와 특히 ‘2만 명 가량의 피난민’을 하산시키기 위한 작전계획을 세웠다. 1949년 4월 1일자 미군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논평(comment)’을 통해 향후 작전방침을 시사했다.

현재 전체적인 전망이 희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50여 명의 무장반도가 사살·생포되거나 무기를 탈취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군 측의 일방적인 작전 중지는 새로운 테러의 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체포된 한 반도지도자는 그의 동료들의 현재 정책은 군대가 철수할 때까지 숨어있는 것이라면서 그 때가 되면 공격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 지휘자는 전면작전으로 반도들을 은신처에서 찾아내려 하고 있으나 게릴라들은 이동을 계속하면서 활동을 중지해 버려 별 효과가 없다. 현재의 계획은 4월 중순 이전에 게릴라들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것인데 다소 낙관적이다. 그것은 어쨌든 지금 고려중인 다른 계획, 즉 군부대와 민보단으로 섬을 완전히 횡단하는 선을 형성, 산을 빗질하듯 쓸어내려 반도들을 섬의 반대쪽에 진치고 있는 경찰 쪽으로 몰아간다는 계획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식의 작전은 거리 면이나 험악한 지형 등으로 볼 때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거나 효과적일 것이다.²⁴⁾

250여 명의 무장대를 색출하기 위해 민보단원까지 총동원해 섬 전체를 빗질하듯 쓸어 내린다는 것이 1949년 4월부터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3월 2일 창설부터 5월 15일부로 그 임무를 마칠 때까지 두 달여 기간의 전과에 대해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과반 빛나는 개선을 한 제주도 전투부대 발표에 의하면 동부대의 종합적인 폭도소탕전과와 손해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전과(3월 1일~5월 11일)

△ 무기압수 : 자동소총 3, M1총 25, 카빈 28, 99식총 106, 38식총 2, 44식총

23) 劉載興(82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당시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 국방장관 역임, 2002. 9. 6. 채록) 증언.

2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4, 30식총 4, 피스톨 9, 폐총(廢銃) 25, 기타 무기 224
△ 포로·귀순자 6,117, 사살 1,117
△ 아군손해 : 전사 35, 부상 17, 민보단원 전사 1125)

한편 김태일 경무관은 각처에서 차출한 경찰특별부대 500여 명을 이끌고 2월 19일 제주에 파견됐다가 5월 18일 서울로 돌아왔다.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와 비슷한 기간 제주에서 작전을 한 이 경찰특별부대의 전과에 대해 내무부차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2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경찰이 올린 전과는 △폭도 사살 495명, 포로 1,524명, 미식 경기관총 1정, M-1·38식·99식·카빈총 50여개 노획, 식량 950가마, 의류 1,034점, 침구 207점, 식기 834점, 가구 455점 압수. △아방피해=중상 2명, 경상 3명, 자동차 소·중과 2대²⁶⁾

이상 군과 경찰의 전과를 종합하면 포로·귀순자가 7,641명, 사살이 1,612명이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이 밝힌 무장대 수는 많은 진압작전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늘 '250명 가량'이었다. 이는 9연대와 2연대 초기의 진압작전 때만큼 주민희생이 컸던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설치 초기인 1949년 3월 말까지는 함병선 2연대장의 소위 '섬멸전'이 여전히 계속되었음을 말해준다.

2) 선무공작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3월 2일 첫 출범하면서부터 강경작전과 함께 '선무공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월 10일 제주 시찰에 나선 이범석 총리는 "토벌을 능률적으로 하는 한편 선무공작을 활발히 하여 관대한 태도로써 폭도의 반성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작전 방침을 시사했다.²⁷⁾ 이범석 총리의 이 발언은 도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한 증언자는 당시 이범석의 강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5) 『朝鮮日報』, 1949년 5월 20일.

26) 『京鄉新聞』, 1949년 5월 22일.

27) 『自由新聞』, 1949년 3월 16일.

이범석 총리가 내도해 관덕정 앞에서 강연을 했어. 나는 그가 군인 출신이니까 더욱 무지막지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 그런데 전혀 아닌거야. 조병옥과는 달랐지. 이범석 총리는 ‘미군장교가 주민들이 집단총살 당한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줬는데 이 정도로 비참한 줄은 몰랐다’는 말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강경토벌전을 반성하거나 특별히 도민들을 위무하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에 이승만이나 조병옥이 와서 했던 말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그 정도 말을 했다는데 감탄했었지.²⁸⁾

선무공작 방침은 중산간마을들이 이미 초토화됐고 무장대도 거의 궤멸됐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 유재홍은 자신이 처음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에 대해 “하야간 해안선에서 위로는 다 태워버려 없어진 상태였고, 산중에는 피난민 2만명 가량과 무장공비 230명 가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²⁹⁾

국방부에서 펴낸 한 책자는 이 무렵의 상황에 대해 “해안에서 한라산으로 4km 이내의 부락은 대부분 군경의 토벌작전에서 초토화되었으므로 주민들은 대부분이 산중으로 피난하여 반도들과 야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약 15,000명을 하산시켜 수용하고 대민사업을 실시하였다”라고 적고 있다.³⁰⁾ 유재홍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은 제주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막 돌아왔을 당시에도 “폭도 중에 진짜 공산도 배라는 것은 극히 적고 무지로 휩쓸리어 들어간 자가 많았다. 우리는 이들을 귀순시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라고 경험담을 털어놓았다.³¹⁾

또한 산중에 숨어있는 주민들을 하산시켜 사태를 완전히 종결짓기 위해서는 주민 구호대책이 요구됐다. 제주도에 있는 스위니(Austin Sweeney) 신부가 서울의 한 신부에게 “만약 여기가 문명화된 나라라면 광범위하게 ‘제주도를 돕는’ 계획을 당장 실시할 것이다. 주민들은 짐승같이 살고 있으며 평균 하루에 고구마 한 개를 먹고 있다”³²⁾고 전할 정도로 당시 제주도의 상황은 너무도 비참했다.

3월 10일 이범석 총리와 함께 제주를 시찰했던 신성모 내무부장관은 “당면하고

28) 金亨中(88세, 제주시 이도1동, 당시 제주도청 공무원, 2002, 9, 13 채록) 증언.

29) 劉載興 증언.

3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445쪽.

31) 『朝鮮日報』, 1949년 5월 18일.

32) “Letter from Father Austin Sweeney, Catholic Missionary, Cheju Island, to Father George Carroll, Catholic Missionary, Seoul,” February 15, 1949, Enclosure No. 1 to Despatch No. 145 dated March 14, 1949 from American Mission in Korea, RG 263: Record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Entry: Murphy Papers: The Murphy Collection on International Communism, 1917-1958, Korea, Box 69.

있는 긴급하고 곤란한 문제는 전기 작전 이외에 재민(災民) 및 귀순자의 구호문제로, 매일 증가하고 있는 그들에게 식량, 의복, 주택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 반도에 가담할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³³⁾ 이 무렵 제주를 시찰했던 한 국회의원은 이재민의 실태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이재민수 86,797명으로 차등(此等) 이재민은 식량, 의류를 운반할 틈도 없이 피난한 관계로 문자 그대로 돼지우리처럼 만든 집 속 땅바닥에 건초를 깔고 그냥 거하며 해초 산초로써 그날그날 겨우 연명하여 가는 형편이고 누구 할 것 없이 허기에 신음하고 있으며 집 내외는 악취가 진동하여 견딜 수 없었다. 위문을 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만 지을 뿐 이 가련한 꼴을 바라보는 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다.³⁴⁾

이에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에서는 군 작전에 치중하면서도 이 때 발생하는 민간의 행정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령부 내에 민사처를 설치했다.³⁵⁾ 또한 주민 위무를 하기 위해 3월 18일 육군 군악대가 제주에 파견됐다.³⁶⁾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의 작전은 함병선 2연대장이 진압작전을 주도한 제1기와 3월 마지막주 유재홍 사령관이 도착한 이후인 제2기로 나뉜다. 선무공작은 제2기 때부터 비로소 시작됐다. 한 미군 비밀문서는 제1기 '가혹한 작전(severe tactics)'과 제2기 '사면계획(program of amnesty)'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지휘권을 잡은 즉시 유(재홍) 대령은 전임자 함병선의 가혹한 작전(이 작전은 신분이나 무기의 소지여부를 가리지 않고 폭도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사람을 사살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바꾸어 즉각적으로 사면계획을 시작하였다. 가능한 한 포로들을 붙잡아서 유 대령 자신이 직접 심문하였다. 포로들은 양심의 가책을 나타냈으며 만일 그들이 게릴라 전투요원으로 가담한 자가 아니면 음식과 담배 등을 주어서 석방하였다. 현재까지 이러한 방법의 결과는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석방된 포로들은 유 대령의 부대를 무기 은닉처로 안내할 것이며 그들의 동료들에게 항복하면 모두 사살

33) 『朝鮮中央日報』, 1949년 3월 17일.

34) 『自由新聞』, 1949년 3월 23일.

35) 『朝鮮中央日報』, 1949년 3월 17일.

36) 『陸本 作命 甲發』 제50호, 49년 3월 4일.

당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퍼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유 대령은 자신의 사면계획 하에서 석방된 포로들마다 최소한 6명씩을 데리고 왔다고 추산하고 있다.³⁷⁾

이와 관련 유재홍은 “제주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서북청년들의 횡포를 막으면서 ‘과거 일은 불문에 부칠테니 안심하고 내려오라’고 선무했고 또 실제로 몇 군데 그렇게 한 결과 소문이 나서 매일 몇 천명씩 내려오니까 2만 명이 금방 내려오게 되었다”고 증언했다.³⁸⁾

이같은 ‘귀순자’ 증가에 관해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제주를 시찰하고 온 이윤영 사회부장관은 “요즘 귀순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내가 갔다운 1주일간만 하더라도 898명이나 귀순자가 있었고 4월 13일 현재 합계 3,500명이 돌아왔었다. 제주도 5개 수용소에 있는 자가 3,174명이 있다”고 말했다.³⁹⁾ 귀순자는 점점 늘어 5월 11일 현재 6,000여 명에 달했다.⁴⁰⁾

그렇다면 급격히 늘어나는 포로·귀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승만 대통령은 강경진압작전으로 무장대가 궤멸됨으로써 사태가 완화될 무렵인 1949년 4월 9일 제주도 시찰에 나섰다 돌아온 후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전략) 귀화한 공산분자가 남녀 합하여 2,800명에 달하였으나 아직도 겁이 나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수효가 몇 천명 된다는데 가장 곤란한 것은 여러 촌락이 불에 타서 의지할 곳도 없고 먹고 입을 것이 없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중략)

무식한 남녀들이 공산당 선전에 속은 자도 있고 또는 집이 다 불에 타 갈 곳이 없어 도로 올라간 자도 있었으나 산상에서 살 수도 없고 식물은 더 도적할 수도 없어 형용이 말 아닌 남녀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온 것이 2,800여 명인데 이 사람들을 다 넓은 공청에 칸을 나눠서 거처시키며 하루 두 끼씩 밥을 먹이는데 반찬이 없으면 물론이오...⁴¹⁾

담화문에 나오는 ‘귀화한 공산분자 2,800명’과 ‘형용이 말이 아닌 남녀가 어린아이

37) “Visit to the Island of Cheju,” May 18, 1949,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Entry 85: Army-Intelligence Document File, Box 3736.

38) 劉載興 증언.

39) 『東亞日報』, 1949년 4월 15일.

40) 『朝鮮日報』, 1949년 5월 20일.

41) 『朝鮮中央日報』, 1949. 4. 13.

들을 데리고 내려온 2,800명'은 같은 사람들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한 증언자는 국민학교에 다니던 1948년 가을경 산에 오르는 바람에 '폭도'가 됐다가 1949년 4월 군인들에게 잡혀 '포로'가 되어 주정공장에 마련된 포로수용소에 갇히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증언했다.

부모님이 4·3사건 전에 일본으로 가셨기 때문에 나(12살)와 누이동생(4살)은 할아버지 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9월~10월경 밭일 할 소를 사리 집을 나섰던 할아버지(김연반·당시 61세)가 9연대 군인들에게 붙잡혀 돈을 빼앗긴 채 총살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48년 가을 어느날, 경찰들이 오후 3~4시경 마을에 와서 오라1구 공회당에 남녀노소 모두 모이라고 했어요. 약 200~300명의 주민이 모였는데, 경찰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참 후에 머리를 드니 주민 10여 명이 앞에 끌려나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리에게 “잘 보라”면서 불려나간 사람들을 즉각 쏘았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누군가 손가락질을 한 것이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회당 사건이 벌어지자, 그간 행방불명됐던 작은아버지가 나타나 “이제 살기 위해서는 모두 산에 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11월경 할머니(50대), 작은어머니, 사촌누이(1살), 나, 누이동생 등 온가족이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열안지오름 부근에 있었는데 토벌대가 다가오자 매일 더 깊숙한 산속으로 오르며 굴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등이 바닥에 얼어붙어 뿌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굴속은 추웠습니다. 하루에 겨우 한끼를 먹으며 살았지요. 또 총소리만 나면 벌벌 떨 정도로 공포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1949년 4월경 군인들에게 굴이 발각됐지요. 군인들이 굴 안으로 총을 쏘자 모두 나왔습니다. 농업학교 창고로 갔다가 다시 주정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 있었지요. 한 사람씩 취조를 했는데, 나는 부모가 없다고 하니 취조관은 “고아원!”하고 말하며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계시니 고아원에 가진 않았지요. 내가 당시 17살 정도만 됐어도 죽었을 것인데, 12살인데다 못먹어 뼈쩍 말랐던 완전히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살았지요. 그런데 작은어머니(현재생, 26세)는 산에서 심하게 감기를 앓아 붙잡힌 후 주정공장으로 보내지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진학을 원했습니다만, 선생님은 “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육사에 갈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⁴²⁾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 담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산자 대부분이 '공산당 선전에 속거나 집이 불에 타 갈 곳이 없어 도로 올라간 자'임에도 그동안에는 이들을 '폭도'

42) 金炳鍾(65세, 日本 大阪市 東城區, 2001. 12. 25. 채록) 증언.

라 하여 무차별 총살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귀순자들은 철저히 검색됐다. 미군 보고서에는 1949년 4월 1일 현재 귀순자 처리 상황에 관해 이렇게 기록돼 있다.

현재의 정책은 작전 중에 체포됐거나 자발적으로 투항했거나를 불문하고 산에서 내려온 모든 사람을 구금하는 것이다. 여자, 어린이, 노인은 대부분 피난민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전투 가능 연령의 남자들은 피난민 지위가 부여되기 전에 철저히 검색되고 교육된다.⁴³⁾

한편 유재홍 대령은 5·10재선거가 무사히 실시되자 5월 13일 제주를 떠났다.⁴⁴⁾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5월 15일자로 그 임무를 2연대에게 맡기고 공식 폐지되었다.⁴⁵⁾ 또한 제2연대 병력 중 유독 서북청년회 단원들로만 구성된 제3대대는 5월 15일 전투사령부와 함께 제주에서 철수했다.⁴⁶⁾ 2연대 3대대를 철수시킨 것은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로버츠 준장은 2연대 3대대 뿐 아니라 경찰에 소속돼 있는 서북청년회 출신들을 본토로 복귀시켜 널리 분산시키라고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시달렸다.⁴⁷⁾

당초 미군은 군과 경찰에 서북청년회가 투입돼 지원하는 것을 칭찬하며 장려해 왔다.⁴⁸⁾ 그러나 사태가 완화된 후에도 서청의 횡포가 지속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자 뒤늦게 서청을 철수시킨 것이었다. 5월 18일에는 경찰특별부대가 3개월간의 작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로써 유혈 참극의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됐다.

그런데 유재홍 대령은 선무공작을 실시하면서 “하산을 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유 대령이 제주를 떠나고 난 후 1,600여 명이 총살당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내졌다.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폐지 이후 제주는 다시 2연대 함병선 연대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사령부 폐지와 동시에 2연대 제3대대가 제주를 떠난 데 이어

4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44) 『東光新聞』, 1949년 5월 15일.

45) 『陸本 作命 甲發』 제81호, 1949년 5월 5일.

46) 위와 같음.

47) “Minutes of Conference, 16 April,” April 16, 1949,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8.

4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51, October 1, 1948.

5월 25일에는 유격대대가 배속 해제돼 철수함으로써 병력이 크게 줄었다.⁴⁹⁾ 이후 2연대는 6월 20일 육군본부 직할로부터 해편돼 수도경비사령부에 편입됐다가,⁵⁰⁾ 7월 7일에는 제주에서 철수해 인천으로 이동했다(1대대까지 완전 철수한 것은 '8월 13일'임).⁵¹⁾ 이로써 함병선 중령의 제주 주둔기는 1948년 12월 29일 제주에 온 이래 8개월 남짓한 기간이었다.

한편 국민보도연맹 창립 선포대회가 1949년 6월 5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점차 그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다.⁵²⁾ 보도연맹은 남로당 탈당 전향자를 계몽 지도한다는 명분 아래 출범했는데, 주로 좌익세력을 하나의 조직 안에 묶어 통제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중앙과 달리 제주지역은 이미 4·3사건을 겪으면서 좌파나 무장대원은 물론 군·경의 눈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갈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희생됐기 때문에 새삼스레 보도연맹을 조직할 필요조차 없었지만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전국적인 움직임 속에서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보도연맹에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말일까지 2회에 걸쳐 '전향자 자수 주간'을 정해 대대적인 회원 모집에 나섰다. 이 때 보도연맹 측이 발표한 모집 숫자는 1949년 11월 27일 현재 전국적으로는 3만 9,986명이고, 제주는 5,283명에 이르렀다.⁵³⁾ 보도연맹원들은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곧 예비검속돼 집단 총살당했다(구체적인 실상은 본 보고서 IV장 2절 '예비검속자 살상'에 정리되어 있다).

3) 5·10 재선거 실시

이승만 대통령은 무장대가 대부분 궤멸되어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자 작년에 무산됐던 제주도 2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949년 3월 중순경 김동성(金東成) 공보처장은 오는 5월 10일을 기하여 양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단행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⁵⁴⁾

재선거 날짜가 다가오자 정부 인사의 제주방문이 줄을 이었다. 4월 7일 신성모 국

49) 『陸本 作命 甲發』 제92호, 49년 5월 10일.

50) 『國防部 一般命令』 제18호, 1949년 6월 14일.

51)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3집, 1949년 7월 7일.

52) 『東亞日報』, 1949년 6월 6일.

53) 『서울신문』, 1949년 12월 2일.

54) 『自由新聞』, 1949년 3월 20일.

방부장관⁵⁵⁾과 이운영 사회부장관이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제주도에 왔다. 이들은 “잔존 무장대를 하루 속히 전멸시키고, 제주도 경제 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특명”이라고 밝혔다.⁵⁶⁾

4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직접 제주를 찾아 치안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관덕정 앞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인 환영대회에 참석, “아직도 반도들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매우 섭섭하다. 그러기 때문에 양 장관을 맞이한 군경민은 합의 하여 하루 속히 제주의 평화를 건설할 것을 바란다”며 조속한 사태 진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나 미국인은 항상 제주에 대하여 많이 근심하고 있으며 구호 물자도 곧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⁵⁷⁾

제주도를 비롯해 각 지역의 부대 시찰을 마치고 14일 귀임한 신성모 국방장관은 15일 기자단과 만나 “제주도 한라산 폭도는 전부 분산되어 대통령의 말과 같이 섬멸 진압은 시간 문제다. 일선 장병에게 최후의 1인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멸하라고 격려하였다”며 제주사태가 진정되고 있음을 밝혔다.⁵⁸⁾

유엔한국위원단은 재선거 실시에 앞서 치안상태 등을 살피고자 4월 18일 현지 시찰에 나섰으나 제주 상공의 안개로 인해 착륙하지 못해 되돌아갔다.⁵⁹⁾ 이들은 재선거 실시 이틀 전인 5월 8일 제주도에 도착해 선거를 참관하고 14일 귀환했다.⁶⁰⁾

북제주군 갑·을구 2개 선거구에 대한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도내 인사 외에 민주국민당 선전부장 함상훈(咸尙勳)도 입후보했다.⁶¹⁾ 심지어 서북청년회 중앙단장 문봉제(文鳳濟)도 북제주군 을선거구에 입후보했다.⁶²⁾

5월 10일 실시된 재선거는 1년 전과 달리 무사히 진행됐다. 유권자 등록률은 갑구 96%, 을구 97%로 1년 전과 달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투표율도 갑구 97%, 을구 99%를 기록했다.⁶³⁾ 개표 결과 북제주군 갑구에서는 홍순녕(洪淳寧)이, 을구에

55) 초대 국방부장관은 이범석 총리가 겸직하였으나, 1949년 3월 21일자로 내무부장관이던 신성모가 국방부장관이 되었으며 이범석은 총리 직만 전임케 됐다(『官報』 제68호, 1949년 4월 2일).

56) 『國都新聞』, 1949년 4월 10일.

57) 『自由新聞』, 1949년 4월 12일.

58) 『서울신문』, 1949년 4월 16일.

59) 『東光新聞』, 1949년 4월 21일.

60) 『東光新聞』, 1949년 5월 19일.

61) 『朝鮮日報』, 1949년 4월 16일.

62) 『朝鮮日報』, 1949년 5월 12일.

63) 『國都新聞』, 1949년 5월 15일.

서는 양병직(梁秉直)이 당선되었다.⁶⁴⁾

나. 무장대 약화

1) 이덕구 사살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벌어진 9연대와 2연대의 강경진압작전에 이어 1949년 3월 설치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의 '산악소탕전'과 '귀순공작'의 결과 무장대 세력은 거의 궤멸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949년 4월 7일 제주를 시찰한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전투사령부로부터 “수일 전에도 산중 적비(赤匪)의 중요간부 다수가 귀순하였는데 그들이 진술한 바와 아등(我等)이 정찰 판단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현재 남아 있는 무장폭도는 40~50명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⁶⁵⁾ 그 무렵 한 언론은 “3월에 이르러는 이덕구 이하 20여 명이 무기를 땅에 묻고 분산하는 운명에 빠졌으며 서로가 투항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무장대 출신 포로의 말을 전했다.⁶⁶⁾

이어 4월 중순경에는 무장대 간부급이 사살 혹은 생포됨으로써 무장대 세력이 실질적으로 와해되었다.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보도대장 이창정 소령은 “4월 21일 드디어 남로당 당수인 김용관을 사살했다. 이로써 소탕전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밝혔다.⁶⁷⁾

6월 7일에는 무장대 총책 이덕구가 사살됐다. 무장대 세력이 이미 와해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덕구는 김달삼에 이어 무장대의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주는 영향은 컸다. 이에 고무된 국방부는 제2연대의 활약으로 사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⁶⁸⁾ 그러나 이덕구는 경찰의 작전에 의해 사살된 것이다. 한 언론은 이덕구 사살 소식을 이렇게 보도했다.

64) 『國都新聞』, 1949년 5월 14일 ; 『東光新聞』, 1949년 5월 14일.

65) 『朝鮮日報』, 1949년 4월 19일.

66) 『國都新聞』, 1949년 4월 23일.

67) 『京鄉新聞』, 1949년 4월 26일.

68) 『東亞日報』, 1949년 6월 10일.

【제주발 합동】 제주도 반도사령관 이덕구(李德九)는 지난 7일 경찰부대에게 사살되었다. 즉 제주경찰서 화북지서 김영주(金英柱)경사가 지휘하는 경찰부대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속칭 작은가오리 부근 정글 속에서 반도사령관 이덕구 부대와 교전 끝에 이덕구를 사살하는 한편 그의 보신부하 1명을 포로하였다 하는데 당시 이덕구 사체는 방금 제주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다.⁶⁹⁾

경찰은 이덕구의 사체를 나무 십자가에 묶어 하루동안 제주경찰서 정문 앞에 전시했다가 화장 처리했다. 이덕구의 외조카로서 당시 사체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받고 외삼촌의 주검을 확인했다는 강실(康實)은 이렇게 증언했다.

시신은 관자놀이에 총알 1발 맞은 것 외에는 깨끗했습니다. 시신은 하루동안만 전시됐습니다. 장마철에 아침부터 매달아 놓으니 저녁 때쯤 되니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남수각에서 시신을 화장한 후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뼈라도 수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비가 많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리는 바람에 수습하지 못했습니다.⁷⁰⁾

2) 주둔부대 교체

① 독립대대

1949년 7월 15일 김용주(金龍周) 중령이 이끄는 ‘독립 제1대대’가 제주로 이동해 2연대의 임무를 이어받았다.⁷¹⁾ 독립 1대대는 육군 수색학교의 후신이었다. 육군 수색학교(교장 김용주⁷²⁾)는 학교장이 이끄는 예하 유격대대가 1949년 1월 31일까지 경남 산청으로 이동해 제5여단장의 지휘를 받아 지리산지구 작전에 참여한 바 있고⁷³⁾, 2월 27일 지리산지구전투부대(사령관 정일권) 편성 때에도 이 유격대대가 포함⁷⁴⁾ 되는 등 그동안 주로 지리산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온 전투부대였다. 그러던 중 6월 20일 ‘독립 보병 제1대대’로 개칭된 후⁷⁵⁾, 7월 15일 경기도 수원외의 주둔지

69) 『東光新聞』, 1949년 6월 11일.

70) 康實(64세, 日本 兵庫縣 尼崎市 東園 田町, 2001. 12. 27 채록) 증언.

71)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3집, 1949년 7월 15일.

72)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3집, 1949년 1월 16일.

73) 『陸本 作命 甲發』 제22호, 49년 1월 27일.

74) 『陸本 作命 甲發』 제44호, 49년 2월 27일.

75) 『國防部 一般命令』 제17호, 49년 6월 11일.

에서 제주도로 이동해 온 것이다(2연대로부터 제주도 경비에 관한 업무 일체를 공식적으로 인수받은 때는 1949년 8월 13일이다⁷⁶⁾).

독립대대가 제주에 주둔한 때는 이미 사태가 다 진정돼 인명희생이 발생할 이유가 없던 때였다. 독립대대는 장교들을 제주여중, 제주중학교 등 남녀 중등학교에 배치해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기도 했다.⁷⁷⁾ 그런데 부대장이었던 김용주는 자신의 치른 ‘마지막 소탕전’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제1 독립대대라고 명칭을 바꿔 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마지막 소탕전을 했어요. 다른 부대가 공비토벌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때 나는 계급이 중령인데 제주도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소속은 5사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소탕전을 했는데 나는 다른 부대보다도 작전을 잘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복 1개 중대를 면 직원, 운전수, 교사 등 각 기관에다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감으로 있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또 면에 있다가 출세해 가지고 도청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들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부대에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잡은 것을 재판할 하면 거의 사형인데 그것을 나보고 처치하라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들에게는 죽일 놈이지... 계엄사령관 앞으로 데려온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법에 의한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제주비행장 서쪽에 굴을 파고 거기서 전부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제주도에 못 가게 됐습니다. 난 명령대로 한 거지만 그 사람들은 나보고 죽었다고 할 것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주도가 완전히 평정이 됐지요.⁷⁸⁾

군인들에게 사복을 입힌 채 각 기관에 잠입시켜 함정을 팠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잡은 것을 재판할 하면 거의 사형인데 그것을 나보고 처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제주비행장 서쪽에 굴을 파 처치했습니다”라는 증언은 결국 재판 절차도 없이 총살을 했다는 말이다.

더욱 문제는 제주도의 계엄령이 1948년 12월 31일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지속시켜 왔다는 점이다. 김용주는 자신을 가리켜 ‘계엄사령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독립대대는 1949년 12월 27일 약 5개월간의 주둔을 마치고 제주에서 철

76)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3집, 1949년 8월 13일.

77) 『서울신문』, 1949년 9월 17일.

78) 金龍周(45세,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당시 제1독립대대장, 1967. 2. 16 채록)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소장 『참전자 증언록』에 수록).

수했다.

② 해병대 진주

독립대대가 철수함에 따라 1949년 12월 28일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가 제주에 도착했다. 1,200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해병대는 사령부만 제주읍에 두고, 제1대대와 제2대대는 모슬포에 주둔시켰다.⁷⁹⁾

신현준 사령관은 1950년 1월 17일 해군 총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4·3 사건 등 공비주동자는 대개 섬 외로 도망하고 현재 한라산에 잠복 중인 공비는 주모자들의 모략선전에 넘어간 자이다. 도민은 대개가 공비들과 혈연관계를 가진 탓으로 과거 군에 대한 두려움에서 공포와 원한을 그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의 상황을 인식했다.⁸⁰⁾ 해병대는 자신들의 임무가 “① 해병대 자체의 정신적·육체적 훈련 ② 4·3사건 이래 물심양면으로 피해한 30만 도민에게 재기의 힘을 주는 한편 그들을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것 ③ 한라산을 근거로 한 공비를 토벌하는 것”이라며 토벌전과 민심수습을 병행할 뜻을 밝혔다.⁸¹⁾

해병대사령부는 1950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산악지역 제1차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해병전투사』는 제1차 토벌전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했다.

- △ 2월 5일과 6일, 돌오름 부근에서 수색전을 벌여 8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
- △ 3월 10일, 중문면 881고지 중턱에서 무장대 야전병원을 기습해 병원장 등을 사살
- △ 3월 하순경, 한대오름 부근에서 무장대 회합 장소를 기습해 7명을 사살
- △ 3월 15일, 1394고지에서 무장대 아지트를 기습해 1명 사살하고 3명을 부상시킴
- △ 3월 17일, 1394고지와 오백장군 지대에서 무장대 아지트를 기습하여 2명 사살
- △ 3월 22일, 돌오름 서남쪽 500m 지점에서 무장대와 교전해 격퇴
- △ 5월 20일, 토벌대 본부를 한라산 남쪽 쌀오름으로 옮겨 정글 지대를 수색⁸²⁾

한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해병대 사령관은 제주도지구 계엄사

79) 海兵隊司令部, 『海兵發展史』, 1961, 11쪽.

80) 海兵隊司令部, 『海兵戰鬥史』, 1962, 18쪽.

81) 海兵隊司令部, 위의 책, 17쪽.

82) 海兵隊司令部, 위의 책, 21~22쪽.

령관을 겸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병대는 진압작전과 민심수습이라는 두가지 임무 중 민심수습에는 실패했다. 특히 6·25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자 총살로 많은 인명을 불법 살해했고, 흔히 ‘유지사건’이라 불리는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 사건’을 조작해 제주도내 유력인사들을 고문했다.

또한 민폐를 끼치는 과정에서 당시 강성모 서귀면장을 불법적으로 처형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당시 서귀포경찰서장이던 김호겸은 “강 면장은 소위 ‘괘씸죄’로 희생된 것이다. 해병대는 자신들의 부식 마련을 위해 면장에게 ‘한 시간 내로 소 몇 마리, 고사리 몇 백 관을 준비하라’는 식으로 강요하며 민폐를 끼쳤다. 그런데 강 면장이 이에 호락호락 순응하지 않자 양심을 품고 죽인 것이다”고 증언했다.⁸³⁾

강성모의 유족들은 4·19 혁명이 일어나자 신현준을 고발했다. 고발장은 1960년 7월 1일 ‘양민학살 고발’ 제2호로 제주지검에 접수됐다. 유족들은 고발장에서 “학살 원인은 고발인의 부친 강성모 씨가 서귀면장 당시 고사리 캐기 등으로 군에서 민간인을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건의한 것이 당시 군의 비위를 거슬려 6·25 사변이 돌발하자 전기와 같이 시체마저 찾아볼 수 없게 학살시켜 버렸다”고 밝혔다.⁸⁴⁾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제주지검은 피해자 가족과 증인 신문 등을 행하는 한편 신현준에 대해 군 당국에 조회를 하는 등 수사를 진척시켜 나갔다.⁸⁵⁾ 그러나 곧 5·16 군사정변이 벌어져 진상규명 작업은 묻히고 말았다.

83) 金浩謙(서울시 은평구, 당시 서귀포경찰서장)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⑤, 185~186쪽).

84) 『濟州新報』, 1960년 7월 3일.

85) 『濟州新報』, 1961년 1월 14일.

5. 사건 종결기(1950. 6. 25 ~ 1954. 9. 21)

가. 한국전쟁과 예비검속

1) 한국전쟁과 제주도 상황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침공으로 한민족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비참하며 많은 인명이 살상된 전쟁이 시작되었다. 국군은 북한군을 저지하지 못하여 6월 28일에는 서울을 빼앗겼다. 일본에 있던 미군이 긴급히 투입되었으나 이들도 북한군에 패하여 8월 1일에는 낙동강선으로 물러났다. 이러한 동안 유엔에서는 유엔군 파견이 결정되어 미군 등이 유엔군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약 한달 반동안 공방전을 계속하다가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반격전을 전개하여 9월 28일에는 서울을 탈환하였다. 이어 10월 1일 38선을 돌파했고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했으며, 북진을 계속하여 선두부대가 압록강에 당도함으로써 통일이 곧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0월 25일부터 중공군 대병력이 개입하자 국군과 유엔군은 철수를 거듭한 끝에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다시 적에게 넘겨주고 평택선까지 철수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반격을 시도했지만 압도적으로 우세한 중공군을 격파할 수가 없어 전선의 큰 변동이 없이 진지전을 거듭하다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맞게 되었다.

정부는 1950년 7월 8일 전남과 전북지역을 제외한 남한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한 후인 10월 10일 제주도지역의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1월 10일 남한 전지역의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 같은 날 제주도와 경상도의 남부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대부분 지역에 경비계엄을 선포하였다.¹⁾ 그러나 전황이 다시 악화되자 12월 7일 38도선 이남지역은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전환되었다가, 1951년 2월 22일 제주도지구의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²⁾

한편 전쟁소요에 따라 7월 16일 제주도에 육군 제5훈련소를 설치했으며,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구에서 창설되었던 육군 제1훈련소가 1951년 1월 22일에 제주도 모

1) 大韓民國 政府公報處, 『官報』 제383號, 1950년 7월 8일 ; 『官報』 제396號, 1950년 10월 10일 ; 『官報』 제406號, 1950년 11월 7일.

2) 『東亞日報』, 1951년 2월 22일 ; 大韓民國 政府公報處, 『官報』 號外, 1950년 12월 7일 ; 『官報』 號外, 1951년 2월 22일.

슬포로 이동되었다.³⁾ 그리고 국방부 제2조병창, 무선통신중계소 등이 설치됐고, 제주와 모슬포 등 2개소에 중공군포로수용소도 시설되는 등 많은 군사시설이 제주도에 설치, 운용하게 되었다.

1950년 12월부터는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대거 몰려들었다. 정부는 1951년 1월 12일의 국무회의에서 피난민 42,000명을 제주도로 집단 이송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도 하였다.⁴⁾ 피난민 수는 1951년 1월 3일에 16,000여 명이던 것이 1월 15일 87,000여 명, 5월 20일에는 148,794명으로 증가하였다.⁵⁾ 그리고 전선이 안정되자 피난민 일부가 고향으로 복귀하였지만 1952년 1월 말에도 북제주군에 22,000여 명, 남제주군에 6,500여 명 등 제주도에 28,460여 명의 피난민이 남아 있었다.⁶⁾

육군 제1훈련소는 한때는 8개 신병연대와 2개 교도연대 및 1개 하사관학교와 수송학교, 1개 육군병원 등을 거느린 제주도에서는 최대부대로서, 1954년 8월에 폐쇄⁷⁾될 때까지 3년 반 동안 많은 신병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재산무장대의 토벌작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1훈련소장이 제주지구위수사령관을 겸임하므로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시를 내리거나 경계지시를 내렸다.

1952년 7월 1일에 훈련소장 자격으로 무장대의 활동에 대비하여 부대경계를 강화하라는 작전명령을 내렸고, 1952년 10월 1일에는 위수사령관 자격으로 중공군 포로들의 폭동에 대비하여 1개 경비대대를 편성하여 포로수용소 부근에 배치하라는 작전명령을 내린 것이 좋은 예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포로들을 처음에는 부산에 수용하고 있다가 반격작전과 중공군 개입으로 전선의 변동이 심해지면서 포로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거제도에 대규모의 포로수용소를 설치·관리하였다. 포로 숫자는 북한군과 중공군을 포함하여 최대 166,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친공포로와 반공포로간에 학살과 잔학행위가 수시로 발생하고, 심지어 포로들이 포로수용소장을 납치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유엔군사령부는 1952년 6월부터 포로들을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분리하여 분산수용하였는데, 북한군 포로는 육지에, 중공군 포로는 제주도에 수용하였다.

중공군 포로 중 본국송환을 원하는 ‘친공포로’는 제주비행장에, 송환을 원하지 않

3) 陸軍本部, 『陸本作戰指示』 第29號, 1951년 1월 21일.
4) 『제6회 국무회의록』, 1951년 1월 12일.
5) 夫萬根, 『光復濟州 30年』, 文潮社, 1975, 116~117쪽.
6) 『濟州新報』, 1952년 2월 2일.
7) 陸軍本部, 『訓令』 第290號, 1954년 5월 2일.

는 ‘반공포로’는 모슬포비행장에 수용하였는데 1953년 2월 1일의 포로수용인원은 제주비행장의 포로가 5,809명, 모슬포의 포로가 14,314명이었다.⁸⁾ 제주비행장에 수용된 친공포로는 1952년 10월 1일 중공 정부 수립 3주년을 맞이하여 행사를 한 후 시위를 하였다. 이에 포로수용소를 경비하던 미군 2개소대가 시위하는 포로들을 진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포로 56명이 사살되고 113명이 부상하였다.⁹⁾

2) 예비검속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과 반정부혐의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6월 25일 당일 오후 2시 25분 치안국장의 명의로 각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전화통신문으로 긴급 하달하였다. 이 지시문은 제주도경찰국장에게 하달되었는데,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즉시 구속할 것’과 ‘전국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서 경찰·검찰·법원 조직 등은 모두 군의 관할로 귀속되었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예비검속을 주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로부터의 예비검속 지시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즉각 요시찰인에 대한 일제 검거가 이루어졌다. 6월 말부터 8월 초에 이르기까지 공무원·교사에서 학생과 부녀자 등에 이르기까지 예비검속이 이루어졌다. 당시 예비검속 인원은 경찰 공문서에는 820명이라고 적혀 있고, 미국 대사관 직원의 보고서에는 경찰이 국민보도연맹 임원 700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7월 말부터 8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제주읍과 서귀포·모슬포 경찰서에 검속된 자들에 대한 군 당국의 총살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예비검속자 사살은 극도로 비밀리에 수행되었다. 모슬포경찰서 관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송악산 ‘첫알오름’에서 총살된 현장은 우연히 주민들에 의해 발각되었지만, 나머지 제주·서귀포경찰서에 검속되어 있던 사람들의 희생 일시 및 장소 등 당시 상황은 철저히 기밀로 처리되었다(예비검속자 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IV. 피해상황, 2. 인명피해, 가. 집단 인명희생 부분에 서술하였다).

8) 國防軍事研究所, 『韓國戰爭의 捕虜』, 1996, 68~76쪽 ; 第1訓練所, 『作命』 第7號, 1953년 9월 28일.

9) 『濟州新報』, 1952년 10월 3일, 4일 ; 『朝鮮日報』, 1952년 10월 3일, 4일 ; 陸軍情報局, 『定期情報報告』 第276號, 1952년 10월 2일 ; 『赤旗』, 1952년 10월 15일.

1950년 9월이 되자 제주지역에서 예비검속자 총살 집행은 정지되었다. 제주경찰국에서는 9월 14일 도내 사찰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예비검속자 중에서 개선의 가망이 있는 자를 석방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당국의 심사 결과, 1950년 9월 18일 제주경찰서 예비검속자 153명이 석방되었다.¹⁰⁾ 이어서 제2차로 제주경찰서에 수용 중이던 48명의 예비검속자에 대한 석방도 이루어졌다.¹¹⁾ 서귀포경찰서에서는 9월 17일 전원 석방하였다. 모슬포경찰서에서는 9월 18일 이전에 전체 검속자 344명 중에서 90명을 석방하였다.¹²⁾

한편 1950년 8월 법원장·검사장·제주읍장 및 변호사·사업가·교육자 등 유지급 인사 16명이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제주지역 계엄사령부(사령관 신현준 대령)로 진행되는 소위 '유지사건'이 발생했다. 계엄사는 8월 8~9일 이들을 전격 구속함으로써 제주지역 사회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김충희 제주지사는 이 사건이 특정인을 구속하기 위한 모함으로 보고 이성주 경찰국장과 협의하여 진상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조병옥 내무부장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보냈다. 또 공병순 제주특무대장도 이 사건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지 조사를 위해 급파된 선우종원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은 계엄사령부 정보과장 신인철 대위의 음해 조작 사건임을 밝혀냈다.

유지사건으로 제주지역 사회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도민들은 현직 법원장·검사장이 계엄군에 검속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직접 목도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의 진행은 8월 20일 예비검속자에 대한 집단총살과 병행되었기 때문에 8월 한 달은 전율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나. 잔여무장대 궤멸

1) 잔여무장대 활동

1949년 3~4월 육군의 진압작전 이후로는 무장대들의 활동이 뜸했기 때문에 당

10) 『濟州新報』, 1950년 9월 20일.

11) 『濟州新報』, 1950년 9월 23일.

12) 「예비검속자 중 석방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송부의 건」, 1950. 9. 18(이도영 박사 소장 예비검속 관련 경찰서류철, 386쪽).

국은 무장대들이 거의 소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후 제2연대나 제1독립 대대의 작전기간에도 별다른 습격이 없었고, 1950년 전반기의 해병대 작전 때도 소 규모의 교전은 있었지만 무장대의 습격은 없었다. 한라산의 잔존 무장대는 60여 명 정도로, 이들은 가급적 교전을 피하고 무기를 감추면서 연고지에서 부모형제들로부터 생필품을 보급받아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발발 1개월 후인 1950년 7월 25일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해 민가 99동을 불태웠는데¹³⁾, 이것이 전쟁발발 후 무장대의 첫 공격이었다. 이에 대하여 좌파 측 자료는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후 잔존 인민유격대는 1950년 7월 하순부터 통일적인 작전계획 아래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여 7월 25일에는 중문면 하원경찰지서를 습격하고 김의봉을 중심으로 한 부대는 조천면 농촌지대에 침투하여 주민들에게 조국해방전선에 단결·투쟁하여 인민군 진격에 호응하자는 정치사업을 전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⁴⁾

한라산의 무장대 60여 명은 전쟁발발 소식을 듣고 7월 어느 날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고 한다. 이 때 고승옥, 백창원, 송원병 등 지도부에 있던 3명은 ‘인민군이 목포까지 왔으니 제주도에 상륙한 이후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젊은이들은 ‘4·3을 일으킨 영웅적 전통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날 밤에 허영삼, 김성규 등이 주동이 되어 고승옥 등 세 사람을 포박했고, 이튿날에는 인민재판에 부쳐 살해하였다. 그런 연후에 김성규가 무장세력을 몰고 중문에 들어왔다는 게 경찰출신자의 증언이다.¹⁵⁾ 허영삼이 그날로 무장대 사령관이 되었다고 한다.

무장대들은 하원마을 습격을 시발로 간헐적으로 지서나 마을을 습격하여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익인사를 살해하며 필요한 식량을 획득했다. 또 20세 전후의 젊은이를 납치, 세력을 확장해 갔다.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사살자와 포로 및 귀순자가 발생하면 무장대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계속적인 납치로 무장대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한라산의 무장대들은 남하하는 북한인민군들이 곧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지속적인 습격을 하였고, 제주도 좌익계 민간인들은 7월에 들어서자 소규

13) 하원마을회, 『하원향토지』, 1999, 379쪽.

14) 金奉鉉·金民柱,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鬭爭史』, 大阪 文友社, 1963, 257~258쪽.

15) 鄭南斗(74세, 제주시 일도1동, 당시 경찰, 2001. 10. 10. 체록) 증언.

모이기는 하나 제주읍을 비롯하여 각 면 단위로 인민군지원환영회를 조직하여 무장대를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¹⁶⁾

1951년 3월의 무장대 조직은 사령관 허영삼(남로당 제주도 당책 겸임, 안덕 출신), 유격대 부대책 김태길(가명 문호철), 작전참모 유모씨(이름미상, 대구 출신), 훈련관 모씨(성명 미상) 등과 제11지대(김영찬, 14명으로 3개조), 제50지대(고인수, 가명은 소형삼, 18명으로 3개조), 제1지대(김만옥, 14명으로 3개조), 제7지대(문도공, 14명으로 3개조) 등 총 64명으로서 지휘부와 4개지대로 편성되었다.¹⁷⁾

1951년 3월 16일자 육군정보국 기록에는 “3월 13일 24시에 제주읍 이호리에 공비 40명(무장20, 비무장 20)이 내습, 경찰대와 약 20분간 교전 후 입산·도주하였다. 민간인 12명이 살상되고, 12명이 납치당했으며, 소 7두, 말 3두, 의류, 식량 다수 약탈당하였다”고 되어 있다.¹⁸⁾ 무장대는 활발한 습격 및 납치 등으로 세력 확장에 힘썼지만, 경찰 등의 진압작전으로 그 수가 늘지는 않았다. 1952년 5월에는 65명(무장 30, 비무장 35)이고 소화기는 30정, 사령관은 김성규로 확인되었다.¹⁹⁾

1952년 9월 16일 오전 2시경, 숫자 미상의 무장대가 국군과 경찰로 가장하고 제주방송국을 습격, 숙직중이던 방송과장 김두규와 18세의 기술견습원 및 소년급사 등 3명을 납치하고 전화기와 방송용 시계 등을 약탈하여 도주하였다.²⁰⁾ 이들 납치된 3명은 며칠 후 무장대의 아지트 부근에서 무참히 살해되어 땅에 묻힌 채로 발견되었다.²¹⁾ 그리고 한달 후인 10월 31일 오전 3시에는 경찰 8명이 경비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장대 27명이 침입, 서귀포발전소를 전소시켰다.²²⁾ 이리하여 전기공급을 상당기간 차단함으로써 제주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당시 무장대의 성격에 대해서 한 무장대 출신은 “1949년 4월까지의 무장대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는 잔비다. 1949년 6월 이후 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질

16) 金奉鉉·金民柱, 앞의 책, 257쪽.

17) Headquarters National Police, Republic of Korea, Daily Intelligence Report, March 11, 1951.

18) 陸軍 情報局, 『定期情報報告書』 第75號, 1951년 3월 16일.

19) 陸軍 情報局, 『陸軍定期情報報告』 第137號, 1952년 5월 16일. 무장대 사령관이 김성규로 확인되었으나, 전 사령관 허영삼이 경찰에 피살된 일자와 장소는 미상임.

20) 陸軍 情報局, 『定期情報報告』 第262號, 1952년 9월 18일 ; 濟州道警察局, 『濟州警察史』, 1990, 317쪽.

21) 『平和新聞』, 1952년 9월 19일.

22) 陸軍 情報局, 『定期情報報告』 第305號, 1952년 10월 31일 ; 『定期情報報告』 第306號, 1952년 11월 1일.

서있는 게릴라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는 거의 무질서한 폭도에 가깝다고 본다.”²³⁾ 고 증언했다.

한편 주한미대사관은 1950년 8월 13일 제주도에서 게릴라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자, 해군 무관 존 세이퍼트(John P. Seifert), 3등 서기관 도날드 맥도날드(Donald S. Macdonald), 부영사 필립 로우(Philip C. Rowe) 등으로 제주 시찰팀을 구성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국장, 해병대 지휘관, 경찰 간부들을 만나 상황을 파악한 후 대사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대사관은 향후 제주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면서 한국 당국도 그렇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관련해 대게릴라 전투 경험이 있는 1명의 미고문관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토벌작전과 정찰활동을 위해 전투경찰대대가 창설돼야 하고 보병 및 게릴라 전술훈련을 받아야 하고 해병대는 보다 중대한 상황에 대비한 예비병력으로써 남겨둬야 한다고 건의했다.²⁴⁾ 그런데 이에 대해 드럼라이트는 해병대는 본토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곧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²⁵⁾

이와 같은 건의가 있는 지 며칠 뒤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는 8월 24일 한라산 무장대를 소탕하기 위한 전투신선대를 만들어 작전에 나섰다.²⁶⁾

2) 경찰 진압작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곧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9월 초에는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가 전선에 투입되자 경찰이 무장대 진압작전을 전담하게 되었다. 전쟁발발 1개월 후인 7월 25일의 중문면 하원마을 피습 이후 경찰은 무장대의 활동재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경찰은 우선 적정수집에 착수하였으며, 상당수의 무장대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용경찰대와 향토자위대를 조직하여 경찰업무를

23) 金民柱(71세, 日本 佐倉市 田町, 당시 무장대, 2002. 7. 8. 채록) 증언.

24) 허호준,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120쪽.

25) Everett F. Drumright to John M. Allison, Department of State, August 29, 1950, The Foreign Service of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merican Embassy, Taegu Office.

26) 『濟州新報』, 1950년 8월 26일.

보조토록 하면서 신선대와 맹호대 등 2개 부대를 편성, 운영하였다.

제주경찰국은 제주도의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청년 중에서 246명을 선발하여 7월에 경찰국 직속으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의용경찰대를 조직(대장 강필생, 2개 대대 편성)하여 진압작전에 활용하였다.²⁷⁾ 그리고 대통령 긴급명령 제9호로 선포(8월 4일)된 비상항토방위령에 의하여 8월 중순에 경찰서장 관할 하에 각 부락단위로 만 17~50세까지의 남자로 항토방위대를 편성하였다.²⁸⁾ 또한 8월 12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우마를 방축하되 성의 한라산 측에의 방축은 엄금한다. 본령을 위반한 우마주는 공비협력자로 처단하며, 해당 우마는 공비소유물로 취급하여 노획 또는 사살한다”²⁹⁾는 요지의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경찰이 집계한 1950년 10월 1일부터 1951년 4월 22일까지 7개월 간의 전과 및 피해를 보면 전과로는 △무장대 사살 56명, △무기노획 소총 11정(소련제 소총 1정, 카빈 3, 일본제 소총 7정)과 수류탄 2발이며, 피해로는 △경찰 17명(사망 15, 부상 2), △자위대 24명(사망 11, 부상 11, 행방불명 2), △민간인 42명(사망 1, 부상 3, 납치 38), △가축 피탈 53두(소 44, 말 9), △무기 피탈 소총 14정(카빈 2, 소총 12)이었다.³⁰⁾

국민방위군 항토방위대의 해산으로 민간방위 태세가 허약해지자 전국적으로 의용경찰대, 의용소방대, 민간방공대 등을 대한청년단에 통합하여 특동대(特動隊)를 조직키로 되었으며 중앙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제주도에서도 1952년 1월 25일에 대한청년단 특동대가 발족되었는데 이 특동대가 경찰의 한라산 토벌전을 지원하게 된다.³¹⁾

경찰은 토벌대의 침식과 주민들과 무장대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길목에 주둔소를 설치하였다. 이 주둔소는 전쟁발발 이전부터 무장대의 활동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토벌을 위해 각 경찰서별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1952년 4월에는 전도에 32개의 주둔소가 있었다. 주둔소는 마을 주민을 동원하여 석축을 쌓고, 경찰 1명과 마을청년 5~6명이 상주하여 경계를 했으며, 토벌대 30명 이상이 잘 수 있는 마

27) 『濟州新報』, 1950년 8월 5일 : 姜龍三·李京洙, 『大河實錄 濟州百年』, 1984, 泰光文化社, 769~775쪽.

28) 『濟州新報』, 1950년 8월 9일, 11일; 大韓民國 政府公報處, 『官報』 第387號, 1950년 8월 4일.

29) 『濟州新報』, 1950년 8월 13일.

30) Headquarters, Korean National Police Force, Republic of Korea, *Daily Enemy Activity Report #0006*, April 24, 1951.

31) 『濟州新報』, 1952년 1월 19일, 26일.

루방이 있어 토벌대의 임시숙소로 사용하였는데, 주둔소와 주둔소 사이는 전화를 가설했으나 전화선이 자주 끊겨 무선으로 통신을 하였다. 이 주둔소에는 토벌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마을 부녀자들도 살았다. 그리고 중요한 주둔소는 60여 명이 동시에 취침 및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경찰이 고정 배치되는 주둔소와 작전 때만 주둔하는 임시주둔소(전투주둔소)로 분류되었다.³²⁾

경찰은 전력을 기울여 주둔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경찰병력을 토벌전에 투입하였지만 획기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윤석렬 제주경찰국장은 1952년 1월 초에 “잔비는 76명으로 경찰병력을 총동원하여 신춘 초에 완전소탕하겠다. 유언비어와 회색분자, 통비분자 등은 잔비와 같이 적극 섬멸함과 동시에 잔비에 대한 특수공작도 병행 계속하겠다”³³⁾는 방침을 피력하였다.

또한 내무부 치안국은 제주도지구 ‘잔비섬멸작전계획’을 세우고 김준중 총경을 반장으로 하는 7명의 작전지도반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195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작전을 전개하였다. 치안국에서 수립한 작전방침은 제주~서귀포를 연하는 기동로 이서(以西)로 무장대를 압축한 후 그곳에서 포착·섬멸하며, 가급적 소수병력으로 현 주둔소로부터 축차적으로 무장대의 거점 가까이 침투시켜 저지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³⁴⁾ 그리고 경찰은 춘계작전을 위하여 4월 초에 한라산에 금족령을 내렸는데 금족구역은 성산포서와 모슬포서 관내는 해안선으로부터 15리 이상이고 제주서와 서귀포서 관내는 아라~해안주둔소선 이상이었다.³⁵⁾

이 작전은 준비기간 1주일과 정리기간 1주일 등 2주일을 소비하여 실제 작전기간은 16일간의 단기작전이었으며, 추가병력 없이 작전지도반만 파견한 작전으로서 내무부는 물론 사회부와 농림부까지 동원하는 등 계획은 거창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윤석렬 경찰국장은 5월 19일의 담화에서 “4월 초순부터 전개한 한라산 잔비섬멸작전은 중앙 직접 지휘 하에 월여간 계속되었으나 잔비들의 도피로 접적이 여의치 못함과 입지조건 불리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음은 유감이다. 현재도 소탕전을 계속 중이며, 종래의 전투주둔소를 20리 내지 30리 깊숙한 밀림지대에 전진

32) 『濟州新報』, 1952년 4월 5일 ; 濟州4·3研究所, 『4·3 長征』 5, 1992, 76~81쪽.

33) 『濟州新報』, 1952년 1월 6일.

34) 治安局, 『治安命令』 第13號, 1952. 3. 26.

35) 『濟州新報』, 1952년 4월 29일.

주둔시켜 포위망의 압축과 적의 행동저지에 병력증강과 시설완비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³⁶⁾고 말하여 4월의 무장대 섬멸작전이 성과가 별로 없었음을 시인하고, 전투 주둔소를 20~30리씩 전진 배치하여 포위망을 압축할 뜻을 밝혔다.

주둔소를 전진 배치한 9월 말의 금족구역은 다음과 같다.

- △ 제주읍 관내 : 명도암-영평-죽성-금악-유신동을 연하는 선
- △ 애월면 관내 : 유신동-금덕-서광-금악을 연하는 선
- △ 한림면 관내 : 금악-정물오름-도을악을 연하는 선
- △ 안덕면 관내 : 도을악-병악-녹하지를 연하는 선
- △ 중문면 관내 : 녹하지-세초지를 연하는 선
- △ 서귀면 관내 : 새초지-미악-수악을 연하는 선
- △ 남원면 관내 : 수악-456고지-민악을 연하는 선
- △ 표선면 관내 : 민악-대록봉-모둔악-개미오름을 연하는 선
- △ 구좌면 관내 : 개미오름-높은오름-체오름을 연하는 선
- △ 조천면 관내 : 체오름-알바마기-천미악-수기동-명도암을 연하는 선³⁷⁾

경찰은 잔여 무장대의 귀순작전을 추진했는데, 이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한 귀순공작을 하거나 하산을 권고하는 전단을 한라산 전역에 살포하기도 하고, 귀순선무 강연회를 갖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은 사찰유격대와 특수공작진을 운용하여 무장대들의 귀순공작을 벌였다. 이에 발맞추어 제주도의회에서는 “귀순하면 생명은 국가에서 보장하며, 여생은 도의회가 책임진다. 무의미한 항전을 버리고 향토평화 건설에 동참하라”는 요지의 하산권고문을 작성하여 각 부락의 요소 요소에 게시하고 한라산에도 뿌렸다.³⁸⁾

경찰은 1950년 10월부터 제주도 경찰국 사찰과 내에 6명으로 편성된 일명 귀순공작대라는 적정반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적정반의 임무는 생포되거나 귀순하는 무장대들을 인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심문하여 이들로부터 무장대의 내부사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즉 작전에 관계되는 정보는 토벌대에 제공하고, 확성기를 통해 귀순권고를 하거나 전단을 항공기 등을 통해 살포하며, 귀순자 또는 부모형제 등 연고자를 동원하는 방법 등으로 귀순공작을 하

36) 『濟州新報』, 1952년 5월 20일.

37) 『濟州新報』, 1952년 9월 30일.

38) 『濟州新報』, 1952년 6월 5일.

였다. 또 귀순자에게는 생업을 알선하고, 토벌전에서 사살자가 있을 경우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등이 적정반에서 하는 일이었다.³⁹⁾

귀순전단은 처음에는 도의회 의장의 명의로 뿌려졌으며, 얼마 후에는 경찰국장 이름으로도 살포되었다. 이러한 귀순공작으로 1년여가 지난 1952년도부터는 상대방(감시자)을 죽이고 총기까지 빼앗아 귀순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귀순전단에 병행하여 귀순자들이 산 속에서 경험한 생활상과 귀순 후의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감을 순회강연을 통해서 전파함으로써 입산자 가족 등을 통해서 입산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귀순공작은 진압작전에 버금가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무장대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은 귀순자에 의하여도 밝혀졌다.

6월 19일에 귀순한 무장대 2명은 “산에 있는 동포들은 하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내려가면 죽는다는 괴수의 역선전과 만약 그런 의사가 알려질 때의 공포심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금이라도 경찰의 이러한 관용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많은 수가 하산할 것이다”고 말하였다.⁴⁰⁾

7월 22일에 귀순한 김기열(여, 22세)은 “최근 잔비가 상당한 동요를 일으켜 와해 상태에 있으며, 얼마 전 양순애가 탈출을 꾀하다 발각되어 즉석에서 살해되었고, 이 인선이 대내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참살당했다”고 전했다.⁴¹⁾

7월 26일에 귀순한 강찬석(농업, 당 19년)은 “최근 잔비의 동요는 더욱 심해서 두목은 대원 감시에 급급하고 있으며, 내부숙청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잔비는 70명으로서 원공비(4·3사건 전후에 입산자)는 24명인데 그들까지도 상당한 동요상태에 있다”고 실토했다.⁴²⁾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1952년 6월 22일까지 경찰의 특수공작으로 귀순한 자는 총 22명이었는데 이들은 경찰의 직업알선으로 공공기관에서 봉직하거나 기타 직장을 가졌으며, 일부는 가정에서 생업에 종사했다.⁴³⁾

1952년 10월 13일부로 윤석렬 도경국장이 물러나고 부산 수상경찰서장인 이경진 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과 동시에 제주도경찰국장에 취임하였다. 이경진 국장은 금산지구경찰전투사령관, 낙동강경찰전투총사령관, 동해지구경찰전투총사령관 등을

39) 鄭南斗(74세, 제주시 일도1동, 당시 경찰, 2001. 10. 10. 체록) 증언.

40) 『濟州新報』, 1952년 6월 22일.

41) 『濟州新報』, 1952년 7월 24일.

42) 『濟州新報』, 1952년 7월 30일.

43) 『濟州新報』, 1952년 6월 22일.

역임한 토벌작전 지휘경력의 소유자였다.⁴⁴⁾

신임국장은 부임하자 곧 적극적인 무장대 섬멸계획을 세우고 11월 1일 100전투경찰사령부(이하 '100사령부'로 약칭)를 창설하였다.⁴⁵⁾ 이 부대의 편성은 100사령부(사령관 : 보안과장 김원용 총경, 서귀포 주둔) 예하에 101부대(부대장 : 한재길 경감, 성읍주둔), 102부대(부대장 : 한낙구 경감, 성산포 주둔), 103부대(부대장 : 장석관 경감, 녹하지 주둔), 105부대(부대장 : 현병두 경감, 다래오름 주둔) 등 4개 부대를 두었다. 각 부대는 본부대를 합하여 110여 명으로서 3개중대로 편성됐고, 중대는 2개소대로 3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대에는 각각 백록중대, 신평중대, 신선중대, 필승중대 등의 이름도 붙여졌다. 100사령부의 총 병력은 4개 부대와 본부, 통신, 보급 등을 합쳐 500여 명에 이르렀다.⁴⁶⁾

제주도경은 이러한 100사령부와는 별도로 사찰과장이 관장하는 사찰유격중대(허창순 경위)를 운용하였는데, 이 부대는 무장대에 관한 정보수집이 주임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토벌임무도 수행하는 부대였다. 그리고 각 경찰서에는 사찰유격대가 편성되었는데 이 부대는 도경의 사찰유격중대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100사령부 소속원들은 모슬포의 육군 제1훈련소에서 2주일간 훈련을 받고 카빈·M-1 등의 소총과 수류탄 2개로 무장하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주둔소에서 침식을 하면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는 무장대와 똑 같은 여건 속에서 생활하면서 소탕작전을 하라는 경찰국장의 작전 방침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경찰은 11월에 도의회에 동기(冬期) 작전비 3억 1,250만원을 요청한데 이어 작전부대 주부식비와 내의, 장갑, 모포 등의 보급비 등을 합쳐 모두 6억 8,732만원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액이 통과됨으로써 토벌부대의 민폐는 없어질 것이며, 각오 위에 각오를 굳게 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비 완멸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⁴⁷⁾ 이는 그동안의 토벌과정에서 민폐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제주경찰은 치안국에 건의, 1952년 12월 25일부터 1953년 6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경기, 충남, 경북 등에서 1개 중대(114명)씩 모두 3개 중대 342명을 배속 받

44) 『濟州新報』, 1953년 12월 3일.

45) 濟州道警察局, 『濟州警察史』, 1990, 318쪽.

46) 김창근(75세, 애월읍 납읍리, 당시 경찰, 2001. 9. 20. 채록) 증언 : 송봉춘(77세, 대정읍 보성리, 당시 우익단체 및 경찰, 2002. 8. 8. 채록) 증언 : 韓在吉(81세, 서귀포시 서귀동, 당시 경찰, 2002. 10. 23. 채록) 증언.

47) 『濟州新報』, 1952년 11월 14일.

았다.⁴⁸⁾ 이 병력은 100사령부로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거나 각 경찰서의 기동예비로 활용되었다.

100사령부는 토벌대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금지했고, 일제시대에 만든 한라산 주변의 ‘하지마끼(머리띠)’ 도로를 따라 가설된 전화선으로 사령부와 부대간에 또는 부대와 부대간에 통신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무장대에 의한 잦은 통신선 절단으로 무선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100사령관은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각 중대를 무전기로 호출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작전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때 중대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은 연막탄이었다.⁴⁹⁾

작전지역은 대략 500고지 이상의 고지대를 100사령부에서 담당했고, 그 이하지역은 각 경찰서의 사찰유격대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100사령부 소속원이 500고지 밑으로 내려오면 작전명령 위반이 되었다. 이런 관계로 100사령부 요원이 500고지 아래로 내려왔다가 경찰서 소속 사찰유격대의 잠복에 걸려 경찰끼리 교전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⁵⁰⁾

한라산 무장대는 지난 52년 6월 1일에 68명이었으나 그 간의 토벌 및 귀순공작 등으로 11월 20일 현재 4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⁵¹⁾ 1952년 11월 26일에 생포된 조천면 신촌 출신 강태원(당 20세)은 피랍되어 산중생활을 하다가 내부분열을 겪은 후 탈출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1951년 9월 어느날 오후에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가 폭도들에게 끌려갔으며, 정권수로부터 3개월 동안 정신교육을 받았는데, 반년만 기다리면 이 섬에는 소련군이 와서 해방을 시켜주며, 농민에게는 토지를 무상분배해 주고, 살기좋은 낙원이 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뒤 무장대에 편입되어 몇 번 약탈도 하였지만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보초를 서다가 그만 깜박 잠이 들었다가 발각되었는데, 그들이 삼을 찾는 등 숙청준비를 하자 변소 가는 척 하고 여자폭도의 감시를 피해 줄행랑을 쳤으며 약 4개월 동안 홀로 산속을 헤매다가 포로가 되었다.

폭도들의 의식주는 원시적인데, 죽과 소금으로 끼니를 이어가기도 하고, 말고기를 대용식으로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글의 깊숙한 곳에서 나뭇가지를 깔고 2인이 담요 1장을 덮고 잤으며, 비오는 날에는 담요를 지붕으로 삼았다.

48) 治安局, 『治安命令』 第84號, 1952. 12. 10, 『治安命令』 第16號, 1953. 6. 8.

49) 左玉允(76세, 한경면 한원리, 당시 경찰, 2002. 2. 27. 채록) 증언.

50) 송봉춘(77세, 대정읍 보성리, 당시 우익단체, 경찰, 2002. 8. 8. 채록) 증언.

51) 『濟州新報』, 1952년 11월 19일.

놈들은 입으로는 해방을 부르짖으며 누구보다도 인민을 위한다고 허울좋은 말을 뇌고 있으나 기실은 무자비한 독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내부분열도 있었다. 즉 허영삼(許永三)이 사령관이었을 때부터 권팔(權八) 등이 지급되는 탄약이 부족하여 이를 감추어 왔는데, 이 사실이 허영삼이가 경찰에 사살된 후 신입사령관 김성규(金成奎)에게 발각되었다. 김성규는 자기와 막역지간인 권팔이를 용서없이 고문하였으며 고문을 견디지 못한 권팔이는 어느날 원대에서 탈출하였다. 김성규의 부하에 대한 단속과 폭행이 심해지자 부하들이 하나 둘씩 이탈하여 11명이나 권팔이에게로 갔다. 이 양 부대는 냉전을 지속하다가 어느날 치열한 교전을 벌였으며 세력이 약한 권팔 파는 전멸하였고, 김성규 파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폭도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⁵²⁾

제주경찰은 100사령부와 사찰유격중대로 한라산의 무장대를 토벌했으며, 각 경찰서에서는 무장대의 하산 및 습격에 대비하여 주요지역에서 잠복근무를 하거나 기동대를 대기시켰다. 그리고 1953년 초에 육군 무지개부대가 투입되자 3개월 동안 이 부대와 합동작전을 하였다.

1952년 12월 22일에 작전을 개시한 101부대 청룡중대가 12월 24일에 적악 서북방의 말체오름 밀림에서 20여 명의 무장대와 교전하여 4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1953년 1월 24일에 중문에 20여 명의 무장대가 침입하여 소와 말 등을 약탈하여 도주하였다. 100사령부는 중문에 침입한 무장대를 추격하여 25일에는 한라산 서북방에서 김종화 중대가 30명 이상의 무장대와 3시간 여의 교전 끝에 5명을 사살하고, 26일에는 101부대가 붉은오름과 새오름 사이에서 50여 명의 무장대와 4시간 동안의 치열한 교전 끝에 4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는 등 25일과 26일 등 양일간에 두차례의 치열한 교전 끝에 9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치안국장은 모처럼 큰 전과를 올린 제주경찰에 치하전문을 보내었다.⁵³⁾ 당시 추격전을 진두지휘한 101부대장 한재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중문에 습격이 있었을 때, 우리는 추격을 시작해서 북군 애월까지 가니 눈위에 족적이 나타났는데, 족적이 밀으로 간 것으로 나타나자 중대장들이 밀으로 추격하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무장대가 소와 말 그리고 식량 등을 가지고 깊은 산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밀으로 갈 이유가 없다, 산 위로 추격하라고 지시했다. 산 위로 올라가니까

52) 『濟州新報』, 1952년 12월 5일, 6일.

53) 『濟州新報』, 1953년 1월 26일, 27일, 28일.

과연 그곳에 저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저들은 우리를 기만하기 위하여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올라갔던 것이다. 우리는 저들을 포위해서 공격했는데, 격전 끝에 진지를 점령하고 보니 중문에서 끌고 간 소나 말 외에도 말을 잡아서 가마니에 넣은 것도 있고, 여자포로도 잡았다.⁵⁴⁾

경찰토벌대에 맞서고 있던 한라산 무장대는 100사령부와 사찰유격중대의 토벌과 적정반의 활동에 의하여 점차 소멸되어 갔다. 경찰은 1953년 11월 20일을 기하여 대부분의 주둔소와 경찰초소를 철거하고 그 곳에 배치했던 경찰병력을 철수시켰다.⁵⁵⁾ 그리고 20,000매의 전단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배부하였는데 이 전단에서 경찰은 도민들의 협력을 호소하고 귀순무장대에게는 즉시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무장대의 두목 김성규를 사살, 생포 또는 시체 인도 때는 1,000만원, 구 무장대(4·3초기부터 입산한 무장대) 1명당 100만원씩의 현상금을 내걸었다.⁵⁶⁾

1953년 10월 13일에 100사령관인 김원용 총경이 이임함에 따라 101부대장이던 한재길 경감이 100사령관이 되고, 정충빈 경감이 101부대장이 되었다. 1952년 10월 말부터 1953년 11월 말까지 이경진 국장 취임 후 1년 1개월 간의 전과 및 피해와 무장대의 잔여세력은 다음과 같았다.

- △ 전과 : 인적손실 : 사살=29명, 생포=14명, 귀순=22명, 자체숙청=15명, 계 80명
- △ 물적손실 : 총기=25정, 실탄=352발, 식량=82석, 축우마=135두, 기타=다수
- △ 피해 : 전사 10명(경찰 1명, 의경특동대 9명), 총기피탈=7정
- △ 무장대 잔여세력 : 총 11명(구비 5명, 납치비 6명)⁵⁷⁾

경찰은 11명으로 줄어든 무장대를 완멸시키기 위하여 작전을 계속한 결과 1953년 12월과 1954년 1월의 토벌작전에서도 전과를 올렸다. 경찰은 1954년 1월 15일의 무장대는 6명뿐이라고 하면서 그 간의 전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53년 12월~54년 1월 15일까지 전과

54) 韓在吉(81세, 서귀포시 서귀동, 당시 경찰, 2002. 10. 23. 체록) 증언.

55) 『濟州新報』, 1953년 11월 21일.

56) 『濟州新報』, 1953년 11월 21일.

57) 『濟州新報』, 1953년 12월 3일.

- △ 인명 : 사살 1명, 시체 1명(자체 숙청으로 인정), 귀순 3명, 계 5명
- △ 무기 및 기타 : 소총 13정, 식량, 불온문서, 일용품 등 다수
- △ 잔존무장대 : 6명(남 4명, 여 2명)
- △ 기타첩보 : 이들은 4명(남 3, 여 1)과 2명(남 1, 여 1) 등 2개조로 갈라져 상호 연락이 두절되어 있으며, 이중 남비 2명(김성규, 정권수)이 총상 중임⁵⁸⁾

그리고 한 달 후인 1954년 2월 13일에 조화옥(여, 당 19세)이 귀순함으로써 무장대 세력은 5명(남 4, 여 1)과 무기 3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귀순한 조화옥은 “1개월 전부터 식량이 완전 두절되어 소채·감자·마필육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 부락은 경비망이 무서워 접근을 못하였으며, 자신이 포함된 4명의 무장대는 굴속도 불안하여 가시덤불 속에 돌담을 쌓고 1매의 모포를 덮고 취침하였다. 잔비는 5명이고 무장은 소총 3정인데, 부상당한 김성규가 소총 1정을 갖고 한순애와 같이 행동하고 있고 정권수, 오원권, 변창희 등 3명이 소총 2정을 갖고 별도로 행동하고 있다”⁵⁹⁾고 하면서 그간의 어려웠던 생활상과 내부실정을 실토했다.

경찰은 비록 잔여 무장대 5명이 있으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4월 1일을 기하여 산간부락 입주 및 복귀를 허용함으로써 한라산의 일부를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⁶⁰⁾

3) 군 진압작전

① 해병대 진압작전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에 있던 해병대는 진행중이던 무장대 진압작전을 중지하고, 해안선 경비를 더욱 엄중히 하였다. 그리고 7월 8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해병대는 치안을 확보하고 해안감시 및 해상경비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제주도에 상륙하는 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에 출현하는 적을 발견 즉시 포착섬멸하는 임무를 맡았다. 북한군이 전차를 앞장세워 물밀듯이 남진하자 해병대는 1개 대대(3개 중대)를 7월 15일에 제주에서 군산지역으로 이동, 전투에 투입하였다.

58) 『濟州新報』, 1954년 1월 15일, 2월 16일.

59) 『濟州新報』, 1954년 2월 16일.

60) 『濟州新報』, 1954년 3월 18일.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제주도에 8월 5일부터 수차에 걸쳐 신병 3,000여 명을 모병, 1개 연대를 편성했다. 9월 1일, 신현준 사령관의 지휘하에 제주도를 출발,⁶¹⁾ 부산에 도착하여 미 해병대와 합동훈련을 마친 후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⁶²⁾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급속히 남하하면서 1950년 12월부터 피난민이 제주도에 몰려들어 그 수가 격증하자 무장대들은 종전의 소극적인 행동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제주도에 신병훈련소 등 군 시설이 설치되고 피난민이 몰려오는데 무장대들이 자주 출몰함으로써 제주도 지역의 안정이 요망되자 군은 무장대 토벌목적으로 1개 중대 규모의 해병대를 제주도에 파견하였다. 1951년 1월 14일 출동한 해병대는 약간의 경찰전투대를 지원받아 4개 소대를 혼합 편성하였는데 해병대가 주력이었고, 토벌대의 지휘관은 통영작전에서 공을 세운 권석기 해병 중위가 맡았다.

해병대와 경찰이 혼합 편성된 토벌대의 작전이 1월 17일을 기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한라산의 무장대는 약 80명으로 추산되었다. 토벌대는 한라산 남쪽인 서귀포를 근거지로 하고, 특히 한라산 동측 산악지대를 수색하였다. 토벌대의 제1소대는 1월 27일 어승생악에서 무장대 20명을 포착하여 40분간 교전하여 3명을 사살하고 많은 노획품을 얻었다. 제2소대는 1월 29일 사라악 부근에서 무장대 약 30명이 식량을 운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습하여 3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2월 10일에는 사라악과 명도암 중간에서 무장대의 아지트를 발견, 기습하여 15명을 사살하였으나 무장대 60여 명에게 포위되었다. 해병 제2소대는 무장대와 격전을 벌였으며, 때마침 부근에서 수색중이던 제1소대의 지원으로 협공하게 되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치열한 교전에서 해병대는 무장대 20명을 사살하였으나 해병대도 일조(一曹) 서재운 외 10명의 전사자를 내었다. 제3소대 역시 2월 22일, 북악 부근에서 무장대 40명과 조우하여 교전한 끝에 5명을 사살하였다.

해병대가 주도한 1개중대 규모의 군·경 합동토벌대는 3월 말까지 작전을 계속하면서 50여 명의 무장대를 사살하고 다수의 무기를 노획함으로써 무장대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61) 『濟州新報』, 1950년 8월 5일, 9월 1일 ; 濟州派遣 軍警合同搜查隊, 『搜查日誌(濟州道 人民軍 歡迎準備委員會 事件)』, 1950년 9월 1일.

62) 海兵隊司令部, 『海兵戰鬥史』, 제1집, 1962, 38~40쪽.

② 육군 특수부대 진압작전

1952년 1월 1일에 비밀작전부대가 대구에서 창설되었는데 이 부대는 그 후 육군 특수부대(통상 명칭 9172부대)로 개칭되었다. 이 부대의 사령관에는 이기건 대령, 부사령관에는 박창암 소령(군사)과 송정협 소령(정치)이 임명되었다. 이 부대는 공작대와 기습대로 편성되었고, 하와이 근처에서 약 5개월간 특수훈련을 받았다.

이 부대는 특수훈련을 마치고 동해안부대와 한라산부대로 나뉘어 부산의 혈정정에서 훈련하였는데, 동해안부대는 해상침투를 통한 기습작전을 주목적으로 하였고, 한라산부대는 지금까지 실시한 훈련의 총 결산을 위한 현지실습 겸 게릴라토벌이 주목적이었다. 한라산부대는 1953년 1월 25일 육군본부의 지시에 의거해 1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육군첩보부대(첩보부대장 이철희 대령)에 배속되어 제주도 출동을 명령받았으며 이 때 부대 칭호를 무지개부대라 하였다. 박창암 소령이 지휘하는 장병 86명(장교 25명, 사병 61명)으로 편성된 무지개부대가 1월 29일에 제주도 화순항에 도착하였으며 서귀면 신호리로 야간이동하였다.⁶³⁾

무지개부대는 본부(장교 5, 사병 6)와 5개 지대(각 장교 4, 사병 11)로 편성되었고, 지대는 본부(장교 1, 사병 2)와 3개 조(장교 1, 사병 3)로 구성되었으며, 전원 카빈총 또는 M-1 소총 그리고 조 단위까지 무전기가 지급되었다. 신효국민학교에서 정비를 끝낸 무지개부대는 2월 3일 야음을 이용하여 눈 덮인 한라산을 향해 작전을 개시하였다. 무지개부대의 작전시기는 경찰의 100사령부가 작전을 개시한 지 얼마 후였다.

무지개부대는 병력이 부족하여 대민 심리전을 많이 하였고, 작전 때는 계급장을 떼어 지휘자가 저격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경찰 100사령부와 의 협동작전으로 1호에서 7호까지 작전을 하였는데, 대부분 경찰이 무장대를 외곽에서 포위공격하고 무지개부대가 잠복했다가 기습공격하거나 경찰이 외곽선을 포위한 상태에서 무지개부대가 포위망 속에서 위력수색하는 방법 또는 무장대들이 은거할 만한 장소에 잠복했다가 공격하는 방법으로 작전하였다.

3월 14일의 6호 작전은 무장대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입수된 정보에 의하여 경찰이 매복으로 후방을 차단하고 전 병력인 5개 지대를 14일에 견월악에서 성판악 쪽으로 집중 투입하였다. 이날 낮에 이들의 아지트를 발견하고 기습하자 무장대는 2~4인조로 분산하여 지형과 수림을 이용하여 한라산 정상

63) 陸軍大學, 『군사평론』 79, 1967, 10쪽 ; 陸軍情報參謀部, 『共匪沿革』, 1971, 523~524쪽.

쪽으로 분산 도주하였다.

이때 경찰의 후방차단이 완벽하지 않아 포착된 무장대를 섬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무장대는 3년 동안이나 사용하던 아지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제7호 작전은 제6호 작전의 전과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색작전을 계속하다가 5월 1일부터 3일간 한라산 정상 주변을 수색하고 5월 3일 야간에 지대별로 하산하여 제주경찰서에 집결함으로써 만 3개월 간의 작전을 종료하였다.

이 작전에 참가했던 한 경찰관은 “사찰과에서 나를 포함해서 6명이 무지개부대란 특수부대에 3개월 간 파견되었다. 이 부대는 이상한 부대여서 군인 1명에 경찰 1명으로 2인 1조에다 우리가 한 사람씩 끼었다. 계급장도 없었고, 보급은 경비행기로 받았으며, 개인당 모포 2매와 우비 2장씩을 지급 받았는데 2인용 참호를 파고 밤을 보냈다. 정말 폭도보다도 더 어렵게 생활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공비를 잡을 목적이 아니고, 이북에 침투시키려고 극비에 한라산에서 훈련을 한 것이었다. 한라산에서 내려올 때 짚차로 제주로 오다가 검문을 당했는데, 무슨 마패같은 것을 보니까 검문하던 헌병이 경례를 하고 무사 통과시켰다.”고 증언했다.⁶⁴⁾ 결국 무지개부대는 북한 침투훈련을 겸해 제주에서 작전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작전에서 경찰과 무지개부대간에 협조 불충분으로 오인교전이 있기도 하였으나 적을 분산 도주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작전결과는 사살 7, 생포 2, 귀순 2명이었고 전사자는 없었다.⁶⁵⁾

다. 한라산 금족해제

1) 금족 해제와 마지막 토벌

1954년 8월 28일에 이경진 국장 후임으로 신상묵 경무관이 제주도경찰국장에 취임하였다. 신상묵 국장은 상당기간동안 잔존 무장대 5명의 행적이 포착되지 않자 1954년 9월 21일을 기하여 금족령을 해제, 한라산을 전면개방하고 주민들의 성곽 경비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⁶⁶⁾ 한라산 개방 1년 후인 1955년 9월 21일에 백

64) 高瀛珍(78세, 제주시 영평동, 당시 경찰, 2002. 2. 7. 채록) 증언.

65) 陸軍大學, 앞의 책, 13쪽 ; 李章鎬(당시 무지개부대 지대장) 증언(전사편찬위원회 채록).

66)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318~319쪽.

록담 북측에 ‘한라산 개방 평화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기념비에는 “영원히 빛나라. 제주도경찰국장 신상묵 씨는 4·3사건으로 8년간 봉쇄되었던 한라 보고를 갑오년 9월 21일 개방하였으니 오죽 영웅적 처사가 아니리오. 다만 본도는 기여된 자유와 복음에 감사할지어다”란 격문이 새겨져 있다.⁶⁷⁾

아직도 5명의 무장대가 한라산의 어디인가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라산의 금주령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경찰의 진압작전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경찰은 오랫동안 무장대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1955년 2월 9일에는 신 국장이 직접 5명의 잔존 무장대 가족을 방문하여 “지수하면 생명은 절대 보호한다”고 하는 등 조속한 자수를 권고하도록 가족들을 설득하기도 하였다.⁶⁸⁾

1956년 4월 3일, 사찰유격중대가 구좌면 송당리의 체오름에서 무장대 3명과 교전 끝에 무장대 부책임자 정권수를 사살하였다. 이번 전과는 지난 1954년 2월 중순 이래 2년 2개월만에 얻은 전과로서 이제 무장대는 4명으로 줄어들었다. 경찰은 무장대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1957년 3월 11일의 경찰국 회의에서 무장대 소탕임무를 각 경찰서에 이관하여 경찰서장이 책임지도록 하였다.⁶⁹⁾

1957년 3월 21일, 제주경찰서 사찰유격대가 월평동 견월악 지경에서 식량확보차 하산한 무장대를 포착하고 도주하는 이들을 추격하다가 대열에서 뒤떨어진 여자무장대 한순애를 생포하였다.⁷⁰⁾ 3월 27일에 경찰국 사찰유격대가 한라산 중북 평안악 밀림지대에서 무장대 3명과 교전 끝에 총책 김성규 등 2명을 사살하였고, 마지막 무장대 오원권도 4월 2일에 성산포 유격대가 구좌면 송당리에서 생포하였다.⁷¹⁾ 이로써 한라산에서 총성이 멈추게 되었다.

2) 이재민 구호와 마을재건

① 이재민 구호

4·3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이재민 구호문제였다. 이재민의 발생은 무장대의 방화로 인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군·경이 무장대와 주민을

67)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319쪽.

68) 『濟州新報』, 1955년 2월 10일.

69) 『濟州新報』, 1957년 3월 23일.

70) 『濟州新報』, 1957년 3월 23일.

71) 『濟州新報』, 1957년 3월 29일, 4월 3일, 5월 15일 ; 『朝鮮日報』, 1957년 4월 3일.

분리시킨다고 중산간지대의 주민을 해안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948년 11월부터 시작된 중산간마을의 소개는 이재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행되었다. 군경의 방화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일부가 산으로 올라갔고, 많은 수가 해안지역으로 소개하였지만 생활은 막막했다. 겨울을 보내는 이재민의 생활은 참상 그 자체였다.

4·3사건으로 인한 이재민의 수는 8만~9만 명⁷²⁾에 이르렀다.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이었다. 이재민 대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간헐적으로 다루어졌다. 제주출신 오용국(吳龍國) 의원의 미발언 원고와 주기용(朱基溶) 의원의 '제주답사기'에서 제주 이재민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행정부에선 1949년 3월의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의 제주방문 이후에서야 약간의 구호물자와 예산지원이 있었을 뿐이었다.

1948년 10월 22일의 국회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여순사건에 따른 전남지역 이재민 구호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제주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8년 12월 8일의 제124차 회의에서 반란지구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선무반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⁷³⁾ 이에 따라 제주도를 시찰했던 오용국 의원은 1949년 1월 11일의 시찰결과 보고에서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대책 등을 다루고 있다.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대책 : 폭도의 살인, 방화, 약탈 등으로 인한 이재민과 국군의 작전에 의한 산간부락민의 소개로 인한 이재민이 수만인데, 이들의 구호가 중요하며 제주도의 이재민구호회 및 관민 협력 하에 구호에 노력중임.

(1)식량보급=이재민은 해안부락의 주민가 또는 향사 등에 수용되어있고, 식량결핍자에 대해서는 군이 폭도로부터 압수한 양곡을 위시하여 도 당국의 재고품과 부락민의 의연양곡 등을 배급하는 중이며, 이 외에 감자를 대응으로 배급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절박한 실정에 비추어 중앙으로부터 상당량의 보급이 필요함.

(2)의류 등의 보급=폭도의 습격으로 의류·침구 등이 멸실되어 지방 독지가로부터 고의를 수집배급하고, 중앙에서 특배된 면포(1만마)를 배급하는 등 노력중이나 엄동을 당한 이재민의 의류결핍은 목불인견의 참상이어서 중앙의 의류보급이 필요함.⁷⁴⁾

72) 이재민 숫자에 대해 『自由新聞』(1949년 3월 23일)에는 86,797명, 『朝鮮日報』(1949년 6월 2일)에는 88,990명, 『서울신문』(1949년 9월 1일)에는 97,70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73) 國會事務處, 「叛亂地區 宣撫班派遣에 관한 件」, 『第1回 國會速記錄』,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74) 國會事務處, 「宣撫班 報告」, 『第2回 國會 定期會議速記錄』, 第3號, 1949년 1월 11일.

제주도 이재민의 참상에 대해서는 주기용 의원이 1949년 3월 1일부터 10여 일간 제주도를 답사하고 자유신문에 기고한 ‘제주답사기’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재민의 현상에 대하여 : 산간, 목축지대는 물론 해안부락지대까지라도 우선 남원, 북촌, 동북, 서귀포의 4·3사건 후 소실된 가옥이 16,177호에 30,461동, 양민 피해자 수 1,193명, 부상자 수 419명, 이재민 수 86,797명으로 차등 이재민은 식량, 의류를 운반할 틈도 없이 피난한 관계로 문자 그대로 돼지우리처럼 만든 집 속 땅바닥에 건초를 깔고 그냥 기거하며, 해초·산초로써 그날 그날을 겨우 연명하여 가는 형편이고, 집 내외는 악취가 진동하여 견딜 수 없었다. 방문을 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만 지을 뿐, 이 가련한 꼴을 바라보는 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다... 식량뿐만 아니라 의류와 침구도 없이 헐벗고 지내는 터로 역병까지 침입하여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다. 정부는 하루바삐 식량, 의류, 약품 등을 차등 이재민에게 보내어야 될 것이며, 전국의 애국동포는 애국이념에서 식량을 절약하며 의류, 약품을 분양하여 제주의 애국 동포를 구제하는데 최대의 성의를 표시하기를 눈물로써 호소하는 바이다.⁷⁵⁾

1949년 3월 10일 이범석 국무총리와 신성모 내무부장관이 제주도를 시찰하고 귀경한 후부터 이재민에 대한 식량과 의류의 공급이 시작되었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시찰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재민의 구호와 재건의 시급성을 지적하였다.⁷⁶⁾ 이때야 비로소 사회부에서 식량, 의복, 침구, 생필품 등 화차 5대 분을 제주도에 보내고, 뒤이어 8대 분을 제주도로 보냈다.⁷⁷⁾ 그리고 정부는 1949년 7월부터 3개월간의 제주도 이재민 구제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다.⁷⁸⁾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제주도에는 피난민이 쇄도함으로써 4·3사건 이재민에다가 전쟁 피난민까지 겹치면서 생활상이 말이 아니었다. 전쟁 피난민은 14만 9천여 명에 까지 이르렀다. 이들에 대한 구호업무가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나 구호실적은 미미했다. 1953년 1월 30일에 제주도구호위원회의 제16차 위원회에서 할당된 구호품은 겨우 쌀 2,814석, 광목 14,500마, 모포 2,275매, 우유 428상자, 비누 38상자였다.⁷⁹⁾

75) 『自由新聞』, 1949년 3월 20일, 22일, 23일, 24일.

76) 『東亞日報』, 1949년 3월 16일 ; 『서울신문』, 1949년 3월 15일, 17일.

77) 『독립신문』, 1949년 3월 19일 ; 『東光新聞』, 1949년 3월 19일.

78) 『京鄉新聞』, 1949년 7월 21일.

79) 『濟州新報』, 1953년 12월 2일.

4·3사건 발발이래 사건이 종결된 1954년 9월 21일까지 얼마만한 양의 구호가 있었는지는 자료부족으로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 4·3사건 이재민 및 전쟁 피난민수와 1953년 1월 30일의 구호양곡 및 생활필수품의 할당량을 고려할 때, 구호량은 이들의 수요에 절대 부족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② 중산간마을 재건

4·3사건으로 인한 피해마을은 160곳이고 피해 호수는 15,228호, 35,921동으로서,⁸⁰⁾ 이는 중산간마을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음을 의미한다. 군·경의 소개령에 의해 폐허로 변한 마을의 복구는 1949년 봄부터 해안지대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경찰의 허가를 받아 자력복구가 시작되었다.

마을복구에 관한 정부의 공식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던 1949년 1월 11일 제주출신 오용국 의원의 국회보고 원고에는 “주택의 복구는 제주도의 공유림, 기타 사유림을 별채하여 건축자재로 보급하고, 자력으로 복구키 곤란한 이재민에게는 1호당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건축비를 중앙에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⁸¹⁾ 1949년 3월 초 제주도를 현지 답사한 주기용 국회의원은 “중산간부락은 전소 상태로, (중략) 16,000호에 매호당 20,000원 정도를 보조해서 가주택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⁸²⁾고 하면서 주택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한편 제2연대가 부대장의 결단으로 마을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학교 교실을 신축해준 사례를 볼 수 있다. 제2연대 1대대장 전부일 소령은 1949년 2월 말 경에 작전상 이유로 별채한 나무를 활용하여 소실된 중문중학교 교실을 만들어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⁸³⁾ 또한 1949년 7월경,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이 4·3사건 진압작전을 마치고 해안지대로 소개했던 주민들을 원주지로 복귀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읍 봉개리를 재건하여 입주시키면서 마을명을 함명리(咸明里)로 개칭하였다.⁸⁴⁾

80) 『濟州道』, 8호, 1963년. 『서울신문』(1949년 9월 1일)에는 39,280호, 朱基瑤의 제주답사기에는 16,177호에 30,461동으로 기록됨.

81) 國會事務處, 「宣撫班 報告」, 앞의 國會速記錄, 1949년 1월 11일.

82) 『독립신문』, 1949년 3월 19일 ; 『自由新聞』 1949년 3월 24일.

83) 全富一, 『내일을 위해 오늘에 살다』, 大都文化社, 1993, 261~262쪽.

84) 『濟州新報』, 1955년 2월 5일.

1950년도에 정부는 완과가옥은 15,000원, 반과는 10,000원, 가족이 철수한 세대는 5,000원을 지급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택피해자에게 전국적으로 총 3억원을 주택보조비로 지급하면서 제주도에는 2,700만원을 배정하였다.⁸⁵⁾ 그러나 이 정도의 소액자금 지원으로는 주택문제 해결에 역부족이었다.

1950년 2월, 김충희 제주도지사 겸 제주부흥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4·3사건으로 인한 이재민 10만여 명의 대부분은 토막헐거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주택과 각종 산업기관 및 공공시설의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생업자금 조달에 제주도 부담액 약 27억 1천만원, 국고보조 약 14억 2천만원, 융자액 약 47억 7천만원 등 부흥에 필요한 자금 총액은 약 89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다.⁸⁶⁾ 그러나 이러한 융자요청이 실현되기 전에 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기간에 마을복구에 관한 노력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정부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했으므로 제주도의 소실된 마을복구에 물적지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정부는 1952년 10월 1일부터 4·3사건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를 위한 기본자료 수집에 착수하였다.⁸⁷⁾ 그리고 1954년 4월 1일에서야 한라산이 부분적으로 개방되고 산간마을 입주·복구가 허용됨으로써 복구사업이 활발히 진척되었다. 1953년 12월 21일 제주도구호위원회는 9만 이재민을 위한 귀농정착용 자재 5,000호분을 건축용과 보수용으로 구분하여 6,770호에 배급⁸⁸⁾한 것으로 보아 정부지원은 미미하였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뒤 제주도 당국은 '난민정착사업'에 적극 나섰다. 1954년 11월 20일 제주도지사가 각 군수에게 보낸 공문에서 "임목(林木) 구득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림 벌채 허가를 주선코자 하니 주택을 신축이나 보수하려는 사람 중 국유림 벌목희망자를 파악하라"⁸⁹⁾고 지시하였다. 1955년 3월 2일자로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4·3사건 이재농가 2,074세대와 미개간지 개척사업을 주로 한 피난민과 원주실업난민 898세대 등 2,972세대의 귀농 정착사업에 소요되는 구호미, 건축자재, 농기구 등을 긴급요청하면서 건축자재로서 목재, 양회, 못

85) 『東亞日報』, 1950년 1월 12일 ; 『朝鮮日報』, 1950년 1월 12일.

86) 「濟州道復興資金 融資要請의 件」, 『國務總理室 關係書類』, 1950년 2월 10일.

87) 『濟州新報』, 1952년 9월 28일.

88) 『濟州新報』, 1953년 12월 23일.

89) 濟州道, 『難民定着-4·3事件 被害狀況調査』, 1955, 263~264쪽.

등을 요청”함으로써,⁹⁰⁾ 주택 복구에 필요한 목재는 국유림 벌목으로 충당하려고 했음을 엿볼 수 있다.

1954년 9월의 한라산 개방에 따른 원주지 마을복구 허용 및 정부의 지원과 마을 주민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중산간마을 재건사업은 점진적으로 실현되었다.

90) 濟州道, 위의 자료, 244~247쪽.

IV. 피해상황

1. 개황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엄청난 인명피해 및 물적피해를 남겼다. 4·3사건이 발발한 지 50여 년이나 경과되었고, 그 원인과 억울한 희생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국가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이 없었다. 더구나 정부당국에서 인명피해 및 물적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 당국의 발표, 제주출신 국회의원의 조사, 각 언론사 제주 특파원 기자들의 취재 등을 통해 그 피해 규모의 대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1960년 6월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피해신고서, 1990년대 제주도의회 4·3특위에서 접수한 피해신고서, 2000년 6월 8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4·3특별법에 의해 4·3사건위원회에 접수된 희생자신고서 등을 통해 전체적인 피해 규모 및 지역별·연령별·성별·시기별·가해자별 피해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

물론 각 조사 주체 및 기록 등에 따라 피해 실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당시 기록과 각종 신고서 등에 나타난 전반적인 피해실태를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가. 인명피해 개황

1) 인명피해 수치

4·3사건의 희생자(사망·실종자)와 이재민 숫자에 대해서 신문·국무회의록·미대 사관문서 등 각종 국내외 자료에 언급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기록별 인명피해 숫자

숫 자		언급 시기	언급 주제	전 거	비 고
희생자	이재민				
15,000		49.2.15	스위니 신부	미대사관문서 49.3.14	
20,000		49.3	연합신문	『연합신문』 49.3.4	
	64,378	49.3	도민대표 6명	『동아일보』 49.3.12	
15,000		49.3	주한미육군 사령부	주한미육군사령부 보고 49.4.1	
17,000		49.4.2	LA한인들	LA한인들이 트루먼대통령에게 보낸 제안서 49.4.2	
15,000		49.4.10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49.4.10	
15,000		49.5	미군사고문단	미대사관문서 49.5.18	
	7만여	49.5.17	장기영	『국무회의록』 49.5.17	
40,000		49.6	김영진 특파원	『경향신문』 49.6.28	
30,000		49.6	제주도 당국	『조선중앙일보』 49.6.28	인구 282,942(46년) 250,400(49년)
29,702	97,703	49.9	서울신문	『서울신문』 49.9.1	내무차관 일행 과 동행 취재
30,000	8만	49.9	서재권	『신천지』 49.9월호	
30,000		50.2.10	김충희 도지사	『국무총리실서류』 50.2.10	
27,719	78,534	50.4	김용하 도지사	미대사관문서 50.5.23	
60,000		52.9.27	라이언 신부	라이언의 서한 52.9.27	
27,719		53.	제주도청	『제주도세일람』	
65,000		60.5.30	고담룡 국회의원	『제주신보』 60.5.31	
50,000 ~60,000		60.7	고창부	『조선일보』 60.7.17	
40,000 ~50,000		61.1.26	김성숙 국회의원	『조선일보』 61.1.26	

이 표를 보면, 희생자 수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변하고 있다. 우선 1949년 2월부터 5월까지 희생자 수는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4·3 사건이 진정된 1949년 6월부터 1950년 4월까지 신문·국무회의록·미대사관문서

등 각종 국내외 자료에 보이는 희생자의 수는 최소 27,719명에서 최다 4만여 명이다. 마지막으로 1960년 4·19 직후 국회에서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가 비등할 때 제기된 수치로서, 4만 명에서 65,000명까지 주장되었다.

첫 번째 시기 조사 자료 가운데 1949년 3월 연합신문에 게재된 희생자 통계와 주한미육군사령부의 보고 수치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연합신문 통계는 각 읍·면별로 희생자 수를 정리해 놓음으로써, 현지 조사를 수행한 결과임을 내비쳤다(아래 표 참조).

읍·면별	제주읍	애월면	한림면	조천면	구좌면	성산면
희생자 수	4,500	5,000	3,000	2,000	1,000	500
읍·면별	표선면	남원면	서귀면	중문면	안덕면	대정면
희생자 수	300	600	1,000	1,500	400	200
합 계	20,000명					

또한 주한미육군사령부의 「제주도사건종합보고서」에 나온 희생자 15,000명 수치는 현지 경찰과 주둔군 정보담당 부서로부터 직접 얻은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14,000명~15,000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최소한 80%가 토벌대에 의해 살해됐다”고 하여, 교전 당사자가 아닌 주민들이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였다.

위 두 자료의 신빙성은 높지만, 1949년 3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1949년 전반기에 집중된 사망자 수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1949년 5월 10일 제주도 재선거의 실시, 5월 15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의 해체를 정점으로 사태가 거의 진정된 이후에 집계된 통계를 볼 필요가 있다. 1949년 6월부터 1950년 4월까지 자료들이 주목된다.

이 시기 통계 수치는 대부분 제주도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른 것이다. 『조선중앙일보』(1949. 6. 28)는 제주도 당국의 발표라 하여, 1946년에 282,942명이던 제주도 인구가 1949년 5월 1일 인구조사 결과 250,400명으로 감소함으로써, 4·3 사건을 거치면서 3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소개하였다. 이 수치는 『서울신문』 기자가 내무부 차관 일행과 동행하여 취재한 결과를 소개한 기사(1949. 9. 1)의 29,702

명과 비슷하다.

또한 1950년도에 김충희·김용하 두 제주도지사가 밝힌 3만여 명, 27,719명에도 근접해 있다. 이러한 제주도 당국이 발표한 희생자 수는 1949년 하반기까지의 희생자도 집계된 수치이므로 전체 희생자 수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주도 당국이 직접 각 읍·면, 마을별로 실지 조사를 시행했는지, 아니면 인구의 감소 수치로 희생자를 추정한 결과인지 확실하지 않다. 제주도 당국은 1953년에 발행한 공식기관지 『제주도세요람』에 위 27,719명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수로 기록하였다.

한편 인구 통계와 관련해서는 1948년 1월 1일자 인구를 281,000명으로 조사한 미국 측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¹⁾ 또한 1949년 5월 1일 대한민국 공보처에서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조사의 최종 집계 결과, 제주도 인구는 254,589명(남자 114,759명, 여자 139,830명)이었다.²⁾ 즉, 1년 4개월 사이에 26,41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인구 통계로 희생자 수를 유추하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우선 1948년도 1월 1일자 인구가 정확한 조사 방식에 의거해서 도출된 수치인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적인 인구증가율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초와 1949년 말 사이의 인구 감소는 25,000~30,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감소된 인구 25,000~30,000명이 곧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는 첫째, 사태의 와중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일본이나 전국 각 지역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피자는 1947년 3·1사건 이후부터 1948년에도 계속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로 인한 인구감소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둘째, 1950년 6·25전쟁 직후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전국 각 형무소에서 재소 중 희생된 사람들이 3,000여 명에 달했는데,³⁾ 이들은 1949년 5월 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다. 그러므로 희생자 수에서 제외시켜야 할 도피자 수만큼 1950년 이후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수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1948년 초부터 1949년 말까지 감소한 인구 25,000~30,000명을 전체 4·3사건 당시 희생자로 보는 데 큰 무리는 없을

1) National Economic Board,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32, May 1948.

2) 『서울신문』, 1949년 10월 14일.

3) 형무소 재소자와 예비검속자의 희생 실태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IV장 '피해상황'에 서술되어 있다.

것이다. 결국 제주4·3사건으로 빚어진 인명피해는 25,000~30,000명으로 추정된다.

2) 희생자 신고서에 나타난 인명피해 실태

4·3사건 종결 이후 공공기관에서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세 번이었다. 즉, 1960년 6월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피해신고 접수, 1994년 2월 7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제주도의회 4·3특위의 신고 접수, 2000년 6월 8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4·3특별법에 의한 제주4·3사건위원회의 희생자신고서 접수 등이다. 이 신고서 내용을 통해 4·3사건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 및 지역별·연령별·성별·시기별·가해자별 피해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

① 1960년 국회 양민학살신고서

1960년 6월 6일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양민학살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 현지에 도착하였다. 이들의 현지 출장 조사에 맞추어 제주신보사에서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4·3사건 및 6·25 당시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이때 총 1,259건, 인명피해 1,457명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당시 신고서의 내용 요강은 다음과 같다.

학살자 인적 사항, 동 유가족 상황, 수감처 및 연월일, 수감집행자, 최종면회 연월일, 학살집행자, 동 장소 일시, 학살상황, 학살 후 처리상황, 증인 주소 및 성명, 요망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

총 1,457명의 희생자를 성별·출신주소별·연령별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⁴⁾ 우선 성별로는 남자가 1,172명(80.4%), 여자가 285명(19.6%)이었다. 다음으로 출신주소별·연령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濟州新報』, 1960년 6월 13일.

□ 출신 주소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제주시	조천면	구좌면	애월면	한경면	한림읍	중문면
합 계	92	235	51	104	50	138	3
비율(%)	6.3	16.1	3.5	7.1	3.4	9.5	0.2
구분 계	안덕면	대정읍	서귀읍	남원면	성산면	표선면	
합 계	216	8	35	244	21	223	
비율(%)	14.8	0.5	2.4	16.7	1.4	15.3	

(총계는 1,420명으로서, 37명은 집계에서 누락됨)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0세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1세 이상	기 타
합 계	82	147	437	290	181	60	119	103
비율(%)	5.8	10.4	30.8	20.4	12.8	4.2	8.4	7.3

(기타는 나이가 불명인 경우임. 총계는 1,419명으로서, 38명은 집계에서 누락됨)

② 제주도의회 신고서

1993년 3월 20일, 제4대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4년 2월 7일, 4·3특위에서는 '4·3피해신고실'을 개설하여 피해신고 접수를 시작하였다. 피해신고실 개설 이후 2000년 2월 29일까지 피해신고실을 통해 피해신고 접수된 인원은 총 12,243명이다. 이들을 지역별·성별·연령별·가해자별로 나누어서 현황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도 외
합 계	3,384	1,197	4,523	3,133	6
비율(%)	27.6	9.8	36.9	25.6	0.05

□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남	여	기 타	비 고
합 계	9,637	2,574	32	
비율(%)	78.7	21.0	0.26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10세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1세 이상	기타
합 계	676	2,119	4,257	1,851	1,159	817	706	658
비율(%)	5.5	17.3	34.7	15.1	9.5	6.7	5.8	5.4

(기타란은 나이가 불명인 경우임)

□ 가해자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토벌대	무장대	기 타	분류 불능
합 계	10,277	1,353	209	404
비율(%)	84.0	11.1	1.7	3.3

(기타란은 아사·병사·자살 등임)

③ 제주4·3사건위원회 신고서

4·3특별법의 주요 취지는 제1조 목적에도 밝혀져 있듯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다. ‘희생자’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서, 제주4·3사건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 자를 말한다.

위원회는 2000년 6월 8일부터 국내외 지역에 제주4·3사건 희생자 신고처를 설치하고 2001년 1월 4일까지 13,213명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미신고자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90일간 연장하고 보증인 자격을 완화하게 되었다. 2차 추가접수를 받은 결과, 2001년 5월 30일 현재 최종 국내외 지역 신고자는 14,028명으로 집계되었다.⁵⁾

5) 2000년 6월 8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2차에 걸쳐 4·3관련 희생자 신고를 받은 결과

이들을 지역(마을)·연령·시기(연도·월)·가해자 별로 나누어서 현황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 접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망자	행 방 불명자	후 유 장애자	비 고
지역별						
합 계		14,028	10,715	3,171	142	
제 주 도		13,391	10,201	3,056	134	
도 외	소계	637	514	115	8	
	국내	576	462	106	8	
	일본	57	48	9	-	
	미국	4	4	-	-	

※ 남자 : 11,043명(78.7%), 여자 : 2,985명(21.3%)

□ 도·시군별 접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신고인수	희생자 수				유족인수
		계	사망자	행 방 불명자	후 유 장애자	
총 계	9,917	14,028	10,715	3,171	142	28,561
제주도	57	87	73	12	2	203
제주시	3,146	4,606	3,389	1,180	37	7,743
서귀포시	953	1,322	1,012	297	13	2,974
북제주군	3,404	4,714	3,626	1,024	64	10,031
남제주군	2,357	3,299	2,615	658	26	7,610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10세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1세 이상
합 계	814	3,026	4,956	2,108	1,365	899	860
비율(%)	5.8	21.6	35.3	15	9.8	6.4	6.1

신고희생자는 14,028명이지만, 이중신고자 및 신고내용 미비자 등이 섞여 있어 제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2004년 1월부터 3개월동안 3차 희생자 신고를 받게 된다.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947년 이전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 이후	기타
합 계	101	7,443	4,802	1,100	326	256
비율(%)	0.7	53.1	34.2	7.8	2.3	1.8

(1947년 이전 희생자 가운데는 3·1사건 사망자, 호적 기입 오류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1951년 이후 희생자 중에는 호적상 사망신고를 늦게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 기타는 연도 미기입자)

□ 가해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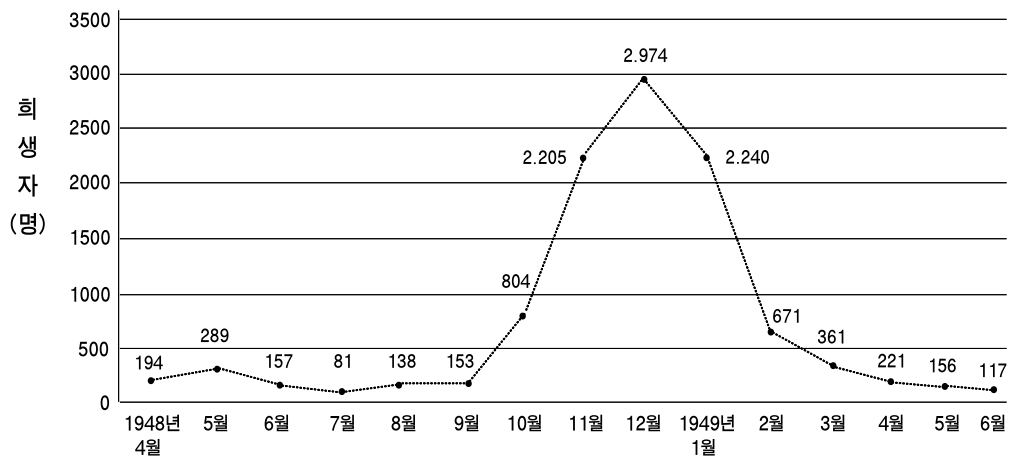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계	토벌대	무장대	기 타	공 란
합 계	10,955	1,764	43	1,266
비율(%)	78.1	12.6	0.3	9.0

(토벌대의 범주에는 경찰·군인·서청·자경대·응원대·민보단 등이 포함됨. 무장대의 범주에는 무장대·유격대·자위대·인민군·폭도·공비·괴한 등이 포함됨. 기타에는 자살·주민·정체불명 등이 포함됨)

□ 월별 현황

월별 희생 신고 자료



④ 분석 결과

각 신고서에서 주목되는 항목은 연령·시기·가해자별 현황이다. 일반주민의 희생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연령별 현황에서 10세 이하 신고자가 국회, 제주도의회, 4·3위원회별로 각각 5.8%, 5.5%, 5.8%로 비슷하게 집계된다. 또한 61세 이상은 각각 8.4%, 5.8%, 6.1%로서 대동소이하다. 이들 10세 이하 어린이와 61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전혀 전투능력이 없는 주민들이라 할 수 있다.

4·3사건위원회의 희생자 신고 내용을 시기별로 보면, 1948년 53.1%, 1949년 34.2%로 나타난다. 특히 월별 희생실태를 분석하면, 강경진압작전 진행 전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집중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48년 4월부터 1949년 6월까지의 희생 신고자는 10,761명인데, 이 가운데 83%인 8,894명이 앞의 5개월에 집중됐다.

다음으로 가해자별 현황을 보면, 제주도의회 신고서에는 토벌대 84.0%, 무장대 11.1%의 비중을 보였고, 4·3위원회 신고서에는 토벌대 78.1%, 무장대 12.6%로 나타났다.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제주도의회 신고서는 88.4% 대 11.6%, 4·3위원회 신고서는 86.1% 대 13.9%로서, 비슷한 비율이 된다. 이와 같은 통계는 주한미육군사령부의 「제주도사건종합보고서」에 주민들이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비율은 결국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무수히 많은 주민들이 대부분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음을 알려준다. 더욱이 10%를 상회하는 노약자에 대한 무차별 살상은 4·3사건을 진압한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3) 군·경·우익단체의 인명피해 실태

① 군인 전사자

제주4·3사건 당시 제주에는 이곳에서 창설된 제9연대를 비롯하여 다른 지역에서 파견되어 주둔하였던 제11연대, 제2연대, 제1독립대대, 해병대, 무지개부대 등이 있었다. 이들 부대 가운데 4·3사건 당시 무력충돌이 가장 심했던 1948년 후반과

1949년 전반에 제주도에 주둔하였던 부대는 제9연대와 제2연대였다.

제9연대의 전사자는 현재 『호국전몰용사공헌록』에 12명의 명단이 남아 있으나,⁶⁾ 전체적인 수는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미국 측 고문관의 「제주도 제9연대 일일보고서」에는 1948년 12월 19일 신엄리 부근에서 제7중대원 9명이 교전 중 사망하였고,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참모부 일일보고서」에는 10월 6일 종달리에서 1명, 11월 5일 중문리에서 1명, 11월 18일 북촌리에서 2명 전사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10월 10일 색달리에서 1명, 아라리에서 1명이 각각 전사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제9연대 사병이었던 강종석은 “40여 명이 희생되어 대전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밝히고 있다.⁷⁾ 제2연대의 경우, 1949년 6월 3일 연대장 함병선이 92명이 전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⁸⁾ 한편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치되었던 제6여단 유격대대에서도 27명의 전사자가 생겼다.⁹⁾

제9연대의 전사자가 제2연대 및 제6여단 유격대대보다 훨씬 적다. 앞의 4·3사건 위원회 신고서에 나타난 연도별 희생자 수가 1948년 7,443명(53.1%), 1949년 4,802명(34.2%)으로서, 1948년 희생자 비중이 큰 것과는 반대의 결과다. 이는 제9연대의 소개작전이 무장대와의 직접적인 교전이 아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강경토벌작전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제2연대는 한라산 속으로 작전지역을 옮겨서 직접 무장대와 교전을 펼쳤기 때문에 전사자가 속출하였던 것이다.

제9연대와 제2연대의 전사자를 제외하면, 제11연대 4명,¹⁰⁾ 해병대 13명¹¹⁾ 등이 4·3사건의 과정에서 전사하였다. 결국 제주4·3사건으로 인한 군인 전사자는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180명 내외로 추정된다.¹²⁾

6) 國防部, 『護國戰歿勇士功勳錄』 제1~9권, 1996~1998.

7) 姜鍾哲(36세, 충남 대덕, 당시 제9연대 사병, 1966. 5. 20. 채록) 증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참전자 증언록』에 수록).

8) 『京鄉新聞』, 1949년 6월 4일, 10일.

9) 『육군역사일지』, 1949년 5월 20일의 기록에는, 5개월 간의 전투에서 총 119명이 사망하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2연대원 92명 외에 제6여단 유격대대원 27명이 포함되어 있다.

10) Incoming Message, 1948. 7. 4(주한미군사령관 발신 문서).

11) 해군본부, 「제주4·3사건 관련 요청자료 회신」(작군 12600-111, 2001. 3. 27).

12) 육군본부에서 제주4·3사건위원회에 통보해온 공문(「제주4·3사건 관련자료 송부」, 연수 31001-010056, 2001. 3. 23)에는 육군 측 사망자 인원을 83명(제11연대 1명, 제9연대 2명, 제2연대 80명)이라고 통지하였으나, 2차 자료에 의거한 수치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

② 경찰 전사자

경찰청에서 제주4·3사건위원회에 보낸 제주4·3사건 관련 순직·전사 경찰관 및 상이·전상 경찰관 대장에 등재된 명단에는 전사 경찰관 122명, 전상 경찰관 92명이 기록되어 있다.¹³⁾ 그러나 제주시 충혼묘지 경찰관 묘역의 비석을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4·3사건으로 인한 경찰관 희생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948년 4월부터 11월까지 희생자가 41명(29%), 1948년 12월부터 1949년 4월까지 17명(12%), 1949년 5월부터 1956년 9월까지가 82명(58%)이다.

토벌대가 가장 강력하게 작전을 수행하던 시기에 희생된 경찰이 적은 것은, 앞서 제9연대 군인이 제2연대보다 적은 희생자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무장대와의 상호 교전보다는 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토벌을 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다가 1950년 이후 경찰이 잔여무장대 진압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한라산 깊숙이 주둔소를 설치하여 교전을 펼치는 중에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다.¹⁴⁾

③ 우익단체의 인명피해

4·3사건 당시 우익단체로는 대동청년단, 서북청년회, 대한청년단, 향보단, 민보단, 청년방위대, 특공대, 학생연맹 등이 있었다. 이들 단체원들은 군·경 토벌대와 함께 직접 작전수행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마을의 방위와 방범, 입초(立哨), 순찰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이들 조직 가운데 특히 민보단은 18~55세의 성년 남자로 구성되었는데, 무장대의 마을 습격 때 피살·납치된 자들이 많았다. 한편 이들 민보단원 가운데 상당수는 군경에 협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대의 습격 때 근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무장대와 내통했다고 하여 총살당하기도 하였다.

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우익단체원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제주4·3사건위원회가 제주보훈지청으로부터 입수한 4·3사건 관련 국가유공자는 총 744명이다.¹⁵⁾ 이들은 대부분 경찰과

13) 경찰청, 「(제주4·3사건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에 보관중인 순직·전사 경찰관 및 상이·전상 경찰관 대장에 등재된 명단) 자료 송부」(보이 63740-141, 2001. 3. 24).

14) 김종민, 「4·3 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389쪽.

15) 제주보훈지청이 제주도의회에 보낸 4·3사건 피해와 관련한 국가유공자 명단은 총 657명이다 (제주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 명단 송부」, 1996. 12. 18). 또한 제주보훈지청이 제

애국단¹⁶⁾ 출신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경찰출신 105명을 제외한 639명이 우익단체원에 해당된다.

나. 물적피해 개황

제주4·3사건으로 인한 물적피해는 크게 마을공동체의 파괴 및 소실, 공공시설의 소각 피해, 산업부문의 피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3사건이 진정된 1949년 3월부터 1950년까지 신문·국무회의록·미대사관문서 등 각종 국내외 자료에 언급된 물적피해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4·3사건으로 인한 마을피해는 300여 마을(자연촌, 洞)이었으며, 가옥피해는 2만여 호(戶), 4만여 동(棟)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치는 1953년 제주도 당국이 공식 발표한 이재 호수 19,934호, 소실 동수 39,285동과도 일치한다.¹⁷⁾ 1955년 초 각 읍·면별로 피해상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는 15,015세대(소실 12,270세대, 소개 2,745세대)로 나타나지만,¹⁸⁾ 제주읍·구좌면·조천면·대정면의 조사가 부실했음을 감안하면 2만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된다.

□ 물적피해 현황

집 계 시 기	수 치				출 전
	마을	가 옥	공 공 시 설	기 타	
49.3.4	295부락	2만여호			조선중앙일보 49.3.4
49.3.4	73리	20,280동			연합신문 49.3.4
49.3.12	295부락	12,985호 26,337동	학교(34)		동아일보 49.3.12
49.3.23		16,797호 30,461동			자유신문 49.3.23

주4·3사건위원회에 보낸 명단은 총 478명이다(제주보훈지청, 「제주4·3사건관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명단 등 송부」, 2002. 4. 29). 위 두 공문 첨부 명단을 상호 대비 검색한 결과, 중복된 명단을 일원화시키면 4·3사건 관련 국가유공자는 총 744명이 된다.

16) 애국단은 곧 민보단을 위주로 한 우익단체를 지칭한다.

17) 濟州道廳, 『濟州道勢要覽』, 1953.

18) 제주도청, 『난민정착 - 4·3사건 피해상황조사』, 1955.

집 계 시 기	수 치				출 전
	마 을	가 옥	공 공 시 설	기 타	
49.3.25		17,912호 33,489동			경향신문 49.6.29
49.3월말		18,000호	학교(47)		자유신문 49.4.19
49.4.23		33,500호		대소공장(20여)	국도신문 49.4.23
49.5.17	300부락	3만여호	학교(40)/교실(220)	식량 6만석	국무회의록 49.5.17
49.5월말	300부락	18,000호	학교(46)/면사무소(4) /공공건물(10여)		신천지 49.9월호
49.6.2	300부락	17,912호 33,489동	학교(44)	공장(39)	조선일보 49.6.2
49.6.28		2만여호			조선중앙일보 49.6.28
49.7.20		26,790호			국도신문 49.9.8
49.9.1		39,280동			서울신문 49.9.1
50.2.10		4만동			국무총리실서류 50.2.10
50.5.23		39,285동			미대사관문서 50.5.23
50.7.26	296마을				미대사관문서 50.7.26

4·3사건으로 인한 피해마을 대부분은 1950~60년대 지속적인 ‘난민정착사업’에 의해 복구되었다. 그러나 복구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들이 여러 군데 생겼다. 이들 ‘잃어버린 마을’은 현재 제주도 내에 84군데 조사·확인되었다.

4·3사건 과정에서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와의 잦은 무력 충돌로 말미암아 학교·관공서·경찰지서 등 공공시설이 소각·파괴되었다. 안덕면과 구좌면·중문면·조천면 사무소가 소각되어 호적이 소실되기도 했다.

4·3사건은 제주도내 각종 산업부문의 침체를 가져왔다. 농업·목축업·어업·나잠업·교역 등 각종 산업부문이 정체되어 주민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1949년 5월 현재 제주도 전체 인구의 28.8%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을 정도로 제주도민의 생활상은 극도로 피폐해지게 되었다.

2. 인명피해

가. 집단 인명희생

1) 초토화 시기 살상

1948년 11월 중순께,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됐다. 중산간마을 거주자에게 통행금지령을 포고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총살에 처하겠다는 작전이었다.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진압군은 중산간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4·3사건 전개과정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됐고 대부분의 중산간마을이 불에 타는 등 글자 그대로 ‘초토화’됐다. 진압군은 중산간마을 방화에 앞서 주민들에게 소개령(疎開令)을 내려 해변마을로 내려오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는 소개령이 전달되지 않았고, 혹은 채 전달되기 전에 진압군이 들이닥쳐 방화와 함께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남녀노소 구별없이 집단희생을 당했다. 이 때 집을 잃고 겨우 목숨만 건진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해변마을로 내려오지 못한 채 산간지역에 은신하다가 뒤늦게 진압군에게 붙잡혀 죽기도 했다. 이 기간에는 중산간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해변마을에서도 서북청년회 단원들에 의한 집단살상이 벌어졌다.

군·경에 의한 주민 집단희생의 실상은 14,000여 건에 이르는 피해신고서 내용과 본 위원회에서 채록한 500여 명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군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미군 비밀보고서에는 “9연대가 마을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거나 “2연대는 신분과 무기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도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사람을 사살하는 가혹한 작전을 벌였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9연대나 2연대의 작전일지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 등의 자료를 검색했지만 찾지를 못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당시 피해사례를 피해자 증언 위주로 소개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한다.

□ 조천면 교래리 사례

1948년 11월 13일(음력 10월 13일) 새벽 5시께, 군인들이 중산간마을인 조천면 교래리를 포위한 가운데 집집마다 들이닥쳐 다짜고짜 불을 붙이며 총을 쏘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어나 다급히 밖으로 뛰어나오던 주민들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날이 밝아 총성이 멎었을 때 100여호 모여 살던 교래리는 이미 잿더미로 변했다.

이날 확인된 희생자는 다음과 같다. 양재원(60) 양재원 처(60) 김만갑(57) 양관석(여, 50) 부자생(44) 부영숙(여, 38) 부영숙 아들(3) 고계생(여, 18) 고옥심(여, 14) 김순재(여, 14) 김문용(9)이 숨졌고, 특히 김인생은 이날 할머니 강씨(70), 어머니 김채화(45), 여동생 김영자(15), 남동생 김순생(10), 이름 안 지은 남동생(5), 형수 양남선(25), 여조카(8), 남조카(5), 남조카(3), 5촌 김성진(65), 5촌 김성지(63), 김성지 처(60), 사촌형수 신보배(25), 그리고 형님댁 ‘애기업계’ 신아무개(15) 등 가족과 친척 14명을 한꺼번에 잃었다(희생자 중 김만갑과 양관석은 즉사하지 않고 며칠을 더 버텼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못해 김만갑은 11월 17일에, 양관석은 11월 30일에 결국 숨을 거두었다). 희생자 모두가 노약자들이었다. 시신들 대부분은 총에 맞은 채 불에 타 버렸고, 14살 난 소녀는 대검에 찔려 숨져 있었다. 이날 아홉 살 난 아들 김문용을 잃은 양복천(梁福天)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그 날 남편과 조카는 미리 피신했고 나는 아홉 살 난 아들, 세 살 난 딸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설마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난 집으로 들어와 불을 붙이는 군인들에게 무조건 “살려줍서, 살려줍서”하며 손으로 막 빌었어요. 그러나 군인들은 나를 탁 밀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세 살 난 딸을 업은 채로 픽 쓰러지자 아홉 살 난 아들이 “어머니!”하며 내게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아들을 향해 또 한발울 쏘았습니다. “이 새끼는 아직 안 죽었네!”하며 아들을 쏘던 군인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아들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아 심장이 다 나왔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버리자 우선 아들이 불에 탈까봐 마당으로 끌어낸 후 담요를 풀러 업었던 딸을 살렸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딸까지 총에 맞았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려보니 담요가 너털너털하고 딸의 다리는 손바닥만큼 뺨 뚫려 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담요를 뚫고 딸의 다리까지 부숴 놓은 겁니다. 그 후 숲에 가서 한 열흘쯤 숨어지내다 보니 해변마을로 내려오라는 연락이 와서 조천리로 내려갔습니다. 난 지금도 허리를 못 쓰고 딸은 지금까지도 잘

견지 못하는 불구자입니다. 그 전에 피하라든지 해안으로 내려가라든지 하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중에 못된 군인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쥐도 새도 모르게 한 일이라 그날 많이 죽은 겁니다.¹⁾

한편 이날 6살 난 한 어린이는 세 군데나 총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총에 맞고도 구사일생한 어린이는 김용길(아명 김창식)이었다. 역시 총에 맞아 숨겨 가면서도 급히 손자를 담요에 싸 대밭으로 던진 증조할머니 덕분에 불에 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김용길은 한 화재사건을 통해 그의 마지막 모습을 세상에 알렸다. 한 언론은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50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다간 김씨의 한많은 삶을 이렇게 보도했다.

4.3이 남긴 술한 한들의 궤적을 그리며 토벌대의 총탄에 의해 평생을 불구로 지탱해 온 김용길 씨(51)가 8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이름 없는 과수원 판잣집에서 화염 속에 삶의 질곡만큼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일생을 마감했다.²⁾

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용길은 당시의 총상으로 한평생을 오른팔 한 번 제대로 구부리지 못했다. 왼쪽다리는 관절뼈가 산산조각 나는 바람에 평생을 목발에 의지하며 살았다. 30세 때 결혼해 딸을 낳는 등 잠시 행복도 맛봤다. 그러나 어린 딸이 두 살 되던 해 아내가 둘째아이를 임신했다가 숨을 거두었다. 딸 하나 열심히 키우기 위해 집과 밭을 처분하고 품팔이도 마다 않던 김용길은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 딸을 이모집에 맡기고 자신은 낮선 아라동 과수원 판잣집에서 혼자 살아왔다. 그러던 중 그 판잣집에 화재가 발생해 화염에 휩싸인 채 한으로만 점철된 삶을 마감한 것이다.

□ 제주읍 ‘농업학교 수용소’ 사례

1948년 가을경 제9연대 본부가 주둔하고 있는 제주농업학교에는 ‘농업학교 수용소에 갇히지 않으면 유명인사가 아니다’는 말이 떠돌 정도로 제주도의 법조·행정·교육·언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감금돼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쳐서 마련한 수용소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소와 같았다. 농업학교 수용소 수감자 중 확인

1) 梁福天(여, 84세, 조천읍 대흘2리, 2001. 10. 17 채록) 증언.

2) 『제민일보』, 1993년 11월 9일.

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 법조계

최원순(崔元淳, 제주지법 법원장), 김방순(金邦順, 제주지검 검사), 송두현(宋斗鉉, 독립유공자·제주지법 서기장), 김진영(법원 직원), 양성두(법원 직원), 홍인표(법원 직원)

▲ 교육계

현경호(玄景昊, 초대 제주중 교장·민전 공동의장), 이관석(李琯石, 제주도 학무과장·제주중 교장), 김원중(金元中, 제주도 示學·제주남국민학교 교장), 채세병(蔡世秉, 제주도 학무과 장학사), 고칠중(高七鍾, 농업학교 교사), 문재순(文在純, 교사), 현두황(玄斗璜, 제주중 교사·현경호의 아들)

▲ 언론계

박경훈(朴景勳, 제주신보 사장·전 도지사·민전 공동의장 역임), 신두방(申斗珪, 제주신보사 전무), 김호진(金昊辰, 제주신보사 편집국장), 현인하(玄仁廈, 경향신문 기자 겸 제주지사장), 이상희(李尙熹, 서울신문 제주지사장)

▲ 제주도청 공무원

고순협(高順協, 축정과), 김왕진(金王辰, 농무과), 김형중(金亨中, 농무과), 양승훈(梁升勳, 사회과), 임재찬(任才贊, 산림과), 최성돈(崔成敦, 보건계), 정희조(鄭希朝)

▲ 재산관리처

한병택(韓秉澤, 부처장·전 농업학교 교사), 강순현(姜淳現, 불하과장·전 제주제일중교장), 강창우(姜昌祐, 전 농업학교 교사), 김인지(金仁志), 김데호(충무과장), 김학림(金學琳, 전 농업학교 교사), 양문수(梁文秀, 제주중교사 출신), 최길두(崔吉斗, 충무과)

▲ 신한공사

강재량(康才良, 신한공사 주정공장장), 양문필(梁文弼, 신한공사 제주농장장), 김기유(金基有)

▲ 기타

오창훈(吳昶勳, 의사) 배두봉(裴斗鳳, 항일운동가) 고봉효(高奉孝, 버섯재배장 경영·해주대회 참석자 고진희의 동생), 고예구(高禮龜, 운수회사 지점장·1947년 3·10파업 제주읍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 김두훈(金斗燠, 민전 재정부장), 김수림(金守林, 김차봉 제주읍장의 아들), 문봉택(文奉澤, 민족청년단 창설 멤버), 윤창석(尹昌錫, 조천면장), 조대수(趙大秀, 독립유공자), 최남식(崔南植, 전 건준 부위원장), 정상조(鄭相朝, 민전 조사부장 역임)

제주지방법원의 법원장과 제주지검의 검사가 끌려와 고문을 받는 상황이니 일반

민중들이 끌려와 겪는 고초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농업학교 수용소 수감자 중 일부는 구사일생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즉결총살 당했다. 군인들은 천막 수용소에 들어가 총살시킬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석방!’이라고 외쳤다. 수시로 ‘대석방’이 있었고 그 때마다 수감자들은 전전긍긍했다.³⁾

제9연대는 1948년 12월 말로 대전의 제2연대와 교체해 제주를 떠나게 되자 그에 앞서 수감자들을 집중적으로 총살했다. 1948년 12월 23일 속칭 ‘고산동산’ 부근 말방앗간에서 벌어진 총살도 그 중 하나이다. 이날의 희생자는 위에 언급된 수감자 중 현경호, 김원중, 배두봉, 이상희, 현두황,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 등 모두 6명이었다. 군인들은 총살 후 시신에 불을 붙여 태웠다. 현경호의 조카인 현정자는 “큰아버지네를 박성내까지 싣고 간 민간인 운전기사가 고민 끝에 몰래 알려준 덕에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에 태워버렸기 때문에 큰아버지(현경호)는 타다 남은 두루마기 조각으로, 사촌오빠(현두황)는 주머니에 있던 약병으로 시신을 확인해 수습했다”고 말했다.⁴⁾

제주읍내 주민들의 희생에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는 송요찬 9연대장 외에 9연대 정보참모 탁성록(卓聖錄) 대위,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직속 특별수사대 최난수(崔蘭洙) 경감, 제주도 서북청년회 김재능(金在能) 단장 등이 손꼽힌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당시 9연대 군인이었던 윤태준은 이렇게 증언했다.

연대 정보참모가 탁성록인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죽었습니다. 그 때 헌병에게 잡혀가면 살고, 탁 대위에게 잡혀가면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가릴 것 없이 다 죽었습니다. 또 서북청년 이 놈들이 고안 놈들입니다. 처녀를 겁탈하고, 닭도 잡아먹고, 빨갱이로 몰기도 하고, 이 놈들이 사건을 악화시켰습니다. 진압을 하라고 했으면 진압만 하지… 그래서 도망갈 길 없는 주민들이 더 산으로 오른 겁니다.⁵⁾

위낙 악명이 높아 탁성록과 관련한 증언은 많은데, 그 대부분은 ‘비위에 거슬리면 빨갱이라고 몰아 죽였다’거나 ‘여러 여성을 겁탈했다’는 내용이다. 최길두는 “탁성록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예쁜 여자들만 여러번 바꿔가며 살았는데 나중에 제주를

3) 金亨中(88세, 제주시 이도1동, 당시 제주도청 공무원, 2002. 9. 13 채록) 증언 ; 崔吉斗(85세, 제주시 도평동, 당시 관제처 직원, 2001. 6. 22 채록) 증언.
4) 玄靖子(69세, 제주시 연동, 당시 제주여중 2학년, 2001. 7. 26 채록) 증언.
5) 尹太準(73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당시 9연대 보급과 선임하사, 2001. 5. 2 채록) 증언.

떠나게 되자 동거하던 여인을 사라봉에서 죽이고 갔다. 그는 사형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⁶⁾ 그런데 탁성록은 놀랍게도 마약 중독자였다. 허두용(河斗瑢)은 이렇게 증언했다.

탁성록은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와 소위 아편주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 약재과장을 불러와 결재를 받고 주사를 놔 주었습니다. 그는 팔에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아편쟁이였어요. 안정숙 간호원이 팔뚝에 주사하려 해도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자 겨드랑이 밑에 꽂으라고 하더군요. 그는 재임기간 내내 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⁷⁾

장시영(張時英)도 “오창혼 씨와 함께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탁성록이 자꾸 오창혼 씨를 찾아와 아편주사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⁸⁾ 당시 9연대 장교였던 김정무(金貞武)는 자신이 겪었던 탁성록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포로수용소는 농업학교 뒷마당에 천막 스무개 가량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연대장이 시찰을 한다가에 난 참모로서 따라 나섰지요. 그런데 산에 있었으면 얼굴이 땀을텐데 수감자 중에 얼굴이 하얀 사람이 눈에 띄는 게 아닙니까. 이상하다 싶어 물어 보았지요. 오창혼이라는 의사인데 그가 하는 말인 즉, “탁성록 연대 정보참모가 아편주사를 놓아달라기에 거절했더니 잡아넣었다”는 겁니다. 나도 이북에서 공산당이 싫어 월남해 군대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이런 놈은 가만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총을 들고 탁성록을 찾아가 “야, 너 왜 공산당 아닌 사람을 공산당으로 만드느냐. 이 따위로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깐 그때서야 석방시켰습니다. 오창혼 씨는 석방된 후에도 신변에 위협을 느껴 나만 따라다니며 군의관이 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울 육군본부에 가서 의무관에게 부탁했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그 후 오창혼 씨는 겁이 나 제주도로 가지 못하고 부산으로 가서 ‘오소아과’를 차려 운영했습니다. 탁성록은 마흔이 다 된 사람인데 정보참모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군사영어학교 출신도 아니고 군악대에서 나팔 불던 놈인데 특채됐는지 나보다도 먼저 대위를 달았어요. 이런 저런 구실을 달아 여자들 성폭행을 많이 했어요.⁹⁾

6) 崔吉斗 증언.

7) 河斗瑢(75세, 제주시 삼도동, 당시 제주도립 제주의원 경리주임, 2001. 6. 28 채록) 증언.

8) 張時英(81세, 제주시 일도2동, 당시 병원 의사, 2002. 10. 19 채록) 증언.

9) 金貞武(77세,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당시 9연대 군수참모, 2002. 9. 25 채록) 증언.

9연대 정보참모라면 당시 제주도 진압군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약 중독자이며, 무소불위로 인명살상과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은 당시 벌어진 진압작전의 무모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직속 특별수사대 대장 최난수(崔蘭洙) 경감도 제주4·3사건과 매우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 그는 1948년 5·10선거 직후 수도경찰청 형사대를 이끌고 처음 제주에 왔다.¹⁰⁾ 최난수는 1948년 6월 중순경에도 제주를 시찰하고 돌아갔다.¹¹⁾ 최난수가 세 번째로 제주에 온 것은 무차별 강경진압작전이 막 시작될 무렵인 1948년 11월 초였다. 이 때 최난수는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직속 특별수사대 대장으로서 경찰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최난수는 특별수사대원을 제주출신으로는 한 명만 남기고 모두 타 지역 출신으로 바꿨다.¹²⁾ 당시 제주에서 경찰 간부로 재직했던 김호겸은 이렇게 증언했다.

당시 제주출신 경찰들은 불신을 받았습시다. 왜냐면 제주사회가 좁다보니 한라산 폭도를 잡아보면 경찰 중에도 그들과 '사돈의 팔촌'이라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시다. 아무튼 제주출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서울에서 특별수사대가 내려왔는데 최난수 경감이 대장이었습니다. 최 경감은 왜정 때 고등계형사 출신으로 그 때 버릇이 남아 고문을 일삼았기 때문에 나와 마찰이 잦았습니다. 하루는 내가 제주경찰서에서 숙직을 하는데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취조실로 가보니 여자를 나체로 만들어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고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본도를 들고 가 화를 냈더니 수사대원이 도망쳤어요. 난 이튿날 홍순봉 청장에게 "최난수가 너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사람들은 점점 더 육지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 사태진압이 어려워진다"고 따졌습시다. 그래도 최난수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런 고문을 받으면 안 한 일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수사대는 또 스스로 뼈라를 만들어 특정 마을에 몰래 뿌려놓고는 그 마을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유당 시절의 소위 '관제공산당(官製共產黨)'인 셈이지요.¹³⁾

최난수는 제주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국회의원 암살음모사건'으로 유명세를 치

10) 『朝鮮日報』, 1948년 5월 18일.

11) 『東亞日報』, 1948년 6월 24일.

12) 金秉澤(77세, 제주시 용담1동, 당시 특별수사대원, 2002. 2. 8 채록) 증언.

13) 金浩謙(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서귀포경찰서장 역임)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④, 전예원, 1997, 222~223쪽, 386쪽).

른 인물이었다. 반민법 제정으로 친일파들이 위기에 몰리자 최난수를 중심으로한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 관련자에 대한 암살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이 암살음모는 최난수의 세 번째 제주 부임 직전에 이뤄졌다. 1948년 10월 하순 최난수는 역시 친일경찰로 유명한 노덕술(盧德述)과 함께 반민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암살하기 위해 전문 테러리스트인 백민태(白民泰)를 고용했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을 납치해 의원사퇴서를 쓰게 하고 38선 부근으로 끌고가 살해한 후 ‘조국을 배신하고 월북하는 것을 발견, 즉결처형했다’고 보고한다는 것이 최난수의 음모였다. 백민태가 최난수로부터 받은 암살대상자 15명의 명단에는 김병노(金炳魯, 대법원장), 신익희(申翼熙) 등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최난수는 이런 음모를 벌이던 중 제주에 파견돼 강경진압작전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것이다. 최난수는 서울로 복귀한 후인 1949년 1월에도 백민태에게 자금과 무기를 주면서 계획 실행을 재촉했다. 그러나 반민특위에 의해 친일경찰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백민태가 자수함에 따라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최난수는 1949년 6월 살인예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¹⁴⁾

제주도 서북청년회 김재능 단장도 글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금품 갈취와 고문은 물론 살인과 부녀자 능욕을 일삼았다. 김재능은 특히 물품을 달라고 강요하다가 거절당하자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金斗鉉)을 서청 사무실로 끌고가 타살했다. 이에 관해 미군보고서는 “11월 9일 서북청년회 단원이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을 폭행 치사했다. 서북청년회는 공산분자로 알려진 그를 단지 취조할 의도였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기록했다.¹⁵⁾ 제주도 행정의 제2인자를 타살하고도 빨갱이였다고 몰아붙이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었다. 김재능은 심지어 당시 제주지역의 유일한 언론기관인 제주신보사를 강제로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제주신보 편집국장 김용수는 이렇게 증언했다.

제주신보가 서청의 감정을 살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청은 자신들의 권능확대를 위해 신문사를 빼앗은 것 뿐입니다. 다만 ‘봉개리 작전’ 때 불만을 표시한 적은 있습니다. 1949년 초 2연대 2대대(대대장 이석봉 대위)의 주도 아래 경찰, 서청, 대청이 총동원된 작전입니다. 무고한 주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만 신문에는 그런 이야

14) 吳翊煥,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해방전후사의 인식』 ①, 한길사, 1979, 124~127쪽.

1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87, November 13, 1948.

기를 일체 쓰지 못했고 군에서 발표하는대로 '정당한 군의 작전'으로 다뤄야했습니다. 그런데 서청은 이 작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난 후 하루는 서청대원들이 신문사에 들어와 김석호 사장을 구타했습니다. 그날밤 나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 2시께 들이닥친 서청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김재능 단장이 대기하고 있더군요. 당시 30대 중반인 김재능은 키가 6척이나 되는 장신으로 콧수염을 길렀고 일본놈들이 신던 긴 가죽장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는 워낙 악명이 높아 큰 키에 휘적휘적 걸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었지요.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무조건 구타했습니다. 그냥 구타가 아니고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내가 초주검이 되자 김재능은 '테러가 처리해!'라고 하더군요. 서청은 날 태우더니 총살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나를 찾기 위해 여기 저기 수소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함병선(咸炳善) 2연대장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2연대에서는 내게 군복을 입히고 편집국장 대신에 선무공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¹⁶⁾

이처럼 테러와 협박으로 제주신보를 강제접수한 김재능은 서청 특별중대원인 김묵(金默)을 편집국장에 앉히고 자신은 사장 자리에 올라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 애월면 하가리 사례

애월면 하가리는 약 160호 가량의 작고 평범한 마을이었다. 해변마을은 아니지만 해변을 따라 조성된 일주도로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중산간마을'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마을이다. 이 때문에 하가리에는 소개령이 내려지지도 않았다. 4월 3일 무장봉기가 발발한 후에도 전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별 걱정없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48년 11월 13일 새벽 1시께, 제주읍 외도리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그 시각 동동네의 한 집안에서는 제사를 끝낸 후 음복을 하고 있었고, 중동네 정기봉의 집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진압군은 우선 환히 불이 켜진 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기봉의 집을 덮쳤다. 또한 이웃집들에도 들이닥쳐 잠자던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정기봉의 집 등 이웃 14채의 가옥에 불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속칭 '육시우영'이라

16) 金瑑洙(경기도 성남시)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④, 173~174쪽).

불리는 인근 밭으로 끌고 갔다. 곧 총성과 비명이 뒤섞이는 아비규환의 처절한 장면이 벌어졌다. 이날의 희생자는 김두천(71) 정기봉(67) 이정화(여, 59) 양공명(48) 장순호(45) 임군선(42) 임영언(42) 윤창국(41) 장연순(39) 정순아(39) 임치완(38) 고태식(37) 송유생(33) 임인원(31) 장기휴(30) 박청량(여, 30대) 고원룡(29) 박군화(여, 27) 정신아(27) 강기환(26) 양공언(26) 임화봉(26) 고두철(24) 고순화(여, 18) 정도아(18) 등이다. 희생자 중 고순화는 만삭의 임산부였다. 고원룡은 목숨이 남아 있어 애월리의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틀 후 결국 숨졌다. 이날 총에 맞고도 구사일생한 오창기(당시 20대)의 경우는 ‘삶과 죽음’, ‘총살당한 자와 군인’이 종이 한 장 차이임을 보여준다. 오창기는 총알이 몸에 박혀 있는 상태로 사태를 견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 3기’로 지원 입대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다.

이 날 남편을 잃은 강응무(姜應武)는 “군인 세 명이 집으로 들어와 잠자던 남편을 끌어냈다. 군인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쏘았다. 총알이 몸 여기저기에 박혔는데 빨리 안 죽으니까 그랬는지 칼로 목을 잘라 버려 피가 낭자했다. 난 그들을 군인이 아니라 인간 백정으로 본다”고 말했다.¹⁷⁾

그런데 군인들이 왜 그때 하가리에 왔으며, 주민들을 무차별 총살했을까. 이에 관해 해변마을의 우익단체원과 친대받던 하가리 용인의 아들이 모략을 했다는 설이 회자되고 있었다. 또는 진압군이 산간마을인 원동에 무장대가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출동하던 중 그 중간지점인 하가리에 다다랐을 때 주민들이 모여 있자 ‘폭도 모의를 하는 것’이라며 오해를 해 총살극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군인들이 하가리에서 총살극을 벌인 후 곧바로 원동마을로 가서 그곳 주민들도 총살한 점을 생각하면 ‘오해를 했다’는 후자의 추정이 더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들이 노인과 부녀자를 포함한 평범한 주민들이기에 그 어떤 것도 총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건 발생 날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하가리사건이 벌어진 1948년 11월 13일에는 애월면 소길리의 원동마을, 조천면 교래리, 조천면 와흘리2구, 조천면 신흥리, 안덕면 상천리, 안덕면 상창리, 안덕면 창천리 등 각처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총살과 방화사건이 벌어졌다. 이처럼 이러한 유형의 총살과 방화사건은 제주도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17) 姜應武(여, 83세, 애월읍 하가리, 2002. 6. 1 채록) 증언.

□ 애월면 소길리 원동마을 사례

애월면 소길리 원동(院洞)마을은 무차별 강경진압작전이 막 개시되던 1948년 11월 13일 이후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다(약 15가호 정도가 살았던 원동은 행정구역상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을 경계로 동쪽은 소길리, 서쪽은 상가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가리 지경에는 약 5호 가량만 살았기 때문에 소길리로 취급됐다). 지금은 마을 입구에 세워진 ‘원지(院址)’라 쓰인 비석만이 한때 이곳에 마을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 때 형성된 원동마을은 본래 중산간지역을 지나던 사람들이 쉬어가던 주막 동네인데, 당시엔 한 가구만 주막집을 운영했고 나머지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워낙 작은 마을이라 무장대로 활동할 만한 청년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마을에 온 경찰도 “폭도들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만 하고 내려갔을 뿐 주민을 구타하거나 총살하는 일은 없었다. 무장대 역시 이때쯤 내려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연설을 한 적은 있지만 소출이 적은 이 마을에 식량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군인들이 들이닥쳐 집합시킬 때까지만 해도 큰 위험을 느끼지 않고 그냥 집에 머물고 있었다. 아직 소개령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날 군인들이 원동에 온 까닭은 부근에 무장대가 집결해 있다는 첩보를 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이 군인들은 원동에 도착하기 전 이미 하가리에서 무모한 총살을 벌인 바로 그들이었다. 군인들이 온 마을을 뒤졌지만 무장대는 없었다. 그럼에도 군인들은 애꿎은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살했다. 이날의 희생자는 중산간을 지나다 이 마을 주막에 잠시 머물던 사람까지 희생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중 확인된 원동 주민은 이두익(64) 김기용(60) 김승홍(58) 현두병(50) 김길홍(49) 양이룡(48) 이무생(양이룡의 아내) 고병규(43) 양정생(여, 41) 강기송(40대) 김유홍(40) 허홍(여, 40대) 이달호(여, 36) 강창수(31) 강창권(29) 강창욱(28) 강창욱의 처(25) 김귀환(28) 양운용(28) 김성만(여, 24) 고임생(여, 22) 홍성규(22) 고태원(21) 김귀휴(21) 양춘희(여, 21) 강공부(20) 현창하(20) 장봉호(여, 19) 임세옥 고남옥(여, 16) 양춘생(여, 16) 현봉완(14) 고남주(7) 강창욱의 아들(4) 등 34명이다. 고남보는 이날 줄지에 아버지(고병규)와 어린 두 동생(고남옥, 고남주)을 잃었다. 고씨는 열일곱살 때 겪은 참혹했던 그날을 이렇게 증언했다.

군인들이 후레쉬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을 집합시켰으니까 아직 어두웠던 새벽 5시경이었을 겁니다. 군인들은 주민들 손을 뒤로 돌려 결박시킨 후 마치 굴비 엮듯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밧줄로 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한바퀴 도니까 주민 모두가 묶이게 됐습니다. 이틀 전에도 경찰과 해변마을 대동청년단이 마을에 온 적이 있지만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폭도가 있는 곳을 가리키라”고 했지만 누가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요. 우리는 결박당한 채 폭도를 찾아 마을 주변을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굶은 채 하루종일 그 짓을 하다 오후 5시경에야 다시 주막집 앞으로 돌아왔지요. 군인들도 처음엔 우릴 죽일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결박을 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 쏘면 9명까지 죽는다”거나, “어른은 낱소리 없이 죽는데, 애들은 두세번 앙양 울다 죽는다”는 등 실없는 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군요. 그러다 다시 결박당했는데 나는 손을 앞으로 하여 묶였습니다. 그때 군인 한 명이 어디론가 무전을 치더니 “너흰 10분내로 총살된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연대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곧 애월리 쪽에서 군인 차가 올라왔지요. 난 급히 결박을 풀어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이 서로 경례하는 사이에 숲으로 뛰었습니다. 잠시 후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군인들은 시신 위에 식량과 이불을 덮어놓고 불을 지른 후에야 가 버렸습니다.¹⁸⁾

이렇게 해서 원동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총살을 한 군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기록했을까. 아래의 미군 보고서는 원동마을 사건에 한 단서를 보여준다.

11월 13일 경비대의 작전으로 폭도들이 행원리에서 115명, 좌표 937-1133 지역에서 37명, 오등리 부근에서 4명 사살되었다. 사살된 폭도들 중 1명은 경비대에서 탈출했던 자로 밝혀졌다.(방첩대 보고)¹⁹⁾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지명을 몰라 좌표(937-1133)만 기록해 놓은 곳을 미군지도를 통해 확인했더니, 정확히 원동마을을 가리켰다. 60대 노인에서부터 4살난 어린 아이까지 포함된 이 날의 무차별 총살이 ‘폭도들을 사살한 군대의 전과(戰果)’로 둔갑한 것이다.

18) 高南普(제주시 용담1동)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34회, 1999. 1. 22).

1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89, November 16, 1948.

□ 표선면 토산리 사례

표선면 토산리에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온 사건은 1948년 12월 15일(음력 11월 15일)부터 시작됐다. 달이 아주 밝은 날이었다. 마을을 포위한 군인들이 주민들을 모두 향사에 집결시킨 후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들을 분리했다. 또 여자들에겐 달을 쳐다보라고 한 후 20세 미만의 젊고 예쁜 여자들을 분리했다. 군인들은 이들을 표선국민학교로 끌고 가 감금했다가 주로 12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총살했다. 이날 이후 토산리는 청년이 없는 마을이 됐다. 이 마을에는 사혼(死婚)을 한 집안이 많다. 처녀, 총각으로 죽은 망인들끼리 영혼 결혼식을 올리게 하고 양자를 들여 대를 이은 것이다.²⁰⁾

토산리는 웃토산²¹⁾과 알토산 2개의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본래 토산리는 진압군의 주목을 받지 않은 마을이었다. 알토산은 해변마을이고, 웃토산이라고 해봐야 해변에서 불과 2km 남짓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1월 중순께 내려진 중산간 소개령도 이 마을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진압군의 통제 아래 보초를 서며 불안한 나날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12월 12일 군인들은 어떤 일인지 웃토산 주민들에게 알토산으로 소개하도록 명령했다. 소개는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무사히 진행됐고 군인들의 마을 방화도 없었다. 그런데 소개 직후인 12월 15일 느닷없이 군인들이 나타나 주민들을 끌고간 것이다.

이 집단총살과 관련해 몇 가지 떠도는 설이 있다. 첫째, 군인들에게 쫓기던 무장대원 3명 가량이 바닷가 쪽으로 도망치자 인근 마을인 토산리에 와서 수색을 하느라 사람들을 집결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당초 몇몇 사람만 총살되고 나머지는 풀려날 예정이었으나 돌발적 사건이 벌어져 더 큰 희생을 몰고 왔다는 것이다. 즉 표선국교 수감자 중 한 사람이 탈출해 한 민가로 숨어들었는데, 집주인이 창으로 찌르려 할 때 오히려 창을 빼앗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화가 난 군인들이 수감자를 모두 총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설이 사실이든 집단 총살의 이유로 내세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희생은 패륜적인 것이었다.

1987년 '6월항쟁' 직후 민주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주민들은 그 동안 한으로만 남아 있던 이 사건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 해 주민들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20) 金祥甫(72세, 표선면 토산리, 2002. 5. 22 채록) 증언 ; 김대은(70세, 표선면 토산리, 2002. 5. 23 채록) 증언.

21) '웃'은 위(上)를, '알'은 아래(下)를 이르는 제주어이다.

위해 「4·3사건 실상기(實狀記)」라는 진정서를 작성했다. 이 실상기를 주도적으로 만든 김양학은 집단총살 때 작은아버지, 막내아버지, 그리고 형을 잃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금도 품고 있는 의문은 ‘도대체 왜 주민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느냐’는 것이다. 김양학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한 양민들이기에 순순히 소개했고 집합명령에 응했다. 만일 사상 문제를 구실로 삼는다면 반드시 18세부터 40세까지만 사상이 있으며, 또 여자들인 경우 아무 근거도 없이 달빛에 얼굴을 비춰 골라 갔는데 유독 젊고 예쁜 여자만 사상에 연루됐다는 말이나. 성적(性的)인 문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우리 형님과 사혼(死婚)하는 바람에 형수가 된 분은 당시 1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형수의 여동생은 당시 15세인데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왔다. 난 그 분을 찾아가 여러차례 당시 상황을 물었지만 수치심 때문에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²²⁾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국회에서는 양민학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불과 4~5일의 급한 일정이었지만 토산리 주민들은 148명의 희생자를 조사해 신고했다. 앞서 언급한 「4·3사건 실상기」는 희생자 수를 157명으로 기록했다. 당시 토산리는 2백 가호 규모의 작은 마을이었다.

2) 도피자가족 살상

진압군은 소개령에 따라 중산간마을에서 해변마을로 내려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 청년이 한 명이라도 사라졌다면 ‘도피자가족’이라 하여 총살했다. 도피자가족 희생에는 본래 해변마을 주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집결시킨 가운데 호적과 대조하며 도피자가족을 찾아냈다. 이 때 청년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나이 든 부모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이 등 주로 노약자들이 희생됐다. 주민들은 이를 ‘대살(代殺)’이라고 불렀다.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함’이 대살의 사전적 의미이지만, 주민들은 ‘가족 대신 죽는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 총살은 진압군 주둔지인 해변마을에서 벌어졌는데, 총살이 내내 그치지 않자 소개민들이 다시 도피 입산함으로써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도피자가족 총살극이 연일 벌어지자 남편의 입산 때문에 공포에 떨던 한 여인은 친정집 창고에

22) 金亮學(62세, 표선면 토산리, 2002. 5. 22 채록) 증언.

숨어지내다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만 4년만에 나타나기도 했다.

□ 애월면 하귀리 사례

중산간마을에 대한 강경진압작전이 막 시작될 무렵인 1948년 11월 중순경, 애월면 하귀리에서는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1948년 5월 경찰에 의한 총살이 잇따라 벌어지자 청년들은 저마다 은신처를 만들어 꼭꼭 숨어 있었다.

그런데 1948년 12월 5일경²³⁾, 외도지서에서 하귀리 주민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월동용 장작을 마련해야 한다며 톱과 도끼 등을 갖고 지서 앞으로 모이라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외도지서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간 숨어 지낸 청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선뜻 나서지도 못할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고민 끝에 주로 노인과 부녀자들이 연장을 들고 나왔고, 스스로 경찰에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자신한 일부 청년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당초 ‘장작 마련’ 운운한 것은 함정이었다. 외도지서에서는 나무 베러 갈 생각은 않고, 다짜고짜 ‘너 도로차단했지!’ ‘전봇대 끊었지!’ 하며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청년들을 골라내 차에 태웠다. 이때 많은 청년들이 차에 태워졌고 이들은 영원히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형무소 수감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에게 밀리던 국군에 의해 집단 총살됐다. 유족들은 희생날짜도 몰라 주로 생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한때 이들이 살아 있음을 알려준 것은 끌려간 지 1년 가량 지난 후 대구형무소에서 보내 온 엽서였다. 희생자 중 강창하의 늙은 어머니는 1960년 4·19혁명 직후 국회 양민학살조사단에게 이렇게 신고했다.

외도지서에서 화목(火木)하여 오라 하여 출두한 바 그대로 수감하여 대구형무소에 보내여 버려서 대구형무소에서 편지까지 왔으나 행방불명. 어머니 신정모(77), 딸 강구자(19)²⁴⁾

해변마을에 내려진 ‘노력동원령’과 ‘자수공작’은 비단 하귀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

23) 희생자 사망일은 그들의 제삿날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런데 이때 동원됐던 사람들은 즉결처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원 날짜가 정확치 않다.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보면 1948년 12월 5일 경으로 보인다. 1960년 4·19후 벌인 국회의 양민학살조사 때 유족들은 ‘12월 3일’ 혹은 ‘12월 5일’로 그 날짜를 기록해 신고했다.

24)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 1960, 216쪽.

다. 이는 강경작전 초기에 숨어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주도 전역에서 펼친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이 점은 이같은 방침이 외도지서 차원에서 세운 전술이 아니라 훨씬 높은 수준에서 수립한 작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노력동원령’으로 일부 청년들을 잡아들인 외도지서에서는 뒤이어 ‘자수공작’을 펼쳤다. 첫 자수공작은 개수동(蓋水洞, 후에 학원동으로 개명)을 대상으로 벌여졌다. 일주도로에서 500m 가량 산 쪽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한 개수동은 규모는 작아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아 하귀리의 다른 자연마을들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세력이 강했다.

외도지서에서는 일단 개수동 청년들에게 자수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개수동에도 무장대로 입산해 활동하던 청년들이 일부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무슨 근거인지 마을 인근에 숨어 있는 청년 10명의 이름을 지목했다. 이들이 나타나 자수하면 모두가 무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크게 당할 것이라는 통보였다. 이에 마을에서는 이들 청년과 유지들이 모여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목 받은 청년들이 출두하긴 해야겠는데, 잇그제 외도지서의 동원령에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오지 못한 채 제주읍내로 끌려갔기 때문에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설왕설래하다가 지목된 10명 중 한 명인 김호중이 앞으로 나섰다. 김호중은 “일단 내가 먼저 출두하겠다. 내가 무사하면 경찰의 약속이 증명되는 것이니 그 때에 뒤이어 자수하라”며 홀로 외도지서로 갔다. 그러나 경찰은 김호중이 나타나자 12월 7일 총살했다.

곧이어 12월 10일 이른 아침, 외도지서 주임 김영철을 비롯한 경찰과 대동청년단원들이 개수동에 들이닥쳤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미 경찰이 올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노약자들이 숨을 곳은 없었다. 사태를 직감한 어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채 경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창선(高昌善)은 그날을 이렇게 증언했다.

김호중 씨가 총살되자 마을은 발각 뒤집혔고 지목된 나머지 9명 등 청년들은 산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자 어른들은 ‘야, 이거 진짜 큰일났다’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마을에 오기 전날 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모두 피신하라’는 정보가 외도리 쪽에서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나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요. 사태가 심각함을 느낀 어른들은 집집마다 가족들을 모아 놓고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안의 부채관계는 어떻고, 현금은 어디에 숨겼으니 후에 살아 남은 사람이 사용하라. 이후 집안 일은 아무개 어른의 말씀을 따르라”는 등 마치 유언을

하듯 말씀하셨습니다.²⁵⁾

개수동에 들이닥친 경찰은 집집마다 수색하며 주민들을 속칭 ‘비해기(飛鶴)동산’으로 집결시켰다. 그리고는 피신한 청년들의 부모와 자식 등 이른바 ‘도피자가족’을 골라내 집단총살했다. 이때 김낙준(여, 69) 고희전(65) 김재봉(65) 고영삼(62) 고두주(60대) 백용홍(여, 60대) 현귀덕(여, 60대) 강희순(여, 61) 강승학(50대) 김지수(50대) 강기유(49) 고정규의 아내(30) 김계생(여, 29) 강두중(16) 등이 희생됐다. 도피자가족 외에도 장전리와 광령리에서 하귀리 개수동으로 소개 내려온 사람 등 모두 36명이 함께 총살당했다.

이 ‘비학동산 총살사건’은 임신부를 발가벗겨 팽나무에 매달아 놓고 대검과 철창으로 찢러 살해하는 등 그 잔혹함으로 인해 주변에서 널리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이다. 임신부는 고정규의 아내였다. 고정규가 도피했다는 이유로 대신 그의 아버지(고희전)와 아내를 죽인 것이다.

한편 이 총살극 때 어머니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자식을 감싸안은 덕분에 그 아이만 살았다는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었다. 총살 대상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그 소년은 당시 13살이던 안인행(安仁行)이었다. 장전리가 고향인 안인행의 가족들은 소개령에 따라 개수동으로 내려와 살던 중이었다. 안인행의 부친 안태룡(安太龍, 33)은 이미 5일 전에 벌어진 ‘외도지서 장작사건’의 희생자였다. 닷새 간격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안인행은 이렇게 증언했다.

경찰은 주민들을 비학동산에 모이게 한 후 가택수색을 벌여 집에 남아 있던 두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광령리에서 소개해 온 부자(父子)인데 부친은 70대 노인이었고 아들은 35세 정도 됐습니다. 경찰은 먼저 아들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보다못한 부친은 “우린 소개민이다. 아들은 4대 독자이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부친을 구타했고 그 노인은 매를 견디지 못해 금방 죽었습니다. 부친이 죽자 아들이 도망을 쳤지만 약 150m 정도 도망치다 총에 맞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여자를 지목해 끌어냈습니다. 25세쯤 되는 임신부였습니다. 경찰은 그 여인의 거드랑이에 밧줄을 묶어 큰 팽나무에 매달아 놓은 후 경찰 3명이 총에 대검을 꽂아 찢렸습니다. 차라리 총으로 쏠 것이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자 경찰은 “잘 구경하라”며 소리쳤습니다. 이어 경찰

25) 高昌善(66세, 애월읍 하귀2리, 2001. 8. 23 채록) 증언.

은 주민들을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폭도가족’을 가리는 것인데 우리는 아버지가 ‘외도지서 장작사건’ 때 잡혀갔다는 이유로 끌려나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소개민이라서 당초 외도지서의 동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소개 온 우리에게 집과 밭을 빌려준 주인집 노인이 톱과 도끼를 들고 외도지서로 가려 하자 그 분에게 고마움을 표하려고 대신 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4형제였는데 13살이던 내가 장남이고 밑으로 10살, 7살, 4살 난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姜仁八, 34)는 죽음을 직감하고 어린 동생들을 억지로 떼어 냈습니다. 그러나 나와 10살 난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묶였지요. 어머니의 눈물어린 호소로 10살 난 동생은 풀려났지만 내게는 “눈망울이 둥글둥글한 게 폭도들에게 연락함직한 놈”이라며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12명이 함께 묶여 30m 가량 떨어진 밭으로 끌려가게 됐지요. 경찰들은 “칼로 찔러 죽이자”, “시간 없으니 총으로 쏘자”며 자기들끼리 잠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때 내 머리 속에는 “칼에 찔리면 고통이 오랴니 총에 맞는 게 낫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순간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와 바로 옆에 나란히 묶인 어머니가 나를 덮치며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어머니의 몸이 요동치자 내 몸은 온통 어머니의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경찰들이 “총에 덜 맞은 놈이 있을 지 모른다”면서 일일이 대검으로 찔렀으나 그때도 난 어머니 밑에 깔려 무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형제는 줄지에 고아가 됐는데 7살 난 동생은 홍역으로, 젓먹이 막내는 젓을 못 먹어 곧 죽었습니다. 만일 영화나 연극으로 만든다면 난 그날의 모습들을 똑같이 재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도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²⁶⁾

개수동 주민에 대한 경찰의 총살은 계속 이어졌다. 경찰들은 수시로 마을에 와서 ‘도피자가족’을 찾아내 총살했다. 그 중 1949년 1월 24일은 큰 희생을 치른 날이다. 이날 저녁 무렵 고대규(高大奎)의 아내인 김산춘(28)은 외도지서의 출두명령을 받았다. 김산춘은 앞서 비학동산 총살사건 때 팽나무에 매달린 채 살해당한 여인과 동서 사이이다. 그때는 경찰이 김산춘의 가족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무사했지만 지서에서 뒤늦게 남편 고대규의 도피 사실을 파악한 것이었다. 세 살 난 아기를 업고 나간 김산춘은 외도리 입구에서 아기와 함께 총살됐다. 그날 외도리에서는 이들 모자 외에도 강선(여, 60대) 강계호(50대) 신이신(여, 50대) 김정복(여, 37) 강재생(여, 30대) 김정(여, 30대) 강선행(여) 강경수(20대) 등이 남편이 혹은 자식이 피신했다는 이유로 함께 희생됐다.

여기 저기 숨어 있던 청년들도 결국엔 모두 잡혀 총살되는 등 개수동은 내내 큰

26) 安仁行(67세, 애월읍 장전리, 2001. 8. 21 채록) 증언.

피해를 당했다. 개수동의 희생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호적과 족보를 일일이 대조했다는 고창선은 “당시 43가호 56세대가 살던 마을에서 63명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경찰들의 만행은 사태가 완화된 뒤에도 그치지 않았다. 특히 한 처녀의 희생은 주민들의 가슴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하귀1구가 친정인 김계순(金葵順)은 18살 때 겪었던 참으로 힘든 증언을 했다.

4·3발발 이듬해 봄으로 기억되는데, 금덕리에서 소개온 한 처녀가 하귀지서에 끌려와 매일 전기고문을 받았어요. 사라진 오라버니를 찾아내라는 게 벌미였지요. 그녀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몰래 도망쳐 바닷가에 숨었지만 며칠 후 결국 경찰에 붙잡혔지요. 경찰들은 하귀국교 동녘 밭에 남녀 대한청년단을 모두 집합시킨 후 그녀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나 할 것 없이 대한청년단원이 돼야만 하는 시절이었습시다. 우리 앞에 끌려왔을 때 그녀는 이미 초주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를 훌쩍 벗긴 후 “여자니까 대한청년단 여자대원들이 나서서 철창으로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린 기겁을 했지요. 누가 나서서 찌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찌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대신 죽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단장인 한 여자가 나서서 먼저 찔렸어요. 경찰은 모두들 한번씩 찌르라고 했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내 차레가 되기 전에 그 처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이리저리 굴러보다가 죽음을 확인하고는 남자들에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토하고 밥도 못 먹고 난리가 났어요. 또한 그 일로 한동안 몹시 앓았습니다. 사촌언니는 그 때 찔렸다면 그 후 막 아파서 죽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물어 보니 모두들 나처럼 앓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을 겪었으니 앓는 것이 당연하지요. 내가 죽어서야 잊혀질 일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 안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몸을 찢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²⁷⁾

희생자의 이름은 강조순(姜朝順)으로, 동네에 예쁘다고 소문났던 당시 18살의 꽃다운 처녀였다. 그러나 강조순이 희생당한 구실이 됐던 그녀의 오빠 강조행(姜朝行)은 이미 4·3발발 초기에 경찰에 끌려간 상태였다. 강조행은 이렇게 증언했다.

신임지서가 피습받을 무렵 우리 마을 청년들은 교대로 신임지서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하루는 고향 금덕리(현재의 우수암리)로 갔다가 아무런 죄도 없이 체포됐습니다. 길로 나서니 나 뿐만 아니라 우리 형님과 누이를 비롯해 동네사람 30여 명이 포

27) 金葵順(70세, 애월읍 용흥리, 2001. 8. 22 채록) 증언.

승에 묶인 채 끌려나와 있었습니다. 우린 신입지서로 끌려갔는데 경찰은 눈 한쪽이 안보이고 몸도 보전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을 끌고 오더니 우리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그에게 지목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떡 하면 끌어내고 안 하면 그냥 앉아 있고. 그런데 그가 내 앞에 와서 고개를 끄떡한 모양입니다. 이때 금덕리와 고성리 주민 50여 명이 제주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매일 곤봉으로 맞고 전기고문을 당했습니다. 신입지서 습격에 가담했다는 것을 실토히라는 겁니다. 그런 취조를 15일간 받다가 뭐라고 써서 도장을 찍게 했는데, 이로써 난 신입지서 습격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1948년 4월에 유치장에 들어가 6개월을 살아도 재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8월엔 몸에 땀띠가 나고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간수는 밥을 줄 때마다 구멍으로 손을 내놓게 해서 몽둥이로 손바닥을 10대씩, 하루에 30대를 때렸습니다. 나중에 손바닥에 팽이가 앉았습니다. 그후 광주형무소로 이송돼 거기서 약 3개월 후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 기각으로 1948년 12월 31일에 무죄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시끄러우니까 금방 오지 못하고 8개월 가량 지내다 1949년 가을철에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동생 강조정(20)과 누이동생 강조순(18)이 참혹하게 죽었다고 하더군요. 여동생은 상당히 예쁜 아이였는데 경찰이 노리개로 하려다가 죽인 겁니다.²⁸⁾

외도지서의 주임을 비롯한 경찰 대부분은 서북청년회 출신이었다. 이들의 행태는 너무도 잔인해서 4·19 후 국회 차원에서 벌인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때 제주도의 ‘고발 제1호’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희생자 신고를 접수한 『제주신보』는 “아무리 계엄령 하라 할지라도 일가 10명, 그것도 67세의 노인을 위로 생후 단 10일의 영아까지를 한 곳에서 총탄으로도 아닌 죽창과 칼로 사람을 찢러 죽이는 법이 어디 있으며 또 명분이 설 수 없을 뿐더러 그런 벌이 어느 곳에서 통용될 것인가”라며 고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전 제주서 외도지서 주임 김병채(金炳採) 경위 및 전 동 지서 이윤도(李允道) 순경이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는 동 고발장에서 본 ‘고발의 사실’은 전기 피고발인 등은 ‘제주경찰서 외도지서에 경찰관으로 근무 당시 제주시 외도리 252번지 거주 이양호(李亮皓) 외 9명의 일가족을 법적 수속도 없이 1949년 2월 17일 하오 3시경 제주시 외도1동 속칭 절뒤(寺後)에서 죽창으로써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실이 있는데… (중략) 신고서에 보면 아들 한 사람이 집에 안 보인다는 유일한 명목. 그러나 장남 이완영(李完榮)은 폭도에게 납치되어 간 것이었다. 그것이 시 외도동 252번지에 사는 그의 부모인 이양호(당시 67세)씨, 고정숙(63세)씨를 비롯한 그의 아내 고의순(41세)

28) 姜朝行(78세, 애월읍 유수암리, 2001. 8. 23 채록) 증언.

씨, 동생 기영(18세)군, 아들 부부 영희(19세)씨, 고춘자(19세)씨, 그밖의 자식 봉희(18세), 옥자(7세), 옥희(3세) 그리고 장남 태생의 손자인 생후 10일의 영아까지의 4대에 궁(巨)해 목숨을 바쳐야 할 죄목이 된 것이었고, 특히 전기 봉희군은 불구자로서 기동을 못하는 몸이었으나 모친에 업혀 출두했었던 것이라 하며, 지서주임의 명령으로 불리워진 이 일가 10명은 한 장의 청취서도 받지 않고 외도1동 속칭 절뒤에 끌려가 하오 3시경 일가족 같은 자리에서 죽창에 의하여 학살되었던 것이라는 데 영아의 종조모의 손으로 신고된 문서에는 당시 리 민보단장이었던 외도2동 거주 이상훈(李尙勳·43)씨를 증인으로 그리고 하수인과 책임자의 이름을 당시 외도주임 김병채 경위, 그리고 동 이윤도 순경으로 뚜렷이 밝혀 있으며 진상을 규명 후 정부보상을 요망하고 있는 것이다.²⁹⁾

□ 표선면 가시리 사례

진압군은 중산간마을이 무장대의 근거지라는 전제 아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격을 가했다. 1948년 11월 15일 새벽, 진압군은 표선면 가시리에 들어서자마자 닥치는대로 총격을 가했다. 이날 희생된 30여 명의 성별과 나이는 당시의 처참함을 대변해 준다. 젊은이들이 급히 피신한 가운데 집에 남았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된 것이다. 6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노인만 살펴봐도, 김수계(여) 김인하(여) 김정숙(여) 김호직 안만규 오경생(여) 오윤부(여) 오희백(여) 정재병 정종언 등이 희생됐다. 이날 안홍규는 급히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군인들이 물러간 후 집으로 돌아온 안씨는 온 가족이 몰살된 처참한 상황을 목격해야 했다. 고신춘(여, 42) 강매춘(여, 37) 안재원(20) 안영순(여, 19) 안재순(여, 15), 그리고 호적에 이름도 안올린 어린이 안일진 안옥희 안옥순 등 안씨의 가족 8명은 안씨의 누이 안규반(40대)과 그녀의 자식들인 강재호(12) 강순이(여, 7) 성명불상(4) 등과 함께 인근 숲에 숨었다가 12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 60대 노부부인 안만규·김인하는 손녀(3살)와 손자(1살)를 데리고 급히 냇가로 피신했다. 굴을 찾아 몸을 숨겼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새나가고 말았다. 진압군은 굴 속으로 수류탄을 던졌고 이들 가족은 운명을 같이했다.

그런데 명령에 복종하는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군인들은 무차별 총살극을 거부하기도 했다. 고태옥(高泰玉)은 “그날 새벽 총소리가 나자 급히 냇가로 피했지만 아내는 아기와 함께 집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우리집에 온 군인은 집에 불을 지르

29) 『濟州新報』, 1960년 6월 24일.

면서도 ‘다른 군인들이 오면 죽일지 모르니 어서 숨어라’면서 그냥 가 버렸다. 좋은 군인을 만난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³⁰⁾

한편 노약자들까지 무참히 희생되는 상황에 이르자 주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민들은 산으로 오르지도 못하고 해변으로 내려가지도 못한 채 그냥 마을에 머물며 공포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일주일쯤 지났을 때인 11월 22일경 “해변마을 표선리로 소개하라”는 말이 전해졌다. 이 때부터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연고를 찾아 표선리나 토산리로 소개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겁에 질려 선뜻 내려가지 못했다. 하산 기회를 놓친 주민들은 들녘을 방황하다 진압군의 수색전에 걸려 총살당했다.

한편 소개령에 따라 표선리로 소개한 주민들은 표선국민학교에 수용됐다. 그런데 수용생활을 한 지 한 달쯤 되던 12월 22일 진압군은 수용자들을 운동장에 집합시킨 후 일일이 호적과 대조하며 가족 전부가 소개 온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을 나눴다. 군인들은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소위 ‘도피자가족’이라는 구실을 붙여 속칭 ‘버들못’ 뒷쪽 약 200m 지점에 있는 밭으로 끌고 가 76명을 한꺼번에 집단총살했다. 자식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60대 이상 노인들이 주로 희생됐다. 이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오국만(吳國晩)은 자신도 겨우 목숨을 구했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표선국민학교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루는 군인들이 많이 와서 “모두 운동장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음력으로 동짓달 22일의 일입니다. 군인들은 주민들이 모이자 “호적 상 전 가족이 있는 가족은 한 쪽 옆으로 나가서 서라!”고 하여 나누니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운동장 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형이 행방불명된 상태라 소위 도피자가족으로 운동장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군인들은 또 “젓먹이 아기 엄마와 15살 미만은 나오라!”고 했습니다. 난 당시 16살인데 아버지는 사태를 예감했는지 당초 수용소에 들어갈 적에 제 나이를 14살로 낮춰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 덕에 전 구사일생했습니다. 그날 76명이 지금의 변전소 옆 밭에서 집단 총살 당했습니다. 당시엔 시신에 흙만 덮어뒀다가 1년 후 마을이 재건될 때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중부님은 아버지의 한복 두루마기 안의 담뱃대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³¹⁾

30) 高泰玉(표선면 가시리)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⑤, 95쪽).

31) 吳國晩(70세, 표선면 가시리, 2002. 5. 29 채록) 증언.

한편 진압군은 총살극을 벌이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당시 토산리로 소개했던 오태경은 “토산리 창고 부근에서 총살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경하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총살할 때 박수를 치라고 했다. 총살 때 아기가 푹푹 기어서 위로 올라오니까 아기에게도 총을 쏘았다”고 증언했다.³²⁾

3) 자수자 살상

진압군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과거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람은 자수하라. 자수하면 살려주지만 나중에 발각되면 총살을 면하지 못한다. 이미 ‘관련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다. 자수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관련자 명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겁에 질린 많은 주민들이 자수했다. 이들은 주로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에서의 활동, 1947년 경찰관의 3·1절 발포사건에 항의해 시위나 파업을 한 사실, 무장대가 마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들의 요구에 따라 시위에 참여하거나 식량 등을 준 사실 등을 자수했다. 그러나 진압군은 약속과 달리 자수자들을 집단 총살했다.

□ 조천면 와흘리 사례

1948년 11월 11일 무장대가 조천지서를 습격하고 퇴각하자 토벌대는 이들을 쫓아 와흘리1구까지 왔다가 마을에 불을 질렀다. 이 때 주민들은 급히 ‘와흘굴’ 등지에 숨어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11월 13일 진압군이 와흘리2구를 포위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젊은 남자들은 미리 피했으나 노약자들은 그냥 집에 남아 있었다. 군인들은 집집마다 불을 붙이고 주민들을 살해했다. 75세 할머니부터 두 살과 세 살 난 어린아기, 그리고 부녀자 등 희생자는 모두가 미리 도망치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던 노약자들이었다.

살아 남은 사람들이 잿더미가 된 마을터를 배회하며 일주일 가량 지냈을 때 해변 마을로 소개하라는 명령이 전해졌다. 그런데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해변마을로 소개한 지 보름 가량 지났을 때 이른바 ‘자수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17세였던 김태우(金泰宇)는 소개명령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조천리로 소개했다. 김태우는 소개해 자수

32) 오태경(71세, 표선면 가시리, 2002. 5. 30 채록) 증언.

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증언했다.

군인들이 마을에 불을 붙인 지 며칠이 지났을 때 경찰지서에서 소개하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 전엔 그런 말이 없었지요. 그래서 수기동(와흘리2구의 한 자연마을)에서는 급히 도망치지 못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린 소개 명령을 듣고 조천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피난민은 전부 자수하라. 자수하면 보안증을 내주어 안전을 보장하지만 자수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9연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함덕으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우린 함덕초등학교 교실에 감금돼 있었는데 특별히 취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 어려서 빠졌지만 청년들은 곧 ‘박성내’로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³³⁾

또 다른 증언자에 의하면 소개민은 물론이고 해변마을 주민들에게까지 자수할 것을 권유했다. “털끝만큼이라도 가책이 되는 점이 있으면 자수하라”고 했다. 자수한 사람은 자유로울 것이라는 유혹과 함께 “이미 ‘명단’이 확보돼 있다”, “나중에 발각되면 처형을 면치 못한다”는 위협이 뒤따랐다. 조천면 관내에서 200명 가량의 청년들이 ‘자수’했다. 자수자 중에는 와흘리 주민도 많았다. 중산간에 살면서 ‘식량을 제공하라’ ‘집회에 참석하라’는 무장대의 요구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 주둔지인 함덕국교로 찾아간 자수자들은 보름 가량 지난 후에 제주읍내 농업학교로 옮겨졌고 곧 ‘박성내’라는 냇가로 끌려가 총살됐다. 12월 21일 벌어진 총살극이었다. 박성내에서 희생된 와흘리민 중 확인된 사람은 문명국(40) 백수옥(35) 고창훈(33) 김원근(33) 백태립(33, 이명 백천옥) 김시진(31) 고태순(30) 고공림(29) 백중옥(28) 고윤종(27) 백상옥(26) 김석봉(26) 김기운(25) 김만추(25) 이한봉(25) 김중옥(24) 이성배(24) 이원식(24) 장병호(24) 김영화(22) 김동옥(21) 이성일(21) 임익송(21, 이명 임수송) 김중화(20) 박봉림(20) 양치규(20) 이세봉(20) 강명식(20) 임경송(19) 임준송(19) 홍영중(19) 문명봉(18) 양치옥(18) 양수봉(20대) 등이다.

김태준(金太準)은 이 총살터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생존자이다. 김태준이 살아 돌아옴으로써 자수자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유족들은 시신이나마 찾을 수 있었다. 김태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33) 金泰宇(71세, 조천읍 와흘리, 2001. 9. 26 채록) 증언.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나도 산에 돈 15원을 올린 적이 있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죄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니까 여기 저기 숨어 있던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수자들은 함덕국교에 집결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취조도 없이 약 2주일을 지루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21일 오후 5시께 ‘토벌간다’면서 일부를 호명했습니다. 또 일부는 토벌에 따라갔다 오면 자유롭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자원을 했습니다. 나도 자원 대열에 끼었지요. 군인들이 주먹밥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곧 버스가 오는 바람에 주먹밥을 늦게 받은 사람들은 미처 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³⁴⁾

이처럼 진압군은 특별한 기준도 없이 총살할 ‘머릿수’를 채웠다. 아무튼 200명의 자수자 중 150명이 운명처럼 버스에 탔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다. 김태준은 총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제주농업학교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갑자기 우리들 손을 뒤로 철사줄로 결박한 후 다시 굴비 엮듯 10명씩 묶어 스리퀴타에 태웠습니다. 중간에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와흘리 출신 2명이 탈출했습니다. 철사줄이 모자라 그들만 새끼줄로 묶었는데 이를 풀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박성내에 다다르자 지휘관은 “여러분이 곱게 죽어주면 가족에게 알려 시신이라도 찾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총살에 앞서 우리들의 주머니를 뒤져 돈과 귀중품을 털었습니다. 길가에서 100m 떨어진 냇가의 바위 위까지 끌고 가 묶여 있는 10명 단위로 총을 쏘 떨어뜨렸습니다. 난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가 다음 사람들이 끌려오는 불과 3~4분 사이에 철사를 끊고 바위틈에 숨었습니다. 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었는데 꿈틀거리다가 군인들에게 발각됐어요. 군인들은 곧 휘발유를 뿌려 사람을 태웠습니다. 난 새벽까지 숨어있다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땐 눈이 많이 내렸고 무척 추웠는데 맨발엔 동상이 걸렸고 너털너털해진 팔에선 피가 계속 났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원당봉’을 등대 삼아 밤시간만을 이용해 5일만에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20대 청년 150여 명이 집단총살 당한 이 사건은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한 증언자는 이 때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정신병에 걸린 채 죽어간 한 어머니의 사연을 이렇게 전했다.

34) 金太準(조천읍 신촌리)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④, 406~408쪽).

사촌형(둘째아버지 아들) 김홍규(21)가 함덕국교에서 제주읍내로 끌려가 박성내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때 청년들은 죽으러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함덕리에서 청년들을 태운 차가 우리 마을 신촌리를 지날 때 보았는데, 청년들은 차 안에서 손을 흔들며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둘째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에 쇼크를 받아 정신병에 걸렸어요. 막 담을 뛰어 넘고 물에 빠지려 하는 등 증세가 심했습니다. 결국 1년쯤 후에 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³⁵⁾

4) 함정토벌

군·경이 무장대 복장을 하고서 민가에 들어가 협조를 구하고 이에 응하는 사람들을 총살하는 것이 ‘함정토벌’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당시를 겪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중에 ‘곰도 무섭고 범도 무서운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군인·경찰도 무섭고 무장대도 무섭다는 말이다. 낮에는 군·경이 마을을 장악해 ‘폭도 혐의자’라 하여 총살하고, 군·경이 물러간 밤에는 무장대가 들이닥쳐 ‘반동분자’라 하여 숙청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이 무장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군·경은 무장대 지원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편으로써 함정을 팠다.

□ 제주읍 도평리 사례

제주읍 도평리 주민들의 집단희생은 함정토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949년 1월 3일 이른 아침 허름한 갈중의³⁶⁾를 입고 총을 든 한 무리가 제주읍 도평리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길에서 마주친 주민들에게 “동무, 동무”하며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인공기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집안에 들이닥쳐 “왜 너희들은 산에 협조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면서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켰다. 그런데 인공기를 들고 갈중의를 입은 이 무리는 무장대가 아니라 인근 외도지서 경찰과 특공대원들로서 주민들에게 함정을 판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들 중 일부는 그 무리 중에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양경하(梁京河·22)는 “빨갱이면 맞서 싸우겠다”고 나섰다. 마을 유지인 김병해(金秉海·58)는 외도지서 주임 김영철(金永哲)에게 욕을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해 주민 70명 가량이 총살당

35) 金太奎(66세, 日本 大阪市 生野區, 2002. 12. 26 채록) 증언.

36) 감물(柿汁)을 들인 중의. 전통적인 제주의 노동복이다.

했다. 한 증언자는 “환갑이 넘은 김성규라는 분은 학교운동장에서 지목 당하는 바람에 부인, 아들, 며느리, 어린 손자 등과 함께 6명이 몰살당했다”고 증언했다.³⁷⁾

5) 피난 입산자 살상

중산간마을이 방화되자 많은 사람들은 집을 잃은 채 산으로 피신해갔다. 특히 소개령이 채 전달되기도 전에 진압군이 들이닥쳐 방화와 총살을 벌인 마을의 주민들은 오도가도 못한 채 중산간지역의 굴과 숲을 찾아 숨어들었다. 또한 해변마을에서 연일 벌어진 ‘도피자가족’ 총살은 소개했던 사람들조차 다시 피난 입산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강경진압작전 때 산으로 피난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와 한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군·경의 산악지역 수색 때 발각돼 총살을 당했다. 피난 입산자의 성별과 나이만으로도 이들이 무장대원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진압군은 그런 정황을 따지지 않고 즉결총살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은 진압군의 ‘전과(戰果)’로 둔갑했다.

□ 제주읍 용강리 사례

1948년 11월 20일 오전 10시께, 제주읍 용강리에 진입한 군인들은 마을 구석 구석을 누비고 다니며 불을 붙였다. 용강리에 대한 강경진압작전의 서막이었다. 이날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친 곳은 마을에서 약 10km 떨어진 속칭 ‘셋머홀’이란 곳이었다. 군인들이 추격해 왔지만 가시덤불과 돌무더기가 뒤엉켜 험한 숲을 이루고 있는 셋머홀 안으로는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군인들이 숲 입구에서 난사한 기관총에 주민 2명이 숨지고 1명이 팔에 총상을 입었다. 비록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지만, 그 무렵 다른 중산간마을에서 벌어진 상황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희생이었다.

용강리는 깊은 산간마을인 까닭에 한동안 무장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주민들은 5·10선거 때 해변마을 사람들이 선거를 거부해 대거 몰려오자 사태의 추이를 실감했다. 그 즈음 탈영한 9연대 병사들 중 일부가 용강리를 거쳐 산으로 오른 사실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무장대는 “군인들도 우리편이다”라며 한껏 위

37) 金世元(제주시 도평동, 희생자 김병해의 아들)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45회, 1999년 5월 21일).

세를 과시했고 청년들 중 10명 가량은 무장대원이 되었다. 또한 용강리는 산악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까닭에 무장대가 해변마을을 습격하러 가면서 거쳐가는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가을철에 접어들어 진압작전이 심해지자, 주민들은 항상 도망칠 준비를 하며 ‘빗개’(보초)를 바라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군인들은 무장대와 일반 주민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강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진압군의 적으로 간주됐다.

주민들은 마을이 강그리 불에 타 버린 후에도 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은 불타 버린 집터에 움막을 짓고 살며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태가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진압군과 주민간에 생사를 건 숨바꼭질은 계속됐다. 주민들은 빗개의 신호를 받아 도망쳤고, 허탕을 친 진압군은 움막만을 태우고 돌아갔다. 주민들은 다시 움막을 지었고, 그것이 타면 또다시 지었다.

이 때까지도 용강리에는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난리를 피해 화북리나 삼양리 등 해변마을로 소개하기도 했다. 물론 젊은 남자들은 소개하지 않았고, 부녀자나 어린이들이 소개 길에 나섰다. 그러나 소개 갔던 노약자들도 대부분 다시 마을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변마을에서 걸핏하면 ‘도피자가족’ 혹은 ‘소개민’을 집합시켜 총살극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13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화북리로 소개갔었던 고신중(高信鍾)은 “소개령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린 집이 불에 탄 후 화북리로 소개를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산에서 온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버린다고 해서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고 말했다.³⁸⁾

이후 군인들이 급습했을 때 붙잡혀 죽는 사건이 이따금 있었지만 9연대 주둔기인 1948년 12월 말까지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었다. 연일 계속되는 토벌전 속에서도 주민들이 한동안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정보’ 때문이었다. 주민들이 높은 동산에 빗개(보초)를 세워 자체 경계활동을 철저히 했지만, 정보가 없었다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진압군을 완벽하게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보는 군경 주둔지인 해변마을 사람들이 알려주었다. 해변마을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민보단이나 청년단에 가입해 진압작전에 동원됐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949년 2월 4일(음력 1월 7일) 용강리 주민들에게 악몽같은 날이 닥쳐왔다. 이날 새벽녘에 군인들이 들이닥치자 주민들은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

38) 高信鍾(66세, 제주시 용강동, 2001. 7. 12 채록) 증언.

나 용강리에는 숨을 만한 곳이 많지 않았다. 요즘 용강동에 가면 소나무와 삼나무 등이 시야를 가리고 일부 지역은 잡목이 우거져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엔 온통 밭뿐이어서 사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약간이나마 나무가 있는 장소라고는 ‘당카름’이란 곳과 작은 사철나무들이 일부 자라고 있는 ‘대련수’라는 하천 변이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당카름과 대련수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군인들은 이들을 쫓아가 남너노소 가리지 않고 총살했다. 더구나 이날의 희생자는 대개 발빠르게 도망치지 못한 노약자나 부녀자여서 그 참혹함을 더했다. 용강리 주민 105명이 희생됐는데, 용강리 뿐 아니라 이웃마을인 봉개리와 회천리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 그래서 제삿날인 음력 1월 6일 봉개·용강·회천리에서는 대부분의 집안이 제사 준비를 하느라 마치 명절날처럼 북적인다.

이날의 상황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월) 4일 상오 3시를 기하여 제주읍 봉개지구에서 함병선(咸炳善) 연대장 지휘 하에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전개되어 무장폭도와 치열한 격전을 하고 있다”면서 “사살 360명, 포로 130명, 기타 식량·의류 등 다수 압수”라는 ‘전과(戰果)’를 발표했다.³⁹⁾ 360명을 사살하고 130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압수품이 총기는 한 정도 없고 고작 식량과 의류라는 것은 “무장폭도와 치열한 격전을 하고 있다”는 발표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말해준다.

그런데 그동안 잘 피해다니던 주민들이 왜 이 날엔 대거 붙잡혀 집단총살 당했을까. 이에 대해 이날 총상을 입고도 구사일생한 고윤섭(高潤燮)은 “그날 동남쪽으로는 월평리에서, 북쪽으로는 삼양·함덕리 등지에서 군인들이 토끼몰이하듯 마을사람들을 몰았다. 특히 미리 매복해 있다가 도망치는 사람들을 쏘았다. 형은 칠오름 쪽으로 도망치다 죽사했고, 나는 소낭굴(현 매립장부근) 쪽으로 뛰었는데 100여 명 정도가 같이 도망을 갔다. 그런데 그곳에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일제사격을 가해 그 현장에서만 70~80명이 사살됐다. 대부분이 여자들이었다”고 증언했다.⁴⁰⁾ 한편 이날 외할머니와 어린 동생 등 가족을 잃은 송기전(宋基全)은 그날을 이렇게 증언했다.

그날 다급히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빨리 뛰지 못하는 노약자들은 마을 안 ‘당카름’이나 ‘대련수’ 쪽으로 갔고, 젊은 사람들은 늘 하던대로 동쪽으로 뛰었습니다. 왜냐면 군인들이 서쪽(오등리 죽성마을)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39) 『朝鮮中央日報』, 1949년 2월 9일.

40) 高潤燮(75세, 제주시 봉개동, 2001. 6. 29 채록) 증언.

날은 죽성마을 주둔군 뿐 아니라 아랫마을인 함덕리 주둔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포위된 것이지요. 봉개리 칠오름만 벗어나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잘 뛰지 못하는 노약자들이 중간에서 붙잡혀 죽었습니다. 난 봉개리 동쪽까지 뛰어가 대나무 밭에 숨어 목숨을 구했지만, 그 날 외할머니와 숙부 그리고 어린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보니 시신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대련수의 작은 바위틈에 머리를 박고 숨진 노약자들이 많았고, 당카름에서는 나무 위에 올랐다가 총에 맞아 나뭇가지에 걸쳐진 시신들도 있었습니다. 난 한국전쟁 때 해병대 14기로 입대해 많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서로 총을 겨눠 교전하는 것이지, 4·3 때처럼 노약자들까지 무차별 학살하는 참혹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⁴¹⁾

이날 2연대가 작전을 벌인 후 이웃마을 봉개리에 주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살아 남은 주민들은 더 이상 마을 부근에 은신할 수 없었다. 이후 주민들은 더욱 깊은 산속으로 은신해 들어갔다. 주민들이 산에서 내려온 것은 1949년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사이였다. 더 이상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내려왔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하산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젠 막 죽이진 않는다더라’는 정보 때문이었다. 유재홍 대령의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이른바 ‘선무공작’을 펼 때이다. 앞서 하산한 사람이 산으로 올라와 이런 사실을 알려주자 비로소 내려온 것이다. 이는 앞서 벌어졌던 집단총살이 얼마나 무모했던 것인가를 말해준다.

□ ‘빌레못굴’ 희생 사례

제주4·3사건 때 마을의 운명은 대개 그 마을의 위치에 따라 좌우됐다. 군·경 주둔지인 해변마을 주민이라면 군·경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한동안 무장대가 장악하고 있던 중산간마을에서는 무장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애월면 중산간지대에 자리잡은 어음리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주민들은 무장대의 요구에 따라 ‘왓사시위’를 했고 식량을 거둬 올려 보냈다. 청년들 중에는 본격 입산해 무장대원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 낮에 진압군이 올라왔으나 청년들을 찾지 못한 채 애꿎은 주민들만 구타하다 돌아갔다. 흔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낮에는 토벌대 세상, 밤엔 무장대 세상’이었다. 이즈음 경찰의 구타는 너무도 가혹해 주민 양측생

41) 宋基奎(제주시 용강동)의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55회, 1999. 8. 20).

(梁丑生, 여, 59)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양축생의 아들인 강태호는 어머니가 희생되던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부모님은 8남 1녀를 뒀으나 병으로 줄줄이 죽어 당시엔 우리 형제만 남았을 때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섯 살 때 돌아가셨지요. 어머니는 “너희들만이라도 목숨을 보존해야 하지 않느냐”며 우리 형제에게 어서 숨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나는 돌담 밑을 파서 그 곳에 숨었습니다. 그때는 너나 할 것없이 그런 식으로 은신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토벌대가 들이닥쳤어요. 토벌대는 어머니에게 “남편과 자식이 숨은 곳을 대라”고 다그쳤습니다. 어머니가 “나는 홀로 사는 여자이다”라며 버티자 곧 무자비한 구타가 가해졌습니다. 내가 숨었던 데는 집과 가까운 곳이라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토벌대가 물러간 후 급히 가보니 어머니는 실신 상태였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되는데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무 일도 못했다는 걸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대로 먹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반년동안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⁴²⁾

1948년 10월경부터 어음리에 경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철도경찰 20여 명이 옛 서당 자리에 진을 치고 진압작전에 나선 것이다. 이때부터 마을에서 무장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철도경찰은 청년이 보이기만 하면 즉각 총격을 가했다.

1948년 11월 15일경 진압군은 어음리에 소개령을 내렸다. 그러자 집안이나 인근에 숨어 있던 청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다. 진압군이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총격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숨어 전전긍긍하던 청년들에게 ‘해변마을로 이주하라’는 소개명령은 목숨을 부지할 방도를 알려주는 지침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진압군은 주민들이 집결하자 자신들이 가져온 ‘명단’ 속의 청년 10여 명을 불러내 초주검이 되도록 구타를 하다 한림국민학교로 끌고가 닷새 후인 11월 20일 총살했다.

소개는 11월 15일경부터 약 3일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 주민은 그 즈음 집안의 제삿날을 토대로 11월 18일 소개가 마무리된 것으로 기억했다. 진압군은 주민들에게 직접 자기 집을 불붙이게 하는 등 온 마을을 깡그리 불태우며 소개작전을 진행했다.

42) 姜泰好(73세, 애월읍 금성리)의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28회, 1998. 10. 16).

몇몇 청년들은 소개령을 계기로 숨었던 곳에서 나와 해변마을로 내려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다. 특히 가족 중에 도피자가 있는 집안은 내려오지 못했다. 이들은 곧 닥쳐온 겨울 동안 여기저기에 숨어 생존에 몸부림치다 죽어 갔다. 또한 해변 마을로 소개한 사람들도 걸핏하면 ‘도피자가족’에 대한 총살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나 자식이 소개하지 않은 집안의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희생됐다.

이와 관련, ‘빌레못굴’에서 벌어진 총살극은 그 처참함으로 어음리 뿐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가족 중 청년이 입산한 소위 ‘도피자가족’이거나, 토벌대의 주목을 받게 된 사람들이 숨어지내다 굴이 발각되는 바람에 집단총살된 것이다. 노인과 부녀자 등 주로 노약자들인 이들은 정감록과 구전설 오던 말에 따라 빌레못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즉 ‘난리 때는 산불근 해불근(山不近 海不近) 하라’든가, ‘30여 명이 능히 숨어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 마을에 퍼져 있었다.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m로 단일계통의 용암굴로는 세계 최장이라 하여 천연 기념물 342호로 지정돼 있다. 어음리 지경에 있는 빌레못굴은 주민들이 자주 드나들던 목초지와 경작지 부근에 있었으나 4·3 때까지만 해도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그 존재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겨우 한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좁은 입구를 바위가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굴의 온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김이 연기처럼 피어 오르지만, 주민들은 인근에 산재해 있는 작은 ‘퀘’⁴³⁾ 정도로 알았지 것처럼 큰 굴이 있는 줄은 몰랐다.

아무튼 1949년 1월 16일 굴이 발각됐고 진압군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총살했다. 특히 이 때 경찰이 서너살 난 어린이들의 다리를 잡아 머리를 바위에 때쳐 죽였다는 이야기는 당시 진압작전에 동원됐던 민보단원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지금도 처절함의 상징으로 인근에 회자되고 있었다. 그런데 입구가 좁아 잘 눈에 띄지 않는 빌레못굴이 어떻게 발각됐으며, 굴 안으로 깊이 도망쳤다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모두가 잡혀 죽었을까. 그 때 빌레못굴에 숨었다가 유일하게 생존한 양태병은 이렇게 증언했다.

소개령이 내려지자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웃마을 납읍리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43) ‘퀘’는 제주어로서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리워지고, 땅 속으로 깊숙이 패여 들어간 굴을 말한다.

매일 밤 보초를 세웠는데 내게는 보초서라는 명령이 없는 겁니다. 이상해 물어 보니 “너는 민애청에 가입한 놈이니 보초 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안해 하던 중 일주일만에 납읍리에도 소개령이 내려지자 다시 애월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내게는 보초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민애청 가입자는 곧 총살될 거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난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민애청 가입자라고 하니 놀랐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명단인 모양인데 그런 식이면 안 걸릴 청년이 없었지요. 아무튼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순 없었기에 도망쳤습니다. 그 무렵 알게 된 빌레못굴로 숨어들었는데 그곳에는 납읍리 주민 28명이 있었고, 우리마을 사람으로는 강규남의 가족 5명(어머니, 아내, 아들, 딸, 누이), 송시영과 그의 처자, 양신하 등이 있었습니다. 입구가 좁고 은밀한 곳이라 모두들 안심했지만 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차하면 숨을 만한 곳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요. 결국 굴이 발각됐습니다. 아마도 굴밖에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군·경 토벌대와 민보단원들이 굴 안으로 들어오자 급히 숨었지요. 그러나 토벌대가 “살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바람에 모두들 나왔습니다. 굴속의 인원을 파악한 토벌대는 붙잡은 사람을 통해 알아낸 내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난 숨죽이고 있었지요. 토벌대는 사람들을 끌고 나가자마자 굴 입구에서 바로 학살했습니다. 강규남의 아들이나 송시영의 아들은 불과 서너살난 아이들이었는데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예쁘고 잘난 아까운 아이들이었지요. 토벌대는 그 아이들의 다리를 잡아 바위에 메쳐 죽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차마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학살자들은 그 죄로 곱게 죽지 못했을 겁니다. 한편 강규남의 아내는 두어살 난 딸을 업은 채 도망쳤는데 나처럼 인근에 숨지 않고 더 깊숙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빠져나오지 못한 채 굶어 죽었습니다. 굴은 너무도 크고 복잡해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게 됩니다. 이들의 시신은 후에 굴 탐사팀에 의해 발굴된 것으로 기억됩니다.⁴⁴⁾

굴 속에는 어음리 주민 뿐 아니라 납읍리, 장전리, 상귀리 등 인근 주민들도 다수 끼어 있었다. 납읍리 사람으로는 현병구의 가족인 현용승(75) 현용승의 아내(75) 변용옥(여, 28, 현병구의 아내) 현병구의 아들(1) 등 일가족이 몰살했고, 양기원(여, 67) 진승희(54) 김정현(53) 현원학(51) 현원학의 아내(50대) 현규철(33) 현규철의 아내(30대) 안인무(29), 그리고 상귀리 사람인 진관행(80대), 장전리에서 온 변정옥(여, 29)과 변정옥의 어린 자식 두 명(5살, 3살) 등이 함께 붙잡혀 희생됐다. 대부분 노약자들로서 난리를 피해 숨었던 주민들이었지만, 진압군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살해했다.

44) 梁泰柄(74세, 애월읍 어음1리, 2001. 6. 22 채록) 증언.

□ 조천면 선흘리 사례

조천면의 중산간지역 동쪽 끝에 자리잡은 선흘리가 진압군에 의해 불에 탄 것은 1948년 11월 21일의 일이다. 며칠 전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집을 덮쳐 집주인 등 5명을 총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래 모든 주민들이 은신했기 때문에 이날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인들이 텅 빈 마을에 불을 지르고 돌아간 뒤 숨어 있던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전해졌다. 해변마을에 연고가 있는 노약자들이 주로 소개해 갔고, 많은 주민들은 마을 인근의 숲이나 굴로 피신했다.

그런데 주민희생은 진압군의 명령에 순응해 해변마을로 내려간 소개민에서부터 시작됐다. 소개한 지 이틀만인 11월 23일, 소개민 수용소에 있던 20대 젊은 여성 5명 가량이 함덕리 바닷가에서 총살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마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내려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지경이 됐다. 주민들은 주로 '선흘곶'⁴⁵⁾으로 가서 은신했다. 수십만 평의 동백나무 숲인 선흘곶은 방향을 가늠기 어려울 정도로 우거졌고, 자연굴이 산재해 있어서 은신처로서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11월 25일부터 연 사흘째 주민들이 은신했던 굴이 잇따라 발각됨으로써 선흘리 주민들은 강경진압작전 초기에 대부분의 희생을 치렀다. 11월 25일 '반못굴'이 처음으로 발각됐다. 군인들은 15명 가량을 즉결총살하고 몇몇 사람들을 살린 채 주둔지인 함덕국민학교로 끌고 갔다. 11월 26일 군인들은 전날 반못굴에서 잡은 사람을 다그쳐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은신해 있던 '목시물굴'을 찾아냈다. 군인들은 아기 엮은 여자와 노인 등 노약자는 함덕국민학교로 끌고가고 나머지 주민들은 총살 후 회발유를 뿌려 시신을 태웠다. 이날 목숨을 구한 양유희(梁允熙)는 17세 살 때 누나와 함께 목시물굴로 숨었던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반못굴에서 잡힌 사람이 취조를 받다가 우리가 숨어있는 목시물굴을 알려주는 바람에 발각됐다. 군인들이 낮 12시경 들이닥치자 우린 굴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군인들은 햇불을 들고 들어오면서 닥치는대로 총을 쏘았다. 결국 오후 5시경 모두가 잡혀 굴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군인들은 13세 이하 아이와 부녀자, 노인 등을 따로 구분했다. 난 17세여서 따로 세워졌다. 내가 살 운명인지 갑자기 등이 가려왔다. 그래서 등을 굽어달라며 어린 아이 쪽으로 간 사이에 청장년들이 끌려가 총살당했다. 나와 누나는 다른 노약자들과 함께 함덕국민학교에 있던 대대본부로 끌려가 수용됐다. 그런데 미군 군용천막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군인

45) '곶'은 제주어로서, 숲이 우거진 곳을 이르는 말이다.

들은 매일 밤 몇십명씩 끌어다 대략적인 취조만 하고 다음날엔 총살을 했다. 난 키가 작은 편이어서 15살이라고 속였다. A, B, C로 분류했는데 정보과에 있는 이복 출신 군인에게 가족들이 구명운동을 했던 국민학교 1년 선배와 같은 조사서에 기재된 덕에 C급으로 분류돼 석방됐다. 그러나 누나는 1949년 1월 24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총살당했다. 군인들은 서우봉에서 총을 쏘아 바다로 떨어뜨렸다.⁴⁶⁾

한편 군인들은 목시물굴에서 잡은 주민 중 한 명을 앞세워 또다시 굴을 찾아나섰다. 목시물굴이 발각된 지 하룻만인 11월 27일, 이번엔 웃밤오름 부근의 ‘밴뱅디굴’이 드러나 이곳에 숨었던 사람들이 총살당했다. 이처럼 반못굴(11월 25일)→목시물굴(11월 26일)→밴뱅디굴(11월 27일)이 잇따라 발각됨에 따라 희생자 이름만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강경진압작전 초기에 집중적으로 희생됐다. 김형조 씨는 목시물굴과 밴뱅디굴에 있었으면서도 구사일생했다. 억울한 사연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도피생활의 와중에서도 굴 속의 희생자 명단을 적어 항아리 속에 감췄던 김씨는 당시를 생생히 증언했다.

난 목시물굴에 숨어 있었는데 반못굴에 있던 사람들이 희생되자 이튿날 몇몇이 모여 시신을 수습키 위해 나섰습니다. 반못굴로 향하던 중 갑자기 박격포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모두들 겁에 질려 다시 목시물굴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굴도 곧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해 굴 밖으로 나와 더 위쪽을 향해 뛰었습니다. 웃밤오름 부근까지 올라가 밴뱅디굴에 숨었습니다만 다음날 밴뱅디굴도 발각됐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맞서 싸우자며 굴 안에 방호벽을 쌓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굴 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곳을 열심히 봤더니 굴 밖으로 구멍이 뚫렸어요. 밖으로 나오자 군인들이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결국 그 굴에서 5명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희생됐습니다. 내가 숨어 있었던 목시물굴로 가니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에 휘발유를 뿌려 태웠는데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만 얼굴이 심하게 탄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까마귀들이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시신을 가매장하면서 나중에 유족들이 왔을 때 식별할 수 있도록 나무를 반으로 쪼개 그곳에 이름을 써서 시신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명단을 적은 노트를 두권 만들어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항아리에 담아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에게 ‘내가 죽거든 이 항아리에서 문서를 찾아내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선홀리는 피해가 컸습니다. 선홀1구인 경우 당시 300가호였는데 내가 확인한 사람만 해도 157명이 희생됐습니다.⁴⁷⁾

46) 梁允熙(71세, 조천읍 함덕리, 2001. 10. 12 채록) 증언.

6) 보복 살상

진압군은 주둔지를 습격당하거나 혹은 이동 시에 기습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복에 나섰다. 보복 대상은 주로 '도피자가족'이었다. 이 때문에 무장대의 습격 사건이 나면 곧 도피자가족 총살이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다. 조천면 북촌리의 경우처럼 도피자가족 등 특정한 대상에게 보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습받은 지역의 주민 전체를 보복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 조천면 북촌리 사례

1월 17일에는 해안마을인 조천면 북촌리에서 가장 비극적인 세칭 '북촌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아침에 세화 주둔 제2연대 3대대의 중대 일부 병력이 대대본부가 있던 함덕으로 가던 도중에 북촌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숨졌다. 당황한 마을 원로들은 숙의 끝에 군인 시신을 들것에 담아 대대 본부로 찾아갔다. 흥분한 군인들은 본부에 찾아가 10명의 연로자 가운데 경찰가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살해 버렸다. 그리고 장교의 인솔 아래 2개 소대 쯤 되는 병력이 북촌마을을 덮쳤다.

그 때 시간은 오전 11시 전후. 무장 군인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집집마다 들이닥쳐 총부리를 겨누며 남녀노소, 병약자 할 것 없이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학교운동장으로 내몰고는 온 마을을 불태웠다. 4백여 채의 가옥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북촌국교 운동장에 모인 1,000명 가량의 마을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교단에 오른 현장지휘자는 먼저 민보단 책임자(장운관)를 나오도록 해서 '마을보초 잘못 섰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즉결처분했다.

군인들은 다시 군경가족을 나오도록 해서 운동장 서쪽 편으로 따로 분리시켜 갔다. 어린 학생 등을 일으켜 세워 '빨갱이 가족'을 찾아내라고 들볶던 군인들은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주민 몇십명씩 끌고 나가 학교 인근 밭에서 사살하기 시작했다. 이 주민학살극은 오후 5시께 대대장의 중지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이 날 희생된 주민들이 대략 300명에 이른다고 증언한다.

한편 사살중지를 명령한 대대장은 주민들에게 다음 날 함덕으로 오도록 전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살아 남은 주민들 가운데는 다음날 산으로 피신한 사람, 함덕으로

47) 金亨祚(80세, 조천읍 선흘리, 2001. 9. 25 채록) 증언.

간 사람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대대장의 말대로 함덕으로 갔던 주민들 가운데 100명 가까이가 ‘빨갱이 가족 색출작전’에 휘말려 다시 희생된다. 이 사건으로 북촌 마을에는 대가 끊어진 집안이 적지 않다.⁴⁸⁾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김병석은 놀랄만한 증언을 했다. 김병석의 어머니는 아들 중에 경찰이 있다는 이유로 1948년 5월 13일 무장대에게 희생됐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희생자의 다른 아들들에게 경찰이 될 것을 권유했고, 이 때 김병석도 경찰에 특채됐다. 이로써 8형제 중 4형제가 경찰이 되었다. 김병석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복수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또다시 너희에게 복수할 것이니 악연을 끊을 수 없다. 악연은 당대에서 끊어라’라고 말씀하셔서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혔고 오히려 억울한 죽음을 많이 막았다”고 말했다. 김병석은 자신이 경찰에 투신한 후 직접 경험했던 북촌사건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난 운전면허증이 있는 덕에 경찰에 들어간 후 차량계에 배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2연대 3대대 선임하사가 와서 “대대장 차가 고장났으니 자동차 하나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이에 차량계장은 “3대대 주둔지가 함덕인데 네 고향이 함덕이니 오랜만에 고향에도 갈 겸 며칠간 다녀오라”며 날 보냈습니다. 본래 GMC를 몰았는데 그때 앰블런스 형식으로 된 차로 함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대장을 모시고 월정리에 있는 11중대를 둘러본 후 대대본부로 돌아가던 길에 우리보다 앞서가던 군차량이 북촌국민학교 앞에서 기습을 당했어요. 그래서 대대 출동명령이 내려졌고 나는 대대장을 태운 채 북촌국민학교로 갔습니다. 그 때 군인들은 북촌리를 다 불태우면서 주민들을 전부 학교 운동장에 집합시켰습니다. 대대장은 우선 “군인·경찰관 가족을 뽑아내라”고 한 후 차 안에서 참모회의를 열었어요. 앰블런스 형식의 차니까 중앙은 비고 양쪽으로 긴 의자가 있었는데 그곳에 약 7~8명의 장교가 모였습니다. 그 때 “돌담 위에서 박격포를 쏘아 몰살시켜 버리자”는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장교가 “군에 들어온 후에도 적을 살상해보지 못한 군인들이 있으니까 1개 부대에서 몇 명씩 끌고나가 총살을 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해 결국 그게 채택됐습니다. 그러자 나는 거의 혼이 나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북촌리는 고향 함덕리와 가까워 우리 일가친척도 있고 동창도 있는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대대장에게 급히 사정했더니 그들을 빼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혼이 나갔는지 아무리 부르려 해도 친척과 동창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나와 같이 운전수였

48) 玄德善(75세, 조천읍 북촌리, 당시 주부, 사건현장 목격자, 2002. 5. 31. 채록) 증언; 金錫寶(67세, 조천읍 북촌리, 당시 초등학생, 사건현장 목격자, 2002. 5. 31. 채록);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전예원, 1994, 405~408쪽.

던 장운석이란 사람만 생각나 그와 그의 가족 7~8명을 우선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대장에게 “우리 집안은 무장대에게 어머니를 잃었고 9남매 중 4형제가 경찰로 있는 반공가족입니다. 그런데 저기 끌려나가는 노인·부녀자·어린이들이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대대장은 “나도 살려주고 싶지만 그러면 어떻게 저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대대장도 본래는 주민들을 죽일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나는 “걱정 마십시오. 함덕리에만 가면 다 저들의 친척이 있는데 함덕리는 큰 마을이니까 다 해결이 됩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계속 사정하니 대대장은 “그러면 네가 책임져라”면서 사격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명이 끌려나가 총살된 상태였습니다.⁴⁹⁾

이미 집들을 다 불태워 버린 상태에서 그들을 수용할 대책이 없어 죽었으며, 군인 개개인에게 총살의 경험을 주기 위해 박격포 대신 총을 사용했다는 증언이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북촌리 주민들은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가 없었다. 특히 희생자들을 위령하며 통곡했다는 이유만으로 줄줄이 경찰에 잡혀가 곤욕을 치렀던 일은 주민들을 더욱 움츠리게 했다.

마을에서 속칭 ‘아이고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1954년 1월 23일 벌어졌다. 한국전쟁 전몰장병인 김석태(金錫泰)의 고별식이 열린 날이었다. 이 날 주민들은 국민학교 교정에서 전사자의 고별식과 속칭 ‘꽃놀이’를 하던 중 “오늘은 6년전 마을이 소각된 날이며 여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지 6주년 기념일이니 당시 희생된 영혼을 위해 묵념을 올리자”는 한 주민의 제안에 따라 묵념을 하게 됐다. 그 때 설움에 북받친 주민들이 대성통곡을 한 것이 경찰에 알려져 곤욕을 치른 것이었다.⁵⁰⁾

1960년 4·19 후 국회 차원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사업이 벌어지자 북촌리 집단살상 피해를 취재 보도한 한 언론은 ‘끔찍한 악몽, 과부(寡婦)의 마을…해마다 이맘때 집단제사’라는 제목 아래 “남녀 유권자 비율을 따져보면 거의 3대 1에 가까울 만큼 남자들이 희소한 곳”이라고 전했다.⁵¹⁾ 그러나 곧 5·16이 발생해 진상은 다시 묻히고 말았다. 심지어 경찰은 1990년 『제주경찰사』를 펴내며 다음과 같이 북촌사건을

49) 김병석(73세, 조친읍 함덕리, 당시 경찰, 2002. 2. 1. 채록) 증언.

50) 북촌과견소, 「여론조사 보고-북촌 이장에 대한 部民 여론조사 보고 건」, 1954. 3. 13. : 「시발서」, 1954. 3. 15. : 제주경찰서 사찰계, 「사찰보고-刑殺者 週年 기념추도식 거행에 관한 건」, 1954. 3. 16. : 제주경찰서, 「진상보고-형살자 주년 추도행사 거행에 관한 건」, 1954. 3. 17.

51) 『朝鮮日報』, 1960년 12월 22일.

왜곡했다.

이 마을을 습격한 공비들은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 남성들을 무참히 학살하거나 납치해 갔다. 토벌대가 공격해 가자 공비들은 일부는 산으로 도망가고 일부는 마을로 숨어들어 약탈과 방화를 자행했다. 장시간 소탕전이 벌어지고 북촌리는 황폐한 마을이 되어 버렸다.⁵²⁾

북촌리민을 살해한 가해집단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다. 이 때에도 북촌리 주민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후 '4·3' 진상규명 운동이 일어 북촌사건의 진상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10년 후인 2000년에 새로 『제주경찰사』를 펴낼 때에도 위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그러나 10년 전과 달리 북촌리민을 포함해 많은 제주도민들은 책의 내용에 대해 분노했다. 범도민적인 저항에 부딪힌 제주도경찰국은 결국 『제주경찰사』를 모두 회수했고, '4·3관련 부분'을 도려낸 후 다시 배포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 제주읍 삼양리 사례

제주읍 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 삼양리는 해변마을이면서도 사태 내내 희생이 끊이지 않은 마을이다. 진압군은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일주도로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도로차단'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자주 경찰지서 습격을 당하는 삼양리를 늘 주목하고 있었다. 경찰은 청년들이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연행해 구타를 했고, 청년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마루 밑을 뜯어내 은신처를 만들거나 일부는 밭에 굴을 파 숨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 27일엔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마을의 한 할머니의 장례식 날이었기 때문이다. 굶은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 풍습대로 숨었던 청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 장지(葬地)로 향했다. 그러자 기회를 엿보던 경찰은 장지를 덮쳐 청년들을 붙잡아 삼양지서에 감금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끌려간 청년들이 총살당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튿날 무장대가 삼양지서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즉각 보복 총살당했다.

무장대의 공세에 대한 진압군의 보복은 연이어 벌어졌다. 11월 초 진압군은 삼양

52) 濟州道警察局, 『濟州警察史』, 1990, 315쪽.

리의 모든 주민들을 삼양국민학교에 모아놓고 청장년 35명 가량을 지목해 군 주둔지인 함덕리로 끌고 갔다가 이 중 반수 가량을 11월 12일에 총살했다. 이 사건 희생자의 유족인 문창해(文昌海)는 “그날 군인들은 과거 남로당 등 좌익조직에 참여했던 자들은 나오라고 다그치다가 아무도 나오지 않자 뚜렷한 근거도 없이 ‘너, 나와! 너, 나와!’ 하는 식으로 임의대로 청년들을 지목해 끌고 가 총살했다”면서 “이때부터 마구잡이로 총살하는 상황이 되자 청년들이 산으로 도피했다”고 말했다.⁵³⁾ 11월 27일에는 마을의 조선소 부근에 굴을 파 은신하고 있던 청년들이 붙잡혀 총살당하자, 마을 부근은 어디도 안심할 곳이 없었다.

청년들의 도피입산 사태는 주민들을 분리시켰다. 마을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대동청년단(후에 대한청년단으로 개편)이나 민보단에 의무적으로 편입돼 토벌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산으로 오른 사람들은 무장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개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친척과 친구들끼리도 무장대와 토벌대편으로 나뉘게 했다. 시대상황이 강요한 비극이었다.

마을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진압군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한동안 인명피해 없이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48년 12월 27일, 또다시 주민 10여 명이 토벌대에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 역시 군인들의 화풀이 학살극이었다. 이 날 군인들은 봉개리 명도암 부근까지 가서 진압작전을 펴다가 오히려 무장대의 기습을 받았다. 화가 난 군인들은 내려오던 길에 마을 어귀에서 보초를 서던 주민 12명을 만나자 엉뚱하게도 이들을 속칭 ‘고우니마루’라는 곳으로 끌고가 총살했다. 이 때 김정봉은 총에 맞고도 죽지 않은 채 기어서 집으로 왔다. 그러자 그의 부친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아들을 업고 지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즉각 총살했다.

1949년 1월 3일은 삼양리 주민들이 무장대와 진압군 양측으로부터 큰 희생을 당한 날이다. 2연대가 9연대를 대신해 제주에 막 주둔하기 시작한 때였다. 연대 교체기를 틈탄 무장대의 이날 습격은 대대적인 것이었다. 무장대는 마을 어귀에서 보초를 서던 주민 10여 명을 살해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의 집들을 불태웠다. 삼양국민학교도 이 때 불에 탔다. 무장대가 물러가자 경찰은 예외 없이 보복총살극을 벌였다. 주로 집안에 청년이 사라진 소위 ‘도피자가족’이 총살당했다. 보복총살 희생자의 아들인 김양근(金良根)은 이렇게 증언했다.

53) 文昌海(69세, 제주시 용강동, 2001. 7. 12 채록) 증언.

1949년 1월 3일 삼양지서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산에 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모·형제가 희생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악이 받쳐 지서 습격을 하고 보초 서던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산사람들이 지서를 습격하면 다음 날엔 경찰이 산사람 가족이라 하여 주민들을 처형하곤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1월 3일 습격 후에는 산에 오른 사람의 가족들이 멸족을 당했습니다. 1살 난 아기까지. 우리 가족은 일절 산에 다니지 않았고 난 민보단원에 편성돼 지서 근무까지 했는데 이날 우리 아버지(김여진)와 누나(김임생)도 경찰에 끌려가 희생됐습니다. 아버지가 산에 오른 사람의 외삼촌이라는 게 희생된 이유였습니다. 누나는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누나가 돌아가신 후 한 달만에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⁵⁴⁾

‘무장대의 습격과 토벌대의 보복’이라는 악순환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제주시에 위치한 충훈묘지의 경찰관 묘역에 있는 비석을 모두 살펴본 결과, 전체 경찰관 희생자 140명 가운데 △무장대가 기세를 올리던 때(1948년 4월 3일~11월 7일) 희생자가 41명(29%)인 반면에 △진압군의 강경진압작전 때(1948년 12월 5일~1949년 3월 1일) 17명(12%) △무장대가 거의 궤멸돼 잔여세력 수십 명만 남아 있던 때(1949년 5월 25일~1956년 9월 30일)에 82명(58%)이 각각 희생됐다. 강경진압작전 이후 진압군이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경찰이 희생됐다는 것은 무장대 세력이 거의 약화된 이후에야 경찰이 비로소 ‘적진’에 들어갔음을 말해준다. 이는 또한 강경진압작전 때 희생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압군과 교전을 벌이다 죽은 무장대원이 아니라 마을에 살던 주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장대로부터 습격을 받았다면 그들이 있는 곳까지 쫓아가 진압을 해야지, 왜 멀쩡히 마을에 있는 불가항력의 주민들에게 보복 총살을 했는가.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삼양리에 대한 무장대의 공격은 집요했다. 1949년 2월 22일에도 무장대가 삼양리를 습격해 보초를 서던 주민 4명을 학살하고, 경찰관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러자 토벌대는 이튿날인 2월 23일부터 보복총살극을 벌였다. 삼양지서 ‘정 주임’은 삼양리 주민 뿐 아니라 인근의 도련리, 그리고 중산간에서 소개해 온 봉개·용강·회천리 주민들에게 유명하다. 당시를 겪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하루에 한 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던 삼양지서 정 주임을

54) 金良根(69세, 제주도 삼양3동, 2001. 7. 11 채록) 증언.

기억하고 있었다. 주민 김양근은 “당시 삼양지서에는 정 주임, 백 경사, 강 순경, 이 순경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서북청년회 출신이었다. 특히 정 주임과 백 경사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며 사람을 죽여야 밥을 먹던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제주경찰 10기생으로 당시 삼양지서에서 잠시 근무했던 김제진(金濟珍)은 이렇게 증언했다.

난 삼양지서가 습격을 받자 며칠 간 그곳으로 가 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북청년회 출신 정 주임은 너무도 잔인했어요. 여자들 옷을 벗겨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여자들의 옷을 벗긴 채 망루 위에 오랜 시간 앉혀 놓았습니다. 난 벌벌 떠는 그들이 불쌍해 코트를 벗어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삼양지서 옆 밭에서 남자고 여자고 수십명씩 잡아다 죽였습니다. 차라리 총으로 쏘아 죽일 것이지 그 마을 대동청년단원들에게 창으로 찌르도록 강요했습니다.⁵⁵⁾

악명 높던 정 주임의 이름은 정용철이었다. 고봉수는 1949년 2월 24일 정용철이 벌인 처참한 학살극을 이렇게 증언했다.

나는 대한청년단 분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정기보고를 하러 지서에 갔더니,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젊은 여자 한 명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주임은 웬일인지 총구를 난로 속에 넣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젊은 여자를 훌쩍 벗겼어요. 임신한 상태라 배와 가슴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 주임은 시뻘겋게 달궈진 총구를 그녀의 몸 아래 속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 주임은 그 것을 하다가 지서 옆 밭에서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시신 위로 흙을 덮으라고 했는데 아직 덜 죽어있던 상태라 흙이 들썩 들썩 했습니다. 정 주임 그놈은 오래 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⁵⁶⁾

희생된 여인은 김진옥(金辰玉, 21)으로서, 당시 산으로 피신했던 김태생(金泰生)의 아내였다. 김태생은 이날 아내와 부모를 잃었고, 이튿날인 2월 25일에는 처조부를 잃었다. 또 며칠만에 장모와 처제를 또다시 잃었다. 김태생의 입산으로 양가 식구들이 몰살당한 셈인데, 김태생이 ‘6·25 참전용사’라는 사실은 강경진압작전이 열

55) 金濟珍(78세, 한림읍 귀덕1리, 제주경찰학교 10기생, 2001. 11. 19 채록) 증언.

56) 高奉洙(79세, 제주시 삼양2동)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56회, 1999. 8. 28).

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태생(1998년 작고)은 생전에 이렇게 증언했다.

가을철에 무조건 총질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서워 산으로 피했습니다. 한동안 이리저리 도망쳐다니다 지쳐 원당봉까지 내려와 숨었지요. 그러다 원당봉에 소나무를 심으러 온 사람들에게 들켰습니다. 삼양지서로 끌려가 죽도록 맞은 후 다시 제주 읍내로 끌려가 취조를 받았습니다. 취조할 때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살고, 모진놈 만나면 죽는 식이었습니다. 난 좋은 사람 만난 셈입니다. 고향으로 와 보니 정 주임은 가고 대신 최 주임이 와 있더군요. 곧 전쟁이 터지자 혈서를 쓰고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군번은 0310413입니다. 나와 같이 풀려난 사람들 중엔 군대에 지원한 사람이 많은데 거의 전사했습니다.⁵⁷⁾

삼양지서 주임 정용철은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한 처녀에게 연정을 품었고 그녀에게 편의를 베풀던 평범한 인간이었다. 정용철과 같은 서청 단원으로서 함께 경찰이 되어 제주에 파견돼 왔던 김시훈은 “정용철은 나와 같이 제주에 왔는데 올 때부터 경위로 특채돼 삼양지서 주임이 되었다. 성격이 좀 이상해서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당장 총을 끄집어내 쏘려고 했다. 당시 경찰관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파리새끼 죽이는 것처럼 간단했다. 그런데 그도 이옥(李玉)이라는 처녀에게 반해 면회도 하던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⁵⁸⁾

왜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경찰로 둔갑해 제주에 파견됐으며,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경위로 특채될 정도로 우대를 받았는가. 이에 대해 미군보고서는 이승만의 결정에 따라 과격한 반공주의자로 주목받고 있는 서청 단원을 경찰로 만들었으며,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단원 20명을 모아오면 그 중 1명을 경사로, 50명엔 경위 1명을, 200명엔 경감 1명을 특채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⁵⁹⁾ 정용철은 바로 이런 방침에 따라 경위로 특채된 것이었다.

이처럼 서북청년회 단원에게 급히 경찰복을 입혀 제주에 파견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북에서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의지할 곳이 없는 데다가 공산주의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던 서북청년회의 처지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

57) 金泰生(작고, 제주도 삼양2동)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56회, 1998. 8. 28).

58) 金時訓(79세, 표선면 가시리, 당시 서청 출신 경찰, 2002. 2. 26 채록) 증언.

5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05, December 6, 1948.

학자는 “(서청 단원의) 악행과 만행을 구체적으로 교사할 필요가 없었는지 모른다. 다만 ‘저기 빨갱이들이 있다’라는 주술을 속삭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칭칭 태엽이 감긴 자동인형처럼 그것이 풀리면서 예정된 방향으로 나갈 터이니까”라고 분석했다.⁶⁰⁾ 서청 단원들도 어찌면 역사의 희생자일지 모른다. 문제는 서청을 사주한 자들이다.

7) 예비검속자 살상

① 제주지역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4개월 후인 1949년 4월 21일 국민보도연맹 결성 준비모임을 거쳐 6월 5일 창립선포대회를 서울 시공관에서 개최하였다.⁶¹⁾ 보도연맹의 활동 목표는 강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오등은 대한민국 정부를 절대지지 육성을 기함
1. 오등은 북한괴뢰정부를 절대반대 타도를 기함
1. 오등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을 배격·분쇄를 기함
1. 오등은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과괴정책을 폭로·분쇄를 기함
1. 오등은 민족진영 각 정당·사회단체와는 보조를 일치하여 총력결집을 기함⁶²⁾

즉 보도연맹의 결성은 좌익세력을 전향시켜 남·북로당을 배격·분쇄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다. 외적으로는 좌익전향자들을 ‘보도(保導)’한다고 하지만, 전향자가 제출한 자백서를 통해 좌익세력을 섬멸하자라는 취지가 강했다.

보도연맹은 중앙본부와 각 지방연맹이 검찰청의 조직체계를 따라 조직·운영되었으며, 각 도별로 어느 정도의 자율적 운영을 허락하였다. 보도연맹의 전체적인 관리 방침은 국민보도연맹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되었고, 각 지방검찰청에서는 지역 경찰을 통해 지방지부의 보도연맹원들을 관리했다. 보도연맹의 지방지부는 1949년 11월까지 각 지역 도본부가 결성되었고, 12월까지 각 시·군지부가 결성되었다.⁶³⁾

60) 황상익, 「의학사(醫學史)적 측면에서 본 '4·3」,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318쪽.

61) 『東亞日報』, 1949년 6월 6일.

62) 『東亞日報』, 1949년 4월 23일.

63) 金宣浩, 「國民保導聯盟事件의 過程과 性格」, 경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21~26쪽.

지방지부를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였던 것은 지도위원회였다. 지도위원회는 검찰지청장·경찰국장·경찰서장·경찰서 사찰계장, 시장·군수, 형무소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보도연맹 지부의 구체적인 지도·운영방침이 확정되었다. 지방지부의 운영을 담당하는 각 부서로는 재정부·총무부·보도부·사업부·조직부·선전부·부인부 등이 있었다.

지방지부의 조직체계와 지도·관리체계가 만들어진 후 각 지방지부에서는 우익단체와 경찰들을 통해 보도연맹의 가입을 독촉했다. 경남지역의 경우 1950년 4~5월 까지 읍·면·리 단위를 포함하여 지역 민보단과 경찰서 사찰계장 등이 직접 나서서 가맹원들을 모았다.⁶⁴⁾ 지방지부의 조직과 활동이 본격화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의 인원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제주지역에도 보도연맹이 조직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1950년 8월 17일 제주도 현지 상황을 조사했던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이 남긴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등록된 국민보도연맹 회원 27,000명과 과거 반란사건 시기와 그 후에 공산주의자로서 피살된 사람들의 친척 약 50,000명이 제주도에 잠재적인 파괴분자로 존재하고 있다.⁶⁵⁾

내륙지방과 달리 제주지역은 4·3사건을 거치면서 무장대원은 물론 군·경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샀던 주민들은 대부분 희생되었기 때문에 새삼스레 보도연맹을 조직할 필요도 없었는데, 27,000명이라는 연맹원 수는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보도연맹 조직 시기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보도연맹이 1949년 11월말까지는 조직되어 있었음을 다음의 자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국민보도연맹에서는 관계 당국의 후원을 얻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말까지를

64) 전갑생, 「경남지역 민간인학살의 실상」, 『전쟁과 인권, 민간인학살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2001.

65)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 Conditions on Cheju Island, John P. Seifert, Naval Attache, Donald S. MacDonald, Third Secretary of Embassy, Philip C. Rowe, Vice Consul, Aug 17, 1950.

좌익계열 개전자 포섭 주간으로 설정하여 좌익계열 포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던 중, 지난 27일 현재로 남은 각지에서 자수하여 온 좌익분자는 무려 39,9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1일 이(李)치안국장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중략) 지난 10월 25일부터 전향자 자수 주간을 설정하였던 바 상상의의 성과를 보았을 뿐 아니라 이의 은전을 시일과 지리적 관계 등으로 보편화하지 못한 산간 벽촌에 있는 범법자 등에게까지 널리 균□케 하기 위하여 11월 말일까지 전후 2회에 걸쳐 그 기간을 연장하고 널리 선전하였던 바 11월 27일까지 각 경찰국으로부터 내 무부에 보고된 전향자 수는 서울 12,196명, 경기 5,964명, 강원 4,978명, 충북 3,512명, 충남 1,054명, 경북 1,938명, 경남 2,143명, 전북 1,660명, 전남 115명, 제주 5,283명, 철도 143명, 계 39,986명 거대한 성과를 보았으며 (후략)”⁶⁶⁾

즉, 1949년 11월 말 현재 제주지역에서 5,283명의 전향자를 보도연맹에 가입시켜 놓았다.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를 자수시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0년 6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27,000명의 맹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4·3사건의 과정에서 1949년까지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지역에 또다시 3만 명에 가까운 관리 대상자가 필요했는지 의심스럽다.

제주지역 보도연맹의 조직은 각 리 단위로 되었고, 그 관리·운영에 말단 경찰지서 순경까지 관여하고 있었음은 다음의 자료에도 엿보인다.

피고인(한성범)은 단기 4281년 12월 1일부로 제주도 순경을 임명받고 약 1개월 간 제주경찰서 경비계 근무 중 단기 4282년 1월 2일부로 제주읍 도두리 지서 근무를 명령받아 동서 외근 근무를 담당하여 그 직무에 종사하여 오던 바 단기 4283년 3월 24일 오후 2시 30분경 지서 주임의 명에 의하여 동서 관내 제주읍 이호리 1구 및 2구에 보도연맹 가입비 징수 독려차로 이호리 1구를 경유하고 동리 2구 산간 신설부락으로 향하는 도중 도두리 홍연심 소유의 이호리 속칭 「오도롱」 지경 맥전(麥田)에 다수인이 집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후략)⁶⁷⁾

즉, 각 리별 보도연맹의 관리는 관할 경찰지서가 담당하였고, 경찰이 가입비를 징수하는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보도연맹에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이를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경찰 출신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제주지역의 보도연맹은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자수시켜

66) 『서울신문』, 1949년 12월 2일 ; 『朝鮮日報』·『東亞日報』, 같은 날짜.

67) 濟州地方法院 1950년 5월 11일, 宣告 1950년 刑公 第78號.

만들었으며, 경찰 사찰계 직원들이 관여했다고 한다.⁶⁸⁾ 보도연맹의 조직은 정부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명부만 만들고 실제로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⁶⁹⁾ 그러나 구좌면 종달리의 경우, 경찰이 직접 나서서 젊은이들을 가입하게 하였고,⁷⁰⁾ 제주읍 이호리 사람들은 도두국민학교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⁷¹⁾

보도연맹은 제주도내 네 군데 지역에 설치된 경찰서 관할구역별로 조직되었다. 각 경찰서 관할구역별로 보도연맹 본부가 있고, 그 밑에 각 지서별 관할 지부가 있었다. 본부의 조직체계는 간사장·총무부장·선전부장·조직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산포경찰서 관할의 경우, 성산포 출신의 강석준이 간사장이었고, 총무부장 강석홍(성산면 오조리), 조직부장 채정옥(구좌면 종달리), 선전부장 부영성(구좌면 하도리) 등으로 간부진이 구성되었다.⁷²⁾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위 '좌익활동'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과거 인민위원회 간부, 3·1사건 관련자, 4·3사건 관련 재판을 받았거나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⁷³⁾ 그러나 대동청년단 위원장이나 마을 구장 등 군·경에 우호적인 사람들까지 과거 전력이 있으면 경찰이 강제적으로 가입시켰다.⁷⁴⁾ 또한 종달리에서는 젊은이는 거의 예외없이 가입 대상이 되었다. 남원면 의귀리 김계수는 산에 피난했다가 귀순하여 서귀포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보도연맹에 들면 4·3사건으로 중산간마을 주민들 혐의가 깨끗이 없어진다”고 하여 흔쾌히 가입하였다.⁷⁵⁾

68) 金濟珍(78세, 한림읍 귀덕1리, 당시 경찰, 2001. 11. 19. 채록)과 宋元和(81세, 제주시 이도2동, 당시 경찰, 2002. 6. 1. 채록) 증언. 정남두는 군 정보과에서 보도연맹원 가입에 관여했다고 증언하였다(鄭南斗, 74세, 제주시 일도1동, 당시 경찰, 2001. 10. 10. 채록).

69) 金生玟(77세, 제주시 연동,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 연락책에서 전향해 경찰관으로 근무, 2001. 7. 13. 채록)의 증언. 김생민은 제주경찰서 관할 보도연맹 조직부장을 맡았으나, 재임기간 중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70) 蔡植玉(79세, 구좌읍 종달리, 당시 교원, 2001. 11. 15. 채록) 증언.

71) 李輔連(72세, 제주시 이호1동, 당시 일반주민, 2001. 8. 3. 채록) 증언.

72) 위 蔡植玉의 증언.

73) 김영옥은 서귀포 농회 서무계장으로 재직 중이던 1949년 직장동맹파업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검거되었다. 일주일 간 취조 받고 석방되어 나왔는데, 당시 서귀포경찰서장 김호겸(1949. 6. 8~1950. 12. 3 재임)이 위로하며 보도연맹에 가입하기를 권유했다. 金英玉(79세, 서귀포시 서흥동, 당시 공무원, 2002. 5. 1. 채록) 증언.

74) 이호리에서 대동청년단장이, 서귀포에서는 마을 구장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서귀포의 송두평 구장은 과거 인민위원회 간부를 역임했으나 뒤에 자수한 바 있다. 송 구장은 군이 서귀포에 주둔할 때 성을 쌓고 각종 음식과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1948년 11월 7일 무장대의 서귀포 습격 때 자신의 집이 전소된 적도 있었다(위 鄭南斗의 증언).

제주지역에서 보도연맹이 조직되고 각 마을별로 상당한 수의 가입자가 있었지만, 연맹원들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는 증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연맹 본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하여 선무공작의 일환으로 강연회나 연극 공연 등을 했다는 정도이다. 성산포경찰서 관할 보도연맹 본부의 경우, 보도연맹이 주최하여 경찰서에서 관할 구좌면·성산면·표선면 일대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강연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상당한 인원이 동원되었다. 주최는 보도연맹이지만, 실질적인 주관은 성산포경찰서 사찰계가 담당하였다. ‘혁명가의 망부전’이란 연극 공연도 하였다.⁷⁶⁾

② 예비검속 과정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정부는 전국 각 지역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던 보도연맹원과 반정부혐의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의 명목으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으로서 그 역사적 연원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2차대전이 발발하자 전시체제를 구축하면서 식민지 조선에 ‘조선정치범예비구금령(1941년)’을 시행한 바 있다. 나아가 1945년 패망이 가까워오면서 일제는 ‘비상사태에 따른 제1호 조치’를 통해 반일적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모색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은 소련군과 미·영군이 상륙하면 각각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요시찰인을 예비검속하고, 전선이 경찰서에 가까워지면 예비검속자를 후방으로 옮기고, 만일 옮길 여유가 없으면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 곧 학살하라는 것이다. 이 조치는 소련군이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로 진격하여 일본군을 급속히 괴멸시키던 상황에서 전국의 경찰서장에게 암호로 타전되었다.⁷⁷⁾

그러나 이와 같은 일제강점기 예비검속법은 해방 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즉각 폐지되었다. 즉 1945년 10월 9일 미군정 법령 제11호에 따라 “북위38도 이남의 점령 지역에서 조선인민과 그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 및 압박을

75) 김계수(83세, 남원읍 의귀리, 당시 피난입산자, 2002. 5. 21. 채록) 증언.

76) 위 蔡植玉 증언 ; 夫英性(84세, 구좌읍 하도리, 당시 하도리 대동청년단장, 2000. 12. 15. 채록) 증언.

77) 임대식, 「친일·친미 경찰의 형성과 분단 활동」, 『분단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정치범처벌법·예비검속법·치안유지법·출판법·정치범보호관찰령·신사법·경찰의 사법권 등의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령 및 명령을 폐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 따라 미군정기에 예비검속은 실시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내무부는 사건의 인접지역인 광주와 이리에서 예비검속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담당 검사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하자 내무부 장관은 예비검속을 명문화한 ‘공산당취체법’의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⁷⁸⁾ 또한 제주에서도 1948년 10월 이후부터 대대적인 예비검속이 시행된 바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6월 25일 당일 오후 2시 25분 치안국장의 명의로 각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전화통신문으로 긴급 하달하였다. 이 지시문은 제주도 경찰국장에게 하달된 것인데,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즉시 구속할 것’과 ‘전국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⁷⁹⁾ 이어서 6월 29일에는 ‘불순분자 구속의 건’이, 6월 30일에는 ‘불순분자 구속 처리의 건’이 제주도 경찰국장에게 하달되었다. 6월 29일자 하달 공문에는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7월 6일에는 제주지구 비상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 제주지구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이, 7월 11일에는 다시 치안국장으로부터 ‘불순분자 검거의 건’이 각각 제주도 경찰국장에게 하달되었다.⁸⁰⁾

이러한 예비검속의 사실은 <치안국 ↔ 제주도 경찰국 ↔ 제주지역 각 경찰서>로 이어지는 경찰 당국과 <국방부 ↔ 제주지구 계엄사령부>로 이어지는 군 당국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알 수 없는 ‘절대 극비’로 취급되었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예비검속 집행 결과의 부당성·불법 여부에 대한 취조권은 검찰 당국에 있다고 주장하여 예비검속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제주도 경찰 당국에서는 상부의 명령이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⁸¹⁾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78) 金宣浩, 앞의 글, 33쪽.

79) 「4·3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제주KBS 다큐멘터리), 2000. 3. 30. 방영.

80)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 1950. 8. 6(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209~210쪽에 수록).

81) 위와 같음.

서 경찰·검찰·법원 조직 등은 모두 군의 관할로 귀속되었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예비검속을 주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 이후의 예비검속은 계엄군의 주도하에 군·경찰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검속자에 대한 처리 권한은 오로지 군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로부터의 예비검속 지시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즉각 요시찰인에 대한 일제 검거가 이루어졌다. 제주경찰국 접수 공문을 보면, 6월 말부터 8월 초에 이르기까지 공무원·교사에서 학생과 부녀자 등에 이르기까지 예비검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⁸²⁾ 모슬포경찰서장이 제주도경찰국장에게 보낸 다음의 공문을 보면, 모슬포경찰서 관내 '불순교원'들에 대한 일제 검거가 있었고, 추가로 보성국민학교 교원들에 대한 검거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수제건(首題件)에 관하여 거 7월 28일부 학교 교직원 및 공산 제오열 혐의자 일제 검거에 관한 건, 무전 통첩에 의거 불순교원을 일제 검거 기 결과를 기보한 바도 유하거니와 관하 대정지서 관내 보성국민학교 교원 전원 즉 교장 고창구 이하 4명은 원래 불순분자인 바 동교 교원 전원을 검거하는 것은 동교 운영에 중대 애로를 초래시키리라고 심중 검토한 바이나 금차 사변 발생 이후 기 동향이 극히 애매하여 주목되는 바 유하므로 현하 중대 시국의 부득이한 비상조치로서 전원 검거하여 수용중인 바 차에 수반하여 동교는 관리 등 운영이 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학무 당국에 연락 시급(至急) 교원 배치토록 조치 무망(務望)

자이 보고함

(추기) 검거한 교원 4명은 교장 고창구, 교원 이윤배·현창민·허영필 4인인 바 7월 30일부 모서사 제2942호 학교 교직 및 공산 제오열 혐의자 일제 검거에 관한 건 참조하시압기 침신함⁸³⁾

당시 예비검속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 공문서에 1950년 8월 4일 현재 제주도내 요시찰인 중 820명이 예비검속되어 있었다고 적혀 있다.⁸⁴⁾ 또한 검속 인원과 관련해 아래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보고 내용도 주목된다.

82) 「요시찰인 일제 검거에 대한 ○○○의 언동건」, 濟警査 제6206호, 1950. 7. 1 ; 「공무원 구속자 보고의 건」, 西署査 제1880호, 1950. 7. 7(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197~200쪽에 수록).

83) 「불순교원 일제 검거와 학교 운영에 관한 건」, 1950. 8. 3(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205~206쪽에 수록).

84) 「불순분자 검거의 건」, 1950. 8. 6(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209쪽에 수록).

총 1,120명의 포로들이 제주도에 억류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러 경찰 유치장에 검속되어 있다. 계엄령하에서 체포되고 계엄령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수감자들과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 분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경찰은 6월 25일 이래 국민보도연맹 지도자 700명이 체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⁸⁵⁾

대사관 직원들이 제주에서 조사한 시점이 8월 17일이므로 보름 사이에 300명이 추가로 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감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건대, 당시 예비검속에 뚜렷한 기준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보도연맹 임원 700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제주도 경찰당국은 이들 검속자에 대한 범죄 경중 급별 심사를 비밀리에 사정하고 제주도 주둔 해병대 계엄사령부에 이관하였다. 이들에 대한 등급 분류 지시는 1950년 7월 7일 제주도경찰국에서 각 경찰서에 내려졌다.⁸⁶⁾ 이 공문을 보면, 등급은 A, B, C, D으로 분류되었는데, D등급이 가장 중요한 자, C등급이 중요한 자, B등급이 경한 자, A등급이 애매한 자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당시 예비검속된 사람들 가운데는 좌익단체에서 활동을 했거나 4·3사건 당시 입산 활동을 했던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문건에서도 드러난다. 1950년 8월 15일 서귀포경찰서장이 제주도경찰국장에게 보낸 「예비검속자 석방 상신의 건」에 보이는 예비검속자의 검속 사유는,

- 인민군이 지금 제주도에 상륙했다는 무근지설을 유포
- 경찰 전화선 혼신 사건 시 혐의자로 집행유예 3년 언도 후 일제 검거시 태도가 애매
- 과거 범죄사실 전무하나 태도 애매
- 빼라살포 사건의 혐의자로 검거 취조 중

등의 이유였다.⁸⁷⁾ 또한 술자리에서 음주 중 경찰관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는 사

85)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 : Conditions on Cheju Island, John P. Seifert, Naval Attache, Donald S. MacDonald, Third Secretary of Embassy, Philip C. Rowe, Vice Consul, Aug 17, 1950.

86) 「4·3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제주KBS 다큐멘터리), 2000. 3. 30. 방영.

87) 「예비검속자 석방 상신의 건」, 1950. 8. 15(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216~217쪽).

실을 경찰에 반감을 가진 자로 판단해서 예비검속한 사례도 있었다.⁸⁸⁾ 예비검속 과정에서 이러한 사감에 의한 불법 구속, 악질 분자의 중상모략으로 인한 부당 구속의 사례도 빈발하였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찰 당국에 검속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검찰당국이 인권옹호를 위해 이들 부당한 검속자에 대해 직접 감독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명부 공개는 비상계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제주도 계엄사령부 외에 어떤 기관에게도 명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⁸⁹⁾

③ 예비검속자의 집단희생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예비검속이 행해지고, 검속자들에 대한 군 당국의 총살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제주지역에서는 7월 말부터 8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제주읍과 서귀포·모슬포 등지에서 여러 차례 대대적인 집단 총살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인민군이 남하하여 8월 8일에 낙동강 전선에서 유엔군과 대치하며 격전중인 때였다. 따라서 인민군이 경남·부산 지역을 점령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 속에서 미리 제주도를 반공기지로 삼고자 예비검속자에 대한 처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서에 수감된 예비검속자에 대한 총살 명령 및 집행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와 당시 제주지역 계엄군인 해병대, 그리고 제주경찰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은 제주 주둔 해병대 정보참모 해군 중령 김두찬이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에 내린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으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다.

수제건(首題件)에 관하여 본도에 계엄령 실시 이후 현재까지 귀서에 예비구속 중인 D급 및 C급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하여는 귀서에서 총살 집행 후 그 결과를 내(來)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 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자이(茲以) 의뢰함⁹⁰⁾

88) 「사실 조회 복명의 건」, 1950. 8. 8(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220~221쪽).

89) 「불순분자 검거의 건」, 1950. 8. 4·6 ;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 1950. 8. 6·7·8(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208~213쪽에 수록).

90) 「예비검속자 총살 집행 의뢰의 건」, 1950. 8. 30(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95쪽).

이 짧은 명령에 의하면, 육군본부 정보국 지방조직이 직접 경찰에 총살을 지시했고, 지역 주둔 계엄군과 경찰이 총살을 집행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예비검속과 검속자 총살을 자체적으로 결정·집행할 수 없었다. 당시 서귀포경찰서장이던 김호검은 “예비검속은 경찰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나 역시 경찰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비검속 당한 친구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⁹¹⁾ 한국전쟁 당시 해군 포항경비부 사령관이었던 남상휘 예비역 준장은 1950년 7월 초 자신의 명령으로 경주·포항·영덕 일원에서 예비검속된 주민 200여 명을 군함에 태워 바다로 나가 총살한 뒤 모두 수장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총살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신성모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하였다.⁹²⁾ 한편 예비검속자에 대한 총살 명령이 육군본부 정보국 제4과(방첩대, CIC) 과장 김창룡에 의해 내려졌다는 증언도 있다.⁹³⁾

이와 같은 예비검속자 사살은 극도로 비밀리에 수행되었다. 모슬포경찰서 관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송악산 ‘섯알오름’에서 총살된 현장은 우연히 주민들에 의해 발각되었지만, 나머지 제주·서귀포경찰서에 검속되어 있던 사람들의 희생 일시 및 장소 등 당시 상황은 철저히 기밀로 처리되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유시사항으로 “경찰의 예비검속은 공표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정부는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했다.⁹⁴⁾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은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시신 암매장 장소는 물론 사망일조차도 몰라서 애를 태우고 있다.

□ 제주읍 예비검속

제주경찰서 관내 제주읍·조천면·애월면 예비검속자의 전체 숫자 및 총살 희생자 수는 전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예비검속자의 시신을 수습한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희생 당일에 총살 상황을 직접 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유가족에게 전해졌다. 이러한 실상이 담긴 각종 신고서와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제주경찰서 관할 예비검속자에 대한 총살 집행은 두 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91) 『제민일보』, 2000년 1월 20일.

92) 위와 같음.

93) 김종필(1950년 당시 정보국 제2과<전투정보과> 북한반장, 2000. 1. 24) 증언(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176~177쪽).

94) 『제104회 국무회의록』, 1952년 11월 26일.

처음 집행은 1950년 8월 4일 이루어졌다.⁹⁵⁾ 제주경찰서·주정공장 등지에 수감되어 있던 예비검속자 수백 명을 제주항으로 끌고 가서 배에 태우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수장시켰다.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제주항 부두 파견 헌병대에서 경비 근무를 했던 장시용의 증언에 의하면, 밤 9시경에 50명씩 태운 차 10대가 부두에 도착하여 알몸 차림의 500여 명의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아갔다가 두 시간 정도 지나서 빈배로 돌아왔다는 것이다.⁹⁶⁾ 당시 해병대 군무관으로 근무하던 박춘택과 제주항에서 화물선박을 출항시키던 김인평도 주정공장에 수감되어 있던 상당한 수의 예비검속자를 해군 경비정에 태우고 가서 수장시켰다고 증언하였다.⁹⁷⁾

두 번째 집행은 1950년 8월 1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실시되었다. 주로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예비검속자 수백 명을 트럭에 싣고 제주비행장으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암매장하였다. 제주비행장 총살 일시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가족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같이 수감되었다가 9월 중순 이후 석방된 생존자들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 서귀포 예비검속

서귀포경찰서 관내 서귀면·중문면·남원면 예비검속자의 전체 숫자 및 총살 희생자 수 역시 제주경찰서 관내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련 기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예비검속자의 시신을 수습한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서귀포경찰서 관할 예비검속자들은 대부분 서귀포 절간고구마 창고에 수감 중이었고, 상당수의 유가족들이 수용소에 사식을 들여놓고 옷가지를 경비 경찰을 통해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유가족들은 희생 당일에 없어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해들을 수 있었다. 또한 서귀포수용소에 같이 수감되었던 생존자의 증언도 채록할 수 있었다.

95) 유가족들은 희생일자를 7월 16일 또는 8월 4일로 신고하였다. 당시 예비검속으로 작은 오빠를 잃은 김미선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직접 예비검속자들을 관리했던 경찰로부터 총살 일자를 8월 4일로 들었다고 한다. 김미선(조천읍 조천리, 당시 일반주민) 증언(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 I, 37~38쪽).

96) 장시용(제주시 삼양동, 당시 국민방위군) 증언(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23호, 12쪽). 강태중은 1950년 7월말에 예비검속되어 8월경에 제주읍 주정공장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 남은 3명의 수감자들을 만났는데, 두 군데 창고에 가득 차있던 예비검속자들을 윗도리를 벗기고 뒤로 포승을 채운 채 끌고 나가는 장면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것이다. 강태중(에월읍 하귀2리, 당시 오현중학생, 2002. 12. 29. 채록) 증언.

97) 박춘택(서귀포시 중문동, 당시 해병대 군무관) 증언(『월간 제주인』, 1989, 142~143쪽) ; 김인평(77세, 조천면 신촌리, 당시 화물선 선장, 2001. 10. 11. 채록) 증언.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서귀포 예비검속자들의 희생일은 1950년 7월 29일로 확인된다. 또한 이들이 끌려나가는 것을 목격한 수감 중 생존자는 150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증언하였다.⁹⁸⁾

서귀포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8월 12일에 제주도경찰국으로 이송되었다. 도순리 『형살자명부』에는 8월 12일 '본국 압송'된 12명의 명단이 확인된다. 또한 중문리 수용소에 별도로 수감되었던 중문중학원 교사를 비롯한 20여 명도 행방불명되었다.⁹⁹⁾ 이들 예비검속자들은 대부분 제주읍내 비행장에서 제주경찰서 관할 예비검속자와 함께 총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8월 31일 결성된 '6·25 예비검속 피학살자 삼면 유족회'(회장 이방춘)는 2002년 7월 현재 77명의 서귀면·중문면·남원면 삼면 예비검속 희생자 명단을 파악해 놓았다.

□ 모슬포 예비검속

모슬포경찰서 관내 대정면·한림면·안덕면 예비검속자의 전체 숫자 및 총살 희생자 수는 현존 경찰 자료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그 실상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예비검속자 희생 당일 새벽에 총살 현장을 목격한 마을 주민에 의해 삼시간에 유가족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희생 실태가 잘 알려져 있다. 우선 모슬포경찰서 예비검속의 실상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⁰⁾

▪ 모슬포경찰서 예비검속 수용 상황

1950년 9월 3일 하오 5시 현재

인원 평가	검속	송치	보석	현재	비 고
D	109	108		4	본서에 수용 중, 4명 중 3명은 최근 동향 참조
C	144	144			
B	68		9	59	59명 중 본서에 35명 수용 한림 24명 수용
A	23		10	13	13명 중 본서 12명 한림 1명
계	344	252	19	76	76명 중 본서 51명 한림 25명

98) 이재준(77세, 제주도 외도동, 당시 서귀국민학교 교사, 2002. 2. 22. 채록) 증언.

99) 이치근(73세, 서귀포시 중문동, 당시 농업학교 학생, 2002. 6. 5. 채록) 증언.

100)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 1950. 9. 4(이도영 박사 소장 예비검속 관련 경찰서류철, 378쪽).

즉, 모슬포경찰서 관내 한림면·대정면·안덕면 예비검속자 총 수는 344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252명이 군에 송치되어 희생되었던 것이다.¹⁰¹⁾ 1950년 7월 7일 제주도경찰국이 각 경찰서에 예비검속자 명부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공문에 따르면, 예비검속자 등급을 분류할 때 D급은 가장 중요한 자, C급은 중요한 자, B급은 경한 자, A급은 애매한 자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¹⁰²⁾ 이들 가운데 D급과 C급에 해당하는 예비검속자는 경찰이 군에 송치하여 집단 총살되었다. 모슬포경찰서의 경우 군에 인계한 예비검속자의 명단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숫자는 252명으로 적혀 있는 것이다.

이들 희생자는 모슬포경찰서 관할 절간고구마 창고에 수감되었던 사람들과 한림지서 관할 한림항 어업조합 창고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었다. 모슬포 절간고구마 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1950년 8월 20일 새벽 5시에 총살되었고, 한림 어업조합 창고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같은 날 새벽 2시에 총살되었다. 총살 장소는 남제주군 대정면 상모리 '섯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로 쓰이던 굴속이었다. 같은 장소이지만 모슬포에서 끌려간 희생자들과 한림에서 간 사람들이 희생된 위치는 약간 달랐다. 총살 당일 현장을 목격한 주민에 의해 알려져서 유가족 400~500여 명이 모여들어 시신을 수습하려 했지만 방첩대 소속 군인들이 제지하여 수습하지 못했다.

1956년 3월 30일 한림지역 유족들은 총살 현장에서 비밀리에 시신을 수습하였다. 한림지역 유족들은 수습하여 온 시신 61구를 한림면 금악리 2754번지 속칭 '만벵디 공동장지'에 안장하였다.

1956년 5월에는 모슬포 절간고구마 창고 수감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여서 관계 기관에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서 시신 수습에 나섰다. 그 결과 132구의 시신을 거두어서 대정면 상모리 586-1번지 묘지를 매입하여 안장하고 '백 할아버지의 한 자손'이라는 의미로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라 명명하였다.

□ 성산포 예비검속

성산포경찰서 관내 성산면·구좌면·표선면 예비검속의 경우 총살 희생자 명단이 제주지역 예비검속 사례 가운데 유일하게 현존 경찰자료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101) 검속자 수가 344명인 데 비해 송치·보석되고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의 합계는 347명으로 서로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확실하지 않다.

102) 「4·3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제주KBS 다큐멘터리), 2000. 3. 30. 방영.

성산포경찰서 예비검속자 가운데 등급 분류 D급은 4명, C급은 76명이었다. 그러나 성산포경찰서장 문형순은 군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들 가운데 6명만 군에 넘겼다. 6명에 대한 신병인수증을 보면, 오희삼(51세)·고영환(24)·진병룡(22)·오군표(36)·강용빈(54)·강승환(22) 등 구체적인 명단이 적혀 있다.¹⁰³⁾ 그리고 7월 28일 하오 3시경 이들을 트럭 2대에 싣고 서귀포로 향하였으며, 집행을 담당할 해병대 정보과 소속 고광수·임문선·박서상·김종만 등 4명의 군인 명단도 확인된다. 서귀포경찰서 관할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수장이 7월 29일 새벽에 이루어졌음을 상기한다면, 이들은 서귀포 예비검속자들과 같이 같은날 처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예비검속자들에 대해서는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이 군의 총살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상당수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즉, 앞에서 보았던 제주 주둔 해병대 정보참모 해군 중령 김두찬이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에 내린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에서 확인되듯이, 문형순 서장이 직접 ‘부당함으로 미집행’이라고 하여 거부하였던 것이다.

④ 예비검속자의 석방

1950년 9월이 되자 제주지역에서 예비검속자 총살 집행은 정지되었다. 그 원인은 우선 해병대의 철수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도에서 4·3사건의 마무리 평정을 위해 주둔하던 해병대(사령관 신현준)는 1950년 8월 말 해병대 제3·4기생으로 입대한 제주 청년 3,000명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됨으로써 제주를 떠났다. 해병대가 철수하고 제주 청년들이 대거 군에 입대하게 되자 제주 지역의 경비에 심각한 공백이 생겨나게 되었다. 더구나 7월 27일 발생했던 ‘불온뼈라 살포 사건’으로 추가 예비검속자들이 상당수 늘어나게 되었다.¹⁰⁴⁾ ‘불온뼈라 살포 사건’은 8월 31일 무장대원의 행위임이 드러나서 피의자 취급을 받던 여러 예비검속자들이 무고하게 수감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1950년 9월 초순에 각 경찰서장이 경찰국장에게 예비검속자의 석방을 건의하기에 이른다. 1950년 9월 6일 제주경찰서장 유근익은 제주경찰국장에게 “엄

103) 앞과 같음.

104) ‘불온뼈라’ 사건에 대해서는 「제주도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 사건 수사기록」,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5, 123~124쪽·129~131쪽 참조.

중 심사 후 개선의 정이 유한 자에 한하여서는 수용을 해제하고 각기 생업에 종사케 함이 민심 수습상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옵기 본 건에 대한 가분의 지시를 양망함”이라고 질의하고 있다.¹⁰⁵⁾ 이에 대해 제주도경찰국장은 개선의 정이 있는 자는 심사한 후 석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국에서는 9월 14일 도내 사찰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주로 사감(私感)으로 타인을 모함한 자로 말미암아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는 폐단을 없애고, 예비검속자 중에서 개선의 가망이 있는 자를 석방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석방대상자에 대한 재심사 표준을 결정한 뒤

1. 관현에 있어서는 여하한 자를 막론하고 즉결처분을 엄금하고 의법 처분할 것
2. 관현은 사정(私情)을 떠나서 냉정한 관찰로 심문할 것
3. 감방 위생 시설을 충실히 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¹⁰⁶⁾

사찰 당국의 심사 결과, 1950년 9월 18일 제주경찰서 예비검속자 153명이 석방되었다. 석방 당일에 제주경찰서에서는 CIC 대장, 계엄사령부 정보참모, 경찰국 사찰과장, 각 관공서장 및 지방유지 다수가 출석한 가운데 석방식을 거행하였다.¹⁰⁷⁾ 이어서 제2차로 제주경찰서에 수용 중이던 48명의 예비검속자에 대한 석방도 이루어졌다.¹⁰⁸⁾

서귀포경찰서에서는 9월 17일 A급 43명, B급 77명을 CIC 대장이 경찰서에 왔을 때 전원 석방하였다. 단, C·D급 10명은 계속 검속 조치하였다.¹⁰⁹⁾ 모슬포경찰서에서는 9월 18일 이전에 예비검속 수용자에 대한 재심사를 종료하여 전체 검속자 344명 중에서 90명을 석방하였다.¹¹⁰⁾ 8월 20일에 252명을 총살 처리한 뒤 수용소에 남은 인원에 대한 석방인 셈이었다.

105) 「수용자 조치에 대한 질의의 건」, 1950. 9. 6(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246쪽에 수록).

106) 『濟州新報』, 1950년 9월 17일.

107) 『濟州新報』, 1950년 9월 20일.

108) 『濟州新報』, 1950년 9월 23일.

109) 「예비검속자 석방 보고의 건」, 1950. 9. 20(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251쪽에 수록).

110) 「예비검속자 중 석방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송부의 건」, 1950. 9. 18(이도영 박사 소장 예비검속 관련 경찰서류철, 386쪽).

성산포경찰서에서는 우선적으로 9월 5일 ‘불온뼈라 살포 사건’ 관련 혐의자 6명을 석방하였다.¹¹¹⁾ 성산포경찰서에서는 9월 14일 CIC 주최하에 사찰관계 책임자 연석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CIC 대장의 지시에 의거하여 경찰서 내 담당 주임들이 모여서 석방예정자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예비검속자 총 215명(남 177명, 여 38명) 가운데 A급 102명(남 82명, 여 20명), B급 96명(남 82명, 여 14명)을 석방예정자로 정하였다. 단, C급 16명과 D급 1명은 당분간 구속예정자로 분리하였다.¹¹²⁾

⑤ ‘유지사건’¹¹³⁾의 발생

1950년 8월 초순 법원장·검사장·제주읍장 및 변호사·사업가·교육자 등 유지급 인사 16명이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제주지역 계엄사령부(사령관 신현준 대령)로 연행되었다.¹¹⁴⁾

계엄사령부인 제주도 해병대 정보참모실에 근무하던 신인철 대위 등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1950년 7월 10일 홍순원 집에서 밀회를 열어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최남식을 비롯하여 각 부서별 임원을 선정한 후 가입금을 1만원씩 거둘 것을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7월 14일부터 8월 5일에 이르기까지 밀회는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군·경·관 요인 암살대를 조직하고 암살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정보참모실 제2과장 신인철 대위는 8월 8일 제주도립병원 원장 김대홍 등 6명을 체포하였고, 8월 9일에는 제주지방법원장 김재천 외 14명의 제주도내 고관 및 지방유지급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였다. 구금 후 약 10일 간에 걸쳐서 정보과 소속

111) 「예비검속자 석방에 관한 건」, 1950. 9. 5(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247~248쪽에 수록).

112) 성산포경찰서 관련 예비검속 서류(이도영 박사 소장 예비검속 관련 경찰서류철, 399쪽).

113) 제주지역에서는 이 사건에 관련되어 검거된 사람들이 지역 내 각 기관장 및 유지급 인사들이므로 ‘유지(有志)사건’이라 부른다. 이 사건의 전말은 「제주도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 사건 수사기록」(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5, 108~147쪽에 수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14) 이 사건에 연루된 유지급 인사 1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재천(제주지방법원장, 판사), 원복범(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홍순원(제주도 총무국장), 진인홍(제주도 지방과장), 최남식(제주농업학교장), 이인구(전 제주도 사회과장), 백형석(상업, 제주적십자사 지부장), 최원순(변호사), 김차봉(제주읍장), 김무근(변호사), 김재홍(제주도립병원장, 의사), 이윤희(제주조흥자동차부 대표), 김영희(주정회사 사장), 장용문(총후보국회 서기), 한상용(제주농업중학교 준교사), 조규환(제주농업중학교 훈련교관).

김종만 병조장, 박서상 경사 및 유호선 경사 등과 더불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 고문, 곤봉 구타, 총살 위협 등을 가하였다. 더구나 8월 13일 오후 12시 경부터 다음날 오후 3시 30분까지 정보참모실 소속 민용식 중위가 피의자 장용문에 대해 극심하게 고문을 가한 결과, 장용문은 8월 14일 오후 4시경에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1950년 8월 17일자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해병대 정보참모부(G-2)는 제주도 저명인사 13명이 7월 10·15·22일에 북한군이 제주도에 올 경우에 그들을 환영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 정보는 소위 공산주의 선전빠라를 뿌리다가 체포된 두 사람의 자백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은 차례로 제주도 유지 13명을 빠라 살포의 배후로 지목했고, 위에서 언급한 회합의 개최에 연관되었다고 지목했다. 그 뒤 체포된 13명 중 4명이 회합의 개최와 성격에 대해 자백했다. 해병대는 이들 중 몇 명이 3년 전 제주도 반란에 연관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¹¹⁵⁾

제주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법원장·검사장·제주읍장 등이 검속되자, 김충희 제주도지사는 이 사건이 특정인을 구속하기 위한 모함으로 보고 이성주 경찰국장과 협의하여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조병옥 내무부장관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보냈다. 또 공병순 제주지구 CIC 대장도 이 사건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결국 현지 조사를 위해 내무부에서 선우종원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이 제주에 급파되었다. 결국 8월 28일 군경 합동수사대(대장 육군 소령 이옥봉, 고문 경무관 선우종원)가 설치되었고, 중앙에서 내도한 육군 2명, 해군 2명, 경관 2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군경합동수사대의 조사 결과, 소위 제주도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는 전혀 실재하지 않은 조직으로 불순분자의 중상모략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사건은 신인철 대위가 7월 27일 발생한 ‘불온빠라 살포 사건’ 피의자로 검속된 최남식으로부터 인민투쟁위원회 조직 사실을 허위로 자백받고, 유지급 인사들의 이름을 유도 신문하여 이들도 관련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였던 것이다.

115)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 Conditions on Cheju Island, John P. Seifert, Naval Attache, Donald S. MacDonald, Third Secretary of Embassy, Philip C. Rowe, Vice Consul, Aug 17, 1950.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신인철 대위 등이 조작한 사건임이 밝혀졌다. 신인철 대위, 박서상·유호선 등이 독직·상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의자 이윤희 외 14명은 9월 3일 오후 6시에 석방되었다. 이 사건의 수사는 9월 10일 오후 5시 종합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완료되었고, 군경합동수사대는 해산되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피검자 취조 과정에서 장용문이 고문치사하였고, 김재천 제주지방법원장은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 일찍 사망하였다.¹¹⁶⁾

‘유지사건’으로 제주 사회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제주도민들은 현직 법원장·검사장이 계엄군에 검속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직접 체험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의 진행은 제주읍과 모슬포에서 벌어진 8월 20일 예비검속자에 대한 대규모 집단 총살과 병행되었기 때문에 8월 한 달은 전율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8) 무장대의 살상행위

4·3 무장봉기 초기에 무장대는 경찰, 서북청년회나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원, 그리고 군·경에게 협조하는 우익인사와 그들의 가족을 지목해 살해했다. 그러나 1948년 11월 이후 무차별 토벌작전이 벌어진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토벌대 편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한 일부 마을을 지목해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했다. 구좌면 세화리, 표선면 성읍리, 남원면 남원리·위미리 등이 ‘토벌대 진영’이라 하여 무장대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다. 주로 군·경 주둔지인데다 이들 마을에서 ‘도피자 가족’ 총살이 벌어지는데 대한 보복이었다. 무장대 세력이 궤멸 상태에 놓인 이후에는 굶주림에 처한 잔여 무장대들이 식량을 약탈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보초서던 주민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 구좌면 세화리 사례

세화리는 구좌면에 두 곳밖에 없는 경찰지서 소재지 중 한 곳이었다. 또한 우익세력이 강해 토벌대와의 협조가 잘 이뤄지는 마을이었다. 1948년 12월 3일 밤 9시경, 무장대가 세화리를 지목해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무장대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우선 길가의 집들에 불을 질렀고 닥치는대로 주민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마을을 점

116) 文洋(82세, 대구시, 당시 제주지방법원 판사, 2002. 4. 16. 채록) 증언.

령하다시피한 무장대는 40가호 150채 가량을 불태운 후 새벽 2시경 물러갔다. 이날 중산간마을에서 소개온 사람까지 포함해 50명 가량이 희생됐다. 이날의 사건으로 가족과 친척 8명을 잃은 지형장은 이렇게 증언했다.

세화리 민보단은 제주도에서 가장 강했다. 그 날 제주도 남로당 놈들이 전부 습격에 가담했다는 말이 있었다. 그들은 밤 9시 30분경 세 발의 총성을 신호로 일제히 공격했는데 길가로 내려오면서부터 불을 질렀다. 그리고 “너 남로당원이냐, 민보단원이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대로 죽였다. 그리고 식량과 옷을 도둑질해 갔다. 당시 지서엔 응원대도 있었고 지서원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기습받은 것이라 경찰들은 정문 밖으로 나와 보질 못했다.¹¹⁷⁾

당시 세화지서에는 본서 직원 15명과 응원경찰인 충남부대 20명 등 35명 가량의 경찰이 있었으나 무장대가 물러갈 때까지 지서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날이 밝자 세화지서에 감금돼 있던 이웃마을 사람 16명을 지서 옆 밭에 모아놓고 주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했다. 며칠 후에는 세화리 출신 무장대의 가족들을 끌어내 총살했다.

□ 남원면 남원·위미리 사례

무장대는 1948년 11월 28일 오전 7시경 남원지서와 남원면사무소 소재지인 남원리를 습격했다. 당시 남원지서에는 응원경찰 20여 명을 포함해 약 30여 명의 경찰이 있었다. 무장대가 성담으로 둘러싸인 지서를 포위하자 경찰은 무장대가 물러갈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무장대는 여러 시간 동안 마을을 휩쓸며 주민 30명 가량을 무차별 살해했다. 또 대부분의 집을 불태웠고 식량을 약탈했다.

무장대는 또한 이날 이웃마을 위미리도 동시에 습격했다. 위미리에는 위미지서가 있었다. 남원면의 전체 경찰지서 소재지 두 곳을 동시에 공격한 것이다. 강경작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때에 토벌대 주둔지가 동시에 습격당한 이 사건은 충격을 줬다. 미군 측에서도 주목했는지 비교적 상세한 보고서를 남겼다.

11월 28일 새벽 6시 무장폭도 약 200명과 비무장폭도 500명이 남원리와 위미리

117) 지형종(76세, 구좌읍 세화리, 당시 대동청년단원, 2001. 10. 25. 채록) 증언.

를 공격했다. 보고에 따르면 주택 250채가 폭도들에 의해 방화되었으며, 민간인 50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70명과 경찰 3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이 폭도들에 반격을 가했으나 탄약 부족으로 철수해야 했다. 경비대 1개 중대와 경찰 30명이 서귀포에서 증파되어 폭도들을 공격했다. 최근 접수된 보고에 따르면 이 작전으로 폭도 30명이 사살되었고 3명이 생포되었다고 하며, 경찰은 1명이 부상당했다.(경찰보고)118)

무장대는 남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미리 마을을 휩쓸며 부녀자 등 노약자까지 살해하고 식량을 약탈하는가 하면 가옥에 불을 질렀다. 현봉협은 어머니는 이 날 불타는 집에서 식량과 옷가지를 꺼내려고 하다가 무장대의 총에 목숨을 잃었다. 현봉협은 당시 위미리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당시 위미리지장은 이북 사람이었는데 마을 청년들이 산쪽에 부화뇌동할까봐 지독하게 굴었어요.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지서로 잡아갔지요. 그러니 다른 마을과 달리 위미리에는 산으로 오르거나 산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번엔 밤중에 산쪽에서 와서 교섭을 하려고 했죠. 그러나 위낙 지서의 단속이 심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선 우리 마을 위미리가 자기들에게 협조를 안해준다며 불살라버리자고 한 겁니다. 가장 심했습니다.119)

□ 한림면 두모리 사례

1948년 12월 15일 밤 12시를 넘겨갈 무렵, 한림면 두모2구(현재의 한경면 한원리)에 무장대가 들이닥쳤다. 사건이 나던 날 밤에도 주민들은 민보단을 중심으로 길목마다 보초를 섰다. 그러나 아직 성을 쌓지 않았을 때라 무장대는 쉽게 마을로 침입할 수 있었다. 매일 밤 두모지서 경찰 1명이 순찰을 돌았는데 그 날만은 오지 않았다.

무장대는 동향을 살피기 위함인지 마을 어귀의 한 집을 불태우면서 ‘양민들은 나와서 불을 꺼라’고 외쳤다. 이 때 밖으로 나왔던 김경석 노인이 살해됐다. 박정생 여인은 불끄라는 외침에 요강을 들고 나섰다. 예로부터 오줌을 뿌리면 불이 번지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무장대는 박 여인도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했다. 무장대는 곧 마을을 점령한 채 식량을 약탈하고 일부 가옥에 불을 지르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두모1구에 소재한 두모지서의 경찰과 고산리 주둔 응원경찰대가 출동하자 무

11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00, November 30, 1948.

119) 玄奉俠(81세, 남원읍 위미리, 당시 교사, 2002. 5. 7. 채록) 증언.

장대는 나팔소리를 신호로 부리나케 퇴각했다. 습격부터 퇴각까지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며칠 후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해 이 날의 사건으로 주민 13명이 희생됐다.¹²⁰⁾

두모2구는 두모1구 보다는 더 산쪽에 위치했지만, 일주도로로부터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인데다 인근에 경찰지서가 있기 때문인지 소개지역에서 제외됐다. 주민들은 이 점을 자신들의 마을이 습격 받은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즉 중산간마을이 모두 소개되는 바람에 두모2구가 최전선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마을에 무장대로 입산한 자가 전혀 없고, 경비를 철저히 하며 산쪽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장대의 지목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표선면 성읍리 사례

표선면 성읍리는 중산간마을이면서도 불에 타지 않은 마을이다. 토벌대가 거의 모든 중산간마을들을 불지르면서도 성읍지서 소재지인 성읍리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성읍리는 표선면 관내에서 해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중산간지대에 위치했으면서도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토벌대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주민들은 경찰지서의 철저한 통제 아래 민보단에 편입돼 진압작전에 동원됐다. 무장대는 군·경이 주도한 이 마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해 한동안 별 일없이 지냈다.

그러나 1949년 1월 13일 성읍리 주민들은 많은 사건을 치렀다. 이날 주민들은 아침부터 출동 준비를 하느라 부산했다. 군대가 주도한 이날의 작전은 군인 1개 소대 외에 표선지서와 성읍지서의 경찰병력 30여 명, 그리고 표선면 관내 민보단 특공대가 대부분 참여한 대대적인 합동 진압작전이었다.

한편 이날 합동 토벌대가 산중에서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을 때 마을 안에서는 한 여인이 총살을 당하고 있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산에 오르자 만삭의 몸을 이끌고 친척이 있는 성읍리로 와 갓 출산한 상태였다. 진압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던 경찰은 그녀를 끌어내 발가벗긴 상태에서 마을의 여인들에게 창으로 찌르라고 강요하다가 총으로 쏘아 죽였다. 아기가 옆에서 바둥거리자 경찰은 아기 얼굴에 대고 총을 쏘았다.

한편 오후가 되자 주민들은 토벌대가 마을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저녁식사 준비

120) 左玉允(76세, 한경면 두모리, 의용경찰 출신, 2002. 2. 27 채록) 증언.

를 하느라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비상사이렌이 울렸고 누군가 ‘폭도들이 습격했다’고 외쳤다. 막 어두워질 무렵인 오후 5시경이었다. 합동토벌대가 마을을 비운 사이를 틈타 무장대가 역공을 벌인 것이었다. 무장대는 마을 외곽에서 보초 서던 주민들을 살해한 후 2시간 가량 마을에 머물면서 집집마다 들이닥쳐 식량을 빼앗았다. 이때 순순히 식량을 내놓지 않은 주민들이 살해됐고 일부 가옥이 불에 탔다. 성읍국민학교가 불탄 것도 이날이었다. 마을 어귀에는 이 날 희생된 사람 38명의 명단을 새긴 비석이 있다.¹²¹⁾

나. 형무소 재소자 희생

제주4·3사건의 기점이 되었던 1947년 3월 1일로부터 1948년 4월 3일을 거쳐 1954년까지 4·3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수천 명에 달하였다. 4·3사건 관련 재판으로는 제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대법원 등에서 치러진 일반재판과 미군정 당시 행해진 군정재판, 군인·군속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 등이 있었다. 또한 1948년 12월 계엄령이 내려진 시기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열린 군법회의와 1949년 7월 예외적으로 국방경비법을 적용한 민간인 대상 군법회의가 있었다.

4·3사건 관련 재판을 받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벌금형·구류·집행유예 등을 언도 받았지만, 금고·징역 등의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이들 형무소 재소자들은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도 하였지만, 열악한 형무소 수감 환경 때문에 옥사하기도 하였고, 상당수가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불순분자를 처분하라는 상부 명령에 따라 총살당하였다. 이들 형무소 재소 중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희생 일시·장소·경위 등을 알 길이 없어 그 유가족들은 그들을 행방불명 희생자로 4·3사건위원회에 신고하였다.

121)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⑤, 87~92쪽 참조.

1) 일반재판 대상자

① 4·3 이전 시기(1947. 3. 1~1948. 4. 2)

1947년 3·1절 28주년 기념식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6명의 총격 사망 사건과 그에 뒤이은 3·10 총파업에 가담한 자 가운데 주동자는 기소되어 1947년 4월 3일부터 군정재판이 시작되었다. 1947년 4월 14일에는 군정재판이 조선인 법정으로 이관되어 제주도에서는 3·1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제주지방심리원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4월 21일부터는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연속적으로 3·1사건 관련 재판이 실시되었다. 결국 1947년 4월 3일부터 시작된 3·1사건 공판은 5월 23일 종결되었다. 형이 내려진 사건 관련자는 징역·금고형 52명, 집행유예 52명, 벌금형 56명, 기타 기소유예, 불기소 등 도합 328명이었다.¹²²⁾

이때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최고형은 1년형을 선고받은 허두문이었으며, 나머지는 징역 1년 이하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대부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 징역살이를 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1일 125원씩 벌금액을 환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조치했다.¹²³⁾

3·1사건 재판이 치러진 이후에도 1947년 후반과 1948년 초반에 제주지역에서는 민간인과 미군정 경찰 사이에 정치·사회적 마찰이 계속 일어났다. 대표적 사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947년

- 6월 2일 제주여중생들의 동맹휴학 사건
- 6월 6일 종달리 민청원들이 경찰관 3명을 집단 폭행
- 6월~7월 초등학교원양성소 학생, 조천중학원 학생, 각 마을 청년들에 의한 뼈라살포 사건
- 7월 3일 제주농업중에서 학교 당국과 학생간 대립 분규 사건
- 7월 말 한림면 명월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하곡수집 거부
- 8월 8일 안덕면 동광리에서 마을 청년들이 곡물수집 관공리 3명을 집단 폭행
- 8월 13일 초천면 북촌리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 쌍방에서 부상자 발생
- 8월 14일 제주민전 의장 박경훈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연행 검거 사건

122) 『濟州新報』, 1947년 5월 26일.

123) 『濟州新報』, 1947년 4월 28일.

□ 1948년

- 2월 7일~10일 전도적으로 '2·7투쟁' 전개, 경찰과 무력 충돌
- 2월 9일 안덕면 사계리에서 마을청년들이 경찰관 구타
- 3월 6일 조천지서에 연행된 조천중학원생 김용철, 고문 치사
- 3월 14일 모슬포지서에 유치 중이던 대정면 영락리 출신 양은하, 고문 치사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주민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4·3사건위원회가 정부기록보존소로부터 입수한 4·3사건 관련 판결문 가운데 3·1사건 재판을 포함하여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치러진 재판의 피고인은 총 480명이다. 이들을 선고 형량으로 구분해서 보면, 징역·금고형 82명, 집행유예 150명, 단순 벌금형 248명이다. 3·1사건 이후 재판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므로 1947년과 1948년 초에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1948년 말까지는 형무소에서 출소한 뒤 제주에 돌아오거나 일본·타지방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당시 재판으로 인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는 없었다.

② 4·3 이후 시기(1948. 4. 3~1954. 9. 21)

1948년 4월 3일 무장대의 습격을 시작으로 사건은 경찰과 무장대의 상호 무력 충돌로 격화되어 갔다. 4월 말로부터 5월 초까지 소강 상태를 지나서 다시 5·10 선거 반대 투쟁에 나선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단체·선거관리자들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5·10 선거가 제주도 두 개 선거구에서 무효로 처리되자, 미군정은 제주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응원 경찰 및 진압 병력을 더욱 강화시켜 파견하였다.

자연스레 경찰 당국에서 검거하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형사사건이 많아서 현지 심리원과 검찰진으로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중앙 사법부에서는 5월 26일 제주지역에 특별히 심판관과 검찰관을 파견하였다. 심판관으로는 서울고등심리원 심동구 심판관, 지방심리원 양원일 부장심판관, 최동욱·황성희·김상묵 심판관 외 서기 3명과 검찰관으로는 박근영·이주신·안희경 등 세 검찰관과 서기 3명을 파견하였다.¹²⁴⁾

이들은 5월 3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시켰다. 31일 하루에

124) 『漢城日報』, 1948년 5월 23일 ; 『朝鮮日報』, 1948년 6월 4일.

4·3사건 관계 4건의 심리를 마쳤는데, 사형 1명, 징역 10년 1명, 징역 7년 2명, 징역 5년 1명 등 검찰관 측 구형이 있었다.¹²⁵⁾ 서울로부터 내도한 판검사 일행 12명은 6월 11일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피고 37명에 관련된 42건을 판결하였다. 이들이 내린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⁶⁾

- 포고령 제2호 위반 : 32건(최고 징역 3년, 최하 6월)
- 살인 : 2건(무기징역, 징역 10년)
- 살인미수 : 2건(무기징역)
- 살인방조 : 1건(징역 3년)
- 방화 : 1건(무기징역)
- 살인예비 : 1건(집행유예 2년)
- 방화예비 : 1건(집행유예 2년)
- 왕래방해 : 2건(징역 2년)
- 총계 : 징역 1년 이상 42건에 사건 피고자 수 37명

이때 재판 때문에 제주에 온 한 변호사는 “폭도 측의 소요책임자는 하나도 구속되지 않았고, 지금 재판에 회부된 자는 19세 내지 25세 정도의 청년들이다. 그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행동한 자들이다”라고 하였다.¹²⁷⁾ 1948년 6월 제주도 현지에 특파되어 취재한 조덕송은 다음과 같이 취재기를 적고 있다.

지금 제주도에에는 폭도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무수히 끌려온 포로들 가운데서 범죄 혐의 있는 자만을 추려 법정에서 밝힌다. 기소된 혐의자는 대개가 20세 내외의 젊은 청년들이다. 이들의 가족 친척들로 법정은 매일 울음의 바다로 변하고 열기찬 어조의 변호사의 변론이 판검사를 울리고 있다. ‘이들은 대개가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아무런 주의 없이 행동한 젊은 사람들이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소위 붙잡힌 몇 천 사람이 다 법정에 서야 될 것 아닌가. 관대한 처벌을 선동 교사한 자들에게까지 원치는 않는다. 그러나 선량한 도민들,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도민들을 이들과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호사의 변론의 일단이다.¹²⁸⁾

125) 『朝鮮日報』, 1948년 6월 4일.

126) 『大東新聞』, 1948년 6월 17일.

127) 『서울신문』, 1948년 6월 12일.

128) 趙德松, 「현지보고, 유혈의 제주도」, 『新天地』 1948년 7월호.

또한 제주도에 왔던 판·검사들은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 제주도에서의 재판이 힘들었음을 미군정청에 보고했고, 미군정청은 이를 받아들여 4·3사건 관련 재판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미군정청이 남긴 다음 문서 내용에서 확인된다.

제주도의 폭동과 관련한 재판이 계속해서 법원의 관심을 끌었다. 판사 2명과 대법원 최고 검찰관으로 구성된 한 팀이 7월(6월의 오기) 제주도에 가서 폭동으로 야기된 대다수의 사건 재판을 끝낸 뒤 서울로 귀경했다. 250여 명이 아직도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돼 있다. 판사들은 제주도의 분위기가 폭동사건 재판에 '알맞지 않다'고 보고했다. 판사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들은 폭도들을 심하게 판결하면 좌익의 손에, 또 가볍게 판결하면 우익의 손에 의해 폭력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중대한 폭동사건을 목포나 광주에서 재판하도록 이관할 것을 건의했다. 군정장관은 자유재량으로 사법위원회가 제주도의 어떠한 사건이라도 목포나 광주에서 재판을 하도록 이관하는 것을 승인했다.¹²⁹⁾

『주한미육군사』에는 1948년 7월 현재 216명이 기소되어 실형 언도를 받았고, 그 중 115명은 구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⁰⁾ 또한 제3차 제주도사건 토벌대장인 수도청 근무 주철순 경감이 1948년 8월 20일 귀경하여 보고한 바에 의하면, 4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의 '폭도' 검거 수는 977명인데 그 중 43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하였다.¹³¹⁾

서울에서 파견된 판·검사 일행이 재판을 마치고 귀경한 뒤에도 제주지방법원 단독으로 재판을 행하기는 했지만, 500명에 달하는 혐의자들을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또한 재판의 안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요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광주로 옮겨서 재판을 치르자는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피고인들을 광주지방법검찰청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1948년 8월 23일 제주검찰청에서 심문을 받던 4·3사건 피의자 32명이 광주지방법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9월 4일 광주지방법검찰청 부검사장 김영천 검사로부터 대법원장 명령에 의하여 이들에 대한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¹³²⁾ 9월 3일에는 추가로 40명이 광

129) RG 407: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Entry 368, Box 2006, NARA.

130) USAFIK, *HUSAFIK*, part III, chapter IV, p.422.

131) 『國際新聞』, 1948년 8월 24일.

주로 이송되었다.¹³³⁾

1948년 하반기 제주도로부터 이관된 제주 4·3사건 관련 피고인은 총 131명(74건)이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1948년 10월 1일부터 1948년 12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속행되었다. 일자별로 공판 상황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10월 1일 : 12건, 18명 사실 심리, 구형
- 10월 8일 : 8명 구형
- 10월 13일 : 21명 판결 언도
- 10월 14~15일 : 17명 구형
- 10월 23일 공판에서 판결 언도할 예정이었으나, 여수·순천사건으로 무기 연기
- 11월 26일 : 22명 구형
- 11월 30일 : 22명 판결 언도
- 12월 7일 : 36명 구형
- 12월 8일 : 12명 구형
- 12월 16일 : 6명 판결 언도
- 12월 17일 : 13명 판결 언도
- 12월 21일 : 9명 판결 언도
- 12월 29일 : 17명 판결 언도

이들 피고 총 131명(74건)에 대한 판결 내용은 사형 1명, 무기징역 5명, 징역 8개월~15년 82명, 집행유예 8명, 무죄 19명 등이다. 1948년 11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제주지역에는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군법회의 외에 민간재판은 실시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민간재판을 계속한 것은 계엄 선포 전의 행위로 인해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어있던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계엄령이 끝난 1949년 이후 4·3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다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49년 이후 1954년 4·3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4·3사건 관련 민간재판 실시에 대한 기록은 각종 신문기사에 누락되어 있어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제주4·3사건위원회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입수한 4·3사건 관련 판결문을 분류해보면, 1949년부터 1954년까지 총 599명 피고인 중에 361명이 실형(징역·금고형)

132) 『東光新聞』, 1948년 9월 8일.

133) 『國際新聞』, 1948년 9월 11일.

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238명이다.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사형 1명, 징역 10년 2명, 징역 8년 1명, 징역 7년 7명, 징역 6년 1명, 징역 5년 12명, 징역 4년 12명, 징역 3년~3년6월 42명, 징역 2년~2년6월 46명 등이다.

이상의 4·3사건 관련 민간재판을 대별해보면 징역 2년 이상의 장기 수형인은 서울 출장 제주지방법원 판결 때 40여 명,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 80여 명, 1949년 이후 1950년 6월까지 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 80여 명 등 총 2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1950년 6·25 발발 당시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인원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200명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목포·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전쟁을 거치는 가운데 행방불명됨으로써 형무소 재소 중 희생자가 되었다.

2) 군법회의 대상자

제주4·3사건 당시 군인·군속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여러 차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실시되었다(이하 ‘1948년 군법회의’, ‘1949년 군법회의’로 칭함)는 문서가 남아 있다. 즉,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군법회의 명령」¹³⁴⁾으로서, 여기에는 군법회의의 관련 내용 및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재되어 있다.

「군법회의 명령」에는 군법회의 명령서와 함께 2,530명(1948년 군법회의분 871명, 1949년 군법회의분 1,659명)의 군법회의 피고인 명부가 별첨되어 있다. 명령서에는 설치명령, 공판장소, 죄목(죄과, 범죄사실), 심사장관의 조치, 확인장관의 조치 등이 인쇄되어 있다. 별첨 피고인명부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항변·판정·판결항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항목 등으로 나누어져서 표로 작성되어 있다. 또

134) 「군법회의 명령」 원본 표지에는 “단기 4281년 12월·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 수형인 명부, 제주지방검찰청”이란 글자가 적혀 있다. 이 명부는 원래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었지만, 원래 작성 주체는 제주도계엄지구사령부(사령관 육군중령 함병선)와 수도경비사령부 보병 제2연대(연대장 육군대령 함병선)였다. 「군법회의 명령」에는 위 계엄지구사령부 사령관과 제2연대장의 직인이 찍힌 고등군법회의 명령이 들어있고, 군법회의 피고인 명부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법회의 명령」은 제주지방검찰청에 보관 중이었다가 1976년 10월 15일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되었다. 1999년 9월 15일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주미에 국회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로부터 공식 입수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제주4·3사건위원회에서는 이 자료의 사본을 2001년 입수하여 보관 중이다.

한 사형수들의 명단도 따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서울·인천·대전·대구·전주·목포 등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어 재소자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각 형무소별로 불순분자 처리 방침에 따라 상당수가 총살 처리되었다. 일부는 옥문이 열리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행방불명됨으로써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다.

① ‘1948년 군법회의’

1948년 7월 제11연대에 배속되었던 제9연대를 재편성한 뒤 제9연대(연대장 송요찬 소령)는 제주도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1948년 10월 11일에는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 부사령관 송요찬 소령)가 설치되어 대대적인 군경합동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 광주 제5여단장인 김상겸 대령이 제주도경비사령관이 됨으로써 제주도 토벌대 지휘부는 연대장 급에서 여단장 급으로 격상되었고, 토벌도 더욱 강화되었다. 제주도경비사령부는 제9연대, 제5연대 1개 대대, 제6연대 1개 대대, 해군부대, 제주경찰경비대를 총괄 지휘하였다.¹³⁵⁾ 또한 제주도경비사령관에게는 ‘숙청 행동간 고등군법회의의 관할 권한’도 부여되었다.¹³⁶⁾ 경비대총사령부는 나아가 제5여단 예하부대인 여수 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증파하도록 명령했다. 이러한 제주도에 대한 토벌 강화는 10월 19일 여순사건의 발발로 차질을 빚기는 했지만, 제9연대 중심의 강력한 토벌작전은 예외없이 수행되었다.

제9연대장 송요찬이 10월 17일에 내린 포고령에 따라 제주도 중산간지대 민간인들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지고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작전의 대상에는 무장대뿐만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도 포함되었다. 더욱이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계엄령이 해제된 12월 31일까지 제9연대는 “모든 저항을 없애기 위해 모든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유격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¹³⁷⁾

이러한 집단희생 과정에서 죽음을 면한 상당수의 주민들은 군부대에 체포되어 왔다가 제주농업학교 등 수용소에 임시 수감되었다. 10월 중순에 경비대는 작전 중에 800명의 사람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무장대와의 관련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용소에

135) 『육군역사일지』 2집, 1948년 10월 11일.

136) 「육군총사령부 일반명령」 제2호, 1948년 10월 27일.

13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수감돼 조사받았다.¹³⁸⁾ 이들은 이 당시 전개된 제9연대의 소위 '명석말이식 수색작전'에 따라 아무런 저항도 없이 경비대에 체포된 중산간마을 주민들이었다.¹³⁹⁾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군법회의에 넘어간 것으로 「군법회의 명령」에 기재되었다.

에월면 금덕리의 경우, 1948년 10월 11일 새벽 6시경 제9연대가 마을을 포위하여 청년들을 체포하여 제주농업학교에 감금시켰다.¹⁴⁰⁾ 「군법회의 명령」에는 1948년 12월 초에 25명의 금덕리 주민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징역형을 언도, 전국 각지 형무소로 보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48년 10월 말부터 군·경 토벌당국은 과거 1947년 3·1사건 관련 시위·파업 가담경력이 있는 공무원·법조인·언론인·교육자 등을 대상으로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또한 서북청년회의 반감을 샀던 인사들에 대한 검거·취조 또한 심해졌다.

적산 관리를 맡고 있던 재산관리처 직원 한병택·김인지·강순현·김태호·양문수·강창우·김학림 등이 군 당국에 체포되어 9연대 본부가 있던 농업학교 천막에 수감되었다. 이들 가운데 강순현·김태호·강창우 등이 「군법회의 명령」에 기재되어 있는데, 각각 서대문·대구·목포형무소 등에 이송되었다.¹⁴¹⁾ 또한 식량영단 직원 박세원·박상훈 등도 마찬가지로 「군법회의 명령」에 이름이 확인된다. 제주신보사 공무원에 근무하던 양시우·안두원,¹⁴²⁾ 제주지방법원 서기장 송두현, 법원 직원 양성두·홍인표 등이 또한 농업학교에 수감됐다가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에 처해지거나 목포·마포형무소 등에 수감된 것으로 「군법회의 명령」에는 적혀 있다.

위의 사례 외에도 제주도내 각지에서 군·경 당국에 검속된 4·3사건 관련 혐의자들이 각 경찰서나 수용소 등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다. 제9연대장은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383명이 생포되었다고 보고하였다.¹⁴³⁾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제주지방법원이나 광주지방법원에서 민간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1월 17일 계엄령이 내

13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64, October 16, 1948.

139)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1. NARA.

140)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북제주군 에월면 금덕리 신고분, 1960 : 『제주 4·3사건희생자신고서』 접수번호 88, 강후선.

141) 崔吉斗(85세, 제주시 삼도1동, 당시 공무원, 2001. 6. 22. 체록) 증언.

142) 안두원(75세·제주시 삼도1동, 당시 제주신보사 공무원 직원, 2002. 4. 2. 체록) 증언.

143)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NARA.

릴 때까지 미결수로 수감되었던 사람들이나 계엄령이 내린 이후 체포된 사람들은 거의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 넘긴 것으로 되어 있다.

「군법회의 명령」에 의하면, ‘1948년 군법회의’는 계엄령이 내려졌던 1948년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12차례 열렸고, 그 명목은 계엄고등군법회의였다.¹⁴⁴⁾ 이 군법회의에서 민간인 871명에 대해 일률적으로 구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군법회의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1. 설치명령

단기 4281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 명령 제39호

2. 피고인 : 첨부 별지 명부와 여함

3. 죄목

죄과 : 형법 제77조 위반

범죄사실 : 내란죄

4. 공판 장소 및 시일

제주지방법원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시일	12. 3	12. 4	12.5	12. 7	12. 8	12. 9
차수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시일	12. 10	12. 11	12. 12	12. 15	12. 26	12. 27

5. 항변

전 피고인은 각각 죄과와 범죄 사실에 대하여 무죄

6. 판정

전 피고인의 죄과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

7. 판결

1) 사형 : 김윤택 외 99명

2) 무기징역 : 양해길 외 101명

144) 미국 측 자료에는 ‘1948년 군법회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비대와 경찰에 체포된 모든 죄익분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군법회의가 이 기간에 열렸다. 현재까지 700명 이상이 재판을 받았다. 그 가운데 9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330명은 각종 형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목포형무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96명 가운데 23명은 적을 도와주고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대원들이었다.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약 170여 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보낸 1949년 1월 7일의 <급송문서> 제11호의 <첨부문서> 제1호).

8. 판결 연도 일자

자 단기 4281년 12월 3일 지 단기 4281년 12월 27일

9. 심사장관의 조치

해 판결을 승인하여 적절한 집행을 명함

10. 확인장관의 조치

해 판결을 승인함

단 1. 김용규 외 60명은 사형 판결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함

2. 양해길 외 96명은 무기징역으로부터 20년 징역형으로 감형하여 적절한 집행을 명함

사형은 단기 4282년 2월 28일 이내로 집행하며 기 방법 및 장소는 제주도계엄지구 사령관이 차를 명함(단 계엄령 해제시 제2연대장 이를 행할 것임)

11. 복형장소

성인수는 목포형무소, 마포형무소, 대구형무소, 소년수는 인천소년형무소, 여수는 전주형무소

단기 4281년 12월 29일

제주도계엄지구사령부

사령관 육군중령 함병선 (직인)

처음에는 사형 총 100명, 무기징역 102명이었으나, 최종 형 확정 때 사형 62명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 97명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것으로 기재되었다.¹⁴⁵⁾ 문서상 '1948년 군법회의'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39명(4.4%), 무기징역 67명(7.7%)이었고, 나머지는 징역 20년 97명(11.1%), 징역 15년 262명(30.0%), 징역 5년 222명(25.5%), 징역 3년 4명(0.5%), 징역 1년 180명(20.7%) 등이다.

사형에 처해진 39명의 명부는 「군법회의 명령」의 별지 명부에 적혀 있지 않고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와 함께 따로 인쇄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145) 「군법회의 명령」에 수록된 「군법회의 명령 제20호」에는 12월 29일자로 이들의 감형을 결정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별첨 별지 명부에는 감형된 사람들의 판결 연도일자가 이보다 앞선 12월 3일·4일·5일·7일·8일 등으로 적혀 있다. 별지 명부에 기존 판결일이 적혀 있다면 판결도 기존 형량을 적어야 할 것이나, 최종 감형된 형량이 적혀 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더욱이 이러한 감형 사실은 피고인 당사자나 수감 형무소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예컨대,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김춘배의 경우, 「군법회의 명령」에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1949년도 마포형무소 재소자 명부』에는 '금기 무기'로 적혀 있다. 강순현의 경우,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으나, 정작 본인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무기징역으로 알고 있었다(姜淳現(제주시 용담2동, 당시 재산관리처 직원) 증언(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④, 167쪽). 당시 법 집행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2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제주읍 화북리 부근에서 이루어졌다. 관련 명령서는 다음과 같다.

육군본부 제2연대본부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

○ 1948년 12월 29일부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죄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명함

1. 사형집행할 죄수 : 김윤택 외 38명(별지 첨부 명부와 같음)
2. 집행기일 : 단기 4282년 2월 27일 14시 30분
3. 집행장소 : 제주도 북제주군 제주읍 화북리 부근에서 집행장교가 지정한 장소
4. 사형집행 장교 : 육군대위 조영구, 육군소위 정세진
5. 입회 장교 : 군의관 육군중위 박신범, 정보관 육군소위 박태원
6. 집행방법 및 기타 세부방식에 관하여 본 명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 사형집행의 기본방식 규정에 의함

단기 4282년 2월 22일

육군본부 제2연대 연대장 육군중령 함병선 (직인)

사형 일시는 알 수 있으나 사형 장소는 화북리 부근이라고 하여 정확한 지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총살하여 암매장해 버렸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당시 장소를 알지 못했다. 유가족 일부는 화북과 삼양 사이,¹⁴⁶⁾ 화북 부근 야산,¹⁴⁷⁾ 화북과 삼양 사이 일주도로변,¹⁴⁸⁾ 화북리 입구 서쪽밭¹⁴⁹⁾, 화북 일주도로변 밭¹⁵⁰⁾ 등으로 전해 들었다. 2002년 8월 12일 제주4·3사건위원회 현지 증언조사팀은 총살터에서 부친 강윤규의 시신을 직접 수습한 증언자를 만나서 직접 장소를 확인했다. 증언자 강일수는 경찰로 근무하는 친지로부터 매장 장소를 전해 듣고 한 달 뒤 직접 삼촌과 함께 현장을 찾아갔다. 부친은 카빈총탄을 배에 두 발 맞아 있었고, 탄환도 확인했으며, 시신은 리어카에 싣고 제주읍 도두리 묘지에 안장했다는 것이다. 장소는 제주시 화북동 오현고등학교 정문 우측 동제원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밭인데, 현재 공터로 남아 있다.¹⁵¹⁾

146) 『제주4·3사건희생자신고서』, 김항윤.

147) 『제주4·3사건희생자신고서』, 강성보.

148) 『제주4·3사건희생자신고서』, 진경만.

149) 『제주4·3사건희생자신고서』, 강윤규.

150) 『제주4·3사건희생자신고서』, 김봉수.

151) 康鎰水(63세, 제주시 일도2동, 당시 초등학생, 2002. 8. 12. 체록) 증언.

「군법회의 명령」에 적혀진 871명의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제주도에서 사형에 처해진 38명을 제외하고 각각 목포·마포·서대문·대구·인천·전주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무기징역 67명은 「군법회의 명령」에 복형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형무소 수감 상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4명은 『1949년도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에 1949년 3월 4일에 대구형무소에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들 67명은 목포형무소에 2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대구형무소와 기타 형무소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 20년으로 적혀 있는 97명 역시 「군법회의 명령」에 복형장소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1949년도 마포형무소 재소자명부』를 보면 이들 대부분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음이 확인된다.

「군법회의 명령」에 복형장소가 목포형무소로 기재된 사람은 총 453명이다. 이들은 징역 15년 202명, 징역 5년 157명, 징역 3년 4명, 징역 1년 90명 등이다. 그런데 징역 15년 202명은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지 얼마 없어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었다. 『1948·1949년도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에 이들이 대구형무소에 재소 중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19세 이하의 소년들은 복형장소가 인천형무소로 적혀 있다. 징역 15년 56명, 징역 5년 58명, 징역 1년 52명 등 총 166명이 수감되었다. 여성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징역 15년 3명, 징역 5년 7명, 징역 1년 38명 등 총 48명이다.

「군법회의 명령」에 기재된 ‘1948년 군법회의’ 대상자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분석해보면,¹⁵²⁾ 대체로 중산간지역 마을 주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건입·용담·이도리 등 제주읍내 마을과 도두·화북·애월·하귀·신촌·조천·강정리 등 해안마을의 숫자도 적지 않다. 1948년 10월 이후 중산간지역에 대한 소개작전이 강력하게 수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군법회의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통해 중산간지역 소개작전이 원만하게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산간마을인 애월면 금덕리 주민들은 예외적으로 상당수가 군에 체포되어 와서 ‘1948년 군법회의’에 25명이나 회부되었지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군의 소개작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리한 소개작전과 무장대의 입산 유도에 산으로 피신한 주민들이 더욱 많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조천면 선흘리 주민들은 군법회의 대상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이들은 1948년 11월 25일과 26일 양일에

152) 박찬식,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4·3과 역사』 창간호, 제주4·3연구소, 2001, 50~51쪽 참조.

걸쳐서 굴속에 은신했다가 군·경 토벌대가 굴을 포위하여 주민 94명을 집단적으로 총살하였던 것이다. 중산간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개작전이 수행된 이 시기에 법적 처리 대상이 된 사람이 적었다는 것은 결국 해안마을로의 원만한 이주나 구금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결처분한 사례가 많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한편 제주읍내 마을을 비롯한 해안지대 마을 주민들이 많은 까닭은 군 정보담당자들과 경찰·서북청년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검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군이 중산간 지역 작전을 주도하는 동안 경찰은 무장대와 내통 혐의가 있거나 과거 좌익 조직에 가담,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검거를 펼쳤다. 제주읍내 유지들에 대한 대대적 검거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1948년 군법회의’ 대상자 중에 공무원·교사·회사원·운수업 등의 직업 구성이 많은 것은 이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통해 무장대와 연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1948년 군법회의’는 1948년 10월 이후 군·경 토벌대의 강경방침으로의 선회에 따라 소개작전이 펼쳐진 중산간지역에서 집단총살을 면한 주민들과 재산무장대와 연결 가능성이 있는 제주읍내 각 직장인, 해안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방구금의 차원에서 설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48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상계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무리한 감금과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집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계엄령 상황이 아니었다면 조사 후 석방되거나 일반 민간재판에 회부되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무리한 군법회의 적용은 당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장 즉결처분과 더불어 제주4·3사건의 또 다른 희생의 실태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② ‘1949년 군법회의’

정부는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유재홍 대령)를 설치하여 5·10 재선거 전에 제주사태를 평정하고자 하였다. 유재홍은 부임하자마자 해안지대에 주둔하던 제2연대를 무장대와 직접 대치하게끔 산으로 올려보냈다. 이에 따라 제2연대 1대대는 ‘뽕뒤킨밭’(수악교 부근), 2대대는 관음사, 3대대는 교래리, 특수부대는 노루오름 근처에 주둔시켰다. 유재홍은 4월 중순 이전에 반도들을 완벽하게 소탕한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는 “군부대와 민보단으로 섬을 완전히 횡단하는 선을 형성하고 산을 빗질하듯 끌어내려 반도들을 섬의 반대쪽에 진치고 있는 경찰

쪽으로 몰아간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다.”¹⁵³⁾

한편으로 그는 사면계획을 채택하여 중산간지역 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사살을 중지하도록 했다. “작전 중에 체포됐거나 자발적으로 투항했거나를 불문하고 산에서 내려온 모든 사람을 구금”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¹⁵⁴⁾ 3월 초부터 피신 주민들에 대해 귀순을 권유하는 전단이 살포되었다.

당시 한라산에는 무장대뿐만 아니라 2만여 명에 달하는 중산간지역 거주 민간인들이 피신해 있었다.¹⁵⁵⁾ 이들은 제9연대의 무리한 소개작전을 피해 생존을 위해 피신한 사람들이었다. 남원면 한남리 주민들은 한라산 속 ‘고냉이된밭’까지 올라갔다. 한남리 주민 400여 명 중 90% 이상이 집단적으로 올라가서 가족 단위로 나무 움막을 짓고 피신 생활을 하였다.¹⁵⁶⁾ 제주읍 노형리 주민들은 한라산 ‘죽은드레오름’ 남쪽 ‘청산이도’라는 깊숙한 곳까지 피신하였다.¹⁵⁷⁾ 이들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한라산에 은신처를 마련하여 피신 생활을 하였다.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부원으로 있으면서 한라산에 피신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생민은 “물참오름에 남제주군 일대 성산·남원면의 노약자·아이·부녀자들이 수천 명 입산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⁵⁸⁾

이러한 선무공작에 따라 많은 입산 피난 주민들이 속속 하산하여 왔다. 3월 한 달 만에 1,500여 명이 내려왔다. 5월 11일 제주를 찾은 국제연합한국위원단에게 유재홍 사령관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잡힌 포로가 3,600명이라고 하였다.¹⁵⁹⁾ 4월 21일에는 ‘포로 및 귀순자’가 5,817명으로 급증하였다.¹⁶⁰⁾ 내무부차관의 5월 22일 작전 결과 발표에 의하면, “3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귀순자 총수는 6,014명이며, 그 중 남자는 2,974명 여자가 3,040명이며 석방자 수가 4,163명, 현재 수용자 수는 1,851명”이라고 하였다.¹⁶¹⁾ 이들은 모두 제주

15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154) 위와 같음.

155) 劉載興(82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당시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 2002. 9. 6. 채록) 증언.

156) 高奉元(72세, 남원면 한남리, 당시 일반주민, 2000. 12. 14. 채록) 증언.

157) 玄庠智(71세, 제주시 연동, 당시 피난입산자, 2001. 7. 27. 채록) 증언.

158) 金生玟(77세, 제주시 연동,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 2001. 7. 13. 채록) 증언.

159) Transmitting Excerpt from UNCOK Report on Visit to Cheju Island, Despatch No. 358, June 17, 1949, American Embassy, Korea.

160) 『京郷新聞』, 1949년 4월 26일.

161) 『京郷新聞』, 1949년 5월 22일. 1949년 6월 이후 신문에는 귀순자 총수가 8,000여 명이며, 그 중 5,000여 명은 석방하고 3,000여 명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朝鮮日

읍내와 서귀포의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당시 하산자들의 수용 장소는, 제주읍내의 경우 주정공장(동척회사) 창고가 가장 컸으며, 그밖에도 농업학교, 일도리 공회당, 용담리 수용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서귀포에는 정방폭포 위 감자공장과 천지연 부근의 창고가 수용소로 활용되었다.

5월 11일 주정공장을 방문한 국제연합한국위원단의 시찰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용소에는 2,000여 명의 수감자가 오래된 창고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여성 수가 남성보다 대략 3배나 많았고 팔에 안긴 아기들과 어린이들도 많았다. 수용소장은 수감자의 90%는 산에 숨어 있다가 투항하였고, 나머지는 군 토벌대에 의해 체포됐다고 말하였다.¹⁶²⁾

사찰 담당 경찰관들이 주정공장에 별도의 수사대 사무실을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취조를 담당하였다. 당시 특별수사대 반장으로 있으면서 주정공장에서 취조를 담당 하였던 경찰관은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우리는 고문할 때 고향사람들이라서 될 수 있으면 피했다. 육지에서 온 경찰들은 고문을 많이 했어. 고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경찰은 여자들 옷을 다 벗겨서 천장에 매달아서 고문했다.¹⁶³⁾

경찰은 수감자들에 대해 갖은 고문을 실시하여 무장대와의 연관성을 억지로 자백 하게 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군에 넘기기도 하였다.¹⁶⁴⁾ 당시 주정공장 직원은, “주정 공장 언덕 위에 있는 절간고구마 저장 창고에 수백 명씩 수용되었다. 같은 마을 사람들을 봤는데, 그냥 마을에 살다가 체포된 것이지, ‘폭도’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군인과 경찰이 수용소를 가끔 오갔지만, 경비는 주로 대한청년단원들이 담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⁶⁵⁾

報》, 1949년 6월 4일 ;『朝鮮中央日報』, 1946년 6월 28일). 6월 말 제2연대장 함병선은 기자들에게 “8,000명의 귀순자를 획득하였고, 수용소에 남아 있는 귀순자 수는 2,000명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京鄉新聞』, 1949년 6월 29일).

162) Transmitting Excerpt from UNCOK Report on Visit to Cheju Island, Despatch No. 358, June 17, 1949, American Embassy, Korea.

163) 金秉澤(77세, 제주시 용담1동, 당시 경찰, 2002. 2. 8. 채록) 증언.

164) 형무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결같이 경찰의 가혹한 고문을 지적하고 있다.

‘1949년 군법회의’는 위와 같이 한라산에 피신해 있다가 하산해 제주도내 각지 수용소에 감금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것으로 되어있다. 「군법회의 명령」에 의하면, ‘1949년 군법회의’는 1949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10차례 개최되었고, 그 명목은 고등군법회의였다.¹⁶⁵⁾ 이 군법회의에서 민간인 1,659명에 대해 한 사람도 어김없이 국방경비법 제32·33조 위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군법회의 명령」에는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로부터 제18호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각 명령 호수마다 별지 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명령 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

단기 4282년 7월 3일

수도경비사령부 보병 제2연대

연대장 육군 대령 함병선 (직인)

1. 설치명령 : 단기 4282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 71호 제1항에 의거함
2. 공판장소 : 제주도 제주지방법원
3. 피고인 : 첨부 별지 명부와 여함
4. 죄목
 죄과 : 국방경비법 제32·33조 위반
 범죄사실 : 적에 대한 구원통신 연락 급 간첩죄
5. 항변 : 제3항 명부 참조
6. 판정 : 같음
7. 판결 : 같음
8. 판결 언도일자 : 같음
9. 심사장관의 조치
 해 판결을 승인하며 적절한 집행을 명함
10. 확인장관의 조치
11. 복형장소 : 형무소

165) 姜東化(81세, 제주도 삼도1동, 당시 주정공장 직원, 2002. 7. 18. 체록) 증언.

166) 미국 측 자료에는 ‘1949년 군법회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49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주도의 공산주의자들과 동조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소 : 민간인 1,652명, 군인 47명. 선고 : 사형 345명, 무기징역 238명, 15년형 311명, 7년 이하 형 705명, 무죄 54명, 석방 46명.”(미국동군사령부 1949년 8월 12일 합동주간정보분석 제9호).

문서상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 1,659명 가운데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345명(20.8%), 무기징역 238명(14.3%)이었고, 나머지는 징역 15년 308명(18.6%), 징역 7년 706명(42.6%), 징역 5년 13명, 징역 3년 25명, 징역 1년 22명, 미확인 2명 등이다. 대체로 계엄령하 '1948년 군법회의'보다 더욱 강경한 처리를 했다.

사형으로 기록된 345명 가운데 249명에 대한 총살집행은 1949년 10월 2일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공식 집행 명령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측 자료에 관련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1949년 10월 2일 오전 9시, 제주경찰서에 간혀 있던 249명의 무장대들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제주비행장 해안가에서 처형되었다. 사형집행자는 제주도 헌병대장 조영구 육군소령이었고, 대대 정보장교, 법무장교 및 기타 대대 장교들이 입회하였다. 처형자 가운데에는 9연대 장교 1명과 5명의 하사관이 끼어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이전(1948년)에 제주도에 주둔하였던 9연대로부터 이탈하여 제주도 무장대에 합류하였던 15명의 또 다른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¹⁶⁷⁾

사형으로 기록된 345명 중 249명이 총살되었는데, 나머지는 고등군법회의 설치 장관의 확인 과정이나 재심의 과정에서 감형되어 죽음을 면한 것으로 보인다. 사형으로 기록된 강두삼·부을생·김남해·허남홍·김태경·강원기·홍천표·양경택·부성우 등이 마포형무소에 무기징역수로 재소 중임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¹⁶⁸⁾ 마찬가지로 사형으로 기재된 김민학은 마포형무소에 있다가 출소하여 고향에 와서 살다가 1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¹⁶⁹⁾

당시 총살 집행을 직접 목격한 허균 제1독립대대 소대장은 현장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우리 중대가 제주비행장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나는 어느 날 제주비행장의 별관에 호를 크게 2개 파고 반도들을 사형 집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약 200~300여 명 정도가 눈을 가리운 채 총살되었는데, 이들을 묻었던 무덤이 나중에 얼마쯤 내려

167) K MAG, G-2 Periodic Report, No. 192, October 6, 1949 : Joint Weeka, No. 17, September 30 - October 7, 1949.

168) 『1950년도 마포형무소 재소자명부』와 『마포형무소 수용자신분장』 등에 이들 재소자 명단이 확인된다.

169)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I, 도서출판 한울, 1989, 47~48쪽.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 지휘는 헌병장교인 윤기열이 했습니다. (중략) 2연대가 무자비하게 진압작전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서 유치장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주비행장에서 처형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때는 참으로 옥석을 가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¹⁷⁰⁾

총살이 집행된 249명의 유가족들은 구체적인 희생 장소와 날짜를 모른다. 일부 유가족들은 소문으로만 1949년 10월 2일 제주읍 비행장 근처에서 총살한 뒤 구덩이에 파묻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뿐이다. 현재 이들 유가족 가운데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군법회의 명령」에 적혀진 1,659명의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제주도에서 사살된 249명을 제외하고 각각 마포·대구·대전·목포·인천·전주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군법회의 명령」에 복형장소가 마포형무소로 기재된 사람은 223명으로서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여기에다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로 이송된 사람이 96명이므로, 마포형무소 재소자는 총 319명이었다. 대구형무소에는 징역 15년 297명, 대전형무소에는 징역 7년 300명, 목포형무소에는 징역 7년 215명이 수감되었다. 19세 이하의 소년들은 복형장소가 인천형무소인데, 무기징역 12명, 징역 15년 12명, 징역 7년 170명 등 총 194명이 수감되었다. 여성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무기징역 3명, 징역 7년 21명, 징역 5년 13명, 징역 3년 25명, 징역 1년 22명 등 총 84명이다.

「군법회의 명령」에 기재된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제주읍내나 해안가 마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중산간마을 주민들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오라·선흥·와산·명월·의귀·한남·수망·가시·난산·신평리 등은 ‘1948년 군법회의’ 기록자들이 거의 없었으나,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의 수는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이들은 중산간지역에 자리잡은 대표적인 마을들로서, 주민들이 1948년 10월 이후 강경토벌작전이 벌어지자 집단적으로 피난 입산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들이 1949년 3월 이후 선무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대거 하산하여 군법회의 처리 대상이 된 것이다.

당시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일부 무장대원을 제외하면, 1948년 10월 이후 군·경 토벌대의 강력한 진압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산 속을 헤매 다니던 평범한 일

170) 허균(75세,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당시 제1독립대대 소대장, 2001. 9. 27. 채록) 증언.

반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토벌대의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선무작전 방침에 순응했던 민간인들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면 방침을 무시하고 강경한 처리로 일관하였다. 당시 군 당국의 사면 방침은 “여자·어린이·노인들은 피난민으로 분류하고, 전투 가능 연령의 남자들은 피난민 지위가 부여되기 전에 철저히 검색되고 교육된다”는 제한적인 것이었다.¹⁷¹⁾ 중산간지역의 15세 이상의 청·장년층이면 산에 피신했다가 하산할 경우 누구나 예외없이 ‘반도’ 또는 ‘폭도’로 낙인찍혀 조사 받고 군법회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정부와 군 당국에서는 이들을 이전과 같이 즉결 처분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관리하고자 했으나, 제주도에는 형무소나 집단수용 시설이 부족하므로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시켜 제주도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하였다. 2,000여 명에 달하는 수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형무소로 보낼 수 있는 방편은 당시로서는 국방경비법 32·33조 적용밖에 없었다. 결국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4·3사건을 조속히 평정하고자 하는 정부와 군 당국에 의해 형무소로 보내졌다가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3) 군법회의 재판의 법적 검토

군법회의의 대상자들 가운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서 아직도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시 치러졌다는 군법회의 재판의 실상을 들어 보면, 그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존자들은 당시 재판을 받지 않고 수감되었다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된 재판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군법회의가 아예 없었다거나 적법 절차를 어긴 형식적인 재판이었다면, 군법회의의 대상자들을 ‘수형인’으로 호칭하는 것도 문제이며, 형무소에 수감된 것도 ‘불법 감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제주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신고한 1,443명의 군법회의 유죄 판결자의 희생자 선정 심사에 중대한 조사 사항일 뿐만 아니라, 4·3사건 당시 국가공권력의 법 적용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조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¹⁷²⁾

17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172) 제주4·3사건위원회 산하 제주4·3사건희생자 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 제16차 회의(2002. 10. 25)에서 위원회 법률 담당 전문위원이 「군법회의 재판 관련 사실조사 결과서」를 보고한 바 있다. 이 「사실조사 결과서」는 위원회 진상조사기획단이 진상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와 분석 내용을 공유한 가운데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군법회의의 법률

이에 제주4·3사건위원회에서는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당사자들에 대한 증언조사를 실시하였다. 게다가 당시 군법회의와 관련된 군·경 관계자에 대한 증언조사도 병행하였다. 문서자료로는 군법회의 재판 관련 소송기록, 경찰문서, 행형기록, 국회의사록, 정부기록, 신문기사, 미국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나아가 이들 자료를 검토하면서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재판 절차를 규정해 놓은 국방경비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주목하였다.

① 증언조사

우선 형무소 재소 중 생존자 강상문 외 29명에 대한 증언조사 결과, 그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군·경의 취조를 받고 아무런 재판 절차없이 형무소 이송 후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고 수감된 경우이다.¹⁷³⁾ 둘째, 군·경의 취조를 받고 재판정에 집단으로 출석시켜 호명하는 것으로 그치고, 형무소 이송 후 죄명과 형량을 통보하고 수감된 경우이다.¹⁷⁴⁾ 셋째, 군·경의 취조를 받고 재판정에 집단으로 출석시켜 호명 후 형량 언도하고 형무소 이송 후 수감된 경우이다.¹⁷⁵⁾ 이상을 종합하면, 생존자들은 빠짐없이 재판의 부재와 형식적 재판 절차를 증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시 군 지휘관에 대한 조사 결과, '1948년 군법회의' 당시 제9연대 부연대장인 서종철과 제9연대 군수참모 김정무는 모두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¹⁷⁶⁾ '1949년 군법회의' 당시 제2연대 1대대장이었던 전부일은 서북

적 검토는 상당 부분 이 「사실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173) 증언자 10명의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연령	주소	당시 직업	복형무소	증언채록일
金商年	76	서울시 마포구	초등학교 교사	마포	2002. 3. 26
오희춘	72	남원읍 하례리	해녀	전주	2002. 4. 4
金椿培	76	서울시 종로구	상업	마포	2001. 8. 25
夫英性	84	구좌읍 하도리	대동청년단장	목포	2000. 12. 15
金君夏	80	서귀포시 서호동	경찰	무죄 처리	2002. 1. 25
韓中源	74	서귀포시 강정동	농업	인천	2002. 4. 4
夫成邦	86	조천읍 조천리	농업	대구	2000. 12. 12
韓希昌	72	조천읍 조천리	농업	대구	2000. 12. 18
李輔連	72	제주시 이호1동	농업	인천	2001. 8. 3
姜泰龍	72	제주시 용담2동	농업	인천	2002. 6. 11

174) 증언자 17명의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년회원 3명을 군사재판 처리한 적은 있지만, 민간인 1,659명에 대한 군법회의는 모른다고 증언하였다.¹⁷⁷⁾

제주4·3사건위원회는 이들 외에도 군법회의 재판과 관련된 재판장·심판관·검찰관·변호인·예심조사관·법무관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기록과 인적 사항 확인을 국방부에 의뢰했으나 관련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¹⁷⁸⁾ 위원회 자체적으로도 군 관계자들의 인적 사항을 추적하였으나 사망 등의 사유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군법회의 재판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군법회의 대상자들을 직접 취조한 경찰 1명과 이들을 형무소로 이송할 때 호송을 담당한 경찰 2명을 대상으로 이

성명	연령	주소	당시 직업	복형무소	증언채록일
高萬亨	72	서귀포시 하효동	농업	인천	2000. 12. 20
吳泰益	76	서귀포시 동홍동	농업	목포	2000. 12. 15
안두원	75	제주시 삼도1동	신문사 직원	목포	2002. 4. 2
高潤普	86	제주시 봉개동	농업	마포	2000. 12. 18
鄭基星	79	남원읍 신례1리	농업	마포	2000. 12. 14
姜尙文	73	제주시 월평동	농업	대구	2000. 12. 13
金相孝	75	제주시 봉개동	농업	대구	2000. 12. 12
秦達根	79	서귀포시 호근동	농업	대구	2000. 12. 20
高奉元	72	남원읍 한남리	농업	대구	2000. 12. 14
宋永珍	82	조천읍 함덕리	농업	대구	2000. 12. 18
金正滉	70	제주시 연동	농업	인천	2000. 12. 12
朴東守	68	제주시 용담동	농업	인천	2000. 12. 15
梁謹邦	68	조천읍 와흘리	농업	인천	2000. 12. 15
鄭彭鍾	71	남원읍 신례1리	농업	인천	2000. 12. 14
부원휴	73	제주시 일도1동	학생	인천	2001. 7. 20
吳榮鍾	74	남원읍 한남리	농업	대구	2002. 5. 9
양공옥	72	한림읍 금악리	회사원	인천	2002. 6. 12

175) 증언자 2명의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연령	주소	당시 직업	복형무소	증언채록일
송순희	78	인천시 관개동	주부	전주	2002. 3. 28
姜貞順	71	안덕면 서광리	주부	전주	2000. 12. 20

176) 徐鐘喆(79세,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당시 제9연대 부연대장, 2002. 9. 10. 채록) ; 金貞武(77세,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당시 제9연대 군수주임, 2002. 9. 25. 채록) 증언.

177) 全富一(79세,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당시 제2연대 1대대장, 2002. 9. 24. 채록) 증언.

178) 국방부,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수집 협조 요청 관련 회신」(법무33031-487, 2002. 6. 24).

루어졌다. 취조 경찰은 주정공장에 수용된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A·B·C 등급으로 분류한 뒤 재판 없이 한꺼번에 형무소로 보냈다고 증언하였다.¹⁷⁹⁾ 호송 담당 경찰 2명은 형무소에 도착하여 군법회의 대상자들을 정렬시킨 후 형무소장 또는 군인이 죄명과 형량을 통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⁸⁰⁾ 이러한 경찰의 증언 내용은 생존자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국방경비법에 규정된 군법회의 재판의 주요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판단된다.

② 문서자료 조사

문서자료로는 군법회의 재판 관련 소송기록, 행형기록, 경찰문서, 국회의사록, 정부기록, 신문기사, 미국자료 등을 조사하였다.

우선 군법회의 재판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기소장·증인진술서·예심조사보고서·공판조서·재판조서(판결문) 등 소송관련 기록을 검색하였으나,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소송기록의 유무를 국방부에 조회한 결과, “군내에서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부존재 사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¹⁸¹⁾ 정부기록보존소 역시 “제주4·3사건 관련 고등군법회의 재판 판결문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여 왔다.¹⁸²⁾

또한 형무소 재소자들의 『수용자신분장』(재소자카드)에는 재소자 개인의 판결문을 포함한 행형기록 일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4·3사건위원회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 중인 군법회의 대상자들의 『마산형무소 수용자신분장』을 검색하여 보았다. 그 결과, 고우경·고대송·문자언·양시우·진달근 등의 수용자신분장에는 “당소에는 판결문 등본이 보존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확인서(1975. 12. 18)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교도소 재소자들의 모든 행형기록은 일체로서 보관되고 이감시에도 이감 교도소에 행형기록이 그대로 이관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산형무소에 당시 판결문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형 집행 때부터 판결문이 첨부되지 않았음을 말하여 준다.

179) 高瀛珍(78세, 제주도 영평동, 당시 경찰, 2002. 2. 7. 채록) 증언.

180) 金秉圭(75세, 조천읍 함덕리, 당시 경찰, 2002. 2. 30. 채록) ; 金斗植(75세, 제주도 삼도1동, 당시 경찰, 2001. 8. 7. 채록) 증언.

181) 국방부, 「제주4·3사건 관련 자료 협조 재요청 관련 회신」(법무33031-655, 2002. 9. 11).

182) 정부기록보존소, 「고등군법회의 재판기록 조회 회신」(행정12307-3987, 2002. 12. 26).

또한 행형자료 가운데 『1948~1949년도 목포교도소 출소좌익수명단』에는 제주 출신 군법회의 재판 관련 재소자가 다수 확인된다. 이 『명단』의 「범죄개요」란을 보면,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구체적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판결문을 토대로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주에서 간 군법회의 적용 재소자들의 경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란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형집행시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군법회의 판결문이 없었다는 또 다른 증거로는, 마포형무소 재소자 김춘배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1948년 군법회의’ 대상자로서 재판 없이 1948년 12월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어 형무소 운동장에서 징역 20년형을 통보받고 재소 중이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 출소하였는데, 1962년 잔형 집행을 이유로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재수감되었다.¹⁸³⁾ 이에 그의 가족은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잔형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군법회의(1963. 8. 20)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 집행을 취소했다.

천재사변 등에 의하여 재판서의 원본이 멸실하여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집행지휘서에 첨부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범행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에 족한 기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형의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건 기록과 형집행지휘서에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에 족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검찰관의 잔형 집행 처분은 부당하다.

군법회의와 관련된 경찰문서를 보면, 군법회의를 담당한 군 당국이 예심과 심리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군법회의 재판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제주경찰국 특별수사대가 1949년 6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포로자 및 귀순자 1,021명을 제2연대에 송치하면서 작성한 비밀문건 『죄수상황보고서』로서, 여기에 군법회의 대상자들에 대한 처치 등급을 A, B, C, D, 갑, 을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1949년 6월 5일 모슬포경찰서장이 제주경찰국장에게 보낸 비밀문건에는 “기록 A는 사형, B는 무기 의견”이라고 명시하였다. 송치 시기가 ‘1949년 군법회의’가 열렸다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예심조사 없이 경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판정·판결 내용을 미리 정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3) 金椿培(76세,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당시 상업, 2001. 8. 25. 채록) 증언.

다음으로 제주에서의 두 차례 군법회의에 대해서 한국정부 및 국회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고, 당시 국내 신문에 관련 기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국회속기록』이나 『국무회의록』, 『대통령재가문서』 등을 보면, 4·3사건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군법회의의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국내 신문에서도 민간재판 및 일반 군법회의 재판에 대해 빠짐없이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제주에서의 민간인 대상 군법회의에 대한 기사는 단 1건도 찾아볼 수 없다. 여순사건의 경우, 국방부의 군법회의 실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김장렬 외 63명의 국회의원이 군법회의에서 양민이 억울하게 처분받았다고 하여 국회에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에게 재심 청구 및 선처를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¹⁸⁴⁾ 당시 신문에도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민간인 대상 군법회의에서 총 2,530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 사형과 무기징역형만 하더라도 각각 384명, 305명으로 단일사건으로는 사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정부 등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신문에도 전혀 보도된 바가 없었다는 점은 의문이다. 이는 군법회의를 주관한 제주도계엄지구사령부와 제2연대가 재판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적 재판으로 일관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1948년 군법회의’에서는 12차례의 공판에서 871명, ‘1949년 군법회의’에서는 10차례의 공판에서 1,659명에 대해 일률적인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적혀 있는데, 한결같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100명이나 200명 이상의 피고인들의 심리 절차를 하루에 마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1949년 6월 28일 200명, 6월 29일 132명, 6월 30일 13명이 사형 선고를, 7월 1일에는 238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과 답변, 입증 및 반증 등 공격·방어의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에서 단 하루의 재판으로 사형·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을 일률적으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지 의문이다.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군법회의 재판의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8년 군법회의’의 경우, 1948년 12월 3일부터 27일까지 12차례 공판을 열었고, ‘1949년 군법회의’는 1949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10차례 공판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8년 12월 29일 제9연대가, 1949년 7월 7일 제2연대가 제주도에 철수

184) 『서울신문』, 1949년 4월 22일.

를 시작했음에 비추어본다면, 두 차례 군법회의는 진압부대의 철수에 앞서 즉결처분을 면하고 남아 있던 민간인들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두 차례 군법회의는 예심조사·심리·형량연도·판결문도 없이 수백 명씩을 졸속절차로 처리했다. 국방경비법 절차를 지킨 재판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 정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49년 군법회의'는 민간인 1,659명을, 열흘이란 단시간 내에, 죄의 유무에 대해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유죄로, 그것도 '1948년 군법회의'보다 더 심하게 처리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민간인에게는 국방경비법 32·33조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가 적용되었는데, 이 법 조항이 산에 피신했다가 하산한 중산간지역 주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두 번의 군법회의에서 사형으로 기록된 사람들에게 대한 사형 집행도 비공개로 처리했고,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사실 또한 이 재판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한다. 미국 자료에 '1949년 군법회의' 사형수 249명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처형했다고 나와 있는데,¹⁸⁵⁾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 중인 『대통령재가문서철』에 관련 문서는 들어 있지 않다. 1948년 건국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거한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군법회의 재판 및 형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갖기 힘들게 한다.

결국 1948·1949년 제주에서 치러졌다는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송기록, 즉 재판서·공판조서·예심조사서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김춘배에 대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판결(1963. 8. 20)에서 군법회의 재판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잔형 집행을 취소한 사례는 주목된다. 나아가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을 통보받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군인·경찰·피해자들의 증언, 관련법령에 의해 영구보존 대상인 판결문이 당초부터 작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의 존재, 하루에 수백 명씩 심리 없이 처리하는 한편, 사흘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는 등 제반 정황 등을 통해서도 재판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3사건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

185) KMAG, G-2 Periodic Report, No. 192, October 6, 1949.

4) 한국전쟁 발발과 형무소 재소자 희생

① 형무소 재소자의 이송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일반재판과 군법회의를 거쳐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전국 각 지역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주로 목포·광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곧바로 서대문·마포·대전·대구·목포·인천·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마포·대전·인천형무소 재소자는 거의 이동이 없었지만, 다른 형무소 재소자들은 형무소의 사정과 기타 사유에 따라 다른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1948년 군법회의’로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무기징역 24명은 1949년 3월 4일에 대구형무소에 이송되었다.¹⁸⁶⁾ 징역 15년형 202명은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지 얼마 없어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었다.¹⁸⁷⁾ 징역 10년형·5년형 일부는 김천형무소로 이송되었다가 1950년 4월 28일 부천형무소로 옮겨졌다.¹⁸⁸⁾ 목포형무소에서 진주형무소로 이송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¹⁸⁹⁾ 대구형무소에 있던 10여 명은 1950년 1월 14일·17일 양일에 걸쳐서 부산형무소로 이송되었다.¹⁹⁰⁾ 전주형무소 수감자 일부는 형무소가 비좁아져서 1949년 4월 안동형무소로 이감하였다.¹⁹¹⁾

‘1949년 군법회의’로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 300명 대부분은 1950년 1월 17일과 20일에 부산형무소로 이송되었다.¹⁹²⁾ 전쟁 발발 후 10월 3일에 다시 150여 명이 마산형무소로 옮겨갔다.¹⁹³⁾ 전주형무소에 수감된 200여 명의 여성 재소

186) 『1949년도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정부기록보존소 소장).

187) 『1948·1949년도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정부기록보존소 소장)에 대구형무소에 재소 중이라고 적혀 있다.

188) 제주읍 이호리 출신 고두정이 부친 고병호에게 보낸 엽서, 1950. 5. 22(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창간호, 234쪽); 제주읍 도남리 출신 고경옥이 아내 강덕화에게 보낸 엽서, 1950. 6. 18(위의 책, 250쪽).

189) 제주읍 화북리 출신 현귀찬(이명 현성찬)은 목포형무소에서 엽서를 보내다가 뒤에 진주형무소에서 보냈다고 했다(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④, 102쪽). 제주읍 오등리 출신 김병로도 목포형무소에서 진주형무소로 옮겨졌다(『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시 오등동 신고분, 1960).

190) 행형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두신·박중돈·이원화·신재운·김삼현·김치욱·현명하·현보하·박문옥·이여배·이일만(정부기록보존소 소장, 『대구형무소 종신형자등기부』;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 『부산형무소 재소자명부』).

191) 앞의 강정순, 송순희의 증언.

192)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 『부산형무소 재소자명부』(정부기록보존소 소장).

193) 『마산형무소 수용자신분장』(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정부기록보존소에는 부산형무소에서 마

자들은 수감 한 달만에 대부분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다.¹⁹⁴⁾

일반재판 수형자들은 대부분 목포·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타 형무소로 이송된 예가 많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이후에도 두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들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규석과 고운섭은 광주형무소에서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이들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②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목포형무소에서는 1949년 9월 14일 오후 5시 재소자 400여 명이 형무소 내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장한 채 탈옥하였다. 군경합동사령부가 9월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당시 수용인원 수는 1,421명이었는데, 탈옥 폭동에 참가한 죄수는 1,000명이었는 바 그 후 군경합동 공격으로 500명은 즉시 진압되고 353명이 완전히 탈옥하였다”고 하였다.¹⁹⁵⁾ 당시 국내 신문과 미국대사관이 본국 국무성에 보낸 자료에는 “대부분의 탈옥자들이 제주도 반란사건으로 복역 중에 있던 정치범들”이라고 하였다.¹⁹⁶⁾

사건이 발발하자 육군 2개 중대와 현지 경찰, 해군과전대가 공동작전을 펼쳐 형무소를 벗어난 재소자를 추적하였다.¹⁹⁷⁾ 사건이 진압된 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9월 19일 현재 자수 3명, 사살 286명(옥외 도망자 228명, 옥내 도망자 58명), 체포 85명, 미체포 37명이다. 형무관 중에는 6명이 사망했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¹⁹⁸⁾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1949년 10월 4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이 사건의 원인을

산형무소로 이송된 134명분의 수용자신분장이 보관되어 있다.

194) 『서대문형무소 재소자명부』(정부기록보존소 소장)에 이재욱·이정숙·이정생 등의 명단이 확인된다. 허두헌은 전주형무소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직접 이송 광경을 목격하였다. 許斗憲(72세, 제주시 도남동, 당시 학생, 2000. 12. 13. 채록) 증언.

195) 『漢城日報』, 1949년 9월 17일.

196) 『京郷新聞』, 1949년 9월 16일 ; Intelligence Summary, No.2573, September 25, 1949, GHQ, Far East Command, RG 6 :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reel 657, MacArthur Memorial Library, U.S.A.

197) Joint Weeka, No. 14, September 9-16, 1949.

198) 「제84회 국무회의록」, 1949년 9월 20일. 9월 23일 목포경찰서에서 발표한 최종 집계는 다음과 같다. 탈옥 죄수 413명 중 체포 85명, 사살 298명, 자수자 10명, 미체포 23명, 총기 회수 10정(『湖南新聞』, 1949년 9월 24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목포형무소 사건의 첫째 원인은 죄수들에게 대우를 잘못된 점입니다. 목포형무소는 600명밖에 수용 못할 곳을 문제 당시에는 1,421명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형무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앉아서 잘 수밖에 없었고 누워서 잘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한 방에다가 30~40명을 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잘 수도 없다, 먹을 수도 없다,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처지에 있으니까 기왕 죽을 바에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자고 해서 이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¹⁹⁹⁾

형무소의 과밀로 인한 재소자의 불만은 목포형무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949년 8월 현재 전국 19군데 형무소에 24,0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었다. 서울신문 기자가 대구·부산·광주·목포·전주·군산·대전 등 남한의 7개 형무소를 방문 취재한 결과, 모두 정원을 40~50% 초과하여 감방 한 평당 수용자 수는 6~8명으로 과밀하였다. 대구형무소의 경우 1,500명 정원에 3,068명이 수감되어 강당·창고·작업장을 모두 감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²⁰⁰⁾ 미국 측에서도 “목포형무소는 한국의 유일한 초과밀 형무소가 아니며 형무소 조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어디서든지 유사한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정치범들을 분리해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평하였다.²⁰¹⁾

목포형무소에는 600명 가량의 제주출신 재소자가 있었다.²⁰²⁾ 이들 가운데 탈옥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된 사람의 수는 정확한 집계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 힘들다.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와 목포교도소에 소장 중인 『목포형무소 종결신분장보존부』와 『목포형무소 출소좌익수명단』에 사건 당일 출소한 제주출신 재소자를 확인하여 보면, 총수는 51명에 달한다. 이들은 탈옥 후 사살된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로 추정된다.

199) 『국회속기록』, 제5회 제13호, 1949년 10월 4일.

200) 『서울신문』, 1949년 8월 7일.

201) “Summary of Politic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eptember 1949,” Enclosure 1 to Despatch No. 621, dated October 7, 1949, from American Embassy to State Department, Seoul, Korea.

202) 위의 『국회속기록』.

③ 한국전쟁 직후 집단 총살 희생자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6월 25일 당일 오후 2시 25분 치안국장의 명의로 각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전화통신문으로 긴급 하달하였다.²⁰³⁾ 그러나 정부는 서울·인천 등 형무소 재소자에 대해서는 경비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 남쪽으로 도피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군의 남하 과정에서 경기도 평택 이남지역의 형무소 재소자들은 집단 총살의 대상이 되었다.

전쟁 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 재소자는 37,335명이었고, 이 중에 평택 이남의 형무소 재소자는 20,229명이었다.²⁰⁴⁾ 제주에서 이송된 4·3사건 관련 재소자는 일반 재판 수형인 200여 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에 만기출소한 사람²⁰⁵⁾을 제외한 2,350여 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2,500여 명 대부분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각 형무소별로 행방불명 희생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서대문·마포·인천형무소

서울의 서대문·마포형무소와 인천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북한 인민군이 형무소를 장악함에 따라 출소하여 각지로 흩어졌다. 마포형무소 재소 중 생존자 김상년은 의용군에 강제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서울 수복 이후 광주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석방되었다. 뒤에 현역군인으로 입대하여 생존을 유지하였다.²⁰⁶⁾ 정기성은 형과 함께 마포형무소에 있다가 출소하여 형은 의용군에 지원하고, 본인은 목포로 내려와서 살다가 5년 뒤 제주에 갔다. 그는 제주에서 다시 형무소로 재수감되어 15년간 더 옥살이를 하였다.²⁰⁷⁾

인천형무소에서는 6월 30일 직원들이 수원으로 피신해 버리자, 제주출신 재소자 300여 명은 분산되었다. 수원으로 내려간 상당수의 재소자들은 군의 명령에 의해 다시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7월 3일 인민군이 인천을 점령하자 재차 직원들은 도피하고

203) 「4·3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제주KBS 다큐멘터리), 2000. 3. 30. 방영.

204) 국방부장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1년지』, 1951(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1999에서 재인용).

205) '1948년 군법회의' 대상 가운데 정역 1년형은 목포형무소 90명, 인천형무소 52명, 전주형무소 38명 등 총 180명이었다.

206) 金商年(76세.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2002. 3. 26. 채록) 증언.

207) 鄭基星(79세. 남원읍 신례1리, 2000. 12. 14. 채록) 증언.

형무소에는 북에서 내려온 형무관들이 배치되었다. 잔류 재소자들은 거의 의용군에 편입되었다.²⁰⁸⁾ 인천형무소 재소자들은 9·28 서울 수복 시기에 인민군을 따라 북한으로 가기도 했지만, 일부는 제주로 귀향하였고, 상당수가 행방불명되었다. 박경주는 제주에 도착한 당일 아침에 경찰에 연행되어 예비검속자들과 함께 총살되었다.²⁰⁹⁾

□ 대전형무소

대전형무소에는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 300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한국전쟁 이후 제주에 살아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전쟁 발발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과 관련된 정치사상범과 일반죄수 등 4,000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었다.²¹⁰⁾ 이들은 예외없이 7월 첫째 주에 3일간에 걸쳐 충남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골령골(현 대전직할시 동구 낭월동)에서 집단사살 당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 공개된 18장의 현장 총살 사진은 당시 참혹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진은 미국 극동사령부 연락장교 애버트 소령이 찍은 것인데, 사진에 첨부된 문서에는 주한미대사관 육군 무관 밥 에드워즈 중령이 작성한 보고서가 들어 있다. 여기에는 “총살 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고위층에서 내렸다. 대전(형무소)의 1,800명 정치범의 처형은 3일이 걸렸으며, 1950년 7월 첫 번째 주에 발생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 사실은 당시 형무소 직원 김형식과 산내 마을 주민 이규희·김종석 등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형식은 직접 재소자들을 군에 인계한 뒤 학살 현장에도 입회하여 직접 목격하였으며, 김종석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부역동원되어 직접 구덩이를 파기도 했다.²¹¹⁾ 또한 영국 런던의 『옵서버』지 종군기자 필립 단이 쓴 증언록 『나는 한국에서 포로였다』(1953)에도 관련 증언이 실려 있다. 이 책은 그가 북한에 포로로 잡혔을 때 만난 프랑스 신부 카다르와 『데일리 위커』지 워닝턴이 진술한 대전 학살 내용을 담고 있다. 카다르 신부는 자신의 교회 옆에서 대전형무소 재소자 1,700명을 트럭에 싣고 와서 총살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였다. 워닝턴은 총살 직후 현장을 방문했는데, 6개의 구덩이에 7,000명 이상의 남녀 시체가 묻혀 있었으

208) 鄭彭鍾(71. 남원읍 신례1리, 2000. 12. 14. 채록)·朴東守(68세. 제주시 용담동, 2000. 12. 15. 채록)·李輔連(72세. 제주시 이호1동, 2001. 8. 3. 채록) 증언.

209) 李輔連의 증언.

210) 법무부, 『한국교정사』, 1987, 515쪽.

211) 심규상, 「1950년 7월 8일 낭월동을 기억하라」, 『월간 말』 2002년 2월호.

며, 큰 구덩이는 200야드에 달했다고 하였다. 그는 재소자 집단학살은 7월 4~6일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제주출신 300명의 재소자들은 전쟁 직전까지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²¹²⁾ 전원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밝혀진 사실과 같이 낭월동 골령골에 암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대구형무소

전쟁 발발 당시 대구형무소에는 제주4·3사건 관련 재소자 200여 명을 포함한 4,000여 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내란죄, 살인죄, 국가보안법·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 1,402명이 1950년 7월 7일부터 30일까지 형무소로부터 군에 인계되었다. 대구형무소에 보관 중인 『1950년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에는 1,402명의 재소자 란에 ‘군경에 인도’라고 도장이 찍혀 있다.²¹³⁾

1960년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구형무소 재소자 1,402명이 ‘인도 후 처치 전연부지(全然不知)’라고 조사 결론을 내렸다. 당시 이 명단을 전원 게재한 『대구매일신문』은 이들에 대한 집단 총살 여부를 다음과 같이 거론하였다.

6·25사변 직후 대구형무소에서 기결·미결수로서 수감 중 군경에 신병이 인계된 1,402명의 명단이 밝혀졌다. 당시 군경들이 형무관으로부터 인계받아간 그들이 현재 생존하여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대구 근교에서 집단 총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그들이 형무관의 손으로부터 군경의 손으로 인계된 날짜가 그들의 제삿날이 될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이들이 모두 총살되었다면 이들은 사형언도 없는 사형집행을 받은 것이다.²¹⁴⁾

212)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이 전쟁 전까지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가 남아 있다. 제주읍 아라리 문인기의 엽서(1950. 4. 3) ; 제주읍 연동리 양두창의 엽서(1950. 4. 4) ; 조천면 함덕리 고병수의 엽서(1950. 6. 1).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창간호에 엽서 사본이 수록되어 있다.

213) 이 명부를 자세히 보면, ‘군경에 인도’ 도장이 찍힌 위에 추가로 ‘진주이송’ 도장이 덧씌워져 있다. 대구교도소 측에서 군경 인도 사실을 가리기 위해 추가인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한다. 대구형무소 희생자 김창수의 아들 김병훈은 1999년 대구교도소로부터 “1950년 7월 23일 진주형무소로 이감됐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214) 『大邱毎日新聞』, 1960년 6월 7일.

군법회의 시기 인계일자	1948년 군법회의	1949년 군법회의
7월 9일	김용규 김용식 박봉규 진성보	
7월 27일	강군표 강권도 강문구 강보여 강상언 강수만 강영구 강영옥 강위문 강위수 강위춘 강익만 강정수 강찬표 강창하 강평룡 고명순 고병우 고선조 고예봉 고원안 고운주 고인평 고창운 고태홍 김여흡 김문수 김상호 김석구 김석룡 김승만 김양생 김영두 김영옥 김영찬 김원하 김은후 김응수 김재준 김재하 김중연 김창수 (아라) 김치관 김태호 김평식 김혜봉 김희길 문두승 문병희 문숙현 문원도 문재언 문중희 문태보 문하룡 박기영 박두신 박상우 박지호 박창주 박홍기 변광희 부언중 서상치 서용은 손석주 송두림 송두창 송두행 송병무 양군삼 양군석 양문화 양상원 양정삼 오영권 오용두 오임길 오정규 오태해 오형률 오형윤 오형운 이군형 이근택 이덕신 이만홍 이상협 이 석 이시춘 이흥배 임창운 임태훈 전기남 전기집 전병부 전인봉 전준부 진희인 한상섭 한진생 한홍범 허승익 허인철 홍원표 홍창식	강방옥 김병구 김상화 김성식 김우규 김원석 김찬옥 김창수(중문) 송갑정 송두선 송두하 양근시 양남기 양보현 양석봉 양석중 양치백 양태호 오도균 오형만 한탁섭 한치화 현덕홍 현상호
7월 28일		
7월 30일		고기원 김창희

1,402명의 명단 중에는 제주4·3사건 관련 재소자 142명이 확인된다. 이들은 '1948년 군법회의' 대상자 116명과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 26명이다. 군·경에 인계된 날짜는 7월 9일, 27일, 28일, 30일로서 나흘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명단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위 명단 142명 가운데 군·경 인계 날짜 이후에 생존이 확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들은 대부분 경북 경산시 가창골이나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총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1960년 6월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복녕은 현장조사차 찾았던 가창골에는 버려진 유골들로 가득 찼고, 무수히 많은 탄피가 흩어져 있었으며 땅속에는 수천 구의 유골이 묻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²¹⁵⁾

215) 『국민일보』, 2002년 4월 11일.

□ 부산형무소

‘1949년 군법회의’로 대구형무소에 갔던 제주출신 300명 대부분은 1950년 1월 17일과 20일에 부산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된 『부산형무소 재소자연원일표』·『부산형무소 교정통계표』 등을 보면, 1950년 1월부터 7월까지 2,000여 명이던 재소자가 8월 말에 4,000여 명, 9월 말에는 5,500여 명까지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3~4평에 불과한 감방에 42명을 수용할 정도였다.²¹⁶⁾

전쟁이 발발하자 재소자 가운데 징역 3년 이상 수형자들을 형무소 마당에 집결시켜 트럭에 태우고 가서 사살하였다.²¹⁷⁾ 당시 대구형무소에서 이송된 제주출신 재소자들은 2사(舍)에 수감되었는데, 제주출신 재소자로만 채워진 28·29·30방을 제외한 나머지 감방의 재소자들은 전부 형무소 밖으로 끌려갔다.²¹⁸⁾ 『부산형무소 재소자명부』를 통해 파악되는 제주출신 재소자는 총 255명이다. 이들 가운데 전쟁을 거치면서 살아 남은 사람들은 162명으로서, 마산형무소·진주형무소 이송, 옥사 등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안두선·박문옥·한승택 등 3명의 비고란에는 ‘헌병대 인도’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나머지 90명의 란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재소자 통계보고서철』을 보면, 1950년 6월 말 집계 국방경비법 적용 재소자(제주4·3사건 관련자)가 231명이었는데, 7월 말 집계에는 119명으로 감소함으로써 112명이 사라졌다. 재소자의 수를 날짜별로 적어놓은 『부산형무소 재소자연원일표(1950년도분)』에는 1950년 7월 27일, 29일에 걸쳐 국방경비법 적용 재소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 기록에서 이름이 확인된 93명에 대한 조사 결과, 생존자는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산형무소 행형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주출신 110명 내외의 재소자들은 1950년 7월 27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형무소 밖으로 끌려나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 기타(광주·전주·목포형무소)

한국전쟁 발발 당시 제주4·3사건 관련 형무소 재소자들은 위에서 본 형무소 외에

216) 姜尙文(73세, 제주시 월평동, 2000. 12. 13. 채록) 증언.

217) 당시 부산형무소 19방에 수감되어 있던 제주출신 고성화는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 가운데 징역 3년 이상 사람들은 전부 끌려가 학살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성화, 『나의 비망록』, 한울사, 2001, 153쪽).

218) 강상문의 증언.

도 광주·전주·목포·진주·부친형무소 등지에 분산 수감되어 있었다. 자료의 부족으로 이들 형무소에 몇 명이 수감되어 있었고, 전쟁 직후 이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면회·서신 왕래·기타 증언 등을 통해 전쟁 당시 각 형무소에 수감 중이 분명하다고 밝혀진 사람들 가운데 생존자는 한 명도 없다.

광주·전주·목포형무소에 수감된 4·3사건 관련 재소자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전쟁 발발 직후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주·목포형무소에 재감중인 죄수 및 보도연맹 관계자 기타 피검자는 전국 관계장 경찰국장 형무소장 검사장과 타협 직결 처분하고 절도 기타 잡범은 가출옥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할 사 각 경찰에 유치중인 피검자도 전기에 의거하여 처치하라.²¹⁹⁾

이 명령서는 헌병사령관 송요찬이 광주헌병대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호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살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3년 이상의 수형자는 6월 27일 밤부터 6월 28일 새벽까지 전주형무소 뒤에 있는 공동묘지에 굴을 파서 사살시켰다. 광주형무소의 경우 1950년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헌병들이 형무소에 몰려와서 재소자들을 트럭에 싣고 산으로 끌고 가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일렬로 세운 채 총살하였다. 총살 장소는 광주시 광산군 극락면 불갱이고개를 비롯하여 광주 교외의 광산군 지사면 장고봉, 석고면 도등고개, 대천면 한뫼재, 광주시 학동3구 밀양동고개 등 5군데이다.²²⁰⁾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23일 석방되어 나온 강위옥은 3년 이상 수형자들은 다 죽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광주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남원면 의귀리 출신 현아무개는 수장되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도 기억하였다.²²¹⁾

④ 재소 중 옥사 희생자

4·3사건 관련 재소자 가운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인해

219) 『朝鮮人民報』, 1950년 9월 5일.

220) 호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실태에 대해서는 신경득, 『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살림터, 2002, 165~186쪽을 참고하였다.

221) 姜渭玉(86세, 제주시 월평동, 당시 좌익단체원, 2001. 12. 15. 채록) 증언.

병사하거나 미결수로 재판 대기 중에 있다가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인천형무소에서는 이질 전염병이 유행하여 많은 재소자가 사망하였다. 같은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애월면 수산리 출신 양상원, 제주읍 연동리 출신 강봉남 등이 병으로 사망하였다.²²²⁾ 문달천은 광주형무소에 복역 중이다가 1949년 2월 24일 인천소년형무소로 이감되었는데, 1949년 3월 5일부터 심장 쇠약으로 치료 중 1949년 5월 3일 형무소 내에서 사망하였다.²²³⁾ 마포형무소에서 옥사한 재소자로는 『마포형무소 수용자신분장』과 『마포형무소 재소자명부』에 김태경(49.10.15), 김용생(49.8.13), 김윤복(49.9.8) 등이 확인된다(괄호 안은 사망 일자).

대구형무소에서도 많은 인원이 병으로 죽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대구형무소 종신형자등기부』·『대구형무소 수용자신분장』 등에 보이는 ‘병사’자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사망 월·일. 가나다 순 정리).

1949년	1950년
강두철(8.22) 강연수(10.21) 고병화(6.1) 고화춘(12.14) 김명집(8.13) 김봉수(4.5) 김성수(3.27) 김영규(7.22) 김의형(날짜미상) 박상훈(7.18) 부오경(11.8) 부왕색(7.25) 오병춘(8.13) 이철수(6.27)	강기우(5.10) 고석진(5.1) 고완철(6.3) 김차환(3.4) 문창우(3.22) 문철희(1.13) 변기상(4.4) 부삼림(4.3) 오재호(4.14) 채홍훈(6.3) 현지옥(7.15) 현태훈(1.28) ※ 변기삼(51.5.7)
14명	13명

부산형무소에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부터 9월말에 이르기까지 5,000여 명에 가까운 재소자가 운집하여 포화상태가 되었다. 4~5명 들어가면 죽할 감방에 40여 명의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한여름을 지냈던 만큼 재소자들의 체력·영양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이곳에서도 제주출신 재소자들이 병으로 죽어갔다. 『부산형무소 재소자명부』에서 확인되는 사망자는 다음과 같다(사망 연도는 모두 1950년임. 괄호 안은 사망 월·일. 가나다 순 정리).

222) 朴東守 증언 ; 金正湜(70세, 제주시 연동, 2000. 12. 12. 채록) 증언.

223) 『1949년도 광주지방검찰청 서무예규』(정부기록본존소 소장).

강군호(11.9) 강삼룡(10.1) 강상추(11.2) 강영반(12.5) 고경옥(10.18)
 고두식(11.7) 고희영(10.3) 김봉수(10.27) 김성익(5.13) 김인식(10.29)
 김창희(8.29) 김홍영(10.27) 부태진(5.28) 양성준(10.26) 양집중(10.10)
 오두찬(10.9) 윤치만(11.6) 이경수(9.15) 현양휴(7.29) 총 19명

부산형무소에서 마산형무소로 이감된 150여 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말라리아·폐결핵·영양실조 등으로 죽어갔다.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 중인 『마산형무소 수용자 신분장』에는 1951년, 1952년 2년 동안에 ‘사망 출소’한 제주출신 53명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사망 출소 날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사망출소 월·일. 가나다 순 정리).

1951년	1952년
강군평(2..25) 강동진(8.5) 강준표(11.29) 강철문(10.9) 고상빈(2.9) 고순학(12.18) 고종권(12..24) 김기택(3.14) 김두만(6.29) 김병국(3.21) 김봉옥(8.26) 김상언(3.21) 김석훈(3.26) 김태부(1.27) 문규업(6.14) 박관식(6.1) 박두삼(10.4) 부정식(11.14) 서수남(8.20) 서태영(6.27) 송창대(9.8) 신호근(5.26) 양동환(8.9) 양봉옥(3.11) 양신석(3.9) 양원규(4.8) 양창림(2.18) 오능주(6.4) 오문옥(3.29) 오성용(10.3) 오인표(7.27) 오태완(6.6) 이묘생(12.25) 이영두(5.27) 임태권(7.10) 진송하(7.10) 한기섭(3.19) 한인수(4.19) 한재추(9.21) 한정생(10.29) 현경호(3.19) 현상선(3.17) 현상섭(6.4) 현상연(6.7) 현상호(7.25) 현창우(6.23) 홍술생(7.29) 홍이표(5.8)	강상부(2.20) 고병일(3.8) 김성방(4.25) 김승균(2.10) 이갑생(3.21)
48명	5명

한편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4·3사건 관련 미결수들 가운데 광주형무소·경찰서 유치장에서 재판을 대기하고 있다가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판기록을 통해 광주형무소 및 제주경찰서에서 사망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두윤(49.1.10 제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으로 공소기각)
 양천중(광주형무소 재감 중 사망으로 50.1.19 공소기각)
 김원선(위와 같음)

장우송(50.1.9 광주형무소에서 사망)
김부생(50.1.10 광주형무소에서 사망)
오원보(50.1.22 광주형무소에서 사망)

다. 고문 실태

제주4·3사건 당시 우익단체에 가담하지 않은 청장년들은 수시로 군부대·경찰서·우익단체 사무실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았다. 이때 이들에게는 극심한 고문이 가해졌다. 제주도에서 3·1사건 이전까지 경찰의 고문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3·1사건 이후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의 좌익단체원 체포·구금·취조는 일상사가 되어 갔다. 좌익활동을 하던 청년들은 이를 피해 일본·내륙지방으로 탈출하였다.

좌익단체 청년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1948년 2·7사건을 거치면서 극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결국 4월 3일 무장봉기 발발의 도화선이 된 김용철과 양은하의 고문치사 사건이 일선 경찰지서에서 일어났다. 부검 결과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경찰의 가혹한 고문 방식이 드러났다. 김용철의 경우 전신을 거꾸로 매달아 곤봉으로 내리쳤으며, 양은하는 고환을 찌르는 고문의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미군정 당국은 관련 경찰들을 모두 군정재판에 회부하여 징역형에 처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한 파장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4월 3일 무장봉기 발발 이후 진압 군·경은 중산간마을을 중심으로 무장대와 연결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전 검거, 강압 취조를 펼쳤다. 취조에는 예외 없이 혹독한 고문이 뒤따랐다. 고문은 무장대 관련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여 즉결처분하거나, 재판에 넘겨 범죄인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 통과 절차였다.

극도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막강한 공권력 앞에 주민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혹독한 고문을 거치고 나면 자신의 방어능력을 상실하고, 육체적 무력감과 더불어 정신적 불안 상태가 초래되어, 이미 작성된 조서에 맞추어 강요된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의 이름이 무의식중에 자백되기도 한다.

4·3사건 당시 고문을 담당한 자들은 주로 경찰관들로서, 이들은 일제 고등계 형사의 고문기술을 습득한 자들이었다. 고등계 형사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의 침병으로써 동족을 감시 탄압하는 것을 고유의 직무로 삼았던 자들이었고, 독립운동의 배후

조직이나 독립투사들의 범죄를 조작해내기 위해 일본인들보다도 더 심하고 빈번하게 자기 민족에게 고문을 자행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고문 방식이 해방 후 일선 경찰조직에 전수되어 각종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었다. 더구나 4·3사건 당시에는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기 전 공판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문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무장대와 내통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수감하여 일상적으로 취조하는 데 고문이 구사되었다.

4·3사건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는 무장대 습격, 토벌대의 중산간 마을 초토화, 마을별 집단 보복 살상 등으로 희생되었다. 이들의 희생은 취조나 수사절차 없는 무분별한 즉결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들은 대부분 군·경 당국의 분류, 취조 과정을 거쳐 집단 사살되었고, 일부는 수사절차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다. 물론 취조 과정에서 무혐의가 인정되어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취조에 고문은 예외 없이 따랐던 것이다.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 제3조에는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고문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느 한 계약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에는 각 충돌 당사국은 최소한 아래의 제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진다. 그 시기 및 장소 여부에 불구하고, 아래의 행위는 금지된다

- 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 나. 인질로 잡는 일
- 다.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폭행, 특히 모욕적이며 비열한 취급
- 라. 정규로 구성된 법원에 의하여 문명 국민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재판상의 보장을 부여하는 재판에 의하지 않은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즉, 4·3사건과 같은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4·3사건 당시 이런 국제협약이 지켜지거나 일부라도 반영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문은 대표적인 국가공권력의 횡포이며, 인권 유린의 사례이다. 고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부도덕한 범죄이다. 고문의 잔재가 남아 있거나 고문피해자를 방치한다면 민주주의, 인권국가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고문이 잔존하는 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왜 필요하며, 국가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근

본적인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4·3사건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고문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제주4·3사건위원회에 접수된 희생자신고서에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고문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기재하였다. 특히 생존 후유장애 신고자 142명 가운데 40여 명이 고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위원회 증언조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3사건 경험자들 상당수가 고문의 피해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겪은 고문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 고문 사례는 무자비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고문의 실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증언을 통해 나타난 사례를 그대로 기록하고자 한다. 그리고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살아 남은 사람들의 실상을 기록한 희생자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를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과거 인권 침해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한다.

1) 고문의 유형

① 즉결처분을 위한 절차

4·3사건 당시 고문은 구금된 자의 피의 사실을 강제로 자백하게 하여 즉결처분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군·경 정보·사찰 담당자들의 착오와 실수로 연행되어도 고문을 거치면 범죄자로 낙인찍혀 총살 현장으로 끌려가는 일이 빈발했다.

○ 강도화 시어머니·시동생 사례

- 입산한 아들과 연락한다고 하여 어머니와 여동생을 구금한 뒤 고문을 가한 사례

(시어머니, 시동생도) 맞기만 해? 그땐 머리고 몸뚱이고 막 맞으니, 머리가 터져서 피가 콧물나고 했었어. 그걸 생각하면 이제도 살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매맞고 머리가 터져 피가 콧물해도, 머느리가 가서 그걸 감싸질 못했어. 그때는 무서워서. 그때는 다 사람이 아니었어. 이제 생각해보면 광(狂)난 개나 마찬가지로였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열리(중문면 예래리)에 잡아다 그 날에 죽어버렸어. 이틀 밤 자서 사흘째. 우리 시동생은 24살이고, 시어머니는 54살이었어. 요만큼도 죄가 없었는데 그냥 잡아다 죽인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해서 살 수 없어.²²⁴⁾

○ 송자은 사례(송희은 증언)

- 1948년 11월 초 신산지서에서 온평리 청년 검속, 고문치사 시킨 사례

신산지서에서 잡아가서, 4~5일만에 성산포에 데려가서 죽여버렸다. 이 두 분 다 같이 잡아가서, 같이 죽이고, 같이 시신처리 했다. 송자은 씨는 얼굴이 막 처참한 상태였다. 얼굴을 칼로 찢어버렸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우리 형은 가슴에 총을 맞아서 한방에 죽어 있었다. (송자은의) 시체를 보니까, 고문 흔적이 말할 것도 없었다. 손바닥에 못을 다 박았던 모양이었다. 시체 손에 못을 박았던 흔적이 있었다. 어떻게 고문을 했었는지.²²⁵⁾

② 재판 회부를 위한 절차

4·3사건 당시 구금된 자들은 주로 군부대 주둔지(초등학교 교사), CIC 취조실, 경찰서, 일선 경찰지서, 우익청년단체 사무실 등에 수감되었다. 1948년 11~12월 대규모 검속기와 1949년 3~6월 입산피난자들의 대거 하산 시기에는 농업학교 천막, 주정공장 절간고구마 저장 창고 등이 임시 수용소로 활용되어 여기에 수감되었다.

당시 구금된 자들 가운데 즉결처분을 면한 사람들은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다.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경찰당국의 조서 작성 과정에서 고문을 통한 자백과 증거 조작이 이루어졌다. 형무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결같이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허위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4·3사건 관련 재판에서 고문으로 인한 허위사실 자백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감형되거나 무죄 언도를 받은 예를 찾아볼 수 없다.

□ 경찰서에서의 고문

○ 박동우 사례

- 대법원에 고문으로 인한 자백 사실을 진술했으나 기각된 사례

警察局 刑事들은 權力을 惡用하여 電氣拷問과 金日成飛行機라는 拷問을 하면서 五日間 晝夜를 六名의 刑事가 交代하면서 잠을 一時도 못 자게 하여 意識을 잃을 程度로 拷問을 하고 被告人이 否認함에도 不拘하고 謀略 證言에 依하여 作成한 것이을 시다.

224) 姜挑花(80세, 안덕면 서광리, 당시 주부, 2002. 7. 11. 채록) 증언.

225) 宋燾殷(70세, 성산읍 온평리, 당시 학생, 2002. 3. 20. 채록) 증언.

警察局 查察係 刑事 金靑龍 警査로부터 被告人 앞에서 證人調書を 받은 事實이 있었는데 檢察廳을 거쳐 起訴 後 一審公判을 받을 때에는 위의 證人調書는 빼서 없애 버렸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辯護人 金泰俊 氏에 委任 一審法院에서 再次 證人調書を 받은 事實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檢事와 刑事 等은 被告人에 有利한 證人調書는 없애버리고 證人申請을 하여도 被告人에 有利할 듯한 證人은 調査조차 않았던 것이올시다. 檢事任이 查察係 刑事室에 出頭하여 取調함으로 對答을 하지 않고 否認하였으므로 檢事께서 二,三事實을 들어보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同日 夜間이 되자 刑事들이 五,六名 모여서 否認하였다고 電氣拷問에 물을 부으며 告白書を 쓰라고 하므로 잠이 와서 못쓰겠다고 한 즉 주진자에 물을 쏟아서 洗面을 시키고 取調書を 보면서 쓰라고 하므로 強制에 못이겨서 本意아닌 告白書を 쓴 것이올시다. 其後 日十時頃 次長檢事任이 出頭하여 刑事들이 둘러싸고 取調를 하므로 恐怖에 떨고 많은 拷問과 五日間 晝夜를 잠 한숨도 못 잔 關係로 무엇이냐고 對答을 하였는지 一切 記憶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送廳 後 檢事取調에서 否認하였으나 檢事書記께서 翰林里 襲擊 當時 警察官으로 現場에 있었다면서 더욱 敵機心을 높이고 高喊을 지르면서 否認을 받아들이지 않고 強權으로 물음으로 本意識을 잃었던 것이올시다.²²⁶⁾

○ 고윤섭 사례

- 경찰서에 구금되어 고문으로 허위사실을 고백하여 유죄형을 받은 사례 1

대나오름에 피신한 보름쯤 후 토벌이 완화되었는지 귀순하라는 소문이 들리더니 하루는 군인들에 의해 굴이 발각, 포위되어 모두 잡혀갔다. 처음엔 원정통에 있는 헌병대사무실에서 신분조사를 마치고 큰 죄가 없으니까 일도리 공회당에 수용되었는데 하룻밤을 자고 감찰청으로 끌려갔다. 우리 형님과 사이가 좋지 않던 정보원이 사적인 감정으로 나를 사상이 있다고 밀고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풀려났는데 나는 10여일 넘게 고문을 당했다. 충상을 입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온갖 고문을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1구서(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광주지방법원에서 1950년 2월에 재판을 받아 7년형을 언도 받았다. 나는 도저히 억울해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런데 6·25가 나자 부산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서울 수복 후 다시 대구로 이감되어 수형 생활을 하다가 1956년 6월 진주형무소에서 만기출소했다. 항소는 전쟁통에 포기했다.²²⁷⁾

226) 大法院 1955년 11월 29일, 宣告 1955년 刑上 第326號.

227) 高潤燮(75세, 제주시 봉개동, 당시 농업, 2001. 6. 29. 채록) 증언.

○ 양규석 사례

- 경찰서에 구금되어 고문으로 허위사실을 고백하여 유죄형을 받은 사례 2

서귀포경찰서에서 한 달포 살았어요. 그리고, 제주경찰서에 넘어갔어요. 제주경찰서로 넘어오니깐, 여기서도 또 고백하라고만 하니깐, 사실이 이렇다고 또 애길 했어요.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줘요. 당시 고문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눈에 조금만 거슬리면 잡아다 두드리고. 말만 조금 잘못해도 잡아다 때릴 시절이니깐. 제주경찰서 유치장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이제 제주경찰서에서도 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재판소로 넘긴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주로 간 거죠.

고문이라는 것은 말 할 수도 없는 것이었지. 안덕지서에서는 몽둥이로 막 개 패듯 두드려 맞았지. 몸뚱이가 막 시커멓게 되고, 또, 장작을 다리에 끼워서 고문을 하기도 했고.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전기고문을 했어요. 손가락에 전기 반지를 끼워서 순경이 단추를 누르면, 사람 오장에 불이 나요. 또 물 고문도 받았죠. 물 고문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큰 통에 물을 담아서, 얼굴을 물 속에 담그는 것이다.²²⁸⁾

○ 강서수 사례

- 장기간 미결수로 경찰서에 수감되어 고문을 받은 사례

(북촌리 굴에 숨어 있다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초가집 하나 지은 옆에 물이 있으니까, 물을 떠다가, 고춧가루를 주전자에 타고, 우리를 수감채워서 거꾸로 매달아서 고추 물을 코로 넣고, 우리를 막 밟고 해서 한 번 죽여 놓았다. 이제 제주경찰서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잡아놓고 감방 안에 넣어서 조금 있으니까 우리를 불러냈다. 작살을 깔아놓고, 우리를 꿰려놓고, 경찰관들이 막 밟았다. 그렇게 고문하고, 감방 문을 열어서 구둑발로 우리를 쳐 넣었다. 그렇게 한 몇 시간 쉬엄쉬엄 하며 계속 한 거다. 거기 가서 닉 달인가 석 달인가 살았다. 제주경찰서에서. 그리고 결혼했느냐, 자식이 있느냐를 물어서, 고문을 하고. 너구리 고문, 비행기 고문을 받고.²²⁹⁾

○ 고만형 사례

-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서에 도장을 찍은 사례 1

서귀포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물 고문하고 무진장 때렸다. 어떻게 내가 제 정신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경찰들이 내가 빨갱이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한

228) 梁圭錫(79세, 안덕면 화순리, 당시 농업, 2000. 12. 15. 체록) 증언.

229) 姜西守(77세, 조천읍 북촌리, 당시 농업, 2000. 12. 13. 체록) 증언.

게 아니냐, 이렇게 작성한 것 같다. 서귀포에서는 주로 물 고문을 많이 했다. 물을 그냥 막 먹이면서 묶어놓고 고무 같은 것으로 매질을 했다. 쇠줄몽둥이. 때리면 살에 착착 붙는 것이다.

제주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잠도 안 재우고, 매를 때렸다. 여기서도 고문 받아 죽은 사람이 많다. 하효 사람 송아무개도 고문으로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고등군법회의에 우리를 넘겼다. 그때 당시에 징역 몇년형이다.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경찰이 작성한 그대로 넘겨버렸다. 제주경찰서에서는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무줄 긴 걸로 머리 위를 막 때리면서, 취조를 계속 하고, 밥도 주지 않았다.

물 고문을 했고, 잠을 안 재웠다.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쇠줄몽둥이로 착착 때렸다. 내 손가락은 제주경찰서에서 고문 하면서 손목을 막 비틀어버려서 비틀어져 버렸다. 나는 숨기는 것이 없었다. 도장은 경찰관들이 어거지로 막 찍었다. 안한 것도 했다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 버린 거다.²³⁰⁾

○ 강조행 사례

-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서에 도장을 찍은 사례 2

제주경찰서에 고성리 주민 50여 명이 잡혀갔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감방 제일 안 쪽으로 가서 있었다. 문 입구에 있던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매를 많이 맞았다. 곤봉으로 한 사람이 다섯 대씩 때리면서 지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교대하였다. 신엄지서 습격, 방화, 살인한 것으로 해서 매일 취조를 당했다. 습격한 것을 말하라고만 했다. 가지도 않은 것을 자꾸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 두드리다가 전기 고문까지도 받았다. 그때는 내가 전기를 손가락에 끼우는 것까지만 알고 그 다음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석방되고 나온 후에 동네 사람이 '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다. 그때 '미 고문관이 들어와서 살아났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전기고문 받은 기억이 없었다. 실신해 버렸던 것이다.

그런 취조를 15일 동안 받았다. 그냥 뭐라고 써서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찍어주어서 신엄지서 습격에 가담한 것으로 돼버렸다. 그 후 검사 취조를 당할 때는 절대 안 했다고 했다. 경찰에서 뭐라고 써서 도장 찍으라고 하길래 찍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 검사 취조에는 아무래도 그대로 적은 모양이었다.²³¹⁾

230) 高萬亨(72세, 서귀포시 하효동, 당시 농업, 2000. 12. 20. 채록) 증언.

231) 姜朝行(78세, 애월읍 유수암리, 당시 광주형무소 수형인, 2001. 8. 23. 채록) 증언.

○ 김옥녀 사례

-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서에 도장을 찍은 사례 3

나는 재판 받을 때도 버틸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냥 조사 받을 때 말한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죠. 고문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죄가 조금은 가벼워질 건데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그냥 거기서 말한 대로만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될 거라는 생각만 한 것이죠.

난 '다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 죽었냐'고 하면 '죽었다'라고도 할 판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아주 어리석었어요. 재판 받을 때라도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건데. 옷도 모두 벗겨서 심한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안 했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기고문을 그렇게 받으니까 난 아기도 못 낳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약을 잘해줘서 용케 아기는 낳긴 했습니다. 난 그때 쇠쫓매로 맞은 것 때문에 지금도 허리 양쪽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양쪽 엉치가 다 아픕니다.²³²⁾

○ 장동석 사례

- 경찰의 고문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시인하지 않은 사례

제주경찰서 5감방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보니 약 2평되는 감방에 30명이 들어앉은 것이다.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1948년 6월 중순이다. 더워서 입으로 숨을 쉬었다. 취조를 시작하는데 광지리 전신주를 자르고 도로차단을 했다면서 그대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전기취조까지 다 했다. 그때는 마침 중앙에서 일제때 형사들 50여 명이 파견됐었다. 그들이 나를 취조했다. 일주일 동안 고문당했다. 달아매서 물을 붓고 손에 전선을 감아서 전기취조를 당하고 장작으로 찼다. 내가 건강하고 체구가 좋았다. 아마도 약자 같으면 그 때에 죽었을 것이다. 유도장에서 취조를 받았는데, 피가 나서 생피냄새가 진동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마니로 덮여 있었다. 비참한 현실이었다.

내가 바른 말하고,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제주읍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지에서의 전봇대 절단이나 도로차단을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을 내가 했다고 고문을 당하는데. 차마 그 고통을 참지 못하겠더라. 온몸이 핏독이 올라 새까맣게 됐다. 두 군데 핏독이 몰리니까 농이 생겼다. 중앙여관 자리에 적십자병원이 있었다. 거기 가서 수술을 받고 엽혀 다니면서 고문을 받았다.²³³⁾

232) 金玉女(76세, 제주도 일도2동, 당시 주부, 2002. 6. 11. 체록) 증언.

233) 張東錫(73세, 제주도 용담1동, 당시 오현중학생, 2001. 9. 21. 체록) 증언.

□ 농업학교·주정공장 등 수용소에서의 고문

1948년 말과 1949년 3~6월에, 농업학교 천막, 주정공장 절간고구마 저장 창고 등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도 없이 군법회의 형식을 빌어 일괄 처리했다. 법적인 재판 심리 과정이 없이 경찰의 고문이 수반된 취조 조서만 가지고 이들을 범죄인으로 내몰았다.

임시수용소에서의 취조는 군부대 정보과 소속 군인들과 사찰계 형사가 직접 담당하였다. 이 취조 결과를 가지고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죄수상황보고서』를 만들었다.

당시 제주읍 주정공장 절간고구마 창고에 수감된 하산자들에 대해서는 사찰 담당 경찰관들이 별도의 수사대 사무실을 설치하여 취조를 실시하였다. 당시 특별수사대 반장으로 있으면서 주정공장에서 취조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은, “우리는 고문할 때 고행사람들이라서 될 수 있으면 피했다. 육지에서 온 경찰들은 고문을 많이 했어. 고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경찰은 여자들 옷을 다 벗겨서 천장에 매달아서 고문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³⁴⁾ 경찰은 수감자들에 대해 갖은 고문을 실시하여 무장대와의 연관성을 억지로 자백하게 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군에 넘겼다.

○ 강상문 사례

취조를 받았는데, 몇 번 기절했다가 일어나긴 일어났다. 취조라는 게 별거 아니다. 개인감정으로 잡아다가 두드려 패는 것뿐이지, 조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쓰니까. 경찰이 취조하는데, 군인은 감시만 하고. 쓰는 건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형을 받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죄에 의해 형이 확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산에서 무장대로 했던 사람도 있고, 촌에서 완전 무식해서 땅이나 파던 사람도 끼어 있고. 어떤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그저 대략해서 인원 수만 채운 것이 아니냐고 본다.²³⁵⁾

○ 강순주 사례

농업학교에 수감된 동네 분들이 고문에 못 이겨서 우리까지 같이 끌어들인 거예요. 나중에 동척회사에서 조서를 받을 때, 거기는 염라대왕이 누구를 잡아오라고 해서 보낸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나보고 뭐 했냐고 하면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234) 金秉澤(77세, 제주시 용담1동, 당시 경찰, 2002. 2. 8. 체록) 증언.

235) 姜尙文(73세, 제주시 월평동, 당시 피난입산자, 2000. 12. 13. 체록) 증언.

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해요. ‘저는 결백합니다. 제가 뭐 때문에 거짓말합니까?’ 라고 하니깐, 저를 책상에 매달아서 책상을 빼버리는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기고문을 하는 겁니다. 전기고문을 해도, 사실 한 게 없거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안 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어요.²³⁶⁾

○ 김춘배 사례

1948년 10월경에 검거됐다. 그때는 아주 무서운 때였다. 농업학교에 천막을 몇십 개를 쳐서 거기에 수용시켰다. 우리 눈에는 고문으로 죽은 사람도 많이 보였다. 일단 취조가 끝나면 천막에 들어가서 일어나질 못했다. 결국 못 일어나서 죽었다. 그때 취조관들이 술을 먹었는지 어졌는지 하여튼 보통 정신으로 안보였다. 냄새도 나고, 탁대위가 지휘자인 것 같았다. 배라를 뿌리지 않았느냐고 하였다. 나도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이틀 동안은 일어나지도 못했다. 죽는 줄만 알았다. 고문으로 민청에 가입한 것으로 억지 자백했다.²³⁷⁾

○ 양공옥 사례

(제주경찰서에서) 전기고문 지독하게 받았어. 그래서 후유증으로 지금 허리가 아파서 허리 못쓰고 요즘 병원에 치료받고 있어. 각목으로 막 매다 때렸다. 전기취조는 전깃줄을 매어 다르륵 돌리면 신경, 오장이 마비되었다. 한 시간을 취조받으면 사람이 축 늘어졌다. 잘못된 게 전혀 없다고 해서 견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버티다 매에 죽는 사람이 많았어.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죽는다고 하니깐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이런 정도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백을 했다.²³⁸⁾

③ 관련자 검거를 위한 절차

도피자 검거를 위한 취조

○ 김계생 사례(동생 김갑길 증언)

- 일본으로 도피한 동생의 거처를 확인하기 위한 취조

236) 康順周(70세, 표선면 가시리, 당시 피난입산자, 2002. 5. 29. 채록) 증언.
 237) 金椿培(76세,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당시 상업, 2001. 8. 25. 채록) 증언.
 238) 梁公玉(72세, 한림읍 금악리, 당시 회사원, 2002. 6. 12. 채록) 증언.

언니(김계생)가 살을 자르면 바른 말 할 줄 알았는데 모른다고만 했던 것이다. 살이 찢겨지고 나중에는 실어다가 정방폭포에서 죽어버린 것이다. 살점을 도려낸 것을 봤다. 가서 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무엇으로 살점을 도려냈는지 허벅지 등이 마구 도려져 있었어.²³⁹⁾

관련자 이름을 자백받기 위한 취조

○ 양경수 사례

난 소개 내려온 후 이쪽저쪽에 시달리는 데 지쳐 경찰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서 꽤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그가 권유하기에 바로 찾아갔지요.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비명 소리가 귀를 찢었고 갖가지 고문은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마음이 싹 가셔서 경찰 지원을 포기했어요. 여자들은 일단 홀랑 벗기고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름 빼앗기지 말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즉 끌려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앞서가거나 근처에 있어서 그의 기억 속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가혹한 고문을 받게 되면 아무 이름이나 튀어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러면 줄지에 폭도가 되는 겁니다.²⁴⁰⁾

④ 고문 방식

다양한 고문 방식

○ 김생민 사례

1948년 1월경 검거당했다. 누가 무슨 고문을 얼마만큼 받았다 해도 아마 나만큼 받은 사람 없을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장장 1주일에 걸쳐 고문을 당했다. 집에서 잡혀서 고문을 시작했다. 나무토막을 다리 사이에 꽂아서 양쪽으로 사람이 앉아서 시소처럼 타고서 고문을 했다. 소라껍데기를 바닥에 깔아서 그 위에 앉혀놓고, 뼈가 다 상했다. 조천지서에 가니까 쇠쫓매로 때리고, 물고문을 엄청나게 하고, 하여튼 초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제주경찰서로 가서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을 했다. 고문의 종류를 말하자면 엄청난 고문을 당했는데, 비행기 타는 것, 전기고문, 뜨거운 물고문,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것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쉬지 않고 했다. 나중에는 부을 대로 부어서 피부가 땡기면 짹 짜질 정도로 부었다.²⁴¹⁾

239) 金甲吉(79세, 제주도 봉개동, 당시 불교신도, 2002. 4. 23. 채록) 증언.
 24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⑤, 전예원, 1998, 158~159쪽.
 241) 金生玟(77세, 제주도 연동,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 연락책, 2001. 7. 13. 채록) 증언.

□ 물고문

○ 김봉익 사례

40일간 경찰서 유치장 생활을 했어. 그때는 고문이 아주 심했어.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주전자에 물을 비워서 코로 부어. 그러면 실제 (좌익활동을) 안 했으면서도, 일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지.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²⁴²⁾

○ 김규백 사례

오라3구로 내려간 후 3일만에 경찰에 잡혀 갔다. 잡혀서 칠성동에 반지점이라고 하던 기동대에 잡혀 갔다. 기동대 사무실에서 물고문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보니까, 차라리 총 맞아 죽는 게 낫다 싶었다. 물을 코에 부으면서 고문을 했다. 안에는 사람들이 100명도 넘게 잡혀와 있었다. 방망이로 매를 차례차례 때리고 있었다. 잘 잘못을 물어보지도 않았다.²⁴³⁾

□ 전기고문

○ 백창원 처 사례(김계순 증언)

신임에 백창원이라고 좌익 활동한 사람이 있었다. 아내가 딸 하나 낳고 산에 있었다. 백창원이는 총맞아 죽고 아내는 잡혀왔다. 경찰들이 일본 놈들 하는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취조를 했다. 옷을 훌쩍 벗겨 놓고 매일이다시피 전기 취조를 했다. 사람이 매일 두세 번씩 전기 취조를 당하면 죽어지는지 살아지는지 모른다.²⁴⁴⁾

○ 신태호 사례

군인들 5~6명과 함덕으로 내려갔다. 그 날 밤에는 고문취조를 하는데, 지금은 전기취조를 전기로 하지만, 그때는 손가락에 쇠줄을 잡아맸다. 쇠줄을 놓아 저기서 팽팡 돌리면 사람이 그냥 자빠져서 돈다.²⁴⁵⁾

242) 金鳳益(79세, 성산읍 신양리, 당시 교원, 2002. 3. 19. 채록) 증언.

243) 김규백(76세, 제주시 연동, 당시 자위대원, 2001. 8. 6. 채록) 증언.

244) 金葵順(70세, 애월읍 용흥리, 당시 우익단체원, 2001. 8. 22. 채록) 증언.

245) 愼太浩(72세, 제주시 일도2동, 당시 도피입산자, 2001. 10. 17. 채록) 증언.

○ 신수용 형 사례(신수용 증언)

형이 3·1절 사건에 연행되었을 때 전기고문을 받았다. 전기고문은 지금 전화기 돌리는 것이 있는데, 군대 것이 있다. 228 전화기라고, 묶어서 돌리면은 전기가 다르
록 한다.²⁴⁶⁾

○ 강태중 사례

고문은 여러 종류가 있었다. 나도 고문을 많이 당했다. 49년 음력 초하룻날 하귀
파출소에 붙들려 가서 전기고문을 당했다. 전화선을 때었다. 야전 전화기의 전화선.
속으로 '전기고문이구나' 생각했다. 말만 들었지, 어떤 것인지도 몰랐다. 화장실에 갔
다 온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했다.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할까봐 그랬다. 전화선을 돌리
니까 1분이면 쓰러진다. 그러면 혀를 물고 자빠진다. 5분쯤 있으면 두드려서 깨어나
라고 하고 다시 전기를 돌린다. 5~6회를 반복한다.²⁴⁷⁾

□ 구타

○ 김창석 증언

48년 12월경에도 안덕지서에 잡혀갔어. 그때 응원대가 취조를 했어. 응원대에게
뺨 맞아서 이빨도 부러지고, 어금니도 하나 빠지고, 입으로 피가 쏟아졌다. 그 사무
실에서 스토브를 소나무로 땔 때인데, 소대장이 장작으로 후려갈겼어. 그래서 목 부
위가 터져서 피가 사무실에 흥건해졌다. 그때 나는 기절해버렸다. 그렇게 해서 유치
장에 집어넣었는데, 견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했다. 지금
도 이쪽 다리는 못 쓰고 한쪽 팔도 못 쓴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뇌경색증 걸려서 다
리와 팔을 잘 못쓰고 머리도 어지럽다.²⁴⁸⁾

○ 김기생 증언

동척회사 안에서 취조를 하는데, 순경들이 양쪽에서 사람을 잡아놓고 이만한 몽둥
이로 막 때리는 겁니다. 여기 저기 가리지 않고 막 때렸습니다.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²⁴⁹⁾

246) 신수용(69세, 제주도, 당시 학생, 2002. 5. 16. 채록) 증언.

247) 姜太仲(70세, 애월읍 하귀2리, 당시 단국중학교 학생, 2001. 8. 22. 채록) 증언.

248) 金昌石(82세, 안덕면 감산리, 당시 우익단체원, 2002. 7. 10. 채록) 증언.

249) 金己生(73세, 제주도 이도1동, 당시 주부, 2002. 4. 2. 채록) 증언.

○ 김인평 증언

(1948년 1월 22일) 밤중에 경찰에 연행되어 트럭에 실려서 감찰청에 가서 죽게 맞았다. 나는 열흘 살고 나오고, 동생은 보름 살고 나왔다. 고문이란 고문은 다했다. 소련비행기를 태운 후에 내려놓고 하는 얘기가 '남로당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것이었다. 소나무 장작 두 개를 들어서 막 두드려놓은 다음 도장찍은 것을 내놓고 '이렇게 가입한 것이 있는데 왜 바른말 안 하느냐'고 했다. 남로당 가입신청서였다. 내가 도장 찍었던 바도 없고 남로당이 어떤 건지 북로당이 어떤 건지 모를 때였다. 지금도 한이 맺힌다. 그때 어깨가 부러지고 죽지 않으니 산 것이다. 장작으로 때리니까 부채빠라고 한 것이 금이 가서 몇 해 고생했다.²⁵⁰⁾

○ 양관표 사례(고경흡 증언)

양관표는 산에 안 올랐다. 나머지 사람들은 일본 등으로 도피해 버리고. 그런데 양관표가 서북청년으로 구성된 특별중대에 잡혀갔다. 나도 같은 시기에 잡혀갔었다. 국민학교 교실마다 다 칸막이해서 취조실을 만들었는데 귀를 대면 다 들렸다. 피의자들이 막 두드려 맞으니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나도 현장을 봤는데 눈물겨워서 말을 못하겠다. 그 장면을 보면, 그 어디 동족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서북청년들이 그냥 막 몽둥이로 치니까 뼈가 부서져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 죽어갈 때 그렇다. 호흡이 그르릉 그르릉. 누워 있으면 팔을 들어도 건들건들. (양관표의) 뼈가 다 부서져 버렸다. 생나무로 그냥 막 두드려 패니까. (양관표는 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²⁵¹⁾

□ 비행기 고문

○ 강인옥 사례

한재길이 운영하는 절간 고구마 공장이 있었어. 거기에 가서 고문을 받았어. 김일성 비행기가 아니고 너는 단장이니까 스탈린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하면서 달아뻗어. 거꾸로 달아매서 속옷만 입힌 채 막 때리니까 피가 안 터질 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도 병원 다니는 게 다 그것 때문이야.

머리가 다 어지러운 게 다 그것 때문이라. 그놈들이 각목으로 내 머리를 두드리니까 다리나 등 같은 데는 그때 젊었으니까 괜찮은데, 머리는 그때 맞은 게 아직도 후유증이 있다.²⁵²⁾

250) 김인평(77세, 조천읍 신촌리, 당시 화물선 선장, 2001. 10. 11. 채록) 증언.

251) 高景洽(88세, 한림읍 한림리, 당시 공무원, 2001. 12. 14. 채록) 증언.

252) 康仁玉(86세, 성산읍 시흥리, 당시 시흥리 민보단장, 2002. 3. 28. 채록) 증언.

⑤ 여성고문

○ 이춘형 사례

나는 1949년 1월경 여러 사람과 경찰서와 헌병대로 끌려 다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손을 뒤로 묶은 채 천장에 매달아놓고 때렸어요. 헌병대로 옮겨진 후에는 전깃줄을 엄지손가락이나 뺨에 대는 전기고문을 받았습니다.²⁵³⁾

○ 고난향 며느리 사례

나는 그때 마흔 두 살이었어. 경찰관이 다짜고짜 ‘네 서방 어디 갔나. 폭도질하러 갔지’하고 욕박질렸어. 내 남편은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 계속 살았지. 그렇게 얘기해도 주먹질이야. 경찰은 그 사이에 겁을 먹고 골방에 숨어있던 내 며느리를 걸상 위에 누인 후 배 위에 긴 나무를 깔아놓고 두 놈이 통나무 양쪽에 앉아 ‘네 서방 간 곳을 대라’고 고문했지. 차라리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달려드니 내 뺨을 때리면서 그 짓을 계속했어.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지.²⁵⁴⁾

○ 좌봉 사례

1948년 5월 30일 응원경찰대는 한림면 청수2구를 기습. 마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국민학교 마당에 집결시킴. ‘빨갱이 새끼들’이라며 심하게 구타

“토벌대는 큼직한 장작으로 무지막지하게 때렸어. 그러다가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모두 옷을 훌랑 벗겼지. 나는 당시 마흔 살이었는데 체면이고 뭐고 가릴 여지가 있다. 그냥 옷을 벗으라고 하니 벗을 수밖에. 토벌대는 옷을 벗긴 채 또 장작으로 매질을 했어. 그러다가 싫증이 났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녀 한 명과 총각 한 명을 지명해 앞으로 불러내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강요하는 거였어. 인간들이 아니었지.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가자 주민 4명을 끌고가 총을 쏘아버렸어.”²⁵⁵⁾

○ 김호겸 증언 사례

1948년 11월경 경찰서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의 비명 소리가 나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취조실로 가보니 한 여자가 나체인 상태로 거꾸로 매달

253)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제주4·3연구소 엮음), 역사비평사, 1999, 239쪽.

254) 위의 책, 241쪽.

255) 위의 책, 242쪽.

려 고문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일본도를 들고 가서 화를 냈더니 취조하던 수사대원은 도망가 버렸습니다.²⁵⁶⁾

○ 정순희 사례

둘째 오빠가 행방불명 돼버리자 우리는 ‘산폭도 집안’으로 몰렸습니다.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나까지도 토벌대에게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코와 입에 부어댔습니다. 입을 다물면 쇠붙이로 이빨 사이를 억지로 벌리는 바람에 이가 다 부러졌습니다.²⁵⁷⁾

○ 차경구 사례

난 ‘거센새미오름’ 주변 천막에 보름을 갇혀 있으면서 고문을 많이 받았어요. 뒤로 몽둥이를 끼운 채 무릎을 꿇려놓고 위에서 마구 밟았습니다. 지금도 잘 걷지 못해요. 난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사정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유산됐습니다.²⁵⁸⁾

○ 홍경토 증언 사례

창고 안에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갇혔는데 무자비한 구타와 함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벌어졌습니다. 남녀를 불러내 구타하면서 성교를 강요했고 여자의 국부를 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그 썩는 냄새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난 그들이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²⁵⁹⁾

○ 고성중 증언 사례

(성산포) 주정공장 창고 부근에는 부녀자와 처녀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청은 여자들을 겁탈한 후 고구마를 쭈셔대며 히히덕거리기도 했습니다.²⁶⁰⁾

256) 앞의 책, 243쪽.

257)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⑤, 전예원, 1998, 194쪽.

258)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제주4·3연구소 엮음), 역사비평사, 1999, 244쪽.

259) 위의 책, 246쪽.

26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⑤, 전예원, 1998, 69쪽.

○ 한경자(김민학 처) 사례

부인 한경자는 4·3 때 서청이 잡아가서 젓가슴을 불로 고문했다.²⁶¹⁾

○ 이삼룡 처 사례(이삼룡 증언)

48년 2월 중순경 내가 체포될 무렵 아내도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태아를 사산했다.²⁶²⁾

2) 고문·구타 후유증

4·3사건위원회에 신고된 후유장애자 135명 중 고문·구타로 인한 피해자는 40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성명, 당시 거주지, 생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채계순(제주시 이도2동, 1925년생) : 1948년 12월 학교에서 연설이 있다고 동네 사람들을 모이라고 해서 나가 봤더니 무장대에게 음식과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았음. 당시 임신 6개월의 몸이었는데 상당한 고문과 구타로 8개월만에 사산됨. 그 당시 후유증으로 50여 년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
- 정대화(성산읍 고성리, 1930년생) : 신양리에서 가족과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1948년 1월경 제주경찰서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남로당 연락소 연락원 죄목으로 제주도 검찰청 유치장에 구속시킨 후 52일 동안 심문하는 과정에서 심한 고문으로 몸이 약해져 난치병인 폐결핵이 발병하여 5~6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재발하여 지금까지 완치가 안되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고통 받음.
- 임복순(구좌읍 김녕리, 1923년생) : 당시 김녕리에서 잡화상회를 운영하던 중 1948년 11월 21일 김녕지서로 서북청년회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고 왼쪽다리에 총상을 입음.
- 이영호(한림읍 귀덕리, 1928년생) : 당시 민보단 연락책임자로 1948년 12월 5일 무장대의 마을 습격 사실을 알리러 한림지서로 갔는데, 토벌대가 무장대의 앞잡이라고 하며 갖은 고문을 가하다 동년 12월 8일 수원국민학교 서남쪽 들판에서 총에 맞았으나 다행히 손에 부상만 당하고 목숨을 건짐.
- 이복희(대정읍 하모리, 1932년생) : 첫알오름에서 죽은 동생 이동원이 행방불

261)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I, 도서출판 한울, 1989, 59쪽.

262) 李三龍(79세, 日本 東京都 荒川區, 당시 좌익단체원, 2002. 7. 11. 채록) 증언.

명되자 군인들이 나를 대촌병사로 끌고가 동생의 행방을 대라면서 구타하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 집어넣고 전기고문도 가함. 열흘 동안 고문을 받으면서 대촌병사 감옥 안에 있었는데, 그때 입은 고통으로 지금도 사지가 떨리고 온몸에 무언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면 사족이 굳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음.

- 신춘도(구좌읍 동북리, 1933년생) : 1948년 경찰에 연행되어 다리 부분에 총탄을 맞고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다리가 심하게 아프고 매일 병원신세를 지고 있음.
- 김옥녀(조천읍 함덕리, 1927년생) : 4·3사건 당시 함덕리에서 어머니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함덕지서에서 나와 어머니, 동네할머니, 그 아들 등 4명을 끌고가 어머니와 나는 산쪽의 이모부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모부의 행적을 대라고 하여 옷을 벗기고 알몸 상태에서 손가락, 젖꼭지에 전기 고문을 하고, 물 고문 및 몽둥이로 전신을 구타당하였으며, 실신 상태가 되자 관덕정 경찰 수사계로 인계된 뒤 1950년 11월 14일 재판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음.
- 김복남(성산읍 온평리, 1940년생) : 1948년 음력 12월 25일경 9연대에 잡혀 군인들에게 총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됨.
- 강순덕(조천읍 조천리, 1940년생) : 4·3사건 당시 8세 나이로 식구들과 오름 동굴에서 피신생활을 하던 중 토벌대에 발각되어 도망가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깔려 왼쪽 다리 팔이 마비된 상태에서 군인에게 끌려가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왼쪽다리, 팔이 마비되었음.

라. 연좌제 피해

1) 연좌제 피해실태

제주4·3사건의 또 다른 아픔은 당시 사망·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유가족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사태의 와중에서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 유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았다. 제주사회 공동체에 엄청난 상흔을 남긴 4·3사건의 악몽이 반세기 가까이 유족들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제주도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려야 했다.

근대 이후 형법에서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행위자 자신에게만 물음으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근대법이 확립되기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단지 가족원이나 근친 중의 누군가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행위 당사자와 함께 그 부모·처자·형제를 비롯한 친족에게까지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를 일컬어 연좌제(連坐制)라 하였다.²⁶³⁾

한국사회에서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철폐되었다. 그러나 연좌제는 일제시대 『요시찰명부』를 통한 감시를 거쳐, 해방 후 남북의 체제 대립상황 속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특이자’를 걸러내는 사회적 관행으로써 사라지지 않고 공공연히 실시되어 왔다.

주로 신원조회를 통한 신분상의 불이익과 감시를 통해 이루어졌던 연좌제는 당사자들에게 사회생활의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연좌제의 적용 대상은 4·3사건을 비롯한 민간인학살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 월북자나 부역자 가족, 국가보안법 등 간첩 혐의 연루자의 가족 등이다. 이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연좌제를 통해 피해를 본, 분단체제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4·3사건의 경우 이미 1950년 8월에 27,000명의 보도연맹원과 5만여 명의 사건 관련자 가족들이 사찰당국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었다. 제주도 경찰·행정당국에는 당시 관련자 명부가 따로 비치되어 각종 신원조회에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경찰이 관리하다가 파기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어 최근에 공개된 『형살자명부』나 각 읍·면사무소에 남아 있는 『전과자명부』 등이 그것이다. 『형살자명부』는 각 리별로 4·3사건으로 총살·징역·압송된 사람들의 명단, ‘숙칭’ 일시, 장소 등을 적고, 별도로 유가족 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명부이다. 이 명부는 그 작성·비치 목적이 4·3사건 관련자의 유가족 관리를 위한, 즉 연좌제 적용 문서인 것이다.

1960년 6월 6일 국회 양민학살사건조사단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4·3사건의 진상 조사를 실시할 때, 유족 장갑순은 “저는 학도병으로 갔다가 1951년 11월 24일에 명예제대로 나왔습니다. 교원자격증을 얻으려고 경찰서에 신원증명을 하러 갔더니 신원증명에 좌익사상의 자제라고 적혔습니다. 호적부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원증명을 못했습니다”라고 하여,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연좌제 피해 실상을 밝혔다.

263) 김영범, 「연좌제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의미망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24집, 1990, 324쪽.

제주도민 대다수는 4·3사건으로 인한 연좌제 피해 경험을 갖고 있다. 2000년 8월 13일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4·3사건 유가족 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86%가 연좌제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유가족이 겪은 연좌제 피해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복수 응답).

피 해 사 례	비율(%)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26
사관학교 등 각종 입학시험에서	23
국·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직 또는 승진에서	18
군·경찰에서 승진 등에 불이익 처분	16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 과정	8
일상생활에서 감시	30
각종 신원조회	60

이러한 연좌제의 실시는 4·3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과거 4·3사건으로 인한 쓰라린 기억 위에 현재를 살아가는 고통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의식을 확대 재생산하였다. 제주도는 혈연공동체 사회 성격이 강한 지역이므로 연좌제가 제주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지대했다.

뒤늦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연좌제의 폐해를 인식했는지 몰라도, 1980년 8월 1일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는 국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어진 신원기록을 일제히 정리하는 한편, 연좌제를 폐지할 것을 발표했다.²⁶⁴⁾ 당시 발표에서 신원기록 정리 대상은 ▲6·25 당시 착오나 과장된 소문 등을 확인 없이 기록한 내용 ▲적 치 하에서 생명보존책으로 부득이 부역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것 ▲위의 두 가지 기록이 있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국가를 위해 충실하게 복직하는 경우 ▲기타 기록에 있어서도 현재의 대공상 위해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으로 정해졌다.

1981년 3월 24일 내무부는 후속 조치로 연좌제 폐지 지침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연좌제의 적용은 사라지게 되었다. 제주경찰청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4·3사건 관련 자료를 폐기 처분했다고 하였다.²⁶⁵⁾

264) 『朝鮮日報』, 1980년 8월 2일.

265) 1999년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국회의원이 “4·3사건 관련 형살자명부가 보존되어 이를 근거로 연좌제를 적용,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므로

1980년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2조 3항)으로 연좌제 적용의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도 제13조 3항에서 위 조항의 자구만 약간 수정하여 연좌제 금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좌제의 폐해는 남아 있다. 공직 임용시 신원조회는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4·3사건을 직접 체험한 제주도민 가운데는 아직도 연좌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을 포함 아들과 조카에 이르기까지 연좌제 피해를 당한 홍문평은 문민정부 때도 아들에게 적용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실시되는 것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 아들이 ROTC를 하려는데 안 된다고 했다. 조사할 게 있다고 전화가 왔다. 연좌제에 걸린 것이다. 우리 집 삼대가 힘들었다. 부친 사망했지, 나는 조종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꿈쩍하지 못했지, 아들이 ROTC 안 되었다. 연좌제 없어졌다는 통보는 못 받았다. 큰 조카가 해군사관학교 가겠다는 것을 내가 말렸다. 해외 여행 갈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미리 손을 썼다. 연좌제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신원조회를 해보면 나올 것 아닌가. 빨간 볼펜으로 쓴 것은 지워지지 않지 않는가.²⁶⁶⁾

또한 최근까지도 외국 여행에 4·3사건 관련자라고 하여 비자 발급이 힘들었던 사례는 아직도 연좌제의 관행이 한국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대학에서 2001년에 복경을 갔는데, 그때 상당히 억울했다. 다른 사람은 비자가 나오는데 나 하나만 안 나왔다. 4·3사건 때 사상범 때문이라고 했다. 군대 가서 5년 5개월 충실히 살았는데, 지금까지 사상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다.²⁶⁷⁾

연좌제로 극심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아직도 기록카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이 근거서류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대하여 제주경찰청이 답변한 내용이다(제주경찰청 보안1계가 작성한 「'99 국정감사 실시결과 보고」).

266) 홍문평(71세, 제주시 일도2동, 당시 학생, 2001. 10. 31 채록) 증언.

267) 丁南蓮(76세, 서귀포시 대포동, 당시 피난입산자, 2002. 6. 20. 채록) 증언.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내 기록카드 같은 것에 붉은 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지만, 명예회복을 하게 되면,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일생을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어떻게 살 길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⁶⁸⁾

4·3사건으로 인해 죽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근본적인 인권보호·명예회복 또한 절실한 과제임을 연좌제 피해실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연좌제 피해의 실태를 당사자 및 유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나타난 사례로써 그대로 기록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를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과거 인권침해의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 관행으로 남아 있는 연좌제의 찌꺼기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연좌제 피해 사례

① ‘보안감찰’ 및 ‘요시찰’ 피해

4·3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형기를 마치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보안감찰’, ‘요시찰’ 대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특히 내란죄 적용자나 국방경비법·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철저한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교도소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끊임없는 공안당국의 감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전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의식을 남겼다.

○ 김춘배 사례

내가 2차 수감돼서 1963년 8월 20일에 석방이 됐다. 그때 석방이 돼서 경찰서에 가니까 당신은 어디를 가더라도 보고를 하고 다니라고 했다.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했더니, 그때 ‘당신 같은 사람은 아마 시효가 없을 거다. 죽는 날까지’, 그랬던 기억이 난다. 그 중간에도 그렇고 그 후에는 약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씩 형사가 2명씩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느냐, 어디를 갔다 왔느냐, 물어도 보고 그랬다.²⁶⁹⁾

268) 梁謹邦(68세, 조천읍 와흘리, 당시 피난입산자, 인천형무소 수감, 2000. 12. 15. 채록) 증언.

〈딸(김아자)의 증언〉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그랬다. 우리가 감시를 당한다, 경찰들이 우릴 감시한다 그랬다. 우리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아무 혐의가 없어서 풀려난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거를 대라고 먹살도 잡고 난리를 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982년도에 문서에 '보안감찰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지금 원본이 있다(아래 별첨자료 참조). 난리를 치니까 그때 쫓다.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민청에 가입했다, 그런 얘기가 있다.

〈별첨 : 보안처분 청구서〉

피청구자(김춘배)는 1926. 2. 10. 원적지인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2067번지에서 망부 김계영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1941. 제주시 동보서숙 4년을 수료하고 제주시에서 화목, 목재 장사를 하다가 1948. 2. 경 제주시 일도리 2동 민청에 가입하고 1948. 4. 3. 제주폭동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검거되어 1948. 12. 13. 육본 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서 복역 중 6·25동란으로 탈옥되어 충남 공주군 정안면 사현리에서 노동을 하는 등 계속 은신하다가 1962. 7. 20. 군당국에 피검되어 마포형무소에 재수감되어 복역 중 1963. 8. 20. 육본 보통군법회의에서 잔형이 취소 결정되어 석방된 보안처분대상자인 바, 위와 같이 20년의 장기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6·25시 탈옥된 후 9·28 수복 후에도 자수치 않고 계속 은신하였으며 재수감되었다. 석방 후 현재까지도 안정된 생업이 없이 과일노점상으로 생활이 불안정하고 반공 쫓기대회 등에 참여치 않는 등 국가시책에 호응치 않고 있으며 과거의 처형이 억울하다는 불만을 표지하고 있는 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안처분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됨.²⁷⁰⁾

○ 양근방 사례

우리가 나와서 제주도에 오니까, 고향 와산에 들어왔거든. 들어오니까, 타격이 말도 못해. 함덕지서가 있고, 조천지서가 있고, 제주경찰서 정보계, 사찰계가 있는데, 뭐 1주일에 한 번씩 이제 조천지서에서 오지, 함덕에서 오지, 정보과에서 오지. 당시 간첩만 서울에 들어왔다 하면 우리가 첫 대상이다. 제주도에서는 조사를 오면 우선 개취급이었거든. 우린 국가에서 낙인찍힌 사람들이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굶어죽어도 형제간이나 친족간이나 내가 그러니까 일절 내다본 적이 없어. (경찰에서) 항상 경계를 하고, 나는 어디를 가거나 해도 다 신고를 하고 다녀야 하는 거라.²⁷¹⁾

269) 金樞培(76세,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당시 상업·마포형무소 수감, 2001. 8. 25. 채록) 증언.

270) 서울지방검찰청, 「(김춘배에 대한) 보안처분 청구」, 사안 제12호, 1982. 2. 12.

271) 앞의 梁謹邦 증언.

○ 고대섭 사례 (고봉원 증언)

차라리 죽은 게 훨씬 나왔다. 형무소에서 죽으면 사회 나와서 그 쓰라린 악형은 안 당했을 거란 말이다. 우리와 같은 일행 중 남원리 고대섭이라는 사람이 형무소에서 나와서 얼마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서귀포경찰서에 와서 재조사를 받으라고, 같은 종씨고 처삼촌 되는 사람인데, 두 번 딱 갔다오더니, 석방해줬다고 하고는 그보다 더 귀찮게 한다고 해서 윗밭 소나무에 목매어 자살해 버렸다.²⁷²⁾

○ 이문교 사례

그 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도 요시찰 대상 인물이야. 내가 3사단 일선에 배치가 됐는데, 보병으로 가서, 거기까지 사찰이 되는 거요. 거기는 군 방첩대에서. 그래서 방첩대에서 가끔 나를 만나러 옵니다. 와서, 뭐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가는 거요. 주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갔어요.²⁷³⁾

○ 양규석 사례

내가 징역을 사니까 가까운 친족이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징역을 살아서 나왔으면, 그걸로 그만 해야 하는데, 내가 노태우 시절까지도 서귀포경찰서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간 사람이다. 집에 있으면, 서귀포경찰서에서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면서 와 달라고 편지가 와. 그럼 뭐 과거에 했던 것 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이런 수작하고 별로 물어볼 게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과거에 억울하게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으면 됐지, 왜 자꾸 이렇게 불러서 과거 했던 거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수작하느냐고, 또 억울하게 죄를 씌우려는 거냐고 따지면, 자기네한테 반항한다고 지랄하고.²⁷⁴⁾

○ 박남진 사례

조금 뭐하면 조사 오는 것이 많았다. 그때는 내가 반항을 했다. 당신네 정말로 이럴 거냐, 내가 어릴 때 다 돌아가신 부모 조사해서 뭐 할거냐고. 내가 충실히 국방의 의무도 마치고 어떻게든 마을일을 책임지고 하는데 이러면 당신네한테 협조 않겠다고 악을 쓰자 그 후부터는 조사를 안 했다. 1970년도 이장을 했다. 74년도 이장직이 끝

272) 高奉元(72세, 남원을 한남리, 당시 피난입산자·대구형무소 수감, 2000. 12. 14. 채록)증언.
273) 李文教(65세, 제주시 연동, 4·19직후 제주대학생으로 4·3진상규명동지회 활동, 2002. 5. 16. 채록) 증언.
274) 梁圭錫(79세, 안덕면 화순리, 당시 농업/광주형무소 수감, 2000. 12. 15. 채록) 증언.

나니까 또 조사 왔다. 그때는 악이 바짝 올랐다. 오면 부모님 어떻게 되었느냐고 일일이 물어 갔다. 셋째 아들 육사 지원하는 것도 가지 못하게 말렸다. 합격되어도 입학이 안 될 것인데 포기했다. 체육계통으로 가서 교편 잡고 있다.²⁷⁵⁾

② 각종 입학·취직시험 및 직장에서의 불이익 - 신원조희로 인한 피해

○ 강태중 사례

지금이니까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실제적으로 연좌제에 걸리니까 아이들을 공부 시키면서도 상당한 지장이 많았다. 큰아들이 1978년도에 육사에 합격하고도 신원조희에 걸렸다. 제주도에서 두 명 합격했는데 신원조희에 걸렸다. 나도 육사에 가지 말라고 했다. 큰딸은 국가행정직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 후로는 아이들이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복잡하니까 국영기업에 들어갔다.²⁷⁶⁾

○ 오용승 사례

우리 형님이 (4·3사건 때) 집을 짓다가 잡혀갔는데 죄가 없어서 식구들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어머니가 대성통곡하고 하는 것을 보고 '왜 집짓던 사람을 데려다가 죽여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공직에 있을 때 1년에 한번 신원조희를 하는데 꼬치꼬치 캐물었다. 연좌제로 인한 신원조희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직장생활 하는 데 상당히 좋지 못했고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타격이 컸다. 나를 상당히 괴롭게 했다.²⁷⁷⁾

○ 김홍석 사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애가 제주대학을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다가 '아버지 저는 공무원 시험 못 본다고 합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걸로 끝났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마을에 양봉천 씨가 연좌제 명단을 보면서 '형님도 연좌제에 묶였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연좌제에 해당이 안되고, 나와 우리 집사람, 우리 큰애와 둘째는 딸인데, 딸은 이름도 없었는데, 김무명이라고 해서 명단에 올라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²⁷⁸⁾

275) 朴南璣(67세, 한림읍 금악리, 당시 학생, 2001. 11. 27. 채록) 증언.

276) 姜太伸(70세, 애월읍 하귀2리, 당시 학생(단국중학교), 2001. 8. 22. 채록) 증언.

277) 吳鏞升(61세, 한림읍 명월리, 당시 학생, 2001. 12. 27. 채록) 증언.

○ 고성화 사례

그 후에 연좌제가 따라다녔다. 사촌형은 내가 군에 갈 때 제주중학교 2학년에 편입했는데 후에 장교로 가려니까 형님(고용화)의 사망 일자를 20년 앞당겨 신고했다. 당시 동장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도움조차 없었다면 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²⁷⁹⁾

○ 채세병 사례(고남준 증언)

직계 가족 중에는 피해가 없다. 다만 큰동서 채세병은 모함을 당했다. 그는 확실히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우익이었다. 한림 출신인데 1948년 12월 20일, 애월읍 고내 지경 자운당에서 죽었다. 당시 13명이 같이 죽었다고 들었다. 당시 35세이고 도청 학무과 장학사였다. 9연대가 막 나가려 할 때 잡혀서 약 2주일 정도 농업학교에 수감되었다. 초등학교 인사실무를 총괄하던 일을 했는데, 아마 우익계통의 인사 청탁을 잘 안 들어준 것이 모략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다. 채세병은 농업학교 1등으로 졸업했다. 초등학교 2종 검정시험을 합격했다. 재능교 교장을 했었다. 채세병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빨갱이 새끼’, ‘사상불순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연좌제의 피해를 봤다. 자식의 앞길을 막았다. 청와대 경호실에 합격해도 신원조회에 걸렸다. 공직을 전혀 못했다. 1970년대의 일이다.²⁸⁰⁾

○ 강태룡 사례

나는 취직은 못했어요. 우리 자식도 취직은 못했죠. 후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인가, 이게 해제가 된다고 해서 했지만 그 전에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제주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어디 취직이라도 하려고 이력서를 내면 벌써 조치가 다 되는 것 아니요? 나도 형무소 나와서 제주 의용소방서에 12년 근무했어요. 거기 12년 근무하고 13년만에 서로 승격이 됐어요. 고승욱 씨가 그 당시 서장이었고, 1년 근무를 했어요. 모범대원으로 해서 서원으로 뽑혀서 했는데 한 달만에 고승욱 서장이 오라고 해. 가니까 ‘과거에 전과 있나?’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걸 전과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것이 아닌 모양이라.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정식 소방서원이 될 것이었는데 1년 만에 그만두게 된 거죠.²⁸¹⁾

278) 金洪錫(65세, 남원을 의귀리, 당시 어린이/피난입산, 2002. 4. 2. 채록) 증언.

279) 高聲華(71세, 제주시 아라1동, 학생, 2001. 7. 10. 채록) 증언.

280) 高南俊(78세, 제주시 용담1동, 당시 교원, 2001. 8. 8. 채록) 증언.

○ 김모 씨 사례(현기만 증언)

형무소 갔다가 살아서 온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아들도 많고, 잘 사는 데, 형무소에서 살았던 얘기를 전혀 안 해. 그것이 결점이 되어서 아들이 공부를 해서,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하면 걸리거든. 아들이 7형제라. 아들마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서 신원조회를 하면 걸리는 거라. 자꾸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4·3사건에 죽은 사람, 신고하러 보내지 말라고 한다. 아들이 공부들 다 잘해도 어디 취직을 하나 못했어. 신원조회에 걸리는 거지.

일본 가려고 해도 걸리고, 아들이 직장에 가려고 해도 걸리고. 이 분은 산에서 숨어 다녔던 사람이다. 숨어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민가에 와서 소도 잡아먹고, 말도 잡아먹고 하거든. 안 할 수가 없지.²⁸²⁾

○ 장창원 사례

4·3은 당시뿐만 아니라 유족인 우리에게도 큰 피해를 줬다. 난 애월상고를 졸업한 후 해병대로 군 복무를 마쳤다. 제대 후 사촌형의 알선으로 중앙정보부에 취직을 했다. 그런데 사상관계로 일주일만에 잘렸다. 동생은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했으나 신원조회에 걸려 탈락했다. 난 아버지의 죄명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 동창 중에 무궁화 세 개 계급으로 경찰에 있는 친구에게 '민주화가 됐으면 4·3진상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경찰에 취조한 조서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²⁸³⁾

○ 이순정 사례

그 시절 애월에서 여중에 간 사람은 둘이었는데, 그 시절에는 대학 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학교를 나오신 분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학교는 다녀야 된다고 했다. 학교 마치고 몇 달 교원양성소를 다니는 사람은 다니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신원조회가 있었다. 아버님이 돌아간 그것 때문에 나는 애월국민학교 강사로 우선 다니고 정교사로 발령 받을 때 지서장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아버님 때문에 걸린다고 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 억울하게 돌아간 것만도 그런데, 자식들까지 연좌제로 지장이 있으니 우리 동생들도 공부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했다.²⁸⁴⁾

281) 姜泰龍(72세, 제주시 용담2동, 당시 농업/인친형무소 수감, 2002. 6. 11. 채록) 증언.

282) 玄基萬(95세, 남원읍 수망리, 당시 피난입산, 2002. 5. 3. 채록) 증언.

283) 張彰原(61세, 日本 東京都 台東區, 당시 애월읍 애월리 출신, 2002. 7. 12. 채록) 증언.

284) 李順貞(68세, 애월읍 애월리, 당시 제주여중 학생/이관석 교장의 딸, 2001. 9. 14. 채록) 증언.

○ 홍문평 사례

휴전이 되자 갑자기 후방으로 발령이 났다. 광주에 있을 때 같이 간 대위가 '너는 비행기 다 탔다'라고 했다. 그 뒤 제주도 모슬포훈련소에 발령 받아서 중대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 그때 연좌제에 걸린 것을 알았다. 비행기를 타면 월복한다고 해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걸린 것인가 했다.

6.25사변에 참가했고 휴전한 후에도 조종사로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럴 바에는 총으로 죽이든지 이북으로 보내든지 하라고 했다. 그러자 사상적으로 의심스럽다고 특무대에 오라고 했다. 1956년 2월 5일부로 제대했는데 제대증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었다. 경찰관 시험을 치르려고 했는데, 신원조회에 걸려 순경도 안 된다고 했다.²⁸⁵⁾

○ 정모 교사 사례

예비검속 희생자의 유가족이다. 신원조회를 우회하여 군 장교로 복무했다. 그 뒤 제주도내 모 고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 억울하게 '교실방화 사건'에 연루되어 신원이 밝혀졌다.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서 실성할 정도로 곤욕을 치르던 중 방화범(재학생)이 두 번째 방화를 시도하다가 잠복 형사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고문의 악몽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²⁸⁶⁾

③ 출입국시 제한으로 인한 피해

○ 이보연 사례

나는 연좌제를 피하려고 형무소에서 나와서 동네 일도 열심히 했다. 일을 잘 해서 동네에서 콩이라도 세워서 누명이라도 벗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지금도 가난하다. 난 솔직히 말해서 희생적으로 일한 사람이다. 1981년도에 큰누님이 일본에 사는데 동생하나 있는 걸 일본이라도 구경시키려고 초청을 했는데 한 2~3년 신원조회에 걸려 보류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모형사가 내 이력을 거의 전해들을 정도로 친했는데 17살부터의 이력을 모두 쓰라고 했다. 마을 이사장(통장), 청년회장, 정화위원장 등 한 일을 다 쓰라고 했다. 표창장 받은 것도 모두 쓰라고 했다. 중앙정보부와 치안국으로 내라고 했다. 그래서 양면지 5장 정도를 써서 민원을 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치안국에 내라고 회신이 왔다. 며칠 후에 치안국에서 엽서가 왔다. 다른 내용은 없고 '여권 신청하시오' 그 말뿐이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여권허가

285) 앞의 洪文平 증언.

286)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80쪽.

를 받았다. 연좌제 해제 전이었다. 해제 후에도 아들이 제주대 ROTC 신청을 했는데 신원조회에 걸려 임관을 못했다. 아들 보기 민망하다.²⁸⁷⁾

○ 문창해 사례

나는 연좌제의 피해를 심하게 받지 않았지만 우리 사촌들이 많이 받았다. 내가 1970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엑스포에 가려고 했는데 여권이 발급 안됐다. 나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찾아가 '나는 꼭 죽기 전에 국제여행을 해 봐야겠다. 내가 못하면 우리 후손들도 영원히 국제여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도 국가유공자고 훈장까지 받았는데 훈장을 반납하겠다. 연좌제를 그렇게 적용하면 제주도 사람 중에 연좌제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회 활동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며 따졌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엑스포 폐막을 며칠 앞두고 갔던 적이 있었다.

그 후에 우리 사촌들을 못 견디게 했다. 사촌동생이 먹고 살기 위해 일본에 밀항 갔던 적이 있었는데, 조총련계로 있던 다른 사촌을 만나지 않았나며 못살게 군 것이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경찰국 대공과를 찾아갔다. '나는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일본출입도 내가 많이 했고 알아도 내가 아는데 나한테 물어보지, 왜 일본에 먹고 살기 위해 갔고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우리 사촌을 괴롭히느냐'며 따졌더니 그 이후론 그런 일이 없었다.²⁸⁸⁾

○ 장시영 사례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1955년도에 제대를 하고, 1956년도부터 여기서 다시 개업을 했는데, 약 5년을 하니까 5·16이 났어. 5·16 나기 전만 해도 군대도 갔다 왔고 땀땀하게 활동을 하는데, 의사로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나밖에 없어. 5·16이 나니까 경찰에서 나보고 출두를 하라고 나왔어. 이상하다고 해서 가보니까 '형님과 무슨 관계가 없느냐?'는 것이었다. 그 후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꼭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중앙정보부에 가서 일을 맡고 나가게 되었다. 5·16 나서 그런 것을 받아가니까 또 반발이 생기더라. 그때 중앙정보부 지부장을 만나서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해서, '이것을 철저히 알아봐 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중앙정보부 지부장이 대원을 불러서 알아보고, 우리 형님 관계인데 죽은 원인이 남로당 프락치로 올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법천지 아니냐?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면은, 총살시키려고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말이라도, 얘기라도 똑똑하게 하는

287) 李輔連(72세, 제주도 이호1동, 농업/인천형무소 수감, 2001. 8. 3. 체록) 증언.

288) 文昌海(69세, 제주도 용강동, 학생, 2001. 7. 12. 체록) 증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거기에 자기네도 근거를 남겨야 하니까, 전부 남로당, 남로당이 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 (내 형이) 남로당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중앙정보부 지부장의 직권으로 해제시켜 버린 적이 있다.²⁸⁹⁾

○ 이도영 사례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이현필의 아들이다. 1979년 미국에 유학하려고 할 때마다 신원조회에 걸려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못했다. 아내 고춘희는 이로 인해 실성하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 사망하였다.²⁹⁰⁾

289) 張時英(81세, 제주시 일도 2동, 당시 의사, 2002. 10. 19. 채록).

290)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80쪽.

3. 물적피해

가. 마을공동체 피해

1) 피해실태

제주4·3사건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제주도 마을공동체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특히 중산간마을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 이후 복구되지 못한 채 폐촌으로 변해버렸다. 복구된 마을 가운데도 예전에 살던 마을 주민들이 온전히 복귀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무장대가 주로 산간지대와 중산간마을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산간마을은 무장대와 진압 군·경과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48년 10월 17일 선포된 제9연대장의 포고문에 따라 중산간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피해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소개작전을 완료한 직후에 작성된 주한미군사령부의 기록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모든 저항을 없애기 위해 모든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유격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 학살의 대부분은 제9연대가 점령한 1948년 12월까지 자행되었다. (중략) 섬에 있는 주택 중 약 1/3이 파괴됐고, 주민 30만 명 중 1/4이 자신들의 마을이 파괴당한 채 해안으로 소개 당했다.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45개 마을과 부분적으로 파괴된 43개 마을로부터 피난민들이 해안 마을의 수용소로 이동해왔다.¹⁾

즉, 진압에 나선 군대는 중산간마을 주민을 소개시킬 때마다 민가를 빠짐없이 소각하여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진압부대의 소개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무장대가 해안지대의 마을을 습격하여 방화·소각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임관호 도지사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폭도들이 방화한 가옥 소실 동 수는 무려 3,000동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참상을 이루고 있는 곳은 남원의 300호, 남원면 위미리 부락에 있는 400호의 민가가 지난 11월 하순경 폭도들의 방화로 한꺼번에 전소하여 버린 것이다. 그리고 폭도들의 만행은 지난 11월중이 가장 악랄하여 서귀포 공립중학교, 동 면사무소를 비롯한 해안부락 1,100호에 대한 잔인한 방화는 전부 전달(11월)에 감행된 것이다.²⁾

이러한 양측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빚어진 마을공동체의 피해실태는 시기별·자료별로 다양하게 집계되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공식기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는 4·3사건이 진정된 후에 제주도청에서 발간한 『제주도세요람』(1953)과 『난민정착 - 4·3사건 피해상황 조사』(1955)를 들 수 있다. 이 자료들에 나타난 4·3사건으로 인한 마을 피해실태는 다음과 같다.

□ 이재 상황 및 내역

구분 군별	소란 전 상황		이재 상황		이 재 내 역				소실 동수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농 가		비농가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북제주군	39,319	197,379	12,991	58,373	12,436	55,272	555	3,101	26,556
남제주군	20,712	102,372	6,943	33,359	6,703	32,518	171	841	12,729
계	60,031	299,751	19,934	91,732	19,239	91,790	726	3,941	39,285

출전 : 『제주도세요람』(1953)

□ 읍·면별 피해상황

구분 읍면별	피 해 상 황					
	소 실		소 개		합 계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제주읍	4,441	20,639	·	·	4,441	20,639
애월면	1,644	7,009	522	1,907	2,166	8,916
한림면	1,811	7,350	300	1,400	2,111	8,750
구좌면	865	4,083	·	·	865	4,083
조천면	1,156	5,945	13	68	1,169	6,013

2) 『서울신문』, 1948년 12월 9일.

구분 읍면별	피 해 상 황					
	소 실		소 개		합 계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대정면	522	2,150	.	.	522	2,150
중문면	189	646	570	2,825	759	3,471
남원면	485	2,493	319	1,506	804	3,999
서귀면	249	1,268	472	2,244	721	3,512
안덕면	743	3,529	269	1,271	1,012	4,810
표선면	42	203	69	367	111	570
성산면	123	568	211	1,037	334	1,605
합 계	12,270	55,887	2,745	12,625	15,023	68,532

출전 : 『난민정착 - 4·3사건 피해상황조사』(1955)

2) 마을복구 및 이재민 정착 사업

중산간마을 주민들은 소개작전 실시에 따라 해안마을로 내려와 살게 되었다. 해안 마을로 내려온 이들은 초등학교 교실이나 공회당, 창고 등을 활용한 수용소에 집단 수용되거나 친지에게 의탁하여 생활했다. 이들 이재민은 해안마을 주민들의 냉대와 식량의 결핍, 군·경 당국의 감시로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나날을 보냈다. 주기 용 국회의원이 1949년 3월 10여 일간 제주도를 답사하고 돌아간 뒤 『자유신문』에 기고한 「제주도답사기」에 당시 실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재민의 현상에 대하여 : 산간, 목축지대는 물론 해안지대 부락까지라도 우선 남 원·북촌·동북·서귀포의 4·3사건 후 소실된 가옥이 1만 6,177호에 3만 461동, 양민 피해자 수 1,193명, 부상자 수 419명, 이재민 수 8만 6,797명으로 차등(此等) 이재민은 식량, 의류를 운반할 틈도 없이 피난한 관계로 문자 그대로 돼지우리처럼 만든 집 속 땅바닥에 건초를 깔고 그냥 기거하며 해초 산초로써 그 날 그 날 겨우 연명하여 가는 형편이고 누구 할 것 없이 허기에 신음하고 있으며 집 내외는 악취가 진동하여 견딜 수 없었다. 방문을 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만 지을 뿐 이 가련한 꼴을 바라보는 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다.

제주는 재래 양곡생산이 감자를 포함하여 평년작 하추곡을 합하여 25만 석에 불과하므로 도민 30여 만 명을 먹이는 데 평상시에 있어서는 약 6만석을 도외로부터 반입하던 터인데 이번 사태로 인하여 양곡의 피해가 실로 5만 8,219석이오 뿐만 아니라 이재민 8만여 명 3개월간 소요식량 2만 9,280석까지 가산하면 약 14만여 석의

반입이 용허되지 아니하면 하곡 생산기까지 아사할 곤경에 빠질 것을 생각하여야 될 것이다. 식량뿐 아니라 의류와 침구도 없이 헐벗고 지내는 터로 역병까지 침입하여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다.³⁾

1949년 5월 15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의 해체와 5월 18일 응원경찰대의 철수로 제주도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소개되거나 피난 입산했다가 하산한 중산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정착사업이 전개되었다. 1949년 8월 말 현재 “7,379명의 귀순자와 97,703명의 이재민을 구하고자 35개 ‘재건부락’이 세워졌으나, 아직 3만여 명밖에 수용하지 못하였다”고 『서울신문』 기자는 취재기를 남겼다.⁴⁾

그러나 재건사업은 원만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우선 완전 소각된 마을부터 재건에 착수했으나, 재목의 별채와 수송의 어려움 때문에 임시로 함석집이나 초막을 지어서 주민들을 수용했다. ‘재건부락’은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살던 원래 거주지가 아니라, 잔여 무장대의 습격을 막고 무장대를 마을과 격리·고립시키는 ‘전략촌’으로서 일정 지점에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마을을 에워싸는 석성을 쌓는 데 강제동원되는 고충을 겪었다. 재건된 거로마을을 취재한 기자의 취재기는 이러한 이재민의 생활상을 엿보게 한다.

식량이 극히 부족한 고로 도민의 주식물은 조·콩·고구마·보리 등의 잡곡인데 그것으로 그네들은 죽을 쑤 먹으면서라도 능히 살 수 있었으며 또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살던 부락이 회진(灰塵)되고 갈 곳이 없어 당국이 지정한 소위 건설부락에 집거하는 이재민들은 물론 그 잡곡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네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기자가 본 곳 거로(巨老) 건설부락에는 약 200세대 1,000여 명의 이재민이 살고 있는데 그네들의 주택이란 자기를 손으로 돌과 흙을 가져다가 벽을 쌓고 그 위에 바로 지붕을 얹은 지극히 간소한 것이며, 방은 바로 땅위에다 짚, 초목, 낙엽, □□등을 펴놓고 거기서 기거하며 부엌은 물론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이 바로 침실 겸 부엌인 것이다.

실로 이것은 현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원시시대 인간들이 살던 생활상태를 방불케 한다. 그네들은 잡곡 혹은 고구마 죽으로 하루 하루를 연명하여 가는데 그것도 하루 세끼는 먹지 못하고 하루 한끼 혹은 두끼 먹으면 다행이라 한다.⁵⁾

3) 『自由新聞』, 1949년 3월 23일.

4) 『서울신문』, 1949년 9월 1일.

한편 1949년 12월 20일 제주도 재건부흥위원회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계 인사를 총망라해서 결성했다. 이 위원회는 수산·공업·문화·치안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본격적인 재건활동에 나섰다. 재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정부와 절충에 나서기도 했다.⁶⁾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4·3사건의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제주에는 전국 각지로부터 피난민들이 대거 밀려들었다. 전쟁 20일만인 7월 16일 제주·한림·성산·화순항을 통해 1만여 명이 들어왔다. 1951년 '1·4후퇴' 뒤 이북 주민들을 주축으로 수만 명의 피난민이 제주에 왔다. 피난민 수는 1951년 1월 3일까지 16,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1월 15일에는 87,000여 명, 5월 20일에는 무려 148,000여 명에 이르렀다. 제주도 원래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피난민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난·식량난이 닥쳐왔다. 특히 1952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이어진 절량(絶糧)사태는 제주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북제주군 지역에서만 3만 명이 끼니를 잇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구호곡이 배정되었지만 이를 둘러싸고 피난민과 4·3사건 이재민 사이에 심각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6·25 피난민 구호 문제의 대두는 4·3사건으로 인한 마을복구 및 이재민 정착사업의 진행을 더디게 하였다. 또한 잔여 무장대의 마을 습격과 이에 대한 경찰부대의 산간지대 주둔소 설치, 작전수행 때문에 복구사업이 늦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의 와중에도 마을복구 사업은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1952년 3월 서귀면 상효리 동부락(호수 57호, 인구 270여 명) 주민들이 원래 마을로 복귀하였다.⁷⁾

전쟁이 끝나자, 마을복구 사업은 활기를 띠었다. 제주읍 노형리와 도평리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하여 제주읍 당국에 마을 복귀 진정서를 제출하자, 제주읍에서는 이를 북제주군과 경찰 당국에 진정하였다. 노형·도평리 주민들은 4·3사건 이후 5년간 협소한 대지에 임시로 지은 토막 속에서 집단 수용생활을 해오고 있었다.⁸⁾ 당국에서는 치안상황 때문에 인가를 보류하다가 1954년 1월부터 진정을 받아들여 재건 인

5) 『漢城日報』, 1950년 2월 16일.

6) 『自由新聞』, 1950년 1월 21일. 1950년 2월 10일에는 부흥위원장(제주도지사 김충희)이 국무총리에게 제주도 부흥자금 48억 원에 대한 정부의 보증 용자를 직접 요청하였다(「제주도 부흥자금 용자요청의 건」, 『국무총리실 관계서류』, 1950. 2. 10).

7) 『濟州新報』, 1952년 3월 14일.

8) 『濟州新報』, 1953년 11월 3일.

가를 내렸다.

한림면 조수리 주지동 주민들은 1954년 1월 28일 원주지 복귀를 기념하는 입주식을 거행하였다.⁹⁾ 한림면 저지리 명리동 이재민들은 3월 8일 원주지 재건 복귀를 원하는 진정서를 북제주군에 제출하였다.¹⁰⁾ 구좌면 덕천리민들은 3월 12일부터 7년간의 이재 생활을 마치고 원래 마을로 복귀하였다.¹¹⁾

1953년 말 현재 제주도 사회과에서 조사한 제주도내 재건 복귀상황 통계표를 통해 읍·면별 실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²⁾

□ 재건 복귀상황

구분 읍·면		복 귀 세 대					이재세대 총 수
		본건주택 완 성	본건주택 미 완 성	가 주 택	차 가	계	
북 제 주 군	제주읍	341	456	1,345	22	2,164	3,261
	조천면	217	208	281	43	743	1,327
	구좌면	180	60	191	10	441	598
	애월면	596	614	393	85	1,188	2,180
	한림면	476	160	50	76	1,462	2,125
남 제 주 군	서귀면	102	123	102	39	367	533
	중문면	83	139	90	75	387	665
	안덕면	196	211	116	69	592	933
	대정면	55	235	36	0	326	717
	표선면	57	269	178	118	622	966
	성산면	24	80	10	58	172	311
계		2,620	3,093	4,320	595	10,628	15,228

즉, 1953년 말 현재 총 이재 세대 수 1만 5,228세대 중 70%에 달하는 1만 628세대가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간 복귀상황을 보였다. 반면 미정착 세대도 4,600세대에 이르러 완전한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9) 『濟州新報』, 1954년 1월 31일.
 10) 『濟州新報』, 1954년 3월 13일.
 11) 『濟州新報』, 1954년 3월 15일.
 12) 『濟州新報』, 1954년 1월 22일.

제주도경찰당국은 1954년 4월 1일을 기해 이재민의 중산간마을 입주 복귀를 허용하기로 아래와 같이 방침을 정했다.

입주문제에 대하여=공비토벌도 완결 촌전(寸前)에 놓여 있고 도민들의 비참한 생도(生途)를 타개하기 위하여 내(來) 4월 1일 기하여 도내 전지역에 공(巨)하여 산간부락 입주 복귀를 용허할 방침이다. 3월 25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입주신청하기 바라며 기성부락이나 신설부락에서는 자체경비에 민경이 일치되어 더욱 강화하여 주기 바란다.¹³⁾

이어서 4·3무장봉기 발발 6년 6개월만인 1954년 9월 21일 제주도경찰국장 신상묵은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을 해제, 전면개방을 선언하였다. 지역주민들이 담당했던 마을성곽 보조임무도 없어졌다. 이때부터 소개되었던 중산간마을에 대한 복구 및 이주·정착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54년 11월 17일자로 1955년도 난민정착계획 수립을 위해 각 읍·면별로 정확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다.¹⁴⁾ 이 조사는 12월 초순으로 예정된 제주도 당국과 KCAC(Korea Civil Assistance Command, 한국민간원조단) 당국과의 난민정착사업 합동 현지 조사에 앞서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4·3사건 이전의 인구 및 가거(家居) 분포상황
- 나. 1954년 10월 말일 현재 인구 및 세대가거 분포상황
- 다. 재건상황
- 라. 요재건(정착)계획 자료 조사
- 마. 귀농정착용 자재 분급상황 조사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읍·면별 피해상황 및 재건을 필요로 하는 세대 및 인구 수는 다음과 같다.

13) 『濟州新報』, 1954년 3월 18일.

14) 1954~1955년도 난민정착사업 실시에 관한 서류 일체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 중인 『난민정착 - 4·3사건 피해상황조사』(제주도, 1955)에 들어 있다. 이하 내용은 이 자료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 요재건(정착) 계획자료 조사

구분 읍면별	피해상황						정착할 계획		경지적 (반)
	소실		소개		합계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제주읍	4,441	20,639	·	·	4,441	20,639	2,424	10,965	12,325
애월면	1,644	7,009	522	1,907	2,166	8,916	1,023	4,992	9,704
한림면	1,811	7,350	300	1,400	2,111	8,750	659	3,000	3,749
구좌면	865	4,083	·	·	865	4,083	410	1,734	1,628
조천면	1,156	5,945	13	68	1,169	6,013	398	1,847	3,605
대정면	522	2,150	·	·	522	2,150	71	290	6,670
중문면	189	646	570	2,825	759	3,471	396	1,426	23,250
남원면	485	2,493	319	1,506	804	3,999	473	2,231	8,681
서귀면	249	1,268	472	2,244	721	3,512	279	1,318	38,650
안덕면	743	3,529	269	1,271	1,012	4,810	469	2,152	2,060
표선면	42	203	69	367	111	570	64	291	457
성산면	123	568	211	1,037	334	1,605	218	1,129	142,960
합계	12,270	55,887	2,745	12,625	15,023	68,532	6,484	31,184	253,439

출전 : 『난민정착 - 4·3사건 피해상황조사』(1955)

1955년 2월, 제주도 당국은 위의 표에 보이는 원주지에 정착하려고 하는 6,484세대 가운데 우선 2,074세대의 4·3사건 이주민을 대상으로 수복귀농정착사업을 추진하였다. 제주도 당국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구호미, 건축자재, 농기구 등을 지원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농림부장관, KCAC 제주도사령관에게 요청하였다. 당시 정착사업 대상이 된 2,074세대의 읍·면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4·3사건에 의한 이재민 요집단 정착 일람표

읍·면	구분	리수(里數)	부락수	세대수	인구수	경지면적
	북제주군	제주읍	8	12	312	
애월면		5	8	489	2,137	
한림면		·	·	·	·	
구좌면		3	5	199	808	852
조천면		8	13	154	719	1,914
계		24	38	1,154		

읍·면	구분	리수(里數)	부락수	세대수	인구수	경지면적
	남제주군	대정면
안덕면		8	8	343	1,573	1,473
중문면		2	2	57	241	290
서귀면	
남원면		10	13	456	2,164	
표선면		2	2	64	291	
성산면		
계		22	25	920		
합 계	46	63	2,074			

1963년 제주도청 사회계장 김인화가 발표한 「4·3사건 이재민 원주지 복귀상황」(『제주도』 제8호)에 의하면, 1962년 현재 이재민 15,228세대(80,065명) 가운데 7,524세대(39,916명)가 자력으로 복귀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7,704세대(40,149명) 중 복귀희망자 3,965세대(17,915명)에 대해 제주도에서 2개년 계획으로 복귀정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3사건으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피해가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3) ‘잃어버린 마을’ 실태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후 중산간마을 사람들 상당수는 원주지를 찾아 올라갔다. 마을로 돌아간 주민들이 농토를 개간하고 새로 집을 지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직도 중산간지대는 ‘공비출몰 지역’이라 하여 자주 소개대상이 되었고, 사건 과정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어서 복귀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많았다.

중산간마을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도 많았고, 해안지대로 소개되어 정착한 주민들은 각지에 분산되었으므로, 다시 원주지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원만하지 않았다. 4·3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1962년까지 원주지로 복귀하지 않은 이재민은 7,704세대, 40,419명이었다.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적극적인 복구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재민의 절반 가까운 주민들이 원주지 복귀를 꺼렸다는 것이다. 이후 이들 가운데 얼마나 원주지로 복귀하였는지는 자료의 부재로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의 복구사업에 의해 내륙에서 유입된 6·25 피난민들이 전쟁이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중산간지대 주민으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결국 4·3사건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정착 복구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들이 제주도내 각지에 생겨났다. 4·3사건으로 인해 소실된 마을, 곧 ‘잃어버린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잃어버린 마을’은 4·3사건 때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마을 가운데 일부로서, 주민들이 돌아와 마을을 이전처럼 복원하지 못해 버려지거나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더 이상 마을로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¹⁵⁾

제주4·3사건실무위원회에서는 2001년과 2002년 두 해에 걸쳐서 제주 도내에 산재한 ‘잃어버린 마을’ 84곳을 조사 확인한 바 있다. 4개 시·군별로 조사된 마을 수는 다음과 같다.

□ 시·군별 현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84	31	4	35	14

또한 이들 마을의 가구 수, 주민 수 등 당시 현황과 희생자 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 제주4·3사건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9쪽.

□ 마을별 현황

내용별 시군별	읍면동별	통·리별	마을명	가구 수	주민 수	희생자 수	비고
계	16	30	84	2,038	8,360	966	
제주시 (31)	이도2동 (4)	도남동(4)	못동네	20	30	7	
			섯동네	10	20	2	
			알동네	40	60	-	
			웃동네	20	35	6	
	화북동 (2)	화북동(2)	곤홀동	30	200	23	표석
			큰태왓	10	70	4	
	아라동 (4)	오등동(3)	죽성마을	60	300	-	
			민밭마을 큰가름	5 20	20 40	- -	
	오라동 (5)		웃인다라	20	100	-	
			어우늘	23	100	13	표석
			고지레	14	70	4	
선달뱅디마을			7	35	1		
해산마을			15	40	3		
연미마을섯동네	44	220	40				
연동 (2)		주수동	23	100	12		
		삼동동	50	150	10		
노형동 (10)	해안동(2)	리생이	120	500	50	표석	
		해안동동네	80	350	20		
	노형동(8)		드르릉	16	80	-	표석
			함박이	32	110	-	
			방일리	30	120	-	
			개진이	26	100	-	
			괭이	41	150	3	
			물우이	19	80	3	
			벨이	30	130	14	
			숙이	20	80	-	
섯가	15	100	20				
외도동(1)	도평동(1)	와평마을	15	70	13		
이호동 (2)	이호2동 (2)	호병밭	18	130	75		
		멧밭	19	133	80		
서귀포시 (4)	대천동(1)	대천동(1)	영남마을	16	90	50	표석
			중문동(1)	중문동(1)	사단마을	15	
	예래동(2)	상예동(1)	어음케	20	50	4	
			색달동(1)	천서동	30	70	10
북제주군 (35)	한림읍 (7)	상대리 (2)	고한이	23	100	2	
			한산이왓	15	60	4	
		금악리 (3)	일동이	13	61	6	
			웃동네 별진밭	38 7	141 21	8 1	
명월리(1)	빌레못	25	130	20	표석		
동명리(1)	케왓	25	100	3			

시군별	읍면동별	통·리별	마을명	가구 수	주민 수	희생자 수	비고	
	애월읍 (13)	봉성리 (6)	자리왓	30	150	1	표석	
			말밭	15	75	2		
			상수모를	10	50	-		
			열류왓	20	100	-		
			고도리왓	11	50	-		
			지름기	20	100	3		
			어음 1리(1)	고지우녕	15	80		14
			유수암리(1)	범미왓	19	71		11
		소길리(1)	원동마을	16	60	40		
		광령 1리(1)	텐남밭	12	60	-		
		상귀리(1)	부처물	12	50	4		
		하귀 1리(1)	광동	37	70	2		
		고성 1리(1)	웃가름	20	65	15		
	환경면 (2)	저지리(1)	하늬골	10	25	-		
		산양리(1)	다리왓골	10	40	3		
	구좌읍(8)	세화리(1)	다랑쉬	10	40	-	표석	
			덕천리 (2)	화전동	10	50	10	
			대림동	10	50	3		
		평대리(1)	탈전동	11	36	1		
		송당리 (4)	장기동	26	100	-		
		일송당	30	120	-			
	광전동	20	80	-				
	가시남동	12	60	-				
조천읍 (5)	선흘 1리 (3)	물터진골	12	50	40	표석		
		새동네	10	60	-			
		큰굴왓	20	110	-			
	선흘 2리(1)	백화동	20	110	-			
	와산리(1)	웃동네	20	100	-			
남제주군 (14)	남원읍 (5)	신흥리(1)	신돌선밭	20	92	-		
		의귀리(1)	웃물통	13	50	7		
		한남리(1)	빌레가름	24	130	6	표석	
		남원 2리 (2)	반월동	26	100	3		
		고냉이논밭	25	150	20			
	대정읍(1)	신도 3리(1)	새나뭇곳	20	160	4	표석	
	안덕면 (7)	동광리 (3)	무등이왓	130	400	100	표석	
			삼밭구석	50	150	50		
			조수케	6	30	6		
		서광리 (2)	관전밭	30	120	-		
		진전밭	20	90	-			
상천리(1)	오리돈물	40	70	40				
광평리(1)	조가동	25	120	15				
표선면(1)	가시리(1)	새가름	22	80	25	표석		

제주4·3사건실무위원회에서는 이들 ‘잃어버린 마을’ 가운데 각 읍·면별로 자세한 조사를 거친 대표적인 마을을 선정하여 두 차례에 걸쳐 표석 세우기 사업을 추진했다. 즉, 2001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제주시 오라동 어우늘, 제주시 노형동 드르구릉, 서귀포시 대천동 영남마을, 구좌읍 세화리 다랑쉬, 조천읍 와흘리 케뜨르, 안덕면 동광리 무등이왓 등 6군데에 1차로 표석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2002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제주시 해안동 리생이, 한림읍 명월리 빌레못, 애월읍 봉성리 자리왓, 남원읍 한남리 빌레가름, 대정읍 신도3리 새나무곶, 표선면 가시리 새가름 등 6군데에 2차로 설치하였다.

이 표석에는 마을의 형성 배경과 당시 주민들의 주거 상황, 그리고 4·3사건으로 인한 주민 피해상황, 폐촌 경위 등을 새겨놓았다. 표석 내용 가운데 마을별 피해상황, 폐촌 경위만을 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영남동 : “16가호의 주민 90여 명 중 피신하지 못한 50여 명이 희생되는 불운을 맞았다.”
- 무등이왓 : “여기는 4·3사건의 와중인 1948년 11월 21일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남제주군 안덕면 무등이왓 터이다. (중략) 4·3으로 무등이왓(130호)에서 약 100명, 삼밭구석(46호)에서 약 50명, 조수곶(6호)에서 6명이 희생되었다.”
- 드르구릉 : “드르구릉 마을 사람들은 4·3의 와중에 정든 삶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고, 부모형제와 이웃의 희생을 눈물을 삼키며 지켜보아야만 하는 고통을 겪었다.”
- 어우늘 : “여기는 1948년 초겨울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제주시 오라동의 한 자연마을, 어우늘마을 터이다. (중략) 이 마을에서는 당시 주민 100여 명(호수 23호) 중 약 13명이 희생되었다.”
- 케뜨르 : “4·3의 와중인 1948년 11월 13일 집은 불에 타고,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옮기거나 야산으로 피신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 다랑쉬 : “여기는 1948년 11월 경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구좌읍 다랑쉬마을 터이다.”
- 리생이 : “여기는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제주시 해안동 리생이 마을 터이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이라고 비켜가지 않았으니 1948년 11월 20일 소개령이 내려지고 주민들이 미처 가재도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아랫마을로 내려간 후 마을은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었다. 이 와중에 50여 명의 주민들이 이슬처럼 스러져갔고 살아 남은 주민들은 해안리에 축성하여 살기 시작한 이후 다시는 리생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아 지금은 잡초가 우거지

고 빈 집터엔 대나무만이 지나간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

- 빌레가름 : “이곳은 1948년 11월 7일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빌레가름 터이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에도 여지없이 불어닥쳐 마을이 전소되었으며 주민들은 거린오름 기슭이나 서중천 주변에 흩어져 몸을 숨기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몸부림을 쳐야 했다. 이 와중에 25명이 희생되었고 후대가 끊긴 가호만도 5호가 된다. 1953년 한남리가 현재의 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재건되면서 남아 있는 100여 명의 주민들은 그때의 비극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 빌레가름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 빌레못 : “여기는 4·3의 와중에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빌레못 마을 터이다. 이 마을에도 1948년 제주 전역을 휩쓴 4·3의 광풍은 여지없이 몰아쳤다. 11월 20일경 소개령에 의해 가옥은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고 주민들은 해안 마을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어디 이뿐이라, 20여 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어 바람길 구름길에 떠도는 고향이 되었구나. 1949년 봄 명월리 고림동에 축성을 하고 가건물을 지어 살게된 이후 주민들은 빌레못으로 돌아오지 않아 지금은 연못터와 대나무만이 예전에 사람이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 새가름 : “이곳은 1948년 11월 15일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새가름 마을터이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에도 여지없이 불어닥쳐 마을은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었고 주민들은 인근 마을 등 주변에 흩어져 힘들게 연명하였다. 그중 표선국민학교에 수용되었던 이주민들 가운데 17명이 속칭 벼들못 근처에서 목숨을 잃는 등 4·3사건을 거치면서 25명이 희생되었다. 1949년 2월부터 가시리가 현재의 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재건되면서 2가호가 새가름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외로움에 못이겨 또다시 떠나가버려 끝내 예전의 마을을 이루지 못하였다.”
- 새나무곶 : “여기는 4·3의 와중에 마을의 흔적조차 잃어버린 남제주군 대정읍 신도리 새나무곶 마을 터이다. 그러나 이 마을에도 4·3의 광풍은 비껴가지 않았으니 1948년 11월 치안유지를 위해 새나무곶 주민들은 신도1리로 소개되었고 이 와중에 4명의 주민이 운명을 달리했다. 소개지에서 성을 쌓아 경비를 서며 터를 잡아 눌러 살게 되면서 1950년 재건 명령이 있을 때에도 주민들은 이 새나무곶에는 되돌아오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 자리왓 : “이곳은 4·3의 와중에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2구 자리왓 마을 터이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들을 여지없이 세차게 뒤흔들어 놓았으니 1948년 11월 중순경 소개령이 내려지고 주민들이 아랫마을로 이주한 후 마을은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었고, 이 와중에 5명이 희생되었다. 주민들은 봉성리 입구 신명동에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한 이후 자리왓 등으

로는 전혀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상 12군데 ‘잃어버린 마을’의 표석에는 마을별 피해상황과 폐촌 경위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마을의 경우, 폐촌 시기 및 소실 경위가 누락되어 있다. 소개령 또는 소각 때문에 마을이 소실되었다고 적은 마을의 경우에도, 누가 소개령을 내리고 마을을 전소했는지 행위 주체가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표석 세우기’ 과정에서 제주시 화북동 곤흘마을 출신 희생자 유가족들은 마을이 소실된 경위와 피해 원인이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반발했다.¹⁶⁾

이런 점을 고려하여 마을 소실 시기, 소실 사유, 희생자 수, 가해 주체 등을 각종 기존조사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보완, 아래와 같이 표로 작성하였다. 곤흘마을의 경우 표석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4·3사건실무위원회에서 곤흘마을에 표석을 세우기 위해 피해실태를 조사한 바 있기 때문에 같이 첨부하였다.

□ 표석 건립 ‘잃어버린 마을’ 피해실태

마을	구분	시 기	사 유	희생자 수(명)	가해 주체	근거자료
어우늘		48.11	소개령	13	9연대	조사/증언
드르구릉		48.11.19	소개령		9연대	문헌
영남마을		48.11	소개령	50여	진압군	문헌/증언
다랑쉬		48.11	소개령	없음	진압군	문헌/증언
퀘뜨르		48.11.13	소개령	40여	9연대	문헌
무등이왓		48.11.21	소개령	100여	진압군	문헌
리생이		48.11.20	소개령	50여	진압군	표석/문헌
빌레못		48.11.20	소개령	20여		표석
자리왓		48.11.중순	소개령	5	진압군	표석/문헌
빌레가름		48.11.7	마을 전소	25	태흥리주둔 경찰	표석/조사
새나무곶		48.11	소개	4		표석
새가름		48.11.15	마을 전소	25	군·경	표석/조사
곤흘마을		49.1.4	마을 포위 소각	30여	진압군 1개소대	문헌/증언

※ 표석(실무위원회 건립 표석), 조사(실무위원회 조사자료), 문헌(단행본 『잃어버린 마을』/『4·3은 말한다』), 증언(4·3사건위원회 조사팀 증언채록)

16) 安明鎬(70세, 제주시 화북동, 당시 민보단원, 2002. 8. 12. 채록) 증언.

4·3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린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된 84개 마을 외에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마을별 피해실태에 대해서도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앞으로 요구된다. 향후 전체적인 본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후속 진상규명 작업이 기대된다.

나. 공공시설 피해

4·3사건 과정에서 학교·관공서·경찰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주로 무장대의 습격으로 빚어졌다. 특히 학교는 주로 진압군 부대의 숙영지로 활용되기 때문이었다. 반면 1948년 11~12월에 걸친 강경진압작전 기간에 중산간마을에 있는 학교나 관공서는 강경진압작전에 따라 주로 군부대에 의해 소각·파괴되었다.¹⁷⁾

□ 공공시설 피해상황

종별	시설명	전부파괴			반파괴			피해합계	기사
		단위	수	금액	단위	수	금액		
공공시설	국민학교	교	45	440,370,000				440,370,000	
	중학교	교	1	43,730,000				43,730,000	
	고등공민학교	교	1	18,740,000				18,740,000	
	도서관 및 도서	책	1,350	10,940,000	동	1	5,000,000	15,940,000	
	어항 방파제 및 호안	m	500		m	500	50,000,000	50,000,000	
	선류장				소	25	100,000,000	100,000,000	
	유조시설				소	1	1,500,000	1,500,000	
	염장소 및 창고	동	15	3,000,000	소	15	3,000,000	6,000,000	
	위탁판매소 및 창고	동	8	6,000,000	동	10	4,000,000	10,000,000	

17) 초등학교의 피해를 사례로 들건대, 태흥교·위미교·남원교·세화교·구엄교·도두교·위도교·삼양교·하귀교·화북교·신촌교·하도교 등 해안지대 학교는 무장대에게, 광령교·노형교·봉개교·송당교·선흥교·대흥교·가시교·구억교·영평교·서광교·동광교·금악교·아라교·장전교·고성교·도평교·오라교 등 중산간지대 학교는 토벌대에 의해 소각되었다(尹錫贊,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 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1~85쪽).

종별	시설명	전부파괴			반파괴			피해 합계	기 사
		단 위	수	금액	단위	수	금액		
공 공 시 설	제빙공장 기계시설				건	50	8,000,000	8,000,000	
	어항 공빙도 시설				건	1	1,000,000	1,000,000	
	보육원	동	2	5,000,000				5,000,000	
	보육원 비품일체			740,000				740,000	
	상수도 저수지 시설	소	4	240,000,000				240,000,000	
	송수 간선	m	30	120,000,000				120,000,000	
	배수 간선	m	50	120,000,000				120,000,000	
	고아원	동	7	16,975,000				16,975,000	
	고아원 시설비품			2,500,000				2,500,000	
	발전소				평	50	2,500,000	2,500,000	
	발전소 송전로					전부	5,000,000	5,000,000	
	계			1,030,495,000			177,500,000	1,207,995,000	

4·3사건이 진정된 후 처음으로 공식 집계된 4·3사건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피해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1950년 2월 10일 제주도지사 김충희가 국무총리에게 제주도 부흥자금 용자를 요청할 때 첨부한 「제주도 폭동사건 피해 개황표」이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의 피해상황은 도표와 같다.

1953년에는 제주도 당국이 조사한 피해조사 결과가 『제주도세요람』에 수록되었는데, 공공시설 피해와 관련해서는 학교 피해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학교 피해상황

구분 학교별·군별		피 해 상 황				비 고
		피해 학교 수	피해 교실 수	피해 정도	피해액	
초등학교	북제주군	31	134	전소30, 파괴1	312,340,000	
	남제주군	45	180	전소43, 파괴2	379,713,000	
	소 계	76	314	전소73, 파괴3	692,053,000	
중학교	남제주군	1	7	전소1	12,386,000	서귀중학교
	소 계	1	7	전소1	12,386,000	
총 계		77	321	전소74, 파괴3	704,439,000	

이 표에 나타난 4·3사건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집계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 중학교의 경우 서귀중학교 말고도 중문중학원과 남원고등공민학교가 전소되었기 때문이다.¹⁸⁾ 학교시설의 파괴로 말미암아 휴교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 인한 학업 중단은 커다란 교육적 손실을 가져왔다.

학교시설의 파괴 외에도 무장대와 진압 군·경과의 상호 무력충돌 과정에서 경찰 지서를 비롯한 관공서가 다수 파괴되어 치안·행정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특히 안덕면·구좌면·중문면·조천면사무소가 소각되어 호적이 소실됨으로써,¹⁹⁾ 이를 복원하는 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모되었다.

이러한 공공시설 건물의 파괴 이외에 도로의 차단 및 파괴, 전신전주의 절단 및 파괴, 운송수단의 손실 등으로 인한 물적피해도 상당히 컸다.

다. 산업피해

4·3사건을 거치면서 무장대의 잦은 습격과 군·경 토벌대의 진압으로 인해 각종 산업 시설물이 파괴되어 가동이 정지되었다. 상호 무력충돌로 인해 농업생산의 제한, 목초지대에 방목하는 우·마의 손실, 어민·해녀들의 어획물 채취 금지가 초래되어 제주도민들은 상당한 물적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더욱이 민보단이나 청년방위대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 진압에 참여하거나 마을 경비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적피해를 입었다.

앞에서 제시한 1950년 2월의 「제주도 폭동사건 피해 개황표」에서 산업부문별 피해상황을 따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8) 尹錫贊, 앞의 논문, 60~61쪽.

19) 중문면사무소는 1948년 11월 5일에, 조천면사무소는 1948년 11월 11일에 무장대에 의해 소각되어 호적부 및 제적부, 기타 관계서류가 소실되었다(『대한민국 관보』 제98호, 1949년 5월 27일, 대법원 공고 제11호 ; 제168호, 1949년 9월 2일, 대법원 공고 제21호). 이에 앞서 5·10선거 무렵 무장대가 안덕면사무소를 방화했고 호적 등이 소실됐고(宋文壽 [81세, 안덕면 덕수리, 2002. 7. 19. 채록] 증언), 5월 11일에는 무장대가 구좌면사무소를 방화해 호적이 소실되었다(金柄洙 [72세, 구좌면 평대리, 2001. 11. 20. 채록] 증언). 한편 대정면사무소의 호적부 20책 중 14책은 1948년 5월 24일 도난으로 멸실되었다(『대한민국 관보』 제99호, 1949년 5월 30일, 대법원 공고 제13호).

□ 산업부문별 피해상황

종별	시설명	전부파괴			반파괴			피해 합계	기 사
		단 위	수	금액	단 위	수	금액		
수 산	포경작업장				소	3	5,200,000	5,200,000	
	트롤선 및 어구	척 건	1 1	27,000,000				27,000,000	
	지예망선 및 어구	척 건	3 3	51,000,000				51,000,000	
	건축선 및 어구	척 건	6 4	30,000,000 20,000,000				30,000,000 20,000,000	
	연승기선 및 어구	척 건	90 35,000	135,000,000 72,000,000				135,000,000 72,000,000	
	잠수기선 및 어구	척 건	3 5	2,100,000 2,000,000	척	2	900,000	3,000,000 2,000,000	
	범선 및 어구	척 점	200 34,400	140,000,000 129,000,000	척	130	75,000,000	215,000,000 129,000,000	
	자망선 및 어구	척 건	30 50	12,000,000 15,000,000	척	20	300,000	15,000,000 15,000,000	
	방진망선 및 어구	척 점	30	15,000,000	척	30	6,000,000	6,000,000 15,000,000	
	일망선 및 어구	척 점	30	9,000,000	척	30	3,000,000	3,000,000 9,000,000	
	정소지인망선 및 어구	척 점	15	9,000,000	척	15	1,500,000	1,500,000 9,000,000	
	온분기초망선 및 어구	척 건	50	7,500,000	척	50	7,500,000	7,500,000 7,500,000	
	통조림공장 및 기계	동 개	10 10	10,000,000 7,000,000	동	10	5,000,000	15,000,000 7,000,000	
	녹미채 가공공장				동	10	5,000,000	5,000,000	
	패류 가공공장	동	20	5,000,000				5,000,000	
	조제패구공장 및 기계	동 점	5 30	2,500,000				2,500,000	
	활어운반선	척	2	9,000,000	척	3	6,000,000	15,000,000	
	생운	척	20	1,000,000				1,000,000	
	선어운반선	척	2	1,050,000	척	3	4,500,000	5,550,000	
	모선	척	5	5,000,000				5,000,000	
	잠수어구 및 북	개 착	12,000 36,000	24,000,000 156,000,000				24,000,000 156,000,000	
	어업조합 결손금	건	6	15,000,000				15,000,000	
	위탁판매소 결손	건	6	45,000,000				45,000,000	
	계			956,150,000			169,400,000	1,125,550,000	

종 별	시설명	전부파괴			반파괴			피해 합계	기 사
		단 위	수	금액	단 위	수	금액		
농 산	식량작물	석	164,016	423,674,347				423,674,347	
	면화	근	62,449	30,572,450				30,572,450	
	계축국	관	181,159	181,159,000				181,159,000	
	시굴	관	578,000	289,000,000				289,000,000	
	일반농구	개	193,318	124,640,000				124,640,000	
	공공농구	개	7,021	50,901,000				50,901,000	
	자급비료시설	개	41,584	419,880,000				419,880,000	
	농촌공동시설	소	905	116,320,000				116,320,000	
	잠구	개	200,484	23,262,880				23,000,000	
	농가주택	동	37,951	5,692,650,000				5,692,650,000	
계			7,352,059,677				7,352,059,677		
기 타	점포	동	560	672,000,000				672,000,000	
	상품			504,000,000				504,000,000	
	비품			56,000,000				56,000,000	
	의류 가구			168,000,000				168,000,000	
계			1,400,000,000				1,400,000,000		
축 산	소	두	17,856	892,800,000				892,800,000	
	말	두	6,009	180,270,000				180,270,000	
	젓소	두	31	3,100,000				3,100,000	
	면양	두	127	1,900,000				1,900,000	
	산양	두	72	1,080,000				1,080,000	
	돼지	두	2,387	230,870				230,870,000	
	닭	필	25,350	25,350,000				25,350,000	
	밀봉	군	12,000	180,000,000				180,000,000	
	목장급수장	소	131	78,600,000				78,600,000	
	감시사	동	131	13,100,000				13,100,000	
	진입사	동	131	6,550,000				6,550,000	

조 별	시설명	전부파괴			반파괴			피해 합계	기사
		단위	수	금액	단 위	수	금액		
입 산	임목	정보	700	126,000,000				126,000,000	벌채
	임목	정보	2,000	6,000,000				6,000,000	피해
	제단요	소	68	714,000				714,000	
	소옥 및 목탄창고	소	34	1,700,000				1,700,000	
	목재	석	100	150,000				150,000	
	오배자(五倍子)	근	4,000	280,000				280,000	
	도토리	석	50	150,000				150,000	
	갈피(葛皮)	관	5,500	3,300,000				3,300,000	
	건궤(乾蕨)	근	40,000	6,000,000				6,000,000	
	한약제	근	40,000	6,000,000				6,000,000	
	추용(推茸)	근	10,000	760,000				760,000	
	울(栗)	석	5	100,000				100,000	
	동백	석	50	350,000				350,000	
	청모(靑茅)	속	10,000	2,000,000				2,000,000	
	유오(油梧)	석	20	120,000				120,000	
	젓(筍)	매	130,000	8,320,000				8,320,000	
	황모(黃茅)	매	150,000	75,000,000				75,000,000	
	차골(茶骨)	톤	111	22,200,000				22,200,000	
	묘포 및 사무소	건	1	2,000,000				2,000,000	
	묘포숙사	동	1	700,000				700,000	
	묘포창고	동	1	500,000				500,000	
	감시소	동	1	450,000				450,000	
	국유림사무소	동	1	320,000				320,000	
인부숙사	동	36	10,800,000				10,800,000		
추용건조실	동	21	73,500,000				73,500,000		
창고	동	7	700,000				700,000		
죽림	정보	27	6,480,000				6,480,000		

종별	시설명	전부파괴			반파괴			피해 합계	기사
		단위	수	금액	단위	수	금액		
약 초	천궁(川芎)	정보	5	7,500,000				7,500,000	
	당귀(當歸)	정보	5	3,500,000				3,500,000	
	목향(木香)	정보	5	4,500,000				4,500,000	
	회향(茴香)	정보	5	10,000,000				10,000,000	
	생지황(生地黃)	정보	10	45,000,000				45,000,000	
	형개(荊介)	정보	2	15,000,000				15,000,000	
	결명자(決明子)	정보	3	2,500,000				2,500,000	
	홍화(紅花)	정보	5	7,500,000				7,500,000	
	작약(芍藥)	정보	5	25,000,000				25,000,000	
	반하(半夏)	정보	5	12,500,000				12,500,000	
	계			3,224,210,000				3,224,210,000	
공 업	식품공장건물 시설				동	1	9,768,970	9,768,970	
	제과공장 시설				동	3	10,839,660	10,839,660	
	전분공장시설				동	3	112,412,057	112,412,057	
	패구(貝釘)공장 시설				동	1	10,000,000	10,000,000	
	조선공장 시설				동	1	12,436,527	12,436,527	
	막대소공장 시설				동	3	3,257,450	3,257,450	
	기계공장 시설				동	3	10,050,400	10,050,400	
	제재공장 시설 제재공장 목재	석	250	2,500,000	동	3	8,000,000	8,000,000 2,500,000	
	유지공장건물 기타				동	1	4,500,000	4,500,000	
		계					181,265,064	183,765,064	

1953년 제주도 당국에서 발표한 가축 피해상황과 1963년 김인화 사회계장이 작성한 4·3사건으로 인한 가축·산림·농작물 피해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 가축 피해상황

가축별	우	마	돈(豚)	면양	계(鷄)	밀봉(蜜蜂)	합계
피해두수	9,000	6,546	14,876	90	22,342	743	53,597
피해액 (단위:1,000원)	7,200,000	1,963,800	1,487,600	13,500	223,420	111,450	10,999,770

출전 : 제주도청 편, 『제주도세요람』, 1953.

□ 가축·산림·농작물 피해상황

가 축				산림	농 작 물			
축우	마필	돈(豚)	기타	작 전 상 벌채·방화	각류(穀類)	감저(甘藷)	면화	채소
17,860두	6,009필	22,989두	25,413	1,173정보	135,415호	4,196,113관	97,356근	899,86관

출전 : 김인화, 「4·3사건이재민 원주지 복귀상황」, 『제주도』 제8호, 1963.

각종 산업부문에서의 생산·교류의 중단은 곧바로 제주도민의 생산 가능 인력의 실업사태를 유발하였다.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으로의 피신, 해안지대에서의 수용 생활, 마을 경비 및 진압작전 차출 등으로 제주도민들의 실업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부 노동국에서 집계한 1949년 5월 현재 산업별·도별 실업자를 나타낸 다음 표를 보면 뚜렷이 확인된다.²⁰⁾

즉, 농업 부문은 전국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으며, 어업·제조업·상업 부문에서도 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중이 다른 지역을 상회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 인구가 한국 전체의 1.26%임에 비추어 볼 때,²¹⁾ 제주지역 실업자 수 73,263명은 한국 전체의 8.24%를 차지한다. 또한 제주도 전체 인구의 28.8%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으로서 실업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즉, 4·3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더불어 살아 남은 제주도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음을 확인시켜 준다.

20) Republic of Korea, Statistical Summation, No.5, May 1949, American Embassy Despatch No.416, July 6, 1949.

21) 1949년 5월 1일 현재 대한민국 인구 총수가 20,188,641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제주도 인구는 254,589명으로 1.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산업별·도별 실업자

도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상업	운수업	기타	합계
서울	13,904	2,206	2,601	14,791	19,013	3,239	27,387	83,141
경기	20,818	1,272	3,788	8,901	7,204	2,189	14,338	58,510
충북	21,696	511	3,414	1,647	2,572	378	3,607	33,825
충남	40,304	1,954	7,349	6,292	8,479	1,205	8,475	74,058
경북	59,974	2,118	10,178	13,043	17,819	4,479	17,702	125,303
경남	82,260	11,843	7,580	24,188	37,803	8,824	35,992	202,985
전북	82,396	2,200	5,051	5,122	12,808	1,901	7,967	117,445
전남	63,440	4,815	6,245	10,024	8,509	1,651	8,562	103,246
강원	11,690	1,057	920	798	1,194	103	1,631	17,393
제주	65,934	994		1,573	4,762			73,263
총 계								889,169

V. 진상조사보고서 결론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5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그치지 않다가,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비로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종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동북아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 6만여 명이 주둔했던 전략기지로 변했고, 종전 직후에는 일본군 철수와 외지에 나가 있던 제주인 6만여 명의 귀환으로 급격한 인구 변동이 있었다. 광복에 대한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에 의한 수백 명의 희생, 극심한 흉년 등의 악재가 겹쳤고,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군정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터져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3·1절 발포사건은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6명 사망, 8명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구경하던 일반주민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바로 이 사건이 4·3사건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反警) 활동을 전개했다. 경찰발포에 항의한 '3·10 총파업'은 관공서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합동 총파업이었다.

사태를 중히 여긴 미군정은 조사단을 제주에 파견, 이 총파업이 경찰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시킨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후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공정책을 추진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이 전원 외지사람들로 교체됐고, 응원경찰과 서청 단원 등이 대거 제주에 내려가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전개했다. 검속 한달만에 500

여 명이 체포됐고, '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다. 테러와 고문이 잇따랐다.

1948년 3월에는 일선 지사에서 잇따라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사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기상황으로 변해갔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 노출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 신진세력들은 군정당국에 등 돌린 민심을 이용해 두 가지 목적, 즉 하나는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써, 다른 하나는 당면한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써 무장투쟁을 결정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이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와 단선·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미군정은 초기에 이를 '치안상황'으로 간주, 경찰력과 서청의 증파를 통해 사태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과 군정장관 딘 소장은 경비대에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다.

한편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무장대 측 김달삼과의 '4·28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사태 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평화협상은 우익청년단체에 의한 '오라리 방화사건' 등으로 깨졌다. 미군정은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과 24군단 작전참모 슈 중령의 제주 파견, 경비대 9연대장 교체 등을 통해 5·10선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최고사령관으로 임명,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하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5월 20일에는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해 무장대 측에 가담하는 사건이 생겼고, 6월 18일 신임 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 의해 암살 당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 제주 사태는 한때 소강국면을 맞았다. 무장대는 김달삼 등 지도부의 '해주대회' 참가 등으로 조직 재편의 과정을 겪었다. 군경 토벌대는 정부 수립과정을 거치면서 느슨한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소강상태는 잠시 뿐이었다.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북쪽에 또다른 정권이 세워짐에 따라 이제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지역문제를 뛰어 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그런데 이때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에 앞서 9연대 송요찬 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적고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산간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해안변 마을에 소개한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산하는 피난민이 더욱 늘었고, 이들은 추운 겨울을 한라산 속에서 숨어 다니다 잡히면 사살되거나 형무소 등지로 보내졌다. 심지어 진압 군경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 그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대살(代殺)’을 자행하였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됐지만,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도 강경진압을 계속하였다.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었다.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던 ‘북촌사건’도 2연대에 의해 자행되었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선무 병용작전이 전개되었다. 신임 유재홍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사면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졌다. 그해 6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의 사살로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다.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검속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되었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 시신을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다.

잔여 무장대들의 공세도 있었으나 그 세력은 미미하였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되었다. 이로써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4·3사건은 실로 7년 7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다음의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봉,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 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 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

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19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1%(10,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공란을 제외해서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86.1%와 13.9%로 대비된다. 이 통계는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미군 보고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 제주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서청,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되고 있다. 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민간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639명이다.

■ 서청 단원들은 ‘4·3’ 발발 이전에 500~700명이 제주에 들어와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들의 과도한 행동이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4·3’ 발발 직후에는 500명이, 1948년 말에는 1,000명 가량이 제주에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입고 진압활동을 벌였다. 제주도청 총무국장 고문치사도 서청에 의해 자행되었다. 서청의 제주 파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후원했음을 입증하는 문헌과 증언이 있다.

■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작전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다. 강경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4·3사건으로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는데, 대부분 이때 방화되었다. 결국 이 강경진압작전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 2만명 가량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다. 이 무렵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피해마을은 세화, 성읍, 남원으로 주민 30~50명씩 희생되었다.

■ 9연대에 이어 제주에 들어온 2연대도 공개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즉결처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주민 집단총살 사건인 ‘북촌사건’은 남녀노소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 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위원회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개소에 이른다.

■ 1948년 12월(871명)과 1949년 6월(1,659명) 등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4·3사건 군법회의’는 다각적인 조사결과, 재판서·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이 통보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하루에 수백명 씩 심리없이 처리하는 한편, 사흘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그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1948년 11월 17일 선포돼 그해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적 근거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체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측의 다툼이 있다. 여기서는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서 제주도에서의 계엄령 집행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탈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계엄령 하에서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분이 빈번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군지휘관들조차 계엄령을 잘 알지 못했는데, 심지어 계엄령 해제 후인 1949년 제주작전에 참여한 2연대 대대장이나 독립대대 대대장은 그때까지도 계엄령이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를 볼 때, 중산간마을 초토화 등의 강경작전을 펼친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연대장의 작전기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말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간의 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마을을 초도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대통령의 성명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

■ 연좌제에 의한 피해도 극심하였다.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4·3사건 때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을 제약받았다. 제주공동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4·3사건의 상흔들이 그 유족들에게까지 대물림된 것이었다.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하여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1981년 연좌제가 폐지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유족들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948년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을 명시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은 전시(戰時)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 △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신체상해 △군사적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대량 파괴와 약탈 등을 금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모든 재판상의 보장을 부여하는 재판에 의하지 않은 판결 및 형의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1948년 제주섬에서는 이런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 점이 4·3사건의 진상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온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

서 입수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이 불행한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자료

1.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 발표문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4·3사건 유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55년 전, 평화로운 이곳 제주도에서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중의 하나인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이 몰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주방문 전에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추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해왔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4·3평화공원 조성, 신속한 명예회복 등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는 폐허를 딛고 맨 손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재건해 냈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주도는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전국민과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 10. 31

대통령 노무현

2. 제주4·3사건 일지

1947년

- 3. 1 ■ 제주민전 주최 제28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응원경찰의 발포로 관덕정과 도립병원 앞에서 주민 6명 사망, 8명 중경상을 당하는 '3·1사건' 발생
- 3. 5 ■ '제주도 3·1사건대책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투쟁위원회' 결성
- 3. 7 ■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각 읍면위원회에 '3·1사건 대책 투쟁에 대하여' 지령서 하달
- 3. 8 ■ 31사건 조사를 위해 미군정청주조선미육군사령부 합동조사단(단장 카스티어 대령) 내도
- 3.10 ■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31사건에 항의하는 만관 총파업 돌입. 13일까지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인 166개 기관단체에서 파업에 가세
- 3.12 ■ 경무부 최경진 차장, 제주파업 사태 언급하면서 "원래 제주도는 주민의 90%가 좌익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
- 3.14 ■ 조병옥 경무부장, 제주도 파업진상 조사차 내도. 포고문 발표
 - 우도 민청원들, 우도경찰관파견소 간판을 파괴하고 소각
 - 박경훈 제주도지사, 스타우드 제주도 군정장관에게 사직서 제출
- 3.15 ■ 전남경찰 122명, 전북경찰 100명 등 응원경찰 222명 제주도 도착
 - 조병옥 경무부장, 파업주모자들을 검거하라는 명령 하달
- 3월중순 ■ 미군 CIC 제주사무소 설치
- 3.16 ■ 제주경찰감찰청내에 본토 출신 경관들을 중심으로 특별수사과(과장 이호) 설치. 파업 직장의 간부급 연행하여 취조
- 3.17 ■ 중문지서 응원경찰대,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군중에 발포해 주민 8명 부상
- 3.18 ■ 경기경찰 99명 제주도 도착. 응원경찰 총 421명으로 증가
 - 강인수 제주경찰감찰청장, "3·1사건으로 검속된 사람은 200명 가량"이라고 발표
- 3.20 ■ 조병옥 경무부장, 31사건 진상조사 담회에서 "제1구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도립병원 앞에서의 발포행위는 무사려한 행위로 인정한다"고 발표
 - 미군정보팀, "제주의 총파업에는 좌우익이 공히 참가하고 있으며, 제주도민 70%가 좌익단체 동조자"라고 보고
- 3.22 ■ 남로당, 전국적으로 24시간 파업인 '3·22 총파업' 전개
- 3.24 ■ 독직사건 관련 신우균 전 제주감찰청장에 대해 경무부 사문위원회에서 파면 결정

- 3. 26 ■ 교원들의 잇단 검거에 제주북교 학부모들 구속교원 석방 요구
- 3. 28 ■ 경무부, “파업선동자 전국에서 2,176명 검거, 제주는 230명”이라고 발표
- 3. 31 ■ 제주도 산업국장 임관호 등 제주도청 간부 10여 명 검속
- 4. 1 ■ 조병옥 경무부장, 파업사건에 가담한 제주 경찰관 66명에 대해 징계과면했다고 발표
- 4. 2 ■ 제주도 군정장관에 베로스 중령 부임
- 4. 10 ■ 제주도지사에 전복출신 유해진 발령
 - 제주경찰감찰청, 파업 검속지는 500명에 이르며 이중 200명을 군정재판에 회부했다고 발표
- 4. 28 ■ 응원경찰대의 교체병력으로 철도경찰 245명을 제주 경찰에 배속. 제주경찰 정원 500명으로 증원됨
 - 제9연대장 장창국 소령 명의로 제주신보에 “국방경비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라고 표명한 「국방경비대 모병」광고 게재
- 5. 6 ■ 제주검찰청, “경찰감찰청으로부터 송치된 3·1사건 피고는 328명”이라고 발표
- 5. 7 ■ 응원경찰대 400여 명, 제주에서 철수
- 5. 21 ■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 제9연대장 장창국 후임으로 이치업 소령 취임
- 5. 23 ■ 31사건 관련 재판에 회부된 328명에 대한 공판 완결. 체형 52명, 집행유예 52명, 벌금형 56명, 나머지 168명은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
- 5. 24 ■ 강동효 제1구경찰서장 수뢰사건으로 해임
- 5. 26 ■ 피의자 고문사건으로 한림지서장 차석 등 경찰관 2명 구속
- 6. 1 ■ 경찰, 뼈라살포 혐의로 제주읍내 중학생 20명 검속
- 6. 2 ■ 제주여중 3학년생, 파시즘교육 반대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
- 6. 6 ■ 구좌면 종달리에서 민청 집회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이 마을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 당한 세칭 ‘66사건’ 발생
- 6. 16 ■ 제주 경찰, “종달리 사건 수배자가 71명에 이른다”고 발표
- 6. 18 ■ 뼈라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교원양성소조천중학원 학생 10명에 체형 등 언도
- 6. 20 ■ 여러 마을 청년들, 뼈라 살포혐의로 재판에 회부됨
- 6. 22 ■ 제주신보, ‘3·1사건 희생자 유가족 조위금’이 31만 7,118원에 이른다고 보도
- 7월 ■ 제주도 민청(의장 현경호) 제주도에 단체등록, 재발족
- 7. 3 ■ 뼈라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받은 학생이 퇴학처분을 당하자 제주농업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에 반발, 농성
- 7. 14 ■ 김영배 제주경찰감찰청장, 청장회의 참석 후 “제주도만은 좌우가 손을 잡고 나기도록 합작 운동에 노력할 심산”이라 피력

- 7. 18 ■ 전 제주도지사 박경훈, 제주도 민전 의장에 추대
- 7. 19 ■ 근로인민당 당수 여운형 암살 당함
- 7. 28 ■ 제주도 군정장관 베로스 중령, “좌우익의 정당을 물론하고 그 관계자가 관공리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표명
- 7월말 ■ 한림면 명월리에서 하곡수집을 거부하는 농민들과 우익청년 단체원간에 충돌
- 8. 7 ■ 제주에서 ‘미군을 축출하자’는 반미 빠라 나뭇
 - 제주 CC, “극우파 제주도지사는 좌익분자들에게는 인기가 없다. 그의 암살을 요구하는 빠라가 여러 장 뿌려졌다”고 보고
- 8. 8 ■ 안덕면 동광리에서 보리수매 독려차 마을을 방문했던 관리들이 마을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 당함
- 8. 12 ■ 미군정, 815폭동음모사건과 관련해 좌파세력에 대한 대규모 검거작전 개시. 전국 검속자 1만 3,769명
- 8. 13 ■ 조천면 북촌리에서 경찰이 빠라를 붙이는 소년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발포해 주민 3명에 총상
- 8. 14 ■ 제주 경찰, 815폭동음모와 관련 제주민전 의장 박경훈 전 제주도지사를 비롯, 도청 간부 사회인사 등 20여 명 체포
- 8. 17 ■ ‘815폭동음모’와 관련 검속됐던 제주민전 의장 박경훈 등 석방
- 8. 19 ■ 제주도 전역에 곡물수집 반대 빠라 살포됨
- 8. 28 ■ 유해진 도지사, 사상문제를 이유로 이관석 학무과장 등 도 과장급 4명을 권고 사직시키는 것을 시발로 인사정비 착수
- 8. 31 ■ 하곡 전체수집률 67.6%, 제주도는 13.7% 불과
- 9. 7 ■ 제주도 식량사무소장 박태훈, 자택에서 정체불명의 청년들로부터 테러 당함. 서청단원의 소행으로 밝혀짐
- 9. 8 ■ 전 제주도 민전 의장 현경호 제주중 교장의 집을 감찰청 직원을 사칭한 청년이 습격. 제주 CIC의 조사 결과 서청 단원의 소행으로 밝혀짐
- 9. 17 ■ 제2차 미소공위 결렬. 미국, 한반도문제 UN에 상정
- 9. 21 ■ 22개의 우익청년단체가 통합, 대동청년단 발족
- 9. 27 ■ 제주경찰감찰청 수사과, 불온서류 발각됐다며 생필품영단 직원과 제주농업학교제주중 교사 등 36명 검속
- 10. 6 ■ 제주지법, 31절 집회를 주도했던 전 제주도 민전 의장 안세훈에 집행유예 선고
- 10. 7 ■ 구좌면 행원리에서 대청 단원과 지방청년이 충돌. 대청원 5명과 지방청년 11명 체포
- 10. 18 ■ 경찰후원회(회장 홍순용) 결성
- 10. 19 ■ 제주 CC, “당원확장 운동을 하던 대동청년단 단원들, 제주도 동쪽끝 마을에서 테러행위.

CIC에서 조사중”이라고 보고

- 10. 21 ■ 독청·광청으로 양분된 대동청년단 제주도지단부 통합하기로 합의
- 10. 24 ■ 제주 CC, “최근 대동청년단의 통합은 ‘우리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상부에 보고
- 11. 2 ■ 서북청년회 제주도본부(위원장 장동춘) 발족
- 11. 3 ■ 딘 소장 제3대 주한미군 군정장관으로 취임
 - 김영배 제주경찰감찰청장, 사설단체의 불법 기부강요 행위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경고문 발표
- 11. 5 ■ 통행금지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
- 11. 12 ■ 미군정청 특별감찰관 벨슨 중령, 제주도지사 유해진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 이 조사는 1948년 2월 28일까지 실시.
- 11. 14 ■ UN총회,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안 통과
- 11. 18 ■ 제주 CC, “서북청년회 지도자, 제주도에 자금모금을 위한 광범위한 테러행위에 대해 경고를 받고 CIC에 사과했다”고 보고
- 11. 21 ■ 제주군정청 법무관 스티븐슨, 제주 CC 대표 메리트, “유해진 지사가 우익집회를 제외한 어떤 집회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특별감찰반에 제출
- 11. 25 ■ 서북청년회 제주도단장이 ‘제주도는 조선의 작은 모스크바라고 말해 왔다고 제주 CC가 상부에 보고
- 11. 26 ■ 딘 군정장관 제주도 시찰차 내도. 28일 귀경
- 12. 3 ■ 베로스 중령 후임으로 맨스필드 중령이 제주도 군정장관으로 부임
- 12. 7 ■ 제주 CC, “경찰 당국이 제주도 경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희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상부에 보고
- 12. 26 ■ 제주도 추곡수매 실적 11%로 전국(84.5%)에서 가장 부진

1948년

- 1. 8 ■ UN한국임시위원단 서울 도착
- 1월중순 ■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조직부 연락책 경찰에 검거. 조직책의 전향으로 남로당 제주도당의 조직 체계도가 노출됨
- 1. 22 ■ 제주 CC, “제주경찰이 신촌리에서 열린 남로당 조천지부 불법회의장을 급습, 106명을 검거하고 폭동지령 문건 등을 압수했다”고 보고

- 1. 26 ■ 1월 22일 체포된 106명 외에 추가로 115명이 체포됨. 제주 CIC, “연행자 221명 중에서 63명을 방면했는데, 그들은 남로당 당원이었다”고 보고
- 1. 30 ■ 김영배 제주경찰감찰청장, 122 검거시간과 관련 “경찰은 남로당에 가입한 자를 탄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비합법적 행동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고 발표
- 2. 1 ■ 9연대장 이치업 중령 후임으로 부연대장 김익렬 소령 임명
- 2. 7 ■ 전국에 비상경계
 - 좌파세력,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해 전국적 총파업으로 몰고 간 ‘27투쟁’ 전개
- 2. 8 ■ 조천면 함덕리에서 청년들이 도로차단 후 담을 치우려 하던 도청 자동차 운전사와 충돌. 긴 급출동한 경찰이 청년 12명을 체포
- 2. 9 ■ 안덕면 사계리 청년들, 마을에서 술마시던 경찰관 2명을 집단구타
 - 저지지서, 청년들에 의해 피습당함
- 2. 10 ■ 조병옥 경무부장, 27폭동으로 전국적으로 39명이 사망했으며 8,479명이 검거됐다고 발표
 - 고산지서 경찰이 시위하던 군중에게 발포, 주민 1명 중상
- 2. 11 ■ 제주경찰, 27사건여파로 제주에서 방화 1건, 테러 9건, 시위 19건이 발생했다고 발표 3일 동안 290명 체포
- 2. 26 ■ UN임시총회에서 “UN한국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자”라는 미국안 채택
- 2월말 ■ 남로당 제주도당 임원들의 ‘신춘회의’에서 강은파의 논쟁 끝에 12대 7로 무장투쟁 방침이 결정됨
- 3. 6 ■ 조천지서에서 취조를 받던 조천중학원생 김용철 고문치사
- 3. 10 ■ 조천중학원 학생들과 주민들, 지서에 몰려가 고문치사 사건 항의 시위
 - 성산면 관내 청년 66명, 남로당을 탈퇴해 대동청년단에 가입한다는 성명 발표 이후 남로당 탈퇴 성명 줄이음
- 3. 11 ■ 미군정청 특별감찰관 벨슨 중령, 제주도 지사 유해진에 대한 특별감찰보고서에서 유 지사 해임과 제주도 경찰행정에 대한 조사, 과밀 유치장 조사 등을 딴 장관에게 건의
- 3. 14 ■ 모슬포지서에서 대정면 영락리 청년 양은하 고문치사 사건 발생
- 3. 15 ■ 남로당 제주도상위에서 전남도당 오르그가 참석한 가운데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써, 둘째 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으로써 무장투쟁 결행 최종 결정
- 3. 20 ■ 애월면 새별오름에서 훈련 중이던 자위대원들과 애월지서 경찰서청대청단원간 충돌
- 3. 28 ■ 이승만 방한중인 미 육군성 드래퍼 차관에게 제주도를 미군기지로 제공할 의사 있음을 표명
 - 남로당 제주도당, 회합을 갖고 무장투쟁 개시일을 4월 3일로 결정

- 3. 29 ■ 한림면 금릉리에서 미군정을 비판하던 청년 박행구가 경찰과 서청에 잡혀 즉결 처형됨
- 3. 30 ■ 전국 일원에서 5·10총선거 선거인 등록업무 개시
- 4. 1 ■ 국회 선거위원회, 각도별 국회의원 수 발표. 전체 200명중 제주 3명 배정
- 4. 3 ■ 제주도에서 무장봉기 발발. 350여 명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새벽 2시를 기해 제주도내 12개 지서를 공격하고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 경찰 4명,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 사망
- 4. 5 ■ 미군정, 약 100명의 전남경찰을 응원대로 급파하고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설치(사령관 김정호 경무부 공안국장)
 - 미군정, 제주도 도령(道令)공포해 제주 해상교통 차단하고 미군 함정 동원해 해안봉쇄
- 4. 8 ■ 미국, 주한미군을 48년 12월 말까지 철수키로 잠정 결정
 - 제주비상경비사령관 김정호, 무장대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한다는 포고문을 발표
- 4. 10 ■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 제주에 파견
- 4. 13 ■ 제9연대, 북제주지구 경비치안 확보차 제주읍에 특별부대 파견
- 4. 14 ■ 최종 선거등록 결과 제주도는 127,752명 중 82,812명이 등록해 64.9%(전국 평균 91.7%)로 전국 최하위 기록
 - 조병옥 경무부장, 선무문 발표
- 4. 16 ■ 단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남한 전역에 향보단 창설
 -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 조병옥 경무부장의 특명으로 선무활동차 제주에 파견
- 4. 17 ■ 미군정, 맨스필드 중령을 통해 제9연대에게 경찰과 협조하여 진압작전에 참가하도록 명령
- 4. 18 ■ 단 군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에게 제주도 주둔 경비대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무장대 지도자와 교섭할 것을 지시
 - 무장대, 선거사무소 습격해 관련 서류 탈취
 - 유해진 도지사 외 32명을 위원으로 한 시국수습대책위원회 결성
- 4. 19 ■ 무장대, 조천면 신촌리 투표소 습격방화
- 4. 20 ■ 미군정, 미고문관 드루스 대위와 부산 제5연대 소속 1개 대대를 제주도에 파견
- 4. 22 ■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로 변경
 - 김익렬 9연대장, 무장대에게 평화협상을 요청하는 전단을 비행기로 살포
- 4. 24 ■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한국 섬 폭동 발발 46명 사망'이라는 제목 아래 제주사태 첫 보도
- 4. 27 ■ 제주에서 미 20연대장 브라운 대령, 24군단 작전참모부 슈 중령,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 등이 회동해 대책회의 개최
 - 경비대 5연대와 미 20연대 정찰대를 동원한 수색작전 전개

- 4. 28 ■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평화협상 진행. 72시간내 전투중지 등에 합의
- 4. 29 ■ 딘 군정장관, 극비리에 제주도 방문
 - 슈 중령, “제주도에 있는 현재의 병력만으로도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충분”하다는 요지의 보고서 제출
 - 김정호 제주비상경비사령관, “오후 8시 이후 전도의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사살해 버리는 강경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힘
- 5. 1 ■ 세칭 ‘오라리 방화사건’ 발생해 평화협상 파기
 - 무장대, 제주읍 도평리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살해
- 5. 3 ■ 미군 수뇌부, 경비대사령부에게 “무장대를 총공격하여 제주사건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명령
 - 미국 뉴욕타임스지, 제주도 무장대가 ‘경찰무기 압수, 경찰서청 처벌, 5·10선거 취소 확약’ 등 5개항의 항복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
- 5. 5 ■ 제주읍 미군청청 회의실에서 딘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옥 경무부장, 송호성 경비대사령관, 맨스필드 중령, 유해진 도지사, 김익렬 9연대장, 최천 제주경찰감찰청장 등이 모여 이른바 ‘5·5 최고수뇌회의’ 개최
 - 무장대, 화북리 선거관리위원장과 내도리 구장 등을 살해
- 5. 6 ■ 미군정, 김익렬 9연대장 해임, 신임 9연대장에 박진경 중령 임명
- 5. 10 ■ 5·10선거 실시. 제주도 62.8%로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 북제주군 갑을 2개 선거구는 과반수 미달로 선거무효됨
 - 무장대, 중문면 상예리 2구를 습격하여 대청단장 부부와 국민회 상예리 책임자를 납치 후 살해
- 5. 11 ■ 무장대, 제주읍 도두리에서 마을 선거관리위원장, 대동청년단장, 또는 그들의 가족들을 5월 19일까지 잇따라 납치해 살해
- 5. 12 ■ 미군정, 구축함 크레이그호를 제주도에 급파해 해안 봉쇄활동
- 5. 15 ■ 제11연대 수원에서 제주로 이동(연대장에 제9연대장인 박진경 중령 취임). 기존의 제9연대는 제11연대에 합편됨
- 5. 18 ■ 국회선거위원회, 딘 군정장관에게 제주도의 북제주군 갑을 양 선거구에 대하여 선거무효 선포를 할 것을 건의
 - 수도경찰청 최난수 경감이 인솔하는 특별수사대 제주도에 파견
- 5. 19 ■ 철도경찰 350명과 제6관구 및 제8관구 경찰관 100명 등 총 450명이 경무부 지령에 의하여 제주로 출발
- 5. 20 ■ 미군정, 미6사단 예하 광주 주둔 제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

- 경비대원 41명이 모슬포 부대에서 탈영
- 5. 21 ■ 미군정, 남제주군에서 오용국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발표
- 5. 22 ■ 탈영한 경비대원 41명 중 20명이 대정 부근에서 체포
- 5. 25 ■ 남로당 기관지 『노력인민』, 제주도 사태에 대해 첫 보도
- 5. 26 ■ 단 군정장관, 제주도 북제주군 갑을 양 선거구의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는 포고 발표
- 5. 28 ■ 유해진 제주도지사가 경질되고 제주 출신의 임관호가 지사로 임명됨
 - 조병옥 경무부장, 치안상황 시찰차 제주도 방문
- 5. 31 ■ 제헌국회 개원. 이승만, 국회의장에 선출
- 5월하순 ■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 준장, 제주도 시찰
- 6. 1 ■ 박진경 11연대장, 대령으로 진급
- 6. 2 ■ 제주주둔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 “제주도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힘
- 6. 10 ■ 단 군정장관, 6월 23일 시행하기로 한 북제주 갑을 양구의 재선거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행정명령 제22호를 발표
- 6. 11 ■ 제주경찰감찰청장 최천, 감독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정직처분
- 6. 17 ■ 제주경찰감찰청장에 제주 출신의 김봉호 임명
- 6. 18 ■ 박진경 제11연대장 숙소에서 부하에 의해 피살. 단 군정장관과 로버츠 준장, 제주에 내려와 현지 사정 조사한 뒤 박 연대장 시신 수습 후 귀경
- 6. 21 ■ 박진경 대령 후임으로 제11연대장에 최경록 중령, 부연대장에 송요찬 소령 부임
- 6. 30 ■ 폭우로 인해 경비대의 작전 보류
- 7. 1 ■ 김봉호 제주경찰감찰청장, 경찰의 불법부정 근절 약속과 함께 귀순자는 양민으로 인정한다고 천명
 - 도내 여행증명제도 폐지·어획금지 해제
- 7. 5 ■ 목포~제주간 정기연락선 여행증명제도 폐지
- 7. 10 ■ 철도경찰 100명 제주도에 파견
- 7. 15 ■ 제9연대를 제11연대에서 배속해제하여 재편성연대장에 송요찬 소령, 부연대장 서종철 대위
- 7. 19 ■ 철도경찰 200명 제주도에 파견
- 7. 20 ■ 이승만, 국회에서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
- 7. 21 ■ 3여단의 2개 대대가 부산에서 제주도로 이동해 9연대에 배속
- 7. 22 ■ 제9연대 본부, 작전상 제주도 모슬포 대촌병사에서 제주읍으로 이동

- 7. 24 ■ 제11연대 제주도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
- 8. 5 ■ 9연대 미군 고문관, 정보 분야(S-2)에서 제주출신이 배제됐음을 보고
- 8. 6 ■ 제1관구경찰청, 제1차 응원부대와 교대할 제2차 응원대 파견
- 8. 11 ■ 제주도 민보단 창설
- 8. 12 ■ 9연대 미군 고문관, 작전 분야(S-3)에서 제주출신이 배제됐음을 보고
- 8. 13 ■ 제주도 여행증명제 부활
- 8. 14 ■ 박대령 암살사건에 대한 고등군법회의. 문상길, 신상우, 손선호 배경용 4명에 대해 총살형, 양회천 무기, 강승규에 대해 5년 징역을 언도
- 8. 15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공포
- 8. 20 ■ 8월 20일을 전후 응원경찰 800명 가량이 제주에 증파
- 8. 21 ■ 김달삼,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주석단 일원으로 선출
- 8. 24 ■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 체결함으로써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군에 귀속
- 8. 25 ■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 최대의 토벌전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내용이 포함된 포고문을 발표
■ 미군 제1보병연대 1개 소대, 제주 주둔 임무 교대
- 8. 26 ■ 주한미군 임시군사고문단(PMAG) 설치
- 8. 27 ■ 하지 주한미군사령관 이임하고 콜터 장군이 주한미군사령관에 임명
- 8. 29 ■ 응원경관대 800명 제주도에 도착
- 8. 31 ■ 경남 제7관구 경찰청, 제주도 응원부대 파견
- 9. 8 ■ 제주읍 삼양리 거주 13살 소년, 삼양지서에서 고문치사
- 9. 9 ■ 김일성을 수상으로, 박헌영홍명화김책을 부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 9. 19 ■ 소련, UN결의에 따라 북한 주둔군의 연말 철수방침 밝힘
- 9. 23 ■ 박진경 암살사건 관련 문상길손선호 총살형 집행. 신상우배경용은 총살형 집행 직전 특사로 감형
- 9. 27 ■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6호) 공포
- 10. 1 ■ 정일권 경비대 총참모장과 김영철 해안경비대 참모장, 제주 시찰
- 10. 2 ■ 수도경찰청과 제8관구청 응원경찰대 제주도에 파견
- 10. 5 ■ 제주경찰감찰청장에 제주 출신 김봉호에 이어 평남 출신 홍순봉 임명
- 10. 8 ■ 이승만, 미군철수 연기를 요구
- 10. 9 ■ 로버츠 고문단장, 5여단 고문관 트리드웰 대위에게 제주도 작전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

- 10. 11 ■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 설치
- 10. 17 ■ 송요찬 9연대장, 제주 해안에서 5km이상 지역에 통행금지를 명령하면서 이를 어길시 이우여하를 불문하고 총살에 처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 발표
- 10. 18 ■ 제주해안 봉쇄
 - 여수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 제주도에 증파명령
- 10. 19 ■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발생
 - 제주도경비사령관 김상겸 대령, 14연대 반란사건에 대한 문책으로 파면됨. 송요찬 9연대장, 제주도경비사령관 겸직
- 10. 23 ■ 무장대, 제주읍 삼양지서와 조천면 관내 조천지서·함덕지서를 일제히 공격
- 10. 24 ■ 무장대, 이덕구 명의로 정부에 선전포고. 토벌대에게 호소문 발표
- 10. 28 ■ 9연대 장병 100명 기량이 남로당 프락치로서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연행당하는 사건 발생
 - 미군보고서, “은밀한 모병을 통해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제주에 파견했다”고 보고
 - 토벌대, 애월면 일대에 대한 대대적 토벌작전 결과 애월대정 양 지부원 약 100명을 고성리 부근에서 완전 포위격멸했다고 보고
- 10월하순 ■ 채병덕 통위부 참모총장, 제주 시찰
- 11. 1 ■ 무장대와 내통한 혐의로 일부 경찰이 체포되는 소위 ‘경찰 프락치 사건’ 발생
- 11. 7 ■ 토벌대, 구좌면 행원리 가옥 20여 채를 방화하고 주민 10여 명을 총살
 - 군경합동토벌대, 남원면 중산간 마을인 의귀리수망라한남리를 급습해 피신하지 않은 노인 과 어린이를 총살하고 가옥 대부분을 방화
 - 무장대, 서귀면 서귀리를 급습해 민가에 방화
- 11. 8 ■ 로버츠 주한미군사고문단장, 주한미군사령관에게 “CIA는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 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 11. 9 ■ 김두현 제주도 총무국장, 서북청년회 사무실에서 고문을 받다 사망
- 11. 13 ■ 토벌대, 애월면 하거리에서 가옥에 방화하고 남녀노소 25명을 집단총살 한 뒤, 소길리 원동 마을에서 주민 50~60명을 집단총살하는 등 이 날을 기점으로 약 4개월간 중산간마을을 초토화하고 주민들을 집단총살
- 11. 15 ■ 로버츠 고문단장, 주한미군사령관에게 CIA 활동의 우수함을 칭찬하고 “제주도 파견 한국군 3개 대대를 주로 서북청년회 단원으로 충원시킬 계획”임을 보고
- 11. 17 ■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령 제31호로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 선포
- 11. 19 ■ 제주경찰감찰청, 제주도경찰국으로 개편
- 11. 20 ■ 국방부, 군 작전과 군기(軍機)를 보호하고 보도의 정확성을 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 관

계 기사의 사전검열을 천명

- 11. 27 ■ 콜터 장군 “로버츠 군사고문단장 휘하에 있는 고문단들에 의해 만족할 만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들은 모든 한국군 야전부대에 배치돼 있다”고 밝힘
- 11. 28 ■ 무장대, 남원면 남원리와 위미리를 집중공격해 주민들을 집단살해하고 가옥에 방화
- 11. 30 ■ 법률 제9호로 국군조직법 공포
- 12. 1 ■ 국가보안법 공포
 - 로버츠 고문단장, 국방부 참모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계엄령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 12. 3 ■ 1차 계엄고등군법회의 개정. 「수형인 명부」에는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민간인 871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기록됨
 - 무장대, 경찰차서 소재지인 구좌면 세화리를 대대적으로 습격해 주민 50명 가량을 살해하고 40가호 150체에 방화
 - 송요찬 9연대장, 미군임시군사고문단에 “11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폭도 122명 생포, 576명 사살했다”고 보고
- 12. 6 ■ 송요찬 연대장, “미군 조종사 에릭슨 중위가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정찰비행을 통해 반란을 진압하는데 훌륭한 지원을 했다”고 미 24군단장에게 추천서를 보냄
- 12. 12 ■ 유엔총회,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면서 미·소 양군의 조속한 철군을 요구
- 12. 13 ■ 서북청년회 단원 620명이 정식 경찰로 임용
- 12. 15 ■ 국군조직법에 따라 통위부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를 대한민국 육군으로 개칭
 - 제9연대를 제5여단에서 해편하고 제2여단에 편입
 - 토벌대, 표선면 토산리 주민을 집합시킨 후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와 일부 젊은 여자 등 150여 명을 표선국고로 끌고 가 감금했다가 12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집단총살
- 12. 16 ■ 제2연대 선발대, 제주에 도착
- 12. 17 ■ 미 국무성, 1948년 12월말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키로 결정한 대한정책지침인 NSC-8에 대해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
 - 미군보고서, “최근 제2연대의 진압작전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그 이유는 수준 높은 작전을 전개하려는 욕망과 제2연대 성공자들의 훌륭한 업적에 부응하려는 욕망 때문”이라고 보고
- 12. 18 ■ 로버츠 고문단장, 이범석 국무총리와 채병덕 참모총장 등에게 서신을 보내 송요찬 연대장의 지휘력에 대해 거듭 칭찬하면서 이런 사실이 신문과 방송, 대통령 상명에 의해 크게 일반에 알릴 것을 권고
 - 토벌대, 여자 3명과 어린이가 포함된 구좌면 하도라종달리 주민 10여 명이 숨어 있던 다

- 량쉬굴'을 발견, 굴속으로 불을 지피 질식사 시킴
- 12. 19 ■ 9연대 선발대, 제주를 떠나 대전에 도착
 - 대동청년단서북청년회 등이 통합해 대한청년단 결성
 - 서북청년회 단원 250명 제주 도착. 이중 25명은 경찰, 225명은 군인이 됨
 - 12. 21 ■ 채병덕 참모총장, 로버츠 고문단장의 12월 18일자 권고에 대해 "담화를 통해 송요찬의 활동을 소개할 것이고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도록 추천할 것이며, 송요찬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답신
 - 토벌대, 함덕리 대대본부에 자수해간 조천면 관내 주민 150명을 제주읍 속칭 '박성내리는 냇가로 데려가 집단총살
 - 12. 22 ■ 대전에서 출발한 제2연대 1대대, 제주에 도착
 - 토벌대, 표선면 가시리에서 소개온 주민들 중 '도피자기족 76명을 속칭 '버들뚝 위쪽 밭에서 집단총살
 - 12. 25 ■ 소련, 북한주둔 소련군을 완전 철수했다고 발표
 - 12. 29 ■ 2연대(연대장 함병선), 9연대와 교체해 제주에 주둔
 - 12. 30 ■ 국방부 보도과장, 기자회견을 통해 "폭도 진압을 일단락 지었으므로 수삼일 내로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발언
 - 12. 31 ■ 제주도지구 계엄령 해제

1949년

- 1. 1 ■ 무장대, 제주읍 오동리에 위치한 2연대 3대대 주둔지를 공격. 교전 끝에 무장대원 10여명 사망하고, 2연대 장병도 7명 전사
- 1. 3 ■ 무장대, 제주읍 삼양리, 남원면 하례리, 한림면 협재리를 기습해 주민 살해
 - 외도지서 경찰과 특공대원들이 무장대로 위장하여 제주읍 도평리에 진입, 일부 주민들이 숨지 않았음에도 이튿날까지 70명 가량을 총살
- 1. 4 ■ 함병선 2연대장, 계엄령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
 - 토벌대, 제주읍 화북리 곤을동 주민을 이틀에 걸쳐 집단총살
- 1. 7 ■ 제2연대 본부를 농업학교로 이동
- 1. 12 ■ 무장대, 남원면 의귀리에 주둔해 있는 2연대 2중대를 습격했으나 패퇴. 군인들은 전투 직후 의귀국민학교에 수용했던 중산간마을 주민 80여 명을 집단총살
- 1. 13 ■ 무장대, 성읍리를 습격해 주민 38명을 살해하고 방화

- 1. 17 ■ 북촌사건 발생 토벌대 마을 인근에서 군인들이 기습받는데 대한 보복으로 조천면 북촌리를 모두 불태우고 이튿날까지 주민 400명 가량을 집단총살
- 1. 18 ■ 제3구경찰서(모슬포)와 제4구경찰서(성산포) 설치
- 1. 20 ■ 2연대, 기존 2여단 소속에서 해편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변경
- 1. 21 ■ 이승만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제주와 전남지역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준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유시
- 1. 22 ■ 육군본부, 육군 항공사령부에게 비행기 2대를 1월 24일까지 제주도에 파견해 진압작전에 협조하라고 지시
 - 토벌대, 안덕면 동광라상창리 주민 등 80여 명을 서귀포 정방폭포 부근에서 집단총살
- 1. 24 ■ 국무회의, 제주도에 국군 1개 대대를 증파하기로 의결
- 1. 25 ■ 한국군 소속 L-5 2대, 제주도에 파견
- 1. 28 ■ 이승만 국무회의에서 “미 해군이 제주도에 기항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군 1개 대대와 경찰 1,000명을 증파하였으니 조속히 완정(完征)하라”고 지시
- 1. 31 ■ 육군본부, 유격전 전문부대인 6여단 산하 유격대대를 제주에 파견
- 2. 4 ■ 무장대, 99식 소총을 연대에 반납하기 위해 제주읍으로 가던 2연대 병력을 구좌면 감녕리 부근에서 습격하여 소총 150정을 탈취하고, 2연대 병사 15명과 경찰 1명을 사살
 - 제주읍 봉개지구(봉개용강회천리)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작전 전개. 토벌대, 도망가는 주민들을 추격하여 수백명을 총살
- 2. 5 ■ 공보처장 김동성 “1948년 11월 17일에 발효된 제주도의 비상사태는 한 달 전에 해제되었지만 그 효력에 대한 공식언급은 없었다”고 발표 이에 대해 미군은 “비상사태를 한국인이거나 미국인 모두 종종 계엄령이라 불러 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정부에 의해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없다”고 논평
- 2. 12 ■ 관음사,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소각됨이 밖에도 도내 15개소의 사찰이 토벌대의 방화로 전소됐으며, 3개소는 일부 소각됐고, 9개소의 사찰은 소개령 때 파옥당함. 또한 스님 16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됨. 한편 경찰 부친이 주지인 함덕리의 한 사찰은 무장대에 의해 피해를 입음)
- 2. 19 ■ 경찰특별부대(사령관 김태일 경무관) 505명 제주에 파견
- 2. 20 ■ 미군사고문단, “제주읍 도두리에서 민보단원들이 군경의 감독 아래 76명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보고
- 2. 23 ■ 검찰총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지 말고 강경조치하라는 공문 시달

- 경찰서의 명칭 변경(제1구경찰서→제주경찰서, 제2구경찰서→서귀포경찰서, 제3구경찰서→모슬포경찰서, 제4구경찰서→성산포경찰서)
- 2. 27 ■ 제2연대, 제주읍 화북리에서 1948년 12월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39명에 대해 사형 집행
- 3. 2 ■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유재홍 대령, 참모장 함병선 2연대장) 설치
- 3. 10 ■ 이범석 총리·신성모 내무부장관, 제주도 시찰
- 3. 14 ■ 로버츠 준장, 주한미사절단에 보낸 문서에서 “제주도 작전에 미군 항공기 3대가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립
- 3. 21 ■ 제주도의 재선거를 1949년 5월 10일 시행한다고 공포
 - 이범석 국무총리의 국방부장관 겸직을 면하고, 국방부장관에 신성모를 임명
- 3. 23 ■ 미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1949년 6월 말까지로 연기한 대한정책지침서 NSC-82 승인
- 4. 1 ■ 미군보고서, “9연대는 모든 저항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산간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고, 1949년 3월까지 제주도 인명피해 15,000명이며, 게릴라들이 본토나 북한으로부터 병참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러한 보고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등 그간의 상황을 종합보고
- 4. 5 ■ 해병대 창설
- 4. 7 ■ 이승만 대통령 특명으로 신성모 국방장관과 이윤영 사회부장관이 제주도 방문
- 4. 9 ■ 이승만 대통령, 부인과 함께 제주도 방문
 - 제주도 재선거 유권자 및 입후보자 등록 마감
- 4. 14 ■ 신성모 국방장관, 제주도 시찰 후 귀임
- 4. 16 ■ 신성모 국방장관과 로버츠 군사고문단장이 회합을 갖고, 서북청년회 회원들을 제주도에서 철수시키기로 합의
- 5. 10 ■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 홍순녕·양병직 당선
- 5. 15 ■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해산. 서북청년회 단원으로 구성된 2연대 3대대 철수
- 5. 18 ■ 김태일 비상경비사령관 이하 경찰 특별부대 귀경
- 5. 25 ■ 유격대대, 2연대에서 배속 해제돼 철수
- 6. 1 ■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으로 진급
- 6. 5 ■ 국민보도연맹 창립 선포대회
- 6. 7 ■ 무장대 총사령 이덕구, 경찰에 의해 사살
- 6. 20 ■ 제2연대가 육군본부 직할에서 수도경비사령부로 편입됨
- 6. 23 ■ 고등군법회의 개최. 「수형인 명부」에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10차례 개최돼 민간인 1,659명에 대해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좌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기

록됨

- 6. 29 ■ 주한미군 철수 완료. 미군사고문단 500명 잔류
- 7. 7 ■ 제2연대 2대대, 인천으로 철수(1대대만 잔류)
- 7. 15 ■ 독립 제1대대(부대장 김용주), 수원에서 제주도로 이동
- 8. 13 ■ 제2연대, 독립제1대대에 제주도지구 경비 일체를 인계 후 완전 철수
- 8. 20 ■ 제주지구위수사령부를 설치(제주주둔 부대장이 위수사령관이 됨)
- 8. 26 ■ 호국군을 예비군으로 개칭
- 8. 27 ■ 장경근 내무차관 제주도 순시
- 9. 14 ■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발생. 탈옥자 286명 사살 당함
- 10. 2 ■ 제주비행장 인근에서 '1949년 군법회의 결과 사형이 선고된 240명에 대한 총살형 집행해 암매장
- 11. 15 ■ 국민회 제주도지부장 김충희, 제주도지사에 임명
- 11. 24 ■ 계엄법 제정·공포
- 11. 27 ■ 치안국, 11월 27일 현재 보도연맹에 가입한 전향자 수가 제주에서 5,283명에 이른다고 발표
- 12. 20 ■ 제주도 재건부흥위원회(위원장 김충희 제주도지사) 조직
- 12. 27 ■ 독립 제1대대 제주에서 철수
- 12. 28 ■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 제주에 도착

1950년

- 2. 10 ■ 김충희 도지사, 국무총리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43사건으로 3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 으며, 가옥손실 4만여 동 등 피해액이 200여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 5. 30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도에서는 김인선, 강창용, 강경옥 당선
- 6. 25 ■ 625전쟁 발발. 제주도 해병대사령관이 제주도지구 계엄사령관 겸임
 - 치안국장, 각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간을 전화통신문으로 긴급 하달하여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즉시 구속할 것을 지시
- 6. 29 ■ 치안국장, 제주도경찰국장에게 '별순분자 구속의 간 하달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고 명령
- 7. 6 ■ 제주지구 비상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 제주지구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간'이 제주도경찰 국장에게 하달

- 7. 8 ■ 계엄법 제1조에 의하여 전남과 전북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 계엄을 선포
- 7. 11 ■ 치안국장으로부터 ‘불순분자 검거의 간’이 제주도경찰국장에게 하달
- 7. 15 ■ 해병대 1개 대대, 제주항을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이동
- 7. 16 ■ 제주도에 육군 제5훈련소 설치
- 7. 20 ■ 비상계엄 남한 전역으로 확대
- 7. 25 ■ 무장대가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해 민가에 방화
- 7. 27 ■ 토벌대, 예비검속으로 제주읍 주정공장에 수감했던 사람들을 사라봉 앞 바다에 수장시킴
- 7. 29 ■ 서귀포경찰서 관내에 예비검속 됐던 수감자 150여 명이 끌려나가 바다에 수장됨
- 8. 4 ■ 대통령 긴급명령 제9호로 비상항토방위령 공포
 - 경찰 공문서(불순분자 검거의 간, 8월 4일 현재 제주 도내에서 820명이 예비검속돼 있다고 밝힘
 - 제주경찰서주정공장 등지에 수감되어 있던 예비검속자 수백 명이 제주항 앞바다에 수장됨
- 8. 5 ■ 모슬포 부대에서 해병대 신병 입영식 거행
 - 오현중학교 학생 423명이 학도병 지원
- 8. 8 ■ 제주지검장, 법원장 등 도내 유력인사 16명이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구금
- 8. 19 ■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예비검속자 수백 명이 제주비행장에서 총살된 후 암매장
- 8. 20 ■ 모슬포경찰서 관내 한림면대정면안덕면 예비검속자 344명 중 252명이 군에 송치돼 송악산 첫알오름에서 집단총살됨. 당국의 제지로 인해 6년만에야 시신을 수습한 대정면 희생자 유족들은 시신을 구분할 수 없어 적당히 유골을 맞춰 132기의 봉분을 만들고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라 칭함.
- 8. 30 ■ 김두찬 해병대 정보참모,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에게 예비검속자에 대한 총살 명령 및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달했으나, 문형순 서장은 ‘부당함으로 미이행(未履行)’이라며 거부
- 8. 31 ■ 제주도 해병대 일부 병력 철수
- 9. 3 ■ ‘제주도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 사건’ 피의자 석방
- 9. 14 ■ 제주도 사찰관계자 연석회의에서 예비검속자 중 개선의 기망이 있는 자를 석방하기로 결정
- 9. 15 ■ 인천상륙작전
- 9. 17 ■ 예비검속자 석방 시작됨
- 10.10 ■ 제주도지구의 계엄 해제
- 11. 7 ■ 남한 전지역의 비상계엄을 해제. 제주도와 경남 및 경북 지역을 제외한 38도선 이남 전역에

경비계엄 선포

1951년

- 1. 22 ■ 육군 제1훈련소 대구에서 제주도로 이동
- 4. 24 ■ 제주 경찰, 1950년 10월 1일~1951년 4월 22일까지 7개월간 무장대 사살 56명, 무기노획 소총 11정, 수류탄 2발, 경찰 17명 사상(사망 15, 부상 2), 자위대 24명 사상(사망 11, 부상 11, 행방불명 2), 민간인 42명 사상(사망 1, 부상 3, 납치 38)등의 전과 발표
- 5. 10 ■ 제주도 육군 특무대 창설
- 5. 20 ■ 제주도에 온 피난민수 148,794명으로 집계
- 5. 28 ■ 정일권 육해공군 총사령관,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 시찰

1952년

- 1. 7 ■ 육군훈련소장에 장도영 준장 임명
- 1. 25 ■ 대한청년단 특동대, 제주극장에서 발대식
- 2. 6 ■ 미8군사령관 벤프리트, 제주도 시찰
- 4. 1 ■ 제주 경찰, 치안국 작전지도반의 지도하에 4월 30일까지 30일간 예정으로 '제주도지구 잔비섬멸작전'을 전개
- 5. 16 ■ 육군 정보국, 제주도 무장대(사령관 김성규) 규모를 65명(무장 30, 비무장 35)으로 파악
- 5. 28 ■ 제주도의회 잔여 무장대 완멸책으로 귀순하면 생명은 보장한다는 요지의 하산권고문을 반포기로 가결
- 7. 3 ■ 이승만 대통령 부처, 미8군사령관 벤프리트와 유재홍 중장 등과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 시찰
- 8. 9 ■ 제주지구위수사령관 겸 육군 제1훈련소장 장도영 이임
- 8. 14 ■ 제주지구위수사령관 겸 신임 육군 제1훈련소장에 오덕준 취임
- 9. 16 ■ 제주방송국에 무장대 5명이 침입하여 숙직 중인 방송과장 등 3명을 납치
- 10. 31 ■ 무장대, 서귀포발전소를 습격해 방화
- 11. 1 ■ 제주도경찰국, 100전투경찰사령부 창설
- 11. 26 ■ 이승만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예비검속은 공포하지 말라"고 지시
- 12. 25 ■ 제주도지구 재산무장대의 완전섬멸을 위하여 경가충남경북에서 1개 중대씩 3개 중대의 경찰병력을 파견

1953년

- 1. 25 ■ 육군본부, 무지개부대를 1월 20일~5월 27일까지 육군첩보부대(첩보부대장 이철희 대령)에 배속
- 1. 29 ■ 육군 특수부대인 무지개부대(소령 박창암) 86명이 제주도에 투입
- 5. 1 ■ 무지개부대 작전 종료
- 6. 15 ■ 치안명령 제84호에 의거 파견된 경기충남경북의 경찰 병력을 6월 15일 0시부로 배속 해제 원대복귀
 - 이웅준 중장, 육군 제1훈련소 소장으로 임명
- 7. 11 ■ 미 극동사령부 부사령관 켄들, 제주도주둔 육군 제871부대를 사열
- 10. 13 ■ 경찰 100사령부 사령관 김원용 총경 이임. 후임에 한재길 경감
- 11. 2 ■ 제주읍 도평리·노형리 주민, 북제주군과 경찰에 재건 복귀를 진정
- 11. 7 ■ 1년여간 소개생활을 해오던 대정면 산이수동 주민들이 복귀입주
- 11. 20 ■ 이경진 제주도경찰국장, 20일을 기해 도내 경찰주둔소 경비초소의 경찰병력을 철수한다고 발표

1954년

- 1. 15 ■ 이경진 제주도경찰국장, 잔여무장대는 6명 뿐이라고 발표
- 4. 1 ■ 한라산 부분 개방. 산간부락 입주 및 복귀 허용
- 9. 21 ■ 한라산 금족구역 해제

찾아보기

가

가이스트(Geist)→외국인

강경수 395

강계일 76

강계효 395

강공부 388

강군호 478

강규남 410

강규찬 158, 183, 240

강기유 394

강기찬 182

강기환 387

강대석 95, 158, 183

강도화 481

강동호 106, 112, 134

강두삼 459

강두중 394

강만길 37

강매춘 398

강명식 401

강문석 113, 157, 158, 163

강봉남 477

강산엽 124

강삼룡 478

강상문 462, 487

강상준 130

강상추 478

강서수 484

강석준 424

강석홍 424

강선 395

강선행 395

강성모 337

강순덕 496

강순이 398

강순현 381, 450, 452

강승규 226, 228

강승학 394

강승환 434

강실 334

강어영 95, 104

강영반 478

강용빈 434

강우송 479

강원기 459

강원환 68

강위옥 476

강윤규 453

강응무 387

강의원 235

강인수 95, 101, 106, 111, 117, 119, 122, 124, 134

강인옥 492

강인팔 395

강일수 453

강제량 381
 강제생 395
 강재호 398
 강조순 396, 397
 강조정 397
 강조행 396, 485
 강종석 374
 강지수 96
 강찬석 348
 강창권 388
 강창수 388
 강창우 381, 450
 강창욱 388
 강창하 392
 강태룡 504
 강태문 315
 강태원 350
 강태중 491, 503
 강태호 408
 강필생 172, 345
 강화순 394
 건국준비위원회 74, 75
 건준→건국준비위원회
 결7호 작전 59
 경무부 101, 110, 121~126, 147, 176~178, 188,
 189, 231, 262, 295
 경비계엄 338
 경비대→국방경비대
 경비대원 탈영사건 303, 536
 경성환 68
경찰
 -경찰기동대 200
 -경찰예비대 190
 -경찰전문학교 188, 269
 -경찰특공대 187
 -경찰특별부대 307, 320, 325, 330
 -경찰파견대 249
 -김녕지서 495
 -남원지서 172, 439
 -대정지서 172
 -두모지서 440
 -맹호대 345
 -모슬포경찰서 307, 430, 432, 433
 -모슬포지서 150, 152, 172, 444
 -백록중대 349
 -100사령부 349, 350, 351, 352, 355
 -사찰유격대 349, 350~352, 357
 -삼양지서 170, 269, 416, 418, 420
 -서귀포경찰서 47, 431
 -성산포경찰서 307, 429, 433
 -성산포지서 172
 -성읍지서 441
 -세화지서 170, 439
 -신산지서 482
 -신선대 344, 345, 349
 -신엄지서 170, 397, 485
 -안덕지서 491
 -애월지서 170, 171
 -외도지서 171, 290, 300, 392, 393, 397, 403
 -우도경찰관파견소 129
 -위미지서 439
 -응원경찰 87, 106, 112, 121, 122, , 129, 221,
 223, 260, 444
 -2백명 부대 268
 -저지지서 223
 -제주감찰청 85, 86, 104, 110
 -제주경찰감찰청 86, 122, 124, 127, 145, 151,
 161, 162, 169, 188
 -제주경찰서 47, 162, 169, 307, 317, 334, 341,
 356, 357, 384, 397, 420, 423, 430~435,
 459, 478, 483~489, 495, 501
 -제주경찰청 498

-제주비상경비사령부 188~190, 261, 382, 384
 -조천지서 149, 150, 152, 171, 444, 489
 -중문지서 116, 129
 -철도경찰 87, 149, 221, 408
 -청룡중대 351
 -특별수사과 122, 124, 149
 -특별수사대 382, 384, 457
 -표선지서 268, 441
 -필승중대 349
 -하원지서 342, 344
 -함립지서 171
 -함덕지서 173
 -화북지서 169, 172, 334
 경찰후원회 271
 계업고등군법회의 451
 계엄령 253, 257, 258, 276~288, 293, 311, 335,
 340, 344, 426, 429, 442, 447, 449, 452,
 455, 535, 538
 계엄법 253, 281~286
 고갑수 183
 고건 43
 고경옥 478
 고경흡 492
 고계생 379
 고공립 401
 고광수 434
 고난향 493
 고남보 388
 고남옥 388
 고남주 388
 고남준 504
 고대규 395
 고대섭 502
 고대송 464
 고두식 478
 고두주 394
 고두철 387
 고등군법회의 226, 227, 485
 고만형 484
 고무생 199
 고문치사 149~160, 171, 181, 231, 272, 291, 437,
 438, 444, 479, 534~537
 고병규 388
 고병선 310
 고봉수 419
 고봉원 502
 고봉호 381
 고산지서 발포사건 148
 고성중 494
 고성화 504
 고순협 381
 고순화 387
 고승옥 164, 342
 고신종 405
 고신춘 398
 고영삼 394
 고영준 315
 고영환 434
 고영희 398
 고예구 115, 381
 고옥심 379
 고용화 504
 고우경 464
 고원경 104
 고원룡 387
 고윤섭 406, 469, 483
 고윤중 401
 고응춘 151
 고의순 397
 고인선 95
 고인수 343
 고일수 172

고임생 388
 고정규 394
 고정숙 397
 고즈키(上月食夫)→외국인
 고진희 182, 240, 381
 고창구 427
 고창무 104, 124, 364
 고창선 393, 396
 고창훈 401
 고춘자 398
 고치돈 271
 고칠중 104, 158, 182, 183, 381
 고태순 401
 고태식 387
 고태옥 398
 고태원 388
 고희영 478
 고희전 394
 곡물수집 83, 99, 135, 443
 공병순 341, 437
 공산당취체법 426
 과도입법의원 77, 78, 92, 105, 243
 관음사 61, 323, 455, 557
 광복청년회 97, 137, 142, 144
 광주제우회 231
 광주지방검찰청 446
 광주지방법원 442, 446, 447, 450, 478
 광주형무소 446, 469, 476, 477
 괴선박 254, 257, 260
 괴선박 출현설 255, 256, 257, 259
구좌면 115
 -김녕리 316, 495
 -동북리 496
 -세화리 238, 302, 438, 521
 -송당리 209, 229, 357
 -종달리 130, 300, 374, 424, 443
 -하도리 300
 -행원리 294, 389
 국가보안법 36, 37, 241, 246, 288, 319, 500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 498
 국가안보회의(NSC) 247
 국군월북사건 245
 국군준비대 89
 국민방위군 345, 431
 국민보도연맹 331, 340, 421~428, 476, 497, 535
 국민직업능력신고령 61
국방경비대(국군) 87, 88, 89, 90
 -독립대대 342, 334, 335, 373, 459
 -무지개부대 351, 355, 356, 373
 -서청중대 266
 -유격대대 306, 308, 320, 324, 331, 334, 374
 -제2연대 296, 301, 302, 304, 310, 316, 331,
 342, 360, 373, 374, 378, 382, 385, 386,
 407, 413, 455
 -제5여단 251, 252, 262, 263, 265, 334, 449
 -제5연대 191, 195, 196, 197, 217, 218, 226,
 449
 -제6여단 306, 308, 374
 -제6연대 217, 218, 241, 246, 263, 449
 -제9연대 85, 87, 161, 179, 188, 190, 191, 197,
 204, 217, 233, 300, 301, 302, 373, 374,
 378, 382, 405, 449, 450, 504, 509
 -제11연대 52, 178, 183, 217, 218, 220, 225,
 226, 235, 250, 301, 302, 305, 373, 374,
 449
 -제14연대 241, 265, 304, 449, 535
 -제주도경비사령부 252, 259, 262, 264, 265,
 449, 534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258, 320~327, 330,
 333, 365, 374, 455, 512, 535
 국방경비법 442, 458, 462, 464, 467, 500
 국사편찬위원회 46, 47

국제연합한국위원단 456, 457

국회

-『양민학살사건보고서』 48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363, 367
473, 474

-양민학살사건조사단 35, 48, 282, 283, 337,
391, 392, 497

-제주도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37

국회의원 암살음모사건 384

국회프락치사건 245, 246

군대환(君代丸) 68

군사영어학교 88, 229, 383

군사편찬연구소 46, 47

권석기 354

권승렬 317, 469

권팔 351

그린(Roy A. Green)→외국인

김갑길 488

김경석 440

김경술 129

김계생 394, 488

김계수 424

김계순 396, 490

김광진 183

김구 91, 92, 96, 147, 197, 206, 236, 241, 244,
245

김구 암살사건 246

김귀한 182

김귀환 388

김귀휴 388

김규백 490

김규식 92, 93, 96, 147, 206, 236, 241, 244

김근시 96

김금순 183

김기생 491

김기열 348

김기오 290

김기용 388

김기운 401

김기유 381

김길홍 388

김낙준 394

김남식 163

김남해 459

김녕지서→경찰

김달삼(이승진) 113, 154, 156~158, 161~163,
182, 183, 193, 194, 197, 201, 216, 227,
240, 260, 534

김대봉 86, 176, 177, 178

김대중 38, 39

김대진 182

김대홍 436

김덕훈 104

김도연 278

김동만 37

김동성 278, 288, 331

김두규 343

김두봉 158, 182

김두윤 478

김두찬 429, 434

김두천 387

김두현 114, 272, 385

김두훈 103, 104, 113, 124, 381

김록만 171

김만갑 379

김만옥 343

김만추 401

김명식 37

김묵 386

김문규 104

김문용 379

김민규	208	김성지	379
김민생	182	김성진	379
김민주	125, 167	김성추	129
김민학	459, 495	김수계	398
김방순	381	김수림	381
김병노	385	김순생	379
김병석	314, 414	김순영	130
김병채	397	김순재	379
김병택	131	김순태	283
김병해	300, 403	김승문	104
김병희	285	김승홍	388
김복남	496	김시범	76, 140
김봉규	76	김시봉	104
김봉석	208	김시종	159
김봉수	478	김시진	401
김봉익	490	김시탁	79
김봉천	181	김시택	75
김봉현	167	김시훈	268, 420
김봉호	224, 260, 261, 262	김약수	285
김부생	479	김양	228
김산춘	395	김양근	158, 182, 417, 419
김상겸	252, 257, 263, 265, 449	김양학	391
김상목	444	김언반	329
김상훈	94	김영배	134, 140, 156, 170
김생민	154, 155, 159, 456, 489	김영자	379
김석봉	401	김영주	334
김석수	43	김영진	83
김석태	415	김영찬	343
김석호	386	김영천	446
김석환	182	김영철	300, 393, 403
김석훈	172	김영호	37
김성규	300, 342, 351, 352, 353, 357, 404	김영홍	104
김성만	388	김영화	401
김성삼	255	김옥녀	486, 496
김성익	478	김완배	182
		김왕진	381

김용관	113, 156, 182, 183, 333	김재능	97, 269, 272, 382, 385, 386
김용규	452	김재봉	394
김용길	380	김재천	436
김용생	477	김점곤	164
김용수	385	김정	395
김용순	190	김정노	75, 94, 104
김용주	288, 334, 335	김정도	226, 228
김용철	149, 150, 444, 479	김정무	234, 280, 293, 383, 462
김용하	366, 537	김정복	395
김용해	75, 76, 94, 104	김정봉	417
김웅진	244, 292	김정생	223
김원근	401	김정숙	398
김원봉	95	김정현	410
김원선	478	김정호	176, 177, 178, 188, 189, 192
김원용	349, 352	김제진	419
김원중	381, 382	김종만	434, 437
김유환	94, 156, 182, 183	김종면	217, 226
김윤복	477	김종민	49
김윤택	451, 453	김종석	472
김은한	94, 156, 182	김종평	217
김응환	183	김종화	351
김의봉	342	김준중	346
김이환	95	김중배	37
김익렬	49, 158, 176, 190~194, 197, 199, 201~ 205, 216~219, 227, 265, 534	김중옥	401
김인선	97, 142	김중화	401
김인식	478	김지수	394
김인지	381, 450	김진영	381
김인평	155, 431, 492	김진옥	419
김인하	398	김차봉	104, 381
김인화	530	김찬국	37
김일성	95	김창룡	430
김임길	75	김창석	491
김임생	104	김창식	380
김장렬	466	김창후	48
김장하	172	김창희	478
		김채화	379

김천형무소 468
 김춘배 465, 488, 500
 김충희 96, 97, 142, 341, 361, 366, 437, 525
 김태경 104, 459, 477
 김태길 343
 김태생 419
 김태우 400
 김태일 125, 307, 319, 320, 325
 김태준 401, 402
 김태진 109
 김태현 104
 김태호 381, 450
 김택수 94, 95, 158
 김필원 75
 김학림 381, 450
 김한욱 49
 김한정 75, 94
 김행백 113
 김현국 76
 김형식 472
 김형조 412
 김형중 381
 김호겸 280, 337, 384, 430, 493
 김호중 393
 김호직 398
 김호진 381
 김홍규 403
 김홍석 84, 503
 김홍영 478
 김효석 317
 김홍수 228
 김희수 96
 김희주 189

나

난민정착사업 361, 376, 510, 511, 515
 남로당→남조선노동당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206, 236
 남상휘 430
 남원고등공민학교 526
남원면 115
 -남원리 302, 438, 439, 502
 -수망리 460
 -위미리 302, 439, 440, 510
 -의귀리 424, 460
 -한남리 460
 남원지서→경찰
 남조선과도정부 임명사령 133
 남조선노동당 35, 54, 89, 93~95, 102, 104, 120,
 112~114, 122, 140, 147, 153~167, 174,
 182~184, 536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239, 260
 넬슨(Lawrence A. Nelson)→외국인
 노덕술 244, 385
 노력동원령 392
 노루오름 455
 노엘(Edgar A. Noel)→외국인
 노우웰→노엘
 노윤복 270

다

다량취굴 300
 대구10·1사건 77, 79, 102
 대구6연대 반란사건 246
 대구고등법원 442
 대구형무소 392, 452, 460, 468, 469, 473, 475,
 477
 대동청년단 97, 142, 143, 159, 161, 167, 172,
 189, 199, 266, 270, 302, 375, 385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 301
대전형무소 460, 472

대정면 115

- 구억리 197
- 동일리 206
- 모슬포 207
- 보성리 172
- 상모리 299
- 신평리 158, 207, 460
- 영락리 444
- 하모리 299, 495

대정지서→경찰

대청→대동청년단

대통령 긴급명령 345

대통령 유시사항 430

대한독립촉성국민회 78, 96, 97, 136, 142, 167,
171, 270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 97

대한민청 95

대한청년단 345, 375, 396, 419, 457

독립대대→국방경비대

독립촉성국민회→대한독립촉성국민회

동태운 290

두모지서→경찰

드래퍼(Draper)→외국인

드럼라이트(Everett Drumright)→외국인

드루스(Clarence Dog De Reus)→외국인

딘(William. F. Dean)→외국인

라

래테루→외국인

러스크(Rusk)→외국인

러치(Archer L. Lerch)→외국인

로버츠(William L. Roberts)→외국인

로얄(Kenneth C. Royall)→외국인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외국인

리드(John P. Reed)→외국인

린트너(Julius H. Lintner)→외국인

마

마산형무소 468, 478

마틴 83

마틴(Martin)→외국인

마포형무소 452, 460, 465, 477

만병의 공동장지 433

맥도날드(Donald S. Macdonald)→외국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외국인

맥아더 포고 79

맥아더기념관 48

맨스필드(John S. Mansfield)→외국인

맹호대→경찰

멀린스(C. L. Mullins Jr.)→외국인

메리트(Henry C. Merritt)→외국인

모스크바 3상회의 90, 91, 92, 102

모슬포경찰서→경찰

모슬포비행장 61

모슬포지서→경찰

목시물굴 411, 412

목포교도소 465

목포형무소 443, 452, 460, 468, 469, 470, 476,
496

무선통신중계소 339

무지개부대→국방경비대

무쵸(John J. Muccio)→외국인

문경수 50

문달천 477

문도공 343

문도배 75, 76, 77, 79, 94

문등용 240

문명국 401

문명봉 401

문봉제 144, 188, 266, 271, 332
 문봉택 381
 문상길 162, 164, 169, 226, 227, 228, 229
 문석춘 313
 문영백 171
 문용채 150
 문자언 464
 문재숙 96
 문재순 381
 문재진 94, 95
 문중후 151
 문창해 417, 507
 문형순 434
 문홍목 189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48, 472, 200
미군
 -제6사단 80
 -제20연대 81, 195, 197, 213, 214, 534
 -제24군단 64, 66, 81, 194, 195, 250, 253, 534
 -제51야전포병대대 81
 -제59군정중대 74, 77, 80, 81, 84, 138, 191,
 194~196, 201~203, 252
 -제749야전포병대대 67, 81
 -방첩대(CIC) 142, 202, 223, 256
 -범죄수사대(CID) 196
 -주한미군사고문단(PMAG) 241, 249, 250, 539
 미곡수집령 99
 미소공동위원회 85, 90~96, 102~104, 139~143
 미군 철수 245
 미군정 79, 80, 539
 미군정법령 83, 88, 128, 131, 132, 282, 317
 미군정재판 124, 127, 128, 152, 203, 442, 443,
 479
 민보단 273, 274, 275, 296, 375
 민애청→조선민주애국청년총동맹
 민용기 291

민용식 437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
 민족청년단→조선민족청년단
 민주의원 92
 민주주의민족전선 92~94, 103, 105, 126, 128,
 140, 147, 381
 민청→조선민주청년총동맹

마

박갑동 162, 163, 169
 박경구 36
 박경생 223
 박경주 472
 박경훈 77, 82, 83, 95, 111, 114, 118, 133, 140,
 235, 381, 443
 박군화 387
 박근영 254, 444
 박근용 150
 박기하 199
 박남진 502
 박동우 482
 박두옥 223
 박명림 50
 박명효 83, 96
 박문옥 475
 박봉국 41
 박봉립 401
 박상길 36
 박상훈 450
 박서상 434, 437, 438
 박성내 382, 401, 402
 박성내사건 299
 박세원 450
 박신범 453
 박우상 96
 박운봉 290

박원순 43
 박응수 315
 박재욱 109
 박정생 440
 박종실 141
 박종훈 96
 박진경 200, 204, 215, 217, 218, 220, 221, 224~
 229, 287, 534
 박찬식 49
 박창암 355
 박청량 387
 박춘택 431
 박치순 96
 박태원 453
 박태훈 104, 144
 박행구 149, 152
 박헌영 92~95, 105, 240
 박형요 267, 271
 반공구국총궐기대회 243, 244
 반공법 36
 반공조건부 대한원조안 289, 321
 반공포로 339
 반몫굴 411, 412
 반민족행위처벌법 241, 243, 385
 반민특위 243, 244, 246
 방성화 172
 배경용 226, 228, 229
 배두봉 382
 백남운 93
 백록중대→경찰
 백민태 385
 100사령부→경찰
 백상욱 401
 백선진 217
 백수옥 401
 백용홍 394
 백조일손(百祖一孫) 36, 433
 백지날인 237, 238, 239
 백찬석 144
 백창원 342, 490
 백천옥 401
 뱀뱀디굴 412
 뱀부계획(Bamboo plan) 88
 버들못 399
 버제스(F. V. Burgess)→외국인
 번스(Robert Burns)→외국인
 범죄수사대(CID)→미군
 베로스(Russel D. Barros)→외국인
 변용옥 410
 변정옥 410
 변정일 37, 38, 40
 변창희 353
 변태문 151
 보감제 297
 보도연맹→국민보도연맹
 보안감찰 500, 501
 복견환 68
 복목환 68
 복시환 사건 101, 107
 본스틸(Bonesteel)→외국인
 볼트(Charles L. Bolte)→외국인
 부녀동맹 94, 110
 부병훈 94
 부산제우회 232
 부산형무소 468, 469, 475, 477
 부성방 297
 부성우 459
 부영성 424
 부영숙 379
 부옥만 130
 부을생 459
 부자생 379

- 부친형무소 468
 - 부태진 478
 - 브라운(Rothwell H. Brown)→외국인
 -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외국인
 - 비상경계령 103
 - 비상계엄 338
 - 비상사태 178, 279, 281, 282, 288
 - 비상항토방위령 345
 - 비학동산 총살사건 394
 - 빌레못굴 407, 409
 - 빛질작전 324, 455
- 사**
- 「4·3사건 실상기」 391
 - 「4·3사건 이재민 원주지 복귀 상황」 517
 -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35
 - 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38
 -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 36
 - 4·19혁명 35, 36, 392
 - 사찰유격대→경찰
 - 3·10 총파업 114, 121, 126, 127, 145, 533
 - 삼양국민학교 417
 - 삼양지서→경찰
 - 3·1사건 79, 82, 96, 100, 101, 102~128, 133, 134, 149, 533
 - 3·22 총파업 126
 - 새정치국민회의 38
 - 서귀면** 115, 238
 - 상효리 513
 - 신효리 355
 - 서귀포경찰서→경찰
 - 서귀포발전소 343
 - 서귀포수용소 424, 431
 - 서대문형무소 469
 - 서북청년회 97, 107, 135, 142, 143, 158, 161, 163, 167, 168, 171, 199, 223, 252, 262, 266~272, 302~305, 323, 330, 332, 375, 382, 385, 386, 397, 419, 420, 450, 455, 463, 479, 492, 494, 495, 534, 537
 - 서북청년회 특별중대 306, 386
 - 서울제우회 117, 231
 - 서재윤 354
 - 서종철 233, 462
 - 서준식 37
 - 서청→서북청년회
 - 서청중대→국방경비대
 - 선무공작 325, 327, 386, 407
 - 선우기성 143
 - 선우종원 341, 437
 - 선우중대 171
 - 선흘곶 411
 - 섯알오름 340, 430, 433
 - 성범용 150
 - 성산면** 115, 209, 210
 - 난산리 460
 - 신양리 495
 - 온평리 482, 496
 - 성산포경찰서→경찰
 - 성산포지서→경찰
 - 성읍국민학교 442
 - 성읍지서→경찰
 - 세화지서→경찰
 - 소개령 297, 358, 360, 378, 386, 390, 399, 405, 408, 409, 411, 441, 449, 509, 523
 - 소련 35, 62, 63, 91, 139, 146, 148, 162, 174, 178, 185, 246, 247, 254~258, 311
 - 손선호 218, 226, 227, 228, 229
 - 손원일 259
 - 송기전 406
 - 송덕수 109
 - 송두현 381, 450
 - 송시영 410

송요찬 229, 233, 234, 252, 263~266, 270, 280,
 282, 286, 287, 290, 294, 382, 449, 476,
 535, 539
 송원병 342
 송원화 170
 송유생 387
 송인택 124
 송자은 482
 송정협 355
 송대삼 94
 송한영 150
 송호성 49, 203, 205
 송효순 235
 송희은 482
 숙군 246
 『순이삼촌』 36
 슈(M. W. Schewe)→외국인
 스위니(Austin Sweeney)→외국인
 스타우트(Thurman A. Stout)→외국인
 스탈린(Stalin)→외국인
 스티븐슨(Samuel J. Stevenson)→외국인
 식량영단 115, 450
 신구범 37
 신두방 36, 381
 신민당 92
 신보배 379
 신사법 426
 신산지서→경찰
 신상목 356, 357, 515
 신상우 226, 227, 228, 229
 신선대→경찰
 신성모 252, 258, 267, 321, 326, 330, 331, 333,
 341, 359, 437
 신수용 491
 신업지서→경찰
 신우균 101, 107

신이신 395
 신익희 385
 신인철 341, 436, 437
 신춘도 496
 신탁통치 90, 91, 92
 신태호 490
 신현준 336, 337, 341, 354, 434, 436
 심동구 444

아

아놀드(Archibald V. Arnold)→외국인
 아르헨티나 국가실종자위원회 조사보고서 50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외국인
 안규반 398
안덕면 115
 -광평리 208
 -동광리 135, 443, 521
 -사계리 444
 -상창리 387
 -상천리 208, 387
 -창천리 387
 -화순리 273
 안덕지서→경찰
 안동형무소 468
 안두선 475
 안두원 450
 안두희 245
 안만규 398
 안성혁 313
 안세훈(안요검) 94, 103~108, 113, 128, 156, 158,
 182, 240
 안영순 398
 안옥순 398
 안옥희 398
 안인무 410
 안인행 394

안일진 398
 안재순 398
 안재원 398
 안재홍 49, 133, 203, 205, 225
 안정숙 383
 안태룡 394
 안호상 279
 안홍규 398
 안희경 444
 애국단 376
애월면 115
 -곽지리 486
 -광령리 271, 394
 -구엄리 170, 171
 -금덕리 396, 450, 454
 -남읍리 410
 -상귀리 410
 -소길리 387, 388
 -신엄리 210, 374
 -애월리 410, 454
 -어읍리 407, 408, 409, 410
 -장진리 394, 410
 -하가리 386, 387, 388
 -하귀리 197, 222, 271, 392~395, 454
 애월지서→경찰
 야간통행금지 111, 238, 311
 양경수 489
 양경택 459
 양경하 300, 403
 양경한 129
 양공명 387
 양공언 387
 양공옥 488
 양과자 반대시위 100
 양관석 379
 양관표 492
 양균옥 104
 양귀진 211
 양규석 469, 484, 502
 양근방 501
 양기원 410
 양남선 379
 양무봉 109
 양문수 381, 450
 양문필 381
 양민학살국회조사단→국회
 양병직 211, 333
 양복천 379
 양봉천 503
 양상원 477
 양성두 381, 450
 양성준 478
 양수봉 401
 양순애 348
 양승훈 381
 양시우 450, 464
 양신하 410
 양운용 388
 양원일 444
 양윤희 411
 양은하 149, 151, 444, 479
 양을 104, 317, 318
 양이룡 388
 양재원 379
 양정생 388
 양정심 48
 양조훈 43, 49
 양집중 478
 양천종 478
 양축생 408
 양춘생 388
 양춘희 388

양치규 401
 양치옥 401
 양태병 409
 양해길 451, 452
 양회천 226, 228
 연론검열 280, 290, 292, 295, 312, 315, 317
 에드워드(Joseph Edward)→외국인
 여순사건 164, 245, 251, 283, 304
 여운형 74, 75, 92, 93
 여행증명제 224, 238, 263
 연좌제 36, 40, 42, 496~506, 539
 영국 63, 91, 255, 472
 예비검속 337, 340, 341, 425, 426~429, 432~
 435, 438, 455, 471, 535
 예비검속법 425, 426
 예비검속자 명부 426, 433
 예비검속자 석방 상신의 건 428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 429, 434
 오경생 398
 오국만 399
 오군표 434
 오대진 75, 94, 158
 오덕준 262
 오두찬 478
 오라리 방화사건 198, 202, 534
 오문수 109
 5·10선거 206, 212, 240, 248, 444, 536
 5·10재선거 289, 330, 331, 455
 오염 126
 오용국 76, 210, 211, 292, 358, 360
 오용승 503
 오원권 353, 357
 오원보 479
 오윤부 398
 오일균 190
 5·16군사정변 36

오창기 387
 오창훈 94, 103, 104, 383
 오태경 400
 오현중학교 100
 오희삼 434
외국인
 -가이스트(Russell C. Geist Jr.) 195
 -고즈키(上月食夫) 65
 -그린(Roy A. Green) 65, 81
 -나가즈(永津佐比重) 59
 -넬슨(Lawrence A. Nelson) 136~138, 141
 -노엘(Edgar A. Noel) 252, 255
 -도야마 노보루(遠山登) 59, 65
 -드래퍼(Draper) 58
 -드럼라이트(Everett Drumright) 253, 344
 -드루스(Clarence Dog De Reus) 191, 193, 194,
 195, 196, 228
 -딘(William. F. Dean) 49, 138, 177, 191~195,
 201~206, 214, 221, 225, 229, 232, 235,
 243, 260, 261, 273, 534
 -래테루 134
 -러스크(Rusk) 64
 -러치(Archer L. Lerch) 83, 84, 99, 127
 -로버츠(William L. Roberts) 49, 225, 234, 249,
 250~253, 276, 330, 539
 -로얄(Kenneth C. Royall) 253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63
 -리드(John P. Reed) 253
 -린트너(Julius H. Lintner) 80
 -마틴(Martin) 82, 83
 -맥도날드(Donald S. Macdonald) 344
 -맥아더(Douglas MacArthur) 63, 65, 81, 128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133, 191~199,
 201, 203, 213
 -멀린스(C. L. Mullins Jr.) 294

- 메리트(Henry C. Merritt) 137, 196
- 메릴(John Merrill) 72, 83, 163, 175, 200
- 무쵸(John J. Muccio) 49, 58, 247
- 버제스(F. V. Burgess) 250, 252
- 번스(Robert Burns) 196
- 베로스(Russel D. Barros) 133, 135, 136, 137, 140, 141
- 본스틸(Bonesteel) 64
- 볼트(Charles L. Bolte) 254
- 브라운(Rothwell H. Brown) 49, 179, 183, 195, 201, 213~215, 219, 220, 221, 225, 226, 230, 234, 534
-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73
- 세이퍼트(John P. Seifert) 344
- 센다 센페이(千田專平) 65
- 슈(M. W. Schewe) 49, 194, 195, 196, 197, 202, 534
- 스위니(Austin Sweeney) 326
- 스타우트(Thurman A. Stout) 77, 82, 83, 106, 111, 114, 118, 133
- 스탈린(Stalin) 63, 95
- 스티븐슨(Samuel J. Stevenson) 127, 136
- 아놀드(Archibald V. Arnold) 80, 84
-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64
- 에드워드(Joseph Edward) 52
- 워드(Orlando Ward) 215
- 월든(A. J. Walden) 65
- 웨드마이어(Wedemeyer) 79
- 웨솔로스키(Charles L. Wesolowsky) 52, 225
- 장제스(蔣介石) 58
- 존슨(E. J. Johnson) 136
- 카스티어(James A. Casteel) 117, 118, 119, 134
- 케리 78, 82
- 코펜닝(Lester Chorpensing) 223
- 콜터(John B. Coulter) 250
- 타이센(A. C. Tychsen) 194
- 트루만(Harry S. Truman) 64, 321
- 트ريد웰(Treadwell) 251
- 패트릿지(John S. Partridge) 82, 83, 95, 106, 110, 127, 134
- 페라루(Feraru) 83
- 풀러(H. E. Fuller) 251, 304
- 피쉬그룬드(Harold S. Fischgrund) 52, 234, 264, 267
- 필립 로우(Philip C. Rowe) 344
- 하우스만(James H. Hausman) 250, 251
- 하지(John R. Hodge) 64, 79, 92, 114, 194~196, 201, 202, 232, 248, 250, 534
- 해리슨(Harrison) 66
- 헝거(R. Hunger) 185
- 외도지서→경찰
- 외도지서 장작사건 395
- 우근민 38
- 우도 사건 129
- 우도경찰관파견소→경찰
- 우영하 76
- 웃밤오름 412
- 워드(Orlando Ward)→외국인
- 원동마을 387, 388
- 월든(A. J. Walden)→외국인
- 웨드마이어(Wedemeyer)→외국인
- 웨솔로스키(Charles L. Wesolowsky)→외국인
- 위미지서→경찰
- 유격대→인민유격대
- 유격대대→국방경비대
- 유근역 434
- 유동열 179, 202, 229, 231
- 유성갑 285
- 유엔한국위원단 58, 146, 151, 332
- 유영준 95
- 유재홍 258, 320~327, 330, 407, 455, 456, 535
- 유해진 49, 133, 134, 135, 136, 137, 144, 170,

192, 203, 224, 266
 유희선 437, 438
 육군 군악대 327
 육군 제1훈련소 339, 349
 육군 제5훈련소 338
 육군본부 47, 355
 육군첩보부대 355
 육군특수부대
 6·25 예비검속 피학살자 삼면유족회 432
 윤기열 460
 윤석구 279
 윤석렬 346, 348
 윤창국 387
 윤창석 381
 윤치만 478
 윤치영 278
 윤태준 294, 382
 윤학기 126
 응원경찰→경찰
 의용경찰대 344, 345
 의용소방대 345
 이경수 478
 이경진 348, 352, 356
 이관석 124, 381
 이규희 472
 이기건 355
 이기봉 297
 이기영 398
 이달호 388
 이덕구 154, 156, 158, 181, 182, 187, 240, 333,
 334, 535
 이도백 94
 이도영 508
 이두익 388
 이무생 388
 이무웅 172
 이문교 36, 502
 이문규 110, 127
 이방춘 432
 2백명 부대→경찰
 이범석 142, 249, 252, 258, 277, 278, 284, 288,
 295, 297, 308, 316, 321, 325, 326, 359
 이범팔 313
 이보연 506
 이복녕 474
 이복희 495
 이봉희 398
 이산하 37
 이삼룡 158, 163, 495
 이상훈 398
 이상희 291, 381, 382
 이석봉 385
 이성배 401
 이성일 401
 이성주 341, 437
 이세봉 401
 이순정 505
 이승만 58, 91, 92, 96, 142, 143, 147, 197, 241,
 243~245, 248, 252, 266~268, 271, 278,
 280, 282, 284, 287, 288, 307, 318, 320,
 328, 329, 332, 420, 538
 이승준 129
 이승진→김달삼
 이시형 113
 이신호 94
 이양호 397
 이영호 495
 이옥봉 437
 이옥자 398
 이옥희 398
 이완영 397
 이운방 94, 113, 159, 164, 179

이원식 401
 이원옥 75
 이윤도 271, 272, 397, 398
 이윤락 190, 199, 202, 265
 이윤배 427
 이윤영 243, 279, 328, 332
 이윤희 438
 이용준 227, 229, 303
 이인 254, 278, 285, 286
 이인선 348
 이일선 94, 104
 이재복 163
 이정숙 104, 240
 이정우 226
 이정화 387
 이종우 158, 182, 183
 이종형 243
 이좌구 156, 182
 이주신 444
 이중엽 163
 이지형 227, 228
 이창수 183
 이창욱 183
 이창정 333
 이철희 355
 이청천 142
 이춘형 493
 이치업 134
 2·7사건 146, 147, 149, 175, 444, 479
 이한동 43
 이한봉 401
 이현필 508
 이형근 193, 194, 233
 이호 141
 인공→조선인민공화국
 인구조사 366, 366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 사건 337, 341, 436
 인민당 92
 인민위원회 72~79, 85, 87, 95, 184
 인민유격대 35, 42, 46, 48, 63, 89, 95, 113, 154,
 157, 161, 181, 182, 186, 187, 192, 210,
 258, 310, 311, 342, 343, 449
 인천상륙작전 338, 354, 387
 인천소년형무소 452, 460, 477
 일본군 제58군사령부 59, 64, 66, 67
 일본군 송환 66, 81
 임관호 124, 224, 509
 임군선 387
 임문선 434
 임복순 495
 임부택 217, 219
 임선하 213
 임세옥 388
 임수송 401
 임승현 268
 임시정부 84, 91~93, 104, 105, 139
 임영신 279
 임영언 387
 임인원 387
 임재찬 381
 임찬수 313
 임창운 104
 임채정 38
 임치완 387
 임태성 183
 임화봉 387

자

자경대 274
 자위대 95, 160, 181, 182, 184, 185
 장갑순 497
 장기휴 387

장동석 486
장동춘 143
장병호 401
장봉호 388
장석관 349
장순호 387
장시영 150, 383, 507
장시용 431
장언순 387
장영복 121
장용문 437, 438
장운관 413
장윤수 131
장제스(蔣介石)→외국인
장제우 110
장준갑 48
장창국 87, 89, 133
장창원 505
장택상 278
재산관리처 450
저지지서→경찰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426
전국통일학생총연맹 266, 273, 375
진부일 288, 360, 462
전주형무소 452, 460, 476
전진한 279
진투주둔소 346, 347
전현수 49
정권수 350, 353, 357
정기봉 386, 387
정당등록법 85
정도아 387
정도일 171
정상조 381
정세진 453
정순아 387
정순희 494
정신아 387
정용철 269, 307, 419, 420
정윤희 37
정일권 201, 228, 334
정재병 398
정종언 398
정충빈 352
정치범보호관찰령 426
정치범처벌법 426
정치집회금지령 132
정태화 495
정관사 위폐사건 93
정희조 381
제2연대→국방경비대
제5여단→국방경비대
제5연대→국방경비대
제6여단→국방경비대
제6연대→국방경비대
제9연대→국방경비대
제11연대→국방경비대
제14연대→국방경비대
제50주년 제주4·3 학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
38
제59군정중대→미군
제네바협약 480
제노사이드(genocide) 539
『제민일보』 36, 37, 282, 283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38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38, 498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43
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38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43, 36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39, 45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8
 제주4·3연구소 36, 104
 제주4·3사건실무위원회 518, 521
 제주감찰청→경찰
 제주경찰감찰청→경찰
 제주경찰서→경찰
 제주경찰청→경찰
 제주남국민학교 381
 제주농업중학교 65, 100, 380, 443
 제주도4·3사건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37
 제주도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7
 제주도경비사령부→국방경비대
 제주도계엄사령부 429
 제주도구호위원회 359, 361
 제주비상경비사령부→경찰
 제주도의회 36, 37, 45, 48, 52, 347, 363, 367, 368, 373
 제주도재건부흥위원회 361, 513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국방경비대
 제주방송국 343
 제주북국민학교 108
 『제주신문』 36
 『제주신보』 35, 111, 116, 290, 367, 386, 450
 제주여자중학교 443
제주읍 209
 -건입리 454
 -내도리 206
 -노형리 197, 209, 294, 456, 513
 -도두리 296, 311, 315, 423, 453, 454
 -도평리 206, 207, 272, 300, 403, 513
 -봉개리 315, 316, 360, 385, 406, 407, 417, 418
 -삼양리 149, 170, 230, 258, 291, 311, 405, 406, 416, 417, 418
 -아라리 374
 -영평리 197
 -오라리 198, 199, 200, 296, 311, 460
 -외도리 197, 271, 386, 393, 395, 397
 -용강리 315, 316, 404, 405, 418
 -용담리 454
 -이도리 454
 -이호리 206, 343, 423
 -함명리(咸明里) 316, 360
 -화북리 207, 405, 453, 454, 512
 -회천리 315, 316, 406, 418
 제주지방경찰청 47
 제주지방법원 381, 442, 446, 447, 450
 제주지방심리원 108, 127, 443, 444
 조국현 293
 조대수 381
 조덕송 179, 221, 445
 조몽구 75, 94, 158, 182, 183
 조범구 76
 조병옥 49, 108, 121, 124, 144, 188, 203, 206, 221, 224, 235, 266, 273, 341, 437
 조봉암 279
 조선공산당 92, 93
 조선민족청년단 97, 142, 144, 192, 381
 조선민주애국청년총동맹 94, 95, 130, 410
 조선인민공화국 92
 조선정치범예비구금령 425
 조선총독부 80, 82, 86
 조영구 453, 459
 조용만 104
 조일재 36
조천면 115, 209
 -교래리 323, 379, 387, 455
 -북촌리 129, 131, 210, 314, 374, 413, 414,

415, 443, 484, 535, 538
 -선흘리 411, 412, 454, 460
 -신촌리 154, 206, 403, 454
 -신흥리 267, 387
 -와산리 460
 -와흘리 400
 -조친리 189, 207, 210, 454, 496
 -함덕리 314, 403, 406, 407, 411, 414, 417, 496
 조친중학원 443, 444
 조친지서→경찰
 조한용 150
 조헌영 284
 조화옥 353
 종달리 사건 129, 130
 좌봉 493
 좌우합작 90, 92, 139
 주기용 358, 359, 360, 511
 주정공장 457, 464, 482, 487
 주철순 446
 중공군 포로수용소 339
 중국 57, 58, 63, 80, 88, 91, 174, 177
중문면 209
 -강정리 454
 -도순리 432
 -색달리 374
 -중문리 129, 374
 중문중학원 129, 432, 526
 중문지서→경찰
 중앙정보부 505, 506, 507, 508
 지연부 273
 지하선거 236, 237, 238, 260
 지형장 439
 진관행 410
 진달근 464
 진병룡 434
 진승희 410

진용동지회 269
 진인수 291
 징병 61

자

차경구 494
 채계순 495
 채명신 218
 채병덕 252, 275, 321
 채세병 381, 504
 채용병 150
 채정옥 424
 철도경찰→경찰
 청룡중대→경찰
 최갑중 217
 최경록 178, 224, 229, 230, 232, 233, 234
 최경진 122
 최국현 285, 292
 최길두 381, 382
 최난수 221, 231, 382, 384, 385
 최남식 75, 144, 436, 437
 최동욱 444
 최성돈 381
 최세인 235
 최용남 263
 최원순 381
 최천 35, 192, 203, 223, 290
 최한수 130
 추미애 39, 40, 41, 448, 498
 출판법 426
 치안대 77, 87, 95
 치안유지법 246, 426

카

카스티어(James A. Casteel)→외국인

카이로회담 91
카이로선언 81
케리→외국인
코페닝(Lester Chorpeneing)→외국인
콜레라 98
쿨터(John B. Coulter)→외국인

타

타이센(A. C. Tychsen)→외국인
탁성록 235, 382, 383, 488
통위부 179
트루만(Harry S. Truman)→외국인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 139, 246
트리드웰(Treadwell)→외국인
특경대 161, 181, 182, 186
특별수사과→경찰
특별수사대→경찰

파

팔로군 174, 177
8·15 폭동음모 140
패트릿지(John S. Partridge)→외국인
페라루(Feraru)→외국인
평화협상 190, 191, 192, 194, 195, 196, 197, 198,
199, 201, 213, 216, 227, 265, 534
포고령 80, 449
포고문 121, 261, 264, 265, 509, 535
포츠담회담 63
표선국민학교 390, 399
표선면 115, 209
-가시리 210, 398, 460, 521
-성읍리 302, 438, 441
-토산리 390, 399, 400
-표선리 399
표선지서→경찰

풀러(H. E. Fuller)→외국인
피쉬그룬트(Harold S. Fischgrund)→외국인
필립 로우(Philip C. Rowe)→외국인
필승중대→경찰

하

하곡수집 99, 138, 443
하두용 383
하우스만(James H. Hausman)→외국인
하원지서→경찰
하지(John R. Hodge)→외국인
학련→진국통일학생총연맹
학생연맹→진국통일학생총연맹

한경면

-저지리 514
-조수리 514
한경자 495
한국독립당 78, 96, 97, 113, 133, 136, 254
한국민주당 78, 91, 97, 139, 147, 243, 246
한국섬 183
한국원조법안 321
한나라당 38, 40
한낙구 349
한독당→한국독립당
한라산 금족령 44, 346, 356, 361, 517
한라산 개방 353, 357, 362

한림면

-귀덕리 270, 495
-금악리 223, 433
-명월리 135, 443, 460, 521, 522
한림지서→경찰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 245, 248~251
한민당→한국민주당
한병택 381, 450
한순애 353, 357
한승택 475

한영주 235
 한재길 349, 351, 352, 492
 함경환 68
 함덕지서→경찰
 함병선 258, 287, 302, 305, 310, 311, 312, 315,
 320, 321, 322, 325, 327, 360, 374, 386,
 406, 452, 453, 535
 함상훈 332
 해군본부 47
 해리슨(Harrison)→외국인
 해병대 336, 342, 353, 373, 429, 434
 해안경비대 249, 256
 향보단 206, 273, 375
 허균 459
 허남홍 459
 허두문 128, 443
 허두용 109
 허영삼 342, 351
 허영필 427
 허정 279
 허창순 349
 허춘섭 154
 허헌 92, 95, 240
 허거(R. Hunger)→외국인
 현경호 76, 94, 103, 104, 128, 145, 381, 382
 현계생 329
 현귀덕 394
 현규칠 410
 현기만 505
 현기영 36
 현두길 183
 현두병 388
 현두황 381, 382
 현병구 410
 현병두 349
 현복유 182
 현봉완 388
 현봉협 440
 현상금 352
 현양휴 478
 현여방 76
 현용승 410
 현원학 410
 현의합장묘 314
 현인하 291, 381
 현정자 382
 현주선 171
 현중홍 76
 현창민 427
 현창하 388
 현호경 75, 94
 『형살자명부』 432, 497
 홍명희 240
 홍문평 499, 506
 홍성규 388
 홍순녕 96, 332
 홍순봉 262, 269, 271, 272, 280, 384
 홍순용 96, 113
 홍순원 436
 홍순재 210
 홍인표 381, 450
 홍종언 104
 홍천표 459
 화복지서→경찰
 황성희 444
 황순하 96
 황중욱 130
 황주복 226, 228

5. 제주4·3사건위원회 및 기획단 명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0. 15현재)

구 분	성 명	주 요 직 책	비 고
위원장	이한동-김석수-고건	국무총리	
당연직	김정길-안동수-최경원- 송정호-심상명-강금실	법무부장관	보고서 검토 소위 위원
	조성태-김동신-이준- 조영길	국방부장관	"
	최인기-이근식-김두관-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최선정-김원길-이태복- 김성호-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전윤철-장승우-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박주환-정수부-성광원	법제처장	"
	우근민	제주도지사	
위촉직	강만길	상지대학교 총장	
	김삼웅	前 대한매일 주필	"
	김정기	前 서원대학교 총장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창욱	前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주관위원)
	유재갑	경기대학교 교수	"
	이돈명	변호사·前 조선대학교 총장	
	이황우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임문철	제주중앙성당 주임신부	
	한광덕	성우회 안보분과위원장	
간사	김한욱-강택상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구 분	성 명	주 요 직 책
단장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당연직	이수만·성백영	법무부 서울고검 사무국장
	하재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김지순·장인태·권욱·권선택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윤장근·최정일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김호성·서유창·김영택	제주도 부지사
위촉직	강종호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대표
	강창일(간사)	배재대 교수·제주4·3연구소장
	고창후	변호사
	김순태	방송대학교 충남대전지역 학장
	도진순	창원대학교 교수
	오문균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
	유재갑	경기대학교 교수
	이경우	변호사
	이상근	前 군사편찬위원회 근현대실장
서기	박찬식·김종민	전문위원

진상조사팀

- 수석전문위원 양조훈
- 전문위원 나종삼 장준갑 김종민 박찬식
- 조사요원 김애자 장윤식 김은희 조정희 배성식 박수환 현석이
 민은숙 부미선 김정희 정태희 등 15명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003년 12월 5일 인쇄
2003년 12월 15일 발행

발 행 / 제주4·3사건진상국영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110-040)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
Tel : (02) 3703-5644
Fax : (02) 3703-5821
<http://www.jeu43.go.kr>

작 성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편 집 / 도서출판 선인
인 쇄 / 단물인쇄정보

<비매품>

표지 글씨 현병찬
표지 그림 강요배

